

상

일본 회사법

법률

제 3 판

권종호 역



법무부

상

일본 회사법

법률

제 3 판

권종호 역



법무부

제3판 역자 서문

본서는 2018년에 출판한 일본회사법(역서)의 두 번째 개정판(제3판)이다. 2005년 일본회사법이 단행법으로 제정된 이래 2014년 1차 개정이 있었고 2019년에 2차 개정이 있었다. 본서는 2019년에 개정된 부분을 번역하여 기존의 개정판에 추가한 것이다.

2019년 개정은 제1차 개정 시 국회에서 부대결의로 개정법 시행 후 2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사외이사의 선임상황 기타 사회경제정세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에 관해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요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이번 개정은 주로 주주총회의 운영과 이사의 직무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1차 개정 이후 5년 만의 개정이고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한 개정까지 더해지면서 1차 개정 이후 이번 개정에서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사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이끌어 내기 위한 보수제도의 개정, 과도한 책임으로 인한 경영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제도의 도입 및 임원등 배상책임보험(D&O 보험)의 체결 절차에 관한 규정의 신설은, 책임에 상응하는 보상, 즉 균형 잡힌 이사제도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모회사 관계 형성에 있어서 주식의 현물출자를 대체할 제도로써 그 역할이 기대되는 주식교부제도의 창설은 조직재편수단의 다양화와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사채관리보조자 제도의 신설은 사채관리회사를 두지 않은 경우 사채권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개정 내용에 관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2판과는 달리 역자 해제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였다. 조문을 보기 전에 먼저 일독을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도 본서의 발간에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김봉진 과장님을 비롯하여 정성두 검사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년 1월

권 중 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第3版 訳者序文

本書は2018年に刊行した日本会社法(訳書)の2番目の改訂版(第3版)である。2005年に日本会社法が単行法として制定されてから、2014年に1次改訂が行われ、2019年には2次改訂が行われた。本書は2019年に改訂された部分を翻訳し、既存の改訂版に追加したものである。

2019年(令和元年)改正は、第1次改訂の際に国会で付帯決議により、「改正法律の施行後2年を経過した場合において、社外取締役の選任状況その他の社会経済情勢の変化等を勘案し、企業統治に係る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検討を加え、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結果に基づいて、社外取締役を置くことの義務付け等所要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ことによるのである。その結果、今回の改訂は、主に株主総会の運営と取締役の職務執行の適正化を図ることに焦点を当てている。しかし、1次改訂後の5年ぶりの改訂であり、経営環境の変化などを反映した改訂まで加わり、一次改訂に続き、今回の改訂においても広範囲な分野で改訂が行われた。

取締役の挑戦的でかつ革新的な経営を導くための報酬制度の改善、過度な責任による経営萎縮を解消するための補償制度の導入及び役員等賠償責任保険(D&O保険)の締結手続きに関する規定の新設は、責任と補償というバランスの取れた取締役制度という側面から注目に値する。特に母子会社関係の形成において株式の現物出資に代わる制度としてその役割が期待される株式交付制度の創設は、組織再編手段の多様化と効率化という側面から、そして、社債管理補助者制度の新設は社債管理会社を置いていない場合、私債者の保護という側面から

示唆するところが大きい。

今回の改訂版は、改訂の内容につき読者の理解を深めるため、第2版とは異なり、訳者解題の部分において詳しく説明している。条文を読む前に、先に一読すれば役に立つと思われる。

今回も本書の刊行に当って、法務部商事法務課のキム・ボンジン課長をはじめ、多くの方々からたくさんの貴重な配慮を頂いた。厚く御礼申し上げる。

2024年1月

権 鍾 浩

建国大学校法学専門大学院 教授

개정판 역자서문

본서는 2014년에 출판한 일본회사법(초판)을 개정한 것이다. 일본회사법은 2005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2006년 5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제정된 후 2014년 6월 20일에 처음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본서는 이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현행 일본회사법을 완역한 것이다. 일본회사법은 종래 상법, 유한회사법 등에 산재해있던 회사법제에 관한 규정을 회사법이라는 단일법으로 통합함과 동시에 용어를 현대화한 것이다. 그 결과 편제나 표현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법조문이 방대해지면서 법조문만을 봐서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등 특히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오히려 불편해진 면이 없지 않다. 본서가 일본회사법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2005년에 제정된 일본회사법은 상법 등에 산재해 있던 회사법제에 관해 형식면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대규모로 행한 개정이었기 때문에 입법상의 불비나 해석상의 문제는 피할 수 없었고, 제정 후 10년 여년을 경과하면서 사외이사의 역할 등 이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법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모자회사 등 기업결합법제의 개선은 회사법제정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과제들이었다. 그리고 회사법의 구체적인 개별규정에 있어서는 회사법제정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활용이 이루어지면서 제도간의 정합성 등에 관한 검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2014년 회사법의 개정이 단행되었는데, 본서는 이 개정내용을 번역하여 일본회사법 개정판으로 발간하게 된 것이다.

본서의 발간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관계자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번역작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수고를 해준 건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원도 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8년 2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 중 호

改正版 訳者序文

本書は2014年に刊行した日本会社法(初版)を改正したものである。日本会社法は2005年6月29日日本国会を通過し2006年5月21日より施行されている。2014年6月20日には同法が制定されてから初めて改正が行われ、同改正法は2015年5月1日より施行されている。本書はこの改正法を含めて現行日本会社法を完訳したものである。

日本会社法は従来の商法第2編の会社を基に有限会社法と商法特例法等を統合し一つの法典に収める一方、表現を現代語化したものである。その結果、編制や表現においては過去に比べ遙かに改善されたが、条文の数が多くなったことにより法条文を読むだけではその内容が分かり難いなど特に外国人が日本会社法を理解する上ではむしろ不便になった点も少なくない。本書が日本会社法を理解する上で少しでも役に立てばこれを超える光栄はないと思う。

2005年制定の日本会社法は商法等に散在していた会社法制に関する規定を会社法という一つの法律に纏めるとともに、形式面のみならず、実質面でも大規模な改正を行ったものであった。そのせいか、立法上の不備を指摘する声も少なかったし、解釈上の問題も多かった。また、制定後10余年の時間が経過しながら、社外取締役の機能の活用等の取締役に対する監督のあり方を中心に、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に関する規律を見直すべきであるとの指摘が強くなっていた。そして、親子会社に関する規律の整備も、会社法制定以前から指摘されてきた課題である。さらに、会社法の各規定についても、実務の工夫により会社法制定時には想定していなかった活用がなされ、それが定着してきたこと等に伴い、制度間の整合

性等を検討する必要も生じていた。そういう状況を背景にして、2014年に会社法が改正されたが、本書はこの改正内容を翻訳して日本会社法改正版という名で刊行することになったものである。

本書の刊行にあたっては、法務部の商事法務課の関係者をはじめ、多くの方々からたくさんの貴重な配慮を賜った。ここにお名前をあげることはしないが、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そして、翻訳作業と関連した様々な所用を処理していただいた建国大学大学院の博士課程に在学中である田沅道君にも厚くお礼申し上げます。

2018年2月

権 鍾 浩

建国大学校法学専門大学院 教授

발간사

우리 상법은 1962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에서 무역규모 1조 달러 이상으로 세계 8위권에 이르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와 같은 경제발전을 견인하였고, 법무부는 그러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회사법의 정비 및 선진화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회사법을 정비함에 있어 선진 각국의 입법례와 개정 동향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보다 체계적으로 해외 입법례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이번에 「비교 회사법 총서」 시리즈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비교 회사법 총서」 시리즈는 일본을 비롯하여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회사법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비교 회사법 총서」 시리즈가 국민들의 회사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 법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8월

법무부장관 **황 교 안**

머리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각 국가의 문화와 현실에 맞는 회사법제를 구축하고 운영해 왔으나,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회사법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법의 경우 대륙법계인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으나, 이후 경제현실에 따라 여러 차례 이루어진 개정에서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 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2005년 상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 존재하던 회사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단행법인 회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사전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본의 회사법은 유사한 기업문화를 가진 우리의 회사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부가 「일본 회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한글 번역서를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회사법의 비교 연구를 통해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법 개정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바쁜 일정에도 번역에 힘써주신 권중호 교수님과, 이 책자의 기획과 편집을 맡아 수고한 실무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일본 회사법 한글 번역서 발간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회사법의 비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회사법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8월

법무실장 정 인 창

역자서문

이 책은 현행 일본회사법을 완벽히 번역한 것이다. 현행 일본회사법은 2005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회사법은 종전의 상법 제2편을 중심으로 유한회사법과 상법특례법 등을 묶어 하나의 법전으로 통합하고 표현을 현대어화한 것이다. 그 결과 편제나 표현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법조문이 방대해지면서 법조문만을 봐서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등 특히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오히려 불편해진 면이 없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서가 일본회사법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일본상법은 의용상법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한 적이 있고, 1960년 우리나라에서 신상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시마다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러나 IMF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면서 한일양국의 상법은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다가 2005년 일본에서 회사법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내용면에서는 물론이고 형식면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상법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상법과 유사하거나 같은 법이 아니다. 일본상법(회사법)은 우리나라의 입법이나 연구 영역에 있어서 가장 친근한 참고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영미법이나 독일법 등에 비해 비교법적 연구대상이라는 인식은 부족하였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일본회사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고찰이 많은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현재 일본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모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회사법개정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개정작업이 완료되는 것을 기다려 번역판을 출간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개정작업은 소규모개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또한 번역과정에서 오역한 부분도 적지 않을 터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먼저 번역판을 출간하고 내년엔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담은 개정판을 내면서 오류를 수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하여 번역판을 출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일본상법의 제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개

정사에 관해서는 역자해제에서 기술하고 있다. 독자들이 일본상법과 일본회사법의 연혁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연구년의 반이 지난 무렵인 2012년 말에 법무부로부터 번역을 의뢰받은 후 역자의 게으름으로 발간이 늦어졌다. 묵묵히 참고 기다려 준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번역작업과 관련하여 많은 수고를 해 준 건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권용수군 및 일본동경대에 유학중인 남윤국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4년 8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 종 호

訳者序文

本書は、現行日本会社法を完訳したものである。2005年6月29日日本国会を通過した現行日本会社法は、2006年5月1日より施行されている。日本会社法は従来の商法第2編の会社を基に有限会社法と商法特例法等を統合し一つの法典に収める一方、表現を現代語化したものである。その結果、編制や表現においては過去に比べ遙かに改善されたが、条文の数が多くなったことにより法条文を読むだけではその内容が分かり難いなど特に外国人が日本会社法を理解する上でむしろ不便になった点も少なくない。このような意味で、本書が日本会社法を理解する上で少しでも役に立つことができればこれを超える光栄はないと思う。

日本会社法の前身とも言える日本商法は、一時韓国で衣用したことがあり、韓国商法が施行された1960年以降にも、韓国商法の改正のたび多くの影響を及ぼしてきた。しかし1997年IMF経済危機以降、経済危機を克服するための改正が相次いで行われ、韓日商法は内容において違いを見せ始め、2005年、日本会社法の制定を契機に内容面ではもちろん、形式面においても著しい相違を見せている。日本商法(日本会社法)はもはや韓国商法とは多くの部分で異なる法律となっている。日本商法と日本会社法は、韓国商法の改正の際に最も身近な参考対象であっ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これまでは英米法やドイツ法等に比べ比較法的な研究対象であるとの認識は不足していた。これからでも日本商法や日本会社法の持つ意義に関する考察が学界や法曹界の多くの専門家により、体系的かつ真剣に行われるよう心から祈る。

現在、日本では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と親子会社に関する規定を中心に改正作業が進行している。よって、改正作業が終わるのを待ち本書を出版することも考えた。が、現在進行中の改正は小規模な改正に止まる可能性が高く、また翻訳にも誤訳等の誤りが少なくないはずなので、こうした点を考慮すれば、現段階で取りあえず本書を出版し、来年に改正が行われるとき改正版を出しながら誤訳等の誤りを直すのも一つの方法だと思い、思い切って出版することにした。そして日

本商法の制定から現在に至るまでの改正史については、訳者解題で記述している。読者が日本商法と日本会社法を理解する上で少しでも役に立つことを願う。

サバティカルが半分ほど過ぎた2012年末、法務部から翻訳の依頼を受けたが、専ら怠け者である訳者のせいで出刊が遅れてしまった。快く待ってくださった法務部商事法務課の関係者皆様に心から感謝を込めてお礼を申し上げたい。そして、翻訳作業と関連した様々な所用を処理してもらった建国大学大学院の博士課程に在学中である権容秀君と日本東京大学大学院に留学中である南潤国弁護士にもお礼を申し上げたい。

2014年 8月

権 鍾 浩

建国大学校 法学専門大学院 教授

일본 회사법

[일본 회사법 I] / [日本 会社法 I]

第1編 総則	2
제1편 총 칙	3
第1章 通則 (第一条-第五条)	2
제1장 통 칙 (제1조~제5조)	3
第2章 会社の商号 (第六条-第九条)	12
제2장 회사의 상호 (제6조~제9조)	13
第3章 会社の使用人等	14
제3장 회사의 사용인 등	15
第1節 会社の使用人 (第十条-第十五条)	14
제1절 회사의 사용인 (제10조~제15조)	15
第2節 会社の代理商 (第十六条-第二十条)	16
제2절 회사의 대리상 (제16조~제20조)	17
第4章 事業の譲渡をした場合の競業の禁止等 (第二十一条-第二十四条)	18
제4장 사업양도를 한 경우의 경업금지 등 (제21조~제24조)	19
第2編 株式会社	24
제2편 주식회사	25
第1章 設立	24
제1장 설립	25
第1節 総則 (第二十五条)	24
제1절 총칙 (제25조)	25

目次

第2節 定款の作成(第二十六条-第三十一条)	24
제2절 정관작성(제26조~제31조)	25
第3節 出資(第三十二条-第三十七条)	28
제3절 출자(제32조~제37조)	29
第4節 設立時役員等の選任及び解任(第三十八条-第四十五条)	36
제4절 설립시 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제38조~제45조)	37
第5節 設立時取締役等による調査(第四十六条)	46
제5절 설립시 이사등에 의한 조사(제46조)	47
第6節 設立時代表取締役等の選定等(第四十七条・第四十八条)	46
제6절 설립시 대표이사 등의 선정 등(제47조, 제48조)	47
第7節 株式会社の成立(第四十九条-第五十一条)	48
제7절 주식회사의 성립(제49조~제51조)	49
第8節 発起人等の責任等(第五十二条-第五十六条)	50
제8절 발기인 등의 책임 등(제52조~제56조)	51
第9節 募集による設立	54
제9절 모집설립	55
第一款 設立時発行株式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第五十七条-第六十四条)	54
제1관 설립시 발행주식을 인수할 자의 모집(제57조~제64조)	55
第二款 創立總會等(第六十五条-第八十六条)	60
제2관 창립총회 등(제65조~제86조)	61
第三款 設立に関する事項の報告(第八十七条)	78
제3관 설립에 관한 사항의 보고(제87조)	79
第四款 設立時取締役等の選任及び解任(第八十八条-第九十二条)	78
제4관 설립시 이사 등의 선임 및 해임(제88조~제92조)	79
第五款 設立時取締役等による調査(第九十三条・第九十四条)	82
제5관 설립시 이사 등에 의한 조사(제93조, 제94조)	83
第六款 定款の変更(第九十五条-第百一条)	84
제6관 정관의 변경(제95조~제101조)	85

목 차

第七款 設立手續等の特則等(第百二条-第百三条)	90
제7관 설립 절차 등의 특칙 등 (제102조~제103조)	91
第2章 株式	92
제2장 주식	93
第1節 総則(第百四条-第百二十条)	92
제1절 총칙 (제104조~제120조)	93
第2節 株主名簿(第百二十一条-第百二十六条)	118
제2절 주주명부 (제121조~제126조)	119
第3節 株式の譲渡等	124
제3절 주식양도 등	125
第一款 株式の譲渡(第百二十七条-第百三十五条)	124
제1관 주식양도(제127조~제135조)	125
第二款 株式の譲渡に係る承認手續(第百三十六条-第百四十五条)	128
제2관 주식양도의 승인절차(제136조~제145조)	129
第三款 株式の質入れ(第百四十六条-第百五十四条)	138
제3관 주식의 입질(제146조~제154조)	139
第四款 信託財産に属する株式についての対抗要件等(第百五十四条の二)	146
제4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관한 대항요건 등(제154조의2)	147
第4節 株式会社による自己の株式の取得	146
제4절 주식회사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147
第一款 総則(第百五十五条)	146
제1관 총칙(제155조)	147
第二款 株主との合意による取得	148
제2관 주주와의 합의에 의한 취득	149
第一目 総則(第百五十六条-第百五十九条)	148
제1목 총칙 (제156조~제159조)	149

目次

第二目 特定の株主からの取得(第百六十条-第百六十四条)	150
제2목 특정 주주로부터의 취득(제160조~제164조)	151
第三目 市場取引等による株式の取得(第百六十五条)	154
제3목 시장거래 등을 통한 주식 취득(제165조)	155
第三款 取得請求權付株式及び取得条項付株式の取得	154
제3관 취득청구권부주식 및 취득조항부주식의 취득	155
第一目 取得請求權付株式の取得の請求(第百六十六条・第百六十七条) ..	154
제1목 취득청구권부주식의 취득청구(제166조, 제167조)	155
第二目 取得条項付株式の取得(第百六十八条-第百七十条)	158
제2목 취득조항부주식의 취득(제168조~제170조)	159
第四款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第百七十一条-第百七十三条の二)	
.....	162
제4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제171조~제173조의2)	163
第五款 相続人等に対する売渡しの請求(第百七十四条-第百七十七条) ...	168
제5관 상속인 등에 대한 매도청구(제174조~제177조)	169
第六款 株式の消却(第百七十八条)	172
제6관 주식의 소각(제178조)	173
第4節の2 特別支配株主の株式等売渡請求(第百七十九条-第百七十九条の十) ...	172
제4절의2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제179조~제179조의10)	173
第5節 株式の併合等	184
제5절 주식의 병합 등	185
第一款 株式の併合(第百八十条-第百八十二条の六)	184
제1관 주식의 병합(제180조~제182조의6)	185
第二款 株式の分割(第百八十三条・第百八十四条)	192
제2관 주식의 분할(제183조, 제184조)	193
第三款 株式無償割当て(第百八十五条-第百八十七条)	194
제3관 주식무상배정(제185조~제187조)	195
第6節 单元株式数	196
제6절 단위주식수	197

목 차

第一款 総則(第百八十八条-第百九十一条)	196
제1관 총칙(제188조~제191조)	197
第二款 単元未滿株主の買取請求(第百九十二条・第百九十三条)	198
제2관 단원미만주주의 매수청구(제192조, 제193조)	199
第三款 単元未滿株主の売渡請求(第百九十四条)	200
제3관 단원미만주주의 매도청구(제194조)	201
第四款 単元株式数の変更等(第百九十五条)	202
제4관 단원주식수의 변경 등 (제195조)	203
第7節 株主に対する通知の省略等(第百九十六条-第百九十八条)	202
제7절 주주에 대한 통지의 생략 등 (제196조~제198조)	203
第8節 募集株式の発行等	206
제8절 모집주식의 발행 등	207
第一款 募集事項の決定等(第百九十九条-第二百二条の二)	206
제1관 모집사항의 결정 등(제199조~제202조의2)	207
第二款 募集株式の割当て(第二百三条-第二百六条の二)	214
제2관 모집주식 배정(제203조~제206조의2)	215
第三款 金銭以外の財産の出資(第二百七条)	222
제3관 금전 이외의 재산의 출자(제207조)	223
第四款 出資の履行等(第二百八条・第二百九条)	224
제4관 출자의 이행 등(제208조, 제209조)	225
第五款 募集株式の発行等をやめることの請求(第二百十条)	226
제5관 모집주식의 발행 등을 중지할 것의 청구(제210조)	227
第六款 募集に係る責任等(第二百十一条-第二百十三条の三)	228
제6관 모집에 관한 책임 등(제211조~제213조의3)	229
第9節 株 券	232
제9절 주권	233
第一款 総則(第二百十四条-第二百十八条)	232
제1관 총칙(제214조~제218조)	233

目次

第二款 株券の提出等(第二百十九条・第二百二十条)	236
제2관 주권제출 등(제219조, 제220조)	237
第三款 株券喪失登録(第二百二十一条-第二百三十三条)	240
제3관 주권상실등록(제221조~제233조)	241
第10節 雜則(第二百三十四条・第二百三十五条)	248
제10절 잡칙(제234조, 제235조)	249
第3章 新株予約権	252
제3장 신주예약권	253
第1節 総則(第二百三十六条・第二百三十七条)	252
제1절 총칙(제236조, 제237조)	253
第2節 新株予約権の発行	258
제2절 신주예약권의 발행	259
第一款 募集事項の決定等(第二百三十八条-第二百四十一条)	258
제1관 모집사항의 결정 등(제238조~제241조)	259
第二款 募集新株予約権の割当て(第二百四十二条-第二百四十五条)	264
제2관 모집신주예약권의 배정(제242조~제245조)	265
第三款 募集新株予約権に係る払込み(第二百四十六条)	272
제3관 모집신주예약권에 관한 납입(제246조)	273
第四款 募集新株予約権の発行をやめることの請求(第二百四十七条)	274
제4관 모집신주예약권의 발행을 중지(유지)할 것을 청구(제247조)	275
第五款 雜則(第二百四十八条)	274
제5관 잡칙(제248조)	275
第3節 新株予約権原簿(第二百四十九条-第二百五十三条)	274
제3절 신주예약권원부(제249조~제253조)	275
第4節 新株予約権の譲渡等	280
제4절 신주예약권의 양도 등	281
第一款 新株予約権の譲渡(第二百五十四条-第二百六十一条)	280
제1관 신주예약권 양도(제254조~제261조)	281

목 차

第二款 新株予約権の譲渡の制限(第二百六十二条-第二百六十六条) ..	286
제2관 신주예약권의 양도제한(제262조~제266조)	287
第三款 新株予約権の質入れ(第二百六十七条-第二百七十二条)	288
제3관 신주예약권의 입질(제267조~제272조)	289
第四款 信託財産に属する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対抗要件等(第二百七十二條の二)	294
제4관 신탁재산에 속하는 신주예약권에 관한 대항요건 등(제272조의2)	295
第5節 株式会社による自己の新株予約権の取得	296
제5절 주식회사에 의한 자기신주예약권 취득	297
第一款 募集事項の定めに基づく新株予約権の取得(第二百七十三条-第二百七十五条)	296
제1관 모집사항 규정에 기한 신주예약권의 취득(제273조~제275조)	297
第二款 新株予約権の消却(第二百七十六条)	300
제2관 신주예약권의 소각(제276조)	301
第6節 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第二百七十七条-第二百七十九条)	300
제6절 신주예약권무상배정 (제277조~제279조)	301
第7節 新株予約権の行使	302
제7절 신주예약권의 행사	303
第一款 総則(第二百八十条-第二百八十三条)	302
제1관 총칙(제280조~제283조)	303
第二款 金銭以外の財産の出資(第二百八十四条)	306
제2관 금전 이외의 재산의 출자(제284조)	307
第三款 責任(第二百八十五条-第二百八十六条の三)	310
제3관 책임 (제285조~제286조의3)	311
第四款 雜則(第二百八十七条)	316
제4관 잡칙 (제287조)	317
第8節 新株予約権に係る証券	316
제8절 신주예약권에 관한 증권	317

目次

第一款 新株予約権証券(第二百八十八条-第二百九十一条)	316
제1관 신주예약권증권(제288조~제291조)	317
第二款 新株予約権付社債券(第二百九十二条)	318
제2관 신주예약권부사채권(제292조)	319
第三款 新株予約権証券等の提出(第二百九十三条・第二百九十四条) ..	318
제3관 신주예약권증권 등의 제출(제293조, 제294조)	319
第4章 機関	324
제4장 기관	325
第1節 株主総会及び種類株主総会等	324
제1절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 등	325
第一款 株主総会(第二百九十五条-第三百二十条)	324
제1관 주주총회(제295조~제320조)	325
第二款 種類株主総会(第三百二十一条-第三百二十五条)	354
제2관 종류주주총회(제321조~제325조)	355
第三款 電子提供措置(第三百二十五条の二-第三百二十五条の七)	360
제3관 전자제공조치(제325조의2~제325조의7)	361
第2節 株主総会以外の機関の設置(第三百二十六条-第三百二十八条) ..	368
제2절 주주총회 이외의 기관의 설치(제326조~제328조)	369
第3節 役員及び会計監査人の選任及び解任	370
제3절 임원 및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371
第一款 選任(第三百二十九条-第三百三十八条)	370
제1관 선임(제329조~제338조)	371
第二款 解任(第三百三十九条・第三百四十条)	382
제2관 해임(제339조, 제340조)	383
第三款 選任及び解任の手續に関する特則(第三百四十一条-第三百四十七条)	384
제3관 선임 및 해임 절차에 관한 특칙(제341조~제347조)	385

목 차

第4節 取締役(第三百四十八条-第三百六十一条)	394
제4절 이사(제348조~제361조)	395
第5節 取締役会	406
제5절 이사회	407
第一款 権限等(第三百六十二条-第三百六十五条)	406
제1관 권한 등(제362조~제365조)	407
第二款 運営(第三百六十六条-第三百七十三条)	410
제2관 운영(제366조~제373조)	411
第6節 会計参与(第三百七十四条-第三百八十条)	418
제6절 회계참여(제374조~제380조)	419
第7節 監査役(第三百八十一条-第三百八十九条)	424
제7절 감사(제381조~제389조)	425
第8節 監査役会	432
제8절 감사회	433
第一款 権限等(第三百九十条)	432
제1관 권한 등(제390조)	433
第二款 運営(第三百九十一条-第三百九十五条)	434
제2관 운영(제391조~제395조)	435
第9節 会計監査人(第三百九十六条-第三百九十九条)	436
제9절 회계감사인(제396조~제399조)	437
第9節の2 監査等委員会	442
제9절의2 감사등위원회	443
第一款 権限等(第三百九十九条の二-第三百九十九条の七)	442
제1관 권한 등(제399조의2~제399조의7)	443
第二款 運営(第三百九十九条の八-第三百九十九条の十二)	448
제2관 운영(제399조의8~제399조의12)	449
第三款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取締役会の権限等(第三百九十九条の十三-第三百九十九条の十四)	452
제3관 감사등위원회 설치회사의 이사회 권한 등(제399조의13·제399조의14)	453

目次

第10節 委員会及び執行役	458
제10절 위원회 및 집행임원	459
第一款 委員の選定、執行役の選任等(第四百条-第四百三条)	458
제1관 위원 선정, 집행임원 선임 등 (제400조~제403조)	459
第二款 指名委員会等の権限等(第四百四条-第四百九条)	460
제2관 지명위원회 등의 권한 등 (제404조~제409조)	461
第三款 指名委員会等の運営(第四百十条-第四百十四条)	470
제3관 지명위원회 등의 운영 (제410조~제414조)	471
第四款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取締役の権限等(第四百十五条-第四百十七条)	474
제4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 이사의 권한 등(제415조~제417조)	475
第五款 執行役の権限等(第四百十八条-第四百二十二条)	478
제5관 집행임원의 권한 등 (제418조~제422조)	479
第11節 役員等の損害賠償責任(第四百二十三条-第四百三十条)	482
제11절 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423조~제430조)	483
第十二節 補償契約及び役員等のために締結される保険契約(第四百三十条の二・第四百三十条の三)	494
제12절 보상계약 및 임원 등을 위하여 체결되는 보험계약(제430조의2, 제430조의3) ..	495
第5章 計算等	498
제5장 계산등	499
第1節 会計の原則(第四百三十一条)	498
제1절 회계의 원칙(제431조)	499
第2節 会計帳簿等	498
제2절 회계장부 등	499
第一款 会計帳簿(第四百三十二条-第四百三十四条)	498
제1관 회계장부(제432조~제434조)	499
第二款 計算書類等(第四百三十五条-第四百四十三条)	502
제2관 계산서류 등 (제435조~제443조)	503

목 차

第三款 連結計算書類(第四百四十四条)	510
제3관 연결계산서류(제444조)	511
第3節 資本金の額等	512
제3절 자본금 등	513
第一款 総則(第四百四十五条・第四百四十六条)	512
제1관 총칙(제445조, 제446조)	513
第二款 資本金の額の減少等	516
제2관 자본금 감소 등	517
第一目 資本金の額の減少等(第四百四十七条-第四百四十九条)	516
제1목 자본금 감소 등(제447조~제449조)	517
第二目 資本金の額の増加等(第四百五十条・第四百五十一条)	520
제2목 자본금 증가 등(제450조, 제451조)	521
第三目 剰余金についてのその他の処分(第四百五十二条)	520
제3목 잉여금에 대한 기타 처분(제452조)	521
第4節 剰余金の配当(第四百五十三条-第四百五十八条)	522
제4절 잉여금의 배당(제453조~제458조)	523
第5節 剰余金の配当等を決定する機関の特則(第四百五十九条・第四百六十条) ..	526
제5절 잉여금의 배당 등을 결정하는 기관의 특칙(제459조, 제460조)	527
第6節 剰余金の配当等に関する責任(第四百六十一条-第四百六十五条)	528
제6절 잉여금의 배당 등에 관한 책임(제461조~제465조)	529
第6章 定款の変更(第四百六十六条)	540
제6장 정관의 변경(제466조)	541
第7章 事業の譲渡等(第四百六十七条-第四百七十条)	540
제7장 사업양도 등(제467조~제470조)	541
第8章 解散(第四百七十一条-第四百七十四条)	548
제8장 해산(제471조~제474조)	549
第9章 清算	550
제9장 청산	551

目次

第1節 総則	550
제1절 총칙	551
第一款 清算の開始(第四百七十五条・第四百七十六条)	550
제1관 청산개시(제475조, 제476조)	551
第二款 清算株式会社の機関	552
제2관 청산주식회사의 기관	553
第一目 株主総会以外の機関の設置(第四百七十七条)	552
제1목 주주총회 이외의 기관의 설치(제477조)	553
第二目 清算人の就任及び解任並びに監査役の退任(第四百七十八条-第四百八十条)	552
제2목 청산인의 취임 및 해임, 감사의 퇴임(제478조~제480조)	553
第三目 清算人の職務等(第四百八十一条-第四百八十八条)	558
제3목 청산인의 직무 등 (제481조~제488조)	559
第四目 清算人会(第四百八十九条・第四百九十条)	564
제4목 청산인회(제489조, 제490조)	565
第五目 取締役等に関する規定の適用(第四百九十一条)	568
제5목 이사 등에 관한 규정 적용(제491조)	569
第三款 財産目録等(第四百九十二条-第四百九十八条)	570
제3관 재산목록 등 (제492조~제498조)	571
第四款 債務の弁済等(第四百九十九条-第五百三条)	574
제4관 채무변제 등(제499조~제503조)	575
第五款 残余財産の分配(第五百四条-第五百六条)	578
제5관 잔여재산의 분배(제504조~제506조)	579
第六款 清算事務の終了等(第五百七条)	580
제6관 청산사무의 종료 등(제507조)	581
第七款 帳簿資料の保存(第五百八条)	582
제7관 장부자료 보존(제508조)	583
第八款 適用除外等(第五百九条)	582
제8관 적용제외 등 (제509조)	583

목 차

第2節 特別清算	584
제2절 특별청산	585
第一款 特別清算の開始(第五百十條-第五百十八條の二)	584
제1관 특별청산의 개시(제510조~제518조의2)	585
第二款 裁判所による監督及び調査(第五百十九條-第五百二十二條) ...	592
제2관 법원에 의한 감독 및 조사(제519조~제522조)	593
第三款 清算人(第五百二十三條-第五百二十六條)	594
제3관 청산인(제523조~제526조)	595
第四款 監督委員(第五百二十七條-第五百三十二條)	596
제4관 감독위원(제527조~제532조)	597
第五款 調査委員(第五百三十三條-第五百三十四條)	598
제5관 조사위원(제533조, 제534조)	599
第六款 清算株式会社の行為の制限等(第五百三十五條-第五百三十九條)	598
제6관 청산주식회사의 행위제한 등(제535조~제539조)	599
第七款 清算の監督上必要な処分等(第五百四十條-第五百四十五條) ..	604
제7관 청산 감독상 필요한 처분 등 (제540조~제545조)	605
第八款 債権者集会(第五百四十六條-第五百六十二條)	608
제8관 채권자집회(제546조~제562조)	609
第九款 協定(第五百六十三條-第五百七十二條)	618
제9관 협정(제563조~제572조)	619
第十款 特別清算の終了(第五百七十三條-第五百七十四條)	622
제10관 특별청산의 종료(제573조, 제574조)	623
 第3編 持分会社	 626
제3편 지분회사	627
第1章 設立(第五百七十五條-第五百七十九條)	626
제1장 설립 (제575조~제579조)	627

目次

第2章 社員	628
제2장 사원	629
第1節 社員の責任等(第五百八十条-第五百八十四条)	628
제1절 사원의 책임 등(제580조~제584조)	629
第2節 持分の譲渡等(第五百八十五条-第五百八十七条)	632
제2절 지분의 양도 등(제585조~제587조)	633
第3節 誤認行為の責任(第五百八十八条・第五百八十九条)	632
제3절 오인행위의 책임(제588조, 제589조)	633
第3章 管理	634
제3장 관리	635
第1節 総則(第五百九十条-第五百九十二条)	634
제1절 총칙(제590조~제592조)	635
第2節 業務を執行する社員(第五百九十三条-第六百二条)	636
제2절 업무집행사원(제593조~제602조)	637
第3節 業務を執行する社員の職務を代行する者(第六百三条)	642
제3절 업무집행사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제603조)	643
第4章 社員の加入及び退社	642
제4장 사원의 가입 및 퇴사	643
第1節 社員の加入(第六百四条・第六百五条)	642
제1절 사원의 가입(제604조, 제605조)	643
第2節 社員の退社(第六百六条-第六百十三条)	644
제2절 사원의 퇴사(제606조~제613조)	645
第5章 計算等	650
제5장 계산 등	651
第1節 會計の原則(第六百十四条)	650
제1절 회계의 원칙(제614조)	651

목 차

第2節 会計帳簿(第六百十五條・第六百十六條)	650
제2절 회계장부 (제615조, 제616조)	651
第3節 計算書類(第六百十七條-第六百十九條)	650
제3절 계산서류 (제617조~제619조)	651
第4節 資本金の額の減少(第六百二十條)	652
제4절 자본금의 감소 (제620조)	653
第5節 利益の配当(第六百二十一條-第六百二十三條)	652
제5절 이익배당 (제621조~제623조)	653
第6節 出資の払戻し(第六百二十四條)	654
제6절 출자의 환급 (제624조)	655
第7節 合同会社の計算等に関する特則	656
제7절 합동회사의 계산 등에 관한 특칙	657
第一款 計算書類の閲覽に関する特則(第六百二十五條)	656
제1관 계산서류의 열람에 관한 특칙(제625조)	657
第二款 資本金の額の減少に関する特則(第六百二十六條・第六百二十七條)	656
제2관 자본금 감소에 관한 특칙(제626조, 제627조)	657
第三款 利益の配当に関する特則(第六百二十八條-第六百三十一條) ...	658
제3관 이익배당에 관한 특칙(제628조~제631조)	659
第四款 出資の払戻しに関する特則(第六百三十二條-第六百三十四條) ...	660
제4관 출자의 환급에 관한 특칙 (제632조~제634조)	661
第五款 退社に伴う持分の払戻しに関する特則(第六百三十五條・第六百三十六條)	664
제5관 퇴사에 따른 지분환급에 관한 특칙(제635조, 제636조)	665
第6章 定款の変更(第六百三十七條-第六百四十條)	666
제6장 정관의 변경 (제637조~제640조)	667
第7章 解散(第六百四十一條-第六百四十三條)	668
제7장 해산 (제641조~제643조)	669

目次

第8章 清算	670
제8장 청산	671
第1節 清算の開始(第六百四十四条・第六百四十五条)	670
제1절 청산의 개시(제644조, 제645조)	671
第2節 清算人(第六百四十六条-第六百五十七条)	672
제2절 청산인(제646조~제657조)	673
第3節 財産目録等(第六百五十八条・第六百五十九条)	678
제3절 재산목록 등(제658조, 제659조)	679
第4節 債務の弁済等(第六百六十条-第六百六十五条)	678
제4절 채무변제 등(제660조~제665조)	679
第5節 残余財産の分配(第六百六十六条)	682
제5절 잔여재산의 분배(제666조)	683
第6節 清算事務の終了等(第六百六十七条)	682
제6절 청산사무의 종결 등(제667조)	683
第7節 任意清算(第六百六十八条-第六百七十一条)	682
제7절 임의청산(제668조~제671조)	683
第8節 帳簿資料の保存(第六百七十二条)	686
제8절 장부자료의 보존(제672조)	687
第9節 社員の責任の消滅時効(第六百七十三条)	686
제9절 사원의 책임의 소멸시효(제673조)	687
第10節 適用除外等(第六百七十四条・第六百七十五条)	688
제10절 적용제외 등(제674조, 제675조)	689
 第4編 社債	 690
제4편 사채	691
第1章 総則(第六百七十六条-第七百一条)	690
제1장 총칙(제676조~제701조)	691

목 차

第2章 社債管理者 (第七百二条-第七百十四条)	708
제2장 사채관리자 (제702조~제714조)	709
第二章の二 社債管理補助者 (第七百十四条の二-第七百十四条の七)	716
제2장의2 사채관리보조자(제714조의2~제714조의7)	717
第3章 社債権者集会 (第七百十五条-第七百四十二条)	720
제3장 사채권자집회 (제715조~제742조)	721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	742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743
第1章 組織変更	742
제1장 조직변경	743
第1節 通則 (第七百四十三条)	742
제1절 통칙 (제743조)	743
第2節 株式会社の組織変更 (第七百四十四条・第七百四十五条)	742
제2절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제744조, 제745조)	743
第3節 持分会社の組織変更 (第七百四十六条・第七百四十七条)	746
제3절 지분회사의 조직변경 (제746조, 제747조)	747
 第2章 合併	750
제2장 합병	751
第1節 通則 (第七百四十八条)	750
제1절 통칙 (제748조)	751
第2節 吸収合併	750
제2절 흡수합병	751
第一款 株式会社が存続する吸収合併 (第七百四十九条・第七百五十条)	750
제1관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제749조, 제750조)	751

目次

第二款 持分会社が存続する吸収合併(第七百五十一条・第七百五十二条)	756
제2관 지분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제751조, 제752조)	757
第3節 新設合併	760
제3절 신설합병	761
第一款 株式会社を設立する新設合併(第七百五十三条・第七百五十四条)	760
제1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제753조, 제754조)	761
第二款 持分会社を設立する新設合併(第七百五十五条・第七百五十六条)	768
제2관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제755조, 제756조)	769
第3章 会社分割	770
제3장 회사분할	771
第1節 吸収分割	770
제1절 흡수분할	771
第一款 通則(第七百五十七条)	770
제1관 통칙(제757조)	771
第二款 株式会社に権利義務を承継させる吸収分割(第七百五十八条・第七百五十九条)	772
제2관 주식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흡수분할(제758조, 제759조)	773
第三款 持分会社に権利義務を承継させる吸収分割(第七百六十条・第七百六十一条)	778
제3관 지분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흡수분할(제760조, 제761조)	779
第2節 新設分割	784
제2절 신설분할	785
第一款 通則(第七百六十二条)	784
제1관 통칙(제762조)	785
第二款 株式会社を設立する新設分割(第七百六十三条・第七百六十四条)	784
제2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제763조, 제764조)	785
第三款 持分会社を設立する新設分割(第七百六十五条・第七百六十六条)	792
제3관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제765조, 제766조)	793

목 차

第4章 株式交換及び株式移転	798
제4장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799
第1節 株式交換	798
제1절 주식교환	799
第一款 通則(第七百六十七條)	798
제1관 통칙(제767조)	799
第二款 株式会社に発行済株式を取得させる株式交換(第七百六十八條・第七百六十九條)	798
제2관 주식회사에 발행주식을 취득시키는 주식교환(제768조, 제769조)	799
第三款 合同会社に発行済株式を取得させる株式交換(第七百七十條・第七百七十一條)	804
제3관 합동회사에 발행주식을 취득시키는 주식교환(제770조, 제771조)	805
第2節 株式移転(第七百七十二條-第七百七十四條)	808
제2절 주식이전(제772조~제774조)	809
第四章の二 株式交付(第七百七十四條の二-第七百七十四條の十一)	814
제4장의2 주식교부(제774조의2~제774조의11)	815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續	830
제5장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의 절차	831
第1節 組織変更の手續	830
제1절 조직변경의 절차	831
第一款 株式会社の手續(第七百七十五條-第七百八十條)	830
제1관 주식회사의 절차(제775조~제780조)	831
第二款 持分会社の手續(第七百八十一條)	838
제2관 지분회사의 절차(제781조)	839
第2節 吸収合併等の手續	838
제2절 흡수합병 등의 절차	839

目次

第一款 吸収合併消滅会社、吸収分割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手續	838
제1관 흡수합병소멸회사, 흡수분할회사 및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절차	839
第一目 株式会社の手續(第七百八十二条-第七百九十二条)	838
제1목 주식회사의 절차(제782조~제792조)	839
第二目 持分会社の手續(第七百九十三条)	860
제2목 지분회사의 절차(제793조)	861
第二款 吸収合併存続会社、吸収分割承継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親会社の 手續	860
제2관 흡수합병존속회사, 흡수분할승계회사 및 주식교환완전모회사의 절차	861
第一目 株式会社の手續(第七百九十四条-第八百一条)	860
제1목 주식회사의 절차(제794조~제801조)	861
第二目 持分会社の手續(第八百二条)	878
제2목 지분회사의 절차(제802조)	879
第3節 新設合併等の手續	878
제3절 신설합병 등의 절차	879
第一款 新設合併消滅会社、新設分割会社及び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手續	878
제1관 신설합병소멸회사, 신설분할회사 및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절차	879
第一目 株式会社の手續(第八百三条-第八百十二条)	878
제1목 주식회사의 절차(제803조~제812조)	879
第二目 持分会社の手續(第八百十三条)	898
제2목 지분회사의 절차(제813조)	899
第二款 新設合併設立会社、新設分割設立会社及び株式移転設立完全親 会社の手續	898
제2관 신설합병설립회사, 신설분할설립회사 및 주식이전설립 완전모회사의 절차	899
第一目 株式会社の手續(第八百十四条・第八百十五条)	898
제1목 주식회사의 절차(제814조, 제815조)	899
第二目 持分会社の手續(第八百十六条)	902
제2목 지분회사의 절차(제816조)	903

목 차

第四節 株式交付の手續(第八百十六條之二-第八百十六條の十)	902
제4절 주식교부의 절차 (제816조의2~제816조의10)	903
第6編 外国会社 (第八百十七條-第八百二十三條)	916
제6편 외국회사 (제817조~제823조)	917
第7編 雜 則	920
제7편 잡 칙	921
第1章 会社の解散命令等	920
제1장 회사해산 명령 등	921
第1節 会社の解散命令(第八百二十四條-第八百二十六條)	920
제1절 회사해산 명령 (제824조~제826조)	921
第2節 外国会社の取引繼續禁止又は營業所閉鎖の命令(第八百二十七條) ..	924
제2절 외국회사의 계속거래금지 또는 영업소 폐쇄의 명령 (제827조)	925
第2章 訴訟	924
제2장 소송	925
第1節 会社の組織に関する訴え(第八百二十八條-第八百四十六條)	924
제1절 회사의 조직에 관한 소 (제828조~제846조)	925
第1節の2 売渡株式等の取得の無効の訴え(第八百四十六條之二-第八百四十六條の九)	946
제1절의2 매도주식등의 취득무효의 소 (제846조의2~제846조의9)	947
第2節 株式会社における責任追及等の訴え(第八百四十七條-第八百五十三條) ..	948
제2절 주식회사에 있어서 책임추궁 등의 소 (제847조~제853조)	949
第3節 株式会社の役員の解任の訴え(第八百五十四條-第八百五十六條)	970
제3절 주식회사의 임원해임의 소 (제854조~제856조)	971
第4節 特別清算に関する訴え(第八百五十七條-第八百五十八條)	972
제4절 특별청산에 관한 소 (제857조, 제858조)	973

目次

第5節 持分会社の社員の除名の訴え等(第八百五十九条-第八百六十二条) ..	974
제5절 지분회사의 사원제명의 소 등 (제859조~제862조)	975
第6節 清算持分会社の財産処分の取消しの訴え(第八百六十三条・第八百六十四条)	976
제6절 청산지분회사의 재산처분의 취소의 소 (제863조, 제864조)	977
第7節 社債発行会社の弁済等の取消しの訴え(第八百六十五条-第八百六十七条)	978
제7절 사채발행회사의 변제등의 취소의 소 (제865조~제867조)	979
第3章 非訟	980
제3장 비송	981
第1節 総則(第八百六十八条-第八百七十六条)	980
제1절 총칙 (제868조~제876조)	981
第2節 新株発行の無効判決後の払戻金増減の手續に関する特則(第八百七十七條・第八百七十八條)	988
제2절 신주발행 무효판결 후의 환급금 증감의 절차에 관한 특칙 (제877조, 제878조)	989
第3節 特別清算の手續に関する特則	990
제3절 특별청산의 절차에 관한 특칙	991
第一款 通則(第八百七十九條-第八百八十七條)	990
제1관 통칙(제879조~제887조)	991
第二款 特別清算の開始の手續に関する特則(第八百八十八條-第八百九十一條)	998
제2관 특별청산의 개시절차에 관한 특칙(제888조~제891조)	999
第三款 特別清算の実行の手續に関する特則(第八百九十二條-第九百一條) ..	1000
제3관 특별청산의 실행절차에 관한 특칙(제892조~제901조)	1001
第四款 特別清算の終了の手續に関する特則(第九百二條)	1006
제4관 특별청산의 종료절차에 관한 특칙(제902조)	1007
第4節 外国会社の清算の手續に関する特則(第九百三條)	1006
제4절 외국회사의 청산절차에 관한 특칙 (제903조)	1007

목 차

第5節 会社の解散命令等の手続に関する特則 (第九百四条-第九百六条) ·	1006
제5절 회사의 해산명령등의 절차에 관한 특칙 (제904조~제906조) ·····	1007
第4章 登 記·····	1010
제4장 등기 ·····	1011
第1節 総 則 (第九百七条-第九百十条) ·····	1010
제1절 총 칙 (제907조~제910조) ·····	1011
第2節 会社の登記 (第九百十一条-第九百二十九条) ·····	1010
제2절 회사의 등기(제911조~제929조) ·····	1011
第3節 外国会社の登記 (第九百三十三条-第九百三十六条) ·····	1036
제3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933조~제936조) ·····	1037
第4節 登記の囑託 (第九百三十七条·第九百三十八条) ·····	1042
제4절 등기의 촉탁 (제937조, 제938조) ·····	1043
第5章 公 告 ·····	1050
제5장 공고 ·····	1051
第1節 総 則 (第九百三十九条·第九百四十条) ·····	1050
제1절 총칙 (제939조, 제940조) ·····	1051
第2節 電子公告調査機関 (第九百四十一条-第九百五十九条) ·····	1052
제2절 전자공고 조사기관 (제941조~제959조) ·····	1053
第8編 罰 則 (第九百六十条-第九百七十九条) ·····	1068
제8편 벌 칙 (제960조~제979조) ·····	1069
附 則 ·····	1092
부 칙 ·····	1093
일한회사법대조표 ·····	1126
국문 색인 ·····	1257
일본어 색인 ·····	1300

일러 두기

1. 여기 번역된 것은 현행 일본회사법전이다.
2. 본서의 번역의 기본이 된 일본회사법전의 원문은 일본 정부가 관리하는 법령 제공시스템(<http://law.e-gov.go.jp>)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해당 사이트에 게재된 조문은 관보에 게재된 원문에 충실한 것이다. 다만 본서에서는 원문에 약간의 편집을 하였다. 첫째로 일본회사법의 원문에서는 조문 표제가 각 조문 앞머리에 위치하지만 본서에서는 우리상법과 같이 조문숫자와 각 항의 중간에 위치시켰다. 둘째로 일본회사법의 원문에는 제1항을 표시하는 기호가 없으나 본서에서는 '①'을 삽입하였다. 셋째, 일본회사법의 원문에서는 우리상법의 목에 해당하는 표시로 'イ' 'ロ' 'ハ'..를 사용하나 본서에서는 '가목', '나목', '다목'...으로 표시하였다. 넷째로 일본회사법의 원문에서는 "イ"의 세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로 표시하고 있으나 본서에는 ')'로 표시하였다.
3. 번역어의 선택 및 문장표현에 관해서는 직역을 원칙으로 하되, 직역을 할 경우 이해가 어렵거나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우리상법상의 표현을 참고하여 의역을 하였다. 특히 법무성령과 정령은 회사법시행규칙과 회사법시행령으로 각각 번역하였다.
4. 연호에 관해서는 권말의 대조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5. 각조문의 개정경과에 대해서 일일이 표시할 수 없는 관계로 '역자해제'에서 일본상법의 제정 및 시행 이후의 개정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다. 일본상법 및 일본회사법제정이후의 개정사항에 관해서는 역자해제, 한일상법대조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6. 번역에 있어서 오류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고견을 주시면 감사히 받아 들여 앞으로 개정판을 낼 때 반영하고자 한다.

第1編 総則

第1章 通則

会社法

(平成十七年法律第八十六号)

令和元年12月11日公布(令和元年法律第70号)改正

最終更新: 令和4年12月26日

第1編 総則

第1章 通則

第1条 趣旨

会社の設立、組織、運営及び管理については、他の法律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くほか、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第2条 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 一 会社：株式会社、合名会社、合資会社又は合同会社をいう。
- 二 外国会社：外国の法令に準拠して設立された法人その他の外国の団体であつて、会社と同種のもの又は会社に類似するものをいう。
- 三 子会社：会社がその総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を有する株式会社その他の当該会社がその経営を支配している法人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三の二 子会社等 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をいう。

イ 子会社

회 사 법

(2005년 법률 제86호)

2019년 12월 11일 공포(2019년 법률 70호) 개정
최종개정: 2022년 12월 26일

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제1조 목적

회사의 설립,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용어 정의는 각호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회사 :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를 말한다.
 2. 외국회사 : 외국의 법령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 그 밖의 외국단체로서 회사와 동종의 것이거나 회사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자회사 : 모회사가 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주식회사, 그 밖의 모회사가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의2. 자회사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회사

第1編 総則

第1章 通則

ロ 会社以外の者がその経営を支配している法人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四 親会社：株式会社を子会社とする会社その他の当該株式会社の経営を支配している法人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四の二 親会社等 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をいう。

イ 親会社

ロ 株式会社の経営を支配している者(法人であるものを除く。)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五 公開会社：その発行する全部又は一部の株式の内容として譲渡による当該株式の取得について株式会社の承認を要する旨の定款の定めを設けていない株式会社をいう。

六 大会社：次に掲げる要件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株式会社をいう。

イ 最終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第四百三十九条前段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同条の規定により定時株主総会に報告された貸借対照表をいい、株式会社の成立後最初の定時株主総会までの間においては、第四百三十五条第一項の貸借対照表をいう。ロにおいて同じ。)に資本金として計上した額が五億円以上であること。

ロ 最終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の負債の部に計上した額の合計額が二百億円以上であること。

七 取締役会設置会社：取締役会を置く株式会社又は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取締役会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株式会社をいう。

八 会計参与設置会社：会計参与を置く株式会社をいう。

九 監査役設置会社：監査役を置く株式会社(その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ものを除く。)又は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監査役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株式会社をいう。

十 監査役会設置会社：監査役会を置く株式会社又は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監査役会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株式会社をいう。

十一 会計監査人設置会社：会計監査人を置く株式会社又は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会計監査人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株式会社をいう。

十一の二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監査等委員会を置く株式会社をいう。

十二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指名委員会、監査委員会及び報酬委員会(以下

- 나. 회사 이외의 자가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4. 모회사 :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회사, 그 밖의 자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의2. 모회사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모회사
- 나. 주식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5. 공개회사 : 회사가 발행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주식의 내용으로서 양도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을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를 말한다.
6. 대회사 :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 가. 최종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제439조 전단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된 대차대조표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성립 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까지는 제435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나목에 있어서도 같다)에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5억엔 이상인 회사
- 나. 최종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의 부채의 부에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이 2백억엔 이상인 회사
7. 이사회설치회사 : 이사회를 설치한 주식회사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8. 회계참여설치회사 : 회계참여를 둔 주식회사를 말한다.
9. 감사설치회사 : 감사를 둔 주식회사 (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는 뜻의 규정이 정관에 있는 경우는 제외)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10. 감사회설치회사 : 감사회를 설치한 주식회사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11. 회계감사인설치회사 : 회계감사인을 둔 주식회사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인을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 11의2.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 감사등위원회를 설치한 주식회사를 말한다.
12.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 : 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 (이하 “지

第1編 総則

第1章 通則

「指名委員会等」という。)を置く株式会社をいう。

十三 種類株式発行会社：剰余金の配当その他の第百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内容の異なる二以上の種類の株式を発行する株式会社をいう。

十四 種類株主総会：種類株主(種類株式発行会社におけるある種類の株式の株主をいう。以下同じ。)の総会をいう。

十五 社外取締役：株式会社の取締役であって、次に掲げる要件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ものをいう。

イ 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業務執行取締役(株式会社の第三百六十三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取締役及び当該株式会社の業務を執行したその他の取締役をいう。以下同じ。)若しくは執行役又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以下「業務執行取締役等」という。)でなく、かつ、その就任の前十年間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業務執行取締役等であったことがないこと。

ロ その就任の前十年内のいずれかの時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取締役、会計参与(会計参与が法人であるときは、その職務を行うべき社員)又は監査役であったことがある者(業務執行取締役等であったことがあるものを除く。)にあつては、当該取締役、会計参与又は監査役への就任の前十年間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業務執行取締役等であったことがないこと。

ハ 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自然人であるものに限る。)又は親会社等の取締役若しくは執行役若しく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でないこと。

ニ 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の子会社等(当該株式会社及びその子会社を除く。)の業務執行取締役等でないこと。

ホ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若しくは執行役若しくは支配人その他の重要な使用人又は親会社等(自然人であるものに限る。)の配偶者又は二親等内の親族でないこと。

十六 社外監査役 株式会社の監査役であって、次に掲げる要件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ものをいう。

イ その就任の前十年間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取締役、会計参与(会計参与が法人であるときは、その職務を行うべき社員。ロ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執行役又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であったことがないこと。

ロ その就任の前十年内のいずれかの時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

명위원회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주식회사를 말한다.

13. 종류주식발행회사 : 잉여금의 배당 그 밖의 제108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14. 종류주주총회 : 종류주주(종류주식발행회사에 있어서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회를 말한다.
15. 사외이사 :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업무집행이사(주식회사 제363조 제1항 각호의 이사 및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기타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집행임원, 지배인 기타 사용인 (이하 “업무집행이사등”이라 한다)이 아님 과 동시에 취임 전 10년간 주식회사 또는 자회사의 업무집행이사 등이 아니었을 것

나. 취임 전 10년 내에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이사, 회계참여(회계참여가 법인일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원) 또는 감사이었던 적이 있는 자(업무집행이사 등이었던 자를 제외한다)의 경우는 당해 이사, 회계참여 또는 감사에 취임하기 전 10년 동안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업무집행이사 등이었던 적이 없을 것

다. 당해주식회사의 모회사등(자연인에 한한다) 또는 모회사등의 이사, 집행임원,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아닐 것

라. 주식회사의 모회사등의 자회사등(주식회사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업무집행이사등이 아닐 것

마.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지배인 기타 중요한 사용인 또는 모회사등(자연인에 한한다)의 배우자 또는 2촌내의 친족이 아닐 것

16. 사외감사 : 회사의 감사로서 다음 각 요건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그 취임 전 10년간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이사, 회계참여(회계참여가 법인일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원, 나목에서도 같다), 집행임원,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었던 적이 없을 것

나. 취임 전 10년 내에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감사이었던 자의 경우에

第1編 総則

第1章 通則

社の監査役であったことがある者にあつては、当該監査役への就任の前十年間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取締役、会計参与若しくは執行役又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であったことがないこと。

ハ 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自然人であるものに限る。)又は親会社等の取締役、監査役若しくは執行役若しく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でないこと。

ニ 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の子会社等(当該株式会社及びその子会社を除く。)の業務執行取締役等でないこと。

ホ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若しくは支配人その他の重要な使用人又は親会社等(自然人であるものに限る。)の配偶者又は二親等内の親族でないこと。

十七 譲渡制限株式：株式会社がその発行する全部又は一部の株式の内容として譲渡による当該株式の取得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の承認を要する旨の定めを設け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株式をいう。

十八 取得請求権付株式：株式会社がその発行する全部又は一部の株式の内容として株主が当該株式会社に対して当該株式の取得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定めを設け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株式をいう。

十九 取得条項付株式：株式会社がその発行する全部又は一部の株式の内容として当該株式会社が一定の事由が生じたことを条件として当該株式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定めを設け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株式をいう。

二十 単元株式数：株式会社がその発行する株式について、一定の数の株式をもって株主が株主総会又は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一個の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一単元の株式とする旨の定款の定めを設け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一定の数をいう。

二十一 新株予約権：株式会社に対して行使すること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交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権利をいう。

二十二 新株予約権付社債：新株予約権を付した社債をいう。

二十三 社債：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会社が行う割当てにより発生する当該会社を債務者とする金銭債権であつて、第六百七十六条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償還されるものをいう。

二十四 最終事業年度：各事業年度に係る第四百三十五条第二項に規定する計算書類につき第四百三十八条第二項の承認(第四百三十九条前段に規定する場合にあつては、第四百三十六条第三項の承認)を受けた場合における

는 감사에 취임 전 10년 동안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이사, 회계참여, 집행임원,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었던 적이 없을 것

다. 주식회사의 모회사등(자연인에 한한다), 모회사등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아닐 것

라. 주식회사의 모회사등의 자회사등 (주식회사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업무집행이사등이 아닐 것

마. 주식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중요한 사용인 또는 모회사등(자연인에 한한다)의 배우자 또는 2촌내의 친족이 아닐 것

17. 양도제한주식 : 주식회사가 그 발행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주식의 내용으로서 양도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승인을 요한다는 취지의 정함을 두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말한다.

18. 취득청구권부주식 : 주식회사가 그 발행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주식의 내용으로서 주주가 주식회사에 주식의 취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의 정함을 두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말한다.

19. 취득조항부주식 : 주식회사가 그 발행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주식의 내용으로서 주식회사가 일정한 사유가 발행한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의 정함을 두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식을 말한다.

20. 단원주식수 : 주식회사가 그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일정 수의 주식을 기준으로 하여 주주가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에서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1단원의 주식으로 한다는 뜻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일정수를 말한다.

21. 신주예약권 : 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사함으로써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2. 신주예약권부사채 : 신주예약권이 부착된 사채를 말한다.

23. 사채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행하는 배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당해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채권으로서 제676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상환되는 것을 말한다.

24. 최종사업연도 : 각 사업연도의 제435조 제2항의 계산서류에 관하여 제438조 제2 항의 승인(제439조 전단의 경우에는 제436조 제3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각 사업연도 중 가장 최근의 것을 말한다.

第1編 総則

第1章 通則

当該各事業年度のうち最も遅いものをいう。

二十五 配当財産：株式会社が剰余金の配当をする場合における配当する財産をいう。

二十六 組織変更：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会社がその組織を変更することにより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会社となることをいう。

イ 株式会社：合名会社、合資会社又は合同会社

ロ 合名会社、合資会社又は合同会社 株式会社

二十七 吸収合併：会社が他の会社とする合併であって、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の権利義務の全部を合併後存続する会社に承継させるものをいう。

二十八 新設合併：二以上の会社がする合併であって、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の権利義務の全部を合併により設立する会社に承継させるものをいう。

二十九 吸収分割：株式会社又は合同会社がその事業に関して有する権利義務の全部又は一部を分割後他の会社に承継させることをいう。

三十 新設分割：一又は二以上の株式会社又は合同会社がその事業に関して有する権利義務の全部又は一部を分割により設立する会社に承継させることをいう。

三十一 株式交換：株式会社がその発行済株式(株式会社が発行している株式をいう。以下同じ。)の全部を他の株式会社又は合同会社に取得させることをいう。

三十二 株式移転：一又は二以上の株式会社がその発行済株式の全部を新たに設立する株式会社に取得させることをいう。

三十二の二 株式交付：株式会社が他の株式会社をその子会社(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二項において同じ。)とするために当該他の株式会社の株式を譲り受け、当該株式の譲渡人に対して当該株式の対価として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交付することをいう。

三十三 公告方法：会社(外国会社を含む。)が公告(この法律又は他の法律の規定により官報に掲載する方法により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とされているものを除く。)をする方法をいう。

三十四 電子公告：公告方法のうち、電磁的方法(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する

25. 배당재산 : 주식회사가 잉여금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배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26. 조직변경 :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 : 합병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
나. 합병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 : 주식회사
27. 흡수합병 :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하는 합병으로서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에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28. 신설합병 : 2 이상의 회사가 하는 합병으로서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29. 흡수분할 :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 후 다른 회사에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30. 신설분할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에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주식교환 : 주식회사가 그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다른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에 취득시키는 것을 말한다.
32. 주식이전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주식회사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전부를 새로이 설립하는 주식회사에 취득시키는 것을 말한다.
- 32의2. 주식교부 :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를 그 자회사(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제774조의3 제2항에서 같다.)로 하기 위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받고, 그 주식의 양도인에 대해 주식의 대가로 주식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33. 공고방법 :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가 공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34. 전자공고 : 공고방법 중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第1編 総則

第2章 会社の商号

方法その他の情報通信の技術を利用する方法であっ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により不特定多数の者が公告すべき内容である情報の提供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状態に置く措置であっ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とする方法を用いる。

第3条 法人格

会社は、法人とする。

第4条 住所

会社の住所は、その本店の所在地にあるものとする。

第5条 商行為

会社(外国会社を含む。次条第一項、第八条及び第九条において同じ。)がその事業としてする行為及びその事業のためにする行為は、商行為とする。

第2章 会社の商号

第6条 商号

- 1 会社は、その名称を商号とする。
- 2 会社は、株式会社、合名会社、合資会社又は合同会社の種類に従い、それぞれその商号中に株式会社、合名会社、合資会社又は合同会社という文字を用いなければならない。
- 3 会社は、その商号中に、他の種類の会社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てはならない。

第7条 会社と誤認させる名称等の使用の禁止

会社でない者は、その名称又は商号中に、会社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てはならない。

第8条

- 1 何人も、不正の目的をもって、他の会社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名称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이 공고하여야 할 내용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조치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상행위

회사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제6조 제1항, 제8조 및 제9조에 있어서도 같다) 가 사업으로서 하는 행위 및 사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한다.

제2장 회사의 상호

제6조 상호

- ① 회사의 명칭을 상호라고 한다.
- ② 회사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의 종류에 따라 각각 그 상호 중에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상호 중에 다른 종류의 회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회사로 오인시킬 명칭 등의 사용금지

회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 중에 회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문자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

第1編 総則

第3章 会社の使用人等

又は商号を使用しては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違反する名称又は商号の使用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会社は、そ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する者又は侵害するおそれがある者に対し、その侵害の停止又は予防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9条 自己の商号の使用を他人に許諾した会社の責任

自己の商号を使用して事業又は営業を行うことを他人に許諾した会社は、当該会社が当該事業を行うものと誤認して当該他人と取引をした者に対し、当該他人と連帯して、当該取引によって生じた債務を弁済する責任を負う。

第3章 会社の使用人等

第1節 会社の使用人

第10条 支配人

1 会社(外国会社を含む。以下この編において同じ。)は、支配人を選任し、その本店又は支店において、その事業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第11条 支配人の代理権

1 支配人は、会社に代わってその事業に関する一切の裁判上又は裁判外の行為をする権限を有する。

2 支配人は、他の使用人を選任し、又は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3 支配人の代理権に加えた制限は、善意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12条 支配人の競業の禁止

1 支配人は、会社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次に掲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一 自ら営業を行うこと。

二 自己又は第三者のために会社の事業の部類に属する取引をすること。

三 他の会社又は商人(会社を除く。第二十四条において同じ。)の使用人となる

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명칭 또는 상호의 사용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받거나 침해 받을 우려가 있는 회사는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자기 상호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락한 회사의 책임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 또는 영업을 할 것을 타인에게 허락한 회사는 당 해회사가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타인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그 타 인과 연대하여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 할 책임을 진다.

제3장 회사의 사용인 등

제1절 회사의 사용인

제10조 지배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 는 지배인을 선임하여 그 본 점 또는 지점에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 ① 지배인은 회사에 갈음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 위를 할 수 있다.
- ② 지배인은 다른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 지배인의 경업금지

- ① 지배인은 회사의 허락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것
 - 2.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것
 - 3. 다른 회사 또는 상인(회사는 제외한다. 제24조에서 같다) 의 사용인이 되

第1編 総則

第3章 会社の使用人等

こと。

四 他の会社の取締役、執行役又は業務を執行する社員となること。

2 支配人が前項の規定に違反して同項第二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ときは、当該行為によって支配人又は第三者が得た利益の額は、会社に生じ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第13条 表見支配人

会社の本店又は支店の事業の主任者であることを示す名称を付した使用人は、当該本店又は支店の事業に関し、一切の裁判外の行為をする権限を有するものとみなす。ただし、相手方が悪意であっ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14条 ある種類又は特定の事項の委任を受けた使用人

1 事業に関するある種類又は特定の事項の委任を受けた使用人は、当該事項に関する一切の裁判外の行為をする権限を有する。

2 前項に規定する使用人の代理権に加えた制限は、善意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15条 物品の販売等を目的とする店舗の使用人

物品の販売等(販売、賃貸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行為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目的とする店舗の使用人は、その店舗に在る物品の販売等をする権限を有するものとみなす。ただし、相手方が悪意であっ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2節 会社の代理商

第16条 通知義務

代理商(会社のためにその平常の事業の部類に属する取引の代理又は媒介をする者で、その会社の使用人でないもの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は、取引の代理又は媒介をしたときは、遅滞なく、会社に対して、その旨の通知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는 것

4.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것

② 지배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 제2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지배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을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제13조 표현지배인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주임자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용인은 당해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에 관하여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어떤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① 사업에 관한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5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물품의 판매등(판매, 임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점포에 있는 물품의 판매등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회사의 대리상

제16조 통지의무

대리상(회사를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로서 회사의 사용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第1編 総則

第4章 事業の譲渡をした場合の競業の禁止等

第17条 代理商の競業の禁止

- 1 代理商は、会社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次に掲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 一 自己又は第三者のために会社の事業の部類に属する取引をすること。
 - 二 会社の事業と同種の事業を行う他の会社の取締役、執行役又は業務を執行する社員となること。
- 2 代理商が前項の規定に違反して同項第一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ときは、当該行為によって代理商又は第三者が得た利益の額は、会社に生じ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第18条 通知を受ける権限

物品の販売又はその媒介の委託を受けた代理商は、商法（明治三十二年法律第四十八号）第五百二十六条第二項の通知その他の売買に関する通知を受ける権限を有する。

第19条 契約の解除

- 1 会社及び代理商は、契約の期間を定めなかったときは、二箇月前までに予告し、その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ときは、会社及び代理商は、いつでもその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第20条 代理商の留置権

代理商は、取引の代理又は媒介をしたことによって生じた債権の弁済期が到来しているときは、その弁済を受けるまでは、会社のために当該代理商が占有する物又は有価証券を留置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事者が別段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4章 事業の譲渡をした場合の競業の禁止等

第21条 譲渡会社の競業の禁止

- 1 事業を譲渡した会社(以下この章において「譲渡会社」という。)は、当事者の別

제17조 대리상의 경업금지

- ① 대리상은 회사의 허락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것
 2. 회사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업무 집행 사원이 되는 것
- ② 대리상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 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대리상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을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제18조 통지를 받을 권한

물품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상법 (1899년 법률 제48호) 제526조 제2항의 통지 그 밖의 매매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제19조 계약해제

- ① 회사 및 대리상은 계약의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2개월 전에 예고 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 및 대리상은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 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회사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사업양도를 한 경우의 경업금지 등

제21조 양도회사의 경업금지

- ① 사업을 양도한 회사(이하 이장에서 “양도회사”라고 한다)는 당사자의 특별

第1編 総則

第4章 事業の譲渡をした場合の競業の禁止等

段の意思表示がない限り、同一の市町村(東京都の特別区の存する区域及び地方自治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七号)第二百五十二条の十九第一項の指定都市にあっては、区又は総合区。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区域内及びこれに隣接する市町村の区域内においては、その事業を譲渡した日から二十年間は、同一の事業を行ってはならない。

2 譲渡会社が同一の事業を行わない旨の特約をした場合には、その特約は、その事業を譲渡した日から三十年の期間内に限り、その効力を有する。

3 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譲渡会社は、不正の競争の目的をもって同一の事業を行ってはならない。

第22条 譲渡会社の商号を使用した譲受会社の責任等

1 事業を譲り受けた会社(以下この章において「譲受会社」という。)が譲渡会社の商号を引き続き使用する場合には、その譲受会社も、譲渡会社の事業によって生じた債務を弁済する責任を負う。

2 前項の規定は、事業を譲り受けた後、遅滞なく、譲受会社が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譲渡会社の債務を弁済する責任を負わない旨を登記した場合には、適用しない。事業を譲り受けた後、遅滞なく、譲受会社及び譲渡会社から第三者に対しその旨の通知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通知を受けた第三者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3 譲受会社が第一項の規定により譲渡会社の債務を弁済する責任を負う場合には、譲渡会社の責任は、事業を譲渡した日後二年以内に請求又は請求の予告をしない債権者に対しては、その期間を経過した時に消滅する。

4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譲渡会社の事業によって生じた債権について、譲受会社にした弁済は、弁済者が善意でかつ重大な過失がないときは、その効力を有する。

第23条 譲受会社による債務の引受け

1 譲受会社が譲渡会社の商号を引き続き使用しない場合においても、譲渡会社の事業によって生じた債務を引き受ける旨の広告をしたときは、譲渡会社の債権者は、その譲受会社に対して弁済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譲受会社が前項の規定により譲渡会社の債務を弁済する責任を負う場合に

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시·읍·면(동경도의 특별구가 존재하는 구역 및 지방자치법 (1947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19 제1항의 지정도시의 경우에는 구 또는 종합구. 이하 이항에서 같다)과 인접 시·읍·면에서 그 사업을 양도한 날로부터 20년간은 동일한 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회사가 동일한 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사업을 양도한 날로부터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회사는 부정 경쟁을 목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하지 못한다.

제22조 양도회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양수회사의 책임 등

① 사업을 양수한 회사(이하 이 장에서 “양수회사”라고 한다)가 양도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회사도 양도회사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사업을 양수한 후 지체없이 양수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 양도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을 양수한 후 지체없이 양수회사와 양도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③ 양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양도회사의 책임은 사업을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또는 청구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양도회사의 사업으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양수회사에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 그 효력이 있다.

제23조 양수회사에 의한 채무인수

①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양도회사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하는 뜻을 광고한 때에는 양도회사의 채권자는 그 양수회사에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양수회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第1編 総則

第4章 事業の譲渡をした場合の競業の禁止等

は、譲渡会社の責任は、同項の広告があった日後二年以内に請求又は請求の予告をしない債権者に対しては、その期間を経過した時に消滅する。

第23条の2 許害事業譲渡に係る譲受会社に対する債務の履行の請求

1 譲渡会社が譲受会社に承継されない債務の債権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残存債権者」という。)を害することを知って事業を譲渡した場合には、残存債権者は、その譲受会社に対して、承継した財産の価額を限度として、当該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譲受会社が事業の譲渡の効力が生じた時において残存債権者を害すべき事実を知らなかっ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譲受会社が前項の規定により同項の債務を履行する責任を負う場合には、当該責任は、譲渡会社が残存債権者を害することを知って事業を譲渡したことを知った時から二年以内に請求又は請求の予告をしない残存債権者に対しては、その期間を経過した時に消滅する。事業の譲渡の効力が生じた日から二十年を経過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3 譲渡会社について破産手続開始の決定、再生手続開始の決定又は更生手続開始の決定があったときは、残存債権者は、譲受会社に対して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24条 商人との間での事業の譲渡又は譲受け

1 会社が商人に対してその事業を譲渡した場合には、当該会社を商法第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譲渡人とみなして、同法第十七条から第十八条の二までの規定を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中「又は再生手続開始の決定」とあるのは、「再生手続開始の決定又は更生手続開始の決定」とする。

2 会社が商人の営業を譲り受けた場合には、当該商人を譲渡会社とみなして、前三条の規定を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条第三項中「再生手続開始の決定又は更生手続開始の決定」とあるのは、「又は再生手続開始の決定」とする。

경우 양도회사의 책임은 동항의 광고 후 2년 이내에 청구 또는 청구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23조의2 사해사업양도에 관련된 양수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의 청구

- ① 양도회사가 양수회사에 승계되지 않는 채무의 채권자(이하 본조에서는 “잔존채권자”라고 한다)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잔존채권자는 그 양수회사에 대해서 승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양수회사가 사업양도 효력발생한 시에 잔존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몰랐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양수회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당해책임은 양도회사가 잔존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사업을 양도한 것임을 알았을 때부터 2년 이내에 청구 또는 청구의预告를 하지 아니한 잔존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사업양도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 ③ 양도회사에 대해 파산절차개시 결정, 재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갱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는 잔존채권자는 양수회사에 대해서 제1항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4조 상인간의 사업 양도 또는 양수

- ① 회사가 상인에게 그 사업을 양도 한 경우에는 당해회사를 상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인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17조에서 제18조의2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중 “또는 재생절차개시결정”은 “, 재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갱생절차개시결정”으로 한다.
- ② 회사가 상인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당해상인을 양도회사로 간주하여,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3항 중 “, 재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갱생절차개시결정”은 “또는 재생절차개시결정”으로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第1節 総則

第25条

- 1 株式会社は、次に掲げるいずれかの方法により設立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次節から第八節までに規定するところにより、発起人が設立時発行株式(株式会社の設立に際して発行する株式をいう。以下同じ。)の全部を引き受ける方法
 - 二 次節、第三節、第三十九条及び第六節から第九節までに規定するところにより、発起人が設立時発行株式を引き受けるほか、設立時発行株式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をする方法
- 2 各発起人は、株式会社の設立に際し、設立時発行株式を一株以上引き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第2節 定款の作成

第26条 定款の作成

- 1 株式会社を設立するには、発起人が定款を作成し、その全員がこれに署名し、又は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定款は、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っ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っ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もって作成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情報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署名又は記名押印に代わる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第27条 定款の記載又は記録事項

株式会社の定款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目的
- 二 商号

제2편 주식회사

제1장 설립

제1절 총칙

제25조

- ① 주식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1. 제2절 내지 제8절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설립시발행주식 (주식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인수한 방법
 2. 제2절, 제3절, 제39조 및 제6절 내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외에 설립시발행주식의 인수인을 모집하는 방법
- ② 각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시발행주식을 1주 이상 인수하여야 한다.

제2절 정관작성

제26조 [정관]의 작성

- ①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그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정관은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에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 처리용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대신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 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사항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 三 本店の所在地
- 四 設立に際して出資される財産の価額又はその最低額
- 五 発起人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第28条

株式会社を設立す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は、第二十六条第一項の定款に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 一 金銭以外の財産を出資する者の氏名又は名称、当該財産及びその価額並びにその者に対して割り当てる設立時発行株式の数(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設立時発行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第三十二条第一項第一号において同じ。)
- 二 株式会社の成立後に譲り受けることを約した財産及びその価額並びにその譲渡人の氏名又は名称
- 三 株式会社の成立により発起人が受ける報酬その他の特別の利益及びその発起人の氏名又は名称
- 四 株式会社の負担する設立に関する費用(定款の認証の手数料その他株式会社に損害を与えるおそれがない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

第29条

第二十七条各号及び前条各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株式会社の定款には、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定款の定めが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事項及びその他の事項でこの法律の規定に違反しないものを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

第30条 定款の認証

- 1 第二十六条第一項の定款は、公証人の認証を受け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 2 前項の公証人の認証を受けた定款は、株式会社の成立前は、第三十三条第七項若しくは第九項又は第三十七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場合を除き、これ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31条 定款の備置き及び閲覧等

発起人(株式会社の成立後にあっては、当該株式会社)は、定款を発起人が定めた場

3. 본점의 소재지
4. 설립시 출자하는 재산의 가액과 그 최저액
5. 발기인의 성명, 명칭 및 주소

제28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은 제26조 제1항의 정관에 기재 또는 기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1.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그 목적인 재산, 그 가액 및 그 자에게 배정하는 설립시발행주식의 수(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는 설립시발행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있어서 같다)
2. 주식회사의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 및 그 가액과 그 양도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주식회사의 성립시 발기인이 받는 보수 그 밖의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발기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주식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정관인증 수수료 그 밖에 주식회사에 손해를 줄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9조

제27조 각호 및 전조 각호의 사항 외에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사항 및 그 밖의 사항으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기재 또는 기록할 수 있다.

제30조 정관인증

- ① 제26조 제1항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전항의 인증을 받은 정관은 주식회사의 성립 전에는 제33조 제7항, 제9항 및 제3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31조 정관의 비치 및 열람 등

- ① 발기인(주식회사의 성립 후에는 당해 주식회사)은 정관을 발기인이 정한 장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所(株式会社の成立後にあつては、その本店及び支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発起人(株式会社の成立後にあつては、その株主及び債権者)は、発起人が定めた時間(株式会社の成立後にあつては、そ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発起人(株式会社の成立後にあつては、当該株式会社)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定款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閲覧の請求
- 二 前号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 三 定款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の請求
- 四 前号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つて発起人(株式会社の成立後にあつては、当該株式会社)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3 株式会社の成立後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社員(親会社の株主その他の社員をいう。以下同じ。)がそ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当該親会社社員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当該株式会社の定款について前項各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同項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株式会社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定款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場合であつて、支店における第二項第三号及び第四号に掲げる請求に応じることを可能とするための措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とっている株式会社についての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本店及び支店」とあるのは、「本店」とする。

第3節 出資

第32条 設立時発行株式に関する事項の決定

発起人は、株式会社の設立に際して次に掲げる事項(定款に定めがある事項を除く。)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全員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発起人が割当てを受ける設立時発行株式の数
- 二 前号の設立時発行株式と引換えに払い込む金銭の額
- 三 成立後の株式会社の資本金及び資本準備金の額に関する事項

소(주식회사의 성립 후에는 그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주식회사의 성립 후에는 그 주주 및 채권자)은 발기인이 정한 시간(주식회사의 성립 후에는 그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발기인(주식회사의 성립 후에는 당해 주식회사)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정관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서면의 열람 청구
2. 전호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
3. 정관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의 열람 청구
4. 전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기인(주식회사의 성립 후에는 당해 주식회사)이 정한 바에 따라 제공할 것을 청구하거나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청구

③ 주식회사의 성립 후 당해 주식회사의 모회사사원(모회사의 주주 그 밖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하여 전항 각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동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정관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취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관한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중 “본점 및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제3절 출자

제32조 설립시발행주식에 관한 사항의 결정

①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시 다음의 사항(정관에 정한 사항 제외한다)을 정하려는 때에는 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발기인이 배정 받을 설립시발행주식의 수
2. 전호의 설립시발행주식과 교환으로 납입할 금액
3. 성립 후 주식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2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前項第一号の設立時発行株式が第百八条第三項前段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は、発起人は、その全員の同意を得て、当該設立時発行株式の内容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33条 定款の記載又は記録事項に関する検査役の選任

1 発起人は、定款に第二十八条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記載又は記録があるときは、第三十条第一項の公証人の認証の後遅滞なく、当該事項を調査させるため、裁判所に対し、検査役の選任の申立て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は、裁判所は、これを不適法として却下する場合を除き、検査役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裁判所は、前項の検査役を選任した場合には、成立後の株式会社が当該検査役に対して支払う報酬の額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4 第二項の検査役は、必要な調査を行い、当該調査の結果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を裁判所に提供して報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裁判所は、前項の報告について、その内容を明瞭にし、又はその根拠を確認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第二項の検査役に対し、更に前項の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6 第二項の検査役は、第四項の報告をしたときは、発起人に対し、同項の書面の写しを交付し、又は同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7 裁判所は、第四項の報告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第二十八条各号に掲げる事項(第二項の検査役の調査を経ていないものを除く。)を不当と認めたときは、これを変更する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8 発起人は、前項の決定により第二十八条各号に掲げる事項の全部又は一部が変更された場合には、当該決定の確定後一週間以内に限り、その設立時発行株式の引受けに係る意思表示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9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発起人は、その全員の同意によって、第七項の決定の確定後一週間以内に限り、当該決定により変更された事項についての定めを廃止する定款の変更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② 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 있어서 전항 제1호의 설립시발행주식이 제108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정관의 정함이 있는 주식인 때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설립시발행주식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 사항에 관한 검사인 선임

- ① 발기인은 정관에 제28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재 또는 기록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공증인의 인증 후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부적법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전항의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성립 후 주식회사가 검사인에게 지급할 보수액을 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검사인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결과를 기재 또는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을 법원에 제공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전항의 보고에 관하여 그 내용을 명료하게 하거나 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검사인에게 추가로 전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2항의 검사인은 제4항의 보고를 한 때에는 발기인에게 동항의 서면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동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 ⑦ 법원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제2항의 검사인의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⑧ 발기인은 전항의 결정에 따라 제28조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의 확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설립시발행주식의 인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⑨ 전항의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제7항의 결정 확정 후 1주일 이내에 당해 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정관의 변경을 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10 前各項の規定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 一 第二十八条第一号及び第二号の財産(以下この章において「現物出資財産等」という。)について定款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価額の総額が五百万円を超えない場合 同条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事項
 - 二 現物出資財産等のうち、市場価格のある有価証券(金融商品取引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十五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有価証券をいい、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有価証券とみなされる権利を含む。以下同じ。)について定款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価額が当該有価証券の市場価格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ものを超えない場合 当該有価証券についての第二十八条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事項
 - 三 現物出資財産等について定款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価額が相当であることについて弁護士、弁護士法人、公認会計士(外国公認会計士(公認会計士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三号)第十六条の二第五項に規定する外国公認会計士をいう。))を含む。以下同じ。)、監査法人、税理士又は税理士法人の証明(現物出資財産等が不動産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証明及び不動産鑑定士の鑑定評価。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を受けた場合 第二十八条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事項(当該証明を受けた現物出資財産等に係るものに限る。)
- 11 次に掲げる者は、前項第三号に規定する証明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発起人
 - 二 第二十八条第二号の財産の譲渡人
 - 三 設立時取締役(第三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設立時取締役をいう。))又は設立時監査役(同条第三項第二号に規定する設立時監査役をいう。))
 - 四 業務の停止の処分を受け、その停止の期間を経過しない者
 - 五 弁護士法人、監査法人又は税理士法人であって、その社員の半数以上が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掲げる者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

第34条 出資の履行

1 発起人は、設立時発行株式の引受け後遅滞なく、その引き受けた設立時発行株式につき、その出資に係る金銭の全額を払い込み、又はその出資に係る金銭以外の財産の全部を給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発起人全員の同意があるとき

⑩ 전 각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8조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현물출자재산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정관에 기재 또는 기록된 가액의 총액이 5백만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현물출자재산등 중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금융상품거래법 (1948년 법률 제25호)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을 말하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으로 보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정관에 기재 또는 기록된 가격이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유가증권에 관하여 제28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항
3. 현물출자재산등에 관하여 정관에 기재 또는 기록된 가격이 상당하다는 것에 대하여 변호사, 법무법인, 공인회계사(외국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1948년 법률 제103호) 제16조의2 제5항의 외국 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사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인의 증명(현물출자재산등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증명 및 부동산감정사의 감정평가. 이하 이 호에 있어서 같다)을 받은 경우 : 제28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증명을 받은 현물출자재산등에 한한다)

⑪ 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전항 제3호의 증명을 할 수 없다.

1. 발기인
2. 제28조 제2호의 재산의 양도인
3. 설립시이사(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립시이사를 말한다) 또는 설립시 감사(동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설립시 감사를 말한다)
4.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무법인, 감사법인 또는 세무사법인으로 그 사원의 과반수 이상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 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은 설립시발행주식의 인수 후 지체없이 그 인수한 설립시발행주식에 관한 출자의 목적인 금전의 전액을 납입하거나 그 출자의 목적인 금전 이외의 재산 전부를 급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등기,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は、登記、登録その他権利の設定又は移転を第三者に対抗するために必要な行為は、株式会社の成立後にすることを妨げ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る払込みは、発起人が定めた銀行等(銀行(銀行法(昭和五十六年法律第五十九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銀行をいう。第七百三条第一号において同じ。)、信託会社(信託業法(平成十六年法律第百五十四号)第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信託会社をいう。以下同じ。))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の払込みの取扱いの場所におい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5条 設立時発行株式の株主となる権利の譲渡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払込み又は給付(以下この章において「出資の履行」という。)をすることにより設立時発行株式の株主となる権利の譲渡は、成立後の株式会社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36条 設立時発行株式の株主となる権利の喪失

1 発起人のうち出資の履行をしていないものがある場合には、発起人は、当該出資の履行をしていない発起人に対して、期日を定め、その期日までに当該出資の履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同項に規定する期日の二週間前まで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発起人は、同項に規定する期日までに出資の履行をしないときは、当該出資の履行をすることにより設立時発行株式の株主となる権利を失う。

第37条 発行可能株式総数の定め等

1 発起人は、株式会社が発行することができる株式の総数(以下「発行可能株式総数」という。)を定款で定めていない場合には、株式会社の成立の時までに、その全員の同意によって、定款を変更して発行可能株式総数の定めを設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発起人は、発行可能株式総数を定款で定めている場合には、株式会社の成立の時までに、その全員の同意によって、発行可能株式総数についての定款の変更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는 주식회사의 성립 후에 하여도 된다.

② 전항의 납입은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등(은행(은행법 (1981년 법률 제59호) 제2조 제1항의 은행을 말한다. 제703조 제1호에 있어서 같다), 신탁회사(신탁업법 (2004년 법률 제154호) 제2조 제2항의 신탁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35조 설립시발행주식의 주주가 되는 권리의 양도

전조 제1항의 납입 또는 급부(이하 이 장에서 “출자의 이행”이라고 한다)의 이행으로 인하여 설립시발행주식의 주주가 되는 권리의 양도는 성립 후 주식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제36조 설립시발행주식의 주주가 되는 권리의 상실

① 발기인 중 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발기인이 있는 때에는 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발기인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출자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는 동항의 기일의 2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기인은 동항의 기일까지 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의 이행에 의하여 설립시발행주식의 주주가 될 권리를 잃는다.

제37조 발행가능주식총수의 결정등

① 발기인은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이하 “발행가능주식총수”라고 한다)를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회사의 성립 시까지 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변경하여 발행가능주식총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발행가능주식총수를 정관에 정한 때에는 주식회사의 성립 시까지 그 전원의 동의를 얻어 발행가능주식총수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設立時発行株式の総数は、発行可能株式総数の四分の一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4節 設立時役員等の選任及び解任

第38条 設立時役員等の選任

1 発起人は、出資の履行が完了した後、遅滞なく、設立時取締役(株式会社の設立に際して取締役となる者をいう。以下同じ。)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は、前項の規定による設立時取締役の選任は、設立時監査等委員(株式会社の設立に際して監査等委員(監査等委員会の委員をいう。以下同じ。)となる者をいう。以下同じ。)である設立時取締役とそれ以外の設立時取締役とを区別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発起人は、出資の履行が完了した後、遅滞なく、当該各号に定める者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会計参与設置会社である場合：設立時会計参与(株式会社の設立に際して会計参与となる者をいう。以下同じ。)

二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役設置会社(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を含む。)である場合：設立時監査役(株式会社の設立に際して監査役となる者をいう。以下同じ。)

三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会計監査人設置会社である場合：設立時会計監査人(株式会社の設立に際して会計監査人となる者をいう。以下同じ。)

4 定款で設立時取締役(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時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設立時取締役。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設立時会計参与、設立時監査役又は設立時会計監査人として定められた者は、出資の履行が完了した時に、それぞれ設立時取締役、設立時会計参与、設立時監査役又は設立時会計監査人に選任されたものとみなす。

③ 설립시발행주식의 총수는 발행가능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밑돌 수 없다. 다만, 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공개회사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설립시 임원등의 선임 및 해임

제38조 설립시 임원등의 선임

① 발기인은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시 이사(주식회사의 설립시에 이사가 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설립하고자 하는 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전항의 설립시 이사의 선임은 설립시감사등위원(주식회사설립시 감사등위원(감사등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설립시이사과 그 이외의 설립시이사를 구별하여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기인은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각 호에서 정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설립하고자하는 주식회사가 회계참여설치회사인 경우 : 설립시회계참여(주식회사설립 시에 회계참여가 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설립하고자하는 주식회사가 감사설치회사(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는 취지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인 경우 : 설립시감사(주식회사설립 시에 감사가 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설립하고자하는 주식회사가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인 경우 : 설립시회계감사인(주식회사설립시에 회계감사인이 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④ 정관에서 설립시이사(설립하려고 하는 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설립시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 또는 그 이외의 설립시이사. 이하 이 항에 있어서는 같다), 설립시회계참여, 설립시감사 또는 설립시회계감사인으로 정해진 자는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 각각 설립시이사, 설립시회계참여, 설립시감사 또는 설립시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第39条

- 1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取締役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は、設立時取締役は、三人以上でなければならない。
- 2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役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は、設立時監査役は、三人以上でなければならない。
- 3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は、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時取締役は、三人以上でなければならない。
- 4 第三百三十一条第一項(第三百三十五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三百三十三条第一項若しくは第三項又は第三百三十七条第一項若しく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成立後の株式会社の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又は会計監査人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者は、それぞれ設立時取締役(成立後の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時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設立時取締役)、設立時会計参与、設立時監査役又は設立時会計監査人(以下この節において「設立時役員等」という。)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
- 5 第三百三十一条の二の規定は、設立時取締役及び設立時監査役について準用する。

第40条 設立時役員等の選任の方法

- 1 設立時役員等の選任は、発起人の議決権の過半数をもって決定する。
- 2 前項の場合には、発起人は、出資の履行をした設立時発行株式一株につき一個の議決権を有する。ただし、単元株式数を定款で定めている場合には、一単元の設立時発行株式につき一個の議決権を有する。
-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取締役の全部又は一部の選任につ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定められた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を発行するときは、当該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については、発起人は、当該取締役となる設立時取締役の選任についての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 4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取締役」とあるのは「監査等委員である

제39조

- ① 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이사회설치회사인 때에는 설립시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감사회설치회사인 때에는 설립시 감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설립하고자 하는 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설립시 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제331조 제1항(제33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3조 제1항·제3항, 제337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후주식회사의 이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이외의 이사), 회계참여, 감사 또는 회계감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각각 설립시이사(성립후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설립시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 또는 그 이외의 설립시이사) 설립시회계참여, 설립시감사 또는 설립시회계감사인(이하 이 절에서 “설립시임원등”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 ⑤ 제331조의2의 규정은 설립시 이사 및 설립시 감사에 준용한다.

제40조 설립시임원등의 선임 방법

- ① 설립시 임원등의 선임은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② 전항의 경우 발기인은 출자의 이행을 한 설립시발행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한다. 다만, 단위주식수를 정관으로 정한 때에는 1단위의 설립시발행주식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에 관하여는 발기인은 당해이사가 되는 설립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설립하고자하는 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 전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항 중 “, 이사”는 “,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이외의 이사”로,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と、「当該取締役」とあるのは「これらの取締役」とする。

5 第三項の規定は、設立時会計参与、設立時監査役及び設立時会計監査人の選任について準用する。

第41条 設立時役員等の選任の方法の特則

1 前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式会社の設立に際して第百八条第一項第九号に掲げる事項(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に関するものに限る。)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種類の株式を発行する場合には、設立時取締役(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時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設立時取締役)の選任は、同条第二項第九号に定める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例に従い、当該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を引き受けた発起人の議決権(当該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についての議決権に限る。)の過半数をもって決定する。

2 前項の場合には、発起人は、出資の履行をした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一株につき一個の議決権を有する。ただし、単元株式数を定款で定めている場合には、一単元の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につき一個の議決権を有する。

3 前二項の規定は、株式会社の設立に際して第百八条第一項第九号に掲げる事項(監査役に関するものに限る。)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種類の株式を発行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42条 設立時役員等の解任

発起人は、株式会社の成立の時までの間、その選任した設立時役員等(第三十八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設立時役員等に選任されたものとみなされたものを含む。)を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43条 設立時役員等の解任の方法

1 設立時役員等の解任は、発起人の議決権の過半数(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時取締役又は設立時監査役を解任する場合にあつては、三分の二以上に当たる多数)をもって決定する。

“당해이사”는 “이러한 이사”로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은 설립시회계참여, 설립시감사 및 설립시회계감사인의 선임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1조 설립시임원등의 선임방법의 특칙

① 전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설립시 제108조 제1항 제9호의 사항(이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이외의 이사)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정함이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설립시이사(설립하려고 하는 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설립시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 또는 그 이외의 설립시이사)의 선임은 동조 제2항 제9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관의 정함의 예에 따라 당해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의 의결권(당해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에 관한 의결권에 한한다)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 발기인은 출자의 이행을 한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한다. 다만, 단위주식수를 정관으로 정한 때에는 1단위의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설립시에 제108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사항(감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정함이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제42조 설립시임원등의 해임

발기인은 회사 성립 때까지 선임된 설립시임원등(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설립시임원등으로 선임된 것으로 간주된 자를 포함한다)을 해임 할 수 있다.

제43조 설립시임원등의 해임방법

① 설립시 임원등의 해임은 발기인의 의결권 과반수(설립시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 또는 설립시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로 결정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2 前項の場合には、発起人は、出資の履行をした設立時発行株式一株につき一個の議決権を有する。ただし、単元株式数を定款で定めている場合には、一単元の設立時発行株式につき一個の議決権を有する。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取締役の全部又は一部の解任につ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定められた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を発行するときは、当該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については、発起人は、当該取締役となる設立時取締役の解任についての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4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取締役」とあるの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と、「当該取締役」とあるのは「これらの取締役」とする。

5 第三項の規定は、設立時会計参与、設立時監査役及び設立時会計監査人の解任について準用する。

第44条 設立時取締役等の解任の方法の特則

1 前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設立時取締役(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時取締役を除く。次項及び第四項において同じ。)の解任は、その選任に係る発起人の議決権の過半数をもって決定する。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又は種類創立総会(第八十四条に規定する種類創立総会をいう。)若しくは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選任された取締役(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を除く。第四項において同じ。)を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設立時取締役の解任は、発起人の議決権の過半数をもって決定する。

3 前二項の場合には、発起人は、出資の履行をした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一株につき一個の議決権を有する。ただし、単元株式数を定款で定めている場合には、一単元の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につき一個の議決権を有する。

4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二項の規定により設立時取締役を解任する場合において、取締役の全部又は一部の解任につ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定められた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を発行するときは、当該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については、発起人は、当該取締役となる設立時取締役の解任に

- ② 전항의 경우 발기인은 출자의 이행을 한 설립시발행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한다. 다만, 단원주식수를 정관으로 정한 때에는 1단원의 설립시발행주식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 있어서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에 관하여는 발기인은 당해 이사가 되는 설립시이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설립하고자하는 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 전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 이사”는 “,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이외의 이사”로, “당해이사”는 “이러한 이사”로 한다.
- ⑤ 제3항은 설립시회계참여, 설립시감사 및 설립시회계감사인의 해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4조 설립시이사등의 해임방법의 특칙

- ① 전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설립시이사(설립시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는 제외한다. 다음 항 및 제4항에서도 같다)의 해임은 그 선임에 관계한 발기인의 의결권 과반수로 결정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 제1항에 의하거나 종류창립총회(제84조의 종류창립총회를 말한다) 또는 종류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등위원인 이사를 제외한다. 제4항에서 같다)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는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설립시이사의 해임은 발기인의 의결권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③ 전2항의 경우 발기인은 출자의 이행을 한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한다. 다만, 단원주식수를 정관으로 정한 때에는 1단원의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한다.
- ④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에 관하여는 발기인은 당해 이사가 되는 설립시 이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결권을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についての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5 前各項の規定は、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時取締役及び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設立時監査役の解任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一項及び第二項中「過半数」とあるのは、「三分の二以上に当たる多数」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45条 設立時役員等の選任又は解任の効力についての特則

1 株式会社の設立に際して第百八条第一項第八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種類の株式を発行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種類の株式の内容として次の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種類株主総会の決議があることを必要と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は、定款の定めに従い、第四十条第一項又は第四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のほか、当該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を引き受けた発起人の議決権(当該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についての議決権に限る。)の過半数をもってする決定が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 一 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取締役を除く。)の全部又は一部の選任又は解任：当該取締役となる設立時取締役の選任又は解任
 - 二 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の全部又は一部の選任又は解任：これらの取締役となる設立時取締役の選任又は解任
 - 三 会計参与の全部又は一部の選任又は解任：当該会計参与となる設立時会計参与の選任又は解任
 - 四 監査役の全部又は一部の選任又は解任：当該監査役となる設立時監査役の選任又は解任
 - 五 会計監査人の全部又は一部の選任又は解任：当該会計監査人となる設立時会計監査人の選任又は解任
- 2 前項の場合には、発起人は、出資の履行をした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一株につき一個の議決権を有する。ただし、単元株式数を定款で定めている場合には、一単元の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につき一個の議決権を有する。

행사할 수 없다.

⑤ 전 각 항은 제41조 제1항에 의해 선임된 설립시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 및 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설립시감사의 해임에 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중 “과반수”는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다수”로 한다.

제45조 설립시임원등의 선임 또는 해임의 효력에 관한 특칙

① 주식회사의 설립시 제108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종류주식의 내용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각호의 사항은 정관의 정함에 따라 제40조 제1항 또는 제43조 제1항의 결정 외에 당해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의 의결권(당해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에 관한 의결권에 한한다)의 과반수 이상의 결정이 없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1. 이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임 또는 해임 : 이사가 되는 설립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2.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기타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임 또는 해임 : 이러한 이사가 되는 설립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3. 회계참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임 또는 해임 : 회계참여가 되는 설립시회계 참여의 선임 또는 해임
4.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임 또는 해임 : 감사가 되는 설립시 감사역의 선임 또는 해임
5. 회계감사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임 또는 해임 : 회계감사인이 되는 설립시회계감사인의 선임 또는 해임

② 전항의 경우 발기인은 출자의 이행을 한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한다. 다만, 단위주식수를 정관으로 정한 때에는 1단위의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第5節 設立時取締役等による調査

第46条

1 設立時取締役(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役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設立時取締役及び設立時監査役。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は、その選任後遅滞なく、次に掲げる事項を調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三十三条第十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場合における現物出資財産等(同号に掲げる場合にあっては、同号の有価証券に限る。)について定款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価額が相当であること。

二 第三十三条第十項第三号に規定する証明が相当であること。

三 出資の履行が完了していること。

四 前三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株式会社の設立の手続が法令又は定款に違反していないこと。

2 設立時取締役は、前項の規定による調査により、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し、又は不当な事項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発起人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は、設立時取締役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調査を終了したときはその旨を、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たときはその旨及びその内容を、設立時代表執行役(第四十八条第一項第三号に規定する設立時代表執行役をいう。)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6節 設立時代表取締役等の選定等

第47条 設立時代表取締役の選定等

1 設立時取締役は、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取締役会設置会社(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を除く。)である場合には、設立時取締役(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時取締役を除く。)の中から株式会社の設立に際して代表取締役(株式会社を代表する取締役をいう。以下同じ。)となる者(以下「設立時代表取締役」という。)を選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設立時取締役は、株式会社の成立の時までの間、設立時代表取締役を解職す

제5절 설립시 이사등에 의한 조사

제46조

① 설립시 이사(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감사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설립시 이사 및 설립시 감사.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선임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제33조 제10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현물출자재산등(동호의 경우에는 동호의 유가증권에 한한다)에 관하여 정관에 기재 또는 기록된 가액이 상당한지 여부
2. 제33조 제10항 제3호의 증명이 상당한지 여부
3. 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어 있는지 여부
4. 전3호의 사항 외에 주식회사의 설립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② 설립시 이사는 전항의 조사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기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설립하려고 하는 회사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설립시이사는 제1항의 조사를 종료했을 때에는 그 뜻을, 전항의 통지를 했을 때에는 그 뜻 및 내용을 설립시대표집행임원(제48조 제1항 제3호의 설립시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절 설립시 대표이사등의 선정 등

제47조 설립시대표이사의 선정 등

① 설립시이사는 설립하려고 하는 주식회사가 이사회설치회사(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설립시이사(설립하고자 하는 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설립시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는 제외한다) 중에서 주식회사설립 시에 대표이사(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는 자(이하 “설립시대표이사”라고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설립시 이사는 주식회사의 성립시까지 설립시 대표이사를 해직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る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の規定による設立時代表取締役の選定及び解職は、設立時取締役の過半数をもって決定する。

第48条 設立時委員の選定等

1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は、設立時取締役は、次に掲げる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設立時取締役の中から次に掲げる者(次項において「設立時委員」という。)を選定すること。

イ 株式会社の設立に際して指名委員会の委員となる者

ロ 株式会社の設立に際して監査委員会の委員となる者

ハ 株式会社の設立に際して報酬委員会の委員となる者

二 株式会社の設立に際して執行役となる者(以下「設立時執行役」という。)を選任すること。

三 設立時執行役の中から株式会社の設立に際して代表執行役となる者(以下「設立時代表執行役」という。)を選定すること。ただし、設立時執行役が一人であるときは、その者が設立時代表執行役に選定されたものとする。

2 設立時取締役は、株式会社の成立の時までの間、設立時委員若しくは設立時代表執行役を解職し、又は設立時執行役を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の規定による措置は、設立時取締役の過半数をもって決定する。

第7節 株式会社の成立

第49条 株式会社の成立

株式会社は、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設立の登記をすることによって成立する。

第50条 株式の引受人の権利

1 発起人は、株式会社の成立の時に、出資の履行をした設立時発行株式の株主とな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株主となる権利の譲渡は、成立後の株式会社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시 대표이사의 선정 및 해직은 설립시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48조 설립시위원의 선정 등

① 설립하고자 하는 주식회사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설립시 이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립시 이사 중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자(다음 항에 있어서 “설립시 위원”이라고 한다)를 선정하는 것

가. 주식회사의 설립시에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

나. 주식회사의 설립시에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

다. 주식회사의 설립시에 보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

2. 주식회사의 설립시에 집행임원이 되는 자(이하 “설립시 집행임원”이라고 한다)를 선임하는 것

3. 설립시 집행임원 중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시에 대표집행임원이 되는 자(이하 “설립시 대표집행임원”이라고 한다)를 선정하는 것. 다만, 설립시 집행임원이 1인인 때에는 그 자가 설립시 대표집행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한다.

② 설립시 이사는 주식회사의 성립시까지 설립시 위원 또는 설립시 대표집행임원을 해직하거나 설립시 집행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조치는 설립시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7절 주식회사의 성립

제49조 주식회사의 성립

주식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0조 주식인수인의 권리

①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성립시에 출자의 이행을 한 설립시발행주식의 주주가 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되는 권리의 양도는 성립 후 주식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第51条 引受けの無効又は取消しの制限

- 1 民法(明治二十九年法律第八十九号)第九十三条ただし書及び第九十四条第一項の規定は、設立時発行株式の引受けに係る意思表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 2 発起人は、株式会社の成立後は、錯誤を理由として設立時発行株式の引受けの無効を主張し、又は詐欺若しくは強迫を理由として設立時発行株式の引受けの取消し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8節 発起人等の責任等

第52条 出資された財産等の価額が不足する場合の責任

- 1 株式会社の成立の時における現物出資財産等の価額が当該現物出資財産等について定款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価額(定款の変更があった場合にあっては、変更後の価額)に著しく不足するときは、発起人及び設立時取締役は、当該株式会社に対し、連帯して、当該不足額を支払う義務を負う。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に掲げる場合には、発起人(第二十八条第一号の財産を給付した者又は同条第二号の財産の譲渡人を除く。第二号において同。)及び設立時取締役は、現物出資財産等について同項の義務を負わない。
 - 一 第二十八条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第三十三条第二項の検査役の調査を経た場合
 - 二 当該発起人又は設立時取締役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た場合
- 3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第三十三条第十項第三号に規定する証明をした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証明者」という。)は、第一項の義務を負う者と連帯して、同項の不足額を支払う義務を負う。ただし、当該証明者が当該証明をする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52条の2 出資の履行を仮装した場合の責任等

- 1 発起人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株式会社に対し、当該各号に定める行為をする義務を負う。
 - 一 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払込みを仮装した場合 払込みを仮装した出資に係る金銭の全額の支払

제51조 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의 제한

- ①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제93조 단서 및 제94조 제1항의 규정은 설립시 발행주식의 인수와 관련된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성립 후 착오를 이유로 하여 설립시발행주식의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하여 설립시발행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

제8절 발기인 등의 책임 등

제52조 출자된 재산등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의 책임

- ① 주식회사의 성립시에 있어서 현물출자재산등의 가액이 당해 현물출자재산등에 관하여 정관에 기재 또는 기록된 가액(정관의 변경이 있었던 때에는 변경 후의 가액)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발기인 및 설립시 이사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발기인(제28조 제1호의 재산을 급부한 자 또는 동조 제2호의 재산 양도인을 제외한다. 제2호에서 같다) 및 설립시 이사는 현물출자재산등에 관하여 동항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제28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33조 제2항의 감사인의 조사를 받은 경우
 2. 발기인 또는 설립시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 ③ 제1항의 경우 제33조 제10항 제3호의 증명을 한 자(이하 이 항에 있어서 “증명자”라고 한다)는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와 연대하여 동항의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증명자가 증명을 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의2 출자이행을 가장한 경우의 책임 등

-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식회사에 대해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1. 제34조 제1항의 납입을 가장한 경우 : 가장납입과 관련된 금전의 전액 지급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二 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給付を仮装した場合 給付を仮装した出資に係る金銭以外の財産の全部の給付(株式会社が当該給付に代えて当該財産の価額に相当する金銭の支払を請求し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金銭の全額の支払)

2 前項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発起人がその出資の履行を仮装することに関与した発起人又は設立時取締役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者は、株式会社に対し、当該各号に規定する支払をする義務を負う。ただし、その者(当該出資の履行を仮装したものを除く。)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3 発起人が第一項各号に規定する支払をする義務を負う場合において、前項に規定する者が同項の義務を負うときは、これらの者は、連帯債務者とする。

4 発起人は、第一項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支払若しくは給付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支払がされた後でなければ、出資の履行を仮装した設立時発行株式について、設立時株主(第六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設立時株主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及び株主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5 前項の設立時発行株式又はその株主となる権利を譲り受けた者は、当該設立時発行株式についての設立時株主及び株主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者に悪意又は重大な過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53条 発起人等の損害賠償責任

1 発起人、設立時取締役又は設立時監査役は、株式会社の設立についてその任務を怠ったときは、当該株式会社に対し、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2 発起人、設立時取締役又は設立時監査役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悪意又は重大な過失があったときは、当該発起人、設立時取締役又は設立時監査役は、これによって第三者に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第54条 発起人等の連帯責任

発起人、設立時取締役又は設立時監査役が株式会社又は第三者に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場合において、他の発起人、設立時取締役又は設立時監査役も当該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ときは、これらの者は、連帯債務者とする。

2. 제34조 제1항의 급부를 가장한 경우 : 가장급부와 관련된 금전 이외의 재산의 전부급부(주식회사가 급부에 갈음하여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금전의 전액 지급)

② 전항 각 호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그 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것에 관여한 발기인 또는 설립시이사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는 주식회사에 대해 당해 각호의 지급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다만 그 자(출자의 이행을 가장한 자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기인이 제1항 각 호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동항의 의무를 지는 때에는 이러한 자는 연대 채무자가 된다.

④ 발기인은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지급 혹은 급부 또는 제2항의 지급이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출자의 이행을 가장한 설립시 발행주식에 관하여 설립시주주(제65조 제1항의 설립시주주를 말한다. 다음 항에 있어서 같다) 및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⑤ 전항의 설립시 발행주식 또는 그 주주가 될 권리를 양수한 자는 설립시발행주식에 관한 설립시주주 및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발기인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발기인, 설립시 이사 또는 설립시 감사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발기인, 설립시 이사 또는 설립시 감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발기인, 설립시 이사 또는 설립시 감사는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4조 발기인등의 연대책임

발기인, 설립시 이사 또는 설립시 감사가 주식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다른 발기인, 설립시 이사 또는 설립시 감사도 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때에는 이들은 연대채무자로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第55条 責任の免除

第五十五条 第五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発起人又は設立時取締役の負う義務、第五十二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発起人の負う義務、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発起人又は設立時取締役の負う義務及び第五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発起人、設立時取締役又は設立時監査役の負う責任は、総株主の同意がなければ、免除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56条 株式会社不成立の場合の責任

株式会社が成立しなかったときは、発起人は、連帯して、株式会社の設立に関してした行為についてその責任を負い、株式会社の設立に関して支出した費用を負担する。

第9節 募集による設立

第1款 設立時発行株式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

第57条 設立時発行株式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

- 1 発起人は、この款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設立時発行株式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をする旨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2 発起人は、前項の募集をする旨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全員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8条 設立時募集株式に関する事項の決定

- 1 発起人は、前条第一項の募集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都度、設立時募集株式(同項の募集に応じて設立時発行株式の引受けの申込みをした者に対して割り当てる設立時発行株式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設立時募集株式の数(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じ。)
 - 二 設立時募集株式の払込金額(設立時募集株式一株と引換えに払い込む金銭の額をいう。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じ。)

제55조 책임의 면제

제52조 제1항에 의해 발기인 또는 설립시이사가 지는 의무, 제52조의2 제1항에 의해 발기인이 지는 의무, 동조 제2항에 의해 발기인 또는 설립시이사가 지는 의무 및 제53조 제1항에 의해 발기인, 설립시이사 또는 설립시감사가 지는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할 수 없다.

제56조 주식회사불성립의 책임

주식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9절 모집설립

제1관 설립시 발행주식을 인수할 자의 모집

제57조 설립시발행주식의 인수인 모집

- ① 발기인은 이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시발행주식의 인수인의 모집을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 ② 발기인은 전항의 모집을 하는 뜻을 정하려는 때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8조 설립시모집주식에 관한 사항의 결정

- ① 발기인은 전조 제1항의 모집을 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설립시모집주식(동항의 모집에 응하여 설립시발행주식 인수의 청약을 한 자에게 배정하는 설립시발행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설립시모집주식의 수(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종류별 수. 이하 이 관에서 같다)
 2. 설립시모집주식의 납입금액(설립시모집주식 1주에 대하여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 三 設立時募集株式と引換えにする金銭の払込みの期日又はその期間
- 四 一定の日までに設立の登記がされない場合において、設立時募集株式の引受けの取消し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その一定の日
- 2 発起人は、前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全員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 3 設立時募集株式の払込金額その他の前条第一項の募集の条件は、当該募集(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種類及び当該募集)ごとに、均等に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59条 設立時募集株式の申込み

- 1 発起人は、第五十七条第一項の募集に応じて設立時募集株式の引受け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定款の認証の年月日及びその認証をした公証人の氏名
 - 二 第二十七条各号、第二十八条各号、第三十二条第一項各号及び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
 - 三 発起人が出資した財産の価額
 - 四 第六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払込みの取扱いの場所
 -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 2 発起人のうち出資の履行をしていないものがある場合には、発起人は、第三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期日後でなければ、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 3 第五十七条第一項の募集に応じて設立時募集株式の引受けの申込みをする者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発起人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申込みをする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 二 引き受けようとする設立時募集株式の数
- 4 前項の申込みをする者は、同項の書面の交付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発起人の承諾を得て、同項の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申込みをした者は、同項の書面を交付したものとみなす。
- 5 発起人は、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変更があっ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及び当該変更があった事項を第三項の申込みをした者(以下この款において「申込者」という。)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설립시모집주식과 교환으로 하는 금전의 납입기일 또는 그 기간
4. 일정한 날까지 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설립시모집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때에는 그 뜻 및 그 일정한 날
- ② 발기인은 전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려는 때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설립시모집주식의 납입금액 그 밖의 전조 제1항의 모집의 조건은 모집(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는 종류 및 당해 모집)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59조 설립시모집주식의 청약

- ① 발기인은 제57조 제1항의 모집에 응하여 설립시모집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인증년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7조 각호, 제28조 각호, 제32조 제1항 각호 및 전조 제1항 각호의 사항
 3. 발기인이 출자한 재산의 가액
 4. 제63조 제1항의 납입장소
 5. 전 각호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발기인 중 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발기인은 제36조 제1항의 기일 후가 아니면 전항의 통지를 할 수 없다.
- ③ 제57조 제1항의 모집에 응하여 설립시모집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인수하려는 설립시모집주식의 수
- ④ 전항의 청약을 하는 자는 동항의 서면 교부에 갈음하여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발기인의 승낙을 얻어 동항의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을 하는 자는 동항의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 ⑤ 발기인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과 변경된 사항을 제3항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관에서 “청약자”라고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6 発起人が申込者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催告は、第三項第一号の住所(当該申込者が別に通知又は催告を受ける場所又は連絡先を発起人に通知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場所又は連絡先)にあてて発すれば足りる。

7 前項の通知又は催告は、その通知又は催告が通常到達すべきであった時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第60条 設立時募集株式の割当て

1 発起人は、申込者の中から設立時募集株式の割当てを受ける者を定め、かつ、その者に割り当てる設立時募集株式の数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発起人は、当該申込者に割り当てる設立時募集株式の数を、前条第三項第二号の数よりも減少することができる。

2 発起人は、第五十八条第一項第三号の期日(同号の期間を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の初日)の前日までに、申込者に対し、当該申込者に割り当てる設立時募集株式の数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61条 設立時募集株式の申込み及び割当てに関する特別

前二条の規定は、設立時募集株式を引き受けようとする者がその総数の引受けを行う契約を締結す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62条 設立時募集株式の引受け

次の各号に掲げる者は、当該各号に定める設立時募集株式の数について設立時募集株式の引受人となる。

- 一 申込者 発起人の割り当てた設立時募集株式の数
- 二 前条の契約により設立時募集株式の総数を引き受けた者 その者が引き受けた設立時募集株式の数

第63条 設立時募集株式の払込金額の払込み

1 設立時募集株式の引受人は、第五十八条第一項第三号の期日又は同号の期間内に、発起人が定めた銀行等の払込みの取扱いの場所において、それぞれの設立時募集株式の払込金額の全額の払込み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る払込みをすることにより設立時発行株式の株主となる権利

- ⑥ 발기인이 청약자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제3항 제1호의 주소(청약자가 별도로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 또는 연락처를 발기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장소 또는 연락처)로 발송하면 된다.
- ⑦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0조 설립시모집주식의 배정

- ① 발기인은 청약자 중에서 설립시모집주식의 배정을 받을 자를 정하고 그 자에게 배정할 설립시모집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청약자에게 배정할 설립시모집주식의 수를 전조 제3항 제2호의 수보다 적게할 수 있다.
- ② 발기인은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기일 (동호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초일) 의 전일까지 청약자에 대하여 당해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설립시모집주식의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 설립시모집주식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특칙

전2조의 규정은 설립시모집주식을 인수하려는 자가 그 총수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설립시모집주식의 인수

다음 각호의 자는 당해 각호에서 규정하는 설립시모집주식의 수에 대하여 설립시모집주식 인수인이 된다.

1. 청약자 : 발기인이 배정한 설립시모집주식의 수
2. 전조의 계약에 의하여 설립시모집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자 : 그 자가 인수한 설립시모집주식의 수

제63조 설립시모집주식의 납입금액의 납입

- ① 설립시모집주식의 인수인은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기일 또는 동호의 기간 내에 발기인이 정한 은행등의 납입장소에 각각의 설립시모집주식의 납입금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납입으로 설립시발행주식의 주주가 될 권리의 양도는 성립 후 주식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の譲渡は、成立後の株式会社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設立時募集株式の引受人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払込みをしないときは、当該払込みをすることにより設立時募集株式の株主となる権利を失う。

第64条 払込金の保管証明

1 第五十七条第一項の募集をした場合には、発起人は、第三十四条第一項及び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払込みの取扱いをした銀行等に対し、これらの規定により払い込まれた金額に相当する金銭の保管に関する証明書の交付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証明書を交付した銀行等は、当該証明書の記載が事実と異なること又は第三十四条第一項若しく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払い込まれた金銭の返還に関する制限があることをもって成立後の株式会社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2款 創立総会等

第65条 創立総会の招集

1 第五十七条第一項の募集をする場合には、発起人は、第五十八条第一項第三号の期日又は同号の期間の末日のうち最も遅い日以後、遅滞なく、設立時株主(第五十条第一項又は第百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株式会社の株主となる者をいう。以下同じ。)の総会(以下「創立総会」という。)を招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発起人は、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いつでも、創立総会を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

第66条 創立総会の権限

創立総会は、この節に規定する事項及び株式会社の設立の廃止、創立総会の終結その他株式会社の設立に関する事項に限り、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67条 創立総会の招集の決定

1 発起人は、創立総会を招集す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創立総会の日時及び場所
- 二 創立総会の目的である事項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③ 설립시모집주식의 인수인은 제1항의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으로 설립시모집주식의 주주가 될 권리를 잃는다.

제64조 납입금의 보관증명

① 제57조 제1항의 모집을 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제34조 제1항 및 전조 제1항의 납입의 취급을 한 은행등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금액에 상응하는 금전보관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증명서를 교부한 은행등은 증명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34조 제1항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성립 후 주식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2관 창립총회등

제65조 창립총회의 소집

① 제57조 제1항의 모집을 하는 경우 발기인은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기일 또는 동호의 기간의 말일 중 가장 늦은 날 이후 지체없이 설립시주주(제50조 제1항 또는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총회(이하 “창립총회”라고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6조 창립총회의 권한

창립총회는 이 절에 규정한 사항 및 주식회사의 설립폐지, 창립총회의 종결 기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제67조 창립총회의 소집결정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창립총회의 목적사항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 三 創立総会に出席しない設立時株主が書面によっ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 四 創立総会に出席しない設立時株主が電磁的方法によっ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 2 発起人は、設立時株主(創立総会において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の全部につき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設立時株主を除く。次条から第七十一条までにおいて同じ。)の数が千人以上である場合には、前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68条 創立総会の招集の通知

- 1 創立総会を招集するには、発起人は、創立総会の日の一週間(前条第一項第三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を除き、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ない場合にあつては、一週間(当該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取締役会設置会社以外の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期間)) 前までに、設立時株主に対してその通知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次に掲げる場合には、前項の通知は、書面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前条第一項第三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
 - 二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取締役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
- 3 発起人は、前項の書面による通知の発出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設立時株主の承諾を得て、電磁的方法により通知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発起人は、同項の書面による通知を発したものとみなす。
- 4 前二項の通知に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 5 発起人が設立時株主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催告は、第二十七条第五号又は第五十九条第三項第一号の住所(当該設立時株主が別に通知又は催告を受ける場所又は連絡先を発起人に通知し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場所又は連絡先) にあてて発すれば足りる。
- 6 前項の通知又は催告は、その通知又は催告が通常到達すべきであった時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3. 창립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설립시 주주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그 뜻
 4. 창립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설립시 주주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그 뜻
 5. 전 각호의 사항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발기인은 설립시 주주(창립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설립시 주주는 제외한다. 다음 조 내지 제71조에서 같다)의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항 제3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8조 창립총회의 소집의 통지

- ① 창립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발기인은 창립총회일 2주간(전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공개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1주간(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이사회설치회사 이외의 주식회사인 경우로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 설립시 주주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다음의 경우 전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
 2. 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이사회설치회사인 경우
- ③ 발기인은 전항의 서면에 의한 통지에 갈음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시 주주의 승낙을 얻어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기인은 동항의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전2항의 통지에는 전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한다.
- ⑤ 발기인이 설립시 주주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제27조 제5호 또는 제59조 제3항 제1호의 주소(설립시 주주가 별도로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 또는 연락처를 발기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장소 또는 연락처)로 발송하면 된다.
- ⑥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7 前二項の規定は、第一項の通知に際して設立時株主に書面を交付し、又は当該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項中「到達したもの」とあるのは、「当該書面の交付又は当該事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があったもの」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69条 招集手続の省略

前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創立総会は、設立時株主の全員の同意があるときは、招集の手続を経ることなく開催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六十七条第一項第三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70条 創立総会参考書類及び議決権行使書面の交付等

1 発起人は、第六十七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には、第六十八条第一項の通知に際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設立時株主に対し、議決権の行使について参考となるべき事項を記載した書類(以下この款において「創立総会参考書類」という。)及び設立時株主が議決権を行使するための書面(以下この款において「議決権行使書面」という。)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発起人は、第六十八条第三項の承諾をした設立時株主に対し同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通知を発す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よる創立総会参考書類及び議決権行使書面の交付に代えて、これらの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設立時株主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これらの書類を当該設立時株主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71条

1 発起人は、第六十七条第一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には、第六十八条第一項の通知に際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設立時株主に対し、創立総会参考書類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発起人は、第六十八条第三項の承諾をした設立時株主に対し同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通知を発す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よる創立総会参考書類の交付に代えて、当該創立総会参考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設立時株主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創立総会参考書類を当該設立時株主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⑦ 전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를 할 때 설립시 주주에게 서면을 교부하거나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전항 중 “도달한 것”은 “서면의 교부 또는 당해 사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69조 소집절차의 생략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는 설립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 창립총회 참고서류 및 의결권행사서면의 교부 등

① 발기인은 제67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제68조 제1항의 통지를 할 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시 주주에게 의결권행사에 참고되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이 관에 있어서 “창립총회 참고서류”라고 한다) 및 설립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서면(이하 이 관에 있어 “의결권행사서면”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제68조 제3항의 승낙을 한 설립시 주주에게 동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전항의 창립총회 참고서류 및 의결권행사서면의 교부에 갈음하여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설립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를 설립시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1조

① 발기인은 제67조 제1항 제4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제68조 제1항의 통지를 할 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시 주주에게 창립총회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제68조 제3항의 승낙을 한 설립시 주주에게 동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전항의 창립총회 참고서류의 교부에 갈음하여 창립총회 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설립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창립총회 참고서류를 당해 설립시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3 発起人は、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第六十八条第三項の承諾をした設立時株主に対する同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通知に際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設立時株主に対し、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当該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発起人は、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第六十八条第三項の承諾をしていない設立時株主から創立総会の日の一週間前までに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直ちに、当該設立時株主に対し、当該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72条 議決権の数

1 設立時株主(成立後の株式会社がその総株主の議決権の四分の一以上を有することその他の事由を通じて成立後の株式会社がその経営を実質的に支配することが可能となる関係にあ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設立時株主を除く。)は、創立総会において、その引き受けた設立時発行株式一株につき一個の議決権を有する。ただし、単元株式数を定款で定めている場合には、一単元の設立時発行株式につき一個の議決権を有する。

2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について制限がある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を発行するときは、創立総会において、設立時株主は、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に相当する事項に限り、当該設立時発行株式につ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式会社の設立の廃止については、設立時株主は、その引き受けた設立時発行株式につ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

第73条 創立総会の決議

1 創立総会の決議は、当該創立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設立時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であって、出席した当該設立時株主の議決権の三分の二以上に当たる多数をもって行う。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発行する全部の株式の内容として譲渡による当該株式の取得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の承認を要する旨の定款の定めを設ける定

③ 발기인은 제1항의 경우 제68조 제3항의 승낙을 한 설립시 주주에게 동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통지를 할 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시 주주에게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발기인은 제1항의 경우 제68조 제3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한 설립시 주주로부터 창립총회일 1주전까지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당해 설립시 주주에게 그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2조 의결권의 수

① 설립시 주주(성립 후 주식회사가 그 총주주의 의결권 4분의1 이상을 가지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성립 후 주식회사가 그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설립시 주주는 제외한다)는 창립총회에서 그 인수한 설립시발행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한다. 다만, 단위주식수를 정관으로 정한 때에는 1단위의 설립시발행주식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한다.

② 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되는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창립총회에서 설립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설립폐지에 관하여는 설립시 주주가 그 인수한 설립시발행주식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3조 창립총회의 결의

① 창립총회의 결의는 당해 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설립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출석한 설립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발행하는 모든 주식의 내용으로서 양도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정관의 정함을 두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款の変更を行う場合(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を除く。)には、当該定款の変更についての創立総会の決議は、当該創立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設立時株主の半数以上であって、当該設立時株主の議決権の三分の二以上に当たる多数をもっ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定款を変更してその発行する全部の株式の内容として第一百七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を設け、又は当該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変更(当該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ものを除く。)をしようとする場合(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を除く。)には、設立時株主全員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創立総会は、第六十七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以外の事項については、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定款の変更又は株式会社の設立の廃止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第74条 議決権の代理行使

1 設立時株主は、代理人によってその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設立時株主又は代理人は、代理権を証明する書面を発起人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代理権の授与は、創立総会ごと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設立時株主又は代理人は、代理権を証明する書面の提出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発起人の承諾を得て、当該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設立時株主又は代理人は、当該書面を提出したものとみなす。

4 設立時株主が第六十八条第三項の承諾をした者である場合には、発起人は、正当な理由がなければ、前項の承諾をすることを拒んではならない。

5 発起人は、創立総会に出席することができる代理人の数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

6 発起人(株式会社の成立後にあつては、当該株式会社。次条第三項及び第七十六条第四項において同じ。)は、創立総会の日から三箇月間、代理権を証明する書面及び第三項の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された事項が記録された電磁的記録を発起人が定めた場所(株式会社の成立後にあつては、その本店。次条第三項及び第七十六条第四項において同じ。)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7 設立時株主(株式会社の成立後にあつては、その株主。次条第四項及び第七十

는 정관의 변경을 하는 경우(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창립총회의 결의는 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설립시 주주의 반수 이상으로서 당해 설립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③ 정관을 변경하여 그 발행하는 모든 주식의 내용으로서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거나 당해 사항에 관한 정관의 변경(당해 사항에 관한 정관의 정함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경우(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설립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창립총회는 제67조 제1항 제2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정관의 변경 또는 주식회사의 설립폐지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설립시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립시 주주 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대리권의 수여는 창립총회마다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설립시 주주 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제출에 갈음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기인의 승낙을 얻어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립시 주주 또는 대리인은 당해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설립시 주주가 제68조 제3항의 승낙을 한 자인 경우 발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⑤ 발기인은 창립총회에 출석할 수 있는 대리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⑥ 발기인(주식회사의 성립 후에는 당해 주식회사. 다음 조 제3항 및 제76조 제4항에서 같다)은 창립총회일로부터 3개월간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제3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된 사항이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발기인이 정한 장소(주식회사의 성립 후에는 그 본점. 다음 조 제3항 및 제76조 제4항에서 같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⑦ 설립시 주주(주식회사의 성립 후에는 그 주주. 다음 조 제4항 및 제76조 제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六条第五項において同じ。)は、発起人が定めた時間(株式会社の成立後にあっては、その営業時間。次条第四項及び第七十六条第五項において同じ。)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代理権を証明する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 二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第75条 書面による議決権の行使

- 1 書面による議決権の行使は、議決権行使書面に必要な事項を記載し、法務省令で定める時までには当該議決権行使書面を発起人に提出して行う。
- 2 前項の規定により書面によって行使した議決権の数は、出席した設立時株主の議決権の数に算入する。
- 3 発起人は、創立総会の日から三箇月間、第一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議決権行使書面を発起人が定めた場所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 4 設立時株主は、発起人が定めた時間内は、いつでも、第一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議決権行使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76条 電磁的方法による議決権の行使

- 1 電磁的方法による議決権の行使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発起人の承諾を得て、法務省令で定める時までには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当該発起人に提供して行う。
- 2 設立時株主が第六十八条第三項の承諾をした者である場合には、発起人は、正当な理由がなければ、前項の承諾をすることを拒んではならない。
-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電磁的方法によって行使した議決権の数は、出席した設立時株主の議決権の数に算入する。
- 4 発起人は、創立総会の日から三箇月間、第一項の規定により提供された事項を記録した電磁的記録を発起人が定めた場所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 5 設立時株主は、発起人が定めた時間内は、いつでも、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5항에서 같다)는 발기인이 정한 시간(주식회사의 성립 후에는 그 영업시간. 다음 조 제4항 및 제76조 제5항에서 같다)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제75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 ①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의결권행사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당해 의결권행사서면을 발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설립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한다.
- ③ 발기인은 창립총회일부터 3개월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결권행사서면을 발기인이 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설립시 주주는 발기인이 정한 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결권행사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76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 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기인의 승낙을 얻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발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설립시 주주가 제68조 제3항의 승낙을 한 자인 경우 발기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전항의 승낙을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설립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한다.
- ④ 발기인은 창립총회일부터 3개월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을 발기인이 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⑤ 설립시 주주는 발기인이 정한 시간내에 언제든지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第77条 議決権の不統一行使

- 1 設立時株主は、その有する議決権を統一しないで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創立総会の日前三日前までに、発起人に対してその旨及びその理由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発起人は、前項の設立時株主が他人のために設立時発行株式を引き受けた者でないときは、当該設立時株主が同項の規定によりその有する議決権を統一しないで行使することを拒むことができる。

第78条 発起人の説明義務

発起人は、創立総会において、設立時株主から特定の事項について説明を求められた場合には、当該事項について必要な説明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事項が創立総会の目的である事項に関しないものである場合、その説明をすることにより設立時株主の共同の利益を著しく害する場合その他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79条 議長の権限

- 1 創立総会の議長は、当該創立総会の秩序を維持し、議事を整理する。
- 2 創立総会の議長は、その命令に従わない者その他当該創立総会の秩序を乱す者を退場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80条 延期又は続行の決議

創立総会においてその延期又は続行について決議があった場合には、第六十七条及び第六十八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81条 議事録

- 1 創立総会の議事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議事録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発起人(株式会社の成立後にあっては、当該株式会社。次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は、創立総会の日から十年間、前項の議事録を発起人が定めた場所(株式会社の成立後にあっては、その本店。同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제77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설립시 주주는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창립총회일의 3일전까지 발기인에게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발기인은 전항의 설립시 주주가 타인을 위하여 설립시발행주식을 인수한 자가 아닌 때에는 설립시 주주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제78조 발기인의 설명의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설립시 주주로부터 특정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창립총회의 목적사항과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그 설명으로 인하여 설립시 주주의 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 의장의 권한

- ① 창립총회의 의장은 창립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 ② 창립총회의 의장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기타 창립총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퇴장 시킬 수 있다.

제80조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창립총회에서 그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결의를 한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1조 의사록

- ①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발기인(주식회사의 성립 후에는 당해 주식회사. 다음 조 제2항에서 같다)은 창립총회일로부터 10년간 전항의 의사록을 발기인이 정한 장소(주식회사의 성립 후에는 그 본점. 동조 제2항에서 같다)에 비치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3 設立時株主(株式会社の成立後にあつては、その株主及び債権者。次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は、発起人が定めた時間(株式会社の成立後にあつては、その営業時間。同項において同じ。)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第一項の議事録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二 第一項の議事録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4 株式会社の成立後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社員は、そ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第一項の議事録について前項各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82条 創立総会の決議の省略

1 発起人が創立総会の目的である事項について提案を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提案につき設立時株主(当該事項につ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る。)の全員が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より同意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当該提案を可決する旨の創立総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す。

2 発起人は、前項の規定により創立総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日から十年間、同項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発起人が定めた場所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設立時株主は、発起人が定めた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前項の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二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4 株式会社の成立後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社員は、そ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第二項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ついて前項各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83条 創立総会への報告の省略

発起人が設立時株主の全員に対して創立総会に報告すべき事項を通知した場

③ 설립시 주주(주식회사의 성립 후에는 그 주주 및 채권자. 다음 조 제3항에서 같다)는 발기인이 정한 시간(주식회사의 성립 후에는 그 영업시간. 동항에서 같다)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항의 의사록이 서면으로 작성된 때에는 당해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제1항의 의사록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때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④ 주식회사의 성립 후 주식회사의 모회사 사원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의사록에 관하여 전항 각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82조 창립총회결의의 생략

①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제안을 한 경우 제안에 관하여 설립시 주주(당해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설립시 주주에 한한다) 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하여 동회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해 제안을 가결하는 뜻의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발기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날로부터 10년간 동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발기인이 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설립시 주주는 발기인이 정한 시간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전항의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④ 주식회사의 성립 후에 주식회사의 모회사 사원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관하여 전항 각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83조 창립총회에 대한 보고의 생략

발기인이 설립시 주주의 전원에게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통지한 경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合において、当該事項を創立総会に報告することを要しないことにつき設立時株主の全員が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より同意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当該事項の創立総会への報告があったものとみなす。

第84条 種類株主総会の決議を必要とする旨の定めがある場合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設立に際して発行するある種類の株式の内容として、株主総会において決議すべき事項について、当該決議のほか、当該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の決議があることを必要とする旨の定めがあるときは、当該事項は、その定款の定め例に従い、創立総会の決議のほか、当該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の設立時種類株主(ある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の設立時株主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を構成員とする種類創立総会(ある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の設立時種類株主の総会をいう。以下同じ。)の決議が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ただし、当該種類創立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設立時種類株主が存し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85条 種類創立総会の招集及び決議

- 1 前条、第九十条第一項(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九十二条第一項(同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百条第一項又は第百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種類創立総会の決議をする場合には、発起人は、種類創立総会を招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種類創立総会の決議は、当該種類創立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設立時種類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であって、出席した当該設立時種類株主の議決権の三分の二以上に当たる多数をもって行う。
-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百条第一項の決議は、同項に規定する種類創立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設立時種類株主の半数以上であって、当該設立時種類株主の議決権の三分の二以上に当たる多数をもっ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86条 創立総会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六十七条から第七十一条まで、第七十二条第一項及び第七十四条から第八十

우 당해 사항을 창립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하는 것에 관하여 설립시 주주 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해 사항을 창립총회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84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뜻의 규정이 있는 경우

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 그 설립시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내용으로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당해 결의 외에 종류주식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뜻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항은 그 정관의 규정 예에 따라 창립총회의 결의 외에 종류설립시발행주식의 설립시 종류주주(어느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의 설립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창립총회(어느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의 설립시 종류주주의 총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가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종류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설립시 종류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 종류창립총회의 소집 및 결의

- ① 전조 제90조 제1항(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1항(동조 제4항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0조 제1항 또는 제101조 제1항에 의하여 종류창립총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종류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② 종류창립총회의 결의는 당해 종류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설립시 종류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출석한 설립시 종류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 제1항의 결의는 동항의 종류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설립시 종류주주의 반수 이상으로서 당해 설립시 종류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제86조 창립총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7조 내지 제71조, 제72조 제1항 및 제74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은 종류창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二条までの規定は、種類創立総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六十七条第一項第三号及び第四号並びに第二項、第六十八条第一項及び第三項、第六十九条から第七十一条まで、第七十二条第一項、第七十四条第一項、第三項及び第四項、第七十五条第二項、第七十六条第二項及び第三項、第七十七条、第七十八条本文並びに第八十二条第一項中「設立時株主」とあるのは、「設立時種類株主(ある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の設立時株主をいう。)」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3款 設立に関する事項の報告

第87条

- 1 発起人は、株式会社の設立に関する事項を創立総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発起人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創立総会に提出し、又は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定款に第二十八条各号に掲げる事項(第三十三条第十項各号に掲げる場合における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を除く。)の定めがある場合 第三十三条第二項の検査役の同条第四項の報告の内容
 - 二 第三十三条第十項第三号に掲げる場合 同号に規定する証明の内容

第4款 設立時取締役等の選任及び解任

第88条 設立時取締役等の選任

- 1 第五十七条第一項の募集をする場合には、設立時取締役、設立時会計参与、設立時監査役又は設立時会計監査人の選任は、創立総会の決議によっ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2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は、前項の規定による設立時取締役の選任は、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時取締役とそれ以外の設立時取締役とを区別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89条 累積投票による設立時取締役の選任

- 1 創立総会の目的である事項が二人以上の設立時取締役(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

립총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2항, 제68조 제1항 및 제3항,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2조 제1항, 제74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2항 및 제3항, 제77조, 제78조 본문 및 제82조 제1항 중 “설립시 주주”는 “설립시 종류주주(어느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의 설립시 주주를 말한다)”로 본다.

제3관 설립에 관한 사항의 보고

제87조

- ①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 또는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창립총회에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에 제28조 각호의 사항(제33조 제10항 각호의 경우에는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규정한 경우 : 제33조 제2항의 감사인의 동조 제4항의 보고 내용
 2. 제33조 제10항 제3호의 경우 : 동호의 증명내용

제4관 설립시 이사등의 선임 및 해임

제88조 설립시 이사등의 선임

- ① 제57조 제1항의 모집을 하는 경우 설립시 이사, 설립시 회계참여, 설립시 감사 또는 설립시 회계감사인의 선임은 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 ②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가 감사등위원회 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전항에 의한 설립시이사의 선임은 설립시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와 그 이외의 설립시이사를 구별하여 하여야 한다.

제89조 누적투표에 의한 설립시 이사의 선임

- ① 창립총회의 목적 사항이 2명 이상의 설립시이사(설립하고자 하는 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설립시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 또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時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設立時取締役。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選任である場合には、設立時株主(設立時取締役の選任につ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設立時株主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は、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ときを除き、発起人に対し、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に規定するところにより設立時取締役を選任すべき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は、同項の創立総会の日の五日前まで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七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場合には、設立時取締役の選任の決議については、設立時株主は、その引き受けた設立時発行株式一株(単元株式数を定款で定め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一単元の設立時発行株式)につき、当該創立総会において選任する設立時取締役の数と同数の議決権を有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設立時株主は、一人のみに投票し、又は二人以上に投票して、その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場合には、投票の最多数を得た者から順次設立時取締役に選任されたものとする。

5 前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設立時取締役の選任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第90条 種類創立総会の決議による設立時取締役等の選任

1 第八十八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式会社の設立に際して第百八条第一項第九号に掲げる事項(取締役(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に関するものに限る。))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種類の株式を発行する場合には、設立時取締役(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時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設立時取締役)は、同条第二項第九号に定める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例に従い、当該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の設立時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創立総会の決議によって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は、株式会社の設立に際して第百八条第一項第九号に掲げる事項(監査役に関するものに限る。))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種類の株式を発行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는 그 이외의 설립시이사.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의 선임인 경우에는 설립시주주(설립시이사의 선임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설립시주주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는 정관에 별단의 정함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발기인에 대해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는 창립총회일의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설립시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설립시 주주는 그 인수한 설립시발행주식 1주(단원주식수를 정관으로 정한 때에는 1단원의 설립시발행주식)에 관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설립시 이사의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보유한다. 이 경우 설립시 주주는 설립시 이사 후보자 1인에게만 투표하거나 2인 이상에게 투표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설립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 전2항의 규정 외에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설립시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0조 종류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한 설립시 이사등의 선임

① 제88조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설립시 제108조 제1항 제9호의 사항(이사(설립하려고 하는 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이외의 이사)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정함이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설립시이사(설립하려고 하는 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 설립시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 또는 그 이외의 설립시이사)는 동조 제2항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정관의 정함의 예에 따라 당해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의 설립시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창립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설립시 제108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사항(감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정함이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第91条 設立時取締役等の解任

第八十八条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設立時取締役、設立時会計参与、設立時監査役又は設立時会計監査人は、株式会社の成立の時までの間、創立総会の決議によって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92条

1 第九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設立時取締役は、株式会社の成立の時までの間、その選任に係る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の設立時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創立総会の決議によって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又は種類創立総会若しくは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選任された取締役を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第九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設立時取締役は、株式会社の成立の時までの間、創立総会の決議によって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3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取締役を」とあるの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を」と、「設立時取締役」とあるのは「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時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設立時取締役」とする。

4 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は、第九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設立時監査役について準用する。

第5款 設立時取締役等による調査

第93条 設立時取締役等による調査

1 設立時取締役(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役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設立時取締役及び設立時監査役。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は、その選任後遅滞なく、次に掲げる事項を調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三十三条第十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場合における現物出資財産等(同号に掲げる場合にあっては、同号の有価証券に限る。)について定款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価額が相当であること。

二 第三十三条第十項第三号に規定する証明が相当であること。

제91조 설립시 이사등의 해임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설립시 이사, 설립시 회계참여, 설립시 감사 또는 설립시 회계감사인인 주식회사의 성립시까지 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92조

①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설립시 이사는 주식회사의 성립시까지 그 선임과 관련된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의 설립시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거나 종류창립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를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는 뜻의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설립시 이사는 주식회사의 성립시까지 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③ 설립하고자 하는 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 전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이사를”은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이외의 이사를”로, “설립시이사”는 “설립시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 또는 그 이외의 설립시이사”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제9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설립시감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5관 설립시 이사등에 의한 조사

제93조 설립시 이사등에 의한 조사

① 설립시 이사(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감사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설립시 이사 및 설립시 감사.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선임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제33조 제10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현물출자재산등(동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호의 유가증권에 한한다)에 관하여 정관에 기재 또는 기록된 가액이 상당한지 여부
2. 제33조 제10항 제3호의 증명이 상당한지 여부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三 発起人による出資の履行及び第六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払込みが完了していること。

四 前三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株式会社の設立の手続が法令又は定款に違反していないこと。

2 設立時取締役は、前項の規定による調査の結果を創立総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設立時取締役は、創立総会において、設立時株主から第一項の規定による調査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説明を求められた場合には、当該事項について必要な説明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94条 設立時取締役等が発起人である場合の特則

1 設立時取締役(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役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設立時取締役及び設立時監査役)の全部又は一部が発起人である場合には、創立総会においては、その決議によって、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調査する者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者は、必要な調査を行い、当該調査の結果を創立総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6款 定款の変更

第95条 発起人による定款の変更の禁止

第五十七条第一項の募集をする場合には、発起人は、第五十八条第一項第三号の期日又は同号の期間の初日のうち最も早い日以後は、第三十三条第九項並びに第三十七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定款の変更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96条 創立総会における定款の変更

第三十条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創立総会においては、その決議によって、定款の変更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발기인에 의한 출자의 이행 및 제63조 제1항의 납입이 완료되어 있는지 여부
 4. 전3호의 사항 외에 주식회사의 설립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② 설립시 이사는 전항의 조사 결과를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설립시 이사는 창립총회에 있어서 설립시 주주로부터 제1항의 조사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94조 설립시 이사등이 발기인인 경우의 특칙

- ① 설립시 이사(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감사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설립시 이사 및 설립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기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결의에 의하여 전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관 정관의 변경

제95조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변경 금지

제57조 제1항의 모집을 하는 경우 발기인은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기일 또는 동호의 기간의 초일 중 가장 빠른 날 이후에는 제33조 제9항,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변경을 할 수 없다.

제96조 창립총회에서의 정관의 변경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는 그 결의에 의하여 정관의 변경을 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第97条 設立時発行株式の引受けの取消し

創立総会において、第二十八条各号に掲げる事項を変更する定款の変更の決議をした場合には、当該創立総会においてその変更に反対した設立時株主は、当該決議後二週間以内に限り、その設立時発行株式の引受けに係る意思表示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第98条 創立総会の決議による発行可能株式総数の定め

第五十七条第一項の募集をする場合において、発行可能株式総数を定款で定めていないときは、株式会社の成立の時までに、創立総会の決議によって、定款を変更して発行可能株式総数の定めを設けなければならない。

第99条 定款の変更の手続の特則

設立しようとする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ときは、当該各号の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の設立時種類株主全員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ある種類の株式の内容として第百八条第一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を設け、又は当該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変更(当該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ものを除く。)をしようとするとき。
- 二 ある種類の株式について第三百二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を設けようとするとき。

第100条

1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定款を変更してある種類の株式の内容として第百八条第一項第四号又は第七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を設けるときは、当該定款の変更は、次に掲げる設立時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創立総会(当該設立時種類株主に係る設立時発行株式の種類が二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二以上の設立時発行株式の種類別に区分された設立時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各種類創立総会。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決議が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ただし、当該種類創立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設立時種類株主が存し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제97조 설립시발행주식의 인수의 취소

창립총회에서 제28조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 창립총회에서 그 변경에 반대한 설립시 주주는 당해 결의 후 2주간 내에 그 설립시발행주식의 인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98조 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한 발행가능주식총수의 결정

제57조 제1항의 모집을 하는 경우 발행가능주식총수를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회사의 성립시까지 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발행가능주식총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99조 정관변경 절차의 특칙

설립하려는 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호의 종류설립시발행주식의 설립시 종류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어느 종류주식의 내용으로서 제108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거나 당해 사항에 관한 정관의 변경(당해 사항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폐지 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하려는 경우
2. 어느 종류주식에 관하여 제3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00조

① 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 있어서 정관을 변경하여 어느 종류주식의 내용으로서 제108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의 사항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당해 정관의 변경은 다음의 설립시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창립총회(설립시 종류주주의 설립시발행주식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의 설립시발행주식의 종류별로 구분된 설립시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각 창립총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결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종류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설립시 종류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 一 当該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の設立時種類株主
 - 二 第百八条第二項第五号口の他の株式を当該種類の株式とする定めがある取得請求権付株式の設立時種類株主
 - 三 第百八条第二項第六号口の他の株式を当該種類の株式とする定めがある取得条項付株式の設立時種類株主
- 2 前項に規定する種類創立総会において当該定款の変更に反対した設立時種類株主は、当該種類創立総会の決議後二週間以内に限り、その設立時発行株式の引受けに係る意思表示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第101条

1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変更をすることにより、ある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の設立時種類株主に損害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ときは、当該定款の変更は、当該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の設立時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創立総会(当該設立時種類株主に係る設立時発行株式の種類が二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二以上の設立時発行株式の種類別に区分された設立時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各種類創立総会)の決議が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ただし、当該種類創立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設立時種類株主が存し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株式の種類の追加
 - 二 株式の内容の変更
 - 三 発行可能株式総数又は発行可能種類株式総数(株式会社が発行することができる一の種類の株式の総数をいう。以下同じ。)の増加
- 2 前項の規定は、単元株式数についての定款の変更であって、当該定款の変更について第三百二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種類の設立時発行株式の設立時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創立総会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1. 당해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의 설립시 종류주주
 2. 제108조 제2항 제5호 나목의 다른 주식을 당해 종류주식으로 하는 규정이 있는 취득청구권부주식의 설립시 종류주주
 3. 제108조 제2항 제6호 나목의 다른 주식을 당해 종류주식으로 하는 규정이 있는 취득조항부주식의 설립시 종류주주
- ② 전항의 종류창립총회에서 정관의 변경에 반대한 설립시 종류주주는 종류창립총회의 결의 후 2주 이내에 그 설립시발행주식의 인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1조

① 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함으로써 어느 종류설립시발행주식의 설립시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정관의 변경은 종류설립시발행주식의 설립시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창립총회(설립시 종류주주의 설립시발행주식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의 설립시발행주식의 종류별로 구분된 설립시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각 창립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종류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설립시 종류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의 종류 추가
 2. 주식의 내용 변경
 3. 발행가능주식총수 또는 발행가능종류주식총수(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하나의 종류주식의 총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
- ② 전항의 규정은 단원주식수에 관한 정관의 변경으로서 정관의 변경에 관하여 제322조 제2항에 따른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의 당해 종류의 설립시발행주식의 설립시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第7款 設立手続等の特則等

第102条 設立手続等の特則

- 1 設立時募集株式の引受人は、発起人が定めた時間内は、いつでも、第三十一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同項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発起人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 2 設立時募集株式の引受人は、株式会社の成立の時に、第六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払込みを行った設立時発行株式の株主となる。
- 3 設立時募集株式の引受人は、第六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払込みを仮装した場合には、次条第一項又は第百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支払がされた後でなければ、払込みを仮装した設立時発行株式について、設立時株主及び株主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 4 前項の設立時発行株式又はその株主となる権利を譲り受けた者は、当該設立時発行株式についての設立時株主及び株主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者に悪意又は重大な過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5 民法第九十三条ただし書及び第九十四条第一項の規定は、設立時募集株式の引受けの申込み及び割当て並びに第六十一条の契約に係る意思表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 6 設立時募集株式の引受人は、株式会社の成立後又は創立総会若しくは種類創立総会においてその議決権を行使した後は、錯誤を理由として設立時発行株式の引受けの無効を主張し、又は詐欺若しくは強迫を理由として設立時発行株式の引受けの取消し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102条の2 払込みを仮装した設立時募集株式の引受人の責任

- 1 設立時募集株式の引受人は、前条第三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式会社に対し、払込みを仮装した払込金額の全額の支払をする義務を負う。
- 2 前項の規定により設立時募集株式の引受人の負う義務は、総株主の同意がなければ、免除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103条 発起人の責任等

- 1 第五十七条第一項の募集をした場合における第五十二条第二項の規定の適

제7관 설립절차등의 특칙 등

제102조 설립절차등의 특칙

- ① 설립시모집주식의 인수인은 발기인이 정한 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31조 제2항 각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동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발기인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설립시모집주식의 인수인은 주식회사의 성립시에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함으로써 설립시발행주식의 주주가 된다.
- ③ 설립시모집주식의 인수인은 제63조 제1항의 납입을 가장한 경우에는 다음 조 제1항 또는 제103조 제2항의 지급이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납입을 가장한 설립시발행주식에 관하여 설립시주주 및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④ 전항의 설립시발행주식 또는 그 주주가 될 권리를 양수한 자는 설립시발행주식에 관한 설립시주주 및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민법 제93조 단서 및 제94조 제1항은 설립시모집주식의 인수청약, 배정 및 제61조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⑥ 설립시모집주식의 인수인은 주식회사 성립 후 또는 창립총회 혹은 종류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설립시발행주식의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혹은 강박을 이유로 설립시발행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

제102조의 2 납입을 가장한 설립시모집주식의 인수인의 책임

- ① 설립시모집주식의 인수인은 전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납입을 가장한 납입금액 전액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 ② 전항에 의해 설립시모집주식의 인수인이 지는 의무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할 수 없다.

제103조 발기인의 책임 등

- ① 제57조 제1항의 모집을 한 경우에 있어서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用については、同項中「次に」とあるのは、「第一号に」とする。

2 第百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払込みを仮装することに関与した発起人又は設立時取締役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者は、株式会社に対し、前条第一項の引受人と連帯して、同項に規定する支払をする義務を負う。ただし、その者(当該払込みを仮装したものを除く。)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3 前項の規定により発起人又は設立時取締役の負う義務は、総株主の同意がなければ、免除することができない。

4 第五十七条第一項の募集を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募集の広告その他当該募集に関する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自己の氏名又は名称及び株式会社の設立を賛助する旨を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を承諾した者(発起人を除く。)は、発起人とみなして、前節及び前三項の規定を適用する。

第2章 株式

第1節 総則

第104条 株主の責任

株主の責任は、その有する株式の引受価額を限度とする。

第105条 株主の権利

1 株主は、その有する株式につき次に掲げる権利その他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認められた権利を有する。

- 一 剰余金の配当を受ける権利
- 二 残余財産の分配を受ける権利
- 三 株主総会における議決権

2 株主に前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権利の全部を与えない旨の定款の定めは、その効力を有しない。

있어서는 동항 중 “다음의”는 “제1호의”로 본다.

② 제102조 제3항의 경우에는 납입을 가장하는 것에 관여한 발기인 또는 설립 시 이사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는 주식회사에 대해 전조 제1항의 인수인과 연대하여 동항의 지급 의무를 진다. 다만 그 자(납입을 가장한 자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항에 의하여 발기인 또는 설립시이사가 지는 의무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할 수 없다.

④ 제57조 제1항의 모집을 한 경우 모집의 광고, 그외 당해 모집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 및 회사의 설립에 찬조 하는 뜻을 기재하거나 기록하는 것을 승낙한 자(발기인은 제외한다)는 발기인으로 간주하여 전절 및 전 3항을 적용한다.

제2장 주식

제1절 총칙

제104조 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보유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105조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그가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권리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가진다.

1.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
2.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
3. 주주총회 의결권

② 주주에게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권리의 전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정관의 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第106条 共有者による権利の行使

株式が二以上の者の共有に属するときは、共有者は、当該株式についての権利を行使する者一人を定め、株式会社に対し、その者の氏名又は名称を通知しなければ、当該株式について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株式会社が当該権利を行使することに同意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107条 株式の内容についての特別の定め

株式会社は、その発行する全部の株式の内容とし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一 譲渡による当該株式の取得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の承認を要すること。
- 二 当該株式について、株主が当該株式会社に対してその取得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
- 三 当該株式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が一定の事由が生じたことを条件としてこれ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

2 株式会社は、全部の株式の内容として次の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ときは、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を定款で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譲渡による当該株式の取得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の承認を要すること 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株式を譲渡により取得すること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の承認を要する旨

ロ 一定の場合においては株式会社が第百三十六条又は第百三十七条第一項の承認をしたものとみなす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一定の場合

- 二 当該株式について、株主が当該株式会社に対してその取得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 次に掲げる事項

イ 株主が当該株式会社に対して当該株主の有する株式を取得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旨

ロ イの株式一株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株主に対して当該株式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ものを除く。)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社債の種類(第六百八十一条第一号に規定する種類をいう。以下この編において同じ。)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ハ イの株式一株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株主に対して当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を交付するときは、

제106조 공유자에 의한 권리행사

주식이 2인 이상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 공유자는 당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 주식회사에 그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주식회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 주식의 내용에 관한 특별한 정함

① 주식회사는 발행하는 모든 주식의 내용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양도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승인을 요하는 것
2.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주식회사에 대해 그 취득을 청구할 수 있는 것
3. 주식에 관하여 주식회사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것

② 주식회사는 모든 주식의 내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해당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양도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승인을 요하는 것 : 다음의 사항

가. 주식을 양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뜻

나. 일정한 경우 주식회사가 제136조 또는 제137조 제1항의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뜻과 당해 일정한 경우

2.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주식회사에 그 취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 다음의 사항

가. 주주가 주식회사에 당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나. 가목의 주식 1주의 취득과 교환하여 주주에게 주식회사의 사채(신주에 약권부사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채의 종류(제681조 제1호에 규정한 종류를 말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 및 종류별 각 사채 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다. 가목의 주식 1주의 취득과 교환하여 주주에게 주식회사의 신주에 약권(신주에 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을 제외한다)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주에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当該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又はその算定方法

ニ イの株式一株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株主に対して当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付社債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ロに規定する事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ハに規定する事項

ホ イの株式一株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株主に対して当該株式会社の株式等(株式、社債及び新株予約権をいう。以下同じ。)以外の財産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財産の内容及び数若しくは額又はこれらの算定方法

ヘ 株主が当該株式会社に対して当該株式を取得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

三 当該株式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が一定の事由が生じたことを条件としてこれ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 次に掲げる事項

イ 一定の事由が生じた日に当該株式会社がその株式を取得する旨及びその事由

ロ 当該株式会社が別に定める日が到来することをもってイの事由とするときは、その旨

ハ イの事由が生じた日にイの株式の一部を取得す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取得する株式の一部の決定の方法

ニ イの株式一株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株主に対して当該株式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ものを除く。)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ホ イの株式一株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株主に対して当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又はその算定方法

ヘ イの株式一株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株主に対して当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付社債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ニに規定する事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ホに規定する事項

ト イの株式一株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株主に対して当該株式会社の株式等以外の財産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財産の内容及び数若しくは額又はこれらの算定方法

약권의 내용, 수 또는 그 산정방법

라. 가목의 주식 1주의 취득과 교환하여 주주에게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 부사채를 교부하는 때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하여 나목의 사항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한 다목의 사항

마. 가목의 주식 1주의 취득과 교환으로 주주에게 주식회사의 주식등(주식, 사채 및 신주예약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재산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내용, 수, 금액 및 산정방법

바. 주주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취득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3. 주식에 관하여 주식회사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 : 다음의 사항

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에 주식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는 뜻과 그 사유
나. 주식회사가 특정일이 도래하는 것을 가목의 사유로 하는 때에는 그 뜻

다. 가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가목의 주식 일부를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과 취득할 주식 일부의 결정방법

라. 가목의 주식 1주의 취득과 교환하여 주주에게 주식회사의 사채(신주예약권 부사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채의 종류 및 종류별 각 사채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마. 가목의 주식 1주의 취득과 교환하여 주주에게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신주 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을 제외한다)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주예약권의 내용, 수 또는 그 산정방법

바. 가목의 주식 1주의 취득과 교환하여 주주에게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 부사채를 교부하는 때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하여 라목의 사항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한 다목의 사항

사. 가목의 주식 1주의 취득과 교환하여 주주에게 주식회사의 주식등 이외의 재산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내용, 수, 금액 및 산정방법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第108条 異なる種類の株式

1 株式会社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異なる定めをした内容の異なる二以上の種類の株式を発行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及び公開会社は、第九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種類の株式を発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剰余金の配当
- 二 残余財産の分配
- 三 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
- 四 譲渡による当該種類の株式の取得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の承認を要すること。
- 五 当該種類の株式について、株主が当該株式会社に対してその取得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
- 六 当該種類の株式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が一定の事由が生じたことを条件としてこれ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
- 七 当該種類の株式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が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その全部を取得すること。
- 八 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株主総会又は取締役会、清算人会設置会社（第四百七十八条第八項に規定する清算人会設置会社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あつては株主総会又は清算人会）において決議すべき事項のうち、当該決議のほか、当該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の決議があることを必要とするもの
- 九 当該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次項第九号及び第一百十二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又は監査役を選任すること。

2 株式会社は、次の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内容の異なる二以上の種類の株式を発行す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及び発行可能種類株式総数を定款で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剰余金の配当 当該種類の株主に交付する配当財産の価額の決定の方法、剰余金の配当をする条件その他剰余金の配当に関する取扱いの内容
- 二 残余財産の分配 当該種類の株主に交付する残余財産の価額の決定の方法、当該残余財産の種類その他残余財産の分配に関する取扱いの内容

제108조 다른 종류주식

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관해 다른 정함을 한 내용이 다른 2이상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 및 공개회사는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1. 잉여금의 배당
 2. 잔여재산의 분배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
 4. 양도에 의한 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승인을 요하는 것
 5. 종류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주식회사에 그 취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6. 종류주식에 관하여 주식회사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이를 취득 할 수 있다는 것
 7. 종류주식에 관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그 전부를 취득하는 것
 8.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청산인회설치회사(제478조 제8항의 청산인회설치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결의하여야 할 사항 가운데 당해 결의 외에 종류주식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
 9. 종류주식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이외의 이사. 다음 항 제9호 및 제112조 제1항에서 같다) 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것
- ② 주식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2이상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 및 발행가능종류주식총수를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1. 잉여금의 배당 : 종류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잉여금의 배당을 하는 조건 그 밖에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취급내용
 2. 잔여재산의 분배 : 종류주주에게 교부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잔여 재산의 종류 그 밖에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취급내용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 三 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 次に掲げる事項
 - イ 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
 - ロ 当該種類の株式につき議決権の行使の条件を定めるときは、その条件
- 四 譲渡による当該種類の株式の取得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の承認を要すること 当該種類の株式についての前条第二項第一号に定める事項
- 五 当該種類の株式について、株主が当該株式会社に対してその取得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 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種類の株式についての前条第二項第二号に定める事項
 - ロ 当該種類の株式一株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株主に対して当該株式会社の他の株式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他の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又はその算定方法
- 六 当該種類の株式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が一定の事由が生じたことを条件としてこれ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 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種類の株式についての前条第二項第三号に定める事項
 - ロ 当該種類の株式一株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株主に対して当該株式会社の他の株式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他の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又はその算定方法
- 七 当該種類の株式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が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その全部を取得すること 次に掲げる事項
 - イ 第一百七十一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取得対価の価額の決定の方法
 - ロ 当該株主総会の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か否かについての条件を定めるときは、その条件
- 八 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株主総会又は取締役会、清算人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株主総会又は清算人会)において決議すべき事項のうち、当該決議のほか、当該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の決議があることを必要とするもの 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種類株主総会の決議があることを必要とする事項
 - ロ 当該種類株主総会の決議を必要とする条件を定めるときは、その条件
- 九 当該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取締役又は監査役を選任すること 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取締役又は監査役を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 : 다음의 사항
 - 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
 - 나. 종류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의 조건을 정한 때에는 그 조건
4. 양도에 의한 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승인을 요하는 것 : 종류주식에 관하여 전조 제2항 제1호의 사항
5. 종류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주식회사에 그 취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 다음의 사항
 - 가. 종류주식에 관하여 전조 제2항 제2호의 사항
 - 나. 종류주식 1주의 취득과 교환하여 주주에게 주식회사의 다른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다른 주식의 종류, 종류별 수 또는 그 산정방법
6. 종류주식에 관하여 주식회사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이를 취득 할 수 있다는 것 : 다음의 사항
 - 가. 종류주식에 관하여 전조 제2항 제3호의 사항
 - 나. 종류주식 1주의 취득과 상환하여 주주에게 주식회사의 다른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다른 주식의 종류, 종류별 수 또는 그 산정방법
7. 종류주식에 관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그 전부를 취득하는 것 : 다음의 사항
 - 가. 제171조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의 결정방법
 - 나. 주주총회결의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조건을 정한 때에는 그 조건
8.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청산인회설치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결의하여야 할 사항 중 당해 결의 외에 종류주식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 : 다음의 사항
 - 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 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조건을 정한 때에는 그 조건
9. 종류주식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것 : 다음의 사항
 - 가.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選任すること及び選任する取締役又は監査役の数

ロ イの定めにより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取締役又は監査役の全部又は一部を他の種類株主と共同して選任することとするときは、当該他の種類株主の有する株式の種類及び共同して選任する取締役又は監査役の数

ハ イ又はロに掲げる事項を変更する条件があるときは、その条件及びその条件が成就した場合における変更後のイ又はロに掲げる事項

ニ 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各号に定める事項(剰余金の配当について内容の異なる種類の種類株主が配当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額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に限る。)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は、当該種類の株式を初めて発行する時までに、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株主総会又は取締役会、清算人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株主総会又は清算人会)の決議によって定める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内容の要綱を定款で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109条 株主の平等

1 株式会社は、株主を、その有する株式の内容及び数に応じて、平等に取り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公開会社でない株式会社は、第百五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権利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株主ごとに異なる取扱いを行う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同項の株主が有する株式を同項の権利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内容の異なる種類の株式とみなして、この編及び第五編の規定を適用する。

第110条 定款の変更のの特則

定款を変更してその発行する全部の株式の内容として第百七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を設け、又は当該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変更(当該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ものを除く。)をしようとする場合(株式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を除く。)には、株主全員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하는 것 및 선임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수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는 이사 또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종류주주와 공동으로 선임하는 때에는 다른 종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공동으로 선임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수

다. 가목 또는 나목 사항을 변경하는 조건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및 그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있어서 변경 후의 가목 또는 나목의 사항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 각호의 사항(잉여금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종류주주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 기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는 종류주식을 처음 발행할 때까지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청산인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는 뜻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의 요강을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제109조 주주의 평등

① 주식회사는 주주를 그가 보유한 주식의 내용 및 수에 따라 평등하게 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는 제105조 제1항 각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주주마다 다르게 취급한다는 뜻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항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동항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으로 간주하여 이 편 및 제5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0조 정관의 변경절차의 특칙

정관을 변경하여 그 발행하는 모든 주식의 내용으로서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을 두거나 당해 사항에 관하여 정관의 변경(당해 사항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경우(주식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第111条

1 種類株式発行会社がある種類の株式の発行後に定款を変更して当該種類の株式の内容として第百八条第一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を設け、又は当該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変更(当該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ものを除く。)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種類の株式を有する株主全員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2 種類株式発行会社がある種類の株式の内容として第百八条第一項第四号又は第七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を設ける場合には、当該定款の変更は、次に掲げる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当該種類株主に係る株式の種類が二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二以上の株式の種類別に区分された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各種別株主総会。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決議が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ただし、当該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種類株主が存し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当該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

二 第百八条第二項第五号ロの他の株式を当該種類の株式とする定めがある取得請求権付株式の種類株主

三 第百八条第二項第六号ロの他の株式を当該種類の株式とする定めがある取得条項付株式の種類株主

第112条 取締役の選任等に関する種類株式の定款の定め廃止の特則

1 第百八条第二項第九号に掲げる事項(取締役に関するものに限る。)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は、この法律又は定款で定めた取締役の員数を欠いた場合において、そのために当該員数に足りる数の取締役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廃止されたものとみなす。

2 前項の規定は、第百八条第二項第九号に掲げる事項(監査役に関するものに限る。)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について準用する。

第113条 発行可能株式総数

1 株式会社は、定款を変更して発行可能株式総数についての定めを廃止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111조

① 종류주식발행회사가 어느 종류주식의 발행 후 정관을 변경하여 종류주식의 내용으로서 제108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을 정관에 정하거나 당해 사항에 관한 정관의 변경(당해 사항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당해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종류주식발행회사가 어느 종류주식의 내용으로서 제108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당해 정관의 변경은 다음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종류주주의 주식의 종류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이상의 주식의 종류별로 구분된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각 종류주주총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결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종류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류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류주식의 종류주주
2. 제108조 제2항 제5호 나목의 다른 주식을 당해 종류주식으로 하는 정함이 있는 취득청구권부주식의 종류주주
3. 제108조 제2항 제6호 나목의 다른 주식을 당해 종류주식으로 하는 정함이 있는 취득조항부주식의 종류주주

제112조 이사의 선임등에 관한 종류주식의 정관 규정의 폐지의 특칙

① 제108조 제2항 제9호의 사항(이사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원수를 만족하는 수의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108조 제2항 제9호의 사항(감사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13조 발행가능주식총수

① 주식회사는 정관을 변경하여 발행가능주식총수에 대한 규정을 폐지할 수 없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2 定款を変更して発行可能株式総数を減少するときは、変更後の発行可能株式総数は、当該定款の変更が効力を生じた時における発行済株式の総数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3 次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定款の変更後の発行可能株式総数は、当該定款の変更が効力を生じた時における発行済株式の総数の四倍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

一 公開会社が定款を変更して発行可能株式総数を増加する場合

二 公開会社でない株式会社が定款を変更して公開会社となる場合

4 新株予約権(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四号の期間の初日が到来していないものを除く。)の新株予約権者が第二百八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取得することとなる株式の数は、発行可能株式総数から発行済株式(自己株式(株式会社が有する自己の株式をいう。以下同じ。)を除く。)の総数を控除して得た数を超えてはならない。

第114条 発行可能種類株式総数

1 定款を変更してある種類の株式の発行可能種類株式総数を減少するときは、変更後の当該種類の株式の発行可能種類株式総数は、当該定款の変更が効力を生じた時における当該種類の発行済株式の総数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2 ある種類の株式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数の合計数は、当該種類の株式の発行可能種類株式総数から当該種類の発行済株式(自己株式を除く。)の総数を控除して得た数を超えてはならない。

一 取得請求権付株式(第百七条第二項第二号への期間の初日が到来していないものを除く。)の株主(当該株式会社を除く。)が第百六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取得することとなる同項第四号に規定する他の株式の数

二 取得条項付株式の株主(当該株式会社を除く。)が第百七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取得することとなる同項第四号に規定する他の株式の数

三 新株予約権(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四号の期間の初日が到来していないものを除く。)の新株予約権者が第二百八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取得することとなる株式の数

② 정관을 변경하여 발행가능주식총수가 감소하는 때에는 변경 후 발행가능주식총수가 정관의 변경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총수를 밑돌 수 없다

③ 다음 경우에는 정관변경 후의 발행가능주식총수는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때의 발행주식총수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공개회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발행가능 주식총수를 증가하는 경우
2. 공개회사가 아닌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공개회사가 되는 경우

④ 신주예약권(제236조 제1항 제4호의 기간의 초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의 신주예약권자가 제282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수는 발행가능 주식총수로부터 기발행주식(자기주식(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의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의 총수를 공제하여 얻은 수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114조 발행가능종류주식 총수

① 정관을 변경하여 어느 종류주식의 발행가능종류주식총수가 감소하는 때에는 변경 후 종류주식의 발행가능종류주식총수가 당해 정관의 변경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 있어서 당해 종류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밑돌 수 없다.

② 어느 종류주식에 관한 다음의 수의 합은 종류주식의 발행가능종류주식총수로부터 당해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을 제외한다)를 공제하여 얻은 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1. 취득청구권부주식(제107조 제2항 제2호의 기간의 초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주주(당해 주식회사는 제외한다)가 제1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되는 동항 제4호의 다른 주식의 수
2. 취득조항부주식의 주주(해당 주식회사는 제외한다)가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되는 동항 제4호의 다른 주식의 수
3. 신주예약권(제236조 제1항 제4호의 기간의 초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의 신주예약권자가 제282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수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第115条 議決権制限株式の発行数

種類株式発行会社が公開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について制限のある種類の株式(以下この条において「議決権制限株式」という。)の数が発行済株式の総数の二分の一を超えるに至ったときは、株式会社は、直ちに、議決権制限株式の数を発行済株式の総数の二分の一以下にするための必要な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第116条 反対株主の株式買取請求

1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反対株主は、株式会社に対し、自己の有する当該各号に定める株式を公正な価格で買い取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一 その発行する全部の株式の内容として第一百七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を設ける定款の変更をする場合 全部の株式

二 ある種類の株式の内容として第百八条第一項第四号又は第七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を設ける定款の変更をする場合 第百十一条第二項各号に規定する株式

三 次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おいて、ある種類の株式(第三百二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があるものに限る。)を有する種類株主に損害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とき 当該種類の株式

イ 株式の併合又は株式の分割

ロ 第百八十五条に規定する株式無償割当て

ハ 単元株式数についての定款の変更

ニ 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第二百二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ものに限る。)

ホ 当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第二百四十一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ものに限る。)

ヘ 第二百七十七条に規定する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

2 前項に規定する「反対株主」と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おける当該各号に定める株主をいう。

一 前項各号の行為をするために株主総会(種類株主総会を含む。)の決議を要する場合 次に掲げる株主

イ 当該株主総会に先立って当該行為に反対する旨を当該株式会社に対し通

제115조 의결권제한주식의 발행수

종류주식발행회사가 공개회사인 경우에 있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의결권제한주식”이라고 한다)의 수가 발행주식의 총수의 2분의1을 초과한 때에는 주식회사는 지체없이 의결권제한주식의 수를 발행주식의 총수의 2분의1 이하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6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① 다음 각호의 경우 반대주주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가지는 당해 각호의 주식을 공정한 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발행하는 모든 주식의 내용으로서 제107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둔 정관의 변경을 하는 경우 : 모든 주식
2. 어느 종류주식의 내용으로서 제108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둔 정관의 변경을 하는 경우 : 제111조 제2항 각호의 주식

3.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종류주식(제3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종류주식

- 가. 주식의 합병 또는 주식의 분할
- 나. 제185조의 주식무상배정
- 다. 단원주식수에 관한 정관의 변경
- 라. 주식회사의 주식인수인의 모집(제20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한 것에 한한다)
- 마.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인수인의 모집(제24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한 것에 한한다)
- 바. 제277조의 신주예약권 무상배정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반대주주”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1. 전항 각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종류주주총회를 포함한다)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 다음의 주주
 - 가. 주주총회 전에 당해행위에 반대하는 의사를 주식회사에 통지하거나 주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知し、かつ、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行為に反対した株主(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る。)

ロ 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

二 前号に規定する場合以外の場合 すべての株主

3 第一項各号の行為を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は、当該行為が効力を生ずる日(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効力発生日」という。)の二十日前までに、同項各号に定める株式の株主に対し、当該行為をする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5 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以下この節において「株式買取請求」という。)は、効力発生日の二十日前の日から効力発生日の前日までの間に、その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株券が発行されている株式について株式買取請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株式の株主は、株式会社にに対し、当該株式に係る株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株券について第二百二十三条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た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7 株式買取請求をした株主は、株式会社の承諾を得た場合に限り、その株式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8 株式会社が第一項各号の行為を中止したときは、株式買取請求は、その効力を失う。

9 第百三十三条の規定は、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117条 株式の価格の決定等

1 株式買取請求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株式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株主と株式会社との間に協議が調ったときは、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から六十日以内にその支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株式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効力発生日から三十日以内に協議が調わないときは、株主又は株式会社は、その期間の満了の日後三十日以内に、裁判所に対し、価格の決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条第七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効力発生日から六十日以内に同項の申立てがないときは、その期間の満了後は、株主は、い

주총회에서 당해행위에 반대한 주주(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한한다)

나. 당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2. 전호의 규정 외의 경우 : 모든 주주

③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려는 주식회사는 당해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효력발생일”이라고 한다)의 20일전까지 동항 각호의 주식의 주주에게 당해 행위를 하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공고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청구(이하 이 절에서 “주식 매수청구”라고 한다)는 효력발생일 20일전부터 효력발생일의 전날까지 그 주식매수청구의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⑥ 주권이 발행되고 있는 주식에 관해 주식매수청구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주주는 주식회사에 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권에 대해 제223조의 청구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는 주식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주식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⑧ 주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중지한 때는 주식매수청구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⑨ 제133조는 주식매수청구와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17조 주식의 가격결정 등

① 주식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주식의 가격의 결정에 대하여 주주와 주식회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가격결정에 관하여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 또는 주식회사는 그 기간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가격결정의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경우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항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후에는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매수청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つでも、株式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4 株式会社は、裁判所の決定した価格に対する第一項の期間の満了の日後の年六分の利率により算定した利息をも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株式会社は、株式の価格の決定があるまでは、株主に対し、当該株式会社が公正な価格と認める額を支払うことができる。

6 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買取りは、効力発生日に、その効力を生ずる。

7 株券発行会社(その株式(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全部の種類の株式)に係る株券を発行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をいう。以下同じ。)は、株券が発行されている株式について株式買取請求があつたときは、株券と引換えに、その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代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118条 新株予約権買取請求

1 次の各号に掲げる定款の変更をす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株式会社にに対し、自己の有する新株予約権を公正な価格で買い取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一 その発行する全部の株式の内容として第百七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を設ける定款の変更 全部の新株予約権

二 ある種類の株式の内容として第百八条第一項第四号又は第七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を設ける定款の変更 当該種類の株式を目的とする新株予約権

2 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以下この節において「新株予約権買取請求」という。)をするときは、併せて、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を買い取ること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3 第一項各号に掲げる定款の変更を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は、当該定款の変更が効力を生ずる日(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定款変更日」という。)の二十日前までに、同項各号に定める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当該定款の変更を行う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5 新株予約権買取請求は、定款変更日の二十日前の日から定款変更日の前日ま

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주식회사는 법원이 결정한 가격에 대하여 제1항의 기간만료일 후 연6분의 이율로 산정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주식회사는 주식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주에게 주식회사가 공정한 가격이라고 판단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청구에 관련된 주식의 매수는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⑦ 주권발행회사(그 주식(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종류주식 전부)에 관한 주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관해 주식매수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주권과 교환하여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8조 신주예약권 매수청구

- ① 다음 각호의 정관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각호에 규정하는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신주예약권을 공정한 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1. 발행하는 모든 주식의 내용으로서 제107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둔 정관의 변경 : 모든 신주예약권
 - 2. 어느 종류주식의 내용으로서 제108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둔 정관의 변경 : 당해 종류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신주예약권
- ②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전항의 청구(이하 이 절에서 “신주예약권 매수청구”라고 한다)를 하는 때에는 이와 함께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각호의 정관의 변경을 하려는 주식회사는 정관의 변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이하 이조 및 다음 조에서 “정관변경일”이라고 한다)의 20일전까지 동항 각호에 규정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정관의 변경을 하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공고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⑤ 신주예약권 매수청구는 정관변경일의 20일전부터 정관변경일의 전날까지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での間に、その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新株予約権証券が発行されている新株予約権について新株予約権買取請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株式会社に対し、その新株予約権証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新株予約権証券について非訟事件手続法(平成二十三年法律第五十一号)第百十四条に規定する公示催告の申立てをした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7 新株予約権付社債券(第二百四十九条第二号に規定する新株予約権付社債券をいう。以下この項及び次条第八項において同じ。)が発行されている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新株予約権買取請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株式会社に対し、その新株予約権付社債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券について非訟事件手続法第百十四条に規定する公示催告の申立てをした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8 新株予約権買取請求をした新株予約権者は、株式会社の承諾を得た場合に限り、その新株予約権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9 株式会社が第一項各号に掲げる定款の変更を中止したときは、新株予約権買取請求は、その効力を失う。

10 第二百六十条の規定は、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119条 新株予約権の価格の決定等

1 新株予約権買取請求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新株予約権(当該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買取り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当該社債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新株予約権者と株式会社との間に協議が調ったときは、株式会社は、定款変更日から六十日以内にその支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新株予約権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定款変更日から三十日以内に協議が調わないときは、新株予約権者又は株式会社は、その期間の満了の日後三十日以内に、裁判所に対し、価格の決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그 신주예약권 매수청구의 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⑥ 신주예약권증권이 발행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신주예약권매수청구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회사에 대해 신주예약권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예약권증권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2011년 법률 제51호) 제114조의 공시최고의 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신주예약권부사채권(제249조 제2호의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조 제8항에서 같다)이 발행된 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신주예약권에 관해 신주예약권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회사에 대해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예약권부사채권에 관해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14조의 공시최고 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신주예약권매수청구를 한 신주예약권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 신주예약권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⑨ 주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정관변경을 중지한 때에는 신주예약권매수청구는 효력을 상실한다.

⑩ 제260조는 신주예약권매수청구와 관련된 신주예약권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19조 신주예약권의 가격결정 등

① 신주예약권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인 경우에 있어서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의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신주예약권자와 주식회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주식회사는 정관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 신주예약권의 가격결정에 관하여 정관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주예약권자 또는 주식회사는 그 기간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가격결정의 청구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3 前条第八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定款変更日から六十日以内に同項の申立てがないときは、その期間の満了後は、新株予約権者は、いつでも、新株予約権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4 株式会社は、裁判所の決定した価格に対する第一項の期間の満了の日後の年六分の利率により算定した利息をも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株式会社は、新株予約権の価格の決定があるまでは、新株予約権者に対し、当該株式会社が公正な価格と認める額を支払うことができる。

6 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の買取りは、定款変更日に、その効力を生ずる。

7 株式会社は、新株予約権証券が発行されている新株予約権について新株予約権買取請求があったときは、新株予約権証券と引換えに、その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の代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8 株式会社は、新株予約権付社債券が発行されている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新株予約権買取請求があったときは、その新株予約権付社債券と引換えに、その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の代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120条 株主等の権利の行使に関する利益の供与

1 株式会社は、何人に対しても、株主の権利、当該株式会社に係る適格旧株主(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九項に規定する適格旧株主をいう。)の権利又は当該株式会社の最終完全親会社等(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最終完全親会社等をいう。)の株主の権利の行使に関し、財産上の利益の供与(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計算においてす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してはならない。

2 株式会社が特定の株主に対して無償で財産上の利益の供与をしたときは、当該株式会社は、株主の権利の行使に関し、財産上の利益の供与をしたものと推定する。株式会社が特定の株主に対して有償で財産上の利益の供与を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受けた利益が当該財産上の利益に比して著しく少ないときも、同様とする。

3 株式会社が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財産上の利益の供与をしたときは、当該利益の供与を受けた者は、これを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に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利益の供与を受けた者は、当該株式会社又

- ③ 전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항의 경우 정관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항의 청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후에 신주예약권자는 언제든지 신주예약권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주식회사는 법원이 결정한 가격에 대하여 제1항의 기간만료일 후 연6분의 이율로 산정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주식회사는 신주예약권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신주예약권자에게 주식회사가 공정한 가격이라고 판단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신주예약권매수청구에 관련된 신주예약권의 매수는 정관변경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⑦ 주식회사는 신주예약권증권이 발행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신주예약권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신주예약권증권과 교환하여 신주예약권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주식회사는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이 발행된 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신주예약권매수청구가 있던 때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권과 교환하여 신주예약권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0조 주주 등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 ① 주식회사는 누구에 대해서도 주주의 권리, 주식회사와 관련된 적격주주(제847조의 2 제9항의 적격주주를 말한다)의 권리 또는 주식회사의 최종완전모회사등(제847조의 3 제1항의 최종완전모회사등을 말한다)의 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계산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서는 아니된다.
- ② 주식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주식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주식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 받은 자는 이를 당해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익을 공여 받은 자는 당해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 대하여 이익과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はその子会社に対して当該利益と引換えに給付をしたものがあるときは、その返還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4 株式会社が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財産上の利益の供与をしたときは、当該利益の供与をすることに関与した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執行役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者は、当該株式会社に対して、連帯して、供与した利益の価額に相当する額を支払う義務を負う。ただし、その者(当該利益の供与をした取締役を除く。)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5 前項の義務は、総株主の同意がなければ、免除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2節 株主名簿

第121条 株主名簿

株式会社は、株主名簿を作成し、これに次に掲げる事項(以下「株主名簿記載事項」という。)を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株主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 二 前号の株主の有する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 三 第一号の株主が株式を取得した日
- 四 株式会社が株券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は、第二号の株式(株券が発行されているものに限る。)に係る株券の番号

第122条 株主名簿記載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等

1 前条第一号の株主は、株式会社に対し、当該株主についての株主名簿に記載され、若しくは記録された株主名簿記載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又は当該株主名簿記載事項を記録した電磁的記録の提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書面には、株式会社の代表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代表執行役。次項において同じ。)が署名し、又は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電磁的記録には、株式会社の代表取締役が法務省令で定める署名又は記名押印に代わる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교환하여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④ 주식회사가 제1항에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을 때에는 이익공여에 관여한 이사(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는 주식회사에 연대하여 공여한 이익의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다만 그 자(이익공여를 한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항의 의무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할 수 없다.

제2절 주주명부

제121조 주주명부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이에 다음의 사항(이하 “주주명부 기재사항”이라고 한다)을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 명칭 및 주소
2. 전호의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3. 제1호의 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년월일
4. 주식회사가 주권발행회사인 경우에는 제2호의 주식(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의 주권의 번호

제122조 주주명부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① 전조 제1호의 주주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주주명부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또는 주주명부기재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서면에는 회사의 대표이사(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대표 집행임원. 다음 항에서 같다)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자적 기록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4 前三項の規定は、株券発行会社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123条 株主名簿管理人

株式会社は、株主名簿管理人(株式会社に代わって株主名簿の作成及び備置きその他の株主名簿に関する事務を行う者をいう。以下同じ。)を置く旨を定款で定め、当該事務を行うことを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第124条 基準日

- 1 株式会社は、一定の日(以下この章において「基準日」という。)を定めて、基準日において株主名簿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ている株主(以下この条において「基準日株主」という。)をそ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者と定めることができる。
- 2 基準日を定める場合には、株式会社は、基準日株主が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権利(基準日から三箇月以内に行使するものに限る。)の内容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3 株式会社は、基準日を定めたときは、当該基準日の二週間前までに、当該基準日及び前項の規定により定めた事項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定款に当該基準日及び当該事項について定め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4 基準日株主が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権利が株主総会又は種類株主総会における議決権である場合には、株式会社は、当該基準日後に株式を取得した者の全部又は一部を当該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者と定め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株式の基準日株主の権利を害することができない。
- 5 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は、第四百四十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登録株式質権者について準用する。

第125条 株主名簿の備置き及び閲覧等

- 1 株式会社は、株主名簿をその本店(株主名簿管理人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営業所)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 2 株主及び債権者は、株式会社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請求の理由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株主名簿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④ 전3항의 규정은 주권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3조 주주명부 관리인

주식회사는 주주명부 관리인(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명부의 작성 및 비치 그 밖의 주주명부에 관한 사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는 뜻을 정관에 정하고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4조 기준일

- ① 주식회사는 일정한 날(이하 이 장에서 “기준일”이라고 한다)을 정하여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주주(이하 이조에서 “기준일주주”라고 한다)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정할 수 있다.
- ② 기준일을 정한 경우 주식회사는 기준일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주식회사가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기준일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기준일 및 당해 사항에 관하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기준일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에서의 결권인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기준일 후에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기준일주주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49조 제1항의 등록주식질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25조 주주명부의 비치 및 열람 등

- ①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그 본점(주주명부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주주 및 채권자는 주식회사의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1. 주주명부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 二 株主名簿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 3 株式会社は、前項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これ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
 - 一 当該請求を行う株主又は債権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請求者」という。)がその権利の確保又は行使に関する調査以外の目的で請求を行ったとき。
 - 二 請求者が当該株式会社の業務の遂行を妨げ、又は株主の共同の利益を害する目的で請求を行ったとき。
 - 三 請求者が株主名簿の閲覧又は謄写によって知り得た事実を利益を得て第三者に通報するため請求を行ったとき。
 - 四 請求者が、過去二年以内において、株主名簿の閲覧又は謄写によって知り得た事実を利益を得て第三者に通報したこと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 4 株式会社の親会社社員は、そ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当該株式会社の株主名簿について第二項各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請求の理由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5 前項の親会社社員について第三項各号のいずれかに規定する事由があるときは、裁判所は、前項の許可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126条 株主に対する通知等

- 1 株式会社が株主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催告は、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た当該株主の住所(当該株主が別に通知又は催告を受ける場所又は連絡先を当該株式会社に通知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場所又は連絡先)にあてて発すれば足りる。
- 2 前項の通知又は催告は、その通知又は催告が通常到達すべきであった時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 3 株式が二以上の者の共有に属するときは、共有者は、株式会社が株主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催告を受領する者一人を定め、当該株式会社にに対し、その者の氏名又は名称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者を株主とみなして、前二項の規定を適用する。

2. 주주명부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 ③ 주식회사는 전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청구를 한 주주 또는 채권자(이하 이 항에서 “청구자”라고 한다)가 그 권리의 확보 또는 행사의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청구를 한 경우
 2. 청구자가 주식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청구를 한 경우
 3. 청구자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해 수 있었던 사실을 이익을 얻고 제3자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청구를 한 경우
 4. 청구자가 과거 2년 이내에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이익을 얻고 제3자에게 통보한 적이 있는 경우
- ④ 주식회사의 모회사사원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관하여 제2항 각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전항의 모회사사원에 대하여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항의 허가를 할 수 없다.

제126조 주주에 대한 통지 등

- ① 주주에 대한 주식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한 주주의 주소(주주가 별도로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 또는 연락처를 주식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장소 또는 연락처)에 발송하면 된다.
-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③ 주식이 2이상의 자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식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하는 통지 또는 최고를 수령하는 자 1인을 정하여 주식회사에 그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를 주주로 보고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4 前項の規定による共有者の通知がない場合には、株式会社が株式の共有者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催告は、そのうちの一人に対してすれば足りる。

5 前各項の規定は、第二百九十九条第一項(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通知に際して株主に書面を交付し、又は当該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二項中「到達したもの」とあるのは、「当該書面の交付又は当該事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があったもの」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3節 株式の譲渡等

第1款 株式の譲渡

第127条 株式の譲渡

株主は、その有する株式を譲渡することができる。

第128条 株券発行会社の株式の譲渡

1 株券発行会社の株式の譲渡は、当該株式に係る株券を交付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ただし、自己株式の処分による株式の譲渡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株券の発行前にした譲渡は、株券発行会社に対し、その効力を生じない。

第129条 自己株式の処分に関する特則

1 株券発行会社は、自己株式を処分した日以後遅滞なく、当該自己株式を取得した者に対し、株券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公開会社でない株券発行会社は、同項の者から請求がある時までは、同項の株券を交付しないことができる。

第130条 株式の譲渡の対抗要件

1 株式の譲渡は、その株式を取得した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を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株式会社その他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株券発行会社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式会社その

-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자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주식의 공유자에 대하여 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 1인에게 하면 된다.
- ⑤ 전 각항의 규정은 제299조 제1항(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지시에 주주에게 서면을 교부하거나 또는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도달한 것”은 “서면의 교부 또는 당해 사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3절 주식양도 등

제1관 주식양도

제127조 주식양도

주주는 그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8조 주권발행회사의 주식양도

- ① 주권발행회사의 주식양도는 주식의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자기주식의 처분에 의한 주식양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주권발행 전에 한 양도는 주권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129조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특칙

- ① 주권발행회사는 자기주식을 처분한 날 이후 지체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회사가 아닌 주권발행회사는 동항의 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까지 동항의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0조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 ① 주식양도는 그 주식을 취득한 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하지 아니하면 주식회사 그 밖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 ② 주권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동항 중 “주식회사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他の第三者」とあるのは、「株式会社」とする。

第131条 権利の推定等

- 1 株券の占有者は、当該株券に係る株式についての権利を適法に有するものと推定する。
- 2 株券の交付を受けた者は、当該株券に係る株式についての権利を取得する。ただし、その者に悪意又は重大な過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132条 株主の請求によらない株主名簿記載事項の記載又は記録

- 1 株式会社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の株式の株主に係る株主名簿記載事項を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株式を発行した場合
 - 二 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取得した場合
 - 三 自己株式を処分した場合
- 2 株式会社は、株式の併合をした場合には、併合した株式について、その株式の株主に係る株主名簿記載事項を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株式会社は、株式の分割をした場合には、分割した株式について、その株式の株主に係る株主名簿記載事項を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33条 株主の請求による株主名簿記載事項の記載又は記録

- 1 株式を当該株式を発行した株式会社以外の者から取得した者(当該株式会社を除く。以下この節において「株式取得者」という。)は、当該株式会社に対し、当該株式に係る株主名簿記載事項を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は、利害関係人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を除き、その取得した株式の株主として株主名簿に記載され、若しくは記録された者又はその相続人その他の一般承継人と共同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34条

前条の規定は、株式取得者が取得した株式が譲渡制限株式である場合には、適

그 밖의 제3자”는 “주식회사”로 본다.

제131조 권리추정 등

- ① 주권의 점유자는 주권에 관련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주권의 교부를 받은 자는 주권에 관련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그 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 주주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는 주주명부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기록

- ① 주식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호의 주식의 주주의 주주명부기재사항을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한다.
 -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 2.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 3.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 ② 주식회사는 주식의 병합을 한 경우에는 병합한 주식에 관하여 그 주식의 주주의 주주명부기재사항을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주식회사는 주식의 분할을 한 경우에는 분할한 주식에 관하여 그 주식의 주주의 주주명부기재사항을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한다.

제133조 주주의 청구에 의한 주주명부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기록

- ① 주식을 당해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 이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자(당해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주식취득자”라고 한다)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식에 관련된 주주명부기재사항을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청구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취득한 주식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일반승계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제134조

전조의 규정은 주식취득자가 취득한 주식의 양도제한주식인 경우에는 적용하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用しない。ただし、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当該株式取得者が当該譲渡制限株式を取得することについて第百三十六条の承認を受けていること。
- 二 当該株式取得者が当該譲渡制限株式を取得したことについて第百三十七条第一項の承認を受けていること。
- 三 当該株式取得者が第百四十条第四項に規定する指定買取人であること。
- 四 当該株式取得者が相続その他の一般承継により譲渡制限株式を取得した者であること。

第135条 親会社株式の取得の禁止

- 1 子会社は、その親会社である株式会社の株式(以下この条において「親会社株式」という。)を取得してはならない。
- 2 前項の規定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 一 他の会社(外国会社を含む。)の事業の全部を譲り受ける場合において当該他の会社の有する親会社株式を譲り受ける場合
 - 二 合併後消滅する会社から親会社株式を承継する場合
 - 三 吸収分割により他の会社から親会社株式を承継する場合
 - 四 新設分割により他の会社から親会社株式を承継する場合
 -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
- 3 子会社は、相当の時期にその有する親会社株式を処分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款 株式の譲渡に係る承認手続

第136条 株主からの承認の請求

譲渡制限株式の株主は、その有する譲渡制限株式を他人(当該譲渡制限株式を発行した株式会社を除く。)に譲り渡そうとするときは、当該株式会社に対し、当該他人が当該譲渡制限株式を取得することについて承認をするか否かの決定を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137条 株式取得者からの承認の請求

- 1 譲渡制限株式を取得した株式取得者は、株式会社に対し、当該譲渡制限株式を

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취득자가 양도제한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관하여 제136조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주식취득자가 양도제한주식을 취득한 것에 관하여 제137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주식취득자가 제140조 제4항의 지정매수인인 경우
4. 주식취득자가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양도제한주식을 취득한자인 경우

제135조 모회사 주식의 취득금지

- ① 자회사는 그 모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식(이하 이 조에서 “모회사 주식”이라고 한다)을 취득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전부를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다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2.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모회사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3. 흡수분할에 의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모회사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4. 신설분할에 의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모회사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5. 전 각호의 규정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자회사는 상당한 시기에 그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2관 주식양도의 승인절차

제136조 주주로부터의 승인의 청구

양도제한주식의 주주는 그 소유하고 있는 양도제한주식을 타인(당해 양도제한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타인이 양도제한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관하여 승인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7조 주식취득자로부터의 승인의 청구

- ① 양도제한주식을 취득한 주식취득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양도제한주식을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取得したことについて承認をするか否かの決定を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は、利害関係人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を除き、その取得した株式の株主として株主名簿に記載され、若しくは記録された者又はその相続人その他の一般承継人と共同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38条 譲渡等承認請求の方法

次の各号に掲げる請求(以下この款において「譲渡等承認請求」という。)は、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百三十六条の規定による請求 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請求をする株主が譲り渡そうとする譲渡制限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譲渡制限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 ロ イの譲渡制限株式を譲り受ける者の氏名又は名称
- ハ 株式会社が第百三十六条の承認をしない旨の決定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又は第百四十条第四項に規定する指定買取人がイの譲渡制限株式を買い取ることを請求するときは、その旨

二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 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請求をする株式取得者の取得した譲渡制限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譲渡制限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 ロ イの株式取得者の氏名又は名称
- ハ 株式会社が前条第一項の承認をしない旨の決定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又は第百四十条第四項に規定する指定買取人がイの譲渡制限株式を買い取ることを請求するときは、その旨

第139条 譲渡等の承認の決定等

- 1 株式会社が第百三十六条又は第百三十七条第一項の承認をするか否かの決定をするには、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る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2 株式会社は、前項の決定をしたときは、譲渡等承認請求をした者(以下この款において「譲渡等承認請求者」という。)に対し、当該決定の内容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취득한 것에 관하여 승인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취득한 주식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일반승계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제138조 양도등승인청구의 방법

다음 각호의 청구(이하 이 관에서 “양도등승인청구”라고 한다)는 당해 각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36조의 청구 : 다음의 사항

가. 청구를 하는 주주가 양도하려는 양도제한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양도제한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나. 가목의 양도제한주식을 양수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다. 주식회사가 제136조의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뜻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주식회사 또는 제140조 제4항의 지정매수인이 가목의 양도제한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

2. 전조 제1항의 청구 : 다음의 사항

가. 청구를 하는 주식취득자가 취득한 양도제한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양도제한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나. 가목의 주식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

다. 주식회사가 전조 제1항의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뜻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주식회사 또는 제140조 제4항의 지정매수인이 가목의 양도제한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

제139조 양도등의 승인의 결정등

① 주식회사가 제136조 또는 제137조 제1항의 승인 여부의 결정을 함에는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식회사는 전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양도등승인청구를 한 자(이하 이 관에서 “양도등승인청구자”라고 한다)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第140条 株式会社又は指定買取人による買取り

1 株式会社は、第百三十八条第一号ハ又は第二号ハの請求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第百三十六條又は第百三十七條第一項の承認をしない旨の決定をしたときは、当該譲渡等承認請求に係る譲渡制限株式(以下この款において「対象株式」という。)を買い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対象株式を買い取る旨

二 株式会社が買い取る対象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対象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2 前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3 譲渡等承認請求者は、前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当該譲渡等承認請求者以外の株主の全部が同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4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式会社は、対象株式の全部又は一部を買い取る者(以下この款において「指定買取人」という。)を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5 前項の規定による指定は、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141条 株式会社による買取りの通知

1 株式会社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決定したときは、譲渡等承認請求者に対し、これらの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株式会社は、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一株当たり純資産額(一株当たりの純資産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をいう。以下同じ。)に前条第一項第二号の対象株式の数を乗じて得た額をその本店の所在地の供託所に供託し、かつ、当該供託を証する書面を譲渡等承認請求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対象株式が株券発行会社の株式である場合には、前項の書面の交付を受けた譲渡等承認請求者は、当該交付を受けた日から一週間以内に、前条第一項第二号の対象株式に係る株券を当該株券発行会社の本店の所在地の供託所に供

제140조 주식회사 또는 지정매수인에 의한 매수

① 주식회사는 제138조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제136조 또는 제137조 제1항의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뜻의 결정을 한 때에는 양도등승인청구에 관련된 양도제한주식(이하 이 관에서 “대상주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대상주식을 매입하는 뜻
2. 주식회사가 매입하는 대상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대상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 ② 전항 각호의 사항의 결정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양도등승인청구자는 전항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양도등승인청구자 이외의 주주 전원이 동항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대상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는 자(이하 이 관에서 “지정매수인”이라고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1조 주식회사에 의한 매수의 통지

- ① 주식회사는 전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양도등승인청구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주식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려는 때에는 1주당 순자산액(1주당의 순자산액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주식의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그 본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한편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양도등승인청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대상주식이 주권발행회사의 주식인 경우에는 전항의 서면의 교부를 받은 양도등승인청구자는 당해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주식의 주권을 주권발행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譲渡等承認請求者は、当該株券発行会社に対し、遅滞なく、当該供託をし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項の譲渡等承認請求者が同項の期間内に同項の規定による供託をしなかったときは、株券発行会社は、前条第一項第二号の対象株式の売買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第142条 指定買取人による買取りの通知

1 指定買取人は、第四百四十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受けたときは、譲渡等承認請求者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指定買取人として指定を受けた旨

二 指定買取人が買い取る対象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対象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2 指定買取人は、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一株当たり純資産額に同項第二号の対象株式の数を乗じて得た額を株式会社の本店の所在地の供託所に供託し、かつ、当該供託を証する書面を譲渡等承認請求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対象株式が株券発行会社の株式である場合には、前項の書面の交付を受けた譲渡等承認請求者は、当該交付を受けた日から一週間以内に、第一項第二号の対象株式に係る株券を当該株券発行会社の本店の所在地の供託所に供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譲渡等承認請求者は、指定買取人に対し、遅滞なく、当該供託をし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項の譲渡等承認請求者が同項の期間内に同項の規定による供託をしなかったときは、指定買取人は、第一項第二号の対象株式の売買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第143条 譲渡等承認請求の撤回

1 百三十八条第一号ハ又は第二号ハの請求をした譲渡等承認請求者は、第四百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後は、株式会社の承諾を得た場合に限り、その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2 百三十八条第一号ハ又は第二号ハの請求をした譲渡等承認請求者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後は、指定買取人の承諾を得た場合に限り、

다. 이 경우 양도등승인청구자는 주권발행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공탁을 한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양도등승인청구자가 동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권발행회사는 전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주식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2조 지정매수인에 의한 매수의 통지

① 지정매수인은 제1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때에는 양도등승인청구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정매수인으로 지정된 뜻
2. 지정매수인이 매수하는 대상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대상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② 지정매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려는 때에는 1주당 순자산액에 동항 제2호의 대상주식의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한편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양도등승인청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상주식이 주권발행회사의 주식인 경우에는 전항의 서면의 교부를 받은 양도등 승인청구자는 당해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1항 제2호의 대상주식의 주권을 주권발행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등승인청구자는 지정매수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공탁을 한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양도등승인청구자가 동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매수인은 제1항 제2호의 대상주식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3조 양도등 승인청구의 철회

① 제138조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의 청구를 한 양도등승인청구자는 제141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주식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38조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의 청구를 한 양도등승인청구자는 전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지정매수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その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第144条 売買価格の決定

1 第百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があった場合には、第百四十条第一項第二号の対象株式の売買価格は、株式会社と譲渡等承認請求者との協議によって定める。

2 株式会社又は譲渡等承認請求者は、第百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があった日から二十日以内に、裁判所に対し、売買価格の決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裁判所は、前項の決定をするには、譲渡等承認請求の時における株式会社の資産状態その他一切の事情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二項の期間内に同項の申立てがあったときは、当該申立てにより裁判所が定めた額をもって第百四十条第一項第二号の対象株式の売買価格とする。

5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二項の期間内に同項の申立てがないとき(当該期間内に第一項の協議が調った場合を除く。)は、一株当たり純資産額に第百四十条第一項第二号の対象株式の数を乗じて得た額をもって当該対象株式の売買価格とする。

6 第百四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供託をした場合において、第百四十条第一項第二号の対象株式の売買価格が確定したときは、株式会社は、供託した金銭に相当する額を限度として、売買代金の全部又は一部を支払ったものとみなす。

7 前各項の規定は、第百四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があっ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一項中「第百四十条第一項第二号」とあるのは「第百四十二条第一項第二号」と、「株式会社」とあるのは「指定買取人」と、第二項中「株式会社」とあるのは「指定買取人」と、第四項及び第五項中「第百四十条第一項第二号」とあるのは「第百四十二条第一項第二号」と、前項中「第百四十一条第二項」とあるのは「第百四十二条第二項」と、「第百四十条第一項第二号」とあるのは「同条第一項第二号」と、「株式会社」とあるのは「指定買取人」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제144조 매매가격의 결정

- ① 제141조 제1항의 통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140조 제1항 제2호의 대상 주식의 매매가격은 주식회사와 양도등승인청구자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 ② 주식회사 또는 양도등승인청구자는 제141조 제1항의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양도등승인청구시에 주식회사의 자산상태 그 밖에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 금액을 제140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주식의 매매가격으로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청구가 없는 경우(기간 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주당 순자산액에 제140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주식의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대상주식의 매매가격으로 한다.
- ⑥ 제141조 제2항의 공탁을 한 경우에 있어서 제140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주식의 매매가격이 확정된 때에는 주식회사는 공탁한 금전에 상당한 금액을 한도로서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 ⑦ 전각항의 규정은 제142조 제1항의 통지가 있었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제140조 제1항 제2호”는 “제142조 제1항 제2호”로, “주식회사”는 “지정매수인”으로, 제2항 중 “주식회사”는 “지정매수인”으로, 제4항 및 제5항 중 “제140조 제1항 제2호”는 “제142조 제1항 제2호”로, 전항 중 “제141조 제2항”은 “제142조 제2항”으로, “제140조 제1항 제2호”는 “동조 제1항 제2호”로, “주식회사”는 “지정매수인”으로 본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第145条 株式会社が承認をしたとみなされる場合

次に掲げる場合には、株式会社は、第百三十六条又は第百三十七条第一項の承認をする旨の決定をし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株式会社と譲渡等承認請求者との合意により別段の定めを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株式会社が第百三十六条又は第百三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の日から二週間(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以内に第百三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なかった場合
- 二 株式会社が第百三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から四十日(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以内に第百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なかった場合(指定買取人が第百三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から十日(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以内に第百四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た場合を除く。)
- 三 前二号に掲げる場合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

第3款 株式の質入れ

第146条 株式の質入れ

- 1 株主は、その有する株式に質権を設定することができる。
- 2 株券発行会社の株式の質入れは、当該株式に係る株券を交付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第147条 株式の質入れの対抗要件

- 1 株式の質入れは、その質権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を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株式会社その他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券発行会社の株式の質権者は、継続して当該株式に係る株券を占有しなければ、その質権をもって株券発行会社その他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 3 民法第三百六十四条の規定は、株式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148条 株主名簿の記載等

株式に質権を設定した者は、株式会社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株主名簿に記載

제145조 **주식회사가 승낙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 주식회사는 제136조 또는 제137조 제1항의 승인을 하는 뜻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식회사와 양도등승인청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정함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회사가 제136조 또는 제137조 제1항의 청구일로부터 2주간(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제139조 제2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회사가 제139조 제2항의 통지일로부터 40일(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제141조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지정매수인이 제139조 제2항의 통지일로부터 10일(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제142조 제1항의 통지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2호의 규정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3관 주식의 입질

제146조 **주식의 입질**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주권발행회사의 주식의 입질은 당해 주식의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147조 **주식의 입질의 대항요건**

- ① 주식의 입질은 그 질권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하지 아니하면 주식회사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권발행회사의 주식의 질권자는 계속하여 당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주권발행회사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민법 제364조의 규정은 주식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8조 **주주명부의 기재 등**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주명부에 기재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し、又は記録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質権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二 質権の目的である株式

第149条 株主名簿の記載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等

1 前条各号に掲げる事項が株主名簿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質権者(以下「登録株式質権者」という。)は、株式会社に対し、当該登録株式質権者についての株主名簿に記載され、若しくは記録された同条各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又は当該事項を記録した電磁的記録の提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書面には、株式会社の代表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代表執行役。次項において同じ。)が署名し、又は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電磁的記録には、株式会社の代表取締役が法務省令で定める署名又は記名押印に代わる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三項の規定は、株券発行会社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150条 登録株式質権者に対する通知等

1 株式会社が登録株式質権者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催告は、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た当該登録株式質権者の住所(当該登録株式質権者が別に通知又は催告を受ける場所又は連絡先を当該株式会社に通知し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場所又は連絡先)にあてて発すれば足りる。

2 前項の通知又は催告は、その通知又は催告が通常到達すべきであった時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第151条 株式の質入れの効果

1 株式会社が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は、株式を目的とする質権は、当該行為によって当該株式の株主が受けることのできる金銭等(金銭その他の財産をいう。以下同じ。)について存在する。

一 第百六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取得請求権付株式の取得

二 第百七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取得条項付株式の取得

三 第百七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第百七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全部取得

또는 기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질권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2. 질권의 목적인 주식

제149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 ① 전조 각호의 사항이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질권자(이하 “등록주식 질권자”라고 한다)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등록주식질권자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동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또는 당해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서면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대표 집행임원. 다음 항에서 같다)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전자적 기록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전3항의 규정은 주권발행회사에 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0조 등록주식질권자에 대한 통지 등

- ① 주식회사가 등록주식질권자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등록주식질권자의 주소(등록주식질권자가 별도로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 또는 연락처를 주식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장소 또는 연락처)로 발송하면 된다.
-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51조 주식의 입질 효과

- ① 주식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당해 행위에 의하여 주식의 주주가 받을 수 있는 금전등(금전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존재한다.
 1. 제167조 제1항의 취득청구권부주식의 취득
 2. 제170조 제1항의 취득조항부주식의 취득
 3.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1조 제1항의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

四 株式の併合

五 株式の分割

六 第百八十五条に規定する株式無償割当て

七 第二百七十七条に規定する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

八 剰余金の配当

九 残余財産の分配

十 組織変更

十一 合併(合併により当該株式会社が消滅する場合に限る。)

十二 株式交換

十三 株式移転

十四 株式の取得(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掲げる行為を除く。)

2 特別支配株主(第百七十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特別支配株主をいう。第百五十四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が株式売渡請求(第百七十九条第二項に規定する株式売渡請求をいう。))により売渡株式(第百七十九条の二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売渡株式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取得をした場合には、売渡株式を目的とする質権は、当該取得によって当該売渡株式の株主が受けることのできる金銭について存在する。

第152条

1 株式会社(株券発行会社を除く。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は、前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これらの行為に際して当該株式会社が株式を交付する場合に限る。))又は同項第六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同項の質権の質権者が登録株式質権者(第二百十八条第五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より第百四十八条各号に掲げる事項が株主名簿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ものを除く。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じ。))であるときは、前条第一項の株主が受けることができる株式について、その質権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を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株式会社は、株式の併合をした場合において、前条第一項の質権の質権者が登録株式質権者であるときは、併合した株式について、その質権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を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식의 취득

4. 주식의 병합
 5. 주식의 분할
 6. 제185조의 주식무상배정
 7. 제277조의 신주예약권 무상배정
 8. 잉여금의 배당
 9. 잔여재산의 분배
 10. 조직변경
 11. 합병(합병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주식교환
 13. 주식이전
 14. 주식의 취득(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는 제외한다)
- ② 특별지배주주(제179조 제1항의 특별지배주주를 말한다. 제154조 제3항에서 같다)가 주식매도청구(제179조 제2항의 주식매도청구를 말한다)에 의해 매도주식(제179조의2 제1항 제2호의 매도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당해 취득에 의해 매도주식의 주주가 받을 수 있는 금전에 관하여 존재한다.

제152조

① 주식회사(주권발행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전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이러한 행위시에 주식회사가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동항 제6호의 행위를 한 경우 동항 질권의 질권자가 등록주식질권자(제218조 제5항의 청구에 의해 제148조 각 호의 사항이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인 때에는 전조 제1항의 주주가 받을 수 있는 주식에 관하여 질권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는 주식을 병합한 경우 전조 제1항의 질권의 질권자가 등록주식질권자인 때에는 병합한 주식에 관하여 질권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3 株式会社は、株式の分割をした場合において、前条第一項の質権の質権者が登録株式質権者であるときは、分割した株式について、その質権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を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53条

1 株券発行会社は、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第百五十一条第一項の株主が受ける株式に係る株券を登録株式質権者に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株券発行会社は、前条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併合した株式に係る株券を登録株式質権者に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3 株券発行会社は、前条第三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分割した株式について新たに発行する株券を登録株式質権者に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154条

1 登録株式質権者は、第百五十一条第一項の金銭等(金銭に限る。)又は同条第二項の金銭を受領し、他の債権者に先立って自己の債権の弁済に充てることができる。

2 株式会社が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前項の債権の弁済期が到来していないときは、登録株式質権者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同項に規定する金銭等に相当する金額を供託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質権は、その供託金について存在する。

一 第百五十一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六号まで、第八号、第九号又は第十四号に掲げる行為：当該株式会社

二 組織変更：第七百四十四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組織変更後持分会社

三 合併(合併により当該株式会社が消滅する場合に限る。)：第七百四十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吸収合併存続会社又は第七百五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新設合併設立会社

四 株式交換：第七百六十七条に規定する株式交換完全親会社

五 株式移転：第七百七十三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

3 第百五十一条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第一項の債権の弁済期が到来していないときは、登録株式質権者は、当該特別支配株主に同条第二項の金銭に相当する金額を供託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質権は、その供託金につ

③ 주식회사는 주식분할을 한 경우 전조 제1항의 질권의 질권자가 등록주식질권자인 때에는 분할한 주식에 관하여 질권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한다.

제153조

- ① 주권발행회사는 전조 제1항의 경우 제151조 제1항의 주주가 받을 주권을 등록주식질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② 주권발행회사는 전조 제2항의 경우에는 병합한 주식의 주권을 등록주식질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주권발행회사는 전조 제3항의 경우에는 분할한 주식에 관하여 새롭게 발행하는 주권을 등록주식질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54조

- ① 등록주식질권자는 제151조 제1항의 금전등 (금전에 한한다) 또는 동조 제2항의 금전을 수령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② 주식회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전항의 채권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때는 등록주식질권자는 당해 각 호의 자에게 동항의 금전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1. 제1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제9호 또는 제14호의 행위 : 주식회사

2. 조직변경 : 제744조 제1항 제1호의 조직 변경후지분회사

3. 합병(합병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749조 제1항의 흡수합병존속회사 또는 제753조 제1항의 신설합병설립회사

4. 주식교환 : 제767조의 주식교환완전모회사

5. 주식이전 : 제773조 제1항 제1호의 주식 이전설립완전모회사

③ 제151조 제2항의 경우 제1항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등록주식질권자는 특별지배주주에게 동조 제2항의 금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관하여 존재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いて存在する。

第4款 信託財産に属する株式についての対抗要件等

第154条の2

1 株式については、当該株式が信託財産に属する旨を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当該株式が信託財産に属することを株式会社その他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第二百十一条第一号の株主は、その有する株式が信託財産に属するときは、株式会社に対し、その旨を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 株主名簿に前項の規定による記載又は記録がされた場合における第二百十二条第一項及び第三百二十二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二百二十二条第一項中「記録された株主名簿記載事項」とあるのは「記録された株主名簿記載事項(当該株主の有する株式が信託財産に属する旨を含む。)」と、第三百二十二条中「株主名簿記載事項」とあるのは「株主名簿記載事項(当該株主の有する株式が信託財産に属する旨を含む。)」とする。

4 前三項の規定は、株券発行会社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4節 株式会社による自己の株式の取得

第1款 総則

第155条

株式会社は、次に掲げる場合に限り、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第一百七条第二項第三号イの事由が生じた場合
- 二 第三十八條第一号ハ又は第二号ハの請求があった場合
- 三 次条第一項の決議があった場合
- 四 第六十六條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場合
- 五 第七十一條第一項の決議があった場合
- 六 第七十六條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た場合

제4관 신탁재산에 속한 주식에 관한 대항요건 등

제154조의2

- ① 주식에 관하여는 당해 주식 신탁재산에 속하는 뜻을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하지 아니하면 주식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을 주식회사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제121조 제1호의 주주는 그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때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뜻을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주명부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 또는 기록이 된 경우에 있어서 제122조 제1항 및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제122조 제1항 중 “기록된 주주명부기재사항”은 “기록된 주주명부기재사항(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뜻을 포함한다)”로, 제132조 중 “주주명부기재사항”은 “주주명부기재사항(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뜻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 ④ 전3항의 규정은 주권 발행회사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주식회사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1관 총칙

제155조

주식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107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38조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
3. 다음조 제1항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
4. 제166조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
5. 제171조 제1항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
6. 제176조 제1항의 청구를 한 경우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 七 第百九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場合
- 八 第百九十七条第三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
- 九 第二百三十四条第四項各号(第二百三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
- 十 他の会社(外国会社を含む。)の事業の全部を譲り受ける場合において当該他の会社が有する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取得する場合
- 十一 合併後消滅する会社から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承継する場合
- 十二 吸収分割をする会社から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承継する場合
- 十三 前各号に掲げる場合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

第2款 株主との合意による取得

第1目 総則

第156条 株式の取得に関する事項の決定

- 1 株式会社が株主との合意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有償で取得するには、あらかじめ、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三号の期間は、一年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取得する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 二 株式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交付する金銭等(当該株式会社の株式等を除く。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じ。)の内容及びその総額
 - 三 株式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
- 2 前項の規定は、前条第一号及び第二号並びに第四号から第十三号までに掲げ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157条 取得価格等の決定

- 1 株式会社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従い株式を取得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都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取得する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数)
 - 二 株式一株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交付する金銭等の内容及び数若しくは額

7. 제192조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
8. 제197조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
9. 제234조 제4항 각호(제2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항을 정한 경우
10. 다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다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1.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12. 흡수분할을 하는 회사로부터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13. 전 각호의 경우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2관 주주와의 합의에 의한 취득

제1목 총칙

제156조 주식취득에 관한 사항 결정

- ① 주식회사가 주주와 합의하여 주식회사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취득할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2. 주식의 취득과 교환하여 교부하는 금전등(당해 주식회사의 주식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내용 및 그 총액
 3.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② 전항의 규정은 전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7조 취득가액등의 결정

- ① 주식회사는 전조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려는 때에는 그 때마다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취득할 주식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주식 1주의 취득과 교환하여 교부하는 금전등의 내용, 수, 가액 및 그 산정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又はこれらの算定方法

三 株式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交付する金銭等の総額

四 株式の譲渡しの申込みの期日

2 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前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株式の取得の条件は、同項の規定による決定ごとに、均等に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158条 株主に対する通知等

1 株式会社は、株主(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取得する株式の種類の種類株主) に対し、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公開会社においては、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第159条 譲渡しの申込み

1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株主は、その有する株式の譲渡し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株式会社に対し、その申込みに係る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数) 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株式会社は、第百五十七条第一項第四号の期日において、前項の株主が申込みをした株式の譲受けを承諾し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同項の株主が申込みをした株式の総数(以下この項において「申込総数」という。) が同条第一項第一号の数(以下この項において「取得総数」という。) を超えるときは、取得総数を申込総数で除して得た数に前項の株主が申込みをした株式の数を乗じて得た数(その数に一に満たない端数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これを切り捨てるものとする。) の株式の譲受けを承諾したものとみなす。

第2目 特定の株主からの取得

第160条 特定の株主からの取得

1 株式会社は、第百五十六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に併せて、同項の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第百五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特定の株主

방법

3. 주식의 취득과 교환하여 교부하는 금전등의 총액
 4. 주식양도의 청약기일
- ②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 전항 각호의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주식의 취득조건은 동항의 결정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158조 주주에 대한 통지 등

- ① 주식회사는 주주(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종류주식의 종류 주주)에게 전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공개회사의 경우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9조 양도의 청약

- ① 전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주주가 그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의 청약을 하려는 때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청약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주식회사는 제157조 제1항 제4호의 기일에 전항의 주주가 청약을 한 주식의 양수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항의 주주가 청약을 한 주식의 총수(이하 이 항에서 “청약총수”라고 한다)가 동조 제1항 제1호의 수(이하 이 항에서 “취득총수”라고 한다)를 초과할 때에는 취득총수를 청약총수에서 빼서 얻은 수에 전항의 주주가 청약을 한 주식의 수를 곱하여 얻은 수(그 수에 1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리는 것으로 한다)의 주식의 양수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2목 특정 주주로부터의 취득

제160조 특정 주주로부터의 취득

- ① 주식회사는 제15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의 결정과 함께 동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제158조 제1항의 통지를 특정 주주에게 한다는 뜻을 정할 수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に対して行う旨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2 株式会社は、前項の規定による決定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時までに、株主(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取得する株式の種類の種類株主)に対し、次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株主は、第一項の特定の株主に自己をも加えたものを同項の株主総会の議案とすることを、法務省令で定める時まで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4 第一項の特定の株主は、第百五十六条第一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第一項の特定の株主以外の株主の全部が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5 第一項の特定の株主を定めた場合における第百五十八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主(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取得する株式の種類の種類株主)」とあるのは、「第百六十条第一項の特定の株主」とする。

第161条 市場価格のある株式の取得の特則

前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取得する株式が市場価格のある株式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一株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交付する金銭等の額が当該株式一株の市場価格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ものを超えないときは、適用しない。

第162条 相続人等からの取得の特則

第百六十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株式会社が株主の相続人その他の一般承継人からその相続その他の一般承継により取得した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取得す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ただし、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ある場合
- 二 当該相続人その他の一般承継人が株主総会又は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株式について議決権を行使した場合

第163条 子会社からの株式の取得

株式会社がその子会社の有する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取得する場合における第百五十六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主総会」とあるのは、

있다.

② 주식회사는 전항의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주주(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에게 다음 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주주는 제1항의 특정 주주에 자기를 추가한 것을 동항의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할 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특정 주주는 제156조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제1항의 특정 주주 이외의 주주 전원이 당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특정 주주를 정한 경우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항 중 “주주(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종류주식의 종류주주)”는 “제160조 제1항의 특정 주주”로 본다.

제161조 시장가격이 있는 주식의 취득의 특칙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취득하는 주식의 시장가격이 있는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 1주의 취득과 교환하여 교부하는 금전등의 금액이 당해 주식 1주의 시장가격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2조 상속인등으로부터의 취득의 특칙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주주의 상속인 그 밖의 일반승계인으로부터 그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회사가 공개회사인 경우
2. 상속인 그 밖의 일반승계인이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에서 당해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제163조 자회사로부터의 주식의 취득

주식회사가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156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중 “주주총회”를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百五十七条から第百六十条まで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164条 特定の株主からの取得に関する定款の定め

- 1 株式会社は、株式(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ある種類の株式。次項において同じ。)の取得について第百六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をするときは同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を適用しない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 2 株式の発行後に定款を変更して当該株式について前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を設け、又は当該定めについての定款の変更(同項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ものを除く。)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株式を有する株主全員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目 市場取引等による株式の取得

第165条

- 1 第百五十七条から第百六十条までの規定は、株式会社が市場において行う取引又は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七条の二第六項に規定する公開買付けの方法(以下この条において「市場取引等」という。)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取得す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 2 取締役会設置会社は、市場取引等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取得することを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定めることができる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 3 前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を設けた場合における第百五十六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主総会」とあるのは、「株主総会(第百六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あつては、株主総会又は取締役会)」とする。

第3款 取得請求権付株式及び取得条項付株式の取得

第1目 取得請求権付株式の取得の請求

第166条 取得の請求

- 1 取得請求権付株式の株主は、株式会社に対して、当該株主の有する取得請求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로 본다. 이 경우 제157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4조 특정 주주로부터의 취득에 관한 정관의 정함

- ① 주식회사는 주식(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어느 종류주식. 다음 항에서 같다)의 취득에 관하여 제160조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
- ② 주식의 발행 후 정관을 변경하여 당해 주식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관의 규정을 두거나 당해 규정에 관한 정관의 변경(동항의 정관의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목 시장거래등을 통한 주식 취득

제165조

- ① 제157조 내지 제160조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시장에서 하는 거래 또는 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2 제6항의 공개매수의 방법(이하 이 조에서 “시장거래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사회설치회사는 시장거래등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정함을 둔 경우에 있어서 제15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 중 “주주총회”는 “주주총회(제165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로 본다.

제3관 취득청구권부주식 및 취득조항부주식의 취득

제1목 취득청구권부주식의 취득 청구

제166조 취득의 청구

- ① 취득청구권부주식의 주주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취득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権付株式を取得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取得請求権付株式を取得すると引換えに第一百七条第二項第二号ロからホまでに規定する財産を交付する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財産の帳簿価額が当該請求の日における第四百六十一条第二項の分配可能額を超えてい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は、その請求に係る取得請求権付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取得請求権付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株券発行会社の株主がその有する取得請求権付株式について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取得請求権付株式に係る株券を株券発行会社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取得請求権付株式に係る株券が発行されてい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167条 効力の発生

1 株式会社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の日に、その請求に係る取得請求権付株式を取得する。

2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た株主は、その請求の日に、第一百七条第二項第二号(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第一百八条第二項第五号)に定め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当該各号に定める者となる。

一 第一百七条第二項第二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ロの社債の社債権者

二 第一百七条第二項第二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ハ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三 第一百七条第二項第二号ニ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ニの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社債権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四 第一百八条第二項第五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ロの他の株式の株主

3 前項第四号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同号に規定する他の株式の数に一株に満たない端数があるときは、これを切り捨て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株式会社は、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にその端数を乗じて得た額に相当する金銭を前条

청구권부주식을 취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취득청구권부주식의 취득과 교환하여 제107조 제2항 제2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재산을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재산의 장부가액이 청구일에 있어서 제461조 제2항의 분배가능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청구는 그 청구에 관련된 취득청구권부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취득청구권부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권발행회사의 주주가 그 소유하고 있는 취득청구권부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취득청구권부주식의 주권을 주권발행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청구권부주식의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7조 효력의 발생

① 주식회사는 전조 제1항의 청구일에 그 청구에 관한 취득청구권부주식을 취득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 전조 제1항의 청구를 한 주주는 그 청구일에 제107조 제2항 제2호(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제108조 제2항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당해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가 된다.

1. 제10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나목의 사채의 사채권자
2. 제107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다목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3. 제107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라목의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의 사채권자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4. 제108조 제2항 제5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나목의 다른 주식의 주주

③ 전항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동호의 다른 주식의 수에 1주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버리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마다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그 단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전조 제1항의 청구를 한 주주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た株主に対して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当該株式が市場価格のある株式である場合：当該株式一株の市場価格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一株当たり純資産額

4 前項の規定は、当該株式会社の社債及び新株予約権について端数があ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第二号中「一株当たり純資産額」とあるのは、「法務省令で定める額」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2目 取得条項付株式の取得

第168条 取得する日の決定

1 第一百七条第二項第三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株式会社は、同号ロの日を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第一百七条第二項第三号ロの日を定めたときは、株式会社は、取得条項付株式の株主(同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決定した取得条項付株式の株主)及びその登録株式質権者に対し、当該日の二週間前までに、当該日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第169条 取得する株式の決定等

1 株式会社は、第一百七条第二項第三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いて、取得条項付株式を取得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取得する取得条項付株式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取得条項付株式は、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をしたときは、株式会社は、同項の規定により決定した取得条項付株式の株主及びその登録株式質権者に対し、直ちに、当該取得条項付株式を取得する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주식이 시장가격이 있는 주식인 경우 : 주식 1주의 시장가격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2. 전호 외의 경우 : 1주당 순자산액

④ 전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사채 및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단수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 제2호 중 “1주당 순자산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본다.

제2목 취득조항부주식의 취득

제168조 취득일의 결정

① 제107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동호 나목의 날을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07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날을 정한 때에는 주식회사는 취득조항부주식의 주주(동호 다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취득조항부주식의 주주) 및 그 등록주식질권자에게 해당일의 2주간 전까지 해당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9조 취득하는 주식의 결정 등

① 주식회사는 제107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조항부주식을 취득하려는 때에는 그 취득하는 취득조항부주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취득조항부주식은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주식회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취득조항부주식의 주주 및 그 등록주식질권자에게 지체없이 취득조항부주식을 취득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4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第170条 効力の発生等

1 株式会社は、第一百七条第二項第三号イの事由が生じた日(同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第一号に掲げる日又は第二号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遅い日。次項及び第五項において同じ。)に、取得条項付株式(同条第二項第三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決定したもの。次項において同じ。)を取得する。

一 第一百七条第二項第三号イの事由が生じた日

二 前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又は同条第四項の公告の日から二週間を経過した日

2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取得条項付株式の株主(当該株式会社を除く。)は、第一百七条第二項第三号イの事由が生じた日に、同号(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第百八条第二項第六号)に定め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当該各号に定める者となる。

一 第一百七条第二項第三号ニ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ニの社債の社債権者

二 第一百七条第二項第三号ホ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ホ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三 第一百七条第二項第三号ヘ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ヘの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社債権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四 第百八条第二項第六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ロの他の株式の株主

3 株式会社は、第一百七条第二項第三号イの事由が生じた後、遅滞なく、取得条項付株式の株主及びその登録株式質権者(同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決定した取得条項付株式の株主及びその登録株式質権者)に対し、当該事由が生じ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百六十八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同条第三項の公告を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4 前項本文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④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0조 효력의 발생 등

① 주식회사는 제107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동호 다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날 또는 제2호의 날 중 늦은 날. 다음 항 및 제5항에서 같다)에 취득조항부주식(동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것. 다음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다.

1. 제107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2. 전조 제3항의 통지일 또는 동조 제4항의 공고일로부터 2주간을 경과한 날

② 다음 각호의 경우 취득조항부주식의 주주(당해 주식회사는 제외한다)는 제107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동호(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제108조 제2항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가 된다.

1. 제107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라목의 사채의 사채권자
2. 제107조 제2항 제3호 마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마목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3. 제107조 제2항 제3호 바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바목의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의 사채권자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4. 제108조 제2항 제6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나목의 다른 주식의 주주

③ 주식회사는 제107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취득조항부주식의 주주 및 그 등록주식질권자(동호 다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취득조항부주식의 주주 및 그 등록주식질권자)에게 당해 사유가 발생한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제2항의 통지 또는 동조 제3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항 본문의 통지는 공고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5 前各項の規定は、取得条項付株式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第一百七条第二項第三号ニからトまでに規定する財産を交付する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財産の帳簿価額が同号イの事由が生じた日における第四百六十一条第二項の分配可能額を超えているときは、適用しない。

第4款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

第171条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に関する決定

1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第百八条第一項第七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種類の株式をいう。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じ。)を発行した種類株式発行会社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全部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金銭等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金銭等(以下この条において「取得対価」という。)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取得対価が当該株式会社の株式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又はその数の算定方法

ロ 当該取得対価が当該株式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ものを除く。)であるときは、当該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ハ 当該取得対価が当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又はその算定方法

ニ 当該取得対価が当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付社債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ロに規定する事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ハに規定する事項

ホ 当該取得対価が当該株式会社の株式等以外の財産であるときは、当該財産の内容及び数若しくは額又はこれらの算定方法

二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株主に対する取得対価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三 株式会社が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を取得する日(以下この款において「取

⑤ 전각항의 규정은 취득조항부주식의 취득과 교환하여 제107조 제2항 제3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재산을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재산의 장부가액 이 동호 가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제461조 제2항의 분배가능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

제171조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한 결정

①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제108조 제1항 제7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종류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을 발행한 종류주식발행회사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전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과 교환하여 금전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금전등(이하 이 조에 있어 “취득대가”라고 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취득대가가 주식회사의 주식인 때에는 주식의 종류, 종류별 수 및 그 수의 산정방법

나. 취득대가가 주식회사의 사채(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인 때에는 사채의 종류, 종류별 각 사채금액의 합계액 및 그 산정방법

다. 취득대가가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을 제외한다)인 때에는 신주예약권의 내용, 수 및 그 산정방법

라. 취득대가가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인 때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나목의 사항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한 다목의 사항

마. 취득대가가 주식회사의 주식등 이외의 재산인 때에는 재산의 내용, 수, 금액 및 그 산정방법

2. 전호의 경우에는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취득대가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주식회사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취득하는 날(이하 이 관에서 “취득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得日」という。)

2 前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は、株主(当該株式会社を除く。)の有する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数に応じて取得対価を割り当てること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3 取締役は、第一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全部を取得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理由を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71条の2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対価等に関する書面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1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を取得する株式会社は、次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早い日から取得日後六箇月を経過する日までの間、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前条第一項の株主総会の日の二週間前の日(第三百十九条第一項の場合にあっては、同項の提案があった日)

二 第百七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又は同条第三項の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

2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を取得する株式会社の株主は、当該株式会社に對して、そ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株式会社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前項の書面の閲覧の請求

二 前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三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の請求

四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つて株式会社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第171条の3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をやめることの請求

第百七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が法令又は定款に違反する場合において、株主が不利益を受け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株主

일”이라고 한다)

② 전항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은 주주(당해 주식회사는 제외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수에 따라 취득대가를 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이사는 제1항의 주주총회에 있어서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전부를 취득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71조의2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대가등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등

①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취득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중 빠른 날로부터 취득후 6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전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그 외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전조 제1항의 주주총회 일로부터 2주전의 날(제319조 제1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제안이 있던 날)
2. 제172조 제2항의 통지날 또는 동조 제3항의 공고날 중에 빠른 날

②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취득하는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회사에 대해 영업 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주식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1. 전항의 서면의 열람 청구
2. 전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
3. 전항의 전자적 기록으로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 한 것의 열람의 청구
4. 전항의 전자적 기록으로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주식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제공할 것의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의 청구

제171조의3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유지청구

제171조 제1항에 의한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주주는 주식회사에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は、株式会社に対し、当該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をやめ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172条 裁判所に対する価格の決定の申立て

1 第一百七十一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には、次に掲げる株主は、取得日の二十日前の日から取得日の前日までの間に、裁判所に対し、株式会社による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の価格の決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当該株主総会に先立って当該株式会社による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に反対する旨を当該株式会社に対し通知し、かつ、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取得に反対した株主(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る。)

二 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

2 株式会社は、取得日の二十日前までに、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株主に対し、当該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全部を取得する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4 株式会社は、裁判所の決定した価格に対する取得日後の年六分の利率により算定した利息をも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株式会社は、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の価格の決定があるまでは、株主に対し、当該株式会社がその公正な価格と認める額を支払うことができる。

第173条 効力の発生

1 株式会社は、取得日に、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全部を取得する。

2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株式会社以外の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株主(前条第一項の申立てをした株主を除く。)は、取得日に、第一百七十一条第一項の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定めに従い、当該各号に定める者となる。

一 第一百七十一条第一項第一号イ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イの株式の株主

二 第一百七十一条第一項第一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ロの社債の社債権者

三 第一百七十一条第一項第一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

대해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2조 법원에 대한 가격결정의 청구

① 제17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 다음의 주주는 취득일의 20일전의 날로부터 취득일 전날까지 법원에 대해 주식회사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취득할 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주주총회 전에 주식회사에 의한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반대하는 뜻을 주식회사에 통지하거나 주주총회에 있어서 당해 취득에 반대하는 주주(주주총회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한한다)

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② 주식회사는 취득일 20일 전까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주주에 대해서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전부를 취득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는 법원이 결정한 가격에 대하여 취득일 후 연6분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는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가격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주에게 주식회사가 공정한 가격이라고 판단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3조 효력의 발생

① 주식회사는 취득일에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전부를 취득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식회사 이외의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주주(전조 제1항의 청구를 한 주주는 제외한다)는 취득일에 제171조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1. 제17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가목의 주식의 주주

2. 제17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나목의 사채의 사채권자

3. 제17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다목의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号ハ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 四 第一百七十一条第一項第一号ニ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ニの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社債権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第173条の2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に関する書面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 1 株式会社は、取得日後遅滞なく、株式会社が取得した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数その他の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に関する事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株式会社は、取得日から六箇月間、前項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 3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を取得した株式会社の株主又は取得日に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株主であった者は、当該株式会社に対して、そ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株式会社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前項の書面の閲覧の請求
 - 二 前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 三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の請求
 - 四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って株式会社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第5款 相続人等に対する売渡しの請求

第174条

相続人等に対する売渡しの請求に関する定款の定め

株式会社は、相続その他の一般承継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株式(譲渡制限株式に限る。)を取得した者に対し、当該株式を当該株式会社に売り渡す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4. 제171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라목의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의 사채권자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제173조의2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등

- ① 주식회사는 취득일 후에 지체 없이 주식회사가 취득한 전부취득조항부종류 주식의 수, 그 외의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 ② 주식회사는 취득일부터 6개월간 전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취득한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취득일에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주주이었던 자는 주식회사에 대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주식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1. 전항의 서면의 열람의 청구
2. 전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
3. 전항의 전자적 기록으로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의 열람 청구
4. 전항의 전자적 기록으로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주식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제공할 것의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의 청구

제5관 상속인등에 대한 매도청구

제174조

상속인등에 대한 매도청구에 관한 정관의 정함

주식회사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주식(양도제한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그 주식을 당해 주식회사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第175条 売渡しの請求の決定

1 株式会社は、前条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いて、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都度、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二 前号の株式を有する者の氏名又は名称

2 前項第二号の者は、同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同号の者以外の株主の全部が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176条 売渡しの請求

1 株式会社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同項第二号の者に対し、同項第一号の株式を当該株式会社に売り渡す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株式会社が相続その他の一般承継があつたことを知った日から一年を経過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は、その請求に係る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株式会社は、いつでも、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第177条 売買価格の決定

1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つた場合には、第一百七十五条第一項第一号の株式の売買価格は、株式会社と同項第二号の者との協議によって定める。

2 株式会社又は第一百七十五条第一項第二号の者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つた日から二十日以内に、裁判所に対し、売買価格の決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裁判所は、前項の決定をするに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の時における株式会社の資産状態その他一切の事情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二項の期間内に同項の申立てがあつたときは、当該申立てにより裁判所が定めた額をもって第一百七十五条第一項第一号の株式の売買価格とする。

제175조 매도청구의 결정

① 주식회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조 제1항의 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다음 조 제1항의 청구를 하는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2. 전항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 전항 제2호의 자는 동항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동호의 자 외에 주주 전원이 당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 매도청구

① 주식회사는 전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동항 제2호의 자에 대하여 동항 제1호의 주식을 당해 주식회사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식회사가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청구는 그 청구와 관련하여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는 언제든지 제1항의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제177조 매매가액의 결정

① 전조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 제175조 제1항 제1호의 주식의 매매가액은 주식회사와 동항 제2호의 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주식회사 또는 제175조 제1항 제2호의 자는 전조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전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전조 제1항에 따른 청구시의 주식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에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당해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 금액을 제175조 제1항 제1호의 주식의 매매가액으로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5 第二項の期間内に同項の申立てがないとき(当該期間内に第一項の協議が調った場合を除く。)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は、その効力を失う。

第6款 株式の消却

第178条

1 株式会社は、自己株式を消却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消却する自己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自己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前項後段の規定による決定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節の二 特別支配株主の株式等売渡請求

第179条 株式等売渡請求

1 株式会社の特別支配株主(株式会社の総株主の議決権の十分の九(これを上回る割合を当該株式会社の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割合)以上を当該株式会社以外の者及び当該者が発行済株式の全部を有する株式会社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法人(以下この条及び次条第一項において「特別支配株主完全子法人」という。)が有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者をいう。以下同じ。)は、当該株式会社の株主(当該株式会社及び当該特別支配株主を除く。)の全員に対し、その有する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全部を当該特別支配株主に売り渡す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特別支配株主完全子法人に対しては、その請求をしないことができる。

2 特別支配株主は、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以下この章及び第八百四十六条の二第二項第一号において「株式売渡請求」という。)をするときは、併せて、その株式売渡請求に係る株式を発行している株式会社(以下「対象会社」という。)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対象会社及び当該特別支配株主を除く。)の全員に対し、その有する対象会社の新株予約権の全部を当該特別支配株主に売り渡す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特別支配株主完全子法人に対しては、その請求をしないことができる。

⑤ 제2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청구가 없는 때에(기간 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는 전조 제1항의 청구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6관 주식의 소각

제178조

①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각할 자기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 전항 후단의 결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4절2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

제179조 주식등매도청구

① 주식회사의 특별지배주주(주식회사 총주주의 의결권의 10분의 9(이것을 상회하는 비율을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상을 주식회사 이외의 자 및 당해자가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주식회사 그 외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1항에서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식회사의 주주(당해주식회사 및 당해특별지배주주는 제외한다) 전원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특별지배주주에게 매도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특별지배주주는 전항의 청구(이하 이 장 및 제84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주식매도청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주식매도청구와 관련된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대상회사 및 당해특별지배주주는 제외한다)의 전원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의 신주예약권 전부를 특별지배주주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3 特別支配株主は、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以下「新株予約権売渡請求」という。)をするときは、併せて、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全部を当該特別支配株主に売り渡すこと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179条の2 株式等売渡請求の方法

- 1 株式売渡請求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特別支配株主完全子法人に対して株式売渡請求をし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特別支配株主完全子法人の名称
 - 二 株式売渡請求によりその有する対象会社の株式を売り渡す株主(以下「売渡株主」という。)に対して当該株式(以下この章において「売渡株式」という。)の対価として交付する金銭の額又はその算定方法
 - 三 売渡株主に対する前号の金銭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 四 株式売渡請求に併せて新株予約権売渡請求(その新株予約権売渡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おける前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含む。以下同じ。)を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次に掲げる事項
 - イ 特別支配株主完全子法人に対して新株予約権売渡請求をし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特別支配株主完全子法人の名称
 - ロ 新株予約権売渡請求によりその有する対象会社の新株予約権を売り渡す新株予約権者(以下「売渡新株予約権者」という。)に対して当該新株予約権(当該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前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を含む。以下この編において「売渡新株予約権」という。)の対価として交付する金銭の額又はその算定方法
 - ハ 売渡新株予約権者に対するロの金銭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 五 特別支配株主が売渡株式(株式売渡請求に併せて新株予約権売渡請求をする場合にあっては、売渡株式及び売渡新株予約権。以下「売渡株式等」という。)を取得する日(以下この節において「取得日」という。)
 -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③ 특별지배주주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신주예약권에 대하여 전항의 청구(이하 “신주예약권매도청구”라고 한다)를 할 때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 전부를 특별지배주주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신주예약권에 관해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9조의2 주식등매도청구의 방법

① 주식매도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1.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에 대해서 주식매도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때에는 그 취지 및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의 명칭
2. 주식매도청구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주주(이하 “매도주주”라 한다)에게 주식(이하 이 장에서 “매도주식”이라 한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또는 그 산정 방법
3. 매도주주에 대한 전항의 금전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도청구와 함께 신주예약권매도청구(신주예약권매도청구에 관련된 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것인 경우의 전조 제3항의 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때에는 그 뜻 및 다음의 사항

가.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에 대해 신주예약권매도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 때에는 그 뜻 및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의 명칭

나. 신주예약권매도청구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의 신주예약권을 매도하는 신주예약권자(이하 “매도신주예약권자”라고 한다)에 대해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것인 경우 전조 제3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매도신주예약권”이라 한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또는 그 산정 방법

다. 매도신주예약권자에 대한 나.의 금전 배정에 관한 사항

5. 특별지배주주가 매도주식(주식매도청구와 함께 신주예약권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도주식 및 매도신주예약권. 이하 “매도주식등”이라고 한다)을 취득하는 날(이하 이 절에서는 “취득일”이라 한다)
6. 전 각 호 외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2 対象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は、特別支配株主は、対象会社の発行する種類の株式の内容に応じ、前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として、同項第二号の金銭の割当てについて売渡株式の種類ごとに異なる取扱いを行う旨及び当該異なる取扱いの内容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は、売渡株主の有する売渡株式の数(前項に規定する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各種類の売渡株式の数)に応じて金銭を交付すること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179条の3 対象会社の承認

1 特別支配株主は、株式売渡請求(株式売渡請求に併せて新株予約権売渡請求をする場合にあっては、株式売渡請求及び新株予約権売渡請求。以下"株式等売渡請求"という。)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対象会社に対し、その旨及び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通知し、そ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対象会社は、特別支配株主が株式売渡請求に併せて新株予約権売渡請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新株予約権売渡請求のみを承認することはできない。

3 取締役会設置会社が第一項の承認をするか否かの決定をするに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4 対象会社は、第一項の承認をするか否かの決定をしたときは、特別支配株主に対し、当該決定の内容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79条の4 売渡株主等に対する通知等

1 対象会社は、前条第一項の承認をしたときは、取得日の二十日前までに、次の各号に掲げる者に対し、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売渡株主(特別支配株主が株式売渡請求に併せて新株予約権売渡請求をする場合にあっては、売渡株主及び売渡新株予約権者。以下この節において"売渡株主等"という。): 当該承認をした旨、特別支配株主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第百七十九条の二第一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項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二 売渡株式の登録株式質権者(特別支配株主が株式売渡請求に併せて新株予約権売渡請求をする場合にあっては、売渡株式の登録株式質権者及び売渡新株予約権の登録新株予約権質権者(第二百七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登録新

② 대상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는 특별지배주주는 대상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전항 제3호의 사항으로서 동항 제2호의 금전 배정에 관해 매도주식의 종류마다 다른 취급을 하는 뜻 및 다른 취급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은 매도주주가 소유하는 매도주식의 수(전항에서 규정하는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각 종류의 매도주식의 수)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79조의3 대상회사의 승인

① 특별지배주주는 주식매도청구(주식매도청구와 함께 신주예약권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도청구 및 신주예약권매도청구. 이하 “주식등매도청구”라고 한다)를 하려고 할 때에는 대상회사에 대하여 그 취지 및 전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상회사는 특별지배주주가 주식매도청구와 함께 신주예약권매도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주예약권매도청구만 승인할 수 없다.

③ 이사회설치회사가 제1항의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려면 이사회회의 결의로 해야 한다.

④ 대상회사는 제1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특별지배주주에 대해서 해당 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179조의4 매도주주등에 대한 통지등

① 대상회사는 전조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취득일의 2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도주주(특별지배주주가 주식매도청구와 함께 신주예약권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도주주 및 매도신주예약권자. 이하 이 절에서 “매도주주등”이라 한다) : 승인을 한 뜻, 특별지배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제179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 5 호의 사항, 그 외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2. 매도주식의 등록주식질권자(특별지배주주가 주식매도청구와 함께 신주예약권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도주식의 등록주식질권자 및 매도신주예약권의 등록신주예약권질권자(제270조 제1항의 등록신주예약권질권자를 말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株予約権質権者をいう。))：当該承認をした旨

2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売渡株主に対してするものを除く。)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3 対象会社が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前項の公告をしたときは、特別支配株主から売渡株主等に対し、株式等売渡請求がされたものとみなす。

4 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第二項の公告の費用は、特別支配株主の負担とする。

第179条の5 株式等売渡請求に関する書面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1 対象会社は、前条第一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又は同条第二項の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から取得日後六箇月(対象会社が公開会社でない場合にあっては、取得日後一年)を経過する日までの間、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特別支配株主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二 第百七十九条の二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

三 第百七十九条の三第一項の承認をした旨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2 売渡株主等は、対象会社に対して、そ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対象会社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前項の書面の閲覧の請求

二 前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三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の請求

四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って対象会社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第179条の6 株式等売渡請求の撤回

1 特別支配株主は、第百七十九条の三第一項の承認を受けた後は、取得日の前日までに対象会社の承諾を得た場合に限り、売渡株式等の全部について株式等売渡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한다)) : 승인을 한 취지

- ② 전항의 통지(매도주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대상회사가 제1항의 통지 또는 전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특별지배주주로부터 매도주주등에 대해 주식등매도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공고 비용은 특별지배주주가 부담한다.

제179조의5 주식등매도청구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등

- ① 대상회사는 전조 제1항 제1호의 통지일 또는 동조 제2항의 공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취득일 후 6개월(대상회사가 공개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취득일 후 1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또는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1. 특별지배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제17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
 - 3. 제179조의3 제1항의 승인을 한 뜻
 - 4. 전3호 사항 외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 ② 매도주주등은 대상회사에 대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대상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1. 전항의 서면의 열람 청구
 - 2. 전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
 - 3.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의 열람 청구
 - 4.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대상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제공할 것의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청구

제179조의6 주식등매도청구의 철회

- ① 특별지배주주는 제179조의3 제1항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취득일의 전일까지 대상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 매도주식등의 전부에 관하여 주식등매도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 2 取締役会設置会社が前項の承諾をするか否かの決定をするに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 3 対象会社は、第一項の承諾をするか否かの決定をしたときは、特別支配株主に対し、当該決定の内容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対象会社は、第一項の承諾をしたときは、遅滞なく、売渡株主等に対し、当該承諾をし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5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 6 対象会社が第四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前項の公告をしたときは、株式等売渡請求は、売渡株式等の全部について撤回されたものとみなす。
- 7 第四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第五項の公告の費用は、特別支配株主の負担とする。
- 8 前各項の規定は、新株予約権売渡請求のみを撤回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四項中"売渡株主等"とあるのは、"売渡新株予約権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179条の7 売渡株式等の取得をやめることの請求

- 1 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売渡株主が不利益を受け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売渡株主は、特別支配株主に対し、株式等売渡請求に係る売渡株式等の全部の取得をやめ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株式売渡請求が法令に違反する場合
 - 二 対象会社が第百七十九条の四第一項第一号(売渡株主に対する通知に係る部分に限る。)又は第百七十九条の五の規定に違反した場合
 - 三 第百七十九条の二第一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事項が対象会社の財産の状況その他の事情に照らして著しく不当である場合
- 2 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売渡新株予約権者が不利益を受け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売渡新株予約権者は、特別支配株主に対し、株式等売渡請求に係る売渡株式等の全部の取得をやめ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新株予約権売渡請求が法令に違反する場合
 - 二 対象会社が第百七十九条の四第一項第一号(売渡新株予約権者に対する通知に係る部分に限る。)又は第百七十九条の五の規定に違反した場合
 - 三 第百七十九条の二第一項第四号ロ又はハに掲げる事項が対象会社の財産

- ② 이사회설치회사가 전항의 승낙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대상회사는 제1항의 승낙을 결정한 때에는 특별지배주주에 대하여 결정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④ 대상회사는 제1항의 승낙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도주주등에 대하여 승낙한 뜻을 통지해야 한다.
 - ⑤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 ⑥ 대상회사가 제4항의 통지 또는 전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주식등매도청구는 매도주식등의 전부에 관하여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⑦ 제4항의 통지 또는 제5항의 공고의 비용은 특별지배주주가 부담한다.
- ⑧ 전 각 항은 신주예약권매도청구만을 철회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매도주주등”은 “매도신주예약권자”로 한다.

제179조의7 매도주식등의 취득유지청구

- ① 다음의 경우 매도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매도주주는 특별지배주주에 대해 주식등매도청구와 관련되는 매도주식등의 전부 취득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주식매도청구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2. 대상회사가 제179조의4 제1항 제1호(매도주주에 대한 통지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또는 제17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제179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대상회사의 재산상황 그 외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 ② 다음의 경우 매도신주예약권자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매도신주예약권자는 특별지배주주에 대해 주식등매도청구에 관련된 매도주식등의 전부 취득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신주예약권매도청구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2. 대상회사가 제179조의4 제1항 제1호(매도신주예약권자에 대한 통지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또는 제17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제179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 또는 다목의 사항이 대상회사의 재산상황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の状況その他の事情に照らして著しく不当である場合

第179条の8 売買価格の決定の申立て

- 1 株式等売渡請求があった場合には、売渡株主等は、取得日の二十日前の日から取得日の前日までの間に、裁判所に対し、その有する売渡株式等の売買価格の決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特別支配株主は、裁判所の決定した売買価格に対する取得日後の年六分の利率により算定した利息をも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 3 特別支配株主は、売渡株式等の売買価格の決定があるまでは、売渡株主等に対し、当該特別支配株主が公正な売買価格と認める額を支払うことができる。

第179条の9 売渡株式等の取得

- 1 株式等売渡請求をした特別支配株主は、取得日に、売渡株式等の全部を取得す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り特別支配株主が取得した売渡株式等が譲渡制限株式又は譲渡制限新株予約権(第二百四十三条第二項第二号に規定する譲渡制限新株予約権をいう。)であるときは、対象会社は、当該特別支配株主が当該売渡株式等を取得したことについて、第百三十七条第一項又は第二百六十三条第一項の承認をする旨の決定をしたものとみなす。

第179条の10 売渡株式等の取得に関する書面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 1 対象会社は、取得日後遅滞なく、株式等売渡請求により特別支配株主が取得した売渡株式等の数その他の株式等売渡請求に係る売渡株式等の取得に関する事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対象会社は、取得日から六箇月間(対象会社が公開会社でない場合にあつては、取得日から一年間)、前項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 3 取得日に売渡株主等であった者は、対象会社に対して、そ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

그 외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제179조의8 매매가격의 결정청구

- ① 주식등매도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주주등은 취득일의 20일전부터 취득일 전날까지 법원에 대하여 소유하는 매도주식등의 매매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특별지배주주는 법원이 결정한 매매가격에 대하여 취득일 후 연 6분의 이율로 산정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특별지배주주는 매도주식등의 매매가격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매도주주등에게 특별지배주주가 공정한 매매가격이라고 판단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9조의9 매도주식등의 취득

- ① 주식등매도청구를 한 특별지배주주는 취득일에 매도주식등의 전부를 취득한다.
- ② 전항에 따라 특별지배주주가 취득한 매도주식등이 양도제한주식 또는 양도제한신주예약권(제243조 제2항 제2호의 양도제한신주예약권을 말한다)인 때에는 대상회사는 특별지배주주가 매도주식등을 취득한 것에 관해서 제137조 제1항 또는 제263조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것을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9조의10 매도주식등의 취득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등

- ① 대상회사는 취득일 후 지체 없이 주식등매도청구에 의하여 특별지배주주가 취득한 매도주식등의 수, 그 외의 주식등 매도청구와 관련된 매도주식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또는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대상회사는 취득일부터 6개월간(대상회사가 공개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간) 전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취득일에 매도주주등이었던 자는 대상회사에 대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대상회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請求をするには、当該対象会社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前項の書面の閲覧の請求
- 二 前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 三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の請求
- 四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って対象会社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第5節 株式の併合等

第1款 株式の併合

第180条 株式の併合

- 1 株式会社は、株式の併合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株式会社は、株式の併合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都度、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併合の割合
 - 二 株式の併合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以下この款において"効力発生日"という)
 - 三 株式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は、併合する株式の種類
 - 四 効力発生日における発行可能株式総数
- 3 前項第四号の発行可能株式総数は、効力発生日における発行済株式の総数の四倍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4 取締役は、第二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株式の併合を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理由を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81条 株主に対する通知等

- 1 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の二週間前までに、株主(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前条第二項第三号の種類の種類株主。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じ。)及びその登録株式質権者に対し、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사가 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1. 전항의 서면 열람의 청구
2. 전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
3.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의 열람 청구
4.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대상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제공할 것의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청구

제5절 주식의 병합 등

제1관 주식의 병합

제180조 주식의 병합

- ① 주식회사는 주식의 병합을 할 수 있다.
- ② 주식회사는 주식의 병합을 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병합의 비율
 2.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하 이 관에서 “효력발생일”이라고 한다)
 3. 주식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는 병합하는 주식의 종류
 4. 효력발생일의 발행가능주식총수
- ③ 전항 제4호의 발행가능주식총수는 효력 발생일의 발행주식총수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공개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이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81조 주주에 대한 통지 등

- ① 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의 2주일전까지 주주(종류주식발행 회사의 경우에는 전조 제2항 제3호의 종류의 종류주주. 이하 이 관에서 같다) 및 등록주식질권자에게 동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第182条 効力の発生

1 株主は、効力発生日に、その日の前日に有する株式（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第百八十条第二項第三号の種類の株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数に同条第二項第一号の割合を乗じて得た数の株式の株主となる。

2 株式の併合をした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に、第百八十条第二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当該事項に係る定款の変更をしたものとみなす。

第182条の2 株式の併合に関する事項に関する書面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1 株式の併合（単元株式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第百八十条第二項第三号の種類の株式の単元株式数。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を定款で定めてい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単元株式数に同条第二項第一号の割合を乗じて得た数に一に満たない端数が生ず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じ。）をする株式会社は、次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早い日から効力発生日後六箇月を経過する日までの間、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百八十条第二項の株主総会（株式の併合をするために種類株主総会の決議を要す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種類株主総会を含む。第百八十二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同じ。）の日の二週間前の日（第三百十九条第一項の場合にあつては、同項の提案があった日）

二 第百八十二条の四第三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百八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株主に対する通知の日又は第百八十一条第二項の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

2 株式の併合をする株式会社の株主は、当該株式会社に対して、そ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株式会社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前項の書面の閲覧の請求

二 前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三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の請求

四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つて株式会社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제182조 효력의 발생

- ① 주주는 효력발생일에 그 전일에 소유한 주식(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제180조 제2항 제3호의 종류주식,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에 동조 제2항 제1호의 비율을 곱해서 얻은 수의 주식의 주주가 된다.
- ② 주식병합을 한 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에 제180조 제2항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당해사항과 관련된 정관변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2조의2 주식병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등

- ① 주식병합(단원주식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제180조 제2항 제3호의 종류주식의 단원주식수,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원주식수에 동조 제2항 제1호의 비율을 곱해 얻은 수에 1에 미치지 못하는 단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을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의 날 중 빠른 날로부터 효력발생일 후 6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동항 각 호의 사항 그 외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또는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제180조 제2항의 주주총회(주식병합을 위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를 포함한다. 제182조의4 제2항에서 같다)일로부터 2주일전의 날(제319조 제1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제안이 있었던 날)
2. 제182조의4 제3항에 따라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181조 제1항의 주주에 대한 통지일 또는 제181조 제2항의 공고일 중 빠른 날

- ② 주식을 병합하는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회사에 대해 그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주식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1. 전항 서면의 열람 청구
2. 전항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
3.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의 열람 청구
4.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제공할 것의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청구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第182条の3 株式の併合をやめることの請求

株式の併合が法令又は定款に違反する場合において、株主が不利益を受け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株主は、株式会社に対し、当該株式の併合をやめ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182条の4 反対株主の株式買取請求

1 株式会社が株式の併合をすることにより株式の数に一株に満たない端数が生ずる場合には、反対株主は、当該株式会社に対し、自己の有する株式のうち一株に満たない端数となるものの全部を公正な価格で買い取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に規定する"反対株主"とは、次に掲げる株主をいう。

一 第一百八十条第二項の株主総会に先立って当該株式の併合に反対する旨を当該株式会社に対し通知し、かつ、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株式の併合に反対した株主(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る。)

二 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

3 株式会社が株式の併合をする場合における株主に対する通知についての第一百八十一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二週間"とあるのは、"二十日"とする。

4 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以下この款において"株式買取請求"という。)は、効力発生日の二十日前の日から効力発生日の前日までの間に、その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株券が発行されている株式について株式買取請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株式の株主は、株式会社に対し、当該株式に係る株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株券について第二百二十三条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た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6 株式買取請求をした株主は、株式会社の承諾を得た場合に限り、その株式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7 第一百三十三条の規定は、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제182조의3 주식병합의 유지청구

주식병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해당 주식병합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2조의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① 주식회사가 주식을 병합함으로써 주식의 수가 1주에 못 미치는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 중 1주에 못 미치는 단수가 되는 것 전부를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반대주주”란 다음의 주주를 말한다.

1. 제180조 제2항의 주주총회에 앞서 주식 병합에 반대하는 뜻을 주식회사에 통지하고 동시에 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에 반대한 주주(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③ 주식회사가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제181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2주일”은 “20일”로 한다.

④ 제1항의 청구(이하 이 관에서 “주식매수청구”라고 한다)는 효력발생일의 20일전의 날로부터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주식매수청구와 관련된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마다의 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주권이 발행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려고 할 때에는 당해 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권에 대해 제223조에 의한 청구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는 주식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 주식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⑦ 제133조는 주식매수청구와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第182条の5 株式の価格の決定等

- 1 株式買取請求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株式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株主と株式会社との間に協議が調ったときは、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から六十日以内にその支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株式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効力発生日から三十日以内に協議が調わないときは、株主又は株式会社は、その期間の満了の日後三十日以内に、裁判所に対し、価格の決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 3 前条第六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効力発生日から六十日以内に同項の申立てがないときは、その期間の満了後は、株主は、いつでも、株式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 4 株式会社は、裁判所の決定した価格に対する第一項の期間の満了の日後の年六分の利率により算定した利息をも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 5 株式会社は、株式の価格の決定があるまでは、株主に対し、当該株式会社が公正な価格と認める額を支払うことができる。
- 6 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買取りは、効力発生日に、その効力を生ずる。
- 7 株券発行会社は、株券が発行されている株式について株式買取請求があったときは、株券と引換えに、その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代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182条の6 株式の併合に関する書面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 1 株式の併合をした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後遅滞なく、株式の併合が効力を生じた時における発行済株式(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第百八十条第二項第三号の種類の発行済株式)の総数その他の株式の併合に関する事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から六箇月間、前項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 3 株式の併合をした株式会社の株主又は効力発生日に当該株式会社の株主であった者は、当該株式会社に対して、そ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

제182조의5 주가가격의 결정 등

- ① 주식매수청구가 있었던 경우 주가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주주와 주식회사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한다.
- ② 주가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 또는 주식회사는 그 기간의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전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경우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후에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주식회사는 법원이 결정한 가격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연 6분의 이율로 산정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주식회사는 주가가격이 결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주식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판단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청구와 관련된 주식의 매수는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이 있다.
- ⑦ 주권발행회사는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주권과 교환하여 주식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2조의6 주식병합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등

- ① 주식을 병합한 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 후에 지체 없이 주식병합 효력이 발생한 때의 발행주식(종류주식발행 회사의 경우에는 제180조 제2항 제3호의 종류발행주식)의 총수 그 외의 주식병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또는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전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주식을 병합한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효력발생일에 주식회사의 주주이었던 자는 주식회사에 대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주식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불하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株式会社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前項の書面の閲覧の請求
- 二 前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 三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の請求
- 四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って株式会社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第2款 株式の分割

第183条 株式の分割

- 1 株式会社は、株式の分割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株式会社は、株式の分割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都度、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株式の分割により増加する株式の総数の株式の分割前の発行済株式(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第三号の種類の発行済株式)の総数に対する割合及び当該株式の分割に係る基準日
 - 二 株式の分割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
 - 三 株式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は、分割する株式の種類

第184条 効力の発生等

- 1 基準日において株主名簿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ている株主(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基準日において株主名簿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ている前条第二項第三号の種類の種類の株主)は、同項第二号の日に、基準日に有する株式(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同項第三号の種類の株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数に同条第二項第一号の割合を乗じて得た数の株式を取得する。
- 2 株式会社(現に二以上の種類の株式を発行しているものを除く。)は、第四百六十六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主総会の決議によらないで、前条第二項第二号の日における発行可能株式総数をその日の前日の発行可能株式総数に同項第一号の割合を乗じて得た数の範囲内で増加する定款の変更をすることができる。

여야 한다.

1. 전항 서면의 열람청구
2. 전항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
3.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의 열람청구
4.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제공할 것의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청구

제2관 주식의 분할

제183조 주식의 분할

- ① 주식회사는 주식의 분할을 할 수 있다.
- ② 주식회사는 주식의 분할을 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주주총회(이사회설치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의 분할에 의하여 증가하는 주식의 총수의 주식의 분할 전 발행주식총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제3호의 종류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 및 주식의 분할의 기준일
2. 주식의 분할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
3. 주식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는 분할하는 주식의 종류

제184조 효력의 발생 등

- ①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되어 있는 주주(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되어 있는 전조 제2항 제3호의 종류주주)는 동항 제2호의 날에 기준일에 가진 주식(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동항 제3호의 종류주식.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에 동조 제2항 제1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수의 주식을 취득한다.
- ② 주식회사(현재 2이상의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는 제46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조 제2항 제2호의 날에 발행가능주식총수를 그 전일의 발행가능주식총수에 동항 제1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수의 범위내에서 증가하는 정관의 변경을 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第3款 株式無償割当て

第185条 株式無償割当て

株式会社は、株主(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ある種類の種類株主) に対して新たに払込みをさせないで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割当て(以下この款において「株式無償割当て」という。) 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186条 株式無償割当てに関する事項の決定

1 株式会社は、株式無償割当て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都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株主に割り当てる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又はその数の算定方法
- 二 当該株式無償割当て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
- 三 株式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は、当該株式無償割当てを受ける株主の有する株式の種類

2 前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は、当該株式会社以外の株主(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同項第三号の種類の種類株主) の有する株式(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同項第三号の種類の株式) の数に応じて同項第一号の株式を割り当てること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は、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 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187条 株式無償割当ての効力の発生等

1 前条第一項第一号の株式の割当てを受けた株主は、同項第二号の日に、同項第一号の株式の株主となる。

2 株式会社は、前条第一項第二号の日後遅滞なく、株主(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同項第三号の種類の種類株主) 及びその登録株式質権者に対し、当該株主が割当てを受けた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3관 주식무상배정

제185조 주식무상배정

주식회사는 주주(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어느 종류의 종류주주)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을 시키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주식배정(이하 이 관에 있어서 “주식무상배정”이라고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86조 주식무상배정에 관한 사항의 결정

- ① 주식회사는 주식무상배정을 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주에게 배정할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마다의 수) 또는 그 수의 산정방법
 2. 주식무상배정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
 3. 주식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는 주식무상배정을 받을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 종류
- ② 전항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은 주식회사 외의 주주(종류주식발행 회사의 경우에는 동항 제3호의 종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동항 제3호의 종류주식)의 수에 따라 동항 제1호의 주식을 배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호의 사항의 결정은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7조 주식무상배정의 효력의 발생 등

- ① 전조 제1항 제1호의 주식배정을 받은 주주는 동항 제2호의 날에 동항 제1호의 주식의 주주가 된다.
- ② 주식회사는 전조 제1항 제2호의 날 이후 지체없이 주주(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동항 제3호의 종류주주) 및 그 등록주식질권자에게 당해 주주가 배정을 받은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第6節 単元株式数

第1款 総則

第188条 単元株式数

株式会社は、その発行する株式について、一定の数の株式をもって株主が株主総会又は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一個の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一単元の株式とする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一定の数は、法務省令で定める数を超えることはできない。

3 種類株式発行会社においては、単元株式数は、株式の種類ごとに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189条 単元未満株式についての権利の制限等

1 単元株式数に満たない数の株式(以下「単元未満株式」という。)を有する株主(以下「単元未満株主」という。)は、その有する単元未満株式について、株主総会及び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株式会社は、単元未満株主が当該単元未満株式について次に掲げる権利以外の権利の全部又は一部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一 第七十一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取得対価の交付を受ける権利

二 株式会社による取得条項付株式の取得と引換えに金銭等の交付を受ける権利

三 第八十五条に規定する株式無償割当てを受ける権利

四 第九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単元未満株式を買い取ることを請求する権利

五 残余財産の分配を受ける権利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権利

3 株券発行会社は、単元未満株式に係る株券を発行しないことができる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第190条 理由の開示

単元株式数を定める場合には、取締役は、当該単元株式数を定める定款の変更

제6절 단원주식수

제1관 총칙

제188조 단원주식수

- ① 주식회사는 그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일정 수의 주식을 주주가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에서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1단원의 주식으로 한다는 뜻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일정 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 단원 주식수는 주식의 종류마다 정하여야 한다.

제189조 단원미만주식에 대한 권리의 제한 등

- ① 단원 주식수 미만의 주식(이하 “단원미만주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단원미만주주”라고 한다)는 그 소유하고 있는 단원미만주식에 관하여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주식회사는 단원미만주주가 단원미만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권리 외에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
 1. 제171조 제1항 제1호의 취득대가의 교부를 받을 권리
 2. 주식회사에 의한 취득조항부주식의 취득과 교환하여 금전등의 교부를 받을 권리
 3. 제185조의 주식무상배정을 받을 권리
 4.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미만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권리
 5.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
 6. 전 각호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권리
- ③ 주권발행회사는 단원미만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90조 이유의 공시

단원주식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단원주식수를 정하는 정관의 변경을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を目的とする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単元株式数を定めることを必要とする理由を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91条 定款変更手続の特則

株式会社は、次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場合には、第四百六十六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主総会の決議によらないで、単元株式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各種類の株式の単元株式数。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増加し、又は単元株式数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を設ける定款の変更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株式の分割と同時に単元株式数を増加し、又は単元株式数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を設けるものであること。
- 二 イに掲げる数がロに掲げる数を下回るものでないこと。
 - イ 当該定款の変更後において各株主がそれぞれ有する株式の数を単元株式数で除して得た数
 - ロ 当該定款の変更前において各株主がそれぞれ有する株式の数(単元株式数を定め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株式の数を単元株式数で除して得た数)

第2款 単元未満株主の買取請求

第192条 単元未満株式の買取りの請求

- 1 単元未満株主は、株式会社に対し、自己の有する単元未満株式を買い取ること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は、その請求に係る単元未満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単元未満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た単元未満株主は、株式会社の承諾を得た場合に限り、当該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第193条 単元未満株式の価格の決定

- 1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つた場合に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をもって当該請求に係る単元未満株式の価格とする。
 - 一 当該単元未満株式が市場価格のある株式である場合 当該単元未満株式の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단원주식수를 정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91조 정관변경 절차의 특칙

주식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46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원주식수 (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각 종류주식의 단원주식수.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늘이거나 단원주식수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두는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

1. 주식의 분할과 동시에 단원주식수를 늘이거나 단원주식수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두는 경우
2. 가목의 수가 나목의 수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 정관의 변경 후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를 단원주식수로 나누어 얻은 수
 - 나. 정관의 변경 전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단원주식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수를 단원주식수로 나누어 얻은 수)

제2관 단원미만주주의 매수청구

제192조 단원미만주식의 매수청구

- ① 단원미만주주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단원미만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청구는 그 청구에 관련된 단원미만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단원미만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청구를 한 단원미만주주는 주식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제193조 단원미만주식의 가격결정

- ① 전조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라 당해 각호의 금액을 당해 청구의 단원미만주식의 가격으로 한다.
 1. 단원미만주식이 시장가격이 있는 주식인 경우 : 단원미만주식의 시장가격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市場価格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株式会社と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た単元未満株主との協議によって定める額

2 前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に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た単元未満株主又は株式会社は、当該請求をした日から二十日以内に、裁判所に対し、価格の決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裁判所は、前項の決定をするに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の時における株式会社の資産状態その他一切の事情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二項の期間内に同項の申立てがあったときは、当該申立てにより裁判所が定めた額をもって当該単元未満株式の価格とする。

5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第二項の期間内に同項の申立てがないとき(当該期間内に第一項第二号の協議が調った場合を除く。)は、一株当たり純資産額に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係る単元未満株式の数を乗じて得た額をもって当該単元未満株式の価格とする。

6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係る株式の買取りは、当該株式の代金の支払の時に、その効力を生ずる。

7 株券発行会社は、株券が発行されている株式につき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ときは、株券と引換えに、その請求に係る株式の代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3款 単元未満株主の売渡請求

第194条

1 株式会社は、単元未満株主が当該株式会社に対して単元未満株式売渡請求(単元未満株主が有する単元未満株式の数と併せて単元株式数となる数の株式を当該単元未満株主に売り渡すことを請求すること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2 単元未満株式売渡請求は、当該単元未満株主に売り渡す単元未満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単元未満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単元未満株式売渡請求を受けた株式会社は、当該単元未満株式売渡請求を

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2. 전항 외의 경우 : 주식회사와 전조 제1항의 청구를 한 단원미만주주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금액

② 전항 제2호 경우 전조 제1항의 청구를 한 단원미만주주 또는 주식회사는 청구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가격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전항의 결정을 할 때 전조 제1항에 따른 청구시의 주식회사의 재산 상태 그 밖에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 금액을 당해 단원미만주식의 가격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2호의 경우 제2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청구가 없는 때에(기간 내에 제1항 제2호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는 1주당 순자산액에 전조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한 단원미만주식의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당해 단원미만주식의 가격으로 한다.

⑥ 전조 제1항의 청구에 관계된 주식의 매수는 주식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주권발행회사는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에 관하여 전조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권과 교환하여 그 청구에 관계된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관 단원미만주주의 매도청구

제194조

① 주식회사는 단원미만주주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단원미만주식 매도청구(단원미만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단원미만주식의 수와 아울러 단원주식수로 정해진 수의 주식을 단원미만주주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단원미만주식 매도청구는 단원미만주주에게 매도할 단원미만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단원미만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단원미만주식 매도청구를 받은 주식회사는 단원미만주식 매도청구를 받은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受けた時に前項の単元未満株式の数に相当する数の株式を有しない場合を除き、自己株式を当該単元未満株主に売り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百九十二条第三項及び前条第一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は、単元未満株式売渡請求について準用する。

第4款 単元株式数の変更等

第195条

1 株式会社は、第四百六十六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取締役の決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定款を変更して単元株式数を減少し、又は単元株式数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定款の変更をした場合には、株式会社は、当該定款の変更の効力が生じた日以後遅滞なく、その株主(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同項の規定により単元株式数を変更した種類の種類株主)に対し、当該定款の変更をし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第7節 株主に対する通知の省略等

第196条 株主に対する通知の省略

1 株式会社が株主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催告が五年以上継続して到達しない場合には、株式会社は、当該株主に対する通知又は催告をすることを要しない。

2 前項の場合には、同項の株主に対する株式会社の義務の履行を行う場所は、株式会社の住所地とする。

3 前二項の規定は、登録株式質権者について準用する。

第197条 株式の競売

1 株式会社は、次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株式を競売し、かつ、その代金をその株式の株主に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

一 その株式の株主に対して前条第一項又は第二百九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

때에 전항의 단원미만주식의 수에 상당한 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주식을 단원미만주주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④ 제192조 제3항 및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단원미만주식 매도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관 단원주식수의 변경 등

제195조

① 주식회사는 제46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결정(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단원주식수가 감소하거나 단원주식수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지체없이 그 주주(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주식수를 변경한 종류의 종류주주)에게 정관의 변경을 한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절 주주에 대한 통지의 생략 등

제196조 주주에 대한 통지의 생략

①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당해 주주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주주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의무이행 장소는 주식회사의 주소지로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등록주식질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97조 주식의 경매

① 주식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주식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그 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다.

1. 그 주식의 주주에게 전조 제1항 또는 제2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り通知及び催告をすることを要しないもの

- 二 その株式の株主が継続して五年間剰余金の配当を受領しなかったもの
- 2 株式会社は、前項の規定による競売に代えて、市場価格のある同項の株式については市場価格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をもって、市場価格のない同項の株式について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競売以外の方法により、これを売却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許可の申立ては、取締役が二人以上あるときは、その全員の同意によっ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株式会社は、前項の規定により売却する株式の全部又は一部を買い取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買い取る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 二 前号の株式の買取りをするのと引換えに交付する金銭の総額
- 4 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前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 5 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登録株式質権者がある場合には、当該登録株式質権者が次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者に限り、株式会社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競売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売却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前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通知又は催告をすることを要しない者
 - 二 継続して五年間第百五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受領することができる剰余金の配当を受領しなかった者

第198条 利害関係人の異議

- 1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競売又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売却をする場合には、株式会社は、同条第一項の株式の株主その他の利害関係人が一定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るができる旨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公告し、かつ、当該株式の株主及びその登録株式質権者には、各別にこれを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期間は、三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 2 第百二十六条第一項及び第百五十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の規定による催告は、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た当該株主及び登録株式質権

및 최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2. 그 주식의 주주가 계속하여 5년간 잉여금의 배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회사는 전항의 경매에 갈음하여 시장가격이 있는 동항의 주식에 관하여는 시장가격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시장가격이 없는 동항의 주식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 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의 청구는 이사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매입하는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수)

2. 전항의 주식의 매입과 교환으로 교부하는 금전의 총액

④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 전항 각호의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주식질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주식질권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주식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수 있다.

1. 전조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2. 계속하여 5년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할 수 있는 잉여금의 배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제198조 이해관계인의 이익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하는 경우 주식회사는 동조 제1항의 주식의 주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일정기간 내에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는 한편 당해 주식의 주주 및 그 등록주식질권자에게는 각별히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3개월을 밑돌 수 없다.

② 제126조 제1항 및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주주 및 등록주식질권자의 주소(주주 또는 등록주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者の住所(当該株主又は登録株式質権者が別に通知又は催告を受ける場所又は連絡先を当該株式会社に通知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場所又は連絡先を含む。)にあてて発し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二百二十六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式が二以上の者の共有に属するとき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催告は、共有者に対し、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た住所(当該共有者が別に通知又は催告を受ける場所又は連絡先を当該株式会社に通知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場所又は連絡先を含む。)にあてて発し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九十六条第一項(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催告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5 第一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した場合(前条第一項の株式に係る株券が発行されている場合に限る。)において、第一項の期間内に利害関係人が異議を述べなかったときは、当該株式に係る株券は、当該期間の末日に無効となる。

第8節 募集株式の発行等

第一款 募集事項の決定等

第199条 募集事項の決定

1 株式会社は、その発行する株式又はその処分する自己株式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都度、募集株式(当該募集に応じてこれらの株式の引受けの申込みをした者に対して割り当てる株式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募集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募集株式の種類及び数。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

二 募集株式の払込金額(募集株式一株と引換えに払い込む金銭又は給付する金銭以外の財産の額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又はその算定方法

三 金銭以外の財産を出資の目的とするときは、その旨並びに当該財産の内容及び価額

四 募集株式と引換えにする金銭の払込み又は前号の財産の給付の期日又はそ

식질권자가 별도로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 또는 연락처를 주식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장소 또는 연락처를 포함한다)에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2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2인 이상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제1항의 최고는 공유자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주소(공유자가 별도로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 또는 연락처를 주식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장소 또는 연락처를 포함한다)에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196조 제1항의(동조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규정은 제1항의 최고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공고를 한 경우(전조 제1항의 주식의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에 있어서 제1항의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식의 주권은 당해 기간의 말일에 무효로 된다.

제8절 모집주식의 발행 등

제1관 모집사항의 결정 등

제199조 모집사항의 결정

① 주식회사는 그 발행하는 주식 또는 처분하는 자기주식의 인수인을 모집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모집주식(모집에 응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한 자에게 배정하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모집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모집주식의 종류 및 수. 이하 이절에서 같다)
2. 모집주식의 납입금액(모집주식 1주와 교환하여 납입하는 금전 또는 급부하는 금전 이외의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그 산정방법
3.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과 당해 재산의 내용 및 가액
4. 모집주식과 교환하여 하는 금전의 납입 또는 전호의 재산의 급부의 기일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の期間

五 株式を発行するときは、増加する資本金及び資本準備金に関する事項

2 前項各号に掲げる事項(以下この節において「募集事項」という。)の決定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第二号の払込金額が募集株式を引き受ける者に特に有利な金額である場合には、取締役は、前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払込金額でその者の募集を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理由を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種類株式発行会社において、第一項第一号の募集株式の種類が譲渡制限株式であるときは、当該種類の株式に関する募集事項の決定は、当該種類の株式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について当該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の決議を要しない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当該種類株主総会の決議が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ただし、当該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種類株主が存し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5 募集事項は、第一項の募集ごとに、均等に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200条 募集事項の決定の委任

1 前条第二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主総会においては、その決議によって、募集事項の決定を取締役(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委任に基づいて募集事項の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募集株式の数の上限及び払込金額の下限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払込金額の下限が募集株式を引き受ける者に特に有利な金額である場合には、取締役は、同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払込金額でその者の募集を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理由を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決議は、前条第一項第四号の期日(同号の期間を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期間の末日)が当該決議の日から一年以内の日である同項の募集についてのみその効力を有する。

4 種類株式発行会社において、第一項の募集株式の種類が譲渡制限株式であるときは、当該種類の株式に関する募集事項の決定の委任は、当該種類の株式について前条第四項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当該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の決議が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ただし、

또는 그 기간

5.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증가하는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 ② 전항 각호의 사항(이하 이 절에서 “모집사항”이라고 한다)의 결정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의 납입금액이 모집주식을 인수하는 자에게 특히 유리한 금액인 경우에는 이사는 전항의 주주총회에서 당해 납입금액으로 그 자를 모집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모집주식의 종류가 양도제한주식인 경우 종류주식에 관한 모집사항의 결정은 종류주식을 인수하는 자의 모집에 관하여 종류주식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뜻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종류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류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모집사항은 제1항의 모집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200조 모집사항의 결정의 위임

- ① 전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모집사항의 결정을 이사(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임에 의하여 모집사항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모집주식의 수의 상한 및 납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납입금액의 하한이 모집주식을 인수하는 자에게 특히 유리한 금액인 경우에는 이사는 동항의 주주총회에서 당해 납입금액으로 그 자의 모집을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결의는 전조 제1항 제4호의 기일(동호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말일)이 당해 결의의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날인 동항의 모집에 관해서만 그 효력을 갖는다.
- ④ 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모집주식의 종류가 양도제한주식인 때에는 종류주식에 관한 모집사항의 결정의 위임은 종류주식에 관하여 전조 제4항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류주식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当該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種類株主が存し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201条 公開会社における募集事項の決定の特則

- 1 第百九十九条第三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き、公開会社における同条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主総会」とあるのは、「取締役会」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前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 2 前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百九十九条第二項の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募集事項を定める場合において、市場価格のある株式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をするときは、同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代えて、公正な価額による払込みを実現するために適当な払込金額の決定の方法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3 公開会社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百九十九条第二項の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募集事項を定めたときは、同条第一項第四号の期日(同号の期間を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の初日)の二週間前までに、株主に対し、当該募集事項(前項の規定により払込金額の決定の方法を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方法を含む。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 5 第三項の規定は、株式会社が募集事項について同項に規定する期日の二週間前までに金融商品取引法第四条第一項 から第三項 までの届出をしている場合その他の株主の保護に欠けるおそれがない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202条 株主に株式の割当てを受ける権利を与える場合

- 1 株式会社は、第百九十九条第一項の募集において、株主に株式の割当てを受ける権利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募集事項のほか、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株主に対し、次条第二項の申込みをすること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募集株式(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当該株主の有する種類の株式と同一の種類のもの)の割当てを受ける権利を与える旨
 - 二 前号の募集株式の引受けの申込みの期日
- 2 前項の場合には、同項第一号の株主(当該株式会社を除く。)は、その有する株

종류주주총회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류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1조 공개회사의 경우 모집사항 결정의 특칙

- ① 제199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회사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 중 “주주총회”는 “이사회”로 본다. 이 경우 전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199조 제2항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모집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장가격이 있는 주식을 인수하는 자의 모집을 하는 때에는 동조 제1항 제2호의 사항에 대신하여 공정한 가액에 의한 납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당한 납입금액의 결정방법을 정할 수 있다.
- ③ 공개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199조 제2항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모집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동조 제1항 제4호의 기일(동호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까지 주주에게 모집사항(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금액의 결정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모집사항에 관하여 동항의 기일의 2주간 전까지 금융상품거래법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한 경우 그 밖에 주주의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2조 주주에게 주식배정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 ① 주식회사는 제199조 제1항의 모집에 있어서 주주에게 주식배정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모집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주에게 다음 조 제2항의 청약을 함으로써 당해 주식회사의 모집주식(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종류주식과 동일한 종류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뜻
 2. 전항의 모집주식 인수의 청약의 기일
- ② 전항의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주주(당해 주식회사는 제외한다)는 그 소유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式の数に応じて募集株式の割当て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ただし、当該株主が割当てを受ける募集株式の数に一株に満たない端数があるときは、これを切り捨てるものとする。

3 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場合には、募集事項及び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方法によって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募集事項及び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取締役の決定によって定めることができ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株式会社が取締役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を除く。) 取締役の決定
- 二 当該募集事項及び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定めることができ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次号に掲げる場合を除く。) 取締役会の決議

三 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ある場合 取締役会の決議

四 前三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株主総会の決議

4 株式会社は、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には、同項第二号の期日の二週間前までに、同項第一号の株主(当該株式会社を除く。) 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募集事項
- 二 当該株主が割当てを受ける募集株式の数
- 三 第一項第二号の期日

5 第百九十九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及び前二条の規定は、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り株主に株式の割当てを受ける権利を与え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202条の2 取締役の報酬等に係る募集事項の決定の特則

1 金融商品取引法第二条第十六項に規定する金融商品取引所に上場されている株式を発行している株式会社は、定款又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第三百六十一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その発行する株式又はその処分する自己株式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をするときは、第百九十九条第一項第二号及び第四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ことを要し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は、募集株式につ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모집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배정받을 모집주식의 수에 1주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버리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모집사항 및 동항 각호의 사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라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 모집사항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이사의 결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규정한 경우(주식회사가 이사회설치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 이사의 결정
2. 모집사항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규정한 경우(다음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이사회 결의

3. 주식회사가 공개회사인 경우 : 이사회 결의

4. 전3호 외의 경우 : 주주총회 결의

④ 주식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기일 2주간 전까지 동항 제1호의 주주(당해 주식회사는 제외한다)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모집사항
2. 주주가 배정을 받을 모집주식의 수
3. 제1항 제2호의 기일

⑤ 제19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전2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주식배정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2조의2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한 모집사항의 결정에 관한 특칙

①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제36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또는 처분하는 자기주식을 인수하는 자를 모집을 할 때는 제19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해당 주식회사는 모집주식에 관해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 一 取締役の報酬等(第三百六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報酬等をいう。第二百三十六条第三項第一号において同じ。)として当該募集に係る株式の発行又は自己株式の処分をするものであり、募集株式と引換えにする金銭の払込み又は第百九十九条第一項第三号の財産の給付を要しない旨
- 二 募集株式を割り当てる日(以下この節において「割当日」という。)
- 2 前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における第百九十九条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前項各号」とあるのは、「前項各号(第二号及び第四号を除く。)」及び第二百二条の二第一項各号」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二百条及び前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 3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おける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定款又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第三百六十一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とあるのは「報酬委員会による第四百九条第三項第三号に定める事項についての決定」と、「取締役」とあるのは「執行役又は取締役」とする。

第2款 募集株式の割当て

第203条 募集株式の申込み

- 1 株式会社は、第百九十九条第一項の募集に応じて募集株式の引受け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株式会社の商号
 - 二 募集事項
 - 三 金銭の払込みをすべきときは、払込みの取扱いの場所
 -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 2 第百九十九条第一項の募集に応じて募集株式の引受けの申込みをする者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株式会社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申込みをする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 二 引き受けようとする募集株式の数
- 3 前項の申込みをする者は、同項の書面の交付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株式会社の承諾を得て、同項の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申込みをした者は、同項の書面を交付したものとみなす。

1. 이사의 보수 등(제3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수 등을 말한다. 제236조 제3항 제1호에서도 같음.)으로서 해당 모집과 관련된 주식의 발행 또는 자기 주식의 처분을 하는 것이라는 점과 모집주식과 교환으로 하는 금전의 납입 또는 제199조 제1항 제3호의 재산의 급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
2. 모집주식을 배정하는 날(이하 이 절에서 '배정일'이라 한다.)
- ② 전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 제19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항 중 '전항 각호'는 '전항 각호(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 및 제202조의2 제1항 각호'로 한다. 이 경우 제200조 및 전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에 있어서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항 중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제36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함'은 '보수위원회에 의한 제409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결정'으로, '이사'는 '집행임원 또는 이사'로 한다.

제2관 모집주식배정

제203조 모집주식의 청약

- ① 주식회사는 제199조 제1항의 모집에 응하여 모집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의 상호
 2. 모집사항
 3. 금전의 납입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납입취급장소
 4. 전3호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99조 제1항의 모집에 응하여 모집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청약을 하는 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2. 인수하려는 모집주식의 수
- ③ 전항의 청약을 하는 자는 동항의 서면의 교부에 갈음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승낙을 얻어 동항의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을 하는 자가 동항의 서면을 교부 한 것으로 본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4 第一項の規定は、株式会社が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金融商品取引法第二条第十項に規定する目論見書を第一項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て交付している場合その他募集株式の引受け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の保護に欠けるおそれがない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5 株式会社は、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変更があっ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及び当該変更があった事項を第二項の申込みをした者(以下この款において「申込者」という。)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株式会社が申込者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催告は、第二項第一号の住所(当該申込者が別に通知又は催告を受ける場所又は連絡先を当該株式会社に通知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場所又は連絡先)にあてて発すれば足りる。

7 前項の通知又は催告は、その通知又は催告が通常到達すべきであった時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第204条 募集株式の割当て

株式会社は、申込者の中から募集株式の割当てを受ける者を定め、かつ、その者に割り当てる募集株式の数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株式会社は、当該申込者に割り当てる募集株式の数を、前条第二項第二号の数よりも減少することができる。

2 募集株式が譲渡制限株式である場合には、前項の規定による決定は、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3 株式会社は、第百九十九条第一項第四号の期日(同号の期間を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期間の初日)の前日までに、申込者に対し、当該申込者に割り当てる募集株式の数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二百二条の規定により株主に株式の割当てを受ける権利を与えた場合において、株主が同条第一項第二号の期日までに前条第二項の申込みをしないときは、当該株主は、募集株式の割当てを受ける権利を失う。

第205条 募集株式の申込み及び割当てに関する特則

二条の規定は、募集株式を引き受けようとする者がその総数の引受けを行う契約を締結す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 ④ 제1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동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10항의 투자설명서를 제1항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 그 밖에 모집주식의 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의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주식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었던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과 변경된 사항을 제2항의 청약을 한 자(이하 이 관에 있어서 “청약자”라고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주식회사가 청약자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제2항 제1호의 주소(청약자가 별도로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 또는 연락처를 주식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장소 또는 연락처)로 발송하면 된다.
- ⑦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04조 모집주식배정

- ① 주식회사는 청약자 중에서 모집주식의 배정을 받을 자를 정하는 한편 그 자에게 배정할 모집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청약자에게 배정할 모집주식의 수를 전조 제2항 제2호의 수보다도 적게 할 수 있다.
- ② 모집주식이 양도제한주식인 경우 전항의 결정은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주식회사는 제199조 제1항 제4호의 기일(동호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전일까지 청약자에게 배정한 모집주식의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주식배정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동조 제1항 제2호의 기일까지 전조 제2항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주는 모집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잃는다.

제205조 모집주식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특칙

- ① 전2조의 규정은 모집주식을 인수하려는 자가 그 총수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募集株式が譲渡制限株式であるときは、株式会社は、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同項の契約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3 第二百二条の二第一項後段の規定による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定款又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第三百六十一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係る取締役(取締役であつた者を含む。)以外の者は、第二百三条第二項の申込みをし、又は第一項の契約を締結することができない。

4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前条第三項並びに第二百六条の二第一項、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前条第三項及び第二百六条の二第一項中「第百九十九条第一項第四号の期日(同号の期間を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期間の初日)」とあり、同条第三項中「同項に規定する期日」とあり、並びに同条第四項中「第一項に規定する期日」とあるのは、「割当日」とする。

5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おける第三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定款又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第三百六十一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とあるのは「報酬委員会による第四百九条第三項第三号に定める事項についての決定」と、「取締役」とあるのは「執行役又は取締役」とする。

第206条 募集株式の引受け

次の各号に掲げる者は、当該各号に定める募集株式の数について募集株式の引受人となる。

- 一 申込者 株式会社の割り当てた募集株式の数
- 二 前条第一項の契約により募集株式の総数を引き受けた者 その者が引き受けた募集株式の数

第206条の2 公開会社における募集株式の割当て等の特則

1 公開会社は、募集株式の引受人について、第一号に掲げる数の第二号に掲げる数に対する割合が二分の一を超える場合には、第百九十九条第一項第四号の期日(同号の期間を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期間の初日)の二週間前までに、株主に対し、当該引受人(以下この項及び第四項において「特定引受人」という。)

② 전항의 경우 모집주식이 양도제한주식인 때에는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동항의 계약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02조의2 제1항 후단에 의한 동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제361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과 관련된 이사(이사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외의 자는 제203조 제2항의 청약을 하거나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의 전조 제3항 및 제206조의2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조 제3항 및 제206조의2 제1항 중 '제199조 제1항 제4호의 기일(동호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초일)', 동조 제3항 중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일' 및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일"은 '배정일'로 한다.

⑤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에서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항 중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제361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은 '보수위원회에 의한 제409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으로, '이사'는 '집행임원 또는 이사'로 한다.

제206조 모집주식의 인수

다음 각호의 자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모집주식의 수에 관하여 모집주식의 인수인이 된다.

1. 청약자 : 주식회사가 배정하는 모집주식의 수
2. 전조 제1항의 계약에 의해 모집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자 : 그 자가 인수한 모집주식의 수

제206조의2 공개회사의 모집주식의 배정 등의 특칙

① 공개회사는 모집주식의 인수인에 관하여 제1호의 수의 제2호의 수에 대한 비율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99조 제1항 제4호의 기일(동호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첫날)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인수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특정인수인"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특정인수인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当該特定引受人についての第一号に掲げる数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特定引受人が当該公開会社の親会社等である場合又は第二百二条の規定により株主に株式の割当てを受ける権利を与え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当該引受人(その子会社等を含む。)がその引き受けた募集株式の株主となった場合に有することとなる議決権の数

二 当該募集株式の引受人の全員がその引き受けた募集株式の株主となった場合における総株主の議決権の数

2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式会社が同項の事項について同項に規定する期日の二週間前までに金融商品取引法第四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届出をしている場合その他の株主の保護に欠けるおそれがない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することを要しない。

4 総株主(この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を除く。)の議決権の十分の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議決権を有する株主が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第二項の公告の日(前項の場合にあっ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日)から二週間以内に特定引受人(その子会社等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よる募集株式の引受けに反対する旨を公開会社に対し通知したときは、当該公開会社は、第一項に規定する期日の前日までに、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当該特定引受人に対する募集株式の割当て又は当該特定引受人との間の第二百五条第一項の契約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公開会社の財産の状況が著しく悪化している場合において、当該公開会社の事業の継続のため緊急の必要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5 第三百九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の株主総会の決議は、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三分の一以上の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を有する株主が出席し、出席した当該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これを上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をもっ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에 관한 제1호의 수, 그 외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수인이 공개회사의 모회사등인 경우 또는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인(그 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인수한 모집주식의 주주가 된 경우에 소유하게 되는 의결권의 수
2. 모집주식의 인수인 전원이 인수한 모집주식의 주주가 된 경우의 총주주의 의결권의 수

②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가 동항의 사항에 관하여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일의 2주전까지 금융상품거래법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한 경우 그 외에 주주보호에 결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④ 총주주(이 항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제외한다)의 의결권의 10분의1(이를 하회하는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상의 의결권을 소유하는 주주가 제1항의 통지일 또는 제2항의 공고일(전항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특정인수인(그 자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의한 모집주식의 인수에 반대하는 뜻을 공개회사에 통지한 때에는 공개회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일의 전날까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특정인수인에 대한 모집주식의 배정 또는 특정인수인간의 제205조 제1항의 계약에 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개회사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공개회사의 사업지속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0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주주총회결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3분의1 이상의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를 가진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이것을 상회하는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는 그 비율 이상)로써 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第3款 金銭以外の財産の出資

第207条

1 株式会社は、第百九十九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募集事項の決定の後遅滞なく、同号の財産(以下この節において「現物出資財産」という。)の価額を調査させるため、裁判所に対し、検査役の選任の申立て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申立てがあつた場合には、裁判所は、これを不適法として却下する場合を除き、検査役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裁判所は、前項の検査役を選任した場合には、株式会社が当該検査役に対して支払う報酬の額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4 第二項の検査役は、必要な調査を行い、当該調査の結果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を裁判所に提供して報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裁判所は、前項の報告について、その内容を明瞭にし、又はその根拠を確認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第二項の検査役に対し、更に前項の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6 第二項の検査役は、第四項の報告をしたときは、株式会社に対し、同項の書面の写しを交付し、又は同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7 裁判所は、第四項の報告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現物出資財産について定められた第百九十九条第一項第三号の価額(第二項の検査役の調査を経ていないものを除く。)を不当と認めたときは、これを変更する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8 募集株式の引受人(現物出資財産を給付する者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は、前項の決定により現物出資財産の価額の全部又は一部が変更された場合には、当該決定の確定後一週間以内に限り、その募集株式の引受けの申込み又は第二百五条第一項の契約に係る意思表示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9 前各項の規定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一 募集株式の引受人に割り当てる株式の総数が発行済株式の総数の十分の一を超えない場合 当該募集株式の引受人が給付する現物出資財産の価額

제3관 금전 이외의 재산의 출자

제207조

- ① 주식회사는 제199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모집사항의 결정 후 지체없이 동호의 재산(이하 이 절에 있어서 “현물출자재산”이라고 한다)의 가액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부적법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전항의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주식회사가 검사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검사인은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조사의 결과를 기재 또는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을 법원에 제공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전항의 보고에 관하여 그 내용을 명료하게 하거나 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항의 검사인에게 추가로 전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2항의 검사인은 제4항의 보고를 한 때에는 주식회사에 동항의 서면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동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⑦ 법원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현물출자재산에 관하여 정한 제199조 제1항 제3호의 가액(제2항의 검사인의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⑧ 모집주식의 인수인(현물출자재산을 급부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항의 결정에 의해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 확인 후 일주일 이내에 모집주식의 인수청약 또는 제205조 제1항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⑨ 전각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모집주식의 인수인에게 배정할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모집주식 인수인이 급부하는 현물출자재산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 二 現物出資財産について定められた第百九十九条第一項第三号の価額の総額が五百万円を超えない場合 当該現物出資財産の価額
 - 三 現物出資財産のうち、市場価格のある有価証券について定められた第百九十九条第一項第三号の価額が当該有価証券の市場価格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ものを超えない場合 当該有価証券についての現物出資財産の価額
 - 四 現物出資財産について定められた第百九十九条第一項第三号の価額が相当であることについて弁護士、弁護士法人、公認会計士、監査法人、税理士又は税理士法人の証明(現物出資財産が不動産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証明及び不動産鑑定士の鑑定評価。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を受けた場合 当該証明を受けた現物出資財産の価額
 - 五 現物出資財産が株式会社に対する金銭債権(弁済期が到来しているものに限る。)であって、当該金銭債権について定められた第百九十九条第一項第三号の価額が当該金銭債権に係る負債の帳簿価額を超えない場合 当該金銭債権についての現物出資財産の価額
- 10 次に掲げる者は、前項第四号に規定する証明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若しくは執行役又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
 - 二 募集株式の引受人
 - 三 業務の停止の処分を受け、その停止の期間を経過しない者
 - 四 弁護士法人、監査法人又は税理士法人であって、その社員の半数以上が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者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

第4款 出資の履行等

第208条 出資の履行

- 1 募集株式の引受人(現物出資財産を給付する者を除く。)は、第百九十九条第一項第四号の期日又は同号の期間内に、株式会社が定めた銀行等の払込みの取扱いの場所において、それぞれの募集株式の払込金額の全額を払い込まなければならない。
- 2 募集株式の引受人(現物出資財産を給付する者に限る。)は、第百九十九条第

의 가액

2. 현물출자재산에 관하여 정한 제199조 제1항 제3호의 가액의 총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현물출자재산의 가액
 3. 현물출자재산 중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정한 제199조 제1항 제3호의 가액이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유가증권에 관한 현물출자재산의 가액
 4. 현물출자재산에 관하여 정한 제199조 제1항 제3호의 가액이 상당한 것에 대하여 변호사, 법무법인, 공인회계사, 감사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인의 증명(현물출자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증명 및 부동산감정사의 감정평가. 이하 이 호에 있어서 같다)을 받은 경우 : 증명을 받은 현물출자재산의 가액
 5. 현물출자재산이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채권(변제기가 도래한 것에 한한다)인 경우 금전채권에 관하여 정한 제199조 제1항 제3호의 가액이 당해 금전채권의 부채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금전채권에 관한 현물출자재산의 가액
- ⑩ 다음의 자는 전항 제4호의 증명을 할 수 없다.
1. 이사, 회계참여, 감사, 집행임원 또는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2. 모집주식의 인수인
 3.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법인, 감사법인 또는 세무사법인으로 그 사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관 출자의 이행 등

제208조 출자의 이행

- ① 모집주식의 인수인(현물출자재산을 급부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제199조 제1항 제4호의 기일 또는 동호의 기간 내에 주식회사가 정한 은행등의 납입취급장소에 각각의 모집주식의 납입금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② 모집주식의 인수인(현물출자재산을 급부하는 자에 한한다)은 제199조 제1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一項第四号の期日又は同号の期間内に、それぞれの募集株式の払込金額の全額に相当する現物出資財産を給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募集株式の引受人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払込み又は前項の規定による給付(以下この款において「出資の履行」という。)をする債務と株式会社に対する債権とを相殺することができない。

4 出資の履行をすることにより募集株式の株主となる権利の譲渡は、株式会社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5 募集株式の引受人は、出資の履行をしないときは、当該出資の履行をすることにより募集株式の株主となる権利を失う。

第209条 株主となる時期等

1 募集株式の引受人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に、出資の履行をした募集株式の株主となる。

一 第百九十九条第一項第四号の期日を定めた場合 当該期日

二 第百九十九条第一項第四号の期間を定めた場合 出資の履行をした日

2 募集株式の引受人は、第二百十三条の二第一項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支払若しくは給付又は第二百十三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支払がされた後でなければ、出資の履行を仮装した募集株式について、株主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前項の募集株式を譲り受けた者は、当該募集株式についての株主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者に悪意又は重大な過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4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二百二条の二第一項後段の規定による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募集株式の引受人は、割当日に、その引き受けた募集株式の株主となる。

第5款 募集株式の発行等をやめることの請求

第210条

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株主が不利益を受け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株主は、株式会社に対し、第百九十九条第一項の募集に係る株式の発行又は自己株式の

항 제4호의 기일 또는 동호의 기간 내에 각각의 모집주식의 납입금액의 전액에 상당한 현물출자재산을 급부하여야 한다.

③ 모집주식의 인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급부(이하 이 관에 있어서 “출자의 이행”이라고 한다)를 하는 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④ 출자의 이행을 함으로써 모집주식의 주주가 되는 권리의 양도는 주식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⑤ 모집주식의 인수인은 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의 이행을 함으로써 모집주식의 주주가 되는 권리를 잃는다.

제209조 주주가 되는 시기등

① 모집주식의 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호에 규정하는 날에 출자의 이행을 한 모집주식의 주주가 된다.

1. 제199조 제1항 제4호의 기일을 정한 경우 : 해당기일

2. 제199조 제1항 제4호의 기간을 정한 경우 : 출자의 이행을 한 날

② 모집주식의 인수인은 제213조의2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지급 혹은 급부 또는 제213조의3 제1항의 지급이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출자의 이행을 가장한 모집주식에 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③ 전항의 모집주식을 양수한 자는 모집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2조의 2 제1항 후단에 의한 동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주식의 인수인은 배정일에 그 인수한 모집주식의 주주가 된다.

제5관 모집주식의 발행 등을 중지할 것의 청구

제210조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주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제199조 제1항의 모집에 관한 주식의 발행 또는 자기주식의 처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処分をやめ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当該株式の発行又は自己株式の処分が法令又は定款に違反する場合
- 二 当該株式の発行又は自己株式の処分が著しく不公正な方法により行われる場合

第6款 募集に係る責任等

第211条 引受けの無効又は取消しの制限

1 民法第九十三条ただし書及び第九十四条第一項の規定は、募集株式の引受けの申込み及び割当て並びに第二百五条第一項の契約に係る意思表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2 募集株式の引受人は、第二百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株主となった日から一年を経過した後又はその株式について権利を行使した後は、錯誤を理由として募集株式の引受けの無効を主張し、又は詐欺若しくは強迫を理由として募集株式の引受けの取消し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212条 不公正な払込金額で株式を引き受けた者等の責任

1 募集株式の引受人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株式会社に対し、当該各号に定める額を支払う義務を負う。

一 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又は執行役)と通じて著しく不公正な払込金額で募集株式を引き受けた場合 当該払込金額と当該募集株式の公正な価額との差額に相当する金額

二 第二百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募集株式の株主となった時におけるその給付した現物出資財産の価額がこれについて定められた第百九十九条第一項第三号の価額に著しく不足する場合 当該不足額

2 前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現物出資財産を給付した募集株式の引受人が当該現物出資財産の価額がこれについて定められた第百九十九条第一項第三号の価額に著しく不足することにつき善意でかつ重大な過失がないときは、募集株式の引受けの申込み又は第二百五条第一項の契約に係る意思表示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분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주식의 발행 또는 자기주식의 처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2. 주식의 발행 또는 자기주식의 처분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우

제6관 모집에 관한 책임 등

제211조 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의 제한

① 민법 제93조 단서 및 제94조 제1항은 모집주식의 인수청약, 배정 및 제205조 제1항의 계약에 관한 의사 표시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모집주식의 인수인은 제209조 제1항에 의하여 주주가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 한 후 또는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한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모집주식의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모집주식의 인수를 취소 할 수 없다.

제212조 불공정한 납입금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등의 책임

① 모집주식의 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이사(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납입금액으로 모집주식을 인수한 경우 : 납입금액과 모집주식의 공정한 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주식의 주주가 된 때에는 그 급부한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이 이에 관하여 정한 제199조 제1항 제3호의 가액에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 당해 부족액.

② 전항 제2호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재산을 급부한 모집주식의 인수인이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이 이에 관하여 정한 제199조 제1항 제3호의 가액에 현저하게 부족한 것에 관해서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모집주식의 인수청약 또는 제205조 제1항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第213条 出資された財産等の価額が不足する場合の取締役等の責任

1 前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取締役等」という。)は、株式会社に対し、同号に定める額を支払う義務を負う。

一 当該募集株式の引受人の募集に関する職務を行った業務執行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執行役。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その他当該業務執行取締役の行う業務の執行に職務上関与した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二 現物出資財産の価額の決定に関する株主総会の決議があつたときは、当該株主総会に議案を提案した取締役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三 現物出資財産の価額の決定に関する取締役会の決議があつたときは、当該取締役会に議案を提案した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又は執行役)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に掲げる場合には、取締役等は、現物出資財産について同項の義務を負わない。

一 現物出資財産の価額について第二百七条第二項の検査役の調査を経た場合

二 当該取締役等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つたことを証明した場合

3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第二百七条第九項第四号に規定する証明をした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証明者」という。)は、株式会社に対し前条第一項第二号に定める額を支払う義務を負う。ただし、当該証明者が当該証明をする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つたことを証明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4 募集株式の引受人がその給付した現物出資財産についての前条第一項第二号に定める額を支払う義務を負う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者が当該現物出資財産について当該各号に定める義務を負うときは、これらの者は、連帯債務者とする。

一 取締役等：第一項の義務

二 証明者：前項本文の義務

제213조 출자재산등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 이사등의 책임

① 전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의 자(이하 이 조에 있어서 “이사등”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동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1. 모집주식인수인의 모집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이사(지명위원회등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집행임원.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그 외에 당해 업무집행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집행에 직무상 관여한 자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
2. 현물출자재산의 가액결정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때에는 당해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한 이사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3. 현물출자재산의 가액결정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었던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안을 제안한 이사(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등이 현물출자재산에 관하여 동항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제207조 제2항의 감사인의 조사를 거친 경우
2. 이사등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7조 제9항 제4호의 증명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증명자”라고 한다)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증명자가 증명을 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모집주식의 인수인이 그 급부한 현물출자재산에 관하여 전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가 당해 현물출자재산에 관하여 각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연대채무자로 한다.

1. 이사등 : 제1항의 의무
2. 증명자 : 전항 본문의 의무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第213条の2 出資の履行を仮装した募集株式の引受人の責任

1 募集株式の引受人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株式会社に対し、当該各号に定める行為をする義務を負う。

一 第二百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払込みを仮装した場合 払込みを仮装した払込金額の全額の支払

二 第二百八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給付を仮装した場合 給付を仮装した現物出資財産の給付(株式会社が当該給付に代えて当該現物出資財産の価額に相当する金銭の支払を請求し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金銭の全額の支払)

2 前項の規定により募集株式の引受人の負う義務は、総株主の同意がなければ、免除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213条の3 出資の履行を仮装した場合の取締役等の責任

1 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募集株式の引受人が出資の履行を仮装することに関与した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執行役を含む。)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者は、株式会社に対し、当該各号に規定する支払をする義務を負う。ただし、その者(当該出資の履行を仮装したものを除く。)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募集株式の引受人が前条第一項各号に規定する支払をする義務を負う場合において、前項に規定する者が同項の義務を負うときは、これらの者は、連帯債務者とする。

第9節 株 券

第1款 総 則

第214条 株券を発行する旨の定款の定め

株式会社は、その株式(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全部の種類の株式)に係る株券を発行する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第215条 株券の発行

1 株券発行会社は、株式を発行した日以後遅滞なく、当該株式に係る株券を発行

제213조의2 출자의 이행을 가장한 모집주식인수인의 책임

① 모집주식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에 대하여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제208조 제1항의 납입을 가장한 경우 : 가장한 납입금액의 전액지급
 2. 제208조 제2항의 급부를 가장한 경우 : 급부를 가장한 현물출자재산의 급부(주식회사가 급부에 갈음하여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금전 전액의 지급)
- ② 제1항의 모집주식인수인의 의무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할 수 없다.

제213조의3 출자의 이행을 가장한 경우의 이사등의 책임

- ① 전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모집주식인수인이 출자이행을 가장하는데 관여한 이사(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집행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급을 할 의무를 진다. 다만 그 자(출자이행을 가장한 자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모집주식인수인이 전조 제1항 각 호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전항에서 규정한 자가 동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러한 자는 연대채무자가 된다.

제9절 주권

제1관 총칙

제214조 주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관의 규정

주식회사는 그 주식(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주식)의 주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215조 주권의 발행

- ① 주권발행회사는 주식을 발행한 날 이후 지체없이 당해 주식의 주권을 발행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株券発行会社は、株式の併合をしたときは、第百八十条第二項第二号の日以後遅滞なく、併合した株式に係る株券を発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株券発行会社は、株式の分割をしたときは、第百八十三条第二項第二号の日以後遅滞なく、分割した株式に係る株券(既に発行されているものを除く。)を発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公開会社でない株券発行会社は、株主から請求がある時まで、これらの規定の株券を発行しないことができる。

第216条 株券の記載事項

株券には、次に掲げる事項及びその番号を記載し、株券発行会社の代表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代表執行役)がこれに署名し、又は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株券発行会社の商号

二 当該株券に係る株式の数

三 譲渡による当該株券に係る株式の取得について株式会社の承認を要することを定めたときは、その旨

四 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当該株券に係る株式の種類及びその内容

第217条 株券不所持の申出

1 株券発行会社の株主は、当該株券発行会社に対し、当該株主の有する株式に係る株券の所持を希望しない旨を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申出は、その申出に係る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に係る株券が発行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株主は、当該株券を株券発行会社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出を受けた株券発行会社は、遅滞なく、前項前段の株式に係る株券を発行しない旨を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株券発行会社は、前項の規定による記載又は記録をしたときは、第二項前段の株式に係る株券を発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

5 第二項後段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株券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記載又は記

하여야 한다.

- ② 주권발행회사는 주식의 병합을 한 때에는 제180조 제2항 제2호의 날 이후 지체없이 병합한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③ 주권발행회사는 주식의 분할을 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 제2호의 날 이후 지체없이 분할한 주식의 주권(이미 발행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 ④ 전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회사가 아닌 주권발행회사는 주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까지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6조 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주권발행회사의 대표이사(지명위원회 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1. 주권발행회사의 상호
- 2. 주권에 관한 주식의 수
- 3. 양도에 의한, 주권에 관한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
- 4. 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권에 관한 주식의 종류와 내용

제217조 주권불소지의 신고

- ① 주권발행회사의 주주는 주권발행회사에 대하여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신고는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때에는 주주는 당해 주권을 주권발행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주권발행회사는 지체없이 전항 전단의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주권발행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 또는 기록을 한 때에는 제2항 전단의 주식의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 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권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 또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録をした時において、無効となる。

6 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出をした株主は、いつでも、株券発行会社に対し、第二項前段の株式に係る株券を発行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二項後段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株券があるときは、株券の発行に要する費用は、当該株主の負担とする。

第218条 株券を発行する旨の定款の定めを廃止

1 株券発行会社は、その株式(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全部の種類の株式)に係る株券を発行する旨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定款の変更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定款の変更の効力が生ずる日の二週間前までに、次に掲げる事項を公告し、かつ、株主及び登録株式質権者には、各別にこれ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その株式(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全部の種類の株式)に係る株券を発行する旨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旨

二 定款の変更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

三 前号の日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の株券は無効となる旨

2 株券発行会社の株式に係る株券は、前項第二号の日に無効となる。

3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式の全部について株券を発行していない株券発行会社がある株式(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全部の種類の株式)に係る株券を発行する旨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定款の変更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同項第二号の日の二週間前までに、株主及び登録株式質権者に対し、同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事項を通知すれば足りる。

4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5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式の質権者(登録株式質権者を除く。)は、同項第二号の日の前日までに、株券発行会社に対し、第百四十八条各号に掲げる事項を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2款 株券の提出等

第219条 株券の提出に関する公告等

1 株券発行会社は、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は、当該行為の効力が生

는 기록을 한 때에 무효로 된다.

⑥ 제1항의 신고를 한 주주는 언제든지 주권발행회사에 대하여 제2항 전단의 주식의 주권을 발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주권의 발행에 필요한 비용은 주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218조 주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관규정의 폐지

① 주권발행회사는 그 주식(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주식)의 주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관규정을 폐지하는 정관의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당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2주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는 한편 주주 및 등록주식질권자에게는 각별히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그 주식(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주식)의 주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관규정을 폐지하는 뜻

2.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일

3. 전호의 날에 주식회사의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② 주권발행회사의 주식의 주권은 전항 제2호의 날에 무효로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전부에 관하여 주권을 발행하고 있지 아니한 주권발행회사가 그 주식(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주식)의 주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관규정을 폐지하는 정관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날의 2주간 전까지 주주 및 등록주식질권자에 대하여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통지하면 된다.

④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 주식의 질권자(등록주식질권자는 제외한다)는 동항 제2호의 날의 전일까지 주권발행회사에 대하여 제148조 각호의 사항을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관 주권 제출 등

제219조 주권의 제출에 관한 공고 등

① 주권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행위의 효력이 받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ずる日(第四号の二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あっては、第一百七十九条の二第一項第五号に規定する取得日。以下この条において「株券提出日」という。)までに当該株券発行会社に対し当該各号に定める株式に係る株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を株券提出日の一箇月前までに、公告し、かつ、当該株式の株主及びその登録株式質権者には、各別にこれ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株式の全部について株券を発行してい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第一百七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を設ける定款の変更 全部の株式(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当該事項についての定めを設ける種類の株式)

二 株式の併合：全部の株式(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第一百八十条第二項第三号の種類の株式)

三 第一百七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当該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

四 取得条項付株式の取得：当該取得条項付株式

四の二 第一百七十九条の三第一項の承認 売渡株式

五 組織変更：全部の株式

六 合併(合併により当該株式会社が消滅する場合に限る。)：全部の株式

七 株式交換：全部の株式

八 株式移転：全部の株式

2 株券発行会社が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おいて、株券提出日までに当該株券発行会社に対して株券を提出しない者があるとき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は、当該株券の提出があるまでの間、当該行為(第二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あっては、株式売渡請求に係る売渡株式の取得)によって当該株券に係る株式の株主が受けることのできる金銭等の交付を拒むことができる。

一 前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行為 当該株券発行会社

二 第一百七十九条の三第一項の承認 特別支配株主

三 組織変更 第七百四十四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組織変更後持分会社

四 合併(合併により当該株式会社が消滅する場合に限る。) 第七百四十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吸収合併存続会社又は第七百五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新設合併設立会社

五 株式交換 第七百六十七条に規定する株式交換完全親会社

생하는 날(제4호의2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79조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일. 이하 이 조에서 “주권제출일”이라 한다)까지 주식발행회사에 각 호에서 정하는 주식에 관한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을 주권제출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당해주식의 주주 및 그 등록주식질권자에게는 각별히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전부에 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7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정관의 정함을 두는 정관의 변경 : 모든 주식(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정함을 두는 종류주식)
2. 주식의 병합 : 모든 주식(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제180조 제2항 제3호의 종류주식)
3. 제171조 제1항의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 :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4. 취득조항부주식의 취득 : 취득조항부주식
- 4의2. 제179조의3 제1항의 승인 : 매도주식
5. 조직변경 : 모든 주식
6. 합병(합병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 한한다) : 모든 주식
7. 주식교환 : 모든 주식
8. 주식이전 : 모든 주식

② 주권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주권제출일까지 주권발행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자는 주권을 제출할 때까지 당해 행위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도청구에 관련된 매도주식의 취득)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수 있는 금전 등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 주권발행회사
2. 제179조의3 제1항의 승인 : 특별지배주주
3. 조직변경 : 제74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직변경 후 지분회사
4. 합병(합병에 의해 당해 주식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749조 제1항의 흡수합병존속회사 또는 제753조 제1항의 신설합병설립회사
5. 주식교환 : 제767조의 주식교환완전모회사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六 株式移転 第七百七十三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

3 第一項各号に定める株式に係る株券は、株券提出日に無効となる。

4 第一項第四号の二の規定による公告及び通知の費用は、特別支配株主の負担とする。

第220条 株券の提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

1 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株券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ない者があるときは、株券発行会社は、その者の請求により、利害関係人に対し異議があれば一定の期間内にこれを述べる旨を公告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期間は、三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2 株券発行会社が前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した場合において、同項の期間内に利害関係人が異議を述べなかったときは、前条第二項各号に定める者は、前項の請求をした者に対し、同条第二項の金銭等を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公告の費用は、同項の請求をした者の負担とする。

第3款 株券喪失登録

第221条 株券喪失登録簿

株券発行会社(株式会社がその株式(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全部の種類株式)に係る株券を発行する旨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定款の変更をし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経過していない場合における当該株式会社を含む。以下この款(第二百二十三条、第二百二十七条及び第二百二十八条第二項を除く。)において同じ。)は、株券喪失登録簿を作成し、これに次に掲げる事項(以下この款において「株券喪失登録簿記載事項」という。)を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二百二十三条の規定による請求に係る株券(第二百十八条第二項又は第二百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無効となった株券及び株式の発行又は自己株式の処分の無効の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判決が確定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株式に係る株券を含む。以下この款(第二百二十八条を除く。)において同じ。)の番号

6. 주식이전 : 제773조 제1항 제1호의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

- ③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주식의 주권은 주권제출일에 무효가 된다.
- ④ 제1항 제4호의2의 공고 및 통지 비용은 특별지배주주가 부담한다.

제220조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① 전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주권발행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진술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3개월을 밑돌 수 없다.
- ② 주권발행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경우 동항의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는 전항의 청구를 한 자에 대하여 동조 제2항의 금전등을 교부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공고의 비용은 동항의 청구를 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관 주권상실등록

제221조 주권상실등록부

주권발행회사(주식회사가 그 주식(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주식)의 주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관규정을 폐지하는 정관의 변경을 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관(제223조, 제227조 및 제228조 제2항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같다)는 주권상실등록부를 작성하고 이에 다음의 사항(이하 이 관에 있어서 “주권상실등록부 기재사항”이라고 한다)을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한다.

1. 제223조의 청구에 관계된 주권(제218조 제2항 또는 제2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주권 및 주식의 발행 또는 자기주식의 처분의 무효의 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주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제228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같다)의 번호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 二 前号の株券を喪失した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 三 第一号の株券に係る株式の株主又は登録株式質権者として株主名簿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ている者(以下この款において「名義人」という。)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 四 第一号の株券につき前三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日(以下この款において「株券喪失登録日」という。)

第222条 株券喪失登録簿に関する事務の委託

株券発行会社における第二百二十三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条中「株主名簿の」とあるのは「株主名簿及び株券喪失登録簿の」と、「株主名簿に」とあるのは「株主名簿及び株券喪失登録簿に」とする。

第223条 株券喪失登録の請求

株券を喪失した者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株券発行会社に対し、当該株券についての株券喪失登録簿記載事項を株券喪失登録簿に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以下「株券喪失登録」という。)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224条 名義人等に対する通知

- 1 株券発行会社が前条の規定による請求に応じて株券喪失登録を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請求に係る株券を喪失した者として株券喪失登録簿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者(以下この款において「株券喪失登録者」という。)が当該株券に係る株式の名義人でないときは、株券発行会社は、遅滞なく、当該名義人に対し、当該株券について株券喪失登録をした旨並びに第二百二十一条第一号、第二号及び第四号に掲げ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株式について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に株券が株券発行会社に提出された場合において、当該株券について株券喪失登録がされているときは、株券発行会社は、遅滞なく、当該株券を提出した者に対し、当該株券について株券喪失登録がされている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25条 株券を所持する者による抹消の申請

- 1 株券喪失登録がされた株券を所持する者(その株券についての株券喪失登録

2. 전호의 주권을 상실한 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3. 제1호의 주권에 관련된 주식의 주주 또는 등록주식질권자로서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자(이하 이 관에 있어서 “명의인”이라고 한다)의 성명, 명칭 및 주소
4. 제1호의 주권에 관하여 전3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기록한 날(이하 이 관에 있어서 “주권상실등록일”이라고 한다)

제222조 주권상실등록부에 관한 사무의 위탁

주권발행회사에 있어서 제123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조 중 “주주명부의”는 “주주명부 및 주권상실등록부의”로, “주주명부에”는 “주주명부 및 주권상실등록부에”로 본다.

제223조 의결권의 수

주권을 상실한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발행회사에 대하여 주권에 관한 주권상실등록부 기재사항을 주권상실등록부에 기재 또는 기록할 것(이하 “주권상실등록”이라고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4조 명의인등에 대한 통지

- ① 주권발행회사가 전조의 청구에 응하여 주권상실등록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청구로 주권을 상실한 자로서 주권상실등록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자(이하 이 관에 있어서 “주권상실등록자”라고 한다)가 주권에 관련된 주식의 명의인이 아닌 때에는 주권발행회사는 지체없이 명의인에게 당해 주권에 대하여 주권상실등록을 한 뜻과 제221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주권이 주권발행회사에 제출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주권에 관하여 주권상실등록이 되어 있는 때에는 주권발행회사는 지체없이 당해 주권을 제출한 자에게 주권에 관하여 주권상실등록이 되어 있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5조 주권을 소지하는 자에 의한 말소의 청구

- ① 주권상실등록이 된 주권을 소지하는 자(그 주권에 관한 주권상실등록자는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者を除く。)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株券発行会社に対し、当該株券喪失登録の抹消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株券喪失登録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経過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る申請をしようとする者は、株券発行会社に対し、同項の株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請を受けた株券発行会社は、遅滞なく、同項の株券喪失登録者に対し、同項の規定による申請をした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同項の株券の番号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株券発行会社は、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から二週間を経過した日に、第二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株券に係る株券喪失登録を抹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株券発行会社は、当該株券を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請をした者に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26条 株券喪失登録者による抹消の申請

1 株券喪失登録者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株券発行会社に対し、株券喪失登録(その株式(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全部の種類の株式)に係る株券を発行する旨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定款の変更をした場合にあつては、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株券についての株券喪失登録を除く。)の抹消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申請を受けた株券発行会社は、当該申請を受けた日に、当該申請に係る株券喪失登録を抹消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27条 株券を発行する旨の定款の定めを廃止した場合における株券喪失登録の抹消

その株式(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全部の種類の株式)に係る株券を発行する旨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定款の変更をする場合には、株券発行会社は、当該定款の変更の効力が生ずる日に、株券喪失登録(当該株券喪失登録がされた株券に係る株式の名義人が株券喪失登録者であるものに限り、第二百二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株券についてのものを除く。)を抹消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외한다)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발행회사에 대하여 주권상실 등록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권상실등록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주권발행회사에 동항의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주권발행회사는 지체없이 동항의 주권상실등록자에게 동항의 청구를 한 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와 동항의 주권의 번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권발행회사는 전항의 통지일로부터 2주간을 경과한 날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권의 주권상실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발행회사는 당해 주권을 제1항의 청구를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26조 주권상실등록자에 의한 말소의 청구

① 주권상실등록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발행회사에 주권상실등록(그 주식(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주식)의 주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관규정을 폐지하는 정관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권에 관한 주권상실등록을 제외한다)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주권발행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에 청구에 관련된 주권상실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27조 주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관규정을 폐지한 경우 주권상실등록의 말소

그 주식(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주식)의 주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관규정을 폐지하는 정관의 변경을 하는 경우 주권발행회사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일에 주권상실등록(주권상실등록이 된 주권에 관련된 주식의 명의인이 주권상실등록자인 경우에 한하고, 제2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권에 관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소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第228条 株券の無効

- 1 株券喪失登録(抹消されたものを除く。)がされた株券は、株券喪失登録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経過した日に無効とな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り株券が無効となった場合には、株券発行会社は、当該株券についての株券喪失登録者に対し、株券を再発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29条 異議催告手続との関係

- 1 株券喪失登録者が第二百二十条第一項の請求をした場合には、株券発行会社は、同項の期間の末日が株券喪失登録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経過する日前に到来するときに限り、同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株券発行会社が第二百二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するときは、当該株券発行会社は、当該公告をした日に、当該公告に係る株券についての株券喪失登録を抹消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30条 株券喪失登録の効力

- 1 株券発行会社は、次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早い日(以下この条において「登録抹消日」という。)までの間は、株券喪失登録がされた株券に係る株式を取得した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を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当該株券喪失登録が抹消された日
 - 二 株券喪失登録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経過した日
- 2 株券発行会社は、登録抹消日後でなければ、株券喪失登録がされた株券を再発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
- 3 株券喪失登録者が株券喪失登録をした株券に係る株式の名義人でないときは、当該株式の株主は、登録抹消日までの間は、株主総会又は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 4 株券喪失登録がされた株券に係る株式については、第百九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競売又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売却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231条 株券喪失登録簿の備置き及び閲覧等

- 1 券発行会社は、株券喪失登録簿をその本店(株主名簿管理人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営業所)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제228조 주권의 무효

- ① 주권상실등록(말소된 것을 제외한다)이 된 주권은 주권상실등록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에 무효로 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주권발행회사는 당해 주권의 주권상실등록자에 대하여 주권을 재발행하여야 한다.

제229조 이의최고 절차와의 관계

- ① 주권상실등록자가 제220조 제1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주권발행회사는 동항의 기간의 말일이 주권상실등록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하는 전일에 도래하는 때에 한하여 동항의 공고를 할 수 있다.
- ② 주권발행회사가 제220조 제1항의 공고를 하는 때에는 주권발행회사는 공고를 한 날에 그 공고한 주권의 주권상실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30조 주권상실등록의 효력

- ① 주권발행회사는 다음의 날 중 빠른 날(이하 이 조에 있어서 “등록말소일”이라고 한다)까지는 주권상실등록이 된 주권에 관련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할 수 없다.
 - 1. 주권상실등록이 말소된 날
 - 2. 주권상실등록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
- ② 주권발행회사는 등록말소일 후가 아니면 주권상실등록이 된 주권을 재발행할 수 없다.
- ③ 주권상실등록자가 주권상실등록을 한 주권에 관련된 주식의 명의인이 아닌 때에는 당해 주식의 주주는 등록말소일까지는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주권상실등록이 된 주권에 관련된 주식에 관하여는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을 할 수 없다.

제231조 주권상실등록부의 비치 및 열람 등

- ① 주권발행회사는 주권상실등록부를 그 본점(주주명부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2 何人も、株券発行会社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株券喪失登録簿(利害関係がある部分に限る。)について、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請求の理由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株券喪失登録簿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 二 株券喪失登録簿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第232条 株券喪失登録者に対する通知等

1 株券発行会社が株券喪失登録者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催告は、株券喪失登録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た当該株券喪失登録者の住所(当該株券喪失登録者が別に通知又は催告を受ける場所又は連絡先を株券発行会社に通知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場所又は連絡先) にあてて発すれば足りる。

2 前項の通知又は催告は、その通知又は催告が通常到達すべきであった時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第233条 適用除外

非訟事件手続法第四編の規定は、株券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10節 雑則

第234条 一に満たない端数の処理

1 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に際して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交付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に対し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数に一株に満たない端数があるときは、その端数の合計数(その合計数に一に満たない端数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これを切り捨てるものとする。) に相当する数の株式を競売し、かつ、その端数に応じてその競売により得られた代金を当該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第一百七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株式の取得 当該株式会社の株主
- 二 第一百七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株式の取得 当該株式会社の株主

② 누구든지 주권발행회사의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주권상실등록부(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실등록부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그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주권상실등록부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제232조 주권상실등록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주권발행회사가 주권상실등록자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주권상실등록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주권상실등록자의 주소(주권상실등록자가 별도로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 또는 연락처를 주권발행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장소 또는 연락처)로 발송하면 된다.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33조 적용제외

비송사건절차법 제4편의 규정은 주권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절 잡칙

제234조 1에 미달하는 단수의 처리

① 다음 각호의 행위시에 각호에 규정하는 자에게 주식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주식회사의 주식의 수에 1주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의 합계수(그 합계수에 1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리는 것으로 한다)에 상당한 수의 주식을 경매하여 그 단수에 따라 그 경매에 의하여 얻은 대금을 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70조 제1항의 주식의 취득 : 주식회사의 주주
2. 제173조 제1항의 주식의 취득 : 주식회사의 주주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 三 第百八十五条に規定する株式無償割当て 当該株式会社の株主
- 四 第二百七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新株予約権の取得 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イ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 五 合併(合併により当該株式会社が存続する場合に限る。) 合併後消滅する会社の株主又は社員
- 六 合併契約に基づく設立時発行株式の発行 合併後消滅する会社の株主又は社員
- 七 株式交換による他の株式会社の発行済株式全部の取得 株式交換をする株式会社の株主
- 八 株式移転計画に基づく設立時発行株式の発行 株式移転をする株式会社の株主
- 九 株式交付 株式交付親会社(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株式交付親会社をいう。)に株式交付に際して株式交付子会社(同号に規定する株式交付子会社をいう。)の株式又は新株予約権等(同項第七号に規定する新株予約権等をいう。)を譲り渡した者
- 2 株式会社は、前項の規定による競売に代えて、市場価格のある同項の株式については市場価格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をもって、市場価格のない同項の株式について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競売以外の方法により、これを売却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許可の申立ては、取締役が二人以上あるときは、その全員の同意によっ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前項の規定により第一項の株式を売却した場合における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競売により」とあるのは、「売却により」とする。
- 4 株式会社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売却する株式の全部又は一部を買い取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買い取る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 二 前号の株式の買取りをするのと引換えに交付する金銭の総額
- 5 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前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 6 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に際して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当該株式会社の社債又は新株予約権を交付するときについて準用

3. 제185조의 주식무상배정 : 주식회사의 주주
4. 제275조 제1항의 신주예약권의 취득 : 제236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5. 합병(합병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6. 합병계약에 의한 설립시발행주식의 발행 :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7. 주식교환에 의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의 취득 : 주식교환을 하는 주식회사의 주주
8. 주식이전계획에 의한 설립시발행주식의 발행 : 주식이전을 하는 주식회사의 주주
9. 주식교부: 주식교부모회사(제77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식교부모회사를 말한다.)에게 주식교부시 주식교부자회사(동호에서 규정하는 주식교부자회사를 말한다.)의 주식 또는 신주예약권 등(동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신주예약권 등을 말한다.)을 양도한 자
- ② 주식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갈음하여 시장가격이 있는 동향의 주식에 관하여는 시장가격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시장가격이 없는 동향의 주식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 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허가의 신청은 이사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주식을 매각한 경우 동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 중 “경매에 의하여”는 “매각에 의하여”로 본다.
- ④ 주식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매수할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2. 전호의 주식의 매수와 교환하여 교부하는 금전의 총액
- ⑤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 전항 각호의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행위시에 각호에서 규정한 자에게 주식회사의 사채 또는 신주예약권을 교부하는 때에 준용한다.

する。

第235条

1 株式会社が株式の分割又は株式の併合をすることにより株式の数に一株に満たない端数が生ずるときは、その端数の合計数(その合計数に一に満たない端数が生ずる場合にあっては、これを切り捨てるものとする。)に相当する数の株式を競売し、かつ、その端数に応じてその競売により得られた代金を株主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条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3章 新株予約権

第1節 総則

第236条 新株予約権の内容

1 株式会社が新株予約権を発行す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を当該新株予約権の内容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新株予約権の目的である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又はその数の算定方法
- 二 当該新株予約権の行使に際して出資される財産の価額又はその算定方法
- 三 金銭以外の財産を当該新株予約権の行使に際してする出資の目的とするときは、その旨並びに当該財産の内容及び価額
- 四 当該新株予約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
- 五 当該新株予約権の行使により株式を発行する場合における増加する資本金及び資本準備金に関する事項
- 六 譲渡による当該新株予約権の取得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の承認を要す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 七 当該新株予約権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が一定の事由が生じたことを条件としてこれ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す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 イ 一定の事由が生じた日に当該株式会社がその新株予約権を取得する旨及

제235조

① 주식회사가 주식의 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을 함으로써 주식수에 1주에 미달하는 단수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단수의 합계수(그 합계수에 1에 미달하는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버리는 것으로 한다)에 상당한 수의 주식을 경매하여 그 단수에 따라 그 경매에 의하여 얻은 대금을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조 제2항 내지 제5항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장 신주예약권

제1절 총칙

제236조 신주예약권의 내용

① 주식회사가 신주예약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신주예약권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주예약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또는 그 수의 산정방법
2. 신주예약권의 행사시 출자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그 산정방법
3. 금전 외의 재산을 신주예약권의 행사시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당해 재산의 내용 및 가액
4. 신주예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5.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의 발행으로 증가되는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6. 양도에 의한 신주예약권의 취득시 주식회사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뜻
7. 주식회사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주예약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 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 주식회사가 신주예약권을 취득한다는 뜻 및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びその事由

ロ 当該株式会社が別に定める日が到来することをもってイの事由とするときは、その旨

ハ イの事由が生じた日にイの新株予約権の一部を取得す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取得する新株予約権の一部の決定の方法

ニ イの新株予約権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又はその算定方法

ホ イの新株予約権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当該株式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ものを除く。)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ヘ イの新株予約権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当該株式会社の他の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他の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又はその算定方法

ト イの新株予約権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当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付社債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ホに規定する事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ヘに規定する事項

チ イの新株予約権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当該株式会社の株式等以外の財産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財産の内容及び数若しくは額又はこれらの算定方法

八 当該株式会社が次のイからホまで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当該イからホまでに定める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を交付す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その条件

イ 合併(合併により当該株式会社が消滅する場合に限る。) 合併後存続する株式会社又は合併により設立する株式会社

ロ 吸収分割 吸収分割をする株式会社がその事業に関して有する権利義務の全部又は一部を承継する株式会社

ハ 新設分割 新設分割により設立する株式会社

그 사유

나. 주식회사가 별도로 정한 날이 도래하는 것을 가목의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뜻

다. 가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신주예약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뜻 및 그 일부에 관한 결정 방법

라. 가목의 신주예약권 취득과 교환으로 신주예약권자에게 주식회사의 주식을 교부 하는 때에는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또는 그 산정방법

마. 가목의 신주예약권 취득과 교환하여 신주예약권자에게 주식회사의 사채(신주예약권부사채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채의 종류 및 종류별 사채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바. 가목의 신주예약권 취득과 교환하여 신주예약권자에게 주식회사의 다른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은 제외한다)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다른 신주예약권의 내용, 수 또는 그 산정방법

사. 가목의 신주예약권 취득과 교환하여 신주예약권자에게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부사채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하여 마목에 규정한 사항 및 당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바목에 규정한 사항

아. 가목의 신주예약권 취득과 교환하여 신주예약권자에게 주식회사의 주식등 이외의 재산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재산의 내용, 수, 가액 또는 그 산정방법

8. 주식회사가 다음의 가목 내지 마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신주예약권자에게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하는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뜻 및 조건

가. 합병(합병으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합병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주식회사

나. 흡수분할 : 흡수분할을 하는 주식회사가 그 사업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는 주식회사

다. 신설분할 : 신설분할로 설립되는 주식회사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ニ 株式交換 株式交換をする株式会社の発行済株式の全部を取得する株式会社

ホ 株式移転 株式移転により設立する株式会社

九 新株予約権を行使した新株予約権者に交付する株式の数に一株に満たない端数がある場合において、これを切り捨てるものとするときは、その旨

十 当該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に係る新株予約権証券を発行す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十一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新株予約権者が第二百九十条の規定による請求の全部又は一部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2 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数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金額ごとに、均等に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金融商品取引法第二条第十六項に規定する金融商品取引所に上場されている株式を発行している株式会社は、定款又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第三百六十一条第一項第四号又は第五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新株予約権を発行するときは、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を当該新株予約権の内容とすることを要し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は、次に掲げる事項を当該新株予約権の内容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取締役の報酬等として又は取締役の報酬等をもってする払込みと引換えに当該新株予約権を発行するものであり、当該新株予約権の行使に際してする金銭の払込み又は第一項第三号の財産の給付を要しない旨

二 定款又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第三百六十一条第一項第四号又は第五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係る取締役(取締役であった者を含む。)以外の者は、当該新株予約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旨

4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定款又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第三百六十一条第一項第四号又は第五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とあるのは「報酬委員会による第四百九条第三項第四号又は第五号ロに定める事項についての決定」と、同項第一号中「取締役」とあるのは「執行役若しくは取締役」と、同項第二号中「取締役」とあるのは「執行役又は取締役」とする。

- 라. 주식교환 : 주식교환을 하는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를 취득하는 주식회사
- 마. 주식이전 :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주식회사
9. 신주예약권을 행사한 신주예약권자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수가 1주에 미달하는 단주가 있는 경우 이를 버리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10.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주예약권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뜻
11. 전호의 경우 신주예약권자가 제290조에 의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때에는 그 뜻
- ②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의 수는 사채의 금액에 따라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③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16항의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제36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신주예약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제1항 제2호의 사항을 신주예약권의 내용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신주예약권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사의 보수 등으로서 또는 이사의 보수 등으로써 하는 납입과 교환으로 신주예약권을 발행하는 것이라는 점과 신주예약권 행사 시에 하는 금전의 납입 또는 제1항 제3호의 재산의 급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
 2.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제36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과 관련된 이사(이사였던 자를 포함.) 이외의 자는 신주예약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
 - ④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에 대한 전항의 적용의 경우에는 동항 중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제36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은 '보수위원회에 의한 제49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5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결정'으로, 동항 제1호 중 '이사'는 '집행임원 또는 이사'로, 동항 제2호 중 '이사'는 '집행임원 또는 이사'로 한다.

第237条 共有者による権利の行使

新株予約権が二以上の者の共有に属するときは、共有者は、当該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権利を行使する者一人を定め、株式会社に対し、その者の氏名又は名称を通知しなければ、当該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株式会社が当該権利を行使することに同意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2節 新株予約権の発行

第1款 募集事項の決定等

第238条 募集事項の決定

1 株式会社は、その発行する新株予約権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都度、募集新株予約権(当該募集に応じて当該新株予約権の引受けの申込みをした者に対して割り当てる新株予約権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次に掲げる事項(以下この節において「募集事項」という。)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募集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
- 二 募集新株予約権と引換えに金銭の払込みを要しないこととする場合には、その旨
- 三 前号に規定する場合以外の場合には、募集新株予約権の払込金額(募集新株予約権一個と引換えに払い込む金銭の額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又はその算定方法
- 四 募集新株予約権を割り当てる日(以下この節において「割当日」という。)
- 五 募集新株予約権と引換えにする金銭の払込みの期日を定めるときは、その期日
- 六 募集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は、第六百七十六条各号に掲げる事項
- 七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同号の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募集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第百十八条第一項、第百七十九条第二項、第七百七十七条第一項、第七百八十七条第一項又は第八百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の方法につき別段の定めをするときは、その定め

제237조 공유자에 의한 권리행사

신주예약권이 2인 이상의 자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신주예약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 1인을 정하고 주식회사에 그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예약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주식회사가 권리 행사에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신주예약권의 발행

제1관 모집사항의 결정 등

제238조 모집사항의 결정

①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예약권의 인수인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모집신주예약권(모집에 따라 신주예약권 인수의 청약을 하는 자에게 배정하는 신주예약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이하 이 절에서 “모집사항”이라고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1. 모집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
2. 모집신주예약권의 대가로 금전의 납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전호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모집신주예약권의 납입금액(각 신주예약권과 교환하여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그 산정방법
4. 모집신주예약권을 배정하는 날(이하 이 절에서 “배정일”이라고 한다)
5. 모집신주예약권의 대가인 금전의 납입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일
6. 모집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인 경우에는 제676조 각호의 사항
7. 전호에서 규정하는 경우 동호의 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모집신주예약권에 관한 제118조 제1항, 제179조 제2항, 제777조 제1항, 제787조 제1항 또는 제808조 제1항에 의한 청구방법에 관해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함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 2 募集事項の決定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 3 次に掲げる場合には、取締役は、前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第一号の条件又は第二号の金額で募集新株予約権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を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理由を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金銭の払込みを要しないこととすることが当該者に特に有利な条件であるとき。
 - 二 第一項第三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同号の払込金額が当該者に特に有利な金額であるとき。
- 4 種類株式発行会社において、募集新株予約権の目的である株式の種類の一部又は一部が譲渡制限株式であるときは、当該募集新株予約権に関する募集事項の決定は、当該種類の株式を目的とする募集新株予約権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について当該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の決議を要しない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当該種類株主総会の決議が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ただし、当該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種類株主が存し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5 募集事項は、第一項の募集ごとに、均等に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239条 募集事項の決定の委任

- 1 前条第二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主総会においては、その決議によって、募集事項の決定を取締役(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その委任に基づいて募集事項の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募集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の上限
 - 二 前号の募集新株予約権につき金銭の払込みを要しないこととする場合には、その旨
 - 三 前号に規定する場合以外の場合には、募集新株予約権の払込金額の下限
- 2 次に掲げる場合には、取締役は、前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第一号の条件又は第二号の金額で募集新株予約権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を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理由を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前項第二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金銭の払込みを要しないこととするこ

- ② 모집사항의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③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는 전항의 주주총회에서 제1호의 조건 또는 제2호의 금액으로 모집신주예약권을 인수하는 자를 모집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여야 한다.
 - 1. 제1항 제2호를 규정한 경우 금전 납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해당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조건일 때
 -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호의 납입금액이 해당자에게 특히 유리한 금액일 때
- ④ 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 모집신주예약권의 목적인 주식종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제한주식인 때에는 그 모집신주예약권에 관한 모집사항의 결정은 그 종류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모집신주예약권 인수인의 모집에 관하여 당해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관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다만, 그 종류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류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모집사항은 제1항의 모집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239조 모집사항 결정의 위임

- ① 전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모집사항의 결정을 이사(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그 위임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모집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의 상한
 - 2. 전호의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금전납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뜻
 - 3. 전호의 경우 이외에는 신주예약권 납입금액의 하한
- ② 다음 사항의 경우에 이사는 전항의 주주총회에서 제1호의 조건 또는 제2호의 금액으로 모집신주예약권 인수자 모집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1. 전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금전 납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자에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とが当該者に特に有利な条件であるとき。

二 前項第三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同号の払込金額の下限が当該者に特に有利な金額であるとき。

3 第一項の決議は、割当日が当該決議の日から一年以内の日である前条第一項の募集についてののみその効力を有する。

4 種類株式発行会社において、募集新株予約権の目的である株式の種類の一部又は一部が譲渡制限株式であるときは、当該募集新株予約権に関する募集事項の決定の委任は、前条第四項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当該種類株主総会の決議が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ただし、当該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種類株主が存し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240条 公開会社における募集事項の決定の特則

1 第二百三十八条第三項各号に掲げる場合を除き、公開会社における同条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主総会」とあるのは、「取締役会」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前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2 公開会社は、前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二百三十八条第二項の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募集事項を定めた場合には、割当日の二週間前までに、株主に対し、当該募集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4 第二項の規定は、株式会社が募集事項について割当日の二週間前までに金融商品取引法第四条第一項 から第三項 までの届出をしている場合その他の株主の保護に欠けるおそれがない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241条 株主に新株予約権の割当てを受ける権利を与える場合

1 株式会社は、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の募集において、株主に新株予約権の割当てを受ける権利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募集事項のほか、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株主に対し、次条第二項の申込みをすること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募集新株予約権(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その目的である株式の種類が当該株主の有する種類の株式と同一の種類のもの)の割当てを受ける権利を与える旨

게 특별히 유리한 조건인 때

2. 전항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 동호의 납입금액의 하한이 해당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금액인 때

③ 제1항의 결의는 배정일이 결의일로부터 1년 이내인 전조 제1항의 모집에 관하여만 효력이 있다.

④ 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 모집신주예약권의 목적인 주식 종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제한 주식인 때에는 그 모집신주예약권에 관한 모집사항 결정의 위임은 전조 제4항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다. 다만, 그 종류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류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0조 공개회사에 관한 모집사항 결정의 특칙

① 제238조 제3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회사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하여 동항 중 “주주총회”는 “이사회”로 본다. 이 경우 전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회사가 전항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238조 제2항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모집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배정일의 2주간 전까지 주주에게 모집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의한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은 주식회사가 모집사항에 관하여 배정일의 2주전까지 금융상품거래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를 한 경우 그 밖에 주주보호에 문제가 있을 염려가 없는 것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1조 주주에게 신주예약권을 배정받을 권리를 주는 경우

① 주식회사는 제238조 제1항의 모집의 경우 주주에게 신주예약권을 배정받을 권리를 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모집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주에게 다음조 제2항의 청약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모집신주예약권(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주식의 종류는 주주가 가진 종류주식과 같은 종류의 것)을 배정받을 권리를 부여한다는 뜻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二 前号の募集新株予約権の引受けの申込みの期日

2 前項の場合には、同項第一号の株主(当該株式会社を除く。)は、その有する株式の数に応じて募集新株予約権の割当て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ただし、当該株主が割当てを受ける募集新株予約権の数に一に満たない端数があるときは、これを切り捨てるものとする。

3 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場合には、募集事項及び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方法によって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当該募集事項及び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取締役の決定によって定めることができ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株式会社が取締役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を除く。) 取締役の決定

二 当該募集事項及び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定めることができ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次号に掲げる場合を除く。) 取締役会の決議

三 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ある場合 取締役会の決議

四 前三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株主総会の決議

4 株式会社は、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には、同項第二号の期日の二週間前までに、同項第一号の株主(当該株式会社を除く。)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募集事項

二 当該株主が割当てを受ける募集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

三 第一項第二号の期日

5 第二百三十八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及び前二条の規定は、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り株主に新株予約権の割当てを受ける権利を与え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2款 募集新株予約権の割当て

第242条 募集新株予約権の申込み

1 株式会社は、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の募集に応じて募集新株予約権の引受け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전호의 모집신주예약권 인수의 청약기일

② 전항의 경우에 동항 제1호의 주주(당해 주식회사는 제외한다)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모집신주예약권을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주주가 배정받을 모집신주예약권의 수가 1주에 미달하는 단주가 있는 경우 이를 버리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 모집사항 및 동항 각호의 사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모집사항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이사의 결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주식회사가 이사회설치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 이사의 결정

2. 모집사항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다음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이사회결의

3. 주식회사가 공개회사인 경우 : 이사회결의

4. 전3호 이외의 경우 : 주주총회결의

④ 주식회사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기일의 2주간 전까지 동항 제1호의 주주(당해 주식회사는 제외한다)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모집사항

2. 그 주주가 배정 받을 모집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

3. 제1항 제2호의 기일

⑤ 제238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전2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예약권을 배정받을 권리를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관 모집신주예약권의 배정

제242조 모집신주예약권의 신청

① 주식회사는 제238조 제1항의 모집에 응하여 모집신주예약권 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 一 株式会社の商号
 - 二 募集事項
 - 三 新株予約権の行使に際して金銭の払込みをすべきときは、払込みの取扱いの場所
 -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 2 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の募集に応じて募集新株予約権の引受けの申込みをする者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株式会社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申込みをする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 二 引き受けようとする募集新株予約権の数
- 3 前項の申込みをする者は、同項の書面の交付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株式会社の承諾を得て、同項の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申込みをした者は、同項の書面を交付したものとみなす。
- 4 第一項の規定は、株式会社が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金融商品取引法第二条第十項に規定する目論見書を第一項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て交付している場合その他募集新株予約権の引受け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の保護に欠けるおそれがない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 5 株式会社は、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変更があっ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及び当該変更があった事項を第二項の申込みをした者(以下この款において「申込者」という。)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6 募集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は、申込者(募集新株予約権のみの申込みをした者に限る。)は、その申込みに係る募集新株予約権を付した新株予約権付社債の引受けの申込みをしたものとみなす。
- 7 株式会社が申込者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催告は、第二項第一号の住所(当該申込者が別に通知又は催告を受ける場所又は連絡先を当該株式会社に通知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場所又は連絡先)にあてて発すれば足りる。
- 8 前項の通知又は催告は、その通知又は催告が通常到達すべきであった時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1. 주식회사의 상호
 2. 모집사항
 3. 신주예약권 행사시 금전의 납입을 하여야 할 때에는 납입장소
 4. 전3호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238조 제1항의 모집에 응하여 모집신주예약권 인수의 청약을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약을 하는 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2. 인수하려는 모집신주예약권의 수
- ③ 전항의 청약을 하는 자는 동항의 서면 제출에 갈음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승낙을 얻어 동항의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약을 한 자는 동항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은 주식회사가 동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10항의 투자설명서를 제1항의 청약을 하려고 한 자에게 교부하고 있는 경우 그 외에 주주보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주식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뜻 및 변경사항을 제2항의 청약을 한 자(이하 이 관에서 “청약자”라고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모집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인 경우 청약자(모집신주예약권만 청약을 한 자에 한한다)는 그 청약에 관련된 모집신주예약권이 부여된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인수를 청약한 것으로 본다.
- ⑦ 주식회사가 청약자에게 한 통지 또는 최고는 제2항 제1호의 주소(청약자가 별도로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 또는 연락처를 주식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장소 또는 연락처)에 발송하면 된다.
- ⑧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第243条 募集新株予約権の割当て

1 株式会社は、申込者の中から募集新株予約権の割当てを受ける者を定め、かつ、その者に割り当てる募集新株予約権の数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株式会社は、当該申込者に割り当てる募集新株予約権の数を、前条第二項第二号の数よりも減少することができる。

2 次に掲げる場合には、前項の規定による決定は、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募集新株予約権の目的である株式の全部又は一部が譲渡制限株式である場合

二 募集新株予約権が譲渡制限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であつて、譲渡による当該新株予約権の取得について株式会社の承認を要する旨の定めがあ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である場合

3 株式会社は、割当日の前日までに、申込者に対し、当該申込者に割り当てる募集新株予約権の数(当該募集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種類及び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を含む。)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二百四十一条の規定により株主に新株予約権の割当てを受ける権利を与えた場合において、株主が同条第一項第二号の期日までに前条第二項の申込みをしないときは、当該株主は、募集新株予約権の割当てを受ける権利を失う。

第244条 募集新株予約権の申込み及び割当てに関する特則

1 前二条の規定は、募集新株予約権を引き受けようとする者がその総数の引受けを行う契約を締結す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2 募集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の引受け」とあるのは、「及び当該募集新株予約権を付した社債の総額の引受け」とする。

3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次に掲げるときは、株式会社は、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同項の契約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募集新株予約権の目的である株式の全部又は一部が譲渡制限株式であるとき。

제243조 모집신주예약권의 배정

① 주식회사는 청약자 중에서 모집신주예약권을 배정 받을 자 및 그에게 배정하는 모집신주예약권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는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모집신주예약권의 수를 전조 제2항 제2호의 수보다 적게 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전항의 결정은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모집신주예약권의 목적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제한 주식인 경우
2. 모집신주예약권이 양도제한신주예약권(양도에 의한 신주예약권의 취득에 관하여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뜻의 정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인 경우

③ 주식회사는 배정일 전까지 청약자에 대해 그에게 배정한 모집신주예약권의 수(모집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인 경우에는 그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종류 및 각 사채의 합계액을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41조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예약권을 배정받을 권리를 부여한 경우 주주가 동조 제1항 제2호의 기일까지 전조 제2항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주주는 모집신주예약권을 배정받을 권리를 잃는다.

제244조 모집신주예약권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특칙

① 전2조는 모집신주예약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그 총수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모집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인 경우 전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중 “총수를 인수”는 “총수 및 모집신주예약권을 부여한 사채 총액을 인수”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동항의 계약에 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모집신주예약권의 목적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제한주식인 때

二 募集新株予約権が譲渡制限新株予約権であるとき。

第244条の2 公開会社における募集新株予約権の割当て等の特則

1 公開会社は、募集新株予約権の割当てを受けた申込者又は前条第一項の契約により募集新株予約権の総数を引き受けた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引受人」と総称する。)について、第一号に掲げる数の第二号に掲げる数に対する割合が二分の一を超える場合には、割当日の二週間前までに、株主に対し、当該引受人(以下この項及び第五項において「特定引受人」という。)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当該特定引受人についての第一号に掲げる数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特定引受人が当該公開会社の親会社等である場合又は第二百四十一条の規定により株主に新株予約権の割当てを受ける権利を与え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当該引受人(その子会社等を含む。)がその引き受けた募集新株予約権に係る交付株式の株主となった場合に有することとなる最も多い議決権の数

二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最も多い総株主の議決権の数

2 前項第一号に規定する「交付株式」とは、募集新株予約権の目的である株式、募集新株予約権の内容として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二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ける同号二の株式その他募集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が交付を受ける株式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株式をいう。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4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式会社が同項の事項について割当日の二週間前までに金融商品取引法第四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届出をしている場合その他の株主の保護に欠けるおそれがない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することを要しない。

5 総株主(この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を除く。)の議決権の十分の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議決権を有する株主が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第三項の公告の日(前項の場合にあっ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日)から二週間以内に特定引受人(その子会社等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よる募集新株予約権の引受けに反対する旨を公開会社に対し通知したときは、当該公開会社は、割当日の前日までに、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当該特定引受人に対する募集新株予

2. 모집신주예약권이 양도제한신주예약권인 때

제244조의2 모집신주예약권의 배정등에 관한 공개회사 특칙

① 공개회사는 모집신주예약권의 배정을 받은 청약자 또는 전조 제1항의 계약에 의해 모집신주예약권의 총수를 인수한 자(이하 이 항에 대해 “인수인”이라고 칭칭한다)에 관해 제1호의 수의 제2호의 수에 대한 비율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정일의 2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인수인(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특정인수인”이라고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특정인수인에 관해 제1호의 수, 그 이외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특정인수인이 공개회사인 모회사등인 경우 또는 제241조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예약권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인(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인수한 모집신주예약권과 관련된 교부주식의 주주가 된 경우에 소유하게 되는 의결권의 최다수

2. 전호의 경우 총주주의 최다 의결권수

② 전항 제1호의 “교부주식”이란 모집신주예약권의 목적인 주식, 모집신주예약권의 내용으로서 제236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의 동호 라목의 주식 그 외 모집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가 교부를 받는 주식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주식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가 동항의 사항에 관해 배정일의 2주전까지 금융상품거래법 제4조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 그 외의 주주 보호를 해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는 할 필요가 없다.

⑤ 총주주(이 항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제외한다)의 의결권의 10분의1(이것을 하회하는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주주가 제1항의 통지 또는 제3항의 공고일(전항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특정인수인(자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대해서 같다)에 의한 모집신주예약권의 인수에 반대하는 뜻을 공개회사에 통지하였을 때에는 공개회사는 배정일의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특정인수인에 대한 모집신주예약권의 배정 또는 특정인수인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約権の割当て又は当該特定引受人との間の前条第一項の契約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公開会社の財産の状況が著しく悪化している場合において、当該公開会社の事業の継続のため緊急の必要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6 第三百九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の株主総会の決議は、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三分の一以上の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を有する株主が出席し、出席した当該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これを上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をもっ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245条 新株予約権者となる日

1 次の各号に掲げる者は、割当日に、当該各号に定める募集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となる。

- 一 申込者 株式会社の割り当てた募集新株予約権
- 二 第二百四十四条第一項の契約により募集新株予約権の総数を引き受けた者
その者が引き受けた募集新株予約権

2 募集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は、前項の規定により募集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となる者は、当該募集新株予約権を付した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社債権者となる。

第3款 募集新株予約権に係る払込み

第246条

1 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第三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新株予約権者は、募集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四号の期間の初日の前日(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第五号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同号の期日。第三項において「払込期日」という。)までに、株式会社が定めた銀行等の払込みの取扱いの場所において、それぞれの募集新株予約権の払込金額の全額を払い込ま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新株予約権者は、株式会社の承諾を得て、同項の規定による払込みに代えて、払込金額に相当する金銭以外の財産を給付し、又は当該株式会社に対する債権をもって相殺することができる。

과의 사이의 전조 제1항의 계약에 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개회사의 재산상황이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는 경우 공개회사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0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주주총회결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3분의 1이상의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를 가지는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이것을 상회하는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로써 하여야 한다.

제245조 신주예약권자가 되는 시기

① 다음 각호의 자는 배정일에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모집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가 된다.

1. 청약자 : 주식회사가 배정한 모집신주예약권
2. 제244조 제1항의 계약에 의한 모집신주예약권의 총수를 인수한 자 : 그가 인수한 모집신주예약권

② 모집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인 경우 전항에 따라 모집신주예약권자가 된 자는 모집신주예약권이 부여된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사채권자가 된다.

제3관 모집신주예약권에 관한 납입

제246조

① 제238조 제1항 제3호를 규정하는 경우 신주예약권자는 제236조 제1항 제4호의 기간의 초일 전(제238조 제1항 제5호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기일. 제3항의 경우에는 “납입기일”이라고 한다)까지 주식회사가 정한 은행 등의 납입장소에서 모집신주예약권에 관한 납입금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주예약권자는 주식회사의 승낙을 얻어 동항에 따른 납입에 대신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급부하거나 그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3 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第三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新株予約権者は、募集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払込期日までに、それぞれの募集新株予約権の払込金額の全額の払込み(当該払込みに代えてする金銭以外の財産の給付又は当該株式会社に対する債権をもってする相殺を含む。)をしないときは、当該募集新株予約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四款 募集新株予約権の発行をやめることの請求

第247条

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株主が不利益を受け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株主は、株式会社に対し、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の募集に係る新株予約権の発行をやめ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当該新株予約権の発行が法令又は定款に違反する場合
- 二 当該新株予約権の発行が著しく不公正な方法により行われる場合

第5款 雑則

第248条

第六百七十六条から第六百八十条までの規定は、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三節 新株予約権原簿

第249条 新株予約権原簿

1 株式会社は、新株予約権を発行した日以後遅滞なく、新株予約権原簿を作成し、次の各号に掲げる新株予約権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以下「新株予約権原簿記載事項」という。)を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無記名式の新株予約権証券が発行されている新株予約権(以下この章において「無記名新株予約権」という。) 当該新株予約権証券の番号並びに当該無記名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
- 二 無記名式の新株予約権付社債券(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新株予約権付社債であって、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につき社債券を発行

③ 제238조 제1항 제3호를 규정하는 경우 신주예약권자가 모집신주예약권의 납입기일까지 모집신주예약권의 납입금액 전액을 납입(납입에 대신하는 금전 외의 재산의 급부 또는 그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써의 상계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모집신주예약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관 모집신주예약권의 발행을 중지(유지)할 것을 청구

제247조

다음 경우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주주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제238조 제1항의 신주예약권 발행을 유지(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신주예약권 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2. 신주예약권 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제5관 잡칙

제248조

제676조 내지 제680조는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사채를 인수하는 자의 모집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신주예약권원부

제249조 신주예약권원부

① 주식회사는 신주예약권을 발행한 날 이후 지체없이 신주예약권원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당해 사항(이하 “신주예약권원부 기재사항”이라고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무기명식의 신주예약권증권이 발행된 신주예약권(이하 이 장에서 “무기명 신주예약권”이라고 한다) : 신주예약권증권의 번호와 그 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
2. 무기명식의 신주예약권부사채권(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하여 사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의 정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する旨の定めがあ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に係る社債券をいう。以下同じ。)が発行されている新株予約権付社債(以下この章において「無記名新株予約権付社債」という。)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 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券の番号並びに当該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

三 前二号に掲げる新株予約権以外の新株予約権 次に掲げる事項

イ 新株予約権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ロ イの新株予約権者の有する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

ハ イの新株予約権者が新株予約権を取得した日

ニ ロの新株予約権が証券発行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であって、当該新株予約権に係る新株予約権証券を発行する旨の定めがあ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証券が発行されているものに限る。)に係る新株予約権証券の番号

ホ ロの新株予約権が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を付した新株予約権付社債(新株予約権付社債券が発行されているものに限る。)に係る新株予約権付社債券の番号

第250条 新株予約権原簿記載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等

1 前条第三号イの新株予約権者は、株式会社に対し、当該新株予約権者についての新株予約権原簿に記載され、若しくは記録された新株予約権原簿記載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又は当該新株予約権原簿記載事項を記録した電磁的記録の提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書面には、株式会社の代表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代表執行役。次項において同じ。)が署名し、又は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電磁的記録には、株式会社の代表取締役が法務省令で定める署名又は記名押印に代わる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三項の規定は、証券発行新株予約権及び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251条 新株予約権原簿の管理

株式会社が新株予約権を発行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第二百二十三条の規定の適

장에서 같다)의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되어 있는 신주예약권부사채(이하 이 장에서 “무기명신주예약권부사채”라고 한다)에 부여된 신주예약권 :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의 번호, 당해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

3. 전2호의 신주예약권 이외의 신주예약권 : 다음의 사항

가. 신주예약권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나. 가목의 신주예약권자가 가지는 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

다. 가목의 신주예약권자가 신주예약권을 취득한 날

라. 나목의 신주예약권이 증권발행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신주예약권증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인 때에는 신주예약권증권(신주예약권증권이 발행된 것에 한한다)의 번호

마. 나목의 신주예약권이 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인 때에는 당해신주예약권을 부여한 신주예약권부사채(신주예약권부사채권이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관련된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의 번호

제250조 신주예약권원부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① 전조 제3호 가목의 신주예약권자는 주식회사에 대해 당해 신주예약권자에 관한 신주예약권원부에 기재되거나 또는 기록된 신주예약권원부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또는 신주예약권원부기재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다음 항에서 같다)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자적 기록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대신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전3항은 증권발행신주예약권 및 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1조 신주예약권원부의 관리

주식회사가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제123조의 적용에 관하여 동조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用については、同条中「株主名簿の」とあるのは「株主名簿及び新株予約権原簿の」と、「株主名簿に」とあるのは「株主名簿及び新株予約権原簿に」とする。

第252条 新株予約権原簿の備置き及び閲覧等

- 1 株式会社は、新株予約権原簿をその本店(株主名簿管理人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営業所)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 2 株主及び債権者は、株式会社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請求の理由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新株予約権原簿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 二 新株予約権原簿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 3 株式会社は、前項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これ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
 - 一 当該請求を行う株主又は債権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請求者」という。)がその権利の確保又は行使に関する調査以外の目的で請求を行ったとき。
 - 二 請求者が当該株式会社の業務の遂行を妨げ、又は株主の共同の利益を害する目的で請求を行ったとき。
 - 三 請求者が新株予約権原簿の閲覧又は謄写によって知り得た事実を利益を得て第三者に通報するため請求を行ったとき。
 - 四 請求者が、過去二年以内において、新株予約権原簿の閲覧又は謄写によって知り得た事実を利益を得て第三者に通報したこと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 4 株式会社の親会社社員は、そ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当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原簿について第二項各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請求の理由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5 前項の親会社社員について第三項各号のいずれかに規定する事由があるときは、裁判所は、前項の許可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중 “주주명부의”는 “주주명부 및 신주예약권원부의”로, “주주명부에”는 “주주명부 및 신주예약권원부에”로 본다.

제252조 신주예약권원부의 비치 및 열람 등

- ① 주식회사는 신주예약권원부를 본점(주주명부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주주 및 채권자는 주식회사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주예약권원부가 서면으로 작성된 때에는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신주예약권원부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때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③ 주식회사는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청구한 주주 또는 채권자(이하 이 항에서 “청구자”라고 한다)가 권리 확보 또는 행사에 관한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2. 청구자가 주식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3. 청구자가 신주예약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이익을 얻고 제3자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청구를 한 때.
4. 청구자가 과거 2년 이내에 신주예약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이익을 얻고 제3자에게 통보한 적이 있는 자일 때.

④ 주식회사의 모회사사원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원부에 관하여 제2항 각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구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모회사의 사원이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은 전항의 허가를 할 수 없다.

第253条 新株予約権者に対する通知等

- 1 株式会社が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催告は、新株予約権原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た当該新株予約権者の住所(当該新株予約権者が別に通知又は催告を受ける場所又は連絡先を当該株式会社に通知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場所又は連絡先) にあてて発すれば足りる。
- 2 前項の通知又は催告は、その通知又は催告が通常到達すべきであった時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 3 新株予約権が二以上の者の共有に属するときは、共有者は、株式会社が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催告を受領する者一人を定め、当該株式会社に對し、その者の氏名又は名称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者を新株予約権者とみなして、前二項の規定を適用する。
- 4 前項の規定による共有者の通知がない場合には、株式会社が新株予約権の共有者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催告は、そのうちの一人に対してすれば足りる。

第4節 新株予約権の譲渡等

第1款 新株予約権の譲渡

第254条 新株予約権の譲渡

- 1 新株予約権者は、その有する新株予約権を譲渡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みを譲渡することはできない。ただし、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が消滅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3 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みを譲渡することはできない。ただし、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が消滅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255条 証券発行新株予約権の譲渡

- 1 証券発行新株予約権の譲渡は、当該証券発行新株予約権に係る新株予約権証券を交付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ただし、自己新株予約権(株式会社が有する自己の新株予約権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 の処分による証券発行新株予約権の譲渡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제253조 신주예약권자에 대한 통지 등

- ①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신주예약권원부에 기재 하거나 또는 기록한 신주예약권자의 주소(신주예약권자가 별도로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 또는 연락처를 주식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장소 또는 연락처)에 발송하면 된다.
-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③ 신주예약권이 2인 이상의 자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수령할 자 1인을 정하여 주식회사에 그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를 신주예약권자로 보고 전2항을 적용한다.
- ④ 전항에 따른 공유자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신주예약권 공유자에 대해 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 1인에게 하면 된다.

제4절 신주예약권의 양도 등

제1관 신주예약권의 양도

제254조 신주예약권의 양도

- ① 신주예약권자는 보유하는 신주예약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다만,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가 소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다만,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 증권발행신주예약권의 양도

- ① 증권발행신주예약권의 양도는 당해증권발행신주예약권에 관한 신주예약권 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다만, 자기신주예약권(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신주예약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처분에 의한 증권발행신주예약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2 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譲渡は、当該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係る新株予約権付社債券を交付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ただし、自己新株予約権付社債(株式会社が有する自己の新株予約権付社債をいう。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の処分による当該自己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譲渡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第256条 自己新株予約権の処分に関する特則

- 1 株式会社は、自己新株予約権(証券発行新株予約権に限る。)を処分した日以後遅滞なく、当該自己新株予約権を取得した者に対し、新株予約権証券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式会社は、同項の者から請求がある時までは、同項の新株予約権証券を交付しないことができる。
- 3 株式会社は、自己新株予約権付社債(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限る。)を処分した日以後遅滞なく、当該自己新株予約権付社債を取得した者に対し、新株予約権付社債券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第六百八十七条の規定は、自己新株予約権付社債の処分による当該自己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譲渡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257条 新株予約権の譲渡の對抗要件

- 1 新株予約権の譲渡は、その新株予約権を取得した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を新株予約権原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株式会社その他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 2 記名式の新株予約権証券が発行されている証券発行新株予約権及び記名式の新株予約権付社債券が発行されている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式会社その他の第三者」とあるのは、「株式会社」とする。
- 3 第一項の規定は、無記名新株予約権及び無記名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258条 権利の推定等

- 1 新株予約権証券の占有者は、当該新株予約権証券に係る証券発行新株予約

② 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의 양도는 당해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다만, 자기신주예약권부사채(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신주예약권부사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같다)의 처분에 의한 자기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6조 자기신주예약권의 처분에 관한 특칙

- ① 주식회사는 자기신주예약권(증권발행신주예약권에 한한다)을 처분한 후 지체없이 그 신주예약권을 취득한 자에게 신주예약권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는 동항의 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까지는 동항의 신주예약권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주식회사는 자기신주예약권부사채(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에 한한다)를 처분한 후 지체없이 신주예약권부사채를 취득한 자에게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687조는 자기신주예약권부사채의 처분에 의한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7조 신주예약권 양도의 대항요건

- ① 신주예약권의 양도는 신주예약권을 취득한 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를 신주예약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하면 주식회사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기명식의 신주예약권증권이 발행된 증권발행신주예약권 및 기명식의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이 발행된 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한 전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주식회사 그 밖의 제3자”는 “주식회사”로 본다.
- ③ 제1항은 무기명신주예약권 및 무기명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8조 권리추정 등

- ① 신주예약권증권의 점유자는 그 증권의 신주예약권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権についての権利を適法に有するものと推定する。

2 新株予約権証券の交付を受けた者は、当該新株予約権証券に係る証券発行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権利を取得する。ただし、その者に悪意又は重大な過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3 新株予約権付社債券の占有者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券に係る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権利を適法に有するものと推定する。

4 新株予約権付社債券の交付を受けた者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券に係る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権利を取得する。ただし、その者に悪意又は重大な過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259条 新株予約権者の請求によらない新株予約権原簿記載事項の記載又は記録

1 株式会社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係る新株予約権原簿記載事項を新株予約権原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当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を取得した場合

二 自己新株予約権を処分した場合

2 前項の規定は、無記名新株予約権及び無記名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260条 新株予約権者の請求による新株予約権原簿記載事項の記載又は記録

1 新株予約権を当該新株予約権を発行した株式会社以外の者から取得した者（当該株式会社を除く。以下この節において「新株予約権取得者」という。）は、当該株式会社に対し、当該新株予約権に係る新株予約権原簿記載事項を新株予約権原簿に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は、利害関係人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を除き、その取得し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として新株予約権原簿に記載され、若しくは記録された者又はその相続人その他の一般承継人と共同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二項の規定は、無記名新株予約権及び無記名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신주예약권증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증권의 신주예약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그 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의 점유자는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의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의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그 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9조 신주예약권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는 신주예약권원부기재사항의 기재

① 주식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 관한 신주예약권원부기재사항을 신주예약권원부에 기재하거나 기록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취득한 경우
2. 자기신주예약권을 처분한 경우

② 전항은 무기명신주예약권 및 무기명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0조 신주예약권자의 청구에 의한 신주예약권원부기재사항의 기재

① 신주예약권을 당해 신주예약권을 발행한 주식회사 이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자(당해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신주예약권취득자”라고 한다)는 주식회사에 그 신주예약권에 관한 신주예약권원부기재사항을 신주예약권원부에 기재하거나 기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청구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취득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로서 신주예약권원부에 기재되거나 기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일반승계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은 무기명신주예약권 및 무기명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61条

前条の規定は、新株予約権取得者が取得した新株予約権が譲渡制限新株予約権であ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ただし、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当該新株予約権取得者が当該譲渡制限新株予約権を取得することについて次条の承認を受けていること。
- 二 当該新株予約権取得者が当該譲渡制限新株予約権を取得したことについて第二百六十三条第一項の承認を受けていること。
- 三 当該新株予約権取得者が相続その他の一般承継により譲渡制限新株予約権を取得した者であること。

第2款 新株予約権の譲渡の制限

第262条 新株予約権者からの承認の請求

譲渡制限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その有する譲渡制限新株予約権を他人(当該譲渡制限新株予約権を発行した株式会社を除く。)に譲り渡そうとするときは、当該株式会社に対し、当該他人が当該譲渡制限新株予約権を取得することについて承認をするか否かの決定を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263条 新株予約権取得者からの承認の請求

- 1 譲渡制限新株予約権を取得した新株予約権取得者は、株式会社に対し、当該譲渡制限新株予約権を取得したことについて承認をするか否かの決定を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は、利害関係人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を除き、その取得し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として新株予約権原簿に記載され、若しくは記録された者又はその相続人その他の一般承継人と共同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64条 譲渡等承認請求の方法

次の各号に掲げる請求(以下この款において「譲渡等承認請求」という。)は、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第二百六十二条の規定による請求 次に掲げる事項

제261조

전조는 신주예약권취득자가 취득한 신주예약권이 양도제한신주예약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예약권취득자가 양도제한신주예약권을 취득한 것에 관하여 다음 조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신주예약권취득자가 양도제한신주예약권을 취득한 것에 관하여 제263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신주예약권취득자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양도제한신주예약권을 취득한 경우

제2관 신주예약권의 양도제한

제262조 신주예약권자로부터의 승인청구

양도제한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양도제한신주예약권을 타인(양도제한신주예약권을 발행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주식회사에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3조 신주예약권취득자로부터의 승인청구

① 양도제한신주예약권을 취득한 신주예약권취득자는 주식회사에 양도제한신주예약권 취득에 관한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청구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취득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로서 신주예약권원부에 기재되거나 기록된 자, 상속인 그 밖의 일반승계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제264조 양도등 승인청구의 방법

다음 각호의 청구(이하 이 관에서 “양도등 승인청구”라고 한다)는 당해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제262조에 의한 청구는 다음의 사항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イ 当該請求をする新株予約権者が譲り渡そうとする譲渡制限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

ロ イの譲渡制限新株予約権を譲り受ける者の氏名又は名称

二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 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請求をする新株予約権取得者の取得した譲渡制限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

ロ イの新株予約権取得者の氏名又は名称

第265条 譲渡等の承認の決定等

1 株式会社が第二百六十二条又は第二百六十三条第一項の承認をするか否かの決定をするには、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新株予約権の内容として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株式会社は、前項の決定をしたときは、譲渡等承認請求をした者に対し、当該決定の内容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66条 株式会社が承認をしたとみなされる場合

株式会社が譲渡等承認請求の日から二週間(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期間)以内に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なかった場合には、第二百六十二条又は第二百六十三条第一項の承認をし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当該株式会社と当該譲渡等承認請求をした者との合意により別段の定めを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3款 新株予約権の質入れ

第267条 新株予約権の質入れ

1 新株予約権者は、その有する新株予約権に質権を設定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みに質権を設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ただし、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が消滅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3 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みに質権を設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た

가. 신주예약권자가 양도하려는 양도제한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

나. 가목의 양도제한신주예약권을 양수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전조 제1항에 의한 청구는 다음의 사항

가. 신주예약권취득자가 취득한 양도제한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

나. 가목의 신주예약권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제265조 양도등 승인의 결정 등

① 주식회사는 제262조 또는 제263조 제1항의 승인 여부의 결정을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예약권의 내용으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식회사는 전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양도등 승인청구를 한 자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6조 주식회사가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주식회사가 양도등 승인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전조 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2조 또는 제263조 제1항의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식회사와 그 양도등 승인청구를 한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관 신주예약권의 입질

제267조 신주예약권의 입질

① 신주예약권자는 신주예약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대해서만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다만,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가 소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만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다만, 신주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だし、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が消滅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4 証券発行新株予約権の質入れは、当該証券発行新株予約権に係る新株予約権証券を交付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5 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質入れは、当該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係る新株予約権付社債券を交付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第268条 新株予約権の質入れの対抗要件

1 新株予約権の質入れは、その質権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を新株予約権原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株式会社その他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証券発行新株予約権の質権者は、継続して当該証券発行新株予約権に係る新株予約権証券を占有しなければ、その質権をもって株式会社その他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質権者は、継続して当該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係る新株予約権付社債券を占有しなければ、その質権をもって株式会社その他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269条 新株予約権原簿の記載等

1 新株予約権に質権を設定した者は、株式会社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新株予約権原簿に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質権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二 質権の目的である新株予約権

2 前項の規定は、無記名新株予約権及び無記名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270条 新株予約権原簿の記載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等

1 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が新株予約権原簿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質権者(以下「登録新株予約権質権者」という。)は、株式会社に対し、当該登録新

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증권발행신주예약권의 입질은 신주예약권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⑤ 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의 입질은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제268조 신주예약권 입질의 대항요건

- ① 신주예약권의 입질은 질권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를 신주예약권원부에 기재하거나 기록하지 아니하면 주식회사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발행신주예약권의 질권자는 계속하여 신주예약권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주식회사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의 질권자는 계속하여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질권으로써 주식회사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9조 신주예약권원부의 기재 등

- ① 신주예약권에 질권을 설정한 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신주예약권원부에 기재하거나 기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1. 질권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 2. 질권의 목적인 신주예약권
- ② 전항은 무기명신주예약권 및 무기명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0조 신주예약권원부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 ① 전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신주예약권원부에 기재되거나 기록된 질권자(이하 “등록신주예약권질권자”라고 한다)는 주식회사에 그에 관하여 신주예약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株予約権質権者についての新株予約権原簿に記載され、若しくは記録された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又は当該事項を記録した電磁的記録の提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書面には、株式会社の代表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代表執行役。次項において同じ。)が署名し、又は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電磁的記録には、株式会社の代表取締役が法務省令で定める署名又は記名押印に代わる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三項の規定は、証券発行新株予約権及び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271条 登録新株予約権質権者に対する通知等

1 株式会社が登録新株予約権質権者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催告は、新株予約権原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た当該登録新株予約権質権者の住所(当該登録新株予約権質権者が別に通知又は催告を受ける場所又は連絡先を当該株式会社に通知し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場所又は連絡先) にあてて発すれば足りる。

2 前項の通知又は催告は、その通知又は催告が通常到達すべきであった時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第272条 新株予約権の質入れの効果

1 株式会社が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は、新株予約権を目的とする質権は、当該行為によって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が受けることのできる金銭等について存在する。

一 新株予約権の取得

二 組織変更

三 合併(合併により当該株式会社が消滅する場合に限る。)

四 吸収分割

五 新設分割

六 株式交換

七 株式移転

2 登録新株予約権質権者は、前項の金銭等(金銭に限る。)を受領し、他の債権者に先立って自己の債権の弁済に充てることができる。

권원부에 기재되거나 기록된 동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또는 당해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서면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다음 항에서 같다)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전자적 기록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전3항은 증권발행신주예약권 및 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1조 등록신주예약권질권자에 대한 통지 등

- ① 주식회사의 등록신주예약권질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신주예약권원부에 기재하거나 기록한 신주예약권 질권자의 주소(신주예약권 질권자가 별도로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 또는 연락처를 주식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장소 또는 연락처)로 발송하면 된다.
-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했어야 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72조 신주예약권의 입질의 효과

- ① 주식회사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주예약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각 행위에 의하여 신주예약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 등에 관하여 존재한다.
 - 1. 신주예약권의 취득
 - 2. 조직변경
 - 3. 합병(합병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흡수분할
 - 5. 신설분할
 - 6. 주식교환
 - 7. 주식이전
- ② 등록신주예약권질권자는 전항의 금전 등(금전에 한한다)을 수령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3 株式会社が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前項の債権の弁済期が到来していないときは、登録新株予約権質権者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同項に規定する金銭等に相当する金額を供託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質権は、その供託金について存在する。

一 新株予約権の取得 当該株式会社

二 組織変更 第七百四十四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組織変更後持分会社

三 合併(合併により当該株式会社が消滅する場合に限る。) 第七百四十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吸収合併存続会社又は第七百五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新設合併設立会社

4 前三項の規定は、特別支配株主が新株予約権売渡請求により売渡新株予約権の取得をし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項中「当該各号に定める者」とあるのは、「当該特別支配株主」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5 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三号の財産が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であるものであって、当該社債の償還額が当該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同項第二号の価額以上であるものに限る。)を目的とする質権は、当該新株予約権の行使をすることにより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が交付を受ける株式について存在する。

第4款 信託財産に属する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対抗要件等

第272条の2

1 新株予約権については、当該新株予約権が信託財産に属する旨を新株予約権原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当該新株予約権が信託財産に属することを株式会社その他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第二百四十九条第三号イの新株予約権者は、その有する新株予約権が信託財産に属するときは、株式会社に対し、その旨を新株予約権原簿に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 新株予約権原簿に前項の規定による記載又は記録がされた場合における第二百五十条第一項及び第二百五十九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二百五十条第一項中「記録された新株予約権原簿記載事項」とあるのは「記録された新株予約権原簿記載事項(当該新株予約権者の有する新株予約権が信託財産

③ 주식회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전항의 채권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등록신주예약권질권자는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동항에서 규정하는 금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관하여 존재한다.

1. 신주예약권의 취득 : 당해 주식회사
2. 조직변경 : 제744조 제1항 제1호의 조직변경후지분회사
3. 합병(합병에 의해 당해 주식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749조 제1항의 흡수합병존속회사 또는 제753조 제1항의 신설합병설립회사.

④ 전3항의 규정은 특별지배주주가 신주예약권매도청구에 의해 매도신주예약권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전항 중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자”는 “당해 특별지배주주”라 한다.

⑤ 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신주예약권(제236조 제1항 제3호의 재산이 신주예약권부사채상의 사채이고, 당해 사채의 상환금액이 신주예약권에 관한 동항 제2호의 가액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신주예약권을 행사함으로써 당해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가 교부받는 주식에 관하여 존재한다.

제4관 신탁재산에 속하는 신주예약권에 관한 대항요건 등

제272조의2

① 신주예약권에 관하여는 신주예약권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뜻을 신주예약권원부에 기재하거나 기록하지 아니하면 신주예약권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것으로 주식회사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249조 제3호 가목의 신주예약권자는 그의 신주예약권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때에는 주식회사에 그 뜻을 신주예약권원부에 기재하거나 기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신주예약권원부에 전항에 의한 기재 또는 기록이 된 경우 제250조 제1항 및 제259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 제250조 제1항 중 “기재된 신주예약권원부 기재사항”은 “기재된 신주예약권원부 기재사항(신주예약권자가 보유하는 신주예약권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뜻을 포함한다)”으로, 제259조 제1항 중 “신주예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に属する旨を含む。) 」と、第二百五十九条第一項中「新株予約権原簿記載事項」とあるのは「新株予約権原簿記載事項(当該新株予約権者の有する新株予約権が信託財産に属する旨を含む。) 」とする。

4 前三項の規定は、証券発行新株予約権及び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5節 株式会社による自己の新株予約権の取得

第1款 募集事項の定めに基づく新株予約権の取得

第273条 取得する日の決定

1 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イ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新株予約権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 の内容として同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株式会社は、同号ロの日を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 の決議によって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の内容として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ロの日を定めたときは、株式会社は、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同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決定した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及びその登録新株予約権質権者に対し、当該日の二週間前までに、当該日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第274条 取得する新株予約権の決定等

1 株式会社は、新株予約権の内容として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いて、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を取得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取得する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は、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 の決議によって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の内容として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약권원부기재사항”은 “신주예약권원부기재사항(신주예약권자가 보유하는 신주예약권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뜻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④ 전3항은 증권발행신주예약권 및 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절 주식회사에 의한 자기신주예약권 취득

제1관 모집사항 규정에 기한 신주예약권의 취득

제273조 취득일의 결정

①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제236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사항에 관하여 정함이 있는 신주예약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내용으로서 동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동호 나목의 날을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의 내용으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36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날을 정한 때에 주식회사는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동호 다목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경우에는 다음 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및 그 등록신주예약권질권자에 대하여 해당일의 2주간 전까지 해당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의한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4조 취득한 신주예약권의 결정 등

① 주식회사는 신주예약권의 내용으로서 제236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항을 정한 경우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은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의 내용으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をしたときは、株式会社は、同項の規定により決定した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及びその登録新株予約権質権者に対し、直ちに、当該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を取得する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第275条 効力の発生等

- 1 株式会社は、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イの事由が生じた日(同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第一号に掲げる日又は第二号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遅い日。次項及び第三項において同じ。)に、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同条第一項第七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決定したもの。次項及び第三項において同じ。)を取得する。
 - 一 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イの事由が生じた日
 - 二 前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又は同条第四項の公告の日から二週間を経過した日
- 2 前項の規定により株式会社が取得する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は、株式会社は、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イの事由が生じた日に、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を取得する。
- 3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当該株式会社を除く。)は、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イの事由が生じた日に、同号に定め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当該各号に定める者となる。
 - 一 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ニ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ニの株式の株主
 - 二 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ホ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ホの社債の社債権者
 - 三 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ヘ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ヘの他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 四 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ト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トの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社債権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 4 株式会社は、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イの事由が生じた後、遅滞なく、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及びその登録新株予約権質権者(同号ハに

- ③ 제1항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 주식회사는 동항에 의하여 결정된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및 그 등록신주예약권질권자에게 즉시 당해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을 취득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전항에 의한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5조 효력의 발생 등

- ① 주식회사는 제236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동호 다목의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날 중 느린 날. 다음 항 및 다음 제3항에서 같다)에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동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전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것. 다음 항 및 다음 제3항에서 같다)을 취득한다.
1. 제236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2. 전조 제3항에 의한 통지일 또는 동조 제4항의 공고일로부터 2주년을 경과한 날
- ② 전항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취득한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인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제236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그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사채를 취득한다.
-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당해 주식회사는 제외한다)는 제236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동호의 사항의 정함에 따라 해당 각호의 자가 된다.
1. 제236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경우 : 동호 라목의 주식의 주주
 2. 제236조 제1항 제7호 마목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경우 : 동호 마목의 사채의 사채권자
 3. 제236조 제1항 제7호 바목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경우 : 동호 바목의 다른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4. 제236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경우 : 동호 사목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사채권자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 ④ 주식회사는 제236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및 그 등록신주예약권질권자(동호 다목의

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決定した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及びその登録新株予約権質権者) に対し、当該事由が生じ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二百七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同条第三項の公告を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5 前項本文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第2款 新株予約権の消却

第276条

- 1 株式会社は、自己新株予約権を消却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消却する自己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2 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前項後段の規定による決定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第6節 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

第277条 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

株式会社は、株主(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ある種類の種類株主) に対して新たに払込みをさせないで当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割当て(以下この節において「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という。) 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278条 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に関する事項の決定

- 1 株式会社は、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都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株主に割り当てる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又はその算定方法
 - 二 前号の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種類及び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 三 当該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
 - 四 株式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は、当該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を受ける株主の有する株式の種類

사항에 관하여 정한 경우에는 전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및 그 등록신주예약권질권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73조 제2항에 의한 통지 또는 동조 제3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항 본문에 의한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2관 신주예약권의 소각

제276조

- ① 주식회사는 자기신주예약권을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각하는 자기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를 정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설치회사는 전항 후단에 의한 결정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절 신주예약권무상배정

제277조 신주예약권무상배정

주식회사는 주주(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종류주주)에게 새로 납입을 시키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이하 이 절에서 “신주예약권무상배정”이라고 한다) 배정할 수 있다.

제278조 신주예약권무상배정에 관한 사항의 결정

- ① 주식회사는 신주예약권무상배정을 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주에게 배정한 신주예약권의 내용, 수 또는 그 산정방법
 2. 전호의 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인 때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의 종류, 각 사채 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3. 신주예약권무상배정의 효력 발생일
 4. 주식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는 신주예약권무상배정을 받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종류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2 前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は、当該株式会社以外の株主(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同項第四号の種類の種類株主)の有する株式(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同項第四号の種類の株式)の数に応じて同項第一号の新株予約権及び同項第二号の社債を割り当てること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は、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279条 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の効力の発生等

1 前条第一項第一号の新株予約権の割当てを受けた株主は、同項第三号の日に、同項第一号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同項第二号に規定する場合にあつては、同項第一号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及び同項第二号の社債の社債権者)となる。

2 株式会社は、前条第一項第三号の日後遅滞なく、株主(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同項第四号の種類の種類株主)及びその登録株式質権者に対し、当該株主が割当てを受けた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同項第二号に規定す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株主が割当てを受けた社債の種類及び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を含む。)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がされた場合において、前条第一項第一号の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四号の期間の末日が当該通知の日から二週間を経過する日前に到来するときは、同号の期間は、当該通知の日から二週間を経過する日まで延長されたものとみなす。

第7節 新株予約権の行使

第1款 総則

第280条 新株予約権の行使

1 新株予約権の行使は、次に掲げる事項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その行使に係る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
- 二 新株予約権を行使する日

②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은 주식회사 이외의 주주(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동항 제4호의 종류의 종류주주)가 가지는 주식(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동항 제4호의 종류주식)의 수에 따라 동항 제1호의 신주예약권 및 동항 제2호의 사채 배정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항의 결정은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9조 신주예약권무상배정의 효력발생 등

① 전조 제1항 제1호의 신주예약권의 배정을 받은 주주는 동항 제3호의 발생일에 동항 제1호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및 동항 제2호의 사채의 사채권자)가 된다.

② 주식회사는 전조 제1항 제3호의 날 이후 지체 없이 주주(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동항 제4호의 종류의 종류주주) 및 그 등록주식질권자에 대해 주주가 배정받은 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배정받은 사채의 종류 및 각 사채 금액의 합계액을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전조 제1항 제1호의 신주예약권에 관한 제236조 제1항 제4호의 기간의 말일이 통지일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는 날 전에 도래할 때에는 동호의 기간은 당해 통지일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는 날까지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절 신주예약권의 행사

제1관 총칙

제280조 신주예약권의 행사

① 신주예약권의 행사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1. 행사하는 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
2. 신주예약권의 행사일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2 証券発行新株予約権を行使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証券発行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当該証券発行新株予約権に係る新株予約権証券を株式会社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新株予約権証券が発行されてい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3 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を行使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当該新株予約権を付した新株予約権付社債に係る新株予約権付社債券を株式会社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券に当該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が消滅した旨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を行使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の行使により当該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が消滅す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当該新株予約権を付した新株予約権付社債に係る新株予約権付社債券を株式会社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償還後に当該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を行使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当該新株予約権を付した新株予約権付社債に係る新株予約権付社債券を株式会社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株式会社は、自己新株予約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281条 新株予約権の行使に際しての払込み

1 金銭を新株予約権の行使に際してする出資の目的とするときは、新株予約権者は、前条第一項第二号の日に、株式会社が定めた銀行等の払込みの取扱いの場所において、その行使に係る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二号の価額の全額を払い込まなければならない。

2 金銭以外の財産を新株予約権の行使に際してする出資の目的とするときは、新株予約権者は、前条第一項第二号の日に、その行使に係る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三号の財産を給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財産の価額が同項第二号の価額に足りないときは、前項の払込みの取扱いの場所においてその差額に相当する金銭を払い込まなければならない。

3 新株予約権者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払込み又は前項の規定による給付をす

② 증권발행신주예약권을 행사하려는 때에는 신주예약권자는 신주예약권증권을 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주예약권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신주예약권자는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을 주식회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는 신주예약권부사채권에 이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이 소멸하였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그 행사에 의하여 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가 소멸하는 때에는 신주예약권자는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을 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의 상환 후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신주예약권자는 당해 신주예약권을 부여한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을 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식회사는 자기신주예약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81조 신주예약권의 행사시의 납입

① 금전을 신주예약권 행사시의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신주예약권자는 전조 제1항 제2호의 행사일에 주식회사가 정한 은행 등의 납입장소에서 행사하는 신주예약권에 관한 제23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전 외의 재산을 신주예약권 행사시의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신주예약권자는 전조 제1항 제2호의 행사일에 신주예약권에 관한 제236조 제1항 제3호의 재산의 출자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전항의 납입장소에서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신주예약권자는 제1항에 의한 납입 또는 전항에 따른 급부를 하여야 하는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る債務と株式会社に対する債権とを相殺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282条 株主となる時期

1 新株予約権を行使した新株予約権者は、当該新株予約権を行使した日に、当該新株予約権の目的である株式の株主となる。

2 新株予約権を行使した新株予約権者であって第二百八十六条の二第一項各号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ものは、当該各号に定める支払若しくは給付又は第二百八十六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支払がされた後でなければ、第二百八十六条の二第一項各号の払込み又は給付が仮装された新株予約権の目的である株式について、株主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前項の株式を譲り受けた者は、当該株式についての株主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者に悪意又は重大な過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283条 一に満たない端数の処理

新株予約権を行使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交付する株式の数に一株に満たない端数があるときは、株式会社は、当該新株予約権者に対し、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にその端数を乗じて得た額に相当する金銭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九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当該株式が市場価格のある株式である場合 当該株式一株の市場価格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
-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一株当たり純資産額

第2款 金銭以外の財産の出資

第284条

1 株式会社は、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新株予約権が行使された場合には、第二百八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給付があった後、遅滞なく、同号の財産(以下この節において「現物出資財産」という。)の価額を調査させるため、裁判所に対し、検査役の選任の申立て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は、裁判所は、これを不適法として却下する場合

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제282조 주주가 되는 시기 등

- ① 신주예약권을 행사한 신주예약권자는 그 행사일에 신주예약권의 목적인 주식의 주주가 된다.
- ② 신주예약권을 행사한 신주예약권자이며 제286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지급 혹은 급부 또는 제286조의3 제1항의 지급이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제286조의2 제1항 각 호의 납입 또는 급부가 가장된 신주예약권의 목적인 주식에 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③ 전항의 주식을 양수한 자는 당해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3조 1주에 미달하는 단주의 처리

신주예약권을 행사한 신주예약권자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수가 1주에 미달하는 단수인 때에는 주식회사는 신주예약권자에게 다음 각호에 따라 그 가액에 그 단수를 곱하여 얻은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36조 제1항 제9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주식의 시장가격이 있는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 1주의 시장가격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
- 2. 전호 이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액

제2관 금전 외의 재산의 출자

제284조

- ① 주식회사는 제236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신주예약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제281조 제2항에 의한 이행이 있는 후 지체없이 동호의 재산(이하 이 절에서 “현물출자재산”이라고 한다)의 가액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하는 경우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を除き、検査役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裁判所は、前項の検査役を選任した場合には、株式会社が当該検査役に対して支払う報酬の額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4 第二項の検査役は、必要な調査を行い、当該調査の結果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を裁判所に提供して報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裁判所は、前項の報告について、その内容を明瞭にし、又はその根拠を確認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第二項の検査役に対し、更に前項の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6 第二項の検査役は、第四項の報告をしたときは、株式会社に対し、同項の書面の写しを交付し、又は同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7 裁判所は、第四項の報告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現物出資財産について定められた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三号の価額(第二項の検査役の調査を経ていないものを除く。)を不当と認めたときは、これを変更する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8 第一項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前項の決定により現物出資財産の価額の全部又は一部が変更された場合には、当該決定の確定後一週間以内に限り、その新株予約権の行使に係る意思表示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9 前各項の規定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一 行使され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が交付を受ける株式の総数が発行済株式の総数の十分の一を超えない場合 当該新株予約権者が給付する現物出資財産の価額

二 現物出資財産について定められた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三号の価額の総額が五百万円を超えない場合 当該現物出資財産の価額

三 現物出資財産のうち、市場価格のある有価証券について定められた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三号の価額が当該有価証券の市場価格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ものを超えない場合 当該有価証券についての現物出資財産の価額

四 現物出資財産について定められた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三号の価額が相当であることについて弁護士、弁護士法人、公認会計士、監査法人、税理士

를 제외하고 검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전항의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검사인에 대하여 지급할 보수액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검사인은 필요한 조사를 행하여 그 결과를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을 법원에 제공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전항의 보고에 관하여 내용을 명료하게 하거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검사인에 대하여 추가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검사인은 제4항의 보고를 한 때에는 주식회사에 동항 서면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동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⑦ 법원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현물출자재산에 관하여 정한 제236조 제1항 제3호의 가액(제2항의 검사인의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전항의 결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결정의 확정 후 1주간 이내에 한하여 그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⑨ 전 각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행사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가 교부받는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주예약권자가 급부한 현물출자재산의 가액
2. 현물출자재산에 관하여 정해진 제236조 제1항 제3호의 가액의 총액이 5백만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현물출자재산의 가액
3. 현물출자재산 중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정해진 제236조 제1항 제3호의 가액이 그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유가증권에 관한 현물출자재산의 가액
4. 현물출자재산에 관하여 정해진 제236조 제1항 제3호의 가액에 상당하는 것에 관하여 변호사, 법무법인, 공인회계사, 감사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사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又は税理士法人の証明(現物出資財産が不動産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証明及び不動産鑑定士の鑑定評価。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を受けた場合 当該証明を受けた現物出資財産の価額

五 現物出資財産が株式会社に対する金銭債権(弁済期が到来しているものに限る。)であって、当該金銭債権について定められた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三号の価額が当該金銭債権に係る負債の帳簿価額を超えない場合 当該金銭債権についての現物出資財産の価額

10 次に掲げる者は、前項第四号に規定する証明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一 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若しくは執行役又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

二 新株予約権者

三 業務の停止の処分を受け、その停止の期間を経過しない者

四 弁護士法人、監査法人又は税理士法人であって、その社員の半数以上が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者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

第3款 責任

第285条 不正な払込金額で新株予約権を引き受けた者等の責任

1 新株予約権を行使した新株予約権者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株式会社に対し、当該各号に定める額を支払う義務を負う。

一 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募集新株予約権につき金銭の払込みを要しないこととすることが著しく不正な条件であるとき(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又は執行役。次号において同じ。))と通じて新株予約権を引き受けた場合に限る。) 当該新株予約権の公正な価額

二 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第三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取締役と通じて著しく不正な払込金額で新株予約権を引き受けたとき 当該払込金額と当該新株予約権の公正な価額との差額に相当する金額

三 第二百八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株主となった時におけるその給付した現物出資財産の価額がこれについて定められた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三号の価額に著しく不足する場合 当該不足額

2 前項第三号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現物出資財産を給付した新株予約権者が

법인의 증명(현물출자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증명 및 부동산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 증명을 받은 현물출자재산의 가액

5. 현물출자재산이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채권(변제기가 도래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금전채권에 관하여 정해진 제236조 제1항 제3호의 가액이 금전채권에 관한 부채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금전채권에 관한 현물출자재산의 가액

⑩ 다음의 자는 전항 제4호의 증명을 할 수 없다.

1. 이사, 회계참여, 감사, 집행임원 또는 지배인이나 그 밖의 사용인
2. 신주예약권자
3.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무법인, 감사법인 또는 세무사법인의 사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3관 책임

제285조 불공정한 납입금액으로 신주예약권을 인수한 자등의 책임

① 신주예약권을 행사한 신주예약권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대해 각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제238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모집신주예약권에 대한 금전의 납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건일 때(이사(지명위원 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 다음 호에서도 같다)를 통해 신주예약권을 인수한 경우에 한한다) : 신주예약권의 공정한 가액
2. 제238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로 이사를 통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납입금액으로 신주예약권을 인수한 경우 : 납입금액과 신주예약권의 공정한 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3. 제282조 제1항에 의해 주주가 되었을 때 급부한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이 이를 정한 제236조 제1항 제3호의 가액에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 당해 부족액

② 전항 제3호의 경우에 현물출자재산을 급부한 신주예약권자가 현물출자재산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当該現物出資財産の価額がこれについて定められた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三号の価額に著しく不足することにつき善意でかつ重大な過失がないときは、新株予約権の行使に係る意思表示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第286条 出資された財産等の価額が不足する場合の取締役等の責任

1 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取締役等」という。)は、株式会社に対し、同号に定める額を支払う義務を負う。

一 当該新株予約権者の募集に関する職務を行った業務執行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執行役。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その他当該業務執行取締役の行う業務の執行に職務上関与した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二 現物出資財産の価額の決定に関する株主総会の決議があつたときは、当該株主総会に議案を提案した取締役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三 現物出資財産の価額の決定に関する取締役会の決議があつたときは、当該取締役会に議案を提案した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又は執行役)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に掲げる場合には、取締役等は、現物出資財産について同項の義務を負わない。

一 現物出資財産の価額について第二百八十四条第二項の検査役の調査を経た場合

二 当該取締役等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た場合

3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第二百八十四条第九項第四号に規定する証明をした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証明者」という。)は、株式会社に対し前条第一項第三号に定める額を支払う義務を負う。ただし、当該証明者が当該証明をする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4 新株予約権者がその給付した現物出資財産についての前条第一項第三号に定める額を支払う義務を負う場合において、次に掲げる者が当該現物出資財産について当該各号に定める義務を負うときは、これらの者は、連帯債務者とする。

一 取締役等 第一項の義務

二 証明者 前項本文の義務

의 가액이 이에 관하여 정해진 제236조 제1항 제3호의 가액에 현저하게 부족한 것에 관하여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6조 출자된 재산 등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 이사 등의 책임

① 전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사 등”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동호에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신주예약권자의 모집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이사(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집행임원.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그 외 당해 업무집행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집행에 직무상 관여한 자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
2. 현물출자재산의 가액 결정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때에는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한 이사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3. 현물출자재산의 가액 결정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안을 제안한 이사(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 등은 현물출자재산에 관하여 동항의 의무가 없다.

1.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제284조 제2항의 감사인의 조사를 거친 경우
2. 이사 등이 그 직무수행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9항 제4호의 증명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증명자”라고 한다)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전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가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증명자가 그 증명을 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주예약권자가 급부한 현물출자재산에 관하여 전조 제1항 제3호의 가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현물출자재산에 관하여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1. 이사 등 : 제1항의 의무
2. 증명자 : 전항 본문의 의무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第286条の2 新株予約権に係る払込み等を偽装した新株予約権者等の責任

1 新株予約権を行使した新株予約権者であって次の各号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ものは、株式会社に対し、当該各号に定める行為をする義務を負う。

一 第二百四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払込み(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当該払込みに代えてする金銭以外の財産の給付を含む。)を偽装した者又は当該払込みが偽装されたことを知って、若しくは重大な過失により知らないで募集新株予約権を譲り受けた者 払込みが偽装された払込金額の全額の支払(当該払込みに代えてする金銭以外の財産の給付が偽装され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財産の給付(株式会社が当該給付に代えて当該財産の価額に相当する金銭の支払を請求し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金銭の全額の支払))

二 第二百八十一条第一項又は第二項後段の規定による払込みを偽装した者 払込みを偽装した金銭の全額の支払

三 第二百八十一条第二項前段の規定による給付を偽装した者 給付を偽装した金銭以外の財産の給付(株式会社が当該給付に代えて当該財産の価額に相当する金銭の支払を請求し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金銭の全額の支払)

2 前項の規定により同項に規定する新株予約権者の負う義務は、総株主の同意がなければ、免除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286条の3 新株予約権に係る払込み等を偽装した場合の取締役等の責任

1 新株予約権を行使した新株予約権者であって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ものが当該各号に定める行為をする義務を負う場合には、当該各号の払込み又は給付を偽装することに関与した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執行役を含む。)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者は、株式会社に対し、当該各号に規定する支払をする義務を負う。ただし、その者(当該払込み又は当該給付を偽装したものを除く。)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新株予約権を行使した新株予約権者であって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ものが当該各号に規定する支払をする義務を負う場合において、前項に規定する者が同項の義務を負うときは、これらの者は、連帯債務者とする。

제286조의2 신주예약권에 관련된 납입 등을 가장한 신주예약권자 등의 책임

- ① 신주예약권을 행사한 신주예약권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할 의무를 진다.
1. 제246조 제1항의 납입(동조 제2항에 의해 납입에 갈음하여 하는 금전 이외의 재산의 급부를 포함한다)을 가장한 자 또는 당해 납입이 가장된 것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모집신주예약권을 양수한 자 : 가장된 납입금액 전액 지급(납입에 갈음한 금전 이외의 재산의 급부가 가장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급부(주식회사가 급부에 갈음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금전의 전액 지급))
 2. 제281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의 납입을 가장한 자 : 납입을 가장한 금전의 전액 지급
 3. 제281조 제2항 전단의 급부를 가장한 자 : 급부를 가장한 금전 이외의 재산의 급부(주식회사가 급부에 갈음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금전의 전액 지급)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에서 규정하는 신주예약권자의 의무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할 수 없다.

제286조의3 신주예약권에 관련된 납입 등을 가장한 경우 이사 등의 책임

- ① 신주예약권을 행사한 신주예약권자로서 전조 제1항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 자가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각 호의 납입 또는 급부를 가장하는 것에 관여한 이사(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집행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급을 할 의무를 진다. 다만 그 자(납입 또는 급부를 가장한 자는 제외한다)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신주예약권을 행사한 신주예약권자로서 전조 제1항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 자가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동항의 의무를 질 때에는 그 자는 연대채무자로 한다.

第4款 雑則

第287条

第二百七十六条第一項の場合のほか、新株予約権者がその有する新株予約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は、消滅する。

第8節 新株予約権に係る証券

第1款 新株予約権証券

第288条 新株予約権証券の発行

- 1 式会社は、証券発行新株予約権を発行した日以後遅滞なく、当該証券発行新株予約権に係る新株予約権証券を発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式会社は、新株予約権者から請求がある時まで、同項の新株予約権証券を発行しないことができる。

第289条 新株予約権証券の記載事項

新株予約権証券には、次に掲げる事項及びその番号を記載し、株式会社の代表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代表執行役)がこれに署名し、又は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株式会社の商号
- 二 当該新株予約権証券に係る証券発行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

第290条 記名式と無記名式との間の転換

証券発行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十一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より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されている場合を除き、いつでも、その記名式の新株予約権証券を無記名式とし、又はその無記名式の新株予約権証券を記名式と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291条 新株予約権証券の喪失

- 1 新株予約権証券は、非訟事件手続法第四百十二条 に規定する公示催告手続

제4관 잡칙

제287조

제276조 제1항의 경우 외에 신주예약권자가 신주예약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주예약권은 소멸한다.

제8절 신주예약권에 관한 증권

제1관 신주예약권증권

제288조 신주예약권증권의 발행

- ① 주식회사는 증권발행신주예약권의 발행 후 지체없이 그 증권발행신주예약권에 관한 신주예약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는 신주예약권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까지 동항의 신주예약권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9조 신주예약권증권의 기재사항

신주예약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 및 번호를 기재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의 상호
2. 신주예약권증권에 관한 증권발행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

제290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증권발행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제236조 제1항 제11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의하여 할 수 없는 것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기명식의 신주예약권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신주예약권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1조 신주예약권증권의 상실

- ① 신주예약권증권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42조의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무

によって無効とすることができる。

2 新株予約権証券を喪失した者は、非訟事件手続法第四百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除権決定を得た後でなければ、その再発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2款 新株予約権付社債券

第292条

1 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係る新株予約権付社債券には、第六百九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記載すべき事項のほか、当該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償還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が消滅していないときは、株式会社は、当該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係る新株予約権付社債券と引換えに社債の償還を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株式会社は、社債の償還を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券の提示を求め、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券に社債の償還をした旨を記載することができる。

第3款 新株予約権証券等の提出

第293条 新株予約権証券の提出に関する公告等

1 株式会社が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各号に定める新株予約権に係る新株予約権証券(当該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係る新株予約権付社債券。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じ。)を発行しているときは、当該株式会社は、当該行為の効力が生ずる日(第一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あつては、第百七十九条の二第一項第五号に規定する取得日。以下この条において「新株予約権証券提出日」という。)までに当該株式会社に対し当該新株予約権証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を新株予約権証券提出日の一箇月前までに、公告し、かつ、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及びその登録新株予約権質権者には、各別にこれ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百七十九条の三第一項の承認 売渡新株予約権

一の二 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の取得 当該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

효로 할 수 있다.

② 신주예약권증권을 상실한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1항의 제권결정을 얻지 아니하면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관 신주예약권부사채권

제292조

① 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신주예약권부사채권에는 제697조 제1항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상환을 하는 경우 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있는 때에는 주식회사는 그 증권발행신주예약권에 관한 신주예약권부사채권과 교환하여 사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사채를 상환하는 것과 교환하여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의 제시를 구하고 신주예약권부사채권에 사채상환을 한 뜻을 기재할 수 있다.

제3관 신주예약권증권 등의 제출

제293조 신주예약권증권의 제출에 관한 공고 등

① 주식회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신주예약권과 관련된 신주예약권증권(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신주예약권부사채와 관련된 신주예약권부사채권.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을 발행하고 있을 때는 주식회사는 당해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79조의2 제1항 제5호의 취득일. 이하 이 조에서 “신주예약권증권제출일”이라 한다)까지 주식회사에 대해 신주예약권증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을 신주예약권증권 제출일의 1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당해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및 그 등록신주예약권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79조의3 제1항의 승인 : 매도신주예약권

1의2.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의 취득 :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二 組織変更 全部の新株予約権

三 合併(合併により当該株式会社が消滅する場合に限る。) 全部の新株予約権

四 吸収分割 第七百五十八条第五号イに規定する吸収分割契約新株予約権

五 新設分割 第七百六十三条第一項第十号イに規定する新設分割計画新株予約権

六 株式交換 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四号イに規定する株式交換契約新株予約権

七 株式移転 第七百七十三条第一項第九号イに規定する株式移転計画新株予約権

2 株式会社が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おいて、新株予約権証券提出日までに当該株式会社に対して新株予約権証券を提出しない者があるとき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は、当該新株予約権証券の提出があるまでの間、当該行為(第一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あつては、新株予約権売渡請求に係る売渡新株予約権の取得)によって当該新株予約権証券に係る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金銭等の交付を拒むことができる。

一 第一百七十九条の三第一項の承認 特別支配株主

二 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の取得 当該株式会社

三 組織変更 第七百四十四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組織変更後持分会社

四 合併(合併により当該株式会社が消滅する場合に限る。) 第七百四十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吸収合併存続会社又は第七百五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新設合併設立会社

五 吸収分割 第七百五十八条第一号に規定する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

六 新設分割 第七百六十三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

七 株式交換 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

八 株式移転 第七百七十三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

3 第一項各号に定める新株予約権に係る新株予約権証券は、新株予約権証券提出日に無効となる。

4 第一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公告及び通知の費用は、特別支配株主の負担とする。

5 第二百二十条の規定は、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新株

2. 조직변경 : 신주예약권 전부
3. 합병(합병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신주예약권 전부
4. 흡수분할 : 제758조 제5호 가목의 흡수분할 계약 신주예약권
5. 신설분할 : 제763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신설분할계획신주예약권
6. 주식교환 : 제76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주식교환계약 신주예약권
7. 주식이전 : 제773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주식이전계획 신주예약권

② 주식회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신주예약권증권제출일까지 주식회사에 신주예약권증권을 제출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자는 신주예약권증권의 제출이 있을 때까지 당해 행위(제1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주예약권매도청구와 관련된 매도신주예약권의 취득)에 의해서 신주예약권증권과 관련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가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금전 등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1. 제179조의3 제1항의 승인 : 특별지배주주
2.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의 취득 : 주식회사
3. 조직변경 : 제74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직변경후지분회사
4. 합병(합병에 의하여 당해 주식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7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흡수합병존속회사 또는 제75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설합병설립회사
5. 흡수분할 : 제758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
6. 신설분할 : 제76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
7. 주식교환 : 제76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
8. 주식이전 : 제7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

③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신주예약권과 관련된 신주예약권증권은 신주예약권증권제출일에 무효가 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공고 및 통지의 비용은 특별지배주주가 부담한다.

⑤ 제220조의 규정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신주예약권증권을 제출할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予約権証券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ない者があるとき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二項中「前条第二項各号」とあるのは、「第二百九十三条第二項各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294条 無記名式の新株予約権証券等が提出されない場合

1 第三十二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条第一項第一号の二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株式会社が新株予約権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交付する場合に限る。)において、同項の規定により新株予約権証券(無記名式のもの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が提出されないときは、株式会社は、当該新株予約権証券を有する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株式に係る第二百一十一条第一号に掲げる事項を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を要しない。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式会社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新株予約権証券を有する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株式の株主に対する通知又は催告をすることを要しない。

3 第二百四十九条及び第二百五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条第一項第一号の二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株式会社が新株予約権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当該株式会社の他の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を交付する場合に限る。)において、同項の規定により新株予約権証券が提出されないときは、株式会社は、当該新株予約権証券を有する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当該他の新株予約権(無記名新株予約権を除く。)に係る第二百四十九条第三号イに掲げる事項を新株予約権原簿に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を要しない。

4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式会社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新株予約権証券を有する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する通知又は催告をすることを要しない。

5 第二百四十九条及び第二百五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条第一項第一号の二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株式会社が新株予約権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当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付社債を交付する場合に限る。)において、同項の規定により新株予約権証券が提出されないときは、株式会社は、当該新株予約権証券を有する者が交付を受

수 없는 자가 있을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2항 중 “전조 제2항 각 호”는 “제293조 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94조 무기명식의 신주예약권증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① 제1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조 제1항 제1호의2의 행위를 하는 경우(주식회사가 신주예약권을 취득하는 것과 교환으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주식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항에 따라 신주예약권증권(무기명식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주식회사는 신주예약권증권을 소유하는 자가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주식에 관련된 제121조 제1호의 사항을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전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신주예약권증권을 보유하는 자가 교부받을 수 있는 주식의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249조 및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조 제1항 제1호의2의 행위를 하는 경우(주식회사가 신주예약권을 취득하는 것과 교환으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주식회사의 다른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것을 제외한다)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항에 따라 신주예약권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주식회사는 신주예약권증권을 소유하는 자가 교부받을 수 있는 다른 신주예약권(무기명신주예약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제249조 제3호 가목의 사항을 신주예약권원부에 기재 또는 기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전항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전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신주예약권증권을 보유하는 자가 교부받을 수 있는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제249조 및 제25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조 제1항 제1호의2의 행위를 하는 경우(주식회사가 신주예약권을 취득하는 것과 교환으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당해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부사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항의 규정에 따라 신주예약권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주식회사는 신주예약권증권을 소유하는 자가 교부받을 수 있는 신주예약권부사채(무기명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けることができる新株予約権付社債(無記名新株予約権付社債を除く。)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係る第二百四十九条第三号イに掲げる事項を新株予約権原簿に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を要しない。

6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式会社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新株予約権証券を有する者が交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する通知又は催告をすることを要しない。

第4章 機関

第1節 株主総会及び種類株主総会

第1款 株主総会

第295条 株主総会の権限

- 1 株主総会は、この法律に規定する事項及び株式会社の組織、運営、管理その他株式会社に関する一切の事項について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株主総会は、この法律に規定する事項及び定款で定めた事項に限り、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
- 3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株主総会の決議を必要とする事項について、取締役、執行役、取締役会その他の株主総会以外の機関が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内容とする定款の定めは、その効力を有しない。

第296条 株主総会の招集

- 1 定時株主総会は、毎事業年度の終了後一定の時期に招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株主総会は、必要がある場合には、いつでも、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
- 3 株主総会は、次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招集する場合を除き、取締役が招集する。

第297条 株主による招集の請求

- 1 総株主の議決権の百分の三(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

신주예약권부사채는 제외한다)에 첨부된 신주예약권과 관련된 제249조 제3호 가목의 사항을 신주예약권원부에 기재 또는 기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⑥ 전항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전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신주예약증권을 보유하는 자가 교부받을 수 있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4장 기관

제1절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

제1관 주주총회

제295조 주주총회의 권한

- ① 주주총회는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 및 주식회사의 조직, 운영, 관리 그 밖에 주식회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설치회사의 주주총회는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③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 집행임원, 이사회 그 밖의 주주총회 이외의 기관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은 그 효력이 없다.

제296조 주주총회의 소집

-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의 종료 후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 ③ 주주총회는 다음 조 제4항에 의하여 소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소집한다.

제297조 주주에 의한 소집의 청구

- ① 총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3(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は、その割合) 以上の議決権を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 前から引き続き有する株主は、取締役に対し、株主総会の目的である事項(当該株主が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に限る。) 及び招集の理由を示して、株主総会の招集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公開会社でない株式会社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 前から引き続き有する」とあるのは、「有する」とする。

3 第一項の株主総会の目的である事項につ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が有する議決権の数は、同項の総株主の議決権の数に算入しない。

4 次に掲げる場合に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た株主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株主総会を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の後遅滞なく招集の手続が行われない場合

二 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日から八週間(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 以内の日を株主総会の日とする株主総会の招集の通知が発せられない場合

第298条 株主総会の招集の決定

1 取締役(前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株主が株主総会を招集す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株主。次項本文及び次条から第三百二条までにおいて同じ。) は、株主総会を招集す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株主総会の日時及び場所

二 株主総会の目的である事項があるときは、当該事項

三 株主総会に出席しない株主が書面によっ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四 株主総会に出席しない株主が電磁的方法によっ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2 取締役は、株主(株主総会において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の全部につき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を除く。次条から第三百二条までにおいて同じ。) の数が千人以上である場合には、前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株式会社が金融商品取引法第二条第十六項 に規定す

그 비율) 이상의 의결권을 6개월(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는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의 목적인 사항(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한다) 및 소집의 이유를 알리고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전항의 적용에 관하여 동항 중 “6개월(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는”은 “보유하는”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주주총회의 목적인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가 가지는 의결권의 수는 동항의 총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후 지체없이 소집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8주(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의 날을 주주총회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발송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98조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

① 이사(전조 제4항에 의하여 주주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당해 주주. 다음 항 본문 및 다음 조 내지 제302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주주총회의 목적인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항
3.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주주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뜻
4.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주주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뜻
5. 전 각호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사는 주주(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제외한다. 다음 조 내지 제302조도 같다)의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항 제3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가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16항에 규정하는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る金融商品取引所に上場されている株式を発行している株式会社であっ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で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3 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主総会において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とあるのは、「前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とする。

4 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前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株主が株主総会を招集するときを除き、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第299条 株主総会の招集の通知

1 株主総会を招集するには、取締役は、株主総会の日の二週間(前条第一項第三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を除き、公開会社でない株式会社にあつては、一週間(当該株式会社が取締役会設置会社以外の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 前までに、株主に対してその通知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次に掲げる場合には、前項の通知は、書面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前条第一項第三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

二 株式会社が取締役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

3 取締役は、前項の書面による通知の発出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株主の承諾を得て、電磁的方法により通知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取締役は、同項の書面による通知を発したものとみなす。

4 前二項の通知に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00条 招集手続の省略

前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主総会は、株主の全員の同意があるときは、招集の手続を経ることなく開催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第三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301条 株主総会参考書類及び議決権行使書面の交付等

1 取締役は、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には、第二百九十九条第一項の通知に際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株主に対し、議

식을 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 전항의 적용에 관하여 동항 중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전항 제2호의 사항”으로 본다.

④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전조 제4항에 의하여 주주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각호의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99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는 이사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정한 때를 제외하고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주일(그 주식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회사로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전까지 주주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 전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
2. 주식회사가 이사회설치회사인 경우

③ 이사는 전항의 서면에 의한 통지의 발송에 갈음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승낙을 얻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동항의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본다.

④ 전2항의 통지는 전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또는 기록하여야 한다.

제300조 소집절차의 생략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29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1조 주주총회참고서류 및 의결권행사서면의 교부 등

① 이사는 제298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제299조 제1항의 통지를 하는 때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決権の行使について参考となるべき事項を記載した書類(以下この節において「株主総会参考書類」という。)及び株主が議決権を行使するための書面(以下この節において「議決権行使書面」という。)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取締役は、第二百九十九条第三項の承諾をした株主に対し同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通知を発す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よる株主総会参考書類及び議決権行使書面の交付に代えて、これらの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株主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これらの書類を当該株主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02条

1 取締役は、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には、第二百九十九条第一項の通知に際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株主に対し、株主総会参考書類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取締役は、第二百九十九条第三項の承諾をした株主に対し同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通知を発す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よる株主総会参考書類の交付に代えて、当該株主総会参考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株主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株主総会参考書類を当該株主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取締役は、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第二百九十九条第三項の承諾をした株主に対する同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通知に際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株主に対し、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当該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取締役は、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第二百九十九条第三項の承諾をしていない株主から株主総会の日の一週間前までに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直ちに、当該株主に対し、当該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03条 株主提案権

1 株主は、取締役に対し、一定の事項(当該株主が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に限る。次項において同じ。)を株主総会の目的と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

참고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이 절에서 “주주총회참고서류”라고 한다) 및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서면(이하 이 절에서 “의결권행사서면”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제299조 제3항의 승낙을 한 주주에게 동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는 때에는 전항에 의한 주주총회참고서류 및 의결권행사서면의 교부에 갈음하여 이러한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주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서류를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02조

① 이사는 제298조 제1항 제4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제299조 제1항의 통지를 하는 때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주주총회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제299조 제3항의 승낙을 한 주주에게 동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는 때에는 전항에 의한 주주총회 참고서류의 교부에 갈음하여 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제299조 제3항의 승낙을 한 주주에 대한 동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를 하는 때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제1항의 경우로서 제299조 제3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는 주주로부터 주주총회일의 1주일 전까지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주주에게 당해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303조 주주제안권

① 주주는 이사에게 일정한 사항(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을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総株主の議決権の百分の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議決権又は三百個(これを下回る数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個数)以上の議決権を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から引き続き有する株主に限り、取締役に対し、一定の事項を株主総会の目的と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請求は、株主総会の日の八週間(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まで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公開会社でない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から引き続き有する」とあるのは、「有する」とする。

4 第二項の一定の事項につ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が有する議決権の数は、同項の総株主の議決権の数に算入しない。

第304条

株主は、株主総会において、株主総会の目的である事項(当該株主が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に限る。次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につき議案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議案が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する場合又は実質的に同一の議案につき株主総会において総株主(当該議案につ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を除く。)の議決権の十分の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賛成を得られなかった日から三年を経過してい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305条

1 株主は、取締役に対し、株主総会の日の八週間(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までに、株主総会の目的である事項につき当該株主が提出しようとする議案の要領を株主に通知すること(第二百九十九条第二項又は第三項の通知をす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通知に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総株主の議決権の百分の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議決権又は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설치회사는 총주주의 의결권의 100의 1(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상의 의결권 또는 300개(이보다 적은 수를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개수)이상의 의결권을 6개월(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는 주주에 한하여 이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8주(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공개회사가 아닌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전항의 적용에 관하여 동항 중 “6개월(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는”은 “보유하는”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가 가지는 의결권의 수는 동항의 총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4조

주주는 주주총회의 목적인 사항(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한다. 다음조 제1항에서 같다)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의안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의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총주주(당해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제외한다)의 의결권의 10분의 1(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5조

①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8주(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까지 주주총회의 목적인 사항에 관하여 그 주주가 제출하려는 의안의 요령을 주주에게 통지할 것(제29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는 그 통지에 기재하거나 기록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총주주의 의결권의 100의 1(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상의 의결권 또는 300개(이보다 적은 수를 정관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三百個(これを下回る数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個数)以上の議決権を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から引き続き有する株主に限り、当該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公開会社でない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ける前項ただし書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ただし書中「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から引き続き有する」とあるのは、「有する」とする。

3 第一項の株主総会の目的である事項につ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が有する議決権の数は、同項ただし書の総株主の議決権の数に算入しない。

4 取締役会設置会社の株主が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主が提出しようとする議案の数が十を超えるときは、前三項の規定は、十を超える数に相当することとなる数の議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株主が提出しようとする次の各号に掲げる議案の数については、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一 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又は会計監査人(次号において「役員等」という。)の選任に関する議案 当該議案の数にかかわらず、これを一の議案とみなす。

二 役員等の解任に関する議案 当該議案の数にかかわらず、これを一の議案とみなす。

三 会計監査人を再任しないことに関する議案 当該議案の数にかかわらず、これを一の議案とみなす。

四 定款の変更に関する二以上の議案 当該二以上の議案について異なる議決がされたとすれば当該議決の内容が相互に矛盾する可能性がある場合には、これらを一の議案とみなす。

5 前項前段の十を超える数に相当することとなる数の議案は、取締役がこれを定める。ただし、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た株主が当該請求と併せて当該株主が提出しようとする二以上の議案の全部又は一部につき議案相互間の優先順位を定めている場合には、取締役は、当該優先順位に従い、これを定めるものとする。

6 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は、第一項の議案が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する場合又は実質的に同一の議案につき株主総会において総株主(当該議案につ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を除く。)の議決権の十分の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賛成を得られなかった日から三年を経過していない場合には、適用しない。

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개수)이상의 의결권을 6개월(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는 주주에 한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공개회사가 아닌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전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동항 단서 중 '6개월(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는'은 '보유하는'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주주총회의 목적인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가 보유하는 의결권의 수는 동항 단서의 총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설치회사의 주주가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 주주가 제안하고자 하는 의안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때에는 전 3항은 10개를 초과하는 수의 의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주가 제안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 의안의 수에 관해서는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이사, 회계참여, 감사 또는 회계감사인(다음 호에서 '임원 등'이라 한다)의 선임에 관한 의안: 의안의 수에 관계 없이 이를 하나의 의안으로 본다.
2. 임원 등의 해임에 관한 의안: 의안의 수에 관계 없이 이를 하나의 의안으로 본다.
3. 회계감사인을 재선임하지 아니하는 것에 관한 의안: 의안의 수에 관계 없이 이를 하나의 의안으로 본다.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둘 이상의 의안: 둘 이상의 의안에 관해 다른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의 내용이 상호 모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의안으로 본다.
- ⑤ 전항 전단의 10개를 초과하는 수의 의안은 이사가 이를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주주가 청구와 함께 주주가 제안하고자 하는 둘 이상의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의안상호간의 우선순위를 정한 경우에는 이사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이를 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의안이 법령 혹은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안에 관해 주주총회에서 총주주(해당 의안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를 제외한다.)의 의결권의 10분의 1(이를 밑도는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第306条 株主総会の招集手続等に関する検査役の選任

- 1 株式会社又は総株主(株主総会において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の全部につき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を除く。)の議決権の百分の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議決権を有する株主は、株主総会に係る招集の手続及び決議の方法を調査させるため、当該株主総会に先立ち、裁判所に対し、検査役の選任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公開会社である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主総会において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とあるのは「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と、「有する」とあるのは「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から引き続き有する」とし、公開会社でない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ける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主総会において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とあるのは、「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とする。
- 3 前二項の規定による検査役の選任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は、裁判所は、これを不適法として却下する場合を除き、検査役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裁判所は、前項の検査役を選任した場合には、株式会社が当該検査役に対して支払う報酬の額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5 第三項の検査役は、必要な調査を行い、当該調査の結果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を裁判所に提供して報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6 裁判所は、前項の報告について、その内容を明瞭にし、又はその根拠を確認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第三項の検査役に対し、更に前項の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7 第三項の検査役は、第五項の報告をしたときは、株式会社(検査役の選任の申立てをした者が当該株式会社で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株式会社及びその者)に対し、同項の書面の写しを交付し、又は同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07条 裁判所による株主総会招集等の決定

- 1 裁判所は、前条第五項の報告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取締役に対し、次に掲げる措置の全部又は一部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

제306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감사인의 선임

- ① 주식회사 또는 총주주(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제외한다)의 의결권의 100분의 1(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전에 법원에 감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공개회사인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전항의 적용에 관하여 동항 중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제298조 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보유하는”은 “6개월(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는”으로 하고, 공개회사가 아닌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동항의 적용에 관하여 동항 중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제298조 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본다.
-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부적법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전항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감사인에게 지급할 보수액을 정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감사인은 필요한 조사를 행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을 법원에 제공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법원은 전항의 보고에 관하여 내용을 명료하게 하거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감사인에게 추가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3항의 감사인은 제5항의 보고를 한 때에는 주식회사(감사인 선임의 청구를 한 자가 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식회사 및 그 자)에게 동항 서면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동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307조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등의 결정

- ① 법원은 전조 제5항의 보고가 있었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에 대해 다음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一 一定の期間内に株主総会を招集すること。
- 二 前条第五項の調査の結果を株主に通知すること。
- 2 裁判所が前項第一号に掲げる措置を命じた場合には、取締役は、前条第五項の報告の内容を同号の株主総会において開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取締役(監査役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及び監査役)は、前条第五項の報告の内容を調査し、その結果を第一項第一号の株主総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08条 議決権の数

- 1 株主(株式会社がその総株主の議決権の四分の一以上を有することその他の事由を通じて株式会社がその経営を実質的に支配することが可能な関係にあ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株主を除く。)は、株主総会において、その有する株式一株につき一個の議決権を有する。ただし、単元株式数を定款で定めている場合には、一単元の株式につき一個の議決権を有する。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式会社は、自己株式については、議決権を有しない。

第309条 株主総会の決議

- 1 株主総会の決議は、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を有する株主が出席し、出席した当該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をもって行う。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に掲げる株主総会の決議は、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三分の一以上の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割合以上)を有する株主が出席し、出席した当該株主の議決権の三分の二(これを上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割合)以上に当たる多数をもっ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決議の要件に加えて、一定の数以上の株主の賛成を要する旨その他の要件を定款で定めることを妨げない。
 - 一 第四百十条第二項及び第五項の株主総会
 - 二 第五百十六条第一項の株主総会(第六十条第一項の特定の株主を定める場合に限る。)

1. 일정한 기간 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
2. 전조 제5항의 조사의 결과를 주주에게 통지하는 것
- ② 법원이 전항 제1호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사가 전조 제5항의 보고의 내용을 동호의 주주총회에서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경우에는 이사(감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및 감사)가 전조 제5항의 보고의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1항 제1호의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8조 의결권의 수

- ① 주주(주식회사가 그 총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회사가 그 밖의 사유로 그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가능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주는 제외한다)는 주주총회에 그가 보유하는 주식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단원주식수를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1단원주식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없다.

제309조 주주총회의 결의

- ① 주주총회결의는 정관으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주주총회결의는 당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3분의 1이상의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를 가진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보다 높은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결의의 요건에 추가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주주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나 그 밖의 요건을 정관으로 정할 수도 있다.

1. 제140조 제2항 및 제5항의 주주총회
2. 제156조 제1항의 주주총회(제160조제1항의 특정 주주를 정한 경우에 한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三 第一百七十一条第一項及び第一百七十五条第一項の株主総会
- 四 第一百八十条第二項の株主総会
- 五 第一百九十九条第二項、第二百条第一項、第二百二条第三項第四号、第二百四条第二項及び第二百五条第二項の株主総会
- 六 第二百三十八条第二項、第二百三十九条第一項、第二百四十一条第三項第四号、第二百四十三条第二項及び第二百四十四条第三項の株主総会
- 七 第三百三十九条第一項の株主総会(第三百四十二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取締役(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を除く。)を解任する場合又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若しくは監査役を解任する場合に限る。)
- 八 第四百二十五条第一項の株主総会
- 九 第四百四十七条第一項の株主総会(次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場合を除く。)
 - イ 定時株主総会において第四百四十七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こと。
 - ロ 第四百四十七条第一項第一号の額がイの定時株主総会の日(第四百三十九条前段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第四百三十六条第三項の承認があった日)における欠損の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を超えないこと。
- 十 第四百五十四条第四項の株主総会(配当財産が金銭以外の財産であり、かつ、株主に対して同項第一号に規定する金銭分配請求権を与えないこととする場合に限る。)
- 十一 第六章から第八章までの規定により株主総会の決議を要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株主総会
- 十二 第五編の規定により株主総会の決議を要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株主総会
- 3 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に掲げる株主総会(種類株式発行会社の株主総会を除く。)の決議は、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株主の半数以上(これを上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であって、当該株主の議決権の三分の二(これを上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に当たる多数をもっ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その発行する全部の株式の内容として譲渡による当該株式の取得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の承認を要する旨の定款の定めを設ける定款の変更を行う株主総会

3. 제171조 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주주총회
4. 제180조 제2항의 주주총회
5. 제199조 제2항, 제200조 제1항, 제202조제3항 제4호, 제204조 제2항 및 제205조 제2항의 주주총회
6. 제238조 제2항, 제239조 제1항, 제241조 제3항 제4호, 제243조 제2항 및 제244조 제3항의 주주총회
7. 제339조 제1항의 주주총회(제342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감사등위원인 이사는 제외한다)를 해임하는 경우 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혹은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제425조 제1항의 주주총회
9. 제447조 제1항의 주주총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제44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것

나. 제447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이 가목의 정기주주총회일(제439조 전단의 경우에는 제436조 제3항의 승인일)의 결손금의 가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10. 제454조 제4항의 주주총회(배당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이고 주주에게 동항 제1호의 금전분배청구권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제6장 내지 제8장에 의한 주주총회결의를 요하는 경우의 주주총회

12. 제5편에 의한 주주총회결의를 요하는 경우의 주주총회

③ 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주주총회(종류주식발행회사의 주주총회는 제외한다)의 결의는 당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과반수(이보다 높은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로 당해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보다 높은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상 해당하는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1. 발행하는 주식 전부의 내용으로서 양도에 의한 주식취득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승인을 요하는 뜻의 정관을 정하는 정관변경의 주주총회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二 第七百八十三条第一項の株主総会(合併により消滅する株式会社又は株式交換をする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あり、かつ、当該株式会社の株主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の全部又は一部が譲渡制限株式等(同条第三項に規定する譲渡制限株式等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で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株主総会に限る。)
- 三 第八百四条第一項の株主総会(合併又は株式移転をする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あり、かつ、当該株式会社の株主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の全部又は一部が譲渡制限株式等で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株主総会に限る。)
- 4 前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百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ついての定款の変更(当該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ものを除く。)を行う株主総会の決議は、総株主の半数以上(これを上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であって、総株主の議決権の四分の三(これを上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に当たる多数をもっ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5 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株主総会は、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以外の事項については、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第三百十六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に規定する者の選任又は第三百九十八条第二項の会計監査人の出席を求めること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第310条 議決権の代理行使

- 1 株主は、代理人によってその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株主又は代理人は、代理権を証明する書面を株式会社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代理権の授与は、株主総会ごと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第一項の株主又は代理人は、代理権を証明する書面の提出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株式会社の承諾を得て、当該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株主又は代理人は、当該書面を提出したものとみなす。
- 4 株主が第二百九十九条第三項の承諾をした者である場合には、株式会社は、正当な理由がなければ、前項の承諾をすることを拒んではならない。
- 5 株式会社は、株主総会に出席することができる代理人の数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

2. 제783조 제1항의 주주총회(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주식회사 또는 주식교환을 하는 주식회사가 공개회사이고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제한주식 등(동조 제3항의 양도제한주식등을 말한다. 다음호에서 같다)인 경우의 주주총회에 한한다)

3. 제804조 제1항의 주주총회(합병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주식회사가 공개회사이고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제한주식 등인 경우의 주주총회에 한한다)

④ 전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정관을 정하는 정관변경(당해 정관의 정함을 폐지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주주총회결의는 총주주의 반수이상(이보다 높은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총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3(이보다 높은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는 그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설치회사의 주주총회는 제298조 제1항 제2호의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다만, 제31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자의 선임 또는 제398조 제2항의 회계감사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주 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대리권의 수여는 주주총회마다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주주 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에 갈음하여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승낙을 얻어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주 또는 대리인은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주주가 제299조 제3항의 승낙을 한 자인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승낙을 거절할 수 없다.

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는 대리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6 株式会社は、株主総会の日から三箇月間、代理権を証明する書面及び第三項の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された事項が記録された電磁的記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7 株主(前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決議をした事項の全部につき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を除く。次条第四項及び第三百十二条第五項において同じ。)は、株式会社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請求の理由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代理権を証明する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二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8 株式会社は、前項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これ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

一 当該請求を行う株主(以下この項において「請求者」という。)がその権利の確保又は行使に関する調査以外の目的で請求を行ったとき。

二 請求者が当該株式会社の業務の遂行を妨げ、又は株主の共同の利益を害する目的で請求を行ったとき。

三 請求者が代理権を証明する書面の閲覧若しくは謄写又は前項第二号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若しくは謄写によって知り得た事実を利益を得て第三者に通報するため請求を行ったとき。

四 請求者が、過去二年以内において、代理権を証明する書面の閲覧若しくは謄写又は前項第二号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若しくは謄写によって知り得た事実を利益を得て第三者に通報したこと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第311条 書面による議決権の行使

1 書面による議決権の行使は、議決権行使書面に必要な事項を記載し、法務省令で定める時まで当該記載をした議決権行使書面を株式会社に提出して行う。

2 前項の規定により書面によって行使した議決権の数は、出席した株主の議決権の数に算入する。

⑥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일로부터 3개월간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제3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된 사항이 기록된 전자적 기록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⑦ 주주(전항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제외한다. 다음 조 제4항 및 제312조 제5항에서 같다)는 주식회사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⑧ 주식회사는 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해당 청구를 하는 주주(이하 이 항에서 '청구자'라 한다.)가 그 권리의 확보 또는 행사에 관한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청구 한 때
2. 청구자가 주식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주주의 공동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청구를 한 때
3. 청구자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열람 혹은 등사 또는 전항 제2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이익을 얻고 제3자에게 통보하기 위해 청구를 한 때
4. 청구자가 과거 2년 이내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열람 혹은 등사 또는 전항 제2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이익을 얻고 제3자에게 통보한 적이 있는 자인 때

제31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는 의결권행사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그 의결권행사서면을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3 株式会社は、株主総会の日から三箇月間、第一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議決権行使書面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4 株主は、株式会社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第一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議決権行使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請求の理由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株式会社は、前項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これ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

一 当該請求を行う株主（以下この項において「請求者」という。）がその権利の確保又は行使に関する調査以外の目的で請求を行ったとき。

二 請求者が当該株式会社の業務の遂行を妨げ、又は株主の共同の利益を害する目的で請求を行ったとき。

三 請求者が第一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議決権行使書面の閲覧又は謄写によって知り得た事実を利益を得て第三者に通報するため請求を行ったとき。

四 請求者が、過去二年以内において、第一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た議決権行使書面の閲覧又は謄写によって知り得た事実を利益を得て第三者に通報したこと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第312条 電磁的方法による議決権の行使

1 電磁的方法による議決権の行使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株式会社の承諾を得て、法務省令で定める時まで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当該株式会社に提供して行う。

2 株主が第二百九十九条第三項の承諾をした者である場合には、株式会社は、正当な理由がなければ、前項の承諾をすることを拒んでは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電磁的方法によって行使した議決権の数は、出席した株主の議決権の数に算入する。

4 株式会社は、株主総会の日から三箇月間、第一項の規定により提供された事項を記録した電磁的記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5 株主は、株式会社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請求の理由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일로부터 3개월간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의결권행사서면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주주는 주식회사의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의결권행사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 ⑤ 주식회사는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다.
 - 1. 청구를 하는 주주(이하 이 항에서 "청구자"라 한다.)가 그 권리의 확보 또는 행사에 관한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청구를 한 때
 - 2. 청구자가 주식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주주의 공동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청구를 한 때
 - 3. 청구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결권행사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이익을 얻고 제3자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청구를 한 때
 - 4. 청구자가 과거 2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결권행사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이익을 얻고 제3자에게 통보한 적이 있는 자인 때

제312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승낙을 얻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 제공함으로써 한다.
- ② 주주가 제299조 제3항의 승낙을 한 자인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승낙을 거절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한다.
- ④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일로부터 3개월간 제1항에 의하여 제공된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⑤ 주주는 주식회사의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구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6 株式会社は、前項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これ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

- 一 当該請求を行う株主（以下この項において「請求者」という。）がその権利の確保又は行使に関する調査以外の目的で請求を行ったとき。
- 二 請求者が当該株式会社の業務の遂行を妨げ、又は株主の共同の利益を害する目的で請求を行ったとき。
- 三 請求者が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によって知り得た事実を利益を得て第三者に通報するため請求を行ったとき。
- 四 請求者が、過去二年以内において、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によって知り得た事実を利益を得て第三者に通報したこと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第313条 議決権の不統一行使

- 1 株主は、その有する議決権を統一しないで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
- 2 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前項の株主は、株主総会の日の三日前までに、取締役会設置会社に対してその有する議決権を統一しないで行使する旨及びその理由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株式会社は、第一項の株主が他人のために株式を有する者でないときは、当該株主が同項の規定によりその有する議決権を統一しないで行使することを拒むことができる。

第314条 取締役等の説明義務

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及び執行役は、株主総会において、株主から特定の事項について説明を求められた場合には、当該事項について必要な説明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事項が株主総会の目的である事項に関しないものである場合、その説明をすることにより株主の共同の利益を著しく害する場合その他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315条 議長の権限

- 1 株主総会の議長は、当該株主総会の秩序を維持し、議事を整理する。

⑥ 주식회사는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청구를 하는 주주(이하 이 항에서 '청구자'라 한다.)가 그 권리의 확보 또는 행사에 관한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청구를 한 때
2. 청구자가 주식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주주의 공동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청구를 한 때
3. 청구자가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 수 있게 된 사실을 이익을 얻고 제3자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청구를 한 때
4. 청구자가 과거 2년 이내에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 수 있게 된 사실을 이익을 얻고 제3자에게 통보한 적이 있는 자인 때

제313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주주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전항의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3일 전까지 회사에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는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주식회사는 제1항의 주주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동항에 의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제314조 이사 등의 설명의무

이사, 회계참여, 감사 및 집행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로부터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에 의하여 주주의 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5조 의장의 권한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2 株主総会の議長は、その命令に従わない者その他当該株主総会の秩序を乱す者を退場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316条 株主総会に提出された資料等の調査

1 株主総会においては、その決議によって、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監査役会及び会計監査人が当該株主総会に提出し、又は提供した資料を調査する者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二百九十七条の規定により招集された株主総会においては、その決議によって、株式会社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を調査する者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317条 延期又は続行の決議

株主総会においてその延期又は続行について決議があった場合には、第二百九十八条及び第二百九十九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318条 議事録

1 株主総会の議事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議事録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株式会社は、株主総会の日から十年間、前項の議事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株式会社は、株主総会の日から五年間、第一項の議事録の写しをその支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議事録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場合であって、支店における次項第二号に掲げる請求に応じることを可能とするための措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とってい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4 株主及び債権者は、株式会社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第一項の議事録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又は当該書面の写し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二 第一項の議事録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5 株式会社の親会社社員は、そ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그 밖에 주주총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제316조 주주총회에 제출된 자료 등의 조사

- ① 주주총회에서는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 회계참여, 감사, 감사회 및 회계감사인이 당해 주주총회에 제출하거나 제공한 자료를 조사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297조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는 그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17조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주주총회에서 그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298조 및 제29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8조 의사록

-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일로부터 10년간 전항의 의사록을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년간 제1항의 의사록의 사본을 그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록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점에서 다음 항 제2호의 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주주 및 채권자는 주식회사의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항의 의사록이 서면으로 작성된 때에는 서면 또는 그 사본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제1항의 의사록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때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 ⑤ 주식회사의 모회사 사원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所の許可を得て、第一項の議事録について前項各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319条 株主総会の決議の省略

1 取締役又は株主が株主総会の目的である事項について提案を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提案につき株主(当該事項につ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る。)の全員が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より同意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当該提案を可決する旨の株主総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す。

2 株式会社は、前項の規定により株主総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日から十年間、同項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株主及び債権者は、株式会社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前項の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二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4 株式会社の親会社社員は、そ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第二項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ついて前項各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5 第一項の規定により定時株主総会の目的である事項のすべてについての提案を可決する旨の株主総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場合には、その時に当該定時株主総会が終結したものとみなす。

第320条 株主総会への報告の省略

取締役が株主の全員に対して株主総会に報告すべき事項を通知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事項を株主総会に報告することを要しないことにつき株主の全員が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より同意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当該事項の株主総会への報告があったものとみなす。

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의사록에 관하여 전항 각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19조 주주총회결의의 생략

- ① 이사 또는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제안을 한 경우 그 제안에 관하여 주주(당해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의 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동의를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제안을 가결하는 뜻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② 주식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날로부터 10년간 동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주주 및 채권자는 주식회사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1. 전항의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 2.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 ④ 주식회사의 모회사 사원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관하여 전항 각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전부에 관한 제안을 가결한 취지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때에 정기주주총회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320조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의 생략

이사가 주주전원에게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통지한 경우 그 사항의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관하여 주주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동의를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사항의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第2款 種類株主総会

第321条 種類株主総会の権限

種類株主総会は、この法律に規定する事項及び定款で定めた事項に限り、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322条 ある種類の種類株主に損害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場合の種類株主総会

1 種類株式発行会社が次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おいて、ある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に損害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ときは、当該行為は、当該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当該種類株主に係る株式の種類が二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二以上の株式の種類別に区分された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各種類株主総会。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決議が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ただし、当該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種類株主が存し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変更(第百十一条第一項又は第二項に規定するものを除く。)

イ 株式の種類の追加

ロ 株式の内容の変更

ハ 発行可能株式総数又は発行可能種類株式総数の増加

一の二 第百七十九条の三第一項の承認

二 株式の併合又は株式の分割

三 第百八十五条に規定する株式無償割当て

四 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第二百二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ものに限る。)

五 当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第二百四十一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ものに限る。)

六 第二百七十七条に規定する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

七 合併

八 吸収分割

九 吸収分割による他の会社がその事業に関して有する権利義務の全部又は一部の承継

제2관 종류주주총회

제321조 종류주주총회의 권한

종류주주총회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22조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의 종류주주총회

① 종류주식발행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 어느 종류의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는 그 종류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종류주주에 관련된 주식의 종류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구분된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각 종류주주총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결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종류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류주주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의 사항에 관한 정관변경(제1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 가. 주식의 종류의 추가
 - 나. 주식의 내용의 변경
 - 다. 발행가능주식총수 또는 발행가능종류주식총수의 증가
- 1의2. 제179조의3 제1항의 승인
2.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
3. 제185조에 규정하는 주식무상배정
4. 주식회사의 주식인수인의 모집(제20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한 것에 한한다)
5.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인수인의 모집(제24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한 것에 한한다)
6. 제277조의 신주예약권무상배정
7. 합병
8. 흡수분할
9. 흡수분할로 다른 회사가 그 사업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승계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十 新設分割

十一 株式交換

十二 株式交換による他の株式会社の発行済株式全部の取得

十三 株式移転

十四 株式交付

2 種類株式発行会社は、ある種類の株式の内容として、前項の規定による種類株主総会の決議を要しない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がある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ただし、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定款の変更(単元株式数についてのものを除く。)を行う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4 ある種類の株式の発行後に定款を変更して当該種類の株式について第二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を設け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種類の種類株主全員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23条 種類株主総会の決議を必要とする旨の定めがある場合

種類株式発行会社において、ある種類の株式の内容として、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株主総会又は取締役会、第四百七十八条第八項に規定する清算人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株主総会又は清算人会)において決議すべき事項について、当該決議のほか、当該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の決議があることを必要とする旨の定めがあるときは、当該事項は、その定款の定めに従い、株主総会、取締役会又は清算人会の決議のほか、当該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の決議が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ただし、当該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種類株主が存し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324条 種類株主総会の決議

1 種類株主総会の決議は、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その種類の株式の総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を有する株主が出席し、出席した当該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をもって行う。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に掲げる種類株主総会の決議は、当該種類株主

10. 신설분할

11. 주식교환

12. 주식교환에 의한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전부의 취득

13. 주식이전

14. 주식교부

② 종류주식발행회사는 어느 종류주식의 내용으로서 전항에 의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은 전항에 의하여 정관의 정함이 있는 어느 종류주식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정관변경(단원주식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어느 종류주식의 발행 후에 정관을 변경하여 그 종류주식에 관하여 제2항에 의한 정관의 정함을 두려고 때에는 당해 종류의 종류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23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경우

종류주식발행회사에서 특정종류의 주식 내용으로서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제478조 제8항의 청산인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당해 결의 외에 당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정함이 있을 때에는 당해 결의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 외에 당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종류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류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4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①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종류주식의 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종류주주총회에서 의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三分の一以上の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を有する株主が出席し、出席した当該株主の議決権の三分の二(これを上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に当たる多数をもっ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決議の要件に加えて、一定の数以上の株主の賛成を要する旨その他の要件を定款で定めることを妨げない。

一 第百十一条第二項の種類株主総会(ある種類の株式の内容として第百八条第一項第七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を設ける場合に限る。)

二 第百九十九条第四項及び第二百条第四項の種類株主総会

三 第二百三十八条第四項及び第二百三十九条第四項の種類株主総会

四 第三百二十二条第一項の種類株主総会

五 第三百四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三百三十九条第一項の種類株主総会

六 第七百九十五条第四項の種類株主総会

七 第八百十六条の三第三項の種類株主総会

3 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に掲げる種類株主総会の決議は、当該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株主の半数以上(これを上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であって、当該株主の議決権の三分の二(これを上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に当たる多数をもっ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百十一条第二項の種類株主総会(ある種類の株式の内容として第百八条第一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を設ける場合に限る。)

二 第七百八十三条第三項及び第八百四条第三項の種類株主総会

第325条 株主総会に関する規定の準用

前款(第二百九十五条第一項及び第二項、第二百九十六条第一項及び第二項並びに第三百九条を除く。)の規定は、種類株主総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二百九十七条第一項中「総株主」とあるのは「総株主(ある種類の株式の株主に限る。以下この款(第三百八条第一項を除く。)において同じ。)」と、「株主は」とあるのは「株主(ある種類の株式の株主に限る。以下この款(第三百十八条第四項及び第三百十九条第三項を除く。)において同じ。)」は」と読み替えるもの

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3분의 1이상의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를 가진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보다 높은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는 그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결의의 요건에 추가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주주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나 그 밖의 요건을 정관으로 정할 수도 있다.

1. 제111조 제2항의 종류주주총회(특정 종류주식의 내용으로서 제800조 제1항 제7호의 사항에 관한 정관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제199조 제4항 및 제200조 제4항의 종류주주총회
3. 제238조 제4항 및 제239조 제4항의 종류주주총회
4. 제322조 제1항의 종류주주총회
5. 제347조 제2항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339조 제1항의 종류주주총회
6. 제795조 제4항의 종류주주총회
7. 제816조의 3 제3항의 종류주주총회

③ 전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종류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반수이상(이보다 높은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는 그 비율 이상)으로 그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보다 높은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제111조 제2항의 종류주주총회(특정 종류주식의 내용으로서 제800조 제1항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정관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제783조 제3항 및 제804조 제3항의 종류주주총회

제325조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전관(제295조 제1항 및 제2항, 제296조제1항 및 제2항, 제309조는 제외한다)의 규정은 종류주주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7조 제1항 중 ‘총주주’는 ‘총주주(특정 종류주식의 주주에 한한다. 이하 이 관(제308조 제1항은 제외한다)에서 같다)’로, ‘주주는’은 ‘주주(특정 종류주식의 주주에 한한다. 이하 이 관(제318조 제4항 및 제319조 제3항은 제외한다)에서 같다)’으로 본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とする。

第三款 電子提供措置

第325条の2 電子提供措置をとる旨の定款の定め

株式会社は、取締役が株主総会（種類株主総会を含む。）の招集の手続を行うときは、次に掲げる資料（以下この款において「株主総会参考書類等」という。）の内容である情報について、電子提供措置（電磁的方法により株主（種類株主総会を招集する場合にあっては、ある種類の株主に限る。）が情報の提供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状態に置く措置であっ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款、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十二号の二及び第九百七十六条第十九号において同じ。）をとる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定款には、電子提供措置をとる旨を定めれば足りる。

- 一 株主総会参考書類
- 二 議決権行使書面
- 三 第四百三十七条の計算書類及び事業報告
- 四 第四百四十四条第六項の連結計算書類

第325条の3 電子提供措置

1 電子提供措置をと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の取締役は、第二百九十九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株主総会の日前三週間前の日又は同条第一項の通知を発した日のいずれか早い日（以下この款において「電子提供措置開始日」という。）から株主総会の日後三箇月を経過する日までの間（以下この款において「電子提供措置期間」という。）、次に掲げる事項に係る情報について継続して電子提供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
- 二 第三百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及び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
- 三 第三百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
- 四 第三百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場合には、同項の議案の要領
- 五 株式会社が取締役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取締役が定時株主総会

제3관 전자제공조치

제325조의2 전자제공조치를 취하는 취지의 정관규정

주식회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종류주주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를 행할 때는 다음의 자료(이하 이 관에서 '주주총회서류 등'이라 한다.)의 정보에 관하여 전자제공조치(전자적 방법에 의해 주주(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특정 종류의 주주에 한한다.)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관, 제911조 제3항 제12호의 2 및 제976조 제19호에서 같다)를 취하는 뜻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정관에는 전자제공조치를 취하는 뜻을 규정하면 된다.

1. 주주총회 참고서류
2. 의결권행사서면
3. 제437조의 계산서류 및 사업보고서
4. 제444조 제6항의 연결계산서류

제325조의3 전자제공조치

① 전자제공조치를 취하는 취지의 정관 규정이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제299조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3주 전 또는 동조 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날 중 빠른 날(이하 이 관에서 '전자제공조치 개시일'이라 한다.)로부터 주주총회일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이하 이 관에서 '전자제공조치기간'이라 한다.), 다음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관하여 계속하여 전자제공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제298조 제1항 각호의 사항
2. 제301조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참고서류 및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3. 제302조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4. 제305조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항의 의안 요령
5. 주식회사가 이사회설치회사인 경우 이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때에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を招集するときは、第四百三十七条の計算書類及び事業報告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事項

六 株式会社が会計監査人設置会社(取締役会設置会社に限る。)である場合において、取締役が定時株主総会を招集するときは、第四百四十四条第六項の連結計算書類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事項

七 前各号に掲げる事項を修正したときは、その旨及び修正前の事項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取締役が第二百九十九条第一項の通知に際して株主に対し議決権行使書面を交付するときは、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に係る情報については、前項の規定により電子提供措置をとることを要し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その発行する株式について有価証券報告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株式会社が、電子提供措置開始日までに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定時株主総会に係るものに限り、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除く。)を記載した有価証券報告書(添付書類及びこれらの訂正報告書を含む。)の提出の手続を同法第二十七条の三十の二に規定する開示用電子情報処理組織(以下この款において単に「開示用電子情報処理組織」という。)を使用して行う場合には、当該事項に係る情報については、同項の規定により電子提供措置をとることを要しない。

第325条の4 株主総会の招集の通知等の特則

1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電子提供措置をとる場合における第二百九十九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二週間(前条第一項第三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を除き、公開会社でない株式会社にあつては、一週間(当該株式会社が取締役会設置会社以外の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期間))」とあるのは、「二週間」とする。

2 第二百九十九条第四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電子提供措置をとる場合には、第二百九十九条第二項又は第三項の通知には、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第五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を要し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通知には、同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事項のほ

는 제437조의 계산서류 및 사업보고서에 기재 또는 기록된 사항

6. 주식회사가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이사회설치회사에 한한다.)인 경우 이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제444조 제6항의 연결계산서류에 기재 또는 기록된 사항

7. 전 각호의 사항을 수정한 때에는 그 뜻 및 수정 이전의 사항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제299조 제1항의 통지시 주주에게 의결권행사서면을 교부할 때는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항의 전자제공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유가증권보고서를 내각총리 대신에게 제출해야 하는 주식회사가 전자제공조치 개시일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정기주주총회에 관련된 것에 한하고,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제외한다)을 기재한 유가증권보고서(첨부서류 및 정정보고서를 포함한다) 제출 절차를 동법 제27조의 30의 2의 공시용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이관에서 단순히 '공시용전자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동항에 따라 전자제공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제325조의4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의 특칙

① 전조 제1항에 따라 전자제공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299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항 중 '2주간(전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정한 때는 제외하고,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주간(해당 주식회사가 이사회설치회사 이외의 주식회사인 경우, 이를 하회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2주간'으로 한다.

② 제299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조 제1항에 따라 전자제공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29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통지에는 제298조 제1항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또는 기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지에는 동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거나 또는 기록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か、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電子提供措置をとっているときは、その旨
 - 二 前条第三項の手続を開示用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して行ったときは、その旨
 -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 3 第三百一条第一項、第三百二条第一項、第四百三十七条及び第四百四十四条第六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電子提供措置をと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においては、取締役は、第二百九十九条第一項の通知に際して、株主に対し、株主総会参考書類等を交付し、又は提供することを要しない。
- 4 電子提供措置をと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における第三百五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その通知に記載し、又は記録する」とあるのは、「当該議案の要領について第三百二十五条の二に規定する電子提供措置をとる」とする。

第325条の5 書面交付請求

- 1 電子提供措置をと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の株主(第二百九十九条第三項(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承諾をした株主を除く。は、株式会社に対し、第三百二十五条の三第一項各号(第三百二十五条の七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掲げる事項(以下この条において「電子提供措置事項」という。)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2 取締役は、第三百二十五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り電子提供措置をとる場合には、第二百九十九条第一項の通知に際して、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以下この条において「書面交付請求」という。)をした株主(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者を定めるための基準日(第二百二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基準日をいう。))を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基準日までに書面交付請求をした者に限る。))に対し、当該株主総会に係る電子提供措置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株式会社は、電子提供措置事項のうち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は、前項の規定により交付する書面に記載することを要しない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 4 書面交付請求をした株主が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書面交付請求の日(当該

해야 한다.

1. 전자제공조치를 취하고 있을 때는 그 취지
 2. 전조 제3항의 절차를 공시용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행한 때는 그 취지
 3. 전 2호 이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301조 제1항, 제302조 제1항, 제437조 및 제444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제공조치를 하는 취지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는 제299조 제1항의 통지 시 주주에게 주주총회 참고서류 등을 교부하거나 또는 제공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④ 전자제공조치를 하는 취지의 정관 규정이 있는 주식회사의 제305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항 중 '그 통지에 기재 또는 기록한다'는 '의안의 요령에 관하여 제325조의 2의 전자제공조치를 취한다'로 한다.

제325조의5 서면교부청구

- ① 전자제공조치를 하는 취지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주식회사의 주주(제299조 제3항(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낙을 한 주주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에 대해 제325조의 3 제1항 각호(제325조의 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전자제공조치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한 서면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사는 제325조의 3 제1항에 따라 전자제공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299조 제1항의 통지 시 전항의 청구(이하 이 조에서 '서면교부청구'라 한다.)를 한 주주(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제124조 제1항의 기준일을 말한다)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서면교부청구를 한 자에 한한다)에게 주주총회에 관한 전자제공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주식회사는 전자제공조치사항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서는 전항에 따라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서면교부청구를 한 주주가 있는 경우 서면교부청구일(주주가 다음 항 단서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株主が次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異議を述べ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異議を述べた日)から一年を経過したときは、株式会社は、当該株主に対し、第二項の規定による書面の交付を終了する旨を通知し、かつ、これに異議のある場合には一定の期間(以下この条において「催告期間」という。)内に異議を述べるべき旨を催告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催告期間は、一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5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及び催告を受けた株主がした書面交付請求は、催告期間を経過した時にその効力を失う。ただし、当該株主が催告期間内に異議を述べ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325条の6 電子提供措置の中断

第三百二十五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電子提供措置期間中に電子提供措置の中断(株主が提供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状態に置かれた情報がその状態に置かれないこととなったこと又は当該情報がその状態に置かれた後改変されたこと(同項第七号の規定により修正されたことを除く。))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が生じた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きは、その電子提供措置の中断は、当該電子提供措置の効力に影響を及ぼさない。

- 一 電子提供措置の中断が生ずることにつき株式会社が善意でかつ重大な過失がないこと又は株式会社に正当な事由があること。
- 二 電子提供措置の中断が生じた時間の合計が電子提供措置期間の十分の一を超えないこと。
- 三 電子提供措置開始日から株主総会の日までの期間中に電子提供措置の中断が生じたときは、当該期間中に電子提供措置の中断が生じた時間の合計が当該期間の十分の一を超えないこと。
- 四 株式会社が電子提供措置の中断が生じたことを知った後速やかにその旨、電子提供措置の中断が生じた時間及び電子提供措置の中断の内容について当該電子提供措置に付して電子提供措置をとったこと。

第325条の7 株主総会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三百二十五条の三から前条まで(第三百二十五条の三第一項(第五号及び第六号に係る部分に限る。))及び第三項並びに第三百二十五条の五第一項及び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を除く。)の規定は、種類株主総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일 년을 경과한 때는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제2항의 서면교부를 종료하는 뜻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최고기간’이라 한다.) 내에 이의를 제기할 뜻을 최고할 수 있다. 다만 최고기간은 한 달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전항의 통지 및 최고를 받은 주주가 한 서면교부청구는 최고기간을 경과했을 때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주주가 최고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5조의6 전자제공조치의 중단

제32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제공조치기간 중에 전자제공조치의 중단(주주가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던 정보가 그렇게 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정보가 변경된 것(동항 제7호에 따라 수정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자제공조치의 중단은 전자제공조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전자제공조치의 중단이 발생하는 것에 관해 주식회사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주식회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전자제공조치의 중단이 발생한 시간의 합계가 전자제공조치 기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전자제공조치 개시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 중에 전자제공조치의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중에 전자제공조치의 중단이 발생한 시간의 합계가 기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주식회사가 전자제공조치의 중단이 발생한 것을 안 후 신속하게 그 뜻, 제공조치의 중단이 발생한 시간 및 전자제공조치의 중단 내용에 관해 그 전자제공조치에 부기하여 전자제공조치를 취했을 것

제325조의7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25조의 3부터 전조까지의(제325조의 3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3항 및 제325조의 5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종류주주총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25조의 3 제1항 중 ‘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合において、第三百二十五条の三第一項中「第二百九十九条第二項各号」とあるのは「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百九十九条第二項各号」と、「同条第一項」とあるのは「同条第一項(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に限る。次項、次条及び第三百二十五条の五において同じ。)」と、「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各号」とあるのは「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各号(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に限る。)」と、「第三百一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一条第一項」と、「第三百二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二条第一項」と、「第三百五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三百五条第一項(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に限る。次条第四項において同じ。)」と、同条第二項中「株主」とあるのは「株主(ある種類の株式の株主に限る。次条から第三百二十五条の六までにおいて同じ。)」と、第三百二十五条の四第二項中「第二百九十九条第四項」とあるのは「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百九十九条第四項」と、「第二百九十九条第二項」とあるのは「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百九十九条第二項」と、「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第五号」とあるのは「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第五号」と、「同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とあるのは「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同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と、同条第三項中「第三百一条第一項、第三百二条第一項、第四百三十七条及び第四百四十四条第六項」とあるのは「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一条第一項及び第三百二条第一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2節 株主総会以外の機関の設置

第326条 株主総会以外の機関の設置

株式会社には、一人又は二人以上の取締役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株式会社は、定款の定めによって、取締役会、会計参与、監査役、監査役会、会計監査人、監査等委員会又は指名委員会等を置くことができる。

第327条 取締役会等の設置義務等

次に掲げる株式会社は、取締役会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公開会社

제299조 제2항 각호'는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제299조 제2항 각호'로, '동조 제1항'은 '동조 제1항(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 항, 다음 조 및 제325조의 5에서 같다)'으로, '제298조 제1항 각호'는 '제298조 제1항 각호(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제301조 제1항'은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제301조 제1항'으로, '제302조 제1항'은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제302조 제1항'으로, '제305조 제1항'은 '제305조 제1항(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 조 제4항에서 같다)'으로. 동조 제2항 중 '주주'는 '주주(특정 종류주식의 주주에 한한다. 다음 조부터 제325조의 6까지 같다)'로, 제325조의4 제2항 중 '제299조 제4항'은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제299조 제4항'으로. '제299조 제2항'은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제299조 제2항'으로. '제298조 제1항 제5호'는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제298조 제1항 제5호'로, '동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1호부터 4호까지'로, 동조 제3항 중 '제301조 제1항, 제302조 제1항, 제437조 및 제444조 제6항'은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제301조 제1항 및 제302조 제1항'으로 환독하는 것으로 한다.

제2절 주주총회 이외의 기관의 설치

제326조 주주총회 이외의 기관의 설치

- ① 주식회사에는 1명 또는 2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② 주식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이사회, 회계참여, 감사, 감사회, 회계감사인, 감사등위원회 또는 지명위원회등을 둘 수 있다.

제327조 이사회 등의 설치의무 등

- ① 다음의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
 1. 공개회사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二 監査役会設置会社

三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

四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

2 取締役会設置会社(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及び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を除く。)は、監査役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公開会社でない会計参与設置会社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3 会計監査人設置会社(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及び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を除く。)は、監査役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4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及び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は、監査役を置いてはならない。

5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及び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は、会計監査人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6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は、監査等委員会を置いてはならない。

第327条の2 社外取締役の設置義務

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監査役会設置会社(公開会社であり、かつ、大会社であるものに限る。)であって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その発行する株式について有価証券報告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は、社外取締役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328条 大会社における監査役会等の設置義務

大会社(公開会社でないもの、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及び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を除く。)は、監査役会及び会計監査人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公開会社でない大会社は、会計監査人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3節 役員及び会計監査人の選任及び解任

第1款 選任

第329条 選任

1 役員(取締役、会計参与及び監査役をいう。以下この節、第三百七十一条第四

2. 감사회설치회사

3.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4.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

② 이사회설치회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및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는 제외한다)는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공개회사가 아닌 회계참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계감사인설치회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및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는 제외한다)는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④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및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⑤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및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는 회계감사인을 두어야 한다.

⑥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는 감사등위원회를 둘 수 없다.

제327조의2 사외이사 설치의무

감사회설치회사(공개회사이면서 대회사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관해 유가증권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328조 대회사의 감사위원회등의 설치 의무

① 대회사(공개회사가 아닌 것,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및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는 제외한다)는 감사회 및 회계감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공개회사가 아닌 대회사는 회계감사인을 두어야 한다.

제3절 임원 및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제1관 선임

제329조 선임

① 임원(이사, 회계참여 및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 제371조 제4항 및 제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項及び第三百九十四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 及び会計監査人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選任する。

2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前項の規定による取締役の選任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とそれ以外の取締役とを区別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決議をする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役員(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若しくはそれ以外の取締役又は会計参与。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が欠けた場合又はこの法律若しくは定款で定めた役員の員数を欠くこととなるときに備えて補欠の役員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330条 株式会社と役員等との関係

株式会社と役員及び会計監査人との関係は、委任に関する規定に従う。

第331条 取締役の資格等

1 次に掲げる者は、取締役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

一 法人

二 削除

三 この法律若しくは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平成十八年法律第四十八号)の規定に違反し、又は金融商品取引法第百九十七条、第百九十七条の二第一号から第十号の三まで若しくは第十三号、第百九十八条第八号、第百九十九条、第二百条第一号から第十二号の二まで、第二十号若しくは第二十一号、第二百三条第三項若しくは第二百五条第一号から第六号まで、第十九号若しくは第二十号の罪、民事再生法(平成十一年法律第二百二十五号)第二百五十五条、第二百五十六条、第二百五十八条から第二百六十条まで若しくは第二百六十二条の罪、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平成十二年法律第二百二十九号)第六十五条、第六十六条、第六十八条若しくは第六十九条の罪、会社更生法(平成十四年法律第百五十四号)第二百六十六条、第二百六十七条、第二百六十九条から第二百七十一条まで若しくは第二百七十三条の罪若しくは破産法(平成十六年法律第七十五号)第二百六十五条、第二百六十六条、第二百六十八条から第二百七十二条まで若しくは第二百七十四条の罪を犯し、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

394조 제3항에서 같다) 및 회계감사인인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임은 감사등위원인 이사와 그 외의 이사를 구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의를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이사 혹은 그 이외의 이사 또는 회계참여.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부족한 경우 또는 이 법률 혹은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수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궐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제330조 주식회사와 임원 등과의 관계

주식회사와 임원 및 회계감사인과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31조 이사의 자격 등

① 다음의 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법인

2. 삭제

3. 이 법 또는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48호)에 위반하거나, 금융상품거래법 제197조, 제197조의2 제1호 내지 제10호의3 또는 제13호, 제198조 제8호, 제199조, 제200조 제1호 내지 제12호의2, 제20호 또는 제21호, 제203조 제3항 또는 제205조 제1호 내지 제6호, 제19호 또는 제20호의 죄, 민사재생법(1999년 법률 제225호) 제255조, 제256조, 제258조 내지 제260조 또는 제262조의 죄,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2000년 법률 제129호) 제65조, 제66조, 제68조 또는 제69조의 죄, 회사갱생법(2002년 법률 제154호) 제266조, 제267조,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 또는 파산법(2004년 법률 제75호) 제265조, 제266조, 제268조 내지 제272조 또는 제274조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者

四 前号に規定する法律の規定以外の法令の規定に違反し、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るまで又はその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るまでの者(刑の執行猶予中の者を除く。)

2 株式会社は、取締役が株主でなければならない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公開会社でない株式会社にお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3 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は、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若しくはその子会社の業務執行取締役若しく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又は当該子会社の会計参与(会計参与が法人であるときは、その職務を行うべき社員)若しくは執行役を兼ねることができない。

4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取締役は、当該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を兼ねることができない。

5 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取締役は、三人以上でなければならない。

6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は、三人以上で、その過半数は、社外取締役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331条の2

1 成年被後見人が取締役に就任するには、その成年被後見人が、成年被後見人の同意(後見監督人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成年被後見人及び後見監督人の同意)を得た上で、成年被後見人に代わって就任の承諾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被保佐人が取締役に就任するには、その保佐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は、保佐人が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四第一項の代理権を付与する旨の審判に基づき被保佐人に代わって就任の承諾を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一項中「成年被後見人の同意(後見監督人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成年被後見人及び後見監督人の同意)」とあるのは、「被保佐人の同意」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4 成年被後見人又は被保佐人がした取締役の資格に基づく行為は、行為能力の制限によっては取り消すことができない。

第332条 取締役の任期

1 取締役の任期は、選任後二年以内に終了する事業年度のうち最終のものに関

4. 전호에 규정하는 법률의 규정 이외의 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날 때까지 또는 그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의 자(형의 집행유예 중의 자는 제외한다)
- ② 주식회사는 이사가 주주이어야 한다는 뜻을 정관에서 정할 수 없다. 다만,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사등위원인 이사는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혹은 그 자회사의 업무집행이사 혹은 지배인 그 이외의 사용인 또는 자회사의 회계참여(회계참여가 법인인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원) 혹은 집행임원을 겸할 수 없다.
- ④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이사는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지배인 그 이외의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
- ⑤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 ⑥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는 3인 이상으로 그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331조의 2

- ① 성년피후견인이 이사로 취임하려면 성년후견인이 성년피후견인의 동의(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피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은 후 성년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취임의 승낙을 하여야 한다.
- ② 피보좌인이 이사로 취임하려면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은 보좌인이 민법 제876조의 4 제1항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심판에 근거하여 피보좌인을 대신하여 취임승낙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성년피후견인의 동의(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피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동의)'는 '피보좌인의 동의'로 대체한다.
- ④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이 이사의 자격에 근거하여 한 행위는 행위능력 제한에 의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

제332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선임 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최종연도에 관한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する定時株主総会の終結の時までとする。ただし、定款又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その任期を短縮することを妨げない。

2 前項の規定は、公開会社でない株式会社（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及び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を除く。）において、定款によって、同項の任期を選任後十年以内に終了する事業年度のうち最終のものに関する定時株主総会の終結の時まで延長することを妨げない。

3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取締役（監査等委員であ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の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二年」とあるのは、「一年」とする。

4 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任期については、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は、適用しない。

5 第一項本文の規定は、定款によって、任期の満了前に退任した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補欠として選任された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任期を退任した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任期の満了する時までとすることを妨げない。

6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取締役についての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二年」とあるのは、「一年」とする。

7 前各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に掲げる定款の変更をした場合には、取締役の任期は、当該定款の変更の効力が生じた時に満了する。

一 監査等委員会又は指名委員会等を置く旨の定款の変更

二 監査等委員会又は指名委員会等を置く旨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定款の変更

三 その発行する株式の全部の内容として譲渡による当該株式の取得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の承認を要する旨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定款の変更（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及び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がするものを除く。）

第333条 会計参与の資格等

1 会計参与は、公認会計士若しくは監査法人又は税理士若しくは税理士法人でなければならない。

2 会計参与に選任された監査法人又は税理士法人は、その社員の中から会計参与の職務を行うべき者を選定し、これを株式会社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次項各号に掲げる者を選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

3 次に掲げる者は、会計参与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② 전항은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및 지명위원회등 설치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정관으로 동항의 임기를 선임 후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최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감사등위원인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 동항 중 “2년”은 “1년”으로 한다.

④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정관으로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보결로 선임된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임기를 퇴임한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임기가 만료할 때까지로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⑥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이사의 경우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 동항 중 “2년”은 “1년”으로 한다.

⑦ 전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정관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행한 때에 종료한다.

1. 감사등위원회 또는 지명위원회등을 두는 취지의 정관 변경
2. 감사등위원회 또는 지명위원회등을 두는 취지의 정관 규정을 폐지하는 정관변경
3. 발행주식 전부의 내용으로서 양도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관해 주식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정관 규정을 폐지하는 정관변경(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및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가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33조 회계참여의 자격 등

① 회계참여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 또는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인이어야 한다.

② 회계참여로 선임된 감사법인 또는 세무사법인은 그 사원 중에서 회계참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이를 주식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선임하지 못한다.

③ 다음의 자는 회계참여가 되지 못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一 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取締役、監査役若しくは執行役又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
- 二 業務の停止の処分を受け、その停止の期間を経過しない者
- 三 税理士法 (昭和二十六年法律第二百三十七号) 第四十三条の規定により同法第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税理士業務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者

第334条 会計参与の任期

- 1 第三百三十二条(第四項及び第五項を除く。次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は、会計参与の任期について準用する。
- 2 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三十二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会計参与設置会社が会計参与を置く旨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定款の変更をした場合には、会計参与の任期は、当該定款の変更の効力が生じた時に満了する。

第335条 監査役の資格等

- 1 第三百三十一条第一項及び第二項並びに第三百三十一条の二の規定は、監査役について準用する。
- 2 監査役は、株式会社若しくはその子会社の取締役若しく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又は当該子会社の会計参与(会計参与が法人であるときは、その職務を行うべき社員)若しくは執行役を兼ねることができない。
- 3 監査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監査役は、三人以上で、そのうち半数以上は、社外監査役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336条 監査役の任期

- 1 監査役の任期は、選任後四年以内に終了する事業年度のうち最終のものに関する定時株主総会の終結の時までとする。
- 2 前項の規定は、公開会社でない株式会社において、定款によって、同項の任期を選任後十年以内に終了する事業年度のうち最終のものに関する定時株主総会の終結の時まで伸長することを妨げない。
- 3 第一項の規定は、定款によって、任期の満了前に退任した監査役の補欠として選任された監査役の任期を退任した監査役の任期の満了する時までとすることを妨げない。
- 4 前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に掲げる定款の変更をした場合には、監査役

1.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집행임원 또는 지배인이나 그 밖의 사용인
2.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세무사법(1951년 법률 제237호) 제43조에 의하여 동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는 자

제334조 회계참여의 임기

- ① 제332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규정은 회계참여의 임기에 준용한다.
- ②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332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참여설치회사가 회계참여를 설치한다는 뜻의 정관의 정함을 폐지하는 정관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참여의 임기는 그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만료한다.

제335조 감사의 자격 등

- ① 제331조 제1항, 제2항 및 제331조의 2는 감사에 준용한다.
- ② 감사는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이나 그 밖의 사용인 또는 그 자회사의 회계참여(회계참여가 법인인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사원) 또는 집행임원을 겸하지 못한다.
- ③ 감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그 중 반수 이상은 사외감사로 하여야 한다.

제336조 감사의 임기

- ① 감사의 임기는 선임 후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최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전항은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 정관에 의하여 동항의 임기를 선임 후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최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제1항은 정관에 의하여 임기의 만료 전에 퇴임한 감사의 보결로서 선임된 감사의 임기를 퇴임한 감사의 임기 만료시까지로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④ 전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정관변경을 한 경우에는 감사의 임기는 그 정관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の任期は、当該定款の変更の効力が生じた時に満了する。

- 一 監査役を置く旨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定款の変更
- 二 監査等委員会又は指名委員会等を置く旨の定款の変更
- 三 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定款の変更
- 四 その発行する全部の株式の内容として譲渡による当該株式の取得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の承認を要する旨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定款の変更

第337条 会計監査人の資格等

- 1 会計監査人は、公認会計士又は監査法人でなければならない。
- 2 会計監査人に選任された監査法人は、その社員の中から会計監査人の職務を行うべき者を選定し、これを株式会社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次項第二号に掲げる者を選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
- 3 次に掲げる者は、会計監査人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公認会計士法の規定により、第四百三十五条第二項に規定する計算書類について監査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者
 - 二 株式会社の子会社若しくはその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若しくは執行役から公認会計士若しくは監査法人の業務以外の業務により継続的な報酬を受けている者又はその配偶者
 - 三 監査法人でその社員の半数以上が前号に掲げる者であるもの

第338条 会計監査人の任期

- 1 会計監査人の任期は、選任後一年以内に終了する事業年度のうち最終のものに関する定時株主総会の終結の時までとする。
- 2 会計監査人は、前項の定時株主総会において別段の決議がされなかったときは、当該定時株主総会において再任されたものとみなす。
- 3 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会計監査人設置会社が会計監査人を置く旨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定款の変更をした場合には、会計監査人の任期は、当該定款の変更の効力が生じた時に満了する。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만료한다.

1. 감사를 둔다는 뜻의 정관의 정함을 폐지하는 정관변경
2. 감사등위원회 또는 지명위원회등을 설치하는 뜻의 정관변경
3. 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는 뜻의 정관의 정함을 폐지하는 정관변경
4. 그 발행주식 전부의 내용으로서 양도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뜻의 정관의 정함을 폐지하는 정관변경

제337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 ① 회계감사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이어야 한다.
- ②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법인은 그 사원 중에서 회계감사인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하고 이를 주식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항 제2호의 자를 선임할 수 없다.
- ③ 다음의 자는 회계감사인이 되지 못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제435조 제2항의 계산서류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없는 자
 2. 주식회사의 자회사 또는 그 이사, 회계참여, 감사 또는 집행임원으로부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업무 이외의 업무에 의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3. 감사법인으로 그 사원의 반수이상이 전호의 자인 법인

제338조 회계감사인의 임기

- ① 회계감사인의 임기는 선임 후 1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 연도 중 최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회계감사인은 전항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별도의 결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임된 것으로 본다.
- ③ 전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인을 둔 회사가 회계감사인을 둔다는 뜻의 정관의 정함을 폐지하는 정관변경을 한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임기는 그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만료한다.

第2款 解任

第339条 解任

- 1 役員及び会計監査人は、いつでも、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り解任された者は、その解任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き、株式会社に對し、解任によって生じ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340条 監査役等による会計監査人の解任

- 1 監査役は、会計監査人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会計監査人を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職務上の義務に違反し、又は職務を怠ったとき。
 - 二 会計監査人としてふさわしくない非行があったとき。
 - 三 心身の故障のため、職務の執行に支障があり、又はこれに堪えないとき。
- 2 前項の規定による解任は、監査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は、監査役の全員の同意によっ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会計監査人を解任したときは、監査役(監査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役の互選によって定めた監査役)は、その旨及び解任の理由を解任後最初に招集される株主総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監査役会設置会社における前三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一項中「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役会」と、第二項中「監査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は、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役」と、前項中「監査役(監査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役の互選によって定めた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役会が選定した監査役」とする。
- 5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おける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一項中「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等委員会」と、第二項中「監査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は、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等委員」と、第三項中「監査役(監査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役の互選によって定めた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等委員会が選定した監査等委員」とする。
- 6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おける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の適用につい

제2관 해임

제339조 해임

- ① 임원 및 회계감사인은 언제든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그 해임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0조 감사 등에 의한 회계감사인의 해임

- ① 감사는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회계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 1.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해태한 때
 - 2. 회계감사인으로서 부절절한 비행이 있었던 때
 -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에 지장이 있거나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 ② 전항에 의한 해임은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의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회계감사인을 해임한 때에는 감사(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의 호선에 의하여 정한 감사)는 그 뜻 및 해임의 이유를 해임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감사회설치회사의 경우 전3항의 적용에 관하여 제1항 중 “감사”는 “감사회”로, 제2항 중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는 “감사”로, 전항 중 “감사(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의 호선에 의하여 정한 감사)”는 “감사회가 선임한 감사”로 본다.
- ⑤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제1항 중 “감사”는 “감사등위원회”로, 제2항 중 “감사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감사”는 “감사등위원”으로, 제3항 중 “감사(감사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감사의 호선에 의해 정한 감사)”는 “감사등위원회가 선정한 감사등위원”으로 한다.
- ⑥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제1항 중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ては、第一項中「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委員会」と、第二項中「監査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は、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委員会の委員」と、第三項中「監査役（監査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役の互選によって定めた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委員会が選定した監査委員会の委員」とする。

第3款 選任及び解任の手續に関する特則

第341条 役員の選任及び解任の株主総会の決議

第三百九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役員を選任し、又は解任する株主総会の決議は、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三分の一以上の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を有する株主が出席し、出席した当該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これを上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をもっ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342条 累積投票による取締役の選任

1 株主総会の目的である事項が二人以上の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選任である場合には、株主(取締役の選任につ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株主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は、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ときを除き、株式会社に對し、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に規定するところにより取締役を選任すべき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は、同項の株主総会の日の五日前まで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三百八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つた場合には、取締役の選任の決議については、株主は、その有する株式一株(単元株式数を定款で定め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一単元の株式)につき、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選任する取締役の数と同数の議決権を有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株主は、一人のみに投票し、又は二人以上に投票して、その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場合には、投票の最多数を得た者から順次取締役に選任されたものとする。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2항 중 “감사가 2인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3항 중 “감사(감사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사의 호선에 의해서 정한 감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제3관 선임 및 해임의 절차에 관한 특칙

제341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주주총회결의

제30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주주총회결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3분의 1이상의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를 가진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이보다 높은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로써 하여야 한다.

제342조 누적투표에 의한 이사의 선임

①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이 2인 이상의 이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이외의 이사.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임인 경우에는 주주(이사선임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관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청구는 동항의 주주총회일의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30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의한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의 결의에 관하여는 주주는 주식 1주(단원주식수를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1단원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의 수와 동수의 의결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는 주주는 1인 또는 수인에게 투표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5 前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取締役の選任に関し必要な事項は、法務省令で定める。

6 前条の規定は、前三項に規定するところにより選任された取締役の解任の決議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342条の2 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等の選任等についての意見の陳述

1 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は、株主総会において、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選任若しくは解任又は辞任について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2 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を辞任した者は、辞任後最初に招集される株主総会に出席して、辞任した旨及びその理由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3 取締役は、前項の者に対し、同項の株主総会を招集する旨及び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監査等委員会が選定する監査等委員は、株主総会において、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以外の取締役の選任若しくは解任又は辞任について監査等委員会の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第343条 監査役の選任に関する監査役の同意等

1 取締役は、監査役がある場合において、監査役の選任に関する議案を株主総会に提出するには、監査役(監査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過半数)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2 監査役は、取締役に対し、監査役の選任を株主総会の目的とすること又は監査役の選任に関する議案を株主総会に提出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 監査役会設置会社における前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一項中「監査役(監査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過半数)」とあるのは「監査役会」と、前項中「監査役は」とあるのは「監査役会は」とする。

4 第三百四十一条の規定は、監査役の解任の決議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344条 会計監査人の選任等に関する議案の内容の決定

1 監査役設置会社においては、株主総会に提出する会計監査人の選任及び解任並びに会計監査人を再任しないことに関する議案の内容は、監査役が決定する。

2 監査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監

- ⑤ 전2항에 정하는 것 외에 제1항에 의한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⑥ 전조는 전3항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해임결의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2조의2 감사등위원인 이사등의 선임등에 관한 의견진술

- ① 감사등위원인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선임, 해임 또는 사임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감사등위원인 이사를 사임한 자는 사임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사임한 내용 및 그 이유를 진술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전항의 자에게 동항의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취지 및 제298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감사등위원회가 선정하는 감사등위원은 주주총회에서 감사등위원인 이사 이외의 이사의 선임 혹은 해임 또는 사임에 관하여 감사등위원회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3조 감사의 선임에 관한 감사의 동의 등

- ① 이사는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감사는 이사에게 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할 것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전2항의 적용에 관하여 제1항 중 “감사(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그 과반수)”는 “감사회”로 전항 중 “감사는”은 “감사회는”으로 한다.
- ④ 제341조는 감사의 해임결의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4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의안내용의 결정

- ① 감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회계감사인의 선임, 해임 및 회계감사인을 재임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의안의 내용은 감사가 결정한다.
- ② 감사가 2인 이상 있는 경우 전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감사가”는 “감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査役が」とあるのは、「監査役の過半数をもって」とする。

3 監査役会設置会社における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役会」とする。

第344条の2 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選任に関する監査等委員会の同意等

1 取締役は、監査等委員会がある場合において、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選任に関する議案を株主総会に提出するには、監査等委員会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2 監査等委員会は、取締役に対し、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選任を株主総会の目的とすること又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選任に関する議案を株主総会に提出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 第三百四十一条の規定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解任の決議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345条 会計参与等の選任等についての意見の陳述

1 会計参与は、株主総会において、会計参与の選任若しくは解任又は辞任について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2 会計参与を辞任した者は、辞任後最初に招集される株主総会に出席して、辞任した旨及びその理由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3 取締役は、前項の者に対し、同項の株主総会を招集する旨及び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規定は監査役について、前二項の規定は監査役を辞任した者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一項中「会計参与の」とあるのは、「監査役の」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5 第一項の規定は会計監査人について、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会計監査人を辞任した者及び第三百四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会計監査人を解任された者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一項中「株主総会において、会計参与の選任若しくは解任又は辞任について」とあるのは「会計監査人の選任、解任若しくは不再任又は辞任について、株主総会に出席して」と、第二項中「辞任後」とあるのは「解任後又は辞任後」と、「辞任した旨及びその理由」とあるのは「辞任した旨及びその理由又は解任についての意見」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사의 과반수로서”로 한다.

③ 감사회설치회사의 경우 제1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중 “감사”는 “감사회”로 한다.

제344조의2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선임에 관한 감사등위원회의 동의 등

① 이사는 감사등위원회가 있는 경우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을 주주 총회에 제출하려면 감사등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감사등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하는 것 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을 주주 총회에 제출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341조의 규정은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해임의 결의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제345조 회계참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의견의 진술

① 회계참여는 주주총회에서 회계참여의 선임, 해임 또는 사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회계참여를 사임한 자는 사임후 처음 소집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사임한 뜻 및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전항의 자에게 동항의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 및 제298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은 감사에 관하여, 전2항은 감사를 사임한 자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회계참여의”는 “감사의”로 본다.

⑤ 제1항은 회계감사인에 관하여, 제2항 및 제3항은 회계감사인을 사임한 자 및 제340조 제1항에 의하여 회계감사인에서 해임된 자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주주총회에 회계참여의 선임, 해임 또는 사임에 관하여”는 “회계감사인의 선임, 해임, 부재임 또는 사임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하여”로, 제2항 중 “사임후”는 “해임후 또는 사임후”로, “사임한 뜻 및 그 이유”는 “사임한 뜻 및 그 이유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으로 본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第346条 役員等に欠員を生じた場合の措置

- 1 役員(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若しくはそれ以外の取締役又は会計参与。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が欠けた場合又はこの法律若しくは定款で定めた役員の員数が欠けた場合には、任期の満了又は辞任により退任した役員は、新たに選任された役員(次項の一時役員の職務を行うべき者を含む。)が就任するまで、なお役員としての権利義務を有する。
-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一時役員の職務を行うべき者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 3 裁判所は、前項の一時役員の職務を行うべき者を選任した場合には、株式会社がその者に対して支払う報酬の額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4 会計監査人が欠けた場合又は定款で定めた会計監査人の員数が欠けた場合において、遅滞なく会計監査人が選任されないときは、監査役は、一時会計監査人の職務を行うべき者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 5 第三百三十七条及び第三百四十条の規定は、前項の一時会計監査人の職務を行うべき者について準用する。
- 6 監査役会設置会社における第四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役会」とする。
- 7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おける第四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等委員会」とする。
- 8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おける第四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監査役

第347条 種類株主総会における取締役又は監査役の選任等

第百八条第一項第九号に掲げる事項(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に関するものに限る。)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種類の株式を発行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第三百二十九条第一項、第三百三十二条第一項、第三百三十九条第一項、第三百四十一条並びに第三百四十四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三百二十九条第一項中「株主総会」とあるのは「株主総会(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については、第百八条第二項第九号に定める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に従い、各種類の株式の種

제346조 임원등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 ① 임원(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혹은 그 이외의 이사 또는 회계 참여.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 법률 혹은 정관에서 정한 임원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임원은 새롭게 선임된 임원(다음 항의 일시임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
- ② 전항의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전항의 일시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그 자에게 지급할 보수액을 정할 수 있다.
- ④ 회계감사인이 부족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감사인의 원수가 부족한 경우에 지체없이 회계감사인이 선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는 일시회계감사인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⑤ 제337조 및 제340조는 전항의 일시회계감사인의 직무를 수행할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⑥ 감사회설치회사의 경우 제4항의 적용에 관하여 동항 중 “감사”는 “감사회”로 본다.
- ⑦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 제4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감사”는 “감사등위원회”로 한다.
- ⑧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 제4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한다.

제347조 종류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등

- ① 제108조 제1항 제9호의 사항(이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이외의 이사)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정함이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제329조 제1항, 제332조 제1항, 제339조 제1항, 제341조 및 제34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329조 제1항 중 “주주총회”는 “주주총회(이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이외의 이사)에 관해서는 제108조 제2항 제9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관의 정함에 따라 각 종류주식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로, 제332조 제1항 및 제339조 제1항 중 “주주총회 결의”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と、第三百三十二条第一項及び第三百三十九条第一項中「株主総会の決議」とあるのは「株主総会(第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又は第九十条第一項の種類創立総会若しくは第三百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三百二十九条第一項の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選任された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は、当該取締役の選任に係る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又は当該取締役の任期満了前に当該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株主が存在しなくなった場合にあっては、株主総会))の決議」と、第三百四十一条中「第三百九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三百九条第一項及び第三百二十四条」と、「株主総会」とあるのは「株主総会(第三百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三百二十九条第一項及び第三百三十九条第一項の種類株主総会を含む。))」と、第三百四十四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中「株主総会」とあるのは「第三百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三百二十九条第一項の種類株主総会」とする。

2 第八十八条第一項第九号に掲げる事項(監査役に関するものに限る。)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種類の株式を発行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第三百二十九条第一項、第三百三十九条第一項、第三百四十一条並びに第三百四十三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三百二十九条第一項中「株主総会」とあるのは「株主総会(監査役については、第八十八条第二項第九号に定める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に従い、各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と、第三百三十九条第一項中「株主総会」とあるのは「株主総会(第四十一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又は第九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一項の種類創立総会若しくは第三百四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三百二十九条第一項の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選任された監査役については、当該監査役の選任に係る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又は当該監査役の任期満了前に当該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株主が存在しなくなった場合にあっては、株主総会))」と、第三百四十一条中「第三百九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三百九条第一項及び第三百二十四条」と、「株主総会」とあるのは「株主総会(第三百四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三百二十九条第一項の種類株主総会を含む。))」と、第

는 “주주총회(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또는 제90조 제1항의 종류창립총회 혹은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329조 제1항의 종류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이외의 이사.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해서는 당해 이사선임에 관련된 종류주식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또는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종류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341조 중 “제309조 제1항”은 “제309조 제1항 및 제324조”로, “주주총회”는 “주주총회(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329조 제1항 및 제339조 제1항의 종류주주총회를 포함한다)”로, 제34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주주총회”는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329조 제1항의 종류주주총회”로 한다.

② 제800조 제1항 제9호의 사항(감사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정함이 어느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제329조 제1항, 제339조 제1항, 제341조 및 제343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관하여 제329조 제1항 중 “주주총회”는 “주주총회(감사에 관하여는 제800조 제2항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정관의 정함에 따라 각 종류주식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로, 제339조 제1항 중 “주주총회”는 “주주총회(제4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또는 제9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의 종류창립총회 또는 제347조 제2항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329조 제1항의 종류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에 관하여는 그 감사의 선임에 관한 종류주식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감사의 임기만료 전에 그 종류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없게 된 경우에는 주주총회))”로, 제341조 중 “제309조 제1항”은 “제309조 제1항 및 제324조”로, “주주총회”는 “주주총회(제347조 제2항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329조 제1항의 종류주주총회를 포함한다)”로, 제343조 제1항 및 제2항 중 “주주총회”는 “제347조 제2항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329조 제1항의 종류주주총회”로 본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三百四十三条第一項及び第二項中「株主総会」とあるのは「第三百四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三百二十九条第一項の種類株主総会」とする。

第4節 取締役

第348条 業務の執行

- 1 取締役は、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株式会社(取締役会設置会社を除く。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業務を執行する。
 - 2 取締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は、株式会社の業務は、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取締役の過半数をもって決定する。
 - 3 前項の場合には、取締役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決定を各取締役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支配人の選任及び解任
 - 二 支店の設置、移転及び廃止
 - 三 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各号(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掲げる事項
 - 四 取締役の職務の執行が法令及び定款に適合す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その他株式会社の業務並びに当該株式会社及びその子会社から成る企業集団の業務の適正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体制の整備
 - 五 第四百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基づく第四百二十三条第一項の責任の免除
- 4 大会社においては、取締役は、前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48条の2 業務の執行の社外取締役への委託

- 1 株式会社(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を除く。)が社外取締役を置いてい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と取締役との利益が相反する状況にあるとき、その他取締役が当該株式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ことにより株主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当該株式会社は、その都度、取締役の決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当該株式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ことを社外取締役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제4절 이사

제348조 업무의 집행

- ① 이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이사회설치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업무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된다.
- ③ 전항의 경우에는 이사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각 이사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2.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3. 제298조 제1항 각호(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항
 4. 이사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그 외 주식회사의 업무 및 당해 주식회사 및 그 자회사로 구성되는 기업집단의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체제의 정비
 5. 제426조 제1항에 따른 정관의 정함에 의한 제423조 제1항의 책임의 면제
- ④ 대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는 전항 제4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48조의2 업무집행의 사외이사에의 위탁

- ① 주식회사(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는 제외한다)가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경우 주식회사와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상황에 있는 때 또는 이사가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식회사는 그 때마다 이사의 결정(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으로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사외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2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と執行役との利益が相反する状況にあるとき、その他執行役が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ことにより株主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当該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は、その都度、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当該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ことを社外取締役等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二項の規定により委託された業務の執行は、第二条第十五号イに規定する株式会社の業務の執行に該当しないものとする。ただし、社外取締役が業務執行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執行役)の指揮命令により当該委託された業務を執行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349条 株式会社の代表

1 取締役は、株式会社を代表する。ただし、他に代表取締役その他株式会社を代表する者を定め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本文の取締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は、取締役は、各自、株式会社を代表する。

3 株式会社(取締役会設置会社を除く。)は、定款、定款の定めに基づく取締役の互選又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取締役の中から代表取締役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4 代表取締役は、株式会社の業務に関する一切の裁判上又は裁判外の行為をする権限を有する。

5 前項の権限に加えた制限は、善意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350条 代表者の行為についての損害賠償責任

株式会社は、代表取締役その他の代表者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第三者に加え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第351条 代表取締役に欠員を生じた場合の措置

1 代表取締役が欠けた場合又は定款で定めた代表取締役の員数が欠けた場合には、任期の満了又は辞任により退任した代表取締役は、新たに選定された代表取締役(次項の一時代表取締役の職務を行うべき者を含む。)が就任するまで、なお代表取締役としての権利義務を有する。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利害関係

②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상황에 있는 때 또는 집행임원이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는 그때마다 이사회 결의로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사외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전 2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집행은 제2조 제1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주식회사업무의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업무집행 이사(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지휘명령에 따라 위탁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9조 주식회사의 대표

- ①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한다. 다만, 달리 대표이사나 그 밖에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항 본문의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는 각자 주식회사를 대표한다.
- ③ 주식회사(이사회설치회사는 제외한다)는 정관, 정관의 정함에 의거한 이사의 호선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다.
- ④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 ⑤ 전항의 권한에 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50조 대표자의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나 그 밖의 대표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51조 대표이사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 ① 대표이사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는 새로 선정된 대표이사(다음 항의 일시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포함한다)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人の申立てにより、一時代表取締役の職務を行うべき者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3 裁判所は、前項の一時代表取締役の職務を行うべき者を選任した場合には、株式会社がその者に対して支払う報酬の額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第352条 取締役の職務を代行する者の権限

1 民事保全法（平成元年法律第九十一号）第五十六条に規定する仮処分命令により選任された取締役又は代表取締役の職務を代行する者は、仮処分命令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株式会社の常務に属しない行為をするには、裁判所の許可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違反して行った取締役又は代表取締役の職務を代行する者の行為は、無効とする。ただし、株式会社は、これをもって善意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353条 株式会社と取締役との間の訴えにおける会社の代表

第三百四十九条第四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式会社が取締役（取締役であった者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対し、又は取締役が株式会社に対して訴えを提起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は、当該訴えについて株式会社を代表する者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第354条 表見代表取締役

株式会社は、代表取締役以外の取締役に社長、副社長その他株式会社を代表する権限を有するものと認められる名称を付した場合には、当該取締役がした行為について、善意の第三者に対してその責任を負う。

第355条 忠実義務

取締役は、法令及び定款並びに株主総会の決議を遵守し、株式会社のため忠実にその職務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356条 競業及び利益相反取引の制限

1 取締役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取引につき重要な事実を開示し、そ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여 일시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전항의 일시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그 자에 대하여 지급할 보수액을 정할 수 있다.

제352조 이사의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민사보전법(1988년 법률 제91호) 제56조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전항에 위반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주식회사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53조 주식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의 대표

제34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가 이사(이사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는 그 소에 관하여 주식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제354조 표현대표이사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에 사장, 부사장 그 밖에 주식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이사의 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55조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결의를 준수하고 주식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56조 경업 및 이익 상반 거래의 제한

① 이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공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一 取締役が自己又は第三者のために株式会社の事業の部類に属する取引をしようとするとき。
 - 二 取締役が自己又は第三者のために株式会社と取引をしようとするとき。
 - 三 株式会社が取締役の債務を保証することその他取締役以外の者との間において株式会社と当該取締役との利益が相反する取引をしようとするとき。
- 2 民法第百八条の規定は、前項の承認を受けた同項第二号の取引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357条 取締役の報告義務

- 1 取締役は、株式会社に著しい損害を及ぼすおそれのある事実があることを発見したときは、直ちに、当該事実を株主(監査役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役)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監査役会設置会社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主(監査役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役会」とする。
- 3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おける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主(監査役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等委員会」とする。

第358条 業務の執行に関する検査役の選任

- 1 株式会社の業務の執行に関し、不正の行為又は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する重大な事実があることを疑うに足りる事由があるときは、次に掲げる株主は、当該株式会社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を調査させるため、裁判所に対し、検査役の選任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総株主(株主総会において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の全部につき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を除く。)の議決権の百分の三(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割合)以上の議決権を有する株主
 - 二 発行済株式(自己株式を除く。)の百分の三(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割合)以上の数の株式を有する株主
- 2 前項の申立てがあつた場合には、裁判所は、これを不適法として却下する場合を除き、検査役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裁判所は、前項の検査役を選任した場合には、株式会社が当該検査役に対して支払う報酬の額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1.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주식회사의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려는 경우
 2.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려는 경우
 3. 주식회사가 이사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그 밖에 이사 이외의 자와의 간에 주식회사와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거래를 하려는 경우
- ② 민법 제108조는 전항의 승인을 받은 동항 제2호의 거래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7조 이사의 보고 의무

- ① 이사는 주식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주(감사설치회사에서는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전항의 적용에 관하여 동항 중 '주주(감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는 '감사회'로 본다.
- ③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 제1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주주(감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는 '감사등위원회'로 한다.

제358조 업무집행에 관한 감사인의 선임

- ①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주주는 주식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감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1. 총주주(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제외한다)의 의결권의 100분의 3(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
 2.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상의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 ② 전항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전항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감사인에게 지급할 보수액을 정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4 第二項の検査役は、その職務を行う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株式会社の子会社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を調査することができる。

5 第二項の検査役は、必要な調査を行い、当該調査の結果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を裁判所に提供して報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裁判所は、前項の報告について、その内容を明瞭にし、又はその根拠を確認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第二項の検査役に対し、更に前項の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7 第二項の検査役は、第五項の報告をしたときは、株式会社及び検査役の選任の申立てをした株主に対し、同項の書面の写しを交付し、又は同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59条 裁判所による株主総会招集等の決定

1 裁判所は、前条第五項の報告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取締役に対し、次に掲げる措置の全部又は一部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

一 一定の期間内に株主総会を招集すること。

二 前条第五項の調査の結果を株主に通知すること。

2 裁判所が前項第一号に掲げる措置を命じた場合には、取締役は、前条第五項の報告の内容を同号の株主総会において開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取締役(監査役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及び監査役)は、前条第五項の報告の内容を調査し、その結果を第一項第一号の株主総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60条 株主による取締役の行為の差止め

1 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期間)前から引き続き株式を有する株主は、取締役が株式会社の目的の範囲外の行為その他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する行為をし、又はこれらの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行為によって当該株式会社に著しい損害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当該取締役に対し、当該行為をやめ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公開会社でない株式会社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期間)前から引き続き

④ 제2항의 검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검사인은 필요한 조사를 행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을 법원에 제공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전항의 보고에 관하여 내용을 명료하게 하거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검사인에게 추가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검사인이 제5항의 보고를 한 때에는 주식회사와 검사인 선임 청구를 한 주주에게 동항 서면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동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359조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등의 결정

① 법원은 전조 제5항의 보고가 있었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에 다음을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기간 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
2. 전조 제5항의 조사결과를 주주에게 통지할 것

② 법원이 전항 제1호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사는 전조 제5항의 보고의 내용을 동호의 주주총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이사(감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및 감사)는 전조 제5항의 보고의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 제1호의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0조 주주에 의한 이사행위의 유지

① 6개월(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는 이사가 주식회사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전항의 적용에 관하여 동항 중 “6개월(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부터 계속하여 주식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き株式を有する株主」とあるのは、「株主」とする。

3 監査役設置会社、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又は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おける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著しい損害」とあるのは、「回復することができない損害」とする。

第361条 取締役の報酬等

1 取締役の報酬、賞与その他の職務執行の対価として株式会社から受ける財産上の利益(以下この章において「報酬等」という。)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は、定款に当該事項を定めていないとき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定める。

- 一 報酬等のうち額が確定しているものについては、その額
- 二 報酬等のうち額が確定していないものについては、その具体的な算定方法
- 三 報酬等のうち当該株式会社の募集株式(第百九十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募集株式をいう。以下この項及び第四百九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は、当該募集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募集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の上限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 四 報酬等のうち当該株式会社の募集新株予約権(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募集新株予約権をいう。以下この項及び第四百九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は、当該募集新株予約権の数の上限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 五 報酬等のうち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ものと引換えにする払込みに充てるための金銭については、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事項
 - イ 当該株式会社の募集株式 取締役が引き受ける当該募集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募集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の上限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 ロ 当該株式会社の募集新株予約権 取締役が引き受ける当該募集新株予約権の数の上限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 六 報酬等のうち金銭でないもの(当該株式会社の募集株式及び募集新株予約権を除く。)については、その具体的な内容

2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前項各号に掲げる事項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とそれ以外の取締役とを区別して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監査等委員である各取締役の報酬等について定款の定め又は株主総会の決議がないときは、当該報酬等は、第一項の報酬等の範囲内において、監査等委

을 보유하는 주주”는 “주주”로 본다.

③ 감사설치회사,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또는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 제1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현저한 손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한다.

제361조 이사의 보수 등

① 이사의 보수, 상여 그 밖에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주식회사로부터 받는 재산상 이익(이하 이 장에서 ‘보수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1. 보수 등 중 가액이 확정되는 것의 경우에는 그 가액
2. 보수 등 중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
3. 보수 등 중 주식회사의 모집주식(제199조 제1항의 모집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9조 제3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그 모집주식 수(종류주식 발행회사에서는 모집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의 상한 및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보수 등 중 주식회사의 모집신주예약권(제238조 제1항의 모집신주예약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9조 제3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그 모집신주예약권수의 상한 및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5. 보수 등 중 다음 가목 또는 나목에 열거하는 것과 교환으로 하는 납입에 충당하기 위한 금전의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사항
 - 가. 주식회사의 모집주식: 이사가 인수하는 모집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모집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의 상한 및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나. 주식회사의 모집신주예약권: 이사가 인수하는 모집신주예약권수의 상한 및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6. 보수 등 중 금전이 아닌 것(주식회사의 모집주식 및 모집신주예약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

②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전항 각 호의 사항은 감사등위원인 이사와 그 이외의 이사를 구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등위원인 각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정관의 정함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때에는 보수 등은 제1항의 보수등의 범위내에서 감사등위원인 이사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員である取締役の協議によって定める。

4 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又はこれを改定する議案を株主総会に提出した取締役は、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事項を相当とする理由を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は、株主総会において、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報酬等について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6 監査等委員会が選定する監査等委員は、株主総会において、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以外の取締役の報酬等について監査等委員会の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7 次に掲げる株式会社の取締役会は、取締役（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報酬等の内容として定款又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当該定めに基づく取締役の個人別の報酬等の内容についての決定に関する方針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取締役の個人別の報酬等の内容が定款又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り定められてい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一 監査役会設置会社（公開会社であり、かつ、大会社であるものに限る。）であって、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その発行する株式について有価証券報告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

二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

第5節 取締役会

第1款 権限等

第362条 取締役会の権限等

取締役会は、すべての取締役で組織する。

2 取締役会は、次に掲げる職務を行う。

一 取締役会設置会社の業務執行の決定

二 取締役の職務の執行の監督

三 代表取締役の選定及び解職

3 取締役会は、取締役の中から代表取締役を選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의 협의로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개정하는 의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한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사항의 상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 감사등위원인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감사등위원회가 선정하는 감사등위원은 주주총회에서 감사등위원인 이사 이외의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감사등위원회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다음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이사(감사등위원인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수 등의 내용으로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함에 기한 이사 개인별 보수 등의 내용에 대한 결정에 관한 방침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사의 개인별 보수 등의 내용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사회설치회사(공개회사이면서 대회사에 한한다)로서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에 관해 유가증권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해야 하는 회사
2.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제5절 이사회

제1관 권한 등

제362조 이사회의 권한 등

- ① 이사회는 모든 이사로 조직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설치회사의 업무집행의 결정
 2. 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
 3. 대표이사의 선정 및 해임
- ③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4 取締役会は、次に掲げる事項その他の重要な業務執行の決定を取締役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ない。

一 重要な財産の処分及び譲受け

二 多額の借財

三 支配人その他の重要な使用人の選任及び解任

四 支店その他の重要な組織の設置、変更及び廃止

五 第六百七十六条第一号に掲げる事項その他の社債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に関する重要な事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六 取締役の職務の執行が法令及び定款に適合す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その他株式会社の業務並びに当該株式会社及びその子会社から成る企業集団の業務の適正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体制の整備

七 第四百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基づく第四百二十三条第一項の責任の免除

5 大会社である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取締役会は、前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63条 取締役会設置会社の取締役の権限

1 次に掲げる取締役は、取締役会設置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

一 代表取締役

二 代表取締役以外取締役であって、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取締役会設置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取締役として選定されたもの

2 前項各号に掲げる取締役は、三箇月に一回以上、自己の職務の執行の状況を取締役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64条 取締役会設置会社と取締役との間の訴えにおける会社の代表

第三百五十三条に規定する場合には、取締役会は、同条の規定による株主総会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同条の訴えについて取締役会設置会社を代表する者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④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 그 외에 중요한 업무집행의 결정을 이사에 위임할 수 없다.

1.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수
2. 대규모의 차입
3. 지배인 그 밖의 중요한 사용인의 선임 및 해임
4. 지점 그 밖에 중요한 조직의 설치, 변경 및 폐지
5. 제676조 제1호의 사항 그 외에 사채인수인의 모집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6. 이사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그 외에 주식회사의 업무 및 당해 주식회사 및 그 자회사로 구성되는 기업집단의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체제의 정비
7. 제426조 제1항에 따른 정관의 정함에 의한 제423조 제1항의 책임의 면제

⑤ 대회사로서 이사회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전항 제6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63조 이사회설치회사의 이사의 권한

① 다음의 이사는 이사회설치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1. 대표이사
2.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로써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설치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로 선정된 자

② 전항 각호의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기의 직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4조 이사회설치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있어서 회사의 대표

제353조의 경우에는 이사회는 동조에 의한 주주총회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조의 소에 관하여 이사회설치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정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第365条 競業及び取締役会設置会社との取引等の制限

- 1 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ける第三百五十六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条第一項中「株主総会」とあるのは、「取締役会」とする。
- 2 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第三百五十六条第一項各号の取引をした取締役は、当該取引後、遅滞なく、当該取引についての重要な事実を取締役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款 運営

第366条 招集権者

- 1 取締役会は、各取締役が招集する。ただし、取締役会を招集する取締役を定款又は取締役会で定めたときは、その取締役が招集する。
- 2 前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には、同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定められた取締役(以下この章において「招集権者」という。)以外の取締役は、招集権者に対し、取締役会の目的である事項を示して、取締役会の招集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3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日から五日以内に、その請求があった日から二週間以内の日を取締役会の日とする取締役会の招集の通知が発せられない場合には、その請求をした取締役は、取締役会を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

第367条 株主による招集の請求

- 1 取締役会設置会社(監査役設置会社、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及び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を除く。)の株主は、取締役が取締役会設置会社の目的の範囲外の行為その他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する行為をし、又はこれらの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取締役会の招集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は、取締役(前条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招集権者)に対し、取締役会の目的である事項を示し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3 前条第三項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 4 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行った株主は、当該請求に基づき招集され、又は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前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招集した取締役会に出席し、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제365조 (경업 및 이사회설치회사와의 거래 등의 제한)

- ①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 제356조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조 제1항 중 “주주총회”는 “이사회”로 본다.
- ②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제356조 제1항 각호의 거래를 한 이사는 그 거래 후 지체없이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관 운영

제366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를 정관 또는 이사회로 정한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동항 단서에 의하여 정해진 이사(이하 이 장에서 “소집권자”라고 한다)이외의 이사는 소집권자에게 이사회의 목적사항을 알리고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전항에 의한 청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청구일로부터 2주간 이내의 날을 이사회일로 하는 이사회 소집통지가 발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67조 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 ① 이사회설치회사(감사설치회사,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및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는 제외한다)의 주주는 이사가 이사회 설치회사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 기타 법령 혹은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의한 청구는 이사(전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이사회의 목적사항을 알리고 하여야 한다.
- ③ 전조 제3항은 제1항에 의한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의한 청구를 한 주주는 그 청구에 의하여 소집되거나 전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3항에 의하여 소집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第368条 招集手続

- 1 取締役会を招集する者は、取締役会の日の一週間(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 前までに、各取締役(監査役設置会社にあつては、各取締役及び各監査役) に対してその通知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取締役会は、取締役(監査役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及び監査役) の全員の同意があるときは、招集の手続を経ることなく開催することができる。

第369条 取締役会の決議

- 1 取締役会の決議は、議決に加わることができる取締役の過半数(これを上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 が出席し、その過半数(これを上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 をもって行う。
- 2 前項の決議について特別の利害関係を有する取締役は、議決に加わることができない。
- 3 取締役会の議事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議事録を作成し、議事録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出席した取締役及び監査役は、これに署名し、又は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前項の議事録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署名又は記名押印に代わる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 5 取締役会の決議に参加した取締役であつて第三項の議事録に異議をとどめないものは、その決議に賛成したものと推定する。

第370条 取締役会の決議の省略

取締役会設置会社は、取締役が取締役会の決議の目的である事項について提案を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提案につき取締役(当該事項について議決に加わ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る。) の全員が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より同意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監査役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役が当該提案について異議を述べたときを除く。) は、当該提案を可決する旨の取締役会の決議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제368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한 자는 이사회일의 1주간(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까지 각 이사(감사설치회사는 각 이사 및 각 감사)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이사(감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개최할 수 있다.

제369조 이사회 결의

- ① 이사회 결의는 의결할 수 있는 이사의 과반수(이보다 높은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는 그 비율 이상)가 출석하고 그 과반수(이보다 높은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로써 한다.
- ② 전항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
- ③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이 서면으로 작성된 때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의사록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경우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제3항의 의사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70조 이사회 결의의 생략

이사회설치회사는 이사가 이사회결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제안을 한 경우 그 제안에 관하여 이사(당해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의 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하여 동의를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감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가 당해 제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제안을 가결하는 뜻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뜻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第371条 議事録等

- 1 取締役会設置会社は、取締役会の日(前条の規定により取締役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日を含む。)から十年間、第三百六十九条第三項の議事録又は前条の意思表示を記載し、若しくは記録した書面若しくは電磁的記録(以下この条において「議事録等」という。)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 2 株主は、そ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株式会社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前項の議事録等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 二 前項の議事録等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 3 監査役設置会社、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又は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式会社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とあるの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とする。
- 4 取締役会設置会社の債権者は、役員又は執行役の責任を追及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当該取締役会設置会社の議事録等について第二項各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 5 前項の規定は、取締役会設置会社の親会社社員がそ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について準用する。
- 6 裁判所は、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二項各号に掲げる請求又は第四項(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請求に係る閲覧又は謄写をすることにより、当該取締役会設置会社又はその親会社若しくは子会社に著しい損害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二項の許可又は第四項の許可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372条 取締役会への報告の省略

- 1 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又は会計監査人が取締役(監査役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及び監査役)の全員に対して取締役会に報告すべき事項を通知したときは、当該事項を取締役会へ報告することを要しない。
- 2 前項の規定は、第三百六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報告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제371조 의사록 등

- ① 이사회설치회사는 이사회일(전조에 의하여 이사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로부터 10년간 제369조제3항의 의사록 또는 전조의 의사 표시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이하 이 조에서 “의사록 등”이라고 한다)을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주주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식회사의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전항의 의사록 등이 서면으로 작성된 때에는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전항의 의사록 등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때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 ③ 감사설치회사,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또는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 전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회사의 영업 시간 내에는 언제든지”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로 한다.
- ④ 이사회설치회사의 채권자는 임원 또는 집행임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설치회사의 의사록 등에 관하여 제2항 각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전항은 이사회설치회사의 모회사 사원이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준용한다.
- ⑥ 법원은 제3항에서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2항 각호의 청구 또는 제4항(전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청구에 관계된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그 이사회설치회사 또는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서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2항의 허가 또는 제4항의 허가를 할 수 없다.

제372조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 생략

- ① 이사, 회계참여, 감사 또는 회계감사인인 이사(감사설치회사에서는 이사 및 감사) 전원에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통지한 때에는 그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 ② 전항은 제363조 제2항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3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ついての前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一項中「監査役又は会計監査人」とあるのは「会計監査人又は執行役」と、「取締役(監査役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及び監査役)」とあるのは「取締役」と、前項中「第三百六十三条第二項」とあるのは「第四百七条第四項」とする。

第373条 特別取締役による取締役会の決議

1 第三百六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取締役会設置会社(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を除く。)が次に掲げる要件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場合(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第三百九十九条の十三第五項に規定する場合又は同条第六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く。)には、取締役会は、第三百六十二条第四項第一号及び第二号又は第三百九十九条の十三第四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取締役会の決議については、あらかじめ選定した三人以上の取締役(以下この章において「特別取締役」という。)のうち、議決に加わることができるものの過半数(これを上回る割合を取締役会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割合以上)が出席し、その過半数(これを上回る割合を取締役会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割合以上)をもって行うことができる旨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一 取締役の数が六人以上であること。

二 取締役のうち一人以上が社外取締役であること。

2 前項の規定による特別取締役による議決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特別取締役以外の取締役は、第三百六十二条第四項第一号及び第二号又は第三百九十九条の十三第四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をする取締役会に出席することを要しない。この場合における第三百六十六条第一項本文及び第三百六十八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三百六十六条第一項本文中「各取締役」とあるのは「各特別取締役(第三百七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特別取締役をいう。第三百六十八条において同じ。)」と、第三百六十八条第一項中「定款」とあるのは「取締役会」と、「各取締役」とあるのは「各特別取締役」と、同条第二項中「取締役」とあるのは「特別取締役」と、「取締役及び」とあるのは「特別取締役及び」とする。

3 特別取締役の互選によって定められた者は、前項の取締役会の決議後、遅滞なく、当該決議の内容を特別取締役以外の取締役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三百六十六条(第一項本文を除く。)、第三百六十七条、第三百六十九条第

③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에 대한 전 2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1항 중 “감사 또는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인 또는 집행임원”으로, “이사(감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및 감사)”는 “이사”로, 전항 중 “제363조 제2항”은 “제417조 제4항”으로 한다.

제373조 특별이사에 의한 이사회 결의

① 제36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설치회사(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는 제외한다)가 다음 요건의 어느 것에나 해당하는 경우(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제399조의13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또는 동조 제6항에 의한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이사회는 제36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399조의13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관해서는 미리 선정한 3인 이상의 이사(이하 이 장에서 “특별이사”라 한다)중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자의 과반수(이것을 상회하는 비율을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가 출석하고 그 과반수(이것을 상회하는 비율을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율 이상)로써 할 수 있는 취지를 정할 수 있다.

1. 이사의 수가 6인 이상인 경우
2. 이사 중 1인 이상이 사외이사인 경우

② 전항의 특별이사에 의한 결의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이사 이외의 이사는 제36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399조의13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제366조 제1항 본문 및 제368조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366조 제1항의 본문 중 “각 이사”는 “각 특별이사(제373조 제1항의 특별이사를 말한다. 제368조에서 같다)”로, 제368조 제1항 중 “정관”은 “이사회”로, “각 이사”는 “각 특별이사”로, 동조 제2항 중 “이사”는 “특별이사”로, “이사 및”은 “특별이사 및”으로 한다.

③ 특별이사의 호선에 의하여 정해진 자는 전항의 이사회 결의 후 지체없이 당해 결의의 내용을 특별이사 이외의 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66조(제1항 본문은 제외하다), 제367조, 제369조 제1항, 제370조 및 제399조의14의 규정은 제2항의 이사회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一項、第三百七十条及び第三百九十九条の十四の規定は、第二項の取締役会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6節 会計参与

第374条 会計参与の権限

- 1 会計参与は、取締役と共同して、計算書類(第四百三十五条第二項に規定する計算書類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及びその附属明細書、臨時計算書類(第四百四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臨時計算書類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並びに連結計算書類(第四百四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連結計算書類をいう。第三百九十六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を作成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会計参与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会計参与報告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会計参与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ものの閲覧及び謄写をし、又は取締役及び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に対して会計に関する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一 会計帳簿又はこれに関する資料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
 - 二 会計帳簿又はこれに関する資料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
- 3 会計参与は、その職務を行う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会計参与設置会社の子会社に対して会計に関する報告を求め、又は会計参与設置会社若しくはその子会社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の調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 4 前項の子会社は、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同項の報告又は調査を拒むことができる。
- 5 会計参与は、その職務を行うに当たっては、第三百三十三条第三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者を使用してはならない。
- 6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おける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一項中「取締役」とあるのは「執行役」と、第二項中「取締役及び」とあるのは「執行役及び取締役並びに」とする。

第375条 会計参与の報告義務

- 1 会計参与は、その職務を行うに際して取締役の職務の執行に関し不正の行為

제6절 회계참여

제374조 회계참여의 권한

① 회계참여는 이사와 공동으로 계산서류(제435조 제2항의 계산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부속명세서, 임시계산서류(제441조 제1항의 임시계산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연결계산서류(제444조 제1항의 연결계산서류를 말한다. 제396조 제1항에서 같다)를 작성한다. 이 경우에 회계참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참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계참여는 언제든지 다음의 사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하거나 이사 및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에게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회계장부 또는 이에 관한 자료가 서면으로 작성된 때에는 그 서면
2. 회계장부 또는 이에 관한 자료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때에는 그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

③ 회계참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참여설치회사의 자회사에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계참여설치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항의 보고 또는 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회계참여는 직무수행시 제333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⑥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1항 중 “이사”는 “집행임원”으로, 제2항 중 “이사 및”은 “집행임원 및 이사 및”으로 한다.

제375조 회계참여의 보고의무

① 회계참여는 직무수행시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법령 또는 정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又は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する重大な事実があることを発見したときは、遅滞なく、これを株主(監査役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役)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監査役会設置会社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主(監査役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役会」とする。

3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おける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主(監査役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等委員会」とする。

4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おける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取締役」とあるのは「執行役又は取締役」と、「株主(監査役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委員会」とする。

第376条 取締役会への出席

取締役会設置会社の会計参与(会計参与が監査法人又は税理士法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職務を行うべき社員。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は、第四百三十六条第三項、第四百四十一条第三項又は第四百四十四条第五項の承認をする取締役会に出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会計参与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意見を述べなければならない。

2 会計参与設置会社において、前項の取締役会を招集する者は、当該取締役会の日の一週間(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期間)前までに、各会計参与に対してその通知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会計参与設置会社において、第三百六十八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一項の取締役会を招集の手続を経ることなく開催するときは、会計参与の全員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77条 株主総会における意見の陳述

第三百七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書類の作成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会計参与が取締役と意見を異にするときは、会計参与(会計参与が監査法人又は税理士法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職務を行うべき社員)は、株主総会において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2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取締役」とあるのは、「執行役」とする。

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주(감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전항의 적용에 관하여 동항 중 “주주(감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는 “감사회”로 본다.

③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 제1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주주(감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는 “감사등위원회”로 한다.

④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 제1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이사”는 “집행임원 또는 이사”로, “주주(감사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한다.

제376조 이사회에 대한 출석

① 이사회설치회사의 회계참여(회계참여가 감사법인 또는 세무사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사원.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436조 제3항, 제441조 제3항 또는 제444조 제5항의 승인을 하는 이사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회계참여는 필요한 때에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회계참여설치회사에서 전항의 이사회를 소집하는 자는 이사회일의 1주간(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까지 각 회계참여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회계참여설치회사에서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제1항의 이사회를 소집절차 없이 개최하는 때에는 회계참여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77조 주주총회에서 의견 진술

① 제374조 제1항의 서류작성사항에 관하여 회계참여가 이사와 의견이 다른 때에는 회계참여(회계참여가 감사법인 또는 세무사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사원)는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 전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이사”는 “집행임원”으로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第378条 会計参与による計算書類等の備置き等

会計参与は、次の各号に掲げるものを、当該各号に定める期間、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会計参与が定めた場所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各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及びその附属明細書並びに会計参与報告 定時株主総会の日の一週間(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二週間) 前の日(第三百十九条第一項の場合にあつては、同項の提案があつた日) から五年間

二 臨時計算書類及び会計参与報告 臨時計算書類を作成した日から五年間

2 会計参与設置会社の株主及び債権者は、会計参与設置会社の営業時間内(会計参与が請求に応ずることが困難な場合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を除く。)は、いつでも、会計参与に対し、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会計参与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前項各号に掲げるもの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閲覧の請求

二 前号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三 前項各号に掲げるもの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の請求

四 前号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つて会計参与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3 会計参与設置会社の親会社社員は、そ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当該会計参与設置会社の第一項各号に掲げるものについて前項各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同項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会計参与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379条 会計参与の報酬等

1 会計参与の報酬等は、定款にその額を定めていないとき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定める。

2 会計参与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おいて、各会計参与の報酬等について定款の定め又は株主総会の決議がないときは、当該報酬等は、前項の報酬等の範囲内において、会計参与の協議によって定める。

제378조 회계참여에 의한 계산서류 등의 비치 등

① 회계참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참여가 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각 사업 연도의 계산서류, 그 부속 명세서, 회계참여보고서 : 정기주주총회의 1주간(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2주간)전(제319조 제1항의 경우에는 동향의 제안이 있었던 날)부터 5년간

2. 임시계산서류 및 회계참여보고서 : 임시계산서류는 작성한 날로부터 5년간

② 회계참여설치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회계참여설치회사의 영업시간내에 (회계참여가 청구에 응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언제든지 회계참여에 대하여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회계참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전항 각호의 사항이 서면으로 작성된 때에는 서면의 열람의 청구

2. 전호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의 청구

3. 전항 각호의 사항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때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의 열람의 청구

4. 전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회계참여가 정한 것에 의한 제공의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의 청구

③ 회계참여설치회사의 모회사 사원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계참여설치회사의 제1항 각호에 관하여 전항 각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동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회계참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9조 회계참여의 보수등

① 회계참여의 보수등은 정관으로 그 가액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회계참여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각 회계참여의 보수등에 관하여 정관의 정함이나 주주총회결의가 없는 때에는 그 보수등은 전항의 보수등의 범위내에서 회계참여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3 会計参与(会計参与が監査法人又は税理士法人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職務を行うべき社員) は、株主総会において、会計参与の報酬等について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第380条 費用等の請求

会計参与がその職務の執行について会計参与設置会社に対して次に掲げる請求をしたときは、当該会計参与設置会社は、当該請求に係る費用又は債務が当該会計参与の職務の執行に必要なことを証明した場合を除き、これ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

- 一 費用の前払の請求
- 二 支出した費用及び支出の日以後におけるその利息の償還の請求
- 三 負担した債務の債権者に対する弁済(当該債務が弁済期にない場合にあっては、相当の担保の提供) の請求

第7節 監査役

第381条 監査役の権限

- 1 監査役は、取締役(会計参与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及び会計参与) の職務の執行を監査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監査役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監査報告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監査役は、いつでも、取締役及び会計参与並びに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に対して事業の報告を求め、又は監査役設置会社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の調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 3 監査役は、その職務を行う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監査役設置会社の子会社に対して事業の報告を求め、又はその子会社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の調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 4 前項の子会社は、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同項の報告又は調査を拒むことができる。

第382条 取締役への報告義務

監査役は、取締役が不正の行為をし、若しくは当該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する事実若しくは著しく不当な事実があ

③ 회계참여(회계참여가 감사법인 또는 세무사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사원)는 주주총회에 회계참여의 보수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80조 비용 등의 청구

회계참여가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회계참여설치회사에 다음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회계참여설치회사는 청구와 관련된 비용 또는 채무가 회계참여의 직무집행에 필요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비용의 선불의 청구
2. 지출한 비용 및 지출일 이후의 이자의 상환 청구
3. 부담한 채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채무가 변제기가 아닌 경우에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의 청구

제7절 감사

제381조 감사의 권한

① 감사는 이사(회계참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및 회계참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이 경우에 감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 회계참여,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에게 사업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감사설치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설치회사의 자회사에 사업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항의 보고 또는 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제382조 이사에 대한 보고의무

감사는 이사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당해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사실 또는 현저하게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ると認める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取締役(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83条 取締役会への出席義務等

1 監査役は、取締役会に出席し、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意見を述べ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監査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おいて、第三百七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別取締役による議決の定めがあるときは、監査役の互選によって、監査役の中から特に同条第二項の取締役会に出席する監査役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2 監査役は、前条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取締役(第三百六十六条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にあつては、招集権者)に対し、取締役会の招集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つた日から五日以内に、その請求があつた日から二週間以内の日を取締役会の日とする取締役会の招集の通知が発せられない場合は、その請求をした監査役は、取締役会を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二項の規定は、第三百七十三条第二項の取締役会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384条 株主総会に対する報告義務

監査役は、取締役が株主総会に提出しようとする議案、書類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調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し、又は著しく不当な事項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調査の結果を株主総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85条 監査役による取締役の行為の差止め

1 監査役は、取締役が監査役設置会社の目的の範囲外の行為その他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する行為をし、又はこれらの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行為によって当該監査役設置会社に著しい損害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当該取締役に対し、当該行為をやめ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裁判所が仮処分をもって同項の取締役に対し、その行為をやめることを命ずるときは、担保を立てさせないものとする。

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이사(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3조 이사회에의 출석의무 등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제37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이사에 의한 의결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감사의 호선에 의하여 감사 중에서 특별히 동조 제2항의 이사회에 출석하는 감사를 정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전조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제366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일로부터 2주이내의 날을 이사회일로 하는 이사회의 소집통지가 발송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한 감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전2항은 제373조 제2항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4조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하려는 의안, 서류 그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5조 감사에 의한 이사의 행위 유지

① 감사는 이사가 감사설치회사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행위에 의하여 감사설치회사에 현저하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사에게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이 가처분으로서 이사에게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第386条 監査役設置会社と取締役との間の訴えにおける会社の代表等

1 第三百四十九条第四項、第三百五十三条及び第三百六十四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の訴えについては、監査役が監査役設置会社を代表する。

一 監査役設置会社が取締役(取締役であった者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対し、又は取締役が監査役設置会社に対して訴えを提起する場合

二 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第八百四十九条第二項第一号に規定する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をいう。次項第三号において同じ。)である監査役設置会社がその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をいう。次項第三号において同じ。)の取締役、執行役(執行役であった者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又は清算人(清算人であった者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責任(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の効力が生じた時までにはその原因となった事実が生じたものに限る。)を追及する訴えを提起する場合

三 最終完全親会社等(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最終完全親会社等をいう。次項第四号において同じ。)である監査役設置会社がその完全子会社等(同条第二項第二号に規定する完全子会社等をいい、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当該完全子会社等とみなされるものを含む。次項第四号において同じ。)である株式会社の取締役、執行役又は清算人に対して特定責任追及の訴え(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特定責任追及の訴えをいう。)を提起する場合

2 第三百四十九条第四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に掲げる場合には、監査役が監査役設置会社を代表する。

一 監査役設置会社が第八百四十七条第一項、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三項(同条第四項及び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取締役の責任を追及する訴えの提起の請求に限る。)を受ける場合

二 監査役設置会社が第八百四十九条第四項の訴訟告知(取締役の責任を追及する訴えに係るものに限る。)並びに第八百五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及び催告(取締役の責任を追及する訴えに係る訴訟における和解に関するものに限る。)を受ける場合

三 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である監査役設置会社が第八百四十七条第一項の

제386조 감사설치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의 대표 등

① 제349조 제4항, 제353조 및 제36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당해 각 호의 소에 대해서는 감사가 감사설치회사를 대표한다.

1. 감사설치회사가 이사(이사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또는 이사가 감사설치회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2.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제849조 제2항 제1호의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를 말한다. 다음 항 제3 호에서 같다)인 감사설치회사가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제847조의2 제1항의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를 말한다. 다음 항 제3 호에서도 같다)의 이사, 집행임원(집행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청산인(청산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책임(제847조의2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때까지 그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것에 한한다)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3. 최종완전모회사등(제847조의3 제1항의 최종완전모회사등을 말한다. 다음 항 제4호에서 같다)인 감사설치회사가 완전자회사등(동조 제2항 제2호의 완전자회사등을 말하며,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완전자회사등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 항 제4호에서 같다)인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청산인에 대해서 특정책임 추궁의 소(동조 제1항의 특정책임추궁의 소를 말한다)를 제기하는 경우

② 제34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감사가 감사설치회사를 대표한다.

1. 감사설치회사가 제847조 제1항, 제847조의2 제1항 혹은 제3항(동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47조의3 제1항의 청구(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제기의 청구에 한한다)를 받는 경우
2. 감사설치회사가 제849조 제4항의 소송 고지(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 및 제850조 제2항의 통지 및 최고(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화해에 관한 것에 한한다)를 받는 경우
3.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인 감사설치회사가 제847조 제1항의 청구(전항 제2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規定による請求(前項第二号に規定する訴えの提起の請求に限る。)をする場合又は第八百四十九条第六項の規定による通知(その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の取締役、執行役又は清算人の責任を追及する訴えに係るものに限る。)を受ける場合

四 最終完全親会社等である監査役設置会社が第八百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前項第三号に規定する特定責任追及の訴えの提起の請求に限る。)をする場合又は第八百四十九条第七項の規定による通知(その完全子会社等である株式会社の取締役、執行役又は清算人の責任を追及する訴えに係るものに限る。)を受ける場合

第387条 監査役の報酬等

- 1 監査役の報酬等は、定款にその額を定めていないとき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定める。
- 2 監査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おいて、各監査役の報酬等について定款の定め又は株主総会の決議がないときは、当該報酬等は、前項の報酬等の範囲内において、監査役の協議によって定める。
- 3 監査役は、株主総会において、監査役の報酬等について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第388条 費用等の請求

監査役がその職務の執行について監査役設置会社(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を含む。)に対して次に掲げる請求をしたときは、当該監査役設置会社は、当該請求に係る費用又は債務が当該監査役の職務の執行に必要でないことを証明した場合を除き、これ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

- 一 費用の前払の請求
- 二 支出した費用及び支出の日以後におけるその利息の償還の請求
- 三 負担した債務の債権者に対する弁済(当該債務が弁済期にない場合にあっては、相当の担保の提供)の請求

호에서 규정하는 소의 제기 청구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 또는 제849조 제6항의 통지(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청산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를 받는 경우

4. 최종완전모회사등인 감사설치회사가 제847조 제1항의 청구(전항 제3호의 특정 책임추궁소의 제기 청구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 또는 제849조 제7항의 통지(완전자회사등인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청산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를 받는 경우

제387조 감사의 보수등

- ① 감사의 보수등은 정관으로 가액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 ②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감사의 보수등에 관하여 정관의 정함 또는 주주총회결의가 없는 때에는 보수등은 전항의 보수등의 범위내에서 감사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③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보수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88조 비용 등의 청구

감사가 그 직무의 집행에 관하여 감사설치회사(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는 뜻을 정관으로 정한 주식회사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청구를 한 때에는 감사설치회사는 청구에 관한 비용 또는 채무가 감사의 직무집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비용의 선불의 청구
2. 지출한 비용 및 지출일 이후의 이자의 상환 청구
3. 부담한 채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당해 채무가 변제기가 아닌 경우에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의 청구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第389条 定款の定めによる監査範囲の限定

- 1 公開会社でない株式会社(監査役会設置会社及び会計監査人設置会社を除く。)は、第三百八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の監査役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監査報告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前項の監査役は、取締役が株主総会に提出しようとする会計に関する議案、書類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調査し、その調査の結果を株主総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第二項の監査役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ものの閲覧及び謄写をし、又は取締役及び会計参与並びに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に対して会計に関する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一 会計帳簿又はこれに関する資料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
 - 二 会計帳簿又はこれに関する資料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
- 5 第二項の監査役は、その職務を行う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株式会社の子会社に対して会計に関する報告を求め、又は株式会社若しくはその子会社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の調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 6 前項の子会社は、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同項の規定による報告又は調査を拒むことができる。
- 7 第三百八十一条から第三百八十六条まで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8節 監査役会

第1款 権限等

第390条

- 1 監査役会は、すべての監査役で組織する。

제389조 정관의 정함에 의한 감사 범위의 한정

- ①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감사회설치회사 및 회계감사인설치회사는 제외한다)는 제38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는 뜻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의한 정관을 정한 주식회사의 감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하려는 회계에 관한 의안, 서류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감사는 언제든지 다음의 사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하거나 이사, 회계 참여,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에게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회계장부 또는 이에 관한 자료가 서면으로 작성된 때에는 그 서면

2. 회계장부 또는 이에 관한 자료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때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

- ⑤ 제2항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식회사의 자회사에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전항의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항에 의한 보고 또는 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 ⑦ 제381조 내지 제386조는 제1항에 따라 정관을 정한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절 감사회

제1관 권한 등

제390조

- ① 감사회는 모든 감사로 조직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2 監査役会は、次に掲げる職務を行う。ただし、第三号の決定は、監査役の権限の行使を妨げることはできない。

一 監査報告の作成

二 常勤の監査役の選定及び解職

三 監査の方針、監査役会設置会社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の調査の方法その他の監査役の職務の執行に関する事項の決定

3 監査役会は、監査役の中から常勤の監査役を選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監査役は、監査役会の求めがあるときは、いつでもその職務の執行の状況を監査役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款 運営

第391条 招集権者

監査役会は、各監査役が招集する。

第392条 招集手続

1 監査役会を招集するには、監査役は、監査役会の日の一週間(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 前までに、各監査役に対してその通知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監査役会は、監査役の全員の同意があるときは、招集の手続を経ることなく開催することができる。

第393条 監査役会の決議

1 監査役会の決議は、監査役の過半数をもって行う。

2 監査役会の議事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議事録を作成し、議事録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出席した監査役は、これに署名し、又は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議事録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署名又は記名押印に代わる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4 監査役会の決議に参加した監査役であって第二項の議事録に異議をとどめな

② 감사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호의 결정은 감사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1. 감사보고서의 작성
 2. 상근감사의 선정 및 해임
 3. 감사의 방침, 감사회설치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의 방법 그 밖에 감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의 결정
- ③ 감사회는 감사 중에서 상근감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 직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관 운영

제391조 소집권자

감사회는 각 감사가 소집한다.

제392조 소집절차

- ① 감사회를 소집하려는 감사는 감사회일의 1주간(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까지 각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감사회는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개최할 수 있다.

제393조 감사회의 결의

- ① 감사회의 결의는 감사의 과반수로써 한다.
- ② 감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이 서면으로 작성된 때에는 출석한 감사는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의사록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경우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감사회의 결의에 참가한 감사로서 제2항의 의사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いものは、その決議に賛成したものと推定する。

第394条 議事録

- 1 監査役会設置会社は、監査役会の日から十年間、前条第二項の議事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 2 監査役会設置会社の株主は、そ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前項の議事録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 二 前項の議事録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 3 前項の規定は、監査役会設置会社の債権者が役員の責任を追及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及び親会社社員がそ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について準用する。
- 4 裁判所は、第二項(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請求に係る閲覧又は謄写をすることにより、当該監査役会設置会社又はその親会社若しくは子会社に著しい損害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第二項の許可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395条 監査役会への報告の省略

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又は会計監査人が監査役の全員に対して監査役会に報告すべき事項を通知したときは、当該事項を監査役会へ報告することを要しない。

第9節 会計監査人

第396条 会計監査人の権限等

- 1 会計監査人は、次章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株式会社の計算書類及びその附属明細書、臨時計算書類並びに連結計算書類を監査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会計監査人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会計監査報告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한 감사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94조 의결권의 수

- ① 감사회설치회사는 감사회일로부터 10년간 전조 제2항의 의사록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감사회설치회사의 주주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전항의 의사록이 서면으로 작성된 때에는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전항의 의사록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때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 ③ 전항은 감사회설치회사의 채권자가 임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모회사 사원이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④ 법원은 제2항(전항의 경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감사회설치회사,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허가를 할 수 없다.

제395조 감사회에 대한 보고의 생략

이사, 회계참여, 감사 또는 회계감사인인 감사 전원에게 감사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통지한 때에는 그 사항을 감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9절 회계감사인

제396조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

- ① 회계감사인은 다음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계산서류, 그 부속 명세서, 임시계산서류 및 연결계산서류를 감사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인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2 会計監査人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ものの閲覧及び謄写をし、又は取締役及び会計参与並びに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に対し、会計に関する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一 会計帳簿又はこれに関する資料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

二 会計帳簿又はこれに関する資料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

3 会計監査人は、その職務を行う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会計監査人設置会社の子会社に対して会計に関する報告を求め、又は会計監査人設置会社若しくはその子会社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の調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子会社は、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同項の報告又は調査を拒むことができる。

5 会計監査人は、その職務を行うに当たって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を使用してはならない。

一 第三百三十七条第三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者

二 会計監査人設置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若しくは執行役又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である者

三 会計監査人設置会社又はその子会社から公認会計士又は監査法人の業務以外の業務により継続的な報酬を受けている者

6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おける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取締役」とあるのは、「執行役、取締役」とする。

第397条 監査役に対する報告

1 会計監査人は、その職務を行うに際して取締役の職務の執行に関し不正の行為又は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する重大な事実があることを発見したときは、遅滞なく、これを監査役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監査役は、その職務を行う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会計監査人に対し、その監査に関する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監査役会設置会社における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役会」とする。

② 회계감사인은 언제든지 다음의 사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하거나 이사, 회계참여,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에게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회계장부 또는 이에 관한 자료가 서면으로 작성된 때에는 그 서면
2. 회계장부 또는 이에 관한 자료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때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

③ 회계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의 자회사에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계감사인설치회사 또는 그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항의 보고 또는 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회계감사인은 직무수행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1. 제337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2. 회계감사인설치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이사, 회계참여, 감사, 집행임원 또는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3. 회계감사인설치회사 또는 그 자회사로부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업무 이외의 업무에 의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받고 있는 자

⑥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 제2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이사”는 “집행임원, 이사”로 한다.

제397조 감사에 대한 보고

① 회계감사인은 직무수행시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감사인에게 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회설치회사의 경우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중 “감사”는 “감사회”로 본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4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おける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一項中「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等委員会」と、第二項中「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等委員会が選定した監査等委員」とする。

5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おける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一項中「取締役」とあるのは「執行役又は取締役」と、「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委員会」と、第二項中「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委員会が選定した監査委員会の委員」とする。

第398条 定時株主総会における会計監査人の意見の陳述

1 第三百九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書類が法令又は定款に適合するかどうかについて会計監査人が監査役と意見を異にするときは、会計監査人(会計監査人が監査法人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職務を行うべき社員。次項において同じ。)は、定時株主総会に出席して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2 定時株主総会において会計監査人の出席を求める決議があったときは、会計監査人は、定時株主総会に出席して意見を述べなければならない。

3 監査役会設置会社における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役会又は監査役」とする。

4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おける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等委員会又は監査等委員」とする。

5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おける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監査役」とあるのは、「監査委員会又はその委員」とする。

第399条 会計監査人の報酬等の決定に関する監査役との関与

1 取締役は、会計監査人又は一時的会計監査人の職務を行うべき者の報酬等を定める場合には、監査役(監査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過半数)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2 監査役会設置会社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監査役(監査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過半数)」とあるのは、「監査役会」とする。

3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おける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監査役(監査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過半数)」とあるのは、「監査等委員

- ④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1항 중 “감사”는 “감사등위원회”로, 제2항 중 “감사”는 “감사등위원회가 선정한 감사등위원”으로 한다.
- ⑤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1항 중 “이사”는 “집행임원 또는 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2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제398조 정기주주총회에서 회계감사인의 의견 진술

- ① 제396조 제1항의 서류가 법령 또는 정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회계감사인 이 감사와 의견을 달리하는 때에는 회계감사인(회계감사인이 감사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사원. 다음항에서 같다)은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정기주주총회에서 회계감사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결의가 있는 때에는 회계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③ 감사회설치회사의 경우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중 “감사”는 “감사회 또는 감사”로 본다.
- ④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에의 경우 제1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감사”는 “감사등위원회 또는 감사등위원”으로 한다.
- ⑤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 제1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한다.

제399조 회계감사인의 보수등의 결정에 관한 감사의 관여

- ① 이사는 회계감사인 또는 일시회계감사인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보수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감사회설치회사의 경우 전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중 “감사(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그 과반수)”는 “감사회”로 본다.
- ③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 제1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감사(감사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는 “감사등위원회”로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会」とする。

4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おける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監査役（監査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過半数）」とあるのは、「監査委員会」とする。

第9節の2 監査等委員会

第1款 権限等

第399条の2 監査等委員会の権限等

- 1 監査等委員会は、全ての監査等委員で組織する。
- 2 監査等委員は、取締役でなければならない。
- 3 監査等委員会は、次に掲げる職務を行う。
 - 一 取締役(会計参与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及び会計参与)の職務の執行の監査及び監査報告の作成
 - 二 株主総会に提出する会計監査人の選任及び解任並びに会計監査人を再任しないことに関する議案の内容の決定
 - 三 第三百四十二条の二第四項及び第三百六十一条第六項に規定する監査等委員会の意見の決定
- 4 監査等委員がその職務の執行(監査等委員会の職務の執行に関す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対して次に掲げる請求をしたときは、当該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は、当該請求に係る費用又は債務が当該監査等委員の職務の執行に必要でないことを証明した場合を除き、これ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
 - 一 費用の前払の請求
 - 二 支出をした費用及び支出の日以後におけるその利息の償還の請求
 - 三 負担した債務の債権者に対する弁済(当該債務が弁済期にない場合にあっては、相当の担保の提供)の請求

第399条の3 監査等委員会による調査

- 1 監査等委員会が選定する監査等委員は、いつでも、取締役(会計参与設置会

④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 제1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감사(감사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는 “감사위원회”로 한다.

제9절의2 감사등위원회

제1관 권한 등

제399조의2 감사등위원회의 권한등

- ① 감사등위원회는 감사등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감사등위원은 이사이어야 한다.
- ③ 감사등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계참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및 회계참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및 감사보고의 작성
 2.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회계감사인의 선임, 해임 및 회계감사인을 재선임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의안내용의 결정
 3. 제342조의2 제4항 및 제361조 제6항의 감사등위원회의 의견 결정
- ④ 감사등위원이 직무집행(감사등위원회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해 감사등위원회설치 회사에 대해 다음의 청구를 한 때에는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는 당해 청구한 비용 또는 채무가 감사등위원의 직무집행에 불필요함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비용의 선급 청구
 2. 지출한 비용 및 지출일 이후의 이자상환 청구
 3. 부담한 채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의 청구

제399조의3 감사등위원회에 의한 조사

- ① 감사등위원회가 선정하는 감사등위원은 언제든지 이사(회계참여설치회사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社にあっては、取締役及び会計参与)及び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に対し、その職務の執行に関する事項の報告を求め、又は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の調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監査等委員会が選定する監査等委員は、監査等委員会の職務を執行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子会社に対して事業の報告を求め、又はその子会社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の調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子会社は、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同項の報告又は調査を拒むことができる。

4 第一項及び第二項の監査等委員は、当該各項の報告の徴収又は調査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の監査等委員会の決議があるときは、これ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399条の4 取締役会への報告義務

監査等委員は、取締役が不正の行為をし、若しくは当該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する事実若しくは著しく不当な事実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取締役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99条の5 株主総会に対する報告義務

監査等委員は、取締役が株主総会に提出しようとする議案、書類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について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し、又は著しく不当な事項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旨を株主総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99条の6 監査等委員による取締役の行為の差止め

1 監査等委員は、取締役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目的の範囲外の行為その他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する行為をし、又はこれらの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行為によって当該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著しい損害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当該取締役に対し、当該行為をやめ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裁判所が仮処分をもって同項の取締役に対し、その行為をやめることを命ずるときは、担保を立てさせないものとする。

의 경우에는 이사 및 회계참여) 및 지배인 그 외의 사용인에 대해 그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등위원회가 선정하는 감사등위원은 감사등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사등위원회설치 회사의 자회사에 대해 사업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동항의 보고 또는 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등위원은 각 항의 보고의 징구 또는 조사사항에 관한 감사등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9조의4 이사회에의 보고 의무

① 감사등위원은 이사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혹은 해당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또는 법령 혹은 정관에 위반한 사실 혹은 현저히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9조의5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의무

① 감사등위원은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의안, 서류 그 외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에 관해 법령 혹은 정관에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취지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9조의6 감사등위원회에 의한 이사행위 유지

① 감사등위원은 이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목적 범위의 행위, 그 외에 법령 혹은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행위로 인하여 감사등위원회 설치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사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법원이 가처분으로써 동항의 이사에 대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할 때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第399条の7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と取締役との間の訴えにおける会社の代表等

第三百四十九条第四項、第三百五十三条及び第三百六十四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が取締役(取締役であった者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対し、又は取締役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対して訴えを提起する場合には、当該訴えについて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を代表する。

一 監査等委員が当該訴えに係る訴訟の当事者である場合 取締役会が定める者(株主総会が当該訴えについて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を代表する者を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者)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監査等委員会が選定する監査等委員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取締役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対して訴えを提起する場合には、監査等委員(当該訴えを提起する者であるものを除く。)に対してされた訴状の送達は、当該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対して効力を有する。

3 第三百四十九条第四項、第三百五十三条及び第三百六十四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の各号に掲げ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各号に定める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当該訴えについては、監査等委員会が選定する監査等委員が当該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を代表する。

一 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第八百四十九条第二項第一号に規定する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をいう。次項第一号及び第五項第三号において同じ。) その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をいう。第五項第三号において同じ。)の取締役、執行役(執行役であった者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又は清算人(清算人であった者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責任(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の効力が生じた時までにその原因となった事実が生じたものに限る。)を追及する訴え

二 最終完全親会社等(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最終完全親会社等をいう。次項第二号及び第五項第四号において同じ。) その完全子会社等(同条第二項第二号に規定する完全子会社等をいい、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当該完全子会社等とみなされるものを含む。第五項第四号において同じ。)である株式会社の取締役、執行役又は清算人に対する特定責任追及の訴え(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特定責任追及の訴えをいう。)

제399조의7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있어서 회사의 대표 등

① 제349조 제4항, 제353조 및 제364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가 이사(이사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또는 이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를 대표한다.

1. 감사등위원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 이사회가 정하는 자(주주총회가 당해 소에 관해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

2. 전호 이외의 경우 : 감사등위원회가 선정하는 감사등위원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등위원(당해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이루어진 소장의 송달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제349조 제4항, 제353조 및 제36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 당해 각 호의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당해 소에 대해 감사등위원회가 선정하는 감사등위원이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를 대표한다.

1.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제849조 제2항 제1호의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를 말한다. 다음 항 제1호 및 제5항 제3호에서 같다) :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제847조의2 제1항의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를 말한다. 제5항 제3호에서 같다)의 이사, 집행임원(집행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청산인(청산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책임(제847조의2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때까지 그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것에 한한다)을 추궁하는 소.

2. 최종완전모회사등(제847조의3 제1항의 최종완전모회사등을 말한다. 다음 항 제2호 및 제5항 제4호에서 같다) : 완전자회사등(동조 제2항 제2호의 완전자회사등을 말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해 완전자회사등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5항 제4호에서 같다)인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청산인에 대한 특정책임추궁의 소(동조 제1항의 특정책임추궁소를 말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4 第三百四十九条第四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の各号に掲げ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各号に定める請求をするときは、監査等委員会が選定する監査等委員が当該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を代表する。

一 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 第八百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前項第一号に規定する訴えの提起の請求に限る。)

二 最終完全親会社等 第八百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前項第二号に規定する特定責任追及の訴えの提起の請求に限る。)

5 第三百四十九条第四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に掲げる場合には、監査等委員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を代表する。

一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が第八百四十七条第一項、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三項(同条第四項及び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取締役の責任を追及する訴えの提起の請求に限る。)を受ける場合(当該監査等委員が当該訴えに係る訴訟の相手方となる場合を除く。)

二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が第八百四十九条第四項の訴訟告知(取締役の責任を追及する訴えに係るものに限る。)並びに第八百五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及び催告(取締役の責任を追及する訴えに係る訴訟における和解に関するものに限る。)を受ける場合(当該監査等委員がこれらの訴えに係る訴訟の当事者である場合を除く。)

三 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である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が第八百四十九条第六項の規定による通知(その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の取締役、執行役又は清算人の責任を追及する訴えに係るものに限る。)を受ける場合

四 最終完全親会社等である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が第八百四十九条第七項の規定による通知(その完全子会社等である株式会社の取締役、執行役又は清算人の責任を追及する訴えに係るものに限る。)を受ける場合

第2款 運営

第399条の8 招集権者

監査等委員会は、各監査等委員が招集する。

④ 제34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 당해 각 호의 청구를 할 때에는 감사등위원회가 선정하는 감사등위원이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를 대표한다.

1.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 : 제847조 제1항의 청구(전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의 제기 청구에 한한다)
2. 최종완전모회사등 : 제847조 제1항의 청구(전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정 책임추궁소의 제기 청구에 한한다)

⑤ 제34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이 감사등위원회설치 회사를 대표한다.

1.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가 제847조 제1항, 제847조의2 제1항 혹은 제3항(동조 제4항 및 제 5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47조의3 제1항의 청구(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청구에 한한다)를 받는 경우(감사등위원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가 제849조 제4항의 소송고지(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 및 제850조 제2항의 통지 및 최고(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화해에 관한 것에 한한다)를 받는 경우(감사등위원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인 감사등위원회 설치회사가 제849조 제6항의 통지(주식 교환등완전자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청산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를 받는 경우
4. 최종완전모회사등인 감사등위원회설치 회사가 제849조 제7항의 통지(완전자회사등인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청산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를 받는 경우

제2관 운영

제399조의8 소집권자

① 감사등위원회는 각 감사등위원이 소집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第399条の9 招集手続等

- 1 監査等委員会を招集するには、監査等委員は、監査等委員会の日の一週間(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までに、各監査等委員に対してその通知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監査等委員会は、監査等委員の全員の同意があるときは、招集の手続を経ることなく開催することができる。
- 3 取締役(会計参与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及び会計参与)は、監査等委員会の要求があつたときは、監査等委員会に出席し、監査等委員会が求めた事項について説明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99条の10 監査等委員会の決議

- 1 監査等委員会の決議は、議決に加わることができる監査等委員の過半数が出席し、その過半数をもって行う。
- 2 前項の決議について特別の利害関係を有する監査等委員は、議決に加わることができない。
- 3 監査等委員会の議事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議事録を作成し、議事録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出席した監査等委員は、これに署名し、又は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前項の議事録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署名又は記名押印に代わる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 5 監査等委員会の決議に参加した監査等委員であつて第三項の議事録に異議をとどめないものは、その決議に賛成したものと推定する。

第399条の11 議事録

- 1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は、監査等委員会の日から十年間、前条第三項の議事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 2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株主は、そ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前項の議事録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제399조의9 소집절차 등

- ① 감사등위원회를 소집하려면 감사등위원은 감사등위원회 개최일의 일주일(이것을 하회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까지 각 감사등위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등위원회는 감사등위원의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최할 수 있다.
- ③ 이사(회계참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및 회계참여)는 감사등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감사등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등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399조의10 감사등위원회의 결의

- ① 감사등위원회의 결의는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감사등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과반수로써 한다.
- ② 전항의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등위원은 결의에 참가할 수 할 수 없다.
- ③ 감사등위원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이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출석한 감사등위원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의사록이 전자적 기록으로써 작성되고 있는 경우 당해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감사등위원회의 결의에 참가한 감사등위원으로서 제3항의 의사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99조의11 의사록

- ①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는 감사등위원회의 날로부터 10년간 전조 제3항의 의사록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주주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전항의 의사록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二 前項の議事録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三 前項の規定は、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債権者が取締役又は会計参与の責任を追及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及び親会社社員がそ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について準用する。

四 裁判所は、第二項(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請求に係る閲覧又は謄写をすることにより、当該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又はその親会社若しくは子会社に著しい損害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第二項の許可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399条の12 監査等委員会への報告の省略

取締役、会計参与又は会計監査人が監査等委員の全員に対して監査等委員会に報告すべき事項を通知したときは、当該事項を監査等委員会へ報告することを要しない。

第3款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取締役会の権限等

第399条の13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取締役会の権限

一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取締役会は、第三百六十二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に掲げる職務を行う。

一 次に掲げる事項その他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業務執行の決定

イ 経営の基本方針

ロ 監査等委員会の職務の執行のため必要な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ハ 取締役の職務の執行が法令及び定款に適合す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その他株式会社の業務並びに当該株式会社及びその子会社から成る企業集団の業務の適正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体制の整備

二 取締役の職務の執行の監督

三 代表取締役の選定及び解職

2. 전항의 의사록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③ 전항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채권자가 이사 또는 회계참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및 모회사 사원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 준용한다.

④ 법원은 제2항(전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는 것에 의해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또는 그 모회사 혹은 자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허가를 할 수 없다.

제399조의12 감사등위원회에 대한 보고의 생략

이사, 회계참여 또는 회계감사인인 감사등위원의 전원에 대해 감사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사항을 감사등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제3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회권한 등

제399조의13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회 권한

①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제36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의 사항 그 외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
 - 가. 경영의 기본방침
 - 나. 감사등위원회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 다. 이사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그 외 주식회사의 업무, 주식회사 및 그 자회사로 구성되는 기업집단의 업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체제의 정비
2. 이사의 직무 집행에 대한 감독
3. 대표이사의 선정 및 해직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2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取締役会は、前項第一号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事項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取締役会は、取締役(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を除く。)の中から代表取締役を選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取締役会は、次に掲げる事項その他の重要な業務執行の決定を取締役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ない。

一 重要な財産の処分及び譲受け

二 多額の借財

三 支配人その他の重要な使用人の選任及び解任

四 支店その他の重要な組織の設置、変更及び廃止

五 第六百七十六条第一号に掲げる事項その他の社債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に関する重要な事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六 第四百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基づく第四百二十三条第一項の責任の免除

5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取締役の過半数が社外取締役である場合には、当該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取締役会は、その決議によって、重要な業務執行の決定を取締役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一 第三百三十六条又は第三百三十七条第一項の決定及び第四百十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指定

二 第三百六十五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三百五十六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

三 第二百六十二条又は第二百六十三条第一項の決定

四 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

五 株主総会に提出する議案(会計監査人の選任及び解任並びに会計監査人を再任しないことに関するものを除く。)の内容の決定

六 第三百四十八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委託

七 第三百六十一条第七項の規定による同項の事項の決定

八 第三百六十五条第一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三百五十六条第一項の承認

九 第三百六十六条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取締役会を招集する取締役

②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전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결정 하여야 한다.

③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이사(감사등위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해야 한다.

④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 그 외의 중요한 업무집행의 결정을 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1.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수
2. 고액의 차입
3. 지배인 그 외의 중요한 사용인의 선임 및 해임
4. 지점 그 외의 중요한 조직의 설치, 변경 및 폐지
5. 제676조 제1호의 사항 그 외의 사채를 인수하는 자의 모집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6. 제426조 제1항에 의한 정관의 정함에 기한 제423조 제1항의 책임 면제

⑤ 전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등위원회설치 회사의 이사의 과반수가 사외이사인 경우에는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회는 결의로서 중요한 업무집행의 결정을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6조 또는 제137조 제1항의 결정 및 제140조 제4항에 의한 지정
2. 제165조 제3항에서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결정
3. 제262조 또는 제263조 제1항의 결정
4. 제29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결정
5.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의안(회계감사인의 선임 해임 및 회계감사인을 재선임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의 내용 결정
6. 제348조의 2 제1항의 의한 위탁
7. 제361조 제7항에 의한 동항의 사항 결정
8. 제365조 제1항에서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356조 제1항의 승인
9. 제36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의 결정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の決定

十 第三百九十九条の七第一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を代表する者の決定

十一 前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

十二 補償契約(第四百三十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補償契約をいう。第四百十六条第四項第十四号において同じ。)の内容の決定

十三 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第四百三十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をいう。第四百十六条第四項第十五号において同じ。)の内容の決定

十四 第四百三十六条第三項、第四百四十一条第三項及び第四百四十四条第五項の承認

十五 第四百五十四条第五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適用する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る事項の決定

十六 第四百六十七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に係る契約(当該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承認を要しないものを除く。)の内容の決定

十七 合併契約(当該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承認を要しないものを除く。)の内容の決定

十八 吸収分割契約(当該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承認を要しないものを除く。)の内容の決定

十九 新設分割計画(当該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承認を要しないものを除く。)の内容の決定

二十 株式交換契約(当該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承認を要しないものを除く。)の内容の決定

二十一 株式移転計画の内容の決定

二十二 株式交付計画(当該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承認を要しないものを除く。)の内容の決定

6 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重要な業務執行(前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の決定の全部又は一部を取締役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10. 제399조의7 제1항 제1호에 의한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를 대표하는 자의 결정
 11. 전항 제6호의 사항
 12. 보상계약(제430조의 2 제1항의 보상계약을 말한다. 제416조 제4항 제14호에서 같다)의 내용 결정
 13.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제430조의 3 제1항의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말한다. 제416조 제4항 제15호에서 같다)의 내용 결정
 14. 제436조 제3항, 제441조 제3항 및 제444조 제 5 항의 승인
 15. 제454조 제 5 항에서 환독하여 적용하는 동조 제1항에 의해 정하여야 할 사항의 결정
 16. 제467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와 관련된 계약(해당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용 결정
 17. 합병계약(해당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주주 총회의 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의 내용 결정
 18. 흡수분할계약(해당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용 결정
 19. 신설분할계획(해당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용 결정
 20. 주식교환계약(해당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용 결정
 21. 주식이전계획의 내용 결정
 22. 주식교부계획(해당 감사등위원회 설치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용 결정
- ⑥ 전 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등위원회설치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중요한 업무집행(전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第399条の14 監査等委員会による取締役会の招集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招集権者の定めがある場合であっても、監査等委員会が選定する監査等委員は、取締役会を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

第10節 指名委員会等及び執行役

第1款 委員の選定、執行役の選任等

第400条 委員の選定等

- 1 指名委員会、監査委員会又は報酬委員会の各委員会(以下この条、次条及び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二十三号ロにおいて単に「各委員会」という。)は、委員三人以上で組織する。
- 2 各委員会の委員は、取締役の中から、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選定する。
- 3 各委員会の委員の過半数は、社外取締役でなければならない。
- 4 監査委員会の委員(以下「監査委員」という。)は、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若しくはその子会社の執行役若しくは業務執行取締役又は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子会社の会計参与(会計参与が法人であるときは、その職務を行うべき社員)若しく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を兼ねることができない。

第401条 委員の解職等

- 1 各委員会の委員は、いつでも、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解職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各委員会の委員の員数(定款で四人以上の員数を定めたときは、その員数)が欠けた場合には、任期の満了又は辞任により退任した委員は、新たに選定された委員(次項の一時委員の職務を行うべき者を含む。)が就任するまで、なお委員としての権利義務を有する。
- 3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一時委員の職務を行うべき者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 4 裁判所は、前項の一時委員の職務を行うべき者を選任した場合には、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がその者に対して支払う報酬の額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제399조의14 감사등위원회에 의한 이사회 소집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감사등위원회가 선정한 감사등위원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절 지명위원회등 및 집행임원

제1관 위원 선정, 집행임원의 선임 등

제400조 위원 선정 등

- ① 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보수위원회의 각 위원회(이하 이 조, 다음 조 및 제911조 제3항 제23호 나목에서는 단지 “각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고 한다)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 혹은 그 자회사의 집행임원 혹은 업무집행이사 또는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자회사의 회계참여(회계참여가 법인일 때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원) 혹은 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

제401조 위원 해임 등

-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언제든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 ② 전조 제1항의 각 위원회 위원의 원수(정관에서 4인 이상의 원수를 정한 때에는 그 원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정된 위원(다음 항의 일시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포함한다)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 ③ 전항의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시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전항의 일시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가 그 자에 대해 지급할 보수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第402条 執行役の選任等

- 1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は、一人又は二人以上の執行役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 2 執行役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選任する。
- 3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と執行役との関係は、委任に関する規定に従う。
- 4 第三百三十一条第一項及び第三百三十一条の二の規定は、執行役について準用する。
- 5 株式会社は、執行役が株主でなければならない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公開会社でない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6 執行役は、取締役を兼ねることができる。
- 7 執行役の任期は、選任後一年以内に終了する事業年度のうち最終のものに関する定時株主総会の終結後最初に招集される取締役会の終結の時までとする。ただし、定款によって、その任期を短縮することを妨げない。
- 8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が指名委員会等を置く旨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定款の変更をした場合には、執行役の任期は、当該定款の変更の効力が生じた時に満了する。

第403条 執行役の解任等

- 1 執行役は、いつでも、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り解任された執行役は、その解任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き、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対し、解任によって生じ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3 第四百一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執行役が欠けた場合又は定款で定めた執行役の員数が欠け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2款 指名委員会等の権限等

第404条 指名委員会等の権限等

- 1 指名委員会は、株主総会に提出する取締役(会計参与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及び会計参与)の選任及び解任に関する議案の内容を決定する。

제402조 집행임원의 선임 등

- ①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에는 1인 또는 2인 이상의 집행임원을 두어야 한다.
- ② 집행임원은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③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④ 제331조 제1항 및 제331조의2는 집행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⑤ 주식회사는 집행임원이 주주이어야 한다는 뜻을 정관으로 정할 수 없다. 다만 공개회사가 아닌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집행임원은 이사를 겸할 수 있다.
- ⑦ 집행임원의 임기는 선임후 1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 연도 중 최초의 것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후 처음 소집되는 이사회에 종결시까지로 한다. 다만, 정관에 의하여 그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 ⑧ 전항에도 불구하고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가 지명위원회등을 두는 정관 규정을 폐지하는 정관변경을 한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종료한다.

제403조 집행임원의 해임 등

- ① 집행임원은 언제든지 이사회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의해 해임된 집행임원은 해임에 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401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집행임원이 부족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정한 집행임원의 원수가 부족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관 지명위원회등의 권한 등

제404조 지명위원회등의 권한 등

- ① 지명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이사(회계참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및 회계참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안의 내용을 결정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2 監査委員会は、次に掲げる職務を行う。

一 執行役等(執行役及び取締役をいい、会計参与設置会社にあつては、執行役、取締役及び会計参与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の職務の執行の監査及び監査報告の作成

二 株主総会に提出する会計監査人の選任及び解任並びに会計監査人を再任しないことに関する議案の内容の決定

3 報酬委員会は、第三百六十一条第一項並びに第三百七十九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執行役等の個人別の報酬等の内容を決定する。執行役が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を兼ねているときは、当該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の報酬等の内容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4 委員がその職務の執行(当該委員が所属する指名委員会等の職務の執行に関す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対して次に掲げる請求をしたときは、当該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は、当該請求に係る費用又は債務が当該委員の職務の執行に必要なことを証明した場合を除き、これ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

一 費用の前払の請求

二 支出をした費用及び支出の日以後におけるその利息の償還の請求

三 負担した債務の債権者に対する弁済(当該債務が弁済期にない場合にあっては、相当の担保の提供)の請求

第405条 監査委員会による調査

1 監査委員会が選定する監査委員は、いつでも、執行役等及び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に対し、その職務の執行に関する事項の報告を求め、又は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の調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監査委員会が選定する監査委員は、監査委員会の職務を執行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子会社に対して事業の報告を求め、又はその子会社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の調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子会社は、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同項の報告又は調査を拒むことができる。

4 第一項及び第二項の監査委員は、当該各項の報告の徴収又は調査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の監査委員会の決議があるときは、これ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행임원등(집행임원 및 이사를 말하고 회계참여설치회사에서는 집행임원, 이사 및 회계참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직무집행의 감사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

2.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회계감사인을 재임하지 아니하는 것에 관한 의안의 내용의 결정

③ 보수위원회는 제361조 제1항, 제379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임원등의 개인별 보수등의 내용을 결정한다. 집행임원이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보수등의 내용에 관해서도 같다.

④ 위원이 그 직무의 집행(위원이 소속하는 지명위원회등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하여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에 대해서 다음의 청구를 한 때에는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는 청구와 관련된 비용 또는 채무가 위원의 직무집행에 불필요함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비용의 선불의 청구

2. 지출한 비용 및 지출일 이후 이자의 상환 청구

3. 부담한 채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채무가 변제기가 아닌 경우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의 청구

제405조 감사위원회에 의한 조사

①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는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집행임원등 및 지배인 그 외의 사용인에 대해서 그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 또는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는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자회사에 대해서 사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그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항의 보고 또는 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위원은 당해 각항의 보고의 징수 또는 조사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第406条 取締役会への報告義務

監査委員は、執行役又は取締役が不正の行為をし、若しくは当該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する事実若しくは著しく不当な事実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取締役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407条 監査委員による執行役等の行為の差止め

1 監査委員は、執行役又は取締役が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目的の範囲外の行為その他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する行為をし、又はこれらの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行為によって当該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著しい損害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当該執行役又は取締役に對し、当該行為をやめ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裁判所が仮処分をもって同項の執行役又は取締役に對し、その行為をやめることを命ずるときは、担保を立てさせないものとする。

第408条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と執行役又は取締役との間の訴えにおける会社の代表等

1 第四百二十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四十九条第四項の規定並びに第三百五十三条及び第三百六十四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が執行役(執行役であった者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取締役(取締役であった者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對し、又は執行役若しくは取締役に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対して訴えを提起する場合には、当該訴えについて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を代表する。

一 監査委員が当該訴えに係る訴訟の当事者である場合 取締役会が定める者(株主総会が当該訴えについて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を代表する者を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者)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監査委員会が選定する監査委員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執行役又は取締役に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対して訴えを提起する場合には、監査委員(当該訴えを提起する者であるものを除く。)に對してされた訴状の送達は、当該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対して効力を有す

제406조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감사위원은 집행임원 또는 이사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사실 또는 현저하게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7조 감사위원회에 의한 집행임원등의 행위유지

- ① 감사위원은 집행임원 또는 이사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 그 외의 법령 혹은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행위로 인하여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집행임원 또는 이사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이 가처분으로써 동항의 집행임원 또는 이사에게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08조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와 집행임원 또는 이사간의 소에서 회사의 대표 등

① 제420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349조 제4항, 제353조 및 제364조에도 불구하고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가 집행임원(집행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혹은 이사(이사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또는 집행임원 혹은 이사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를 대표한다.

1. 감사위원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 이사회가 정하는 자(주주총회가 지명위원회등 설치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
2. 전항의 경우 이외의 경우 :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는 감사위원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임원 또는 이사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소를 제기한자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 이루어진 소장의 송달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る。

3 第四百二十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四十九条第四項の規定並びに第三百五十三条及び第三百六十四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の各号に掲げる株式会社が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各号に定める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当該訴えについては、監査委員会が選定する監査委員が当該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を代表する。

一 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第八百四十九条第二項第一号に規定する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をいう。次項第一号及び第五項第三号において同じ。) その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をいう。第五項第三号において同じ。)の取締役、執行役又は清算人(清算人であった者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責任(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の効力が生じた時までその原因となった事実が生じたものに限る。)を追及する訴え

二 最終完全親会社等(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最終完全親会社等をいう。次項第二号及び第五項第四号において同じ。) その完全子会社等(同条第二項第二号に規定する完全子会社等をいい、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当該完全子会社等とみなされるものを含む。第五項第四号において同じ。)である株式会社の取締役、執行役又は清算人に対する特定責任追及の訴え(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特定責任追及の訴えをいう。)

4 第四百二十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四十九条第四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の各号に掲げる株式会社が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各号に定める請求をするときは、監査委員会が選定する監査委員が当該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を代表する。

一 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 第八百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前項第一号に規定する訴えの提起の請求に限る。)

二 最終完全親会社等 第八百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前項第二号に規定する特定責任追及の訴えの提起の請求に限る。)

5 第四百二十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四十九条第四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に掲げる場合には、監査委員が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を代表する。

一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が第八百四十七条第一項、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三項(同条第四項及び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

③ 제420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349조 제4항, 제353조 및 제36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식회사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인 경우 각 호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소에 관해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는 감사위원이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를 대표한다.

1.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제849조 제2항 제1호의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를 말한다. 다음 항 제1호 및 제5항 제3호에서 같다) :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제847조의2 제1항의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를 말한다. 제5항 제3호에서 같다)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청산인(청산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책임(제847조의2 제1항 각 호의 행위 효력이 발생한 때까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한한다)을 추궁하는 소

2. 최종완전모회사등 (제847조의3 제1항의 최종완전모회사등을 말한다. 다음 항 제2호 및 제5항 제4호에서 같다) : 완전자회사등(동조 제2항 제2호의 완전자회사등을 말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해 완전자회사등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5항 제4호에서 같다)인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청산인에 대한 특정책임추궁의 소(동조 제1항의 특정책임추궁의 소를 말한다)

④ 제420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34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식회사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인 경우 당해 각 호의 청구를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는 감사위원이 지명위원회등 설치회사를 대표한다.

1.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 : 제847조 제1항의 청구(전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의 제기 청구에 한한다)

2. 최종완전모회사등 : 제847조 제1항의 청구(전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책임추궁소의 제기 청구에 한한다)

⑤ 제420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34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이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를 대표한다.

1.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가 제847조 제1항, 제847조의2 제1항 혹은 제3항(동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47조의3 제1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は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執行役又は取締役の責任を追及する訴えの提起の請求に限る。)を受ける場合(当該監査委員が当該訴えに係る訴訟の相手方となる場合を除く。)
- 二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が第八百四十九条第四項の訴訟告知(執行役又は取締役の責任を追及する訴えに係るものに限る。)並びに第八百五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及び催告(執行役又は取締役の責任を追及する訴えに係る訴訟における和解に関するものに限る。)を受ける場合(当該監査委員がこれらの訴えに係る訴訟の当事者である場合を除く。)
- 三 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である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が第八百四十九条第六項の規定による通知(その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の取締役、執行役又は清算人の責任を追及する訴えに係るものに限る。)を受ける場合
- 四 最終完全親会社等である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が第八百四十九条第七項の規定による通知(その完全子会社等である株式会社の取締役、執行役又は清算人の責任を追及する訴えに係るものに限る。)を受ける場合

第409条 報酬委員会による報酬の決定の方法等

- 1 報酬委員会は、執行役等の個人別の報酬等の内容に係る決定に関する方針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2 報酬委員会は、第四百四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決定をするには、前項の方針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 3 報酬委員会は、次の各号に掲げるものを執行役等の個人別の報酬等とする場合には、その内容として、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について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会計参与の個人別の報酬等は、第一号に掲げ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額が確定しているもの 個人別の額
 - 二 額が確定していないもの 個人別の具体的な算定方法
 - 三 当該株式会社の募集株式 当該募集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募集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 四 当該株式会社の募集新株予約権 当該募集新株予約権の数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 五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ものと引換えにする払込みに充てるための金銭 当

항의 청구(집행임원 또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 청구에 한한다)
를 받는 경우(감사위원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가 제849조 제4항의 소송고지(집행임원 또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 및 제850조 제2항의 통지 및 최고(집행임원 또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화해에 관한 것에 한한다)를 받는 경우(감사위원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인 지명위원회등 설치회사가 제849조 제6항의 통지(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청산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를 받는 경우
4. 최종완전모회사등인 지명위원회등설치 회사가 제849조 제7항의 통지(완전자회사등인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청산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를 받는 경우

제409조 보수위원회에 의한 보수의 결정방법 등

- ① 보수위원회는 집행임원등의 개인별 보수등의 내용 결정에 관한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② 보수위원회는 제404조 제3항에 의한 결정을 하려면 전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③ 보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것을 집행임원 등의 개인별 보수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서 해당 각호의 사항에 관해 결정해야 한다. 다만, 회계참여의 개인별 보수 등은 제1호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1.>

1. 가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 개인별 가액
2.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 개인별 구체적인 산정방법
3. 주식회사의 모집주식: 모집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모집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기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주식회사의 모집신주예약권: 모집신주예약권의 수 기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5.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것과 교환으로 하는 납입에 충당하기 위한 금전: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該イ又はロに定める事項

イ 当該株式会社の募集株式 執行役等が引き受ける当該募集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募集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ロ 当該株式会社の募集新株予約権 執行役等が引き受ける当該募集新株予約権の数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六 金銭でないもの(当該株式会社の募集株式及び募集新株予約権を除く。)個人別の具体的な内容

第3款 指名委員会等の運営

第410条 招集権者

指名委員会等は、当該指名委員会等の各委員が招集する。

第411条 招集手続等

1 指名委員会等を招集するには、その委員は、指名委員会等の日の一週間(これを下回る期間を取締役会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期間)前までに、当該指名委員会等の各委員に対してその通知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指名委員会等は、当該指名委員会等の委員の全員の同意があるときは、招集の手続を経ることなく開催することができる。

3 執行役等は、指名委員会等の要求があつたときは、当該指名委員会等に出席し、当該指名委員会等が求めた事項について説明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412条 指名委員会等の決議

1 指名委員会等の決議は、議決に加わることができるその委員の過半数(これを上回る割合を取締役会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割合以上)が出席し、その過半数(これを上回る割合を取締役会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割合以上)をもって行う。

2 前項の決議について特別の利害関係を有する委員は、議決に加わることができない。

3 指名委員会等の議事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議事録を作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사항

가. 주식회사의 모집주식: 집행임원 등이 인수하는 모집주식의 수(종류주식 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모집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기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나. 주식회사의 모집신주예약권: 집행임원 등이 인수하는 모집신주예약권의 수 기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6. 금전아닌 것(해당 주식회사의 모집주식 및 모집신주예약권은 제외한다): 개인별 구체적인 내용

제3관 지명위원회등의 운영

제410조 소집권자

지명위원회등은 해당 지명위원회등의 각 위원이 소집한다.

제411조 소집절차 등

- ① 지명위원회등을 소집하려면 그 위원은 지명위원회등의 개최일 1주일(이것을 하회하는 기간을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까지 지명위원회등의 각 위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지명위원회등은 지명위원회등의 위원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최할 수 있다.
- ③ 집행임원등은 지명위원회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명위원회등에 출석하여 해당 지명위원회등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412조 지명위원회등의 결의

- ① 지명위원회등의 결의는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위원의 과반수(이것을 상회하는 비율을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가 출석하고, 그 과반수(이것을 상회하는 비율을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로써 한다.
- ② 전항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을 할 수 없다.
- ③ 지명위원회등의 의사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을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成し、議事録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出席した委員は、これに署名し、又は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項の議事録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署名又は記名押印に代わる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5 指名委員会等の決議に参加した委員であって第三項の議事録に異議をとどめないものは、その決議に賛成したものと推定する。

第413条 議事録

1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は、指名委員会等の日から十年間、前条第三項の議事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取締役は、次に掲げるものの閲覧及び謄写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前項の議事録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

二 前項の議事録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

3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株主は、そ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第一項の議事録について前項各号に掲げる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規定は、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債権者が委員の責任を追及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及び親会社社員がそ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について準用する。

5 裁判所は、第三項(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請求に係る閲覧又は謄写をすることにより、当該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又はその親会社若しくは子会社に著しい損害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第三項の許可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414条 指名委員会等への報告の省略

執行役、取締役、会計参与又は会計監査人が委員の全員に対して指名委員会等に報告すべき事項を通知したときは、当該事項を指名委員会等へ報告することを要しない。

작성하고, 의사록이 서면으로 작성된 때에는 출석 위원은 이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의사록이 전자적 기록으로써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지명위원회등의 결의에 참가한 위원으로서 제3항의 의사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13조 의사록

①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는 지명위원회등의 개최일로부터 10년간 전조 제3항의 의사록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열람 및 등사를 할 수 있다.

1. 전항의 의사록이 서면으로 작성된 때에는 그 서면

2. 전항의 의사록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때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

③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주주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의사록에 대하여 전항 각 호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채권자가 위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및 모회사사원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준용한다.

⑤ 법원은 제3항(전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열람 또는 등사로 인하여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 또는 그 모회사 혹은 자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의 허가를 할 수 없다.

제414조 지명위원회등에 대한 보고의 생략

집행임원, 이사, 회계참여 또는 회계감사인이 위원 전원에 대하여 지명위원회등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사항을 지명위원회등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第4款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取締役の権限等

第415条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取締役の権限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取締役は、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416条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取締役会の権限

1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取締役会は、第三百六十二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に掲げる職務を行う。

一 次に掲げる事項その他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業務執行の決定

イ 経営の基本方針

ロ 監査委員会の職務の執行のため必要な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ハ 執行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おける執行役の職務の分掌及び指揮命令の
関係その他の執行役相互の関係に関する事項

ニ 次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取締役会の招集の請求を受ける取締役

ホ 執行役の職務の執行が法令及び定款に適合す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その他株式会社の業務並びに当該株式会社及びその子会社から成る企業集団
の業務の適正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体制の整備

二 執行役等の職務の執行の監督

2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取締役会は、前項第一号イからホまでに掲げる事項
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取締役会は、第一項各号に掲げる職務の執行を取
締役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ない。

4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取締役会は、その決議によって、指名委員会等設置
会社の業務執行の決定を執行役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次に掲げる事
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一 第三十六条又は第三十七条第一項の決定及び第四十条第四項の規
定による指定

제4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이사의 권한 등

제415조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이사의 권한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이사는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기한 명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다.

제416조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이사회 권한

①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제36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의 사항 기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

가. 경영의 기본방침

나. 감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다.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이 있는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장 및 지휘명령의 관계, 기타 집행임원 상호 관계에 관한 사항

라. 다음 조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 청구를 받는 이사

마. 집행임원의 직무 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그 외 주식회사의 업무, 주식회사 및 그 자회사로 구성되는 기업집단의 업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체제의 정비

2. 집행임원등의 직무집행의 감독

②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전항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집행을 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④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이사회는 결의로서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업무 집행을 결정을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6조 또는 제137조 제1항의 결정 및 제140조 제4항에 의한 지정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二 第百六十五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百五十六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
- 三 第百六十二条又は第百六十三条第一項の決定
- 四 第百九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
- 五 株主総会に提出する議案(取締役、会計参与及び会計監査人の選任及び解任並びに会計監査人を再任しないことに関するものを除く。)の内容の決定
- 六 第三百四十八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る委託
- 七 第三百六十五条第一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三百五十六条第一項(第四百十九条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承認
- 八 第三百六十六条第一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取締役会を招集する取締役の決定
- 九 第四百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委員の選定及び第四百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委員の解職
- 十 第四百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執行役の選任及び第四百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執行役の解任
- 十一 第四百八条第一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を代表する者の決定
- 十二 第四百二十条第一項前段の規定による代表執行役の選定及び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代表執行役の解職
- 十三 第四百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基づく第四百二十三条第一項の責任の免除
- 十四 補償契約の内容の決定
- 十五 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の内容の決定
- 十六 第四百三十六条第三項、第四百四十一条第三項及び第四百四十四条第五項の承認
- 十七 第四百五十四条第五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適用する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る事項の決定
- 十八 第四百六十七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に係る契約(当該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承認を要しないものを除く。)の内容の決定
- 十九 合併契約(当該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承認を要しないものを除く。)の内容の決定

2. 제165조 제3항에서 환독하여 적용한 제15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의 결정
3. 제262조 또는 제263조 제1항의 결정
4. 제298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의 결정
5.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의안(이사, 회계참여,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과 회계감사인을 재임하지 아니한다는 의안은 제외한다)내용의 결정
6. 제348조의 2 제2항에 의한 위탁
7. 제365조 제1항에서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356조 제1항(제419조 제2항에서 환독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
8. 제36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의 결정
9. 제400조 제2항에 의한 위원 선정 및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위원의 해직
10. 제402조 제2항에 의한 집행임원 선임 및 제43조 제1항에 의한 집행임원의 해임
11. 제40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를 대표하는 자의 결정
12. 제420조 제1항 전단에 의한 대표집행임원의 선정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대표집행임원의 해직
13. 제426조 제1항에 의한 정관의 규정에 기한 제423조 제1항의 책임 면제
14. 보상계약의 내용 결정
15.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의 내용 결정
16. 제436조 제3항, 제441조 제3항 및 제444조 제5항의 승인
17. 제454조 제5항에서 환독하여 적용하는 동조 제1항에 의해 정하여야 하는 사항의 결정
18. 제467조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련된 계약(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용 결정
19. 합병계약(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내용의 결정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二十 吸収分割契約(当該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承認を要しないものを除く。)の内容の決定
- 二十一 新設分割計画(当該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承認を要しないものを除く。)の内容の決定
- 二十二 株式交換契約(当該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承認を要しないものを除く。)の内容の決定
- 二十三 株式移転計画の内容の決定
- 二十四 株式交付計画(当該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承認を要しないものを除く。)の内容の決定

第417条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取締役会の運営

- 1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おいては、招集権者の定めがある場合であっても、指名委員会等がその委員の中から選定する者は、取締役会を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
- 2 執行役は、前条第一項第一号二の取締役に對し、取締役会の目的である事項を示して、取締役会の招集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請求があつた日から五日以内に、当該請求があつた日から二週間以内の日を取締役会の日とする取締役会の招集の通知が発せられないときは、当該執行役は、取締役会を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
- 3 指名委員会等がその委員の中から選定する者は、遅滞なく、当該指名委員会等の職務の執行の状況を取締役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執行役は、三箇月に一回以上、自己の職務の執行の状況を取締役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執行役は、代理人(他の執行役に限る。)により当該報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5 執行役は、取締役会の要求があつたときは、取締役会に出席し、取締役会が求めた事項について説明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款 執行役の権限等

第418条 執行役の権限

執行役は、次に掲げる職務を行う。

- 一 第四百十六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委任を受けた指

- 20. 흡수분할계약(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내용의 결정
- 21. 신설분할계획(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내용의 결정
- 22. 주식교환계약(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내용의 결정
- 23. 주식이전 계획의 내용 결정
- 24. 주식교부계획(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용 결정

제417조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이사회운영

- ①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소집권자의 정함이 있더라도 지명위원회등이 그 위원 중에서 선정한 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집행임원은 전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이사에게 이사회의 목적사항을 알리고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일로부터 2주간 이내의 날을 이사회일로 하는 이사회 소집통지가 발송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집행임원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지명위원회등이 그 위원 중에서 선정한 자는 지체 없이 지명위원회등의 직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자기의 직무집행의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집행임원은 대리인(다른 집행임원에 한한다)에 의하여 보고를 할 수 있다.
- ⑤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 출석하고 이사회가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관 집행임원의 권한 등

제418조 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제416조 제4항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지명위원회등설치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業務の執行の決定

二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業務の執行

第419条 執行役の監査委員に対する報告義務等

- 1 執行役は、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著しい損害を及ぼすおそれのある事実を発見したときは、直ちに、当該事実を監査委員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第三百五十五条、第三百五十六条及び第三百六十五条第二項の規定は、執行役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三百五十六条第一項中「株主総会」とあるのは「取締役会」と、第三百六十五条第二項中「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第三百五十六条第一項各号」とあるのは「第三百五十六条第一項各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3 第三百五十七条の規定は、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420条 代表執行役

- 1 取締役会は、執行役の中から代表執行役を選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執行役が一人のときは、その者が代表執行役に選定されたものとする。
- 2 代表執行役は、いつでも、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解職することができる。
- 3 第三百四十九条第四項及び第五項の規定は代表執行役について、第三百五十二条の規定は民事保全法第五十六条 に規定する仮処分命令により選任された執行役又は代表執行役の職務を代行する者について、第四百一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代表執行役が欠けた場合又は定款で定めた代表執行役の員数が欠けた場合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

第421条 表見代表執行役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は、代表執行役以外の執行役に社長、副社長その他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を代表する権限を有するものと認められる名称を付した場合には、当該執行役がした行為について、善意の第三者に対してその責任を負う。

第422条 株主による執行役の行為の差止め

- 1 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から引き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

2.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업무 집행

제419조 집행임원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등

- ① 집행임원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사실을 감사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355조, 제356조 및 제365조 제2항은 집행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6조 제1항 중 “주주총회”는 “이사회”로, 제365조 제2항 중 “이사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제356조 제1항 각호”는 “제356조 제1항 각호”로 본다.

- ③ 제357조의 규정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20조 대표집행임원

- ① 이사회는 집행임원 중에서 대표집행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임원이 1인인 때에는 그 자가 대표집행임원에 선정된 것으로 한다.
- ② 대표집행임원은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 ③ 제349조 제4항 및 제5항은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 제352조는 민사보전법 제56조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집행임원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 관하여 제401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대표집행임원이 부족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집행임원의 원수가 부족한 경우에 각각 준용한다.

제421조 표현대표집행임원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는 대표집행임원 이외의 집행임원에 사장, 부사장 그 외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라고 인정되는 명칭을 부여한 경우에는 당해 집행임원이 한 행위에 관해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422조 주주에 의한 집행임원의 행위유지

- ① 6개월(이를 하회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전부터 계속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続き株式を有する株主は、執行役が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目的の範囲外の行為その他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する行為をし、又はこれらの行為をす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行為によって当該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回復することができない損害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当該執行役に対し、当該行為をやめ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公開会社でない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から引き続き株式を有する株主」とあるのは、「株主」とする。

第11節 役員等の損害賠償責任

第423条 役員等の株式会社に対する損害賠償責任

1 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執行役又は会計監査人(以下この章において「役員等」という。)は、その任務を怠ったときは、株式会社に対し、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2 取締役又は執行役が第三百五十六条第一項(第四百十九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違反して第三百五十六条第一項第一号の取引をしたときは、当該取引によって取締役、執行役又は第三者が得た利益の額は、前項の損害の額と推定する。

3 第三百五十六条第一項第二号又は第三号(これらの規定を第四百十九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取引によって株式会社に損害が生じたときは、次に掲げる取締役又は執行役は、その任務を怠ったものと推定する。

一 第三百五十六条第一項(第四百十九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取締役又は執行役

二 株式会社が当該取引をすることを決定した取締役又は執行役

三 当該取引に関する取締役会の承認の決議に賛成した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おいては、当該取引が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と取締役との間の取引又は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と取締役との利益が相反する取引である場合に限る。)

4 前項の規定は、第三百五十六条第一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同項の取締役(監査等委員であるものを除く。)が当該取引につき監査等委

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집행임원이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 그 외 법령 혹은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행위로 인하여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임원에 대해서 당해 행위를 중지할 것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공개회사가 아닌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 전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6개월(이를 하회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로 한다.

제11절 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423조 임원등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이사, 회계참여, 감사, 집행임원 또는 회계감사인(이하 이 장에서 “임원등”이라고 한다)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주식회사에 대해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제356조 제1항(제41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위반하여 제356조 제1항 제1호의 거래를 한 때에는 그 거래에 의하여 이사, 집행임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이득액은 전항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제35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이러한 규정을 제41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거래에 의하여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은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제356조 제1항(제41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
2. 주식회사가 거래를 하도록 결정한 이사 또는 집행임원
3. 당해 거래에 관한 이사회 의결의 찬성한 이사(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거래가 지명위원회등설치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 또는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와 이사의 이익에 상충하는 거래인 경우에 한한다)

④ 전항의 규정은 제35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동항의 이사(감사등위원인 자는 제외한다)가 당해 거래에 관해 감사등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員会の承認を受けたときは、適用しない。

第424条 株式会社に対する損害賠償責任の免除

前条第一項の責任は、総株主の同意がなければ、免除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425条 責任の一部免除

1 前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四百二十三条第一項の責任は、当該役員等が職務を行うにつき善意でかつ重大な過失がないときは、賠償の責任を負う額から次に掲げる額の合計額(第四百二十七条第一項において「最低責任限度額」という。)を控除して得た額を限度として、株主総会(株式会社に最終完全親会社等(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最終完全親会社等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責任が特定責任(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四項に規定する特定責任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であるときにあっては、当該株式会社及び当該最終完全親会社等の株主総会。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決議によって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当該役員等がその在職中に株式会社から職務執行の対価として受け、又は受けるべき財産上の利益の一年間当たりの額に相当する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に、次の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役員等の区分に応じ、当該イからハまでに定める数を乗じて得た額

イ 代表取締役又は代表執行役 六

ロ 代表取締役以外の取締役(業務執行取締役等であるものに限る。)又は代表執行役以外の執行役 四

ハ 取締役(イ及びロに掲げるものを除く。)、会計参与、監査役又は会計監査人 二

二 当該役員等が当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を引き受けた場合(第二百三十八条第三項各号に掲げる場合に限る。)における当該新株予約権に関する財産上の利益に相当する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

2 前項の場合には、取締役(株式会社に最終完全親会社等がある場合において、同項の規定により免除しようとする責任が特定責任であるときにあっては、当該株式会社及び当該最終完全親会社等の取締役)は、同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開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24조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전조 제1항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할 수 없다.

제425조 책임의 일부면제

① 전조에도 불구하고 제423조 제1항의 책임은 임원등이 직무수행에 관하여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배상 책임을 지는 금액에서 다음 금액의 합계액(제427조 제1항에서 “최저책임한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얻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주식회사에 최종완전모회사등(제847조의3 제1항의 최종완전모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당해 책임이 특정책임(제847조의3 제4항의 특정책임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인 때에는 주식회사 및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주주총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결의로 면제할 수 있다.

1. 임원등이 재직 중에 주식회사로부터 직무 집행의 대가로 받거나 또는 받아야 할 재산상의 이익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에 다음의 가목 내지 다목의 임원등의 구분에 따라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가.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 : 6

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업무집행이사등에 한한다) 또는 대표집행임원 이외의 집행임원 : 4

다. 이사(가목 및 나목의 자를 제외한다), 회계참여, 감사 또는 회계감사인 : 2

2. 임원등이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인수한 경우(제238조 제3항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신주예약권에 관한 재산상이익에 상당한 가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② 전항의 경우에는 이사(주식회사에 최종완전모회사등이 있는 경우 동항의 규정에 의해 면제하려고 하는 책임이 특정 책임인 때에는 주식회사 및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이사)는 동항의 주주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一 責任の原因となった事実及び賠償の責任を負う額
 - 二 前項の規定により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額の限度及びその算定の根拠
 - 三 責任を免除すべき理由及び免除額
- 3 監査役設置会社、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又は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おいては、取締役(これらの会社に最終完全親会社等がある場合において、第一項の規定により免除しようとする責任が特定責任であるときにあっては、当該会社及び当該最終完全親会社等の取締役)は、第四百二十三条第一項の責任の免除(取締役(監査等委員又は監査委員であるものを除く。))及び執行役の責任の免除に限る。)に関する議案を株主総会に提出するには、次の各号に掲げる株式会社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監査役設置会社 監査役(監査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各監査役)
 - 二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 各監査等委員
 - 三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 各監査委員
- 4 第一項の決議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株式会社が当該決議後に同項の役員等に対し退職慰労金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財産上の利益を与えるときは、株主総会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当該役員等が同項第二号の新株予約権を当該決議後に行使し、又は譲渡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 5 第一項の決議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当該役員等が前項の新株予約権を表示する新株予約権証券を所持するときは、当該役員等は、遅滞なく、当該新株予約権証券を株式会社に対し預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役員等は、同項の譲渡について同項の承認を受けた後でなければ、当該新株予約権証券の返還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

第426条 取締役等による免除に関する定款の定め

1 第四百二十四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監査役設置会社(取締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限る。)、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又は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は、第四百二十三条第一項の責任について、当該役員等が職務を行うにつき善意でかつ重大な過失がない場合において、責任の原因となった事実の内容、当該役員等の職務の執行の状況その他の事情を勘案して特に必要と認めるとき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額を限度として取締役(当該責任を負う取締役を除く。)の過半数の同意(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免除すること

1. 책임의 원인이 된 사실 및 배상책임을 지는 금액
 2. 전항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는 가액의 한도 및 산정의 근거
 3. 책임을 면제하여야 할 이유 및 면제액
- ③ 감사설치회사,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또는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이러한 회사에 최종완전모회사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의해 면제하고자 하는 책임이 특정책임인 때에는 당해 회사 및 당해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이사)는 제423조 제1항의 책임 면제(이사(감사등위원 또는 감사위원인 자는 제외한다) 및 집행임원의 책임 면제에 한한다)에 관한 의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주식회사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감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사)
 2.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 각 감사등위원
 3.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 : 각 감사위원
- ④ 제1항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 주식회사가 결의후에 동항의 임원등에게 퇴직위로금 그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상이익을 주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원등이 동항 제2호의 신주예약권을 결의 후에 행사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도 같다.
- ⑤ 제1항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 당해 임원등이 전항의 신주예약권을 표시한 신주예약권증권을 소지하는 때에는 임원등은 지체없이 신주예약권증권을 주식회사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원등은 동항의 양도에 관하여 동항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신주예약권증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426조 이사등에 의한 면제에 관한 정관의 정함

- ① 제424조에도 불구하고 감사설치회사(이사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또는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는 제423조 제1항의 책임에 관해 임원등이 직무수행에 관하여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의 원인이 된 사실의 내용, 임원등의 직무집행의 상황, 그 외의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의해 면제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이사(책임을 지는 이사는 제외한다)의 과반수의 동의(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면제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으로 정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ができる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2 前条第三項の規定は、定款を変更して前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取締役(監査等委員又は監査委員であるものを除く。))及び執行役の責任を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定めに限る。)を設ける議案を株主総会に提出する場合、同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基づく責任の免除(取締役(監査等委員又は監査委員であるものを除く。))及び執行役の責任の免除に限る。)についての取締役の同意を得る場合及び当該責任の免除に関する議案を取締役会に提出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中「取締役(これらの会社に最終完全親会社等がある場合において、第一項の規定により免除しようとする責任が特定責任であるときにあっては、当該会社及び当該最終完全親会社等の取締役)」とあるのは、「取締役」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基づいて役員等の責任を免除する旨の同意(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決議)を行ったときは、取締役は、遅滞なく、前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事項及び責任を免除することに異議がある場合には一定の期間内に当該異議を述べるべき旨を公告し、又は株主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期間は、一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4 公開会社でない株式会社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公告し、又は株主に通知し」とあるのは、「株主に通知し」とする。

5 株式会社に最終完全親会社等がある場合において、第三項の規定による公告又は通知(特定責任の免除に係るものに限る。)がされたときは、当該最終完全親会社等の取締役は、遅滞なく、前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事項及び責任を免除することに異議がある場合には一定の期間内に当該異議を述べるべき旨を公告し、又は株主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期間は、一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6 公開会社でない最終完全親会社等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公告し、又は株主に通知し」とあるのは、「株主に通知し」とする。

7 総株主(第三項の責任を負う役員等であるものを除く。)の議決権の百分の三(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議決権を有する株主が同項の期間内に同項の異議を述べたとき(株式会社に最終完全親会社等がある場合において、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基づき免除しようとする責任が特定責任であるときにあっては、当該株式会社の総株主(第三項

할 수 있다.

② 전조 제3항은 정관변경으로 전항의 정관의 정함(이사(감사등위원 또는 감사위원인 자는 제외한다) 및 집행임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뜻의 정함에 한한다)을 두는 의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경우 동항의 정관의 정함에 기한 책임면제(이사(감사등위원 또는 감사위원인 자는 제외한다) 및 집행임원의 책임면제에 한한다)에 관한 이사의 동의를 얻는 경우 및 책임면제에 관한 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중 “이사(이러한 회사에 최종완전모회사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면제하려고 하는 책임이 특정 책임인 때에는 당해 회사 및 당해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이사)”는 “이사”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정관의 정함에 기하여 임원등의 책임을 면제하는 취지의 동의(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를 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전조 제2항 각호의 사항 및 책임을 면제하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개월을 밑돌 수 없다.

④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전항의 적용에 관하여 동항 중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는 “주주에게 통지하여야”로 본다.

⑤ 주식회사에 최종완전모회사등이 있는 경우 제3항의 공고 또는 통지(특정책임의 면제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가 이루어진 때에는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이사는 지체 없이 전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책임을 면제하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취지를 공고하거나 또는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개월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⑥ 공개회사가 아닌 최종완전모회사등에 있어서 전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공고 또는 주주에게 통지”는 “주주에게 통지”라 한다.

⑦ 총주주(제3항의 책임을 지는 임원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의결권의 100분의 3(이것을 하회하는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의결권을 소유하는 주주가 동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이의를 제기한 때(주식회사에 최종완전모회사등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정관의 정함에 기하여 면제하고자 하는 책임이 특정 책임인 때에는 주식회사의 총주주(제3항의 책임을 지는 임원등은 제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の責任を負う役員等であるものを除く。)の議決権の百分の三(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議決権を有する株主又は当該最終完全親会社等の総株主(第三項の責任を負う役員等であるものを除く。)の議決権の百分の三(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議決権を有する株主が第三項又は第五項の期間内に当該各項の異議を述べたときは、株式会社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基づく免除をしてはならない。

8 前条第四項及び第五項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基づき責任を免除し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427条 責任限定契約

1 第四百二十四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式会社は、取締役(業務執行取締役等であるものを除く。)、会計参与、監査役又は会計監査人(以下この条及び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二十五号において「非業務執行取締役等」という。)の第四百二十三条第一項の責任について、当該非業務執行取締役等が職務を行うにつき善意でかつ重大な過失がないときは、定款で定めた額の範囲内であらかじめ株式会社が定めた額と最低責任限度額とのいずれか高い額を限度とする旨の契約を非業務執行取締役等と締結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契約を締結した非業務執行取締役等が当該株式会社の業務執行取締役等に就任したときは、当該契約は、将来に向かってその効力を失う。

3 第四百二十五条第三項の規定は、定款を変更して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同項に規定する取締役(監査等委員又は監査委員であるものを除く。))と契約を締結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定めに限る。)を設ける議案を株主総会に提出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中「取締役(これらの会社に最終完全親会社等がある場合において、第一項の規定により免除しようとする責任が特定責任であるときにあっては、当該会社及び当該最終完全親会社等の取締役)」とあるのは、「取締役」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4 第一項の契約を締結した株式会社が、当該契約の相手方である非業務執行取締役等が任務を怠ったことにより損害を受けたことを知ったときは、その後最初に招集される株主総会(当該株式会社に最終完全親会社等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損害が特定責任に係るものであるときにあっては、当該株式会社及び当

외한다)의 의결권의 100분의 3(이것을 하회하는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의결권을 소유하는 주주 또는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총주주(제3항의 책임을 지는 임원등은 제외한다)의 의결권의 100분의 3(이것을 하회하는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율) 이상의 의결권을 소유하는 주주가 제3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당해 각 항의 이익을 제기한 때)에는 주식회사는 제1항의 정관의 정함에 따른 면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⑧ 전조 제4항 및 제5항은 제1항의 정관의 정함에 기하여 책임을 면제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27조 책임한정계약

① 제424조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는 이사(업무집행이사등은 제외한다), 회계참여, 감사 또는 회계감사인(이하 이 조 및 제911조 제3항 제25호에서 “비업무집행이사등”이라 한다)의 제423조 제1항의 책임에 관하여 비업무집행이사등이 직무수행에 관하여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미리 주식회사가 정한 금액과 최저책임한도액 중 많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비업무집행이사등과 체결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체결한 비업무집행이사등이 당해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이사등으로 취임한 때에 당해 계약은 장래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425조 제3항은 정관을 변경하여 제1항의 정관의 정함(동항의 이사(감사등위원 또는 감사위원인 자는 제외한다)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의 정함에 한한다)을 두는 의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중 “이사(이러한 회사에 최종완전모회사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의하여 면제하고자 하는 책임이 특정책임인 때에는 당해 회사 및 당해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이사)”는 “이사”로 한다.

④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가 계약의 상대방인 비업무집행이사등이 임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그 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주식회사에 최종완전모회사등이 있는 경우 손해가 특정책임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회사회사 및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該最終完全親会社等の株主総会)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開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第四百二十五条第二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事項
- 二 当該契約の内容及び当該契約を締結した理由
- 三 第四百二十三条第一項の損害のうち、当該非業務執行取締役等が賠償する責任を負わないとされた額
- 5 第四百二十五条第四項及び第五項の規定は、非業務執行取締役等が第一項の契約によって同項に規定する限度を超える部分について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わないとされ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428条 取締役が自己のためにした取引に関する特則

- 1 三百五十六条第一項第二号(第四百十九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取引(自己のためにした取引に限る。)をした取締役又は執行役の第四百二十三条第一項の責任は、任務を怠ったことが当該取締役又は執行役の責めに帰することができない事由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をもって免れることができない。
- 2 前三条の規定は、前項の責任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429条 役員等の第三者に対する損害賠償責任

- 1 役員等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悪意又は重大な過失があったときは、当該役員等は、これによって第三者に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 2 次の各号に掲げる者が、当該各号に定める行為をした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ただし、その者が当該行為をすること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取締役及び執行役 次に掲げる行為
 - イ 株式、新株予約権、社債若しくは新株予約権付社債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をする際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重要な事項についての虚偽の通知又は当該募集のための当該株式会社の事業その他の事項に関する説明に用いた資料についての虚偽の記載若しくは記録
 - ロ 計算書類及び事業報告並びにこれらの附属明細書並びに臨時計算書類に記載し、又は記録すべき重要な事項についての虚偽の記載又は記録
 - ハ 虚偽の登記

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42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계약의 내용 및 계약을 체결한 이유
 3. 제423조 제1항의 손해 중 비업무집행이사등이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금액
- ⑤ 제425조 제4항 및 제 5 항은 비업무집행이사등이 제1항의 계약에 의해서 동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28조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특칙

- ① 제356조 제1항 제2호(제41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거래(자기거래에 한한다)를 한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제423조 제1항의 책임은 임무를 해태한 것이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귀책사유에 속로 볼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면제할 수 없다.
- ② 전3조는 전항의 책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9조 임원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① 임원등이 직무수행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임원등은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다음 각호의 자가 당해 각호에 정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다만, 그 자가 그 행위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사 및 집행임원은 다음의 행위
 - 가. 주식, 신주예약권, 사채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자를 모집하는 시 통지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통지 또는 모집을 위한 주식회사의 사업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설명에 이용한 자료에 대한 허위의 기재 또는 기록
 - 나. 계산서류, 사업보고서, 그 부속명세서 및 임시계산서류에 기재하거나 기록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의 기재 또는 기록
 - 다. 허위의 등기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ニ 虚偽の公告(第四百四十条第三項に規定する措置を含む。)
- 二 会計参与 計算書類及びその附属明細書、臨時計算書類並びに会計参与報告に記載し、又は記録すべき重要な事項についての虚偽の記載又は記録
- 三 監査役、監査等委員及び監査委員 監査報告に記載し、又は記録すべき重要な事項についての虚偽の記載又は記録
- 四 会計監査人 会計監査報告に記載し、又は記録すべき重要な事項についての虚偽の記載又は記録

第430条 役員等の連帯責任

役員等が株式会社又は第三者に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場合において、他の役員等も当該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ときは、これらの者は、連帯債務者とする。

第12節 補償契約及び役員等のために締結される保険契約

第430条の2 補償契約

1 株式会社が、役員等に対して次に掲げる費用等の全部又は一部を当該株式会社が補償することを約する契約(以下この条において「補償契約」という。)の内容の決定をするには、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役員等が、その職務の執行に関し、法令の規定に違反したことが疑われ、又は責任の追及に係る請求を受けたことに対処するために支出する費用
 - 二 当該役員等が、その職務の執行に関し、第三者に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場合における次に掲げる損失
 - イ 当該損害を当該役員等が賠償することにより生ずる損失
 - ロ 当該損害の賠償に関する紛争について当事者間に和解が成立したときは、当該役員等が当該和解に基づく金銭を支払うことにより生ずる損失
- 2 株式会社は、補償契約を締結している場合であっても、当該補償契約に基づき、次に掲げる費用等を補償す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前項第一号に掲げる費用のうち通常要する費用の額を超える部分
 - 二 当該株式会社が前項第二号の損害を賠償するとすれば当該役員等が当該株式会社に対して第四百二十三条第一項の責任を負う場合には、同号に掲げる

- 라. 허위의 공고(제440조 제3항의 조치를 포함한다)
2. 회계참여는 계산서류, 그 부속명세서, 임시계산서류 및 회계참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의 기재 또는 기록
 3. 감사, 감사등위원 및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에 기재하거나 또는 기록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의 기재 또는 기록
 4.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의 기재 또는 기록

제430조 임원등의 연대책임

임원등이 주식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다른 임원등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때에는 이들은 연대책무자로 한다.

제12절 보상계약 및 임원 등을 위하여 체결되는 보험계약

제430조의2 보상계약

① 주식회사가 임원 등에 대하여 다음의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이 조에서 '보상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을 결정하려면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

1. 임원 등이 직무집행에 관해 법령을 위반한 것이 의심되거나 또는 책임추궁과 관련된 청구를 받은 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 임원 등이 직무집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는 경우의 다음 손실

가. 손해를 임원 등이 배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나. 손해배상 분쟁에 관해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한 때에는 임원 등이 그 화해에 기하여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② 주식회사는 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보상계약에 따라 다음의 비용 등을 보상할 수 없다.

1. 전항 제1호의 비용 중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2. 주식회사가 전항 제2호의 손해를 배상한다면 해당 임원 등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제423조 제1항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동호의 손실 중 그 책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損失のうち当該責任に係る部分

三 役員等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き悪意又は重大な過失があったことにより前項第二号の責任を負う場合には、同号に掲げる損失の全部

3 補償契約に基づき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費用を補償した株式会社が、当該役員等が自己若しくは第三者の不正な利益を図り、又は当該株式会社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同号の職務を執行したことを知ったときは、当該役員等に対し、補償した金額に相当する金銭を返還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4 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補償契約に基づく補償をした取締役及び当該補償を受けた取締役は、遅滞なく、当該補償についての重要な事実を取締役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前項の規定は、執行役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中「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補償契約」とあるのは、「補償契約」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6 第三百五十六条第一項及び第三百六十五条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第四百十九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四百二十三条第三項並びに第四百二十八条第一項の規定は、株式会社と取締役又は執行役との間の補償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7 民法第百八条の規定は、第一項の決議によってその内容が定められた前項の補償契約の締結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430条の3 役員等のために締結される保険契約

1 株式会社が、保険者との間で締結する保険契約のうち役員等がその職務の執行に関し責任を負うこと又は当該責任の追及に係る請求を受けることによって生ずることのある損害を保険者が填補することを約するものであって、役員等を被保険者とするもの(当該保険契約を締結することにより被保険者である役員等の職務の執行の適正性が著しく損なわれるおそれがない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第三項ただし書において「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という。)の内容の決定をするには、株主総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三百五十六条第一項及び第三百六十五条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第四百十九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並びに第四百二十三条第三項の規定は、株式会社が保険者との間で締結する保険契約のうち役員等がその職務の執行に関し責任を負うこと又は当該責任の追及に係る請求を受けることによって生ずることのある損

임과 관련된 부분

3. 임원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 제2호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동호의 손실의 전부
- ③ 보상계약에 기하여 제1항 제1호의 비용을 보상한 주식회사가 임원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동호의 직무를 집행하였음을 안 때에는 그 임원 등에 대하여 보상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이사회설치회사에서는 보상계약에 기한 보상을 한 이사 및 보상을 받은 이사는 지체없이 해당 보상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전항의 규정은 집행임원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 중 '이사회설치회사에서는 보상계약'은 '보상계약'으로 한다.
- ⑥ 제356조 제1항 및 제365조 제2항(이 규정들을 제41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3조 제3항, 제428조 제1항은 주식회사와 이사 또는 집행임원 간의 보상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민법 제108조는 제1항의 결의에 의해 그 내용이 정해진 전항의 보상계약의 체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0조의3 임원 등을 위해 체결되는 보험계약

- ① 주식회사가 보험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보험계약 중 임원 등이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책임을 지거나 또는 그 책임추궁에 관한 청구를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전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것(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임원 등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이 현저히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항 단서에서 '임원등 배상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을 결정하려면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 ② 제356조 제1항 및 제365조 제2항(이러한 규정들을 제41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23조 제3항은 주식회사가 보험자와의 사이에 체결하는 보험계약 중 임원 등이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책임을 지거나 그 책임추궁에 관한 청구를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전할 것을

害を保険者が填補することを約するものであって、取締役又は執行役を被保険者とするものの締結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3 民法第百八条の規定は、前項の保険契約の締結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ただし、当該契約が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である場合には、第一項の決議によってその内容が定められたときに限る。

第5章 計算等

第1節 会計の原則

第431条

株式会社の会計は、一般に公正妥当と認められる企業会計の慣行に従うものとする。

第2節 会計帳簿等

第1款 会計帳簿

第432条 会計帳簿の作成及び保存

- 1 式会社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適時に、正確な会計帳簿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株式会社は、会計帳簿の閉鎖の時から十年間、その会計帳簿及びその事業に関する重要な資料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433条 会計帳簿の閲覧等の請求

- 1 総株主(株主総会において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の全部につき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を除く。)の議決権の百分の三(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議決権を有する株主又は発行済株式(自己株式を除く。)の百分の三(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数の株式を有する株主は、株式会社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請

약정하는 것으로서, 이사 또는 집행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것의 체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108조는 전항의 보험계약 체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계약이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결의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정해진 때에 한한다.

제5장 계산 등

제1절 회계의 원칙

제431조

주식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관행에 의한다.

제2절 회계장부 등

제1관 회계장부

제432조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존

- ① 주식회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주식회사는 회계장부를 폐쇄한 때로부터 10년간 그 회계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33조 회계장부열람 등의 청구

- ① 총주주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제외한다) 의결권의 100분의 3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 또는 발행주식총수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의 100분의 3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주식수를 가진 주주는 주식회사의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구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求の理由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会計帳簿又はこれに関する資料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二 会計帳簿又はこれに関する資料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2 前項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株式会社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認められる場合を除き、これ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

一 当該請求を行う株主(以下この項において「請求者」という。)がその権利の確保又は行使に関する調査以外の目的で請求を行ったとき。

二 請求者が当該株式会社の業務の遂行を妨げ、株主の共同の利益を害する目的で請求を行ったとき。

三 請求者が当該株式会社の業務と実質的に競争関係にある事業を営み、又はこれに従事するものであるとき。

四 請求者が会計帳簿又はこれに関する資料の閲覧又は謄写によって知り得た事実を利益を得て第三者に通報するため請求したとき。

五 請求者が、過去二年以内において、会計帳簿又はこれに関する資料の閲覧又は謄写によって知り得た事実を利益を得て第三者に通報したこと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3 株式会社の親会社社員は、そ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会計帳簿又はこれに関する資料について第一項各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請求の理由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項の親会社社員について第二項各号のいずれかに規定する事由があるときは、裁判所は、前項の許可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434条 会計帳簿の提出命令

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訴訟の当事者に対し、会計帳簿の全部又は一部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1. 회계장부 또는 이에 관한 자료가 서면으로 작성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회계장부 또는 이에 관한 자료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고 있는 때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 ② 전항의 청구가 있었던 때 주식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청구를 한 주주(이하 이 항에서 “청구자”라 한다)가 그 권리의 확보 또는 행사에 관한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청구한 때
 2. 청구자가 주식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청구한 때
 3. 청구자가 주식회사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일 때
 4. 청구자가 회계장부 또는 이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로 이익을 얻고 제3자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청구한 때
 5. 청구자가 과거 2년 내에 회계장부 또는 이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로 이익을 얻고 제3자에게 통보한 적이 있는 때
- ③ 주식회사의 모회사 사원은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계장부 또는 이에 관한 자료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구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④ 전항의 모회사 사원이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전항의 허가를 할 수 없다.

제434조 회계장부의 제출명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회계장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第2款 計算書類等

第435条 計算書類等の作成及び保存

- 1 株式会社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株式会社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各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貸借対照表、損益計算書その他株式会社の財産及び損益の状況を示すために必要かつ適当な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及び事業報告並びにこれらの附属明細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計算書類及び事業報告並びにこれらの附属明細書は、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することができる。
- 4 株式会社は、計算書類を作成した時から十年間、当該計算書類及びその附属明細書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436条 計算書類等の監査等

- 1 監査役設置会社(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を含み、会計監査人設置会社を除く。)においては、前条第二項の計算書類及び事業報告並びにこれらの附属明細書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監査役の監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 2 会計監査人設置会社においては、次の各号に掲げるもの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各号に定める者の監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前条第二項の計算書類及びその附属明細書 監査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会、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委員会)及び会計監査人
 - 二 前条第二項の事業報告及びその附属明細書 監査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会、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委員会)
- 3 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前条第二項の計算書類及び事業報告並びにこれらの附属明細書(第一項又は前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第一項又は前項の監査を受けたもの)は、取締役会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제2관 계산서류 등

제435조 계산서류 등의 작성 및 보존

- ① 주식회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일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주식회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계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주식회사의 재산 및 손익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적당한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계산서류,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는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 ④ 주식회사는 계산서류를 작성한 때로부터 10년간 그 계산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36조 계산서류등의 감사등

- ① 감사설치회사(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한정하는 뜻의 정관 규정이 있는 주식회사를 포함하고 회계감사인설치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전조 제2항의 계산서류,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의 경우 다음 각호의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호에 규정하는 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전조 제2항의 계산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 : 감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회,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및 회계감사인
 2. 전조 제2항의 사업보고 및 그 부속명세서 : 감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회,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 ③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 전조 제2항의 계산서류,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제1항 또는 전항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전항의 감사를 받은 것)는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第437条 計算書類等の株主への提供

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取締役は、定時株主総会の招集の通知に際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株主に対し、前条第三項の承認を受けた計算書類及び事業報告(同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報告又は会計監査報告を含む。)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438条 計算書類等の定時株主総会への提出等

1 次の各号に掲げる株式会社においては、取締役は、当該各号に定める計算書類及び事業報告を定時株主総会に提出し、又は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第四百三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監査役設置会社(取締役会設置会社を除く。) 第四百三十六条第一項の監査を受けた計算書類及び事業報告
- 二 会計監査人設置会社(取締役会設置会社を除く。) 第四百三十六条第二項の監査を受けた計算書類及び事業報告
- 三 取締役会設置会社 第四百三十六条第三項の承認を受けた計算書類及び事業報告
-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以外の株式会社 第四百三十五条第二項の計算書類及び事業報告

2 前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又は提供された計算書類は、定時株主総会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3 取締役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又は提供された事業報告の内容を定時株主総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439条 会計監査人設置会社の特則

会計監査人設置会社については、第四百三十六条第三項の承認を受けた計算書類が法令及び定款に従い株式会社の財産及び損益の状況を正しく表示してい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場合には、前条第二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取締役は、当該計算書類の内容を定時株主総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440条 計算書類の公告

1 株式会社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定時株主総会の終結後遅滞なく、貸借対照表(大会社にあっては、貸借対照表及び損益計算書)を公告しなければ

제437조 계산서류 등의 주주에 대한 제공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전조 제3항의 승인을 받은 계산서류 및 사업보고서(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38조 계산서류 등의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제출 등

① 다음 각호의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는 각호의 계산서류 및 사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1. 제436조 제1항의 감사설치회사(이사회설치회사는 제외한다) : 제436조 제1항의 감사를 받은 계산서류 및 사업보고서
2.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이사회설치회사는 제외한다) : 제436조 제2항의 감사를 받은 계산서류 및 사업보고서
3. 이사회설치회사 : 제436조 제3항의 승인을 받은 계산서류 및 사업보고서
4. 전3호 이외의 주식회사 : 제435조 제2항의 계산서류 및 사업보고서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제공된 계산서류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제공된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9조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의 특칙

회계감사인설치회사에 관하여는 제436조 제3항의 승인을 받은 계산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의 재산 및 손익의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사는 계산서류의 내용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0조 계산서류의 공고

① 주식회사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대회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공고하여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公告方法が第九百三十九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方法である株式会社は、前項に規定する貸借対照表の要旨を公告することで足りる。

3 前項の株式会社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定時株主総会の終結後遅滞なく、第一項に規定する貸借対照表の内容である情報を、定時株主総会の終結の日後五年を経過する日までの間、継続して電磁的方法により不特定多数の者が提供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状態に置く措置をと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前二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4 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有価証券報告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株式会社については、前三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441条 臨時計算書類

1 株式会社は、最終事業年度の直後の事業年度に属する一定の日(以下この項において「臨時決算日」という。)における当該株式会社の財産の状況を把握するため、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もの(以下「臨時計算書類」という。)を作成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臨時決算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

二 臨時決算日の属する事業年度の初日から臨時決算日までの期間に係る損益計算書

2 第四百三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監査役設置会社又は会計監査人設置会社においては、臨時計算書類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監査役又は会計監査人(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会及び会計監査人、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委員会及び会計監査人)の監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3 取締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臨時計算書類(前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同項の監査を受けたもの)は、取締役会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4 次の各号に掲げる株式会社においては、当該各号に定める臨時計算書類は、株主総会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臨時計算書類が法令及び定款に従い株式会社の財産及び損益の状況を正しく表示してい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아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공고방법이 제93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인 주식회사는 전항에 규정하는 대차대조표의 요지를 공고하면 된다.

③ 전항의 주식회사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후 지체없이 제1항에 규정한 대차대조표의 내용인 정보를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일 후 5년간 계속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전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전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1조 임시계산서류

① 주식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직후의 사업연도에 속한 일정한 날 (이하 이 항에서 “임시결산일”이라 한다) 의 주식회사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것 (이하 “임시계산서류”라 한다) 을 작성할 수 있다.

1. 임시결산일의 대차대조표

2. 임시결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첫날부터 임시결산일까지 기간의 손익계산서

② 제436조 제1항의 감사설치회사 또는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의 경우 임시계산서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또는 회계감사인(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회 및 회계감사인,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및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 임시계산서류 (전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감사를 받은 것) 는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주식회사의 경우 각호의 임시계산서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임시계산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의 재산 및 손익의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 一 第四百三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監査役設置会社又は会計監査人設置会社(いずれも取締役会設置会社を除く。) 第二項の監査を受けた臨時計算書類
- 二 取締役会設置会社 前項の承認を受けた臨時計算書類
-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以外の株式会社 第一項の臨時計算書類

第442条 計算書類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 1 株式会社は、次の各号に掲げるもの(以下この条において「計算書類等」という。)を、当該各号に定める期間、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各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及び事業報告並びにこれらの附属明細書(第四百三十六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報告又は会計監査報告を含む。) 定時株主総会の日の一週間(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二週間) 前の日(第三百十九条第一項の場合にあつては、同項の提案があつた日) から五年間
 - 二 臨時計算書類(前条第二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報告又は会計監査報告を含む。) 臨時計算書類を作成した日から五年間
- 2 株式会社は、次の各号に掲げる計算書類等の写しを、当該各号に定める期間、その支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計算書類等が電磁的記録で作成されている場合であつて、支店における次項第三号及び第四号に掲げる請求に応じることが可能とするための措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とってい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前項第一号に掲げる計算書類等 定時株主総会の日の一週間(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二週間) 前の日(第三百十九条第一項の場合にあつては、同項の提案があつた日) から三年間
 - 二 前項第二号に掲げる計算書類等 同号の臨時計算書類を作成した日から三年間
- 3 株主及び債権者は、株式会社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株式会社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計算書類等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又は当該書面の写しの閲覧の請求
 - 二 前号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 三 計算書類等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

1. 제436조 제1항의 감사설치회사 또는 회계감사인설치회사 (모두 이사회설치회사는 제외한다) : 제2항의 감사를 받은 임시계산서류
2. 이사회설치회사 : 전항의 승인을 받은 임시계산서류
3. 전2호 이외의 주식회사 : 제1항의 임시계산서류

제442조 계산서류등의 비치 및 열람 등

① 주식회사는 다음 각호의 것 (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류등”이라 한다) 을 각호의 기간 동안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계산서류,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43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 정기주주총회일 1주간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2주간) 전날 (제319조 제1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제안이 있었던 날) 로부터 5년간

2. 임시계산서류 (전조 제2항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 임시계산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간

② 주식회사는 다음 각호의 계산서류등의 사본을 각호의 기간 동안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서류등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로 지점에서 다음 항 제3호 및 제4호의 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따르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항 제1호의 계산서류등 : 정기주주총회일 1주간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2주간) 전날 (제319조 제1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제안이 있었던 날) 로부터 3년간

2. 전항 제2호의 계산서류등 : 동호의 임시계산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③ 주주 및 채권자는 주식회사의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주식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산서류등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그 서면 또는 사본의 열람 청구
2. 전호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
3. 계산서류등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の請求
四 前号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って株式会社の定め
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4 株式会社の親会社社員は、そ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
所の許可を得て、当該株式会社の計算書類等について前項各号に掲げる請求を
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同項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
株式会社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443条 計算書類等の提出命令

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訴訟の当事者に対し、計算書類及びその附
属明細書の全部又は一部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3款 連結計算書類

第444条

- 1 会計監査人設置会社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各事業年度に係る連
結計算書類(当該会計監査人設置会社及びその子会社から成る企業集団の財産
及び損益の状況を示すために必要かつ適当な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をいう。以下同じ。)を作成することができる。
- 2 連結計算書類は、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することができる。
- 3 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大会社であって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第一
項の規定により有価証券報告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
のは、当該事業年度に係る連結計算書類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連結計算書類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監査役(監査等委員会設置
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会、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委員会)
及び会計監査人の監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 5 会計監査人設置会社が取締役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は、前項の監査を受
けた連結計算書類は、取締役会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 6 会計監査人設置会社が取締役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は、取締役は、定時株
主総会の招集の通知に際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株主に対し、前項
の承認を受けた連結計算書類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 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의 열람 청구
4. 전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주식회사가 정한 것에 따라 제공하는 것의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청구
- ④ 주식회사의 모회사 사원은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하여 전항 각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동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주식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3조 계산서류 등의 제출명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계산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관 연결계산서류

제444조

- ① 회계감사인설치회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연결계산서류(회계감사인설치회사 및 그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의 재산 및 손익 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적당한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연결계산서류는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 ③ 사업연도의 말일에 대회사로서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회사는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계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연결계산서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회,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및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⑤ 회계감사인설치회사가 이사회설치회사인 경우 전항의 감사를 받은 연결계산서류는 이사회설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회계감사인설치회사가 이사회설치회사인 경우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전항의 승인을 받은 연결계산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7 次の各号に掲げる会計監査人設置会社においては、取締役は、当該各号に定める連結計算書類を定時株主総会に提出し、又は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各号に定める連結計算書類の内容及び第四項の監査の結果を定時株主総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取締役会設置会社である会計監査人設置会社：第五項の承認を受けた連結計算書類
- 二 前号に掲げるもの以外の会計監査人設置会社：第四項の監査を受けた連結計算書類

第3節 資本金の額等

第1款 総則

第445条 資本金の額及び準備金の額

- 1 株式会社の資本金の額は、この法律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設立又は株式の発行に際して株主となる者が当該株式会社に対して払込み又は給付をした財産の額とする。
- 2 前項の払込み又は給付に係る額の二分の一を超えない額は、資本金として計上しないことができる。
- 3 前項の規定により資本金として計上しないこととした額は、資本準備金として計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剰余金の配当をする場合には、株式会社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剰余金の配当により減少する剰余金の額に十分の一を乗じて得た額を資本準備金又は利益準備金(以下「準備金」と総称する。)として計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5 合併、吸収分割、新設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又は株式交付に際して資本金又は準備金として計上すべき額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
- 6 定款又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第三百六十一条第一項第三号、第四号若しくは第五号口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又は報酬委員会による第四百九条第三項第三号、第四号若しくは第五号口に定める事項についての決定に基づく株式の発行により資本金又は準備金として計上すべき額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

⑦ 다음 각호의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의 경우 이사는 각호의 연결계산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각호의 연결계산서류의 내용 및 제4항의 감사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설치회사인 회계감사인설치회사 : 제5항의 승인을 받은 연결계산서류
2. 전호 이외의 회계감사인설치회사 : 제4항의 감사를 받은 연결계산서류

제3절 자본금 등

제1관 총칙

제445조 자본금의 액 및 준비금의 액

① 주식회사 자본금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설립 또는 주식발행시 주주가 된 자가 주식회사에 납입 또는 급부한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납입 또는 급부된 가액 중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액은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된 가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주식회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에 10분의 1을 곱하여 얻은 가액을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총칭한다)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⑤ 합병, 흡수분할, 신설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부 시 자본금이나 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가액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⑥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제361조 제1항 제3호, 제4호 혹은 제5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 또는 보수위원회에 의한 제409조 제3항 제3호, 제4호 혹은 제5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결정에 기한 주식의 발행에 의하여 자본금 또는 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定める。

第446条 剰余金の額

株式会社の剰余金の額は、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額の合計額から第五号から第七号までに掲げる額の合計額を減じて得た額とする。

一 最終事業年度の末日におけるイ及びロに掲げる額の合計額からハからホまでに掲げる額の合計額を減じて得た額

イ 資産の額

ロ 自己株式の帳簿価額の合計額

ハ 負債の額

ニ 資本金及び準備金の額の合計額

ホ ハ及びニ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各勘定科目に計上した額の合計額

二 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自己株式の処分を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自己株式の対価の額から当該自己株式の帳簿価額を控除して得た額

三 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資本金の額の減少を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減少額（次条第一項第二号の額を除く。）

四 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準備金の額の減少を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減少額（第四百四十八条第一項第二号の額を除く。）

五 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第一百七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自己株式の消却を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自己株式の帳簿価額

六 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剰余金の配当をした場合における次に掲げる額の合計額

イ 第四百五十四条第一項第一号の配当財産の帳簿価額の総額（同条第四項第一号に規定する金銭分配請求権を行使した株主に割り当てた当該配当財産の帳簿価額を除く。）

ロ 第四百五十四条第四項第一号に規定する金銭分配請求権を行使した株主に交付した金銭の額の合計額

ハ 第四百五十六条に規定する基準未満株式の株主に支払った金銭の額の合計額

七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各勘定科目に計上した額の

제446조 잉여금의 액

주식회사 잉여금은 제1호 내지 제4호 가액의 합계액으로부터 제5호 내지 제7호 가액의 합계액을 빼서 얻은 가액으로 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일의 가목 및 나목 가액의 합계액으로부터 다목 내지 마목 가액의 합계액을 빼서 얻은 가액
 - 가. 자산의 액
 - 나. 자기주식 장부가액의 합계액
 - 다. 부채의 액
 - 라. 자본금 및 준비금의 합계액
 - 마. 다목 및 라목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각 계정과목에 계상한 가액의 합계액
2. 최근 사업연도의 말일 후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대가로부터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공제하여 얻은 가액
3. 최근 사업연도의 말일 후에 자본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당해 감소액 (다음 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은 제외한다)
4. 최근 사업연도의 말일 후에 준비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당해 감소액 (제448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은 제외한다)
5. 최근 사업연도의 말일 후에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6. 최근 사업연도의 말일 후에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에는 다음 가액의 합계액

가. 제454조 제1항 제1호의 배당재산 장부가액의 총액 (동조 제4항 제1호의 금전분배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배정한 배당재산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나. 제454조 제4항 제1호의 금전분배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교부한 금전 가액의 합계액

다. 제456조의 기준미만주식 주주에게 지급한 금전 가액의 합계액

7. 전2호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각 계정과목에 계상한 가액의 합계액

合計額

第2款 資本金の額の減少等

第1目 資本金の額の減少等

第447条 資本金の額の減少

1 株式会社は、資本金の額を減少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減少する資本金の額
- 二 減少する資本金の額の全部又は一部を準備金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準備金とする額

三 資本金の額の減少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

2 前項第一号の額は、同項第三号の日における資本金の額を超えてはならない。

3 株式会社が株式の発行と同時に資本金の額を減少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資本金の額の減少の効力が生ずる日後の資本金の額が当該日前の資本金の額を下回らないときにおける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主総会の決議」とあるのは、「取締役の決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決議)」とする。

第448条 準備金の額の減少

1 株式会社は、準備金の額を減少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減少する準備金の額
- 二 減少する準備金の額の全部又は一部を資本金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資本金とする額

三 準備金の額の減少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

2 前項第一号の額は、同項第三号の日における準備金の額を超えてはならない。

3 株式会社が株式の発行と同時に準備金の額を減少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準備金の額の減少の効力が生ずる日後の準備金の額が当該日前の準備金の額を下回らないときにおける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主総会の決議」とあるのは、「取締役の決定(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決議)」とする。

제2관 자본금의 감소 등

제1목 자본금의 감소 등

제447조 자본금의 감소

①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하는 자본금의 금액
2. 감소하는 자본금의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준비금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및 준비금으로 하는 금액
3. 자본금 감소의 효력발생일

② 전항 제1호의 금액은 동항 제3호의 날의 자본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주식회사가 주식의 발행과 동시에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후의 자본금이 그 날 전의 자본금보다 적지 아니한 때의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중 “주주총회결의”는 “이사의 결정(이사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으로 한다.

제448조 준비금의 감소

① 주식회사는 준비금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하는 준비금의 금액
2. 감소하는 준비금의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및 자본금으로 하는 금액
3. 준비금 감소의 효력발생일

② 전항 제1호의 금액은 동항 제3호의 날의 준비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주식회사가 주식의 발행과 동시에 준비금을 감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준비금 감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후의 준비금이 그 날 전의 준비금의 금액 보다 적지 아니한 때의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중 “주주총회결의”는 “이사의 결정(이사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으로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第449条 債権者の異議

1 株式会社が資本金又は準備金(以下この条において「資本金等」という。)の額を減少する場合(減少する準備金の額の全部を資本金とする場合を除く。)には、当該株式会社の債権者は、当該株式会社に対し、資本金等の額の減少について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準備金の額のみを減少する場合であって、次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定時株主総会において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こと。
 - 二 前条第一項第一号の額が前号の定時株主総会の日(第四百三十九条前段に規定する場合にあつては、第四百三十六条第三項の承認があつた日)における欠損の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を超えないこと。
- 2 前項の規定により株式会社の債権者が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当該株式会社は、次に掲げる事項を官報に公告し、かつ、知れている債権者には、各別にこれを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三号の期間は、一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当該資本金等の額の減少の内容
 - 二 当該株式会社の計算書類に関する事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 三 債権者が一定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旨
-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式会社が同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官報のほか、第九百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従い、同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公告方法によりす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よる各別の催告は、することを要しない。
- 4 債権者が第二項第三号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なかったときは、当該債権者は、当該資本金等の額の減少について承認をしたものとみなす。
- 5 債権者が第二項第三号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たときは、株式会社は、当該債権者に対し、弁済し、若しくは相当の担保を提供し、又は当該債権者に弁済を受け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信託会社等(信託会社及び信託業務を営む金融機関(金融機関の信託業務の兼営等に関する法律(昭和十八年法律第四十三号)第一条第一項の認可を受けた金融機関をいう。)をいう。以下同じ。)に相当の財産を信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資本金等の額の減少をしても当該債権者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6 次の各号に掲げるもの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にその効力を生ずる。ただし、

제449조 채권자의 이익

① 주식회사가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감소하는 경우(감소한 준비금의 금액 전부를 자본금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주식회사에 자본금등의 감소에 관하여 이익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준비금의 금액만을 감소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
2. 전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이 전호의 정기주주총회일(제439조 전단의 경우에는 제436조 제3항의 승인이 있었던 날)의 결손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전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이익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별히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기간은 1월을 밑돌 수 없다.

1. 자본금등의 금액 감소의 내용
2. 주식회사의 계산서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3.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익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가 동항의 공고를 관보 외에 제9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정함에 따라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하는 때에는 전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최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채권자가 제2항 제3호의 기간 내에 이익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자본금등의 금액 감소에 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채권자가 제2항 제3호의 기간 내에 이익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회사는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목적으로 신탁회사 등(신탁회사 및 신탁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금융기관의 신탁업무를 겸업 등에 관한 법률(1943년 법률 제43호) 제1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등의 금액이 감소되어도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는 당해 각호의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2항 내지 전항의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第二項から前項までの規定による手続が終了してい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一 資本金の額の減少 第四百四十七条第一項第三号の日

二 準備金の額の減少 前条第一項第三号の日

7 株式会社は、前項各号に定める日前は、いつでも当該日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第2目 資本金の額の増加等

第450条 資本金の額の増加

1 株式会社は、剰余金の額を減少して、資本金の額を増加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減少する剰余金の額

二 資本金の額の増加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

2 前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第一号の額は、同項第二号の日における剰余金の額を超えてはならない。

第451条 準備金の額の増加

1 株式会社は、剰余金の額を減少して、準備金の額を増加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減少する剰余金の額

二 準備金の額の増加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

2 前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第一号の額は、同項第二号の日における剰余金の額を超えてはならない。

第3目 剰余金についてのその他の処分

第452条

株式会社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損失の処理、任意積立金の積立てその他の剰余金の処分(前目に定めるもの及び剰余金の配当その他株式会社の財産を処分するものを除く。)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剰余金の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의 금액 감소 : 제447조 제1항 제3호의 날
 2. 준비금의 금액 감소 : 전조 제1항 제3호의 날
- ⑦ 주식회사는 전항 각호의 날 전에는 언제든지 당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목 자본금의 증가 등

제450조 자본금의 증가

- ① 주식회사는 잉여금을 감소하여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하는 잉여금의 금액
 2. 자본금의 금액의 증가가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
- ② 전항 각호 사항의 결정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동항 제2호의 날의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451조 준비금의 증가

- ① 주식회사는 잉여금을 감소하여 준비금을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하는 잉여금의 금액
 2. 준비금의 금액의 증가가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
- ② 전항 각호 사항의 결정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동항 제2호의 날의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3목 잉여금에 대한 기타 처분

제452조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손실의 처리, 임의적립금의 적립 그 밖의 잉여금의 처분(전 목에 정한 것 및 잉여금의 배당 그 밖에 주식회사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잉여금 처분액 그 밖의 시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処分の額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4節 剰余金の配当

第453条 株主に対する剰余金の配当

株式会社は、その株主(当該株式会社を除く。)に対し、剰余金の配当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454条 剰余金の配当に関する事項の決定

1 株式会社は、前条の規定による剰余金の配当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都度、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配当財産の種類(当該株式会社の株式等を除く。)及び帳簿価額の総額

二 株主に対する配当財産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三 当該剰余金の配当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剰余金の配当について内容の異なる二以上の種類の株式を発行しているときは、株式会社は、当該種類の株式の内容に応じ、同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とし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一 ある種類の株式の株主に対して配当財産の割当てをし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株式の種類

二 前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配当財産の割当てについて株式の種類ごとに異なる取扱いを行う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異なる取扱いの内容

3 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は、株主(当該株式会社及び前項第一号の種類の株式の株主を除く。)の有する株式の数(前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各種類の株式の数)に応じて配当財産を割り当てること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4 配当財産が金銭以外の財産であるときは、株式会社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一号の期間の末日は、第一項第三号の日以前の日で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株主に対して金銭分配請求権(当該配当財産に代えて金銭を交付することを株式会社にに対して請求する権利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を与えるときは、その旨及び金銭分配請求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

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절 잉여금의 배당

제453조 주주에 대한 잉여금의 배

(당) 주식회사는 그 주주 (당해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제454조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의 결정

① 주식회사가 전조에 따라 잉여금의 배당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때마다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배당재산의 종류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 및 장부가액의 총액
2. 주주에 대한 배당재산의 배당에 관한 사항
3. 잉여금 배당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② 전항의 경우 잉여금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2이상의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때에는 주식회사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동항 제2호의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재산을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및 주식의 종류
2. 전항의 사항 외에 배당재산의 배정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마다 다른 취급을 하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및 다른 취급의 내용

③ 제1항 제2호의 사항을 정할 때에는 주주 (당해 주식회사 및 전항 제1호의 종류주식의 주주는 제외한다) 가 가진 주식의 수 (전항 제2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각 종류주식의 수) 에 따라 배당재산을 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④ 배당재산이 금전 이외의 재산인 때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기간의 말일은 제1항 제3호의 날 이전의 날로 하여야 한다.

1. 주주에게 금전분배청구권 (배당재산에 갈음하여 금전을 교부할 것을 주식회사에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을 부여하는 때에는 그 뜻 및 금전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二 一定の数未満の数の株式を有する株主に対して配当財産の割当てをし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その数

5 取締役会設置会社は、一事業年度の途中において一回に限り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剰余金の配当(配当財産が金銭であ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中間配当」という。)を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ける中間配当についての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主総会」とあるのは、「取締役会」とする。

第455条 金銭分配請求権の行使

1 前条第四項第一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式会社は、同号の期間の末日の二十日前までに、株主に対し、同号に掲げ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株式会社は、金銭分配請求権を行使した株主に対し、当該株主が割当てを受けた配当財産に代えて、当該配当財産の価額に相当する金銭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をもって当該配当財産の価額とする。

一 当該配当財産が市場価格のある財産である場合：当該配当財産の市場価格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株式会社の申立てにより裁判所が定める額

第456条 基準株式数を定めた場合の処理

第四百五十四条第四項第二号の数(以下この条において「基準株式数」という。)を定めた場合には、株式会社は、基準株式数に満たない数の株式(以下この条において「基準未満株式」という。)を有する株主に対し、前条第二項後段の規定の例により基準株式数の株式を有する株主が割当てを受けた配当財産の価額として定めた額に当該基準未満株式の数の基準株式数に対する割合を乗じて得た額に相当する金銭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457条 配当財産の交付の方法等

1 配当財産(第四百五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支払う金銭及び前条の規定により支払う金銭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は、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た株主(登録株式質権者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住所又は株

2. 일정한 수 미만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배당재산을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및 수

⑤ 이사회설치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결의로 잉여금의 배당(배당재산이 금전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배당에 대한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중 “주주총회”는 “이사회”로 한다.

제455조 금전분배청구권의 행사

- ① 전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주식회사는 동호의 기간 말일의 20일 전까지 주주에게 동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주식회사는 금전분배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주주가 배정받은 배당재산에 같음하여 배당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마다 당해 각호의 가액을 배당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배당재산이 시장가격이 있는 재산인 경우 : 배당재산의 시장가격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2. 전호 이외의 경우 :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제456조 기준주식수를 정한 경우의 처리

제454조 제4항 제2호의 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주식수”라고 한다)를 정한 경우 주식회사는 기준주식수에 미달하는 수의 주식(이하 이 조에서 “기준미만주식”이라 한다)을 가진 주주에게 전조 제2항 후단의 예에 따라 기준주식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배정받은 배당재산의 가액으로서 정한 금액에 기준미만주식수의 기준주식수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가액에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57조 배당재산의 교부방법 등

- ① 배당재산(제455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금전 및 전조에 따라 지급한 금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주주(등록주식질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소 또는 주주가 주식회사에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主が株式会社に通知した場所(第三項において「住所等」という。)において、これ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る配当財産の交付に要する費用は、株式会社の負担とする。ただし、株主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ってその費用が増加したときは、その増加額は、株主の負担とする。

3 前二項の規定は、日本に住所等を有しない株主に対する配当財産の交付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458条 適用除外

第四百五十三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は、株式会社の純資産額が三百万円を下回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5節 剰余金の配当等を決定する機関の特則

第459条 剰余金の配当等を取締役会が決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

1 会計監査人設置会社(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以外の取締役)の任期の末日が選任後一年以内に終了する事業年度のうち最終のものに関する定時株主総会の終結の日後の日であるもの及び監査役設置会社であつて監査役会設置会社でないものを除く。)は、次に掲げる事項を取締役会(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は第四百三十六条第三項の取締役会に限る。)が定めることができる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 一 第一百六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をする場合以外の場合における第四百五十六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
- 二 第四百四十九条第一項第二号に該当する場合における第四百四十八条第一項第一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事項
- 三 第四百五十二条後段の事項
- 四 第四百五十四条第一項各号及び同条第四項各号に掲げる事項。ただし、配当財産が金銭以外の財産であり、かつ、株主に対して金銭分配請求権を与えないこととする場合を除く。

2 前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は、最終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が法令及び定款に従い株式会社の財産及び損益の状況を正しく表示しているものとして法務

통지한 장소 (제3항에서 “주소등”이라 한다) 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배당재산의 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주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그 비용이 증가한 때 그 증가액은 주주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전2항은 일본에 주소등을 가지지 아니하는 주주에 대한 배당재산의 교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8조 적용제외

내지 전조는 주식회사의 순자산액이 3백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절 잉여금의 배당 등을 결정하는 기관의 특칙

제459조 잉여금의 배당등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뜻의 정관규정

①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이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이외의 이사)의 임기말일이 선임 후 1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최종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 후의 날인 자 및 감사설치회사로서 감사회 설치회사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이사회(제2호의 사항의 관해서는 제436조 제3항의 이사회로 한한다)가 정할 수 있는 뜻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1. 제160조 제1항의 결정을 하는 때가 아닌 경우에는 제156조 제1항 각호의 사항
2. 제44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4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3. 제452조 후단의 사항
4. 제454조 제1항 각호 및 동조 제4항 각호의 사항. 다만, 배당재산이 금전 이외의 재산이고 주주에게 금전분배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전항에 따른 정관 규정은 최근 사업연도의 계산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의 재산 및 손익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행규칙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省令で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場合に限り、その効力を有する。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ける第四百四十九条第一項第一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号中「定時株主総会」とあるのは、「定時株主総会又は第四百三十六条第三項の取締役会」とする。

第460条 株主の権利の制限

1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株式会社は、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は定めない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は、最終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が法令及び定款に従い株式会社の財産及び損益の状況を正しく表示してい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場合に限り、その効力を有する。

第6節 剰余金の配当等に関する責任

第461条 配当等の制限

1 次に掲げる行為により株主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除く。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の帳簿価額の総額は、当該行為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における分配可能額を超えてはならない。

一 第百三十八条第一号ハ又は第二号ハの請求に応じて行う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買取り

二 第百五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基づく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取得(第百六十三条に規定する場合又は第百六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株式会社による株式の取得に限る。)

三 第百五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基づく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取得

四 第百七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取得

五 第百七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基づく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買取り

六 第百九十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買取り

七 第二百三十四条第四項(第二百三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買取り

八 剰余金の配当

2 前項に規定する「分配可能額」とは、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額の合計額か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 제44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호 중 “정기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436조 제3항의 이사회”로 한다.

제460조 주주의 권리 제한

- ① 전조 제1항에 따른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 주식회사는 동항 각호의 사항을 주주총회결의로써는 정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따른 정관 규정은 최근 사업연도의 계산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의 재산 및 손익의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6절 잉여금의 배당 등에 관한 책임

제461조 배당 등의 제한

- ① 다음의 행위에 따라 주주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의 장부가액 총액은 그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분배가능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제138조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의 청구에 응하여 행한 주식회사의 주식매수
 2. 제156조 제1항의 결정에 의한 주식회사의 주식취득 (제163조 또는 제165조 제1항 경우의 주식회사에 의한 주식취득에 한한다)
 3. 제157조 제1항의 결정에 의한 주식회사의 주식취득
 4. 제173조 제1항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취득
 5. 제176조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주식회사의 주식매수
 6. 제197조 제3항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매수
 7. 제234조 제4항 (제2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매수
 8. 잉여금의 배당
- ② 전항의 “분배가능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부터 제3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ら第三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額の合計額を減じて得た額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

- 一 剰余金の額
- 二 臨時計算書類につき第四百四十一条第四項の承認(同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同条第三項の承認)を受けた場合における次に掲げる額
 - イ 第四百四十一条第一項第二号の期間の利益の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各勘定科目に計上した額の合計額
 - ロ 第四百四十一条第一項第二号の期間内に自己株式を処分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自己株式の対価の額
- 三 自己株式の帳簿価額
- 四 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自己株式を処分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自己株式の対価の額
- 五 第二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第四百四十一条第一項第二号の期間の損失の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各勘定科目に計上した額の合計額
- 六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各勘定科目に計上した額の合計額

第462条 剰余金の配当等に関する責任

1 前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株式会社が同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は、当該行為により金銭等の交付を受けた者並びに当該行為に関する職務を行った業務執行者(業務執行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執行役。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その他当該業務執行取締役の行う業務の執行に職務上関与した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及び当該行為が次の各号に掲げるもので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各号に定める者は、当該株式会社に対し、連帯して、当該金銭等の交付を受けた者が交付を受けた金銭等の帳簿価額に相当する金銭を支払う義務を負う。

- 一 前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行為 次に掲げる者
 - イ 第一百五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係る株主総会の決議があつた場合(当該決議によって定められた同項第二号の金銭等の総額が当該決議の日における分配可能額を超える場合に限る。)における当該株主総会に係る総会議案提案取締役(当該株主総会に議案を提案した取締役として法務省

호 내지 제6호의 가액의 합계액을 빼서 얻은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1. 잉여금의 금액
2. 임시계산서류에 대하여 제441조 제4항의 승인 (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
 - 가. 제441조 제1항 제2호의 기간 동안의 이익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각 계정과목에 계상한 가액의 합계액
 - 나. 제441조 제1항 제2호의 기간 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대가액
3.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4. 최근 사업연도의 말일 후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대가액
5. 제2호의 경우 제441조 제1항 제2호의 기간 동안의 손실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각 계정과목에 계상한 가액의 합계액
6. 전3호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각 계정과목에 계상한 가액의 합계액

제462조 잉여금의 배당등에 관한 책임

① 전조 제1항에 위반하여 주식회사가 동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 의해 금전등의 교부를 받은 자 및 당해 행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자(업무집행이사(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집행임원.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외 업무집행이사가 행하는 업무집행에 직무상 관여한 자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당해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자는 주식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금전등의 교부를 받은 자가 교부받은 금전등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1. 전조 제1항 제2호의 행위 : 다음의 자
 - 가. 제156조 제1항의 결정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결의에서 정한 동항 제2호의 금전등의 총액이 결의일의 분배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주주총회에서 의안제안이사(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한 이사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ロ 第一百五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係る取締役会の決議があった場合(当該決議によって定められた同項第二号の金銭等の総額が当該決議の日における分配可能額を超える場合に限る。)における当該取締役会に係る取締役会議案提案取締役(当該取締役会に議案を提案した取締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又は執行役)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二 前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行為 次に掲げる者

イ 第一百五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係る株主総会の決議があった場合(当該決議によって定められた同項第三号の総額が当該決議の日における分配可能額を超える場合に限る。)における当該株主総会に係る総会議案提案取締役

ロ 第一百五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係る取締役会の決議があった場合(当該決議によって定められた同項第三号の総額が当該決議の日における分配可能額を超える場合に限る。)における当該取締役会に係る取締役会議案提案取締役

三 前条第一項第四号に掲げる行為 第一百七十一条第一項の株主総会(当該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定められた同項第一号に規定する取得対価の総額が当該決議の日における分配可能額を超える場合における当該株主総会に限る。)に係る総会議案提案取締役

四 前条第一項第六号に掲げる行為 次に掲げる者

イ 第一百九十七条第三項後段の規定による決定に係る株主総会の決議があった場合(当該決議によって定められた同項第二号の総額が当該決議の日における分配可能額を超える場合に限る。)における当該株主総会に係る総会議案提案取締役

ロ 第一百九十七条第三項後段の規定による決定に係る取締役会の決議があった場合(当該決議によって定められた同項第二号の総額が当該決議の日における分配可能額を超える場合に限る。)における当該取締役会に係る取締役会議案提案取締役

五 前条第一項第七号に掲げる行為 次に掲げる者

イ 第二百三十四条第四項後段(第二百三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

나. 제156조 제1항의 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경우(결의에서 정한 동항 제2호의 금전등의 총액이 결의일의 분배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이사회에서 의안제안이사(이사회에서 의안을 제안한 이사(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전조 제1항 제3호의 행위 : 다음의 자

가. 제157조 제1항의 결정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경우 (결의에 의하여 정해진 동항 제3호의 총액이 결의일의 분배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주주총회에서 총회의안제안이사

나. 제157조 제1항의 결정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었던 경우 (결의에 의하여 정해진 동항 제3호의 총액이 결의일의 분배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이사회에서 이사회회의안제안이사

3. 전조 제1항 제4호의 행위 : 제171조 제1항의 주주총회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정해진 동항 제1호의 취득대가의 총액이 결의일의 배당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주주총회에 한한다) 에서 총회의안제안이사

4. 전조 제1항 제6호의 행위 : 다음의 자

가. 제197조 제3항 후단의 결정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경우 (결의에 의하여 정해진 동항 제2호의 총액이 결의일의 배당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주주총회에서 총회의안제안이사

나. 제197조 제3항 후단의 결정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었던 경우 (결의에 의하여 정해진 동항 제2호의 총액이 결의일의 배당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이사회에서 이사회회의안제안이사

5. 전조 제1항 제7호의 행위 : 다음의 자

가. 제234조 제4항 후단 (제2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決定に係る株主総会の決議があった場合(当該決議によって定められた第二百三十四条第四項第二号(第二百三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総額が当該決議の日における分配可能額を超える場合に限る。)における当該株主総会に係る総会議案提案取締役

- ロ 第二百三十四条第四項後段(第二百三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決定に係る取締役会の決議があった場合(当該決議によって定められた第二百三十四条第四項第二号(第二百三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総額が当該決議の日における分配可能額を超える場合に限る。)における当該取締役会に係る取締役会議案提案取締役
- 六 前条第一項第八号に掲げる行為 次に掲げる者

イ 第四百五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係る株主総会の決議があった場合(当該決議によって定められた配当財産の帳簿価額が当該決議の日における分配可能額を超える場合に限る。)における当該株主総会に係る総会議案提案取締役

ロ 第四百五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係る取締役会の決議があった場合(当該決議によって定められた配当財産の帳簿価額が当該決議の日における分配可能額を超える場合に限る。)における当該取締役会に係る取締役会議案提案取締役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業務執行者及び同項各号に定める者は、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たときは、同項の義務を負わ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業務執行者及び同項各号に定める者の負う義務は、免除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の時における分配可能額を限度として当該義務を免除することについて総株主の同意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463条 株主に対する求償権の制限等

1 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株式会社が第四百六十一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により株主に対して交付した金銭等の帳簿価額の総額が当該行為がその効力を生じた日における分配可能額を超えることにつき善意の株主は、当該株主が交付を受けた金銭等について、前条第一項の金銭を支払った業務執行者及び同項各号に定める者からの求償の請求に応ずる義務を負わない。

의 결정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경우 (결의에 의하여 정해진 제234조 제4항 제2호 (제2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총액이 결의일의 분배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주주총회에서 총회의안제안이사

나. 제234조 제4항 후단 (제2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결정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었던 경우 (결의에 의하여 정해진 제234조 제4항 제2호 (제2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총액이 결의일의 분배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이사회에서 이사회회의안제안이사

6. 전조 제1항 제8호의 행위 : 다음의 자

가. 제454조 제1항의 결정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경우 (결의에 의하여 정해진 배당재산의 장부가액이 결의일의 분배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주주총회에서 총회의안제안이사

나. 제454조 제1항의 결정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었던 경우 (결의에 의하여 정해진 배당재산의 장부가액이 결의일의 분배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이사회에서 이사회의안제안이사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자 및 동향 각호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집행자 및 동향 각호의 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면제할 수 없다. 다만, 전조 제1항 각호 행위시의 분배가능액을 한도로 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3조 주주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 등

① 전조 제1항의 경우 주식회사가 제461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따라 주주에게 교부한 금전 등의 장부가액의 총액이 당해 행위의 효력발생일의 분배가능액을 초과하는 것에 관하여 선의인 주주는 당해 주주가 교부를 받은 금전 등에 관하여 전조 제1항의 금전을 지급한 업무집행자 및 동향 각호의 자로부터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2 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式会社の債権者は、同項の規定により義務を負う株主に対し、その交付を受けた金銭等の帳簿価額(当該額が当該債権者の株式会社に対して有する債権額を超え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債権額)に相当する金銭を支払わせることができる。

第464条 買取請求に応じて株式を取得した場合の責任

1 株式会社が第百十六条第一項又は第百八十二条の四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応じて株式を取得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請求をした株主に対して支払った金銭の額が当該支払の日における分配可能額を超えるときは、当該株式の取得に関する職務を行った業務執行者は、株式会社に対し、連帯して、その超過額を支払う義務を負う。ただし、その者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義務は、総株主の同意がなければ、免除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465条 欠損が生じた場合の責任

1 株式会社が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行為をした日の属する事業年度(その事業年度の直前の事業年度が最終事業年度でないときは、その事業年度の直前の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につき第四百三十八条第二項の承認(第四百三十九条前段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第四百三十六条第三項の承認)を受けた時における第四百六十一条第二項第三号、第四号及び第六号に掲げる額の合計額が同項第一号に掲げる額を超えるときは、当該各号に掲げる行為に関する職務を行った業務執行者は、当該株式会社に対し、連帯して、その超過額(当該超過額が当該各号に定める額を超え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各号に定める額)を支払う義務を負う。ただし、当該業務執行者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第百三十八条第一号ハ又は第二号ハの請求に応じて行う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買取り：当該株式の買取りにより株主に対して交付した金銭等の帳簿価額の総額

二 第百五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基づく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取得(第百六十三条に規定する場合又は第百六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株式会社による株式の取得に限る。)：当該株式の取得により株主に

② 전조 제1항의 경우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동항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주주에게 그 교부를 받은 금전 등의 장부가액 (그 가액이 채권자가 주식회사에 가진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464조 매수청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책임

① 주식회사가 제116조 제1항 또는 제182조의4 제1항의 청구에 응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청구를 한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지급일의 분배가능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주식취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초과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다만 그 자가 그 직무수행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의무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할 수 없다.

제465조 결손이 발생한 경우의 책임

① 주식회사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 (그 사업연도 직전의 사업연도가 최근 사업연도가 아닌 때에는 그 사업연도 직전의 사업연도)의 계산서류에 관하여 제438조 제2항의 승인 (제439조 전단의 경우에는 제436조 제3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461조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가액의 합계액이 동항 제1호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호의 행위에 관한 직무를 행한 업무집행자는 주식회사에 연대하여 그 초과액 (초과액이 각호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가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업무집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8조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의 청구에 응하여 행한 주식회사의 주식매수 : 주식의 매수에 따라 주주에게 교부한 금전 등의 장부가액 총액
2. 제156조 제1항의 결정에 의거한 주식회사의 주식취득 (제163조 또는 제165조 제1항 경우의 주식회사에 의한 주식취득에 한한다) : 주식의 취득에 따라 주주에게 교부한 금전 등의 장부가액 총액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対して交付した金銭等の帳簿価額の総額

三 第一百五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基づく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取得：当該株式の取得により株主に対して交付した金銭等の帳簿価額の総額

四 第一百六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取得：当該株式の取得により株主に対して交付した金銭等の帳簿価額の総額

五 第一百七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取得：当該株式の取得により株主に対して交付した金銭等の帳簿価額の総額

六 第一百七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取得：当該株式の取得により株主に対して交付した金銭等の帳簿価額の総額

七 第一百七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基づく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買取り：当該株式の買取りにより株主に対して交付した金銭等の帳簿価額の総額

八 第一百九十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買取り：当該株式の買取りにより株主に対して交付した金銭等の帳簿価額の総額

九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規定による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買取り：当該株式の買取りにより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者に対して交付した金銭等の帳簿価額の総額

イ 第二百三十四条第四項：同条第一項各号に定める者

ロ 第二百三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百三十四条第四項：株主

十 剰余金の配当(次の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ものを除く。)：当該剰余金の配当についての第四百四十六条第六号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額の合計額

イ 定時株主総会(第四百三十九条前段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定時株主総会又は第四百三十六条第三項の取締役会)において第四百五十四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場合における剰余金の配当

ロ 第四百四十七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ための株主総会において第四百五十四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場合(同項第一号の額(第四百五十六条の規定により基準未満株式の株主に支払う金銭があるときは、その額を合算した額)が第四百四十七条第一項第一号の額を超えない場合であって、同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ない場合に限る。)における剰余金の配当

ハ 第四百四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ための株主総会において第四百五十四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場合(同項第一号の額(第四百五十六条の規定により基準未満株式の株主に支払う金銭があるとき

3. 제157조 제1항의 결정에 의거한 주식회사의 주식취득 : 주식의 취득에 따라 주주에게 교부한 금전 등의 장부가액 총액
4. 제167조 제1항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취득 : 주식의 취득에 따라 주주에게 교부한 금전 등의 장부가액 총액
5.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취득 : 주식의 취득에 따라 주주에게 교부한 금전 등의 장부가액 총액
6. 제173조 제1항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취득 : 주식의 취득에 따라 주주에게 교부한 금전 등의 장부가액 총액
7. 제176조 제1항의 청구에 의거한 주식회사의 주식매수 : 주식의 매수에 따라 주주에게 교부한 금전 등의 장부가액 총액
8. 제197조 제3항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매수 : 주식의 매수에 따라 주주에게 교부한 금전 등의 장부가액 총액
9. 다음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매수 : 주식의 매수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하는 자에게 교부한 금전 등의 장부가액 총액
 - 가. 제234조 제4항 : 동조 제1항 각호의 자
 - 나. 제2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34조 제4항 : 주주
10. 잉여금의 배당 (다음 가목 내지 다목의 것은 제외한다) :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제446조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의 합계액
 - 가. 정기주주총회 (제439조 전단의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436조 제3항의 이사회) 에서 제45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의 잉여금 배당
 - 나. 제44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 제45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 (동항 제1호의 가액 (제456조에 따라 기준미만주식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전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 가액) 이 제447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항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의 잉여금 배당
 - 다. 제448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 제45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 (동항 제1호의 가액 (제456조에 따라 기준미만주식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전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 가액) 이

第2編 株式会社

第6章 定款の変更 / 第7章 事業の譲渡等

は、その額を合算した額) が第四百四十八条第一項第一号の額を超えない場合であって、同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ない場合に限る。) における剰余金の配当

2 前項の義務は、総株主の同意がなければ、免除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6章 定款の変更

第466条

株式会社は、その成立後、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定款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第7章 事業の譲渡等

第467条 事業譲渡等の承認等

株式会社は、次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は、当該行為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以下この章において「効力発生日」という。)の前日までに、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当該行為に係る契約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一 事業の全部の譲渡

二 事業の重要な一部の譲渡(当該譲渡により譲り渡す資産の帳簿価額が当該株式会社の総資産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の五分之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を超えないものを除く。)

二の二 その子会社の株式又は持分の全部又は一部の譲渡(次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場合における譲渡に限る。)

イ 当該譲渡により譲り渡す株式又は持分の帳簿価額が当該株式会社の総資産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の五分之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を超えるとき。

ロ 当該株式会社が、効力発生日において当該子会社の議決権の総数の過半数の議決権を有しないとき。

제448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항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의 잉여금 배당

② 전항의 의무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할 수 없다.

제6장 정관의 변경

제466조

주식회사는 그 성립 후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장 사업양도 등

제467조 사업양도등의 승인 등

주식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하 이 장에서 “효력발생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그 행위에 관한 계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전부 양도
2. 사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 (양도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주식회사의 총자산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의 5분의 1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의2. 그 자회사의 주식,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다음의 모든 것에 해당하는 양도에 한한다)
 - 가. 당해 양도에 의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장부가액이 주식회사의 총자산액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액수의 5분의 1(이것을 하회하는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율)을 넘을 때
 - 나. 주식회사가 효력발생일에 자회사의 의결권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지 않을 때

第2編 株式会社

第7章 事業の譲渡等

- 三 他の会社(外国会社その他の法人を含む。次条において同じ。)の事業の全部の譲受け
- 四 事業の全部の賃貸、事業の全部の経営の委任、他人と事業上の損益の全部を共通にする契約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契約の締結、変更又は解約
- 五 当該株式会社(第二十五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方法により設立したもの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成立後二年以内におけるその成立前から存在する財産であってその事業のために継続して使用するものの取得。ただし、イに掲げる額の口に掲げる額に対する割合が五分の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当該株式会社の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を超えない場合を除く。
 - イ 当該財産の対価として交付する財産の帳簿価額の合計額
 - ロ 当該株式会社の純資産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

2 前項第三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行為をする株式会社が譲り受ける資産に当該株式会社の株式が含まれるときは、取締役は、同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株式に関する事項を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468条 事業譲渡等の承認を要しない場合

- 1 前条の規定は、同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行為(以下この章において「事業譲渡等」という。)に係る契約の相手方が当該事業譲渡等をする株式会社の特別支配会社(ある株式会社の総株主の議決権の十分の九(これを上回る割合を当該株式会社の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を他の会社及び当該他の会社が発行済株式の全部を有する株式会社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法人が有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他の会社をいう。以下同じ。)であ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 2 前条の規定は、同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おいて、第一号に掲げる額の第二号に掲げる額に対する割合が五分の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を超えないときは、適用しない。
- 一 当該他の会社の事業の全部の対価として交付する財産の帳簿価額の合計額
 - 二 当該株式会社の純資産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
- 3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数の株式(前条第一項の株

3. 다른 회사 (외국회사 그 밖의 법인을 포함한다. 다음 조에서 같다) 의 사업의 전부 양수
4. 사업 전부의 임대, 사업전부의 경영위임, 타인과 사업상의 손익 전부를 공통으로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5. 주식회사 (제25조 제1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설립한 주식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의 성립 후 2년 이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한 재산으로서 그 사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의 취득. 다만, 가목의 가액의 나목의 가액에 대한 비율이 5분의 1 (이보다 낮은 비율을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산의 대가로서 교부하는 재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나. 주식회사의 순자산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액

② 전항 제3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한 주식회사가 양수한 자산에 주식회사의株式이 포함된 때에는 이사는 동항의 주주총회에서株式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468조 사업양도등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전조는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 (이하 이 장에서 “사업양도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이 사업양도등을 한 주식회사의 특별지배회사 (어느 주식회사의 총주주 의결권의 10분의 9 (이보다 높은 비율을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을 다른 회사 및 당해 다른 회사가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가지는 주식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의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조는 동조 제1항 제3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제1호 가액의 제2호 가액에 대한 비율이 5분의 1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회사가 사업 전부의 대가로서 교부하는 재산의 장부가액 합계액
 2. 주식회사의 순자산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액
- ③ 전항의 경우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수의株式 (전조 제1항의 주주총회에

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る。)を有する株主が次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同条第四項の公告の日から二週間以内に前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行為に反対する旨を当該行為をする株式会社に対し通知したときは、当該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の前日までに、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当該行為に係る契約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第469条 反対株主の株式買取請求

1 事業譲渡等をする場合(次に掲げる場合を除く。)には、反対株主は、事業譲渡等をする株式会社に対し、自己の有する株式を公正な価格で買い取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第四百六十七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おいて、同項の株主総会の決議と同時に第四百七十一条第三号の株主総会の決議がされたとき。

二 前条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同条第三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く。)

2 前項に規定する「反対株主」と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おける当該各号に定める株主をいう。

一 事業譲渡等をするために株主総会(種類株主総会を含む。)の決議を要する場合 次に掲げる株主

イ 当該株主総会に先立って当該事業譲渡等に反対する旨を当該株式会社に対し通知し、かつ、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事業譲渡等に反対した株主(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る。)

ロ 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

二 前号に規定する場合以外の場合 全ての株主(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特別支配会社を除く。)

3 事業譲渡等を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の二十日前までに、その株主(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特別支配会社を除く。)に対し、事業譲渡等をする旨(第四百六十七条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同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旨及び同条第二項の株式に関す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次に掲げる場合には、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에 한한다) 을 가진 주주가 다음 조 제3항의 통지 또는 동조 제4항의 공고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전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에 반대하는 뜻을 주식회사에 통지하는 때에는 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의 전날까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당해 행위에 관한 계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9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① 사업양도등을 하는 경우(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반대주주는 사업양도등을 하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467조 제1항 제1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동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제471조 제3호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때.

2. 전조 제2항의 경우(동조 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전항의 “반대주주”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각호에서 정한 주주를 말한다.

1. 사업양도등을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를 포함한다) 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 다음의 주주

가. 주주총회에 앞서 사업양도등에 반대하는 뜻을 주식회사에 통지하고 주주총회에서 사업양도등에 반대한 주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2. 전항의 경우 이외의 경우 : 모든 주주(전조 제1항의 경우의 특별지배회사는 제외한다)

③ 사업양도등을 하고자 하는 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의 20일전까지 주주(전조 제1항의 경우의 특별지배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사업양도등을 하는 뜻(제467조 제2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3호의 행위를 하는 뜻 및 동조 제2항의 주식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음의 경우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7章 事業の譲渡等

- 一 事業譲渡等をする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ある場合
 - 二 事業譲渡等をする株式会社が第四百六十七条第一項の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事業譲渡等に係る契約の承認を受けた場合
- 5 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以下この章において「株式買取請求」という。)は、効力発生日の二十日前の日から効力発生日の前日までの間に、その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6 株券が発行されている株式について株式買取請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株式の株主は、事業譲渡等をする株式会社に対し、当該株式に係る株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株券について第二百二十三条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た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7 株式買取請求をした株主は、事業譲渡等をする株式会社の承諾を得た場合に限り、その株式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 8 事業譲渡等を中止したときは、株式買取請求は、その効力を失う。
- 9 第百三十三条の規定は、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470条 株式の価格の決定等

- 1 株式買取請求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株式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株主と事業譲渡等をする株式会社との間に協議が調ったときは、当該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から六十日以内にその支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株式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効力発生日から三十日以内に協議が調わないときは、株主又は前項の株式会社は、その期間の満了の日後三十日以内に、裁判所に対し、価格の決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 3 前条第七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効力発生日から六十日以内に同項の申立てがないときは、その期間の満了後は、株主は、いつでも、株式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 4 第一項の株式会社は、裁判所の決定した価格に対する同項の期間の満了の日後の年六分の利率により算定した利息をも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 5 第一項の株式会社は、株式の価格の決定があるまでは、株主に対し、当該株式会社が公正な価格と認める額を支払うことができる。
- 6 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買取りは、効力発生日に、その効力を生ずる。

1. 사업양도등을 한 주식회사가 공개회사인 경우
2. 사업양도등을 한 주식회사가 제467조 제1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사업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⑤ 제1항의 청구 (이하 이 장에서 “주식매수청구”라 한다) 는 효력발생일 20일 전의 날로부터 효력발생일의 전날까지 그 주식매수청구에 관련된 주식의 수 (종류주식 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 ⑥ 주권이 발행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식의 주주는 사업양도등을 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에 관련된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권에 관하여 제223조의 청구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는 사업양도등을 하는 주식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⑧ 사업양도등을 중지한 때에는 주식매수청구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⑨ 제133조의 규정은 주식매수청구와 관련된 주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70조 **주식가격의 결정 등**

- ① 주식매수청구가 있었던 경우 주식의 매수가액 결정에 관하여 주주와 사업양도등을 한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 ② 주식의 매수가액 결정에 관하여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 또는 전항의 주식회사는 그 기간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전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후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주식회사는 법원이 결정한 가격에 대하여 동항의 기간만료일 후 연 6푼의 이율로 산정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주식회사는 주식가격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당해 주식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판단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청구와 관련된 주식의 매수는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8章 解散

7 株券発行会社は、株券が発行されている株式について株式買取請求があったときは、株券と引換えに、その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代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8章 解散

第471条 解散の事由

株式会社は、次に掲げる事由によって解散する。

- 一 定款で定めた存続期間の満了
- 二 定款で定めた解散の事由の発生
- 三 株主総会の決議
- 四 合併(合併により当該株式会社が消滅する場合に限る。)
- 五 破産手続開始の決定
- 六 第二百二十四条第一項又は第八百三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解散を命ずる裁判

第472条 休眠会社のみなし解散

1 休眠会社(株式会社であって、当該株式会社に関する登記が最後にあった日から十二年を経過したもの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は、法務大臣が休眠会社に対し二箇月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本店の所在地を管轄する登記所に事業を廃止していない旨の届出をすべき旨を官報に公告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届出をしないときは、その二箇月の期間の満了の時に、解散し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当該期間内に当該休眠会社に関する登記がされ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登記所は、前項の規定による公告があったときは、休眠会社に対し、その旨の通知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473条 株式会社の継続

株式会社は、第四百七十一条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掲げる事由によって解散した場合(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解散したものとみなされた場合を含む。)には、次章の規定による清算が終了するまで(同項の規定により解散したものとみな

⑦ 주권발행회사는 주권이 발행되고 있는 주식에 관해 주식매수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주권과 교환하여 주식매수청구와 관련된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장 해산

제471조 해산의 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2.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3. 주주총회결의
4. 합병 (합병에 따라 주식회사가 소멸한 경우에 한한다)
5. 파산절차개시의 결정
6. 제824조 제1항 또는 제833조 제1항에 따른 해산을 명령한 재판

제472조 휴면회사의 간주해산

① 휴면회사 (주식회사로서 그 주식회사에 관한 마지막 등기가 있었던 날로부터 12년을 경과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법무대신이 휴면회사에 2월 이내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2월의 기간만료시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휴면회사에 관한 등기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었던 때에는 휴면회사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73조 주식회사의 계속

주식회사는 제47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한 경우 (전조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다음 장의 규정에 의한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동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경우에는 해산한 것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された場合にあつては、解散したものとみなされた後三年以内に限る。)、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株式会社を継続することができる。

第474条 解散した株式会社の合併等の制限

株式会社が解散した場合には、当該株式会社は、次に掲げる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合併(合併により当該株式会社が存続する場合に限る。)
- 二 吸収分割による他の会社がその事業に関して有する権利義務の全部又は一部の承継

第9章 清算

第1節 総則

第1款 清算の開始

第475条 清算の開始原因

株式会社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この章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清算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解散した場合(第四百七十一条第四号に掲げる事由によって解散した場合及び破産手続開始の決定により解散した場合であつて当該破産手続が終了していない場合を除く。)
- 二 設立の無効の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判決が確定した場合
- 三 株式移転の無効の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判決が確定した場合

第476条 清算株式会社の能力

前条の規定により清算をする株式会社(以下「清算株式会社」という。)は、清算の目的の範囲内において、清算が終了するまではなお存続するものとみなす。

으로 본 후 3년 이내에 한한다) 주주총회결의로 주식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474조 해산한 주식회사의 합병 등의 제한

주식회사가 해산한 경우 주식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합병 (합병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흡수분할에 의한 다른 회사가 그 사업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승계

제9장 청산

제1절 총칙

제1관 청산의 개시

제475조 청산의 개시원인

주식회사는 다음의 경우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제471조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및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파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설립무효의 소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주식이전무효의 소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476조 청산주식회사의 능력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산주식회사”라 한다) 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第2款 清算株式会社の機関

第1目 株主総会以外の機関の設置

第477条

- 1 清算株式会社には、一人又は二人以上の清算人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 2 清算株式会社は、定款の定めによって、清算人会、監査役又は監査役会を置くことができる。
- 3 監査役会を置く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清算株式会社は、清算人会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 4 第四百七十五条各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時において公開会社又は大会社であった清算株式会社は、監査役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 5 第四百七十五条各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時において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った清算株式会社であって、前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ものにおい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が監査役となる。
- 6 第四百七十五条各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時において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であった清算株式会社であって、第四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ものにおいては、監査委員が監査役となる。
- 7 第四章第二節の規定は、清算株式会社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2目 清算人の就任及び解任並びに監査役の退任

第478条 清算人の就任

- 1 次に掲げる者は、清算株式会社の清算人となる。
 - 一 取締役(次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者がある場合を除く。)
 - 二 定款で定める者
 - 三 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選任された者
- 2 前項の規定により清算人となる者がいないときは、裁判所は、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清算人を選任する。
- 3 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四百七十一条第六号に掲げる事由によって解散した清算株式会社については、裁判所は、利害関係人若しくは法務大臣の申立

제2관 청산주식회사의 기관

제1목 주주총회 이외 기관의 설치

제477조

- ① 청산주식회사에는 1인 또는 2인 이상의 청산인을 두어야 한다.
- ② 청산주식회사는 정관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회, 감사 또는 감사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감사회를 설치하는 뜻의 정관 규정이 있는 청산주식회사는 청산인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제475조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 공개회사 또는 대회사이었던 청산주식회사는 감사를 두어야 한다.
- ⑤ 제475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이었던 청산주식회사로서 전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가 감사가 된다.
- ⑥ 제475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이었던 청산주식회사로서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이 감사가 된다.
- ⑦ 제4장 제2절은 청산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목 청산인의 취임 및 해임, 감사의 퇴임

제478조 청산인의 취임

- ① 다음의 자는 청산주식회사의 청산인이 된다.
 1. 이사(다음 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관으로 정하는 자
 3.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자
- ② 전항에 의하여 청산인이 되는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 ③ 전2항에도 불구하고 제471조 제6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 청산주식회사에 관하여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법무대신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てにより又は職権で、清算人を選任する。

4 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四百七十五条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清算株式会社については、裁判所は、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清算人を選任する。

5 第四百七十五条各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時において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った清算株式会社における第一項第一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号中「取締役」とあるの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以外の取締役」とする。

6 第四百七十五条各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時において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であった清算株式会社における第一項第一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号中「取締役」とあるのは、「監査委員以外の取締役」とする。

7 第三百三十五条第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四百七十五条各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時において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又は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であった清算株式会社である監査役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監査役は、三人以上で、そのうち半数以上は、次に掲げる要件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一 その就任の前十年間当該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若しくは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取締役(社外取締役を除く。)、会計参与(会計参与が法人であるときは、その職務を行うべき社員。次号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執行役又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であったことがないこと。

二 その就任の前十年内のいずれかの時において当該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若しくは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社外取締役又は監査役であったことがある者にあつては、当該社外取締役又は監査役への就任の前十年間当該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若しくは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取締役(社外取締役を除く。)、会計参与若しくは執行役又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であったことがないこと。

三 第二条第十六号ハからホまでに掲げる要件

8 第三百三十条、第三百三十一条第一項及び第三百三十一条の二の規定は清算人について、第三百三十一条第五項の規定は清算人会設置会社(清算人会を置く清算株式会社又は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清算人会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清算株式会社をいう。以下同じ。)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

청산인을 선임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7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청산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⑤ 제475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게 된 때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이었던 청산 주식회사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호 중 “이사”는 “감사등 위원인이사 이외의 이사”로 한다.

⑥ 제475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게 된 때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이었던 청산 주식회사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호 중 “이사”는 “감사위원 이외의 이사”로 한다.

⑦ 제33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75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게 된 때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또는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이었던 청산주식회사인 감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는 3인 이상으로 그 중 반수 이상은 다음의 요건의 모든 것에도 해당하여야 한다.

1. 취임 전 10년간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혹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회계 참여(회계참여가 법인인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원. 다음 호에서 같다) 혹은 집행임원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었던 적이 없을 것.
2. 취임 전 10년 내의 어느 때에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혹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감사이었던 적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또는 감사 취임 전 10년간 해당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혹은 지명위원회등 설치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회계참여 혹은 집행임원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었던 적이 없을 것.

3. 제2조 제16호 다목에서 마목까지의 요건

⑧ 제330조 제331조 제1항 및 제330조의2는 청산인에 관하여, 제331조 제5항은 청산인회설치회사(청산인회를 두는 청산주식회사 또는 이 법률에 의하여 청산인회를 두어야 하는 청산주식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 중 ‘이사는’은 ‘청산인은’으로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て、同項中「取締役は」とあるのは、「清算人は」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479条 清算人の解任

- 1 清算人(前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より裁判所が選任したものを除く。)は、いつでも、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 2 重要な事由があるときは、裁判所は、次に掲げる株主の申立てにより、清算人を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総株主(次に掲げる株主を除く。)の議決権の百分の三(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議決権を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から引き続き有する株主(次に掲げる株主を除く。)
 - イ 清算人を解任する旨の議案につ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
 - ロ 当該申立てに係る清算人である株主
 - 二 発行済株式(次に掲げる株主の有する株式を除く。)の百分の三(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数の株式を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から引き続き有する株主(次に掲げる株主を除く。)
 - イ 当該清算株式会社である株主
 - ロ 当該申立てに係る清算人である株主
- 3 公開会社でない清算株式会社における前項各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れらの規定中「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から引き続き有する」とあるのは、「有する」とする。
- 4 第三百四十六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は、清算人について準用する。

第480条 監査役の退任

- 1 清算株式会社の監査役は、当該清算株式会社が次に掲げる定款の変更をした場合には、当該定款の変更の効力が生じた時に退任する。
 - 一 監査役を置く旨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定款の変更
 - 二 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定款の変更
- 2 第三百三十六条の規定は、清算株式会社の監査役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제479조 청산인의 해임

- ① 청산인 (전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는 제외한다) 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 ②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다음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총주주 (다음의 주주는 제외한다) 의결권의 100분의 3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의결권을 6월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는 주주 (다음의 주주는 제외한다)
 - 가. 청산인을 해임하는 뜻의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 나. 신청에 관련된 청산인인 주주
 2. 발행주식총수 (다음의 주주가 가진 주식은 제외한다) 의 100분의 3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는 그 비율) 이상 수의 주식을 6월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는 주주 (다음의 주주는 제외한다)
 - 가. 청산주식회사인 주주
 - 나. 신청에 관련된 청산인인 주주
- ③ 공개회사가 아닌 청산주식회사에 대한 전항 각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중 “6월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는”은 “보유하는”으로 한다.
- ④ 제34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청산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80조 감사의 퇴임

- ① 청산주식회사의 감사는 청산주식회사가 다음의 정관변경을 한 경우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에 퇴임한다.
1. 감사를 두는 뜻의 정관 규정을 폐지하는 정관변경
 2. 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에 한정하는 뜻의 정관 규정을 폐지하는 정관변경
- ② 제336조는 청산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第3目 清算人の職務等

第481条 清算人の職務

清算人は、次に掲げる職務を行う。

- 一 現務の結了
- 二 債権の取立て及び債務の弁済
- 三 残余財産の分配

第482条 業務の執行

1 清算人は、清算株式会社(清算人会設置会社を除く。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業務を執行する。

2 清算人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は、清算株式会社の業務は、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清算人の過半数をもって決定する。

3 前項の場合には、清算人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決定を各清算人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支配人の選任及び解任
- 二 支店の設置、移転及び廃止
- 三 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各号(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掲げる事項
- 四 清算人の職務の執行が法令及び定款に適合す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その他清算株式会社の業務の適正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体制の整備

4 第三百五十三条から第三百五十七条(第三項を除く。)まで、第三百六十条並びに第三百六十一条第一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清算人(同条の規定については、第四百七十八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より裁判所が選任したものを除く。)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三百五十三条中「第三百四十九条第四項」とあるのは「第四百八十三条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四十九条第四項」と、第三百五十四条中「代表取締役」とあるのは「代表清算人(第四百八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代表清算人をいう。)」と、第三百六十条第三項中「監査役設置会社、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又は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とあるのは「監査役設置会社」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제3목 청산인의 직무 등

제481조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료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분배

제482조 업무의 집행

- ① 청산인은 청산주식회사(청산인회설치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청산주식회사의 업무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인의 과반수로써 결정된다.
- ③ 전항의 경우 청산인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각 청산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2.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3. 제298조 제1항 각호(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항
4. 청산인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체제 그 밖에 청산주식회사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체제의 정비
- ④ 제353조 내지 제357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360조, 제361조 제1항 및 제4항은 청산인(동조에 관해서는 제47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자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3조 중 “제349조 제4항”은 “제483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49조 제4항”으로, 제354조 중 “대표이사”는 “대표청산인(제483조 제1항의 대표청산인을 말한다)”로, 제360조 제3항 중 “감사설치 회사,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또는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는 “감사설치회사”로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第483条 清算株式会社の代表

- 1 清算人は、清算株式会社を代表する。ただし、他に代表清算人(清算株式会社を代表する清算人をいう。以下同じ。) その他清算株式会社を代表する者を定め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2 前項本文の清算人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は、清算人は、各自、清算株式会社を代表する。
- 3 清算株式会社(清算人会設置会社を除く。) は、定款、定款の定めに基づく清算人(第四百七十八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より裁判所が選任したもの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の互選又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清算人の中から代表清算人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4 第四百七十八条第一項第一号の規定により取締役が清算人となる場合において、代表取締役を定めていたときは、当該代表取締役が代表清算人となる。
- 5 裁判所は、第四百七十八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より清算人を選任する場合には、その清算人の中から代表清算人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6 第三百四十九条第四項及び第五項並びに第三百五十一条の規定は代表清算人について、第三百五十二条の規定は民事保全法第五十六条 に規定する仮処分命令により選任された清算人又は代表清算人の職務を代行する者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

第484条 清算株式会社についての破産手続の開始

- 1 清算株式会社の財産がその債務を完済するのに足り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ときは、清算人は、直ちに破産手続開始の申立て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清算人は、清算株式会社が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破産管財人にその事務を引き継いだときは、その任務を終了したものとする。
- 3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清算株式会社が既に債権者に支払い、又は株主に分配したものがあるときは、破産管財人は、これ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る。

第485条 裁判所の選任する清算人の報酬

裁判所は、第四百七十八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より清算人を選任した場合には、清算株式会社が当該清算人に対して支払う報酬の額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제483조 청산주식회사의 대표

- ① 청산인은 청산주식회사를 대표한다. 다만, 다른 대표청산인 (청산주식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청산주식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항 본문의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청산인은 각자 청산주식회사를 대표한다.
- ③ 청산주식회사 (청산인회설치회사는 제외한다) 는 정관, 정관 규정에 의거한 청산인 (제47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호선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중 대표청산인을 정할 수 있다.
- ④ 제4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 대표이사를 정하고 있었던 때에는 그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된다.
- ⑤ 법원은 제47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청산인 중 대표청산인을 정할 수 있다.
- ⑥ 제349조 제4항, 제5항 및 제351조는 대표청산인에 관하여 제352조는 민사보전법 제56조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484조 청산주식회사에 관한 파산절차의 개시

- ①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함에 부족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청산인은 즉시 파산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청산인은 청산주식회사가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한 때는 그 임무를 종료한 것으로 한다.
- ③ 전항의 경우에 청산주식회사가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주주에게 분배한 것이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485조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보수

법원은 제47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청산주식회사가 청산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액을 정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第486条 清算人の清算株式会社に対する損害賠償責任

- 1 清算人は、その任務を怠ったときは、清算株式会社に対し、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 2 清算人が第四百八十二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五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同項第一号の取引をしたときは、当該取引により清算人又は第三者が得た利益の額は、前項の損害の額と推定する。
- 3 第四百八十二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五十六条第一項第二号又は第三号の取引によって清算株式会社に損害が生じたときは、次に掲げる清算人は、その任務を怠ったものと推定する。
 - 一 第四百八十二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五十六条第一項の清算人
 - 二 清算株式会社が当該取引をすることを決定した清算人
 - 三 当該取引に関する清算人会の承認の決議に賛成した清算人
- 4 第四百二十四条及び第四百二十八条第一項の規定は、清算人の第一項の責任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一項中「第三百五十六条第一項第二号(第四百十九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とあるのは、「第四百八十二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五十六条第一項第二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487条 清算人の第三者に対する損害賠償責任

- 1 清算人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悪意又は重大な過失があったときは、当該清算人は、これによって第三者に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 2 清算人が、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ただし、当該清算人が当該行為をすること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株式、新株予約権、社債若しくは新株予約権付社債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をする際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重要な事項についての虚偽の通知又は当該募集のための当該清算株式会社の事業その他の事項に関する説明に用いた資料についての虚偽の記載若しくは記録
 - 二 第四百九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財産目録等並びに第四百九十四条第一項の貸借対照表及び事務報告並びにこれらの附属明細書に記載し、又は記録すべき重要な事項についての虚偽の記載又は記録

제486조 청산인의 청산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① 청산인이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청산주식회사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청산인이 제48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356조 제1항에 위반하여 동항 제1호의 거래를 한 때 그 거래에 의하여 청산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액은 전항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③ 제48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35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거래에 의하여 청산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 다음의 청산인은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제48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356조 제1항의 청산인
 2. 청산주식회사가 당해 거래를 하는 것을 결정한 청산인
 3. 당해 거래에 관한 청산인회의 승인결의에 찬성한 청산인
- ④ 제424조 및 제428조 제1항은 청산인의 제1항의 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제356조 제1항 제2호 (제41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48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356조 제1항 제2호”로 본다.

제487조 청산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① 청산인이 그 직무를 행함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때에는 그 청산인은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청산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다만, 청산인이 당해 행위를 하는데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 신주예약권, 사채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를 인수할 자를 모집하는 때 통지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의 통지 또는 모집을 위한 청산주식회사의 사업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설명에 이용한 자료에 관한 허위의 기재 또는 기록
 2. 제492조 제1항의 재산목록 등 및 제494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및 이러한 부속명세서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의 기재 또는 기록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三 虚偽の登記

四 虚偽の公告

第488条 清算人及び監査役の連帯責任

- 1 清算人又は監査役が清算株式会社又は第三者に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場合において、他の清算人又は監査役も当該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ときは、これらの者は、連帯債務者とする。
- 2 前項の場合には、第四百三十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4目 清算人会

第489条 清算人会の権限等

- 1 清算人会は、すべての清算人で組織する。
- 2 清算人会は、次に掲げる職務を行う。
 - 一 清算人会設置会社の業務執行の決定
 - 二 清算人の職務の執行の監督
 - 三 代表清算人の選定及び解職
- 3 清算人会は、清算人の中から代表清算人を選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他に代表清算人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4 清算人会は、その選定した代表清算人及び第四百八十三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代表清算人となった者を解職することができる。
- 5 第四百八十三条第五項の規定により裁判所が代表清算人を定めたときは、清算人会は、代表清算人を選定し、又は解職することができない。
- 6 清算人会は、次に掲げる事項その他の重要な業務執行の決定を清算人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重要な財産の処分及び譲受け
 - 二 多額の借財
 - 三 支配人その他の重要な使用人の選任及び解任
 - 四 支店その他の重要な組織の設置、変更及び廃止
 - 五 第六百七十六条第一号に掲げる事項その他の社債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に関する重要な事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 3. 허위의 등기
- 4. 허위의 공고

제488조 청산인 및 감사의 연대책임

- ① 청산인 또는 감사가 청산주식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청산인 또는 감사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때에는 이러한 자는 연대책무자로 한다.
- ② 전항의 경우 제4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목 청산인회

제489조 청산인회의 권한 등

- ① 청산인회는 모든 청산인으로 조직한다.
- ② 청산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청산인회설치회사의 업무집행의 결정
 - 2. 청산인의 직무집행의 감독
 - 3. 대표청산인의 선정 및 해직
- ③ 청산인회는 청산인 중 대표청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대표청산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청산인회는 그 선정한 대표청산인 및 제483조 제4항에 의하여 대표청산인으로 된 자를 해직할 수 있다.
- ⑤ 제483조 제5항에 의하여 법원이 대표청산인을 정한 때 청산인회는 대표청산인을 선정하거나 해직할 수 없다.
- ⑥ 청산인회는 다음의 사항 그 밖의 중요한 업무집행의 결정을 청산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 1.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수
 - 2. 거액의 차입
 - 3. 지배인 그 밖의 중요한 사용인의 선임 및 해임
 - 4. 지점 그 밖의 중요한 조직의 설치, 변경 및 폐지
 - 5. 제676조 제1호의 사항 그 밖의 사채를 인수할 자의 모집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六 清算人の職務の執行が法令及び定款に適合す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その他清算株式会社の業務の適正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ものとして法務
省令で定める体制の整備

7 次に掲げる清算人は、清算人会設置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

一 代表清算人

二 代表清算人以外の清算人であって、清算人会の決議によって清算人会設置
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清算人として選定されたもの

8 第三百六十三条第二項、第三百六十四条及び第三百六十五条の規定は、清
算人会設置会社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三百六十三条第二項
中「前項各号」とあるのは「第四百八十九条第七項各号」と、「取締役は」とあるの
は「清算人は」と、「取締役会」とあるのは「清算人会」と、第三百六十四条中「第
三百五十三条」とあるのは「第四百八十二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五
十三条」と、「取締役会は」とあるのは「清算人会は」と、第三百六十五条第一項中
「第三百五十六条」とあるのは「第四百八十二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
五十六条」と、「取締役会」とあるのは「清算人会」と、同条第二項中「第三百五
十六条第一項各号」とあるのは「第四百八十二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
百五十六条第一項各号」と、「取締役は」とあるのは「清算人は」と、「取締役会に」
とあるのは「清算人会に」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490条 清算人会の運営

1 算人会は、各清算人が招集する。ただし、清算人会を招集する清算人を定款又
は清算人会で定めたときは、その清算人が招集する。

2 前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には、同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定められた清算
人(以下この項において「招集権者」という。)以外の清算人は、招集権者に対し、
清算人会の目的である事項を示して、清算人会の招集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日から五日以内に、その請求があった日から
二週間以内の日を清算人会の日とする清算人会の招集の通知が発せられない
場合には、その請求をした清算人は、清算人会を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

4 第三百六十七条及び第三百六十八条の規定は、清算人会設置会社における清
算人会の招集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三百六十七条第一項中「
監査役設置会社、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及び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とあるのは

6. 청산인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체제 그 밖에 청산주식회사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체제의 정비

⑦ 다음의 청산인은 청산인회설치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1. 대표청산인

2. 대표청산인이 아닌 청산인으로서 청산인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회설치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청산인으로 선정된 자

⑧ 제363조 제2항, 제364조 및 제365조는 청산인회설치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3조 제2항 중 “전항 각호”는 “제489조 제7항 각호”로, “이사는”은 “청산인은”으로, “이사회”는 “청산인회”로, 제364조 중 “제353조”는 “제48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353조”로, “이사회는”은 “청산인회는”으로, 제365조 제1항 중 “제356조”는 “제48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356조”로, “이사회”는 “청산인회”로, 동조 제2항 중 “제356조 제1항 각호”는 “제48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356조 제1항 각호”로, “이사는”은 “청산인은”으로, “이사회에”는 “청산인회에”로 본다.

제490조 청산인회의 운영

① 청산인회는 각 청산인이 소집한다. 다만, 청산인회를 소집하는 청산인을 정관 또는 청산인회에서 정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소집한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 동항 단서에 의하여 정해진 청산인 (이하 이 항에서 “소집권자”라 한다) 이외의 청산인은 소집권자에게 청산인회의 목적사항을 표시하여 청산인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청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2주간 이내의 날을 청산인회일로 하는 청산인회의 소집통지가 발송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청구를 한 청산인은 청산인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67조 및 제368조는 청산인회설치회사의 청산인회의 소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7조 제1항 중 “감사설치회사,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및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는 “감사설치회사”로, “이사가”는 “청산인이”로, 동조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監査役設置会社」と、「取締役が」とあるのは「清算人が」と、同条第二項中「取締役（前条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招集権者）」とあるのは「清算人（第四百九十条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招集権者）」と、同条第三項及び第四項中「前条第三項」とあるのは「第四百九十条第三項」と、第三百六十八条第一項中「各取締役」とあるのは「各清算人」と、同条第二項中「取締役」とあるのは「清算人」と、「取締役及び」とあるのは「清算人及び」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5 第三百六十九条から第三百七十一条までの規定は、清算人会設置会社における清算人会の決議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三百六十九条第一項中「取締役の」とあるのは「清算人の」と、同条第二項中「取締役」とあるのは「清算人」と、同条第三項中「取締役及び」とあるのは「清算人及び」と、同条第五項中「取締役であって」とあるのは「清算人であって」と、第三百七十条中「取締役が」とあるのは「清算人が」と、「取締役」とあるのは「清算人」と、第三百七十一条第三項中「監査役設置会社、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又は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とあるのは「監査役設置会社」と、同条第四項中「役員又は執行役」とあるのは「清算人又は監査役」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6 第三百七十二條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は、清算人会設置会社における清算人会への報告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一項中「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又は会計監査人」とあるのは「清算人又は監査役」と、「取締役」とあるのは「清算人」と、「取締役及び」とあるのは「清算人及び」と、同条第二項中「第三百六十三条第二項」とあるのは「第四百八十九条第八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六十三条第二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5目 取締役等に関する規定の適用

第491条

清算株式会社については、第二章(第五十五条を除く。)、第三章、第四章第一節、第三百三十五条第二項、第三百四十三条第一項及び第二項、第三百四十五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三項、第三百五十九条、同章第七節及び第八節並びに第七章の規定中取締役、代表取締役、取締役会又は取締役会設置会社に関する規定は、それぞれ清算人、代表清算人、清算人会又は清算人会設置会

제2항 중 “이사(전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소집권자)”는 “청산인(제49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소집권자)”으로, 동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전조 제3항”은 “제490조 제3항”으로, 제368조 제1항 중 “각 이사”는 “각 청산인”으로, 동조 제2항 중 “이사(”는 “청산인(”으로, “이사 및”은 “청산인 및”으로 한다.

⑤ 제369조 내지 제371조는 청산인회설치회사의 청산인회 결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9조 제1항 중 “이사의 ”은 “청산인의”로, 동조 제2항 중 “이사”는 “청산인”으로, 동조 제3항 중 “이사 및”은 “청산인 및”으로, 동조 제5항 중 “이사로서”는 “청산인로서”로, 제370조 중 “이사가”는 “청산인이”로, “이사(”는 “청산인(”으로, 제371조 제3항 중 “감사설치회사,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또는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는 “감사설치회사”로, 동조 제4항 중 “임원 또는 집행임원”은 “청산인 또는 감사”로 한다.

⑥ 제372조 제1항 및 제2항은 청산인회설치회사의 경우 청산인회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이사, 회계참여, 감사 또는 회계감사인”은 “청산인 또는 감사”로, “이사”는 “청산인”으로, “이사 및”은 “청산인 및”으로, 동조 제2항 중 “제363조 제2항”은 “제489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363조 제2항”으로 본다.

제5목 이사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491조

청산주식회사의 경우 제2장 (제155조는 제외한다), 제3장, 제4장 제1절, 제335조 제2항, 제343조 제1항 및 제2항, 제345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3항, 제359조, 동장 제7절 및 제8절, 제7장의 규정 중 이사,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이사회설치회사에 관한 규정은 각각 청산인, 대표청산인, 청산인회 또는 청산인회설치회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산인, 대표청산인, 청산인회 또는 청산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社に関する規定として清算人、代表清算人、清算人会又は清算人会設置会社に適用があるものとする。

第3款 財産目録等

第492条 財産目録等の作成等

- 1 清算人(清算人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第四百八十九条第七項各号に掲げる清算人)は、その就任後遅滞なく、清算株式会社の財産の現況を調査し、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四百七十五条各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日における財産目録及び貸借対照表(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財産目録等」という。)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清算人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財産目録等は、清算人会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 3 清算人は、財産目録等(前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同項の承認を受けたもの)を株主総会に提出し、又は提供し、そ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 4 清算株式会社は、財産目録等を作成した時から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ける清算結了の登記の時までの間、当該財産目録等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493条 財産目録等の提出命令

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訴訟の当事者に対し、財産目録等の全部又は一部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494条 貸借対照表等の作成及び保存

- 1 清算株式会社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各清算事務年度(第四百七十五条各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日の翌日又はその後毎年その日に応ずる日(応ずる日がない場合にあつては、その前日)から始まる各一年の期間をいう。)に係る貸借対照表及び事務報告並びにこれらの附属明細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貸借対照表及び事務報告並びにこれらの附属明細書は、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することができる。

인회설치회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3관 재산목록 등

제492조 재산목록등의 작성 등

- ① 청산인 (청산인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제489조 제7항 각호의 청산인) 은 그 선임 후 지체없이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5조 각호에 해당하게 된 날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재산목록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청산인회설치회사의 경우 재산목록등은 청산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청산인은 재산목록등 (전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승인을 받은 것) 을 주주총회에 제출하거나 제공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청산주식회사는 재산목록등을 작성한 때부터 그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료의 등기를 하는 때까지 재산목록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493조 재산목록등의 제출명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재산목록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94조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및 보존

- ① 청산주식회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청산사무연도 (제475조 각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 또는 그 후 매년 그 날에 해당하는 날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날) 로부터 시작되는 각 1년의 기간을 말한다) 의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는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3 清算株式会社は、第一項の貸借対照表を作成した時から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ける清算結了の登記の時までの間、当該貸借対照表及びその附属明細書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495条 貸借対照表等の監査等

1 監査役設置会社(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を含む。)においては、前条第一項の貸借対照表及び事務報告並びにこれらの附属明細書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監査役の監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清算人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前条第一項の貸借対照表及び事務報告並びにこれらの附属明細書(前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同項の監査を受けたもの)は、清算人会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第496条 貸借対照表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1 清算株式会社は、第四百九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各清算事務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及び事務報告並びにこれらの附属明細書(前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報告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貸借対照表等」という。)を、定時株主総会の日の一週間前の日(第三百十九条第一項の場合にあっては、同項の提案があった日)から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ける清算結了の登記の時までの間、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株主及び債権者は、清算株式会社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清算株式会社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貸借対照表等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閲覧の請求
 - 二 前号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 三 貸借対照表等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の請求
 - 四 前号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って清算株式会社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 3 清算株式会社の親会社社員は、そ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当該清算株式会社の貸借対照表等について前項各号に掲

③ 청산주식회사는 제1항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때로부터 그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료의 등기를 하는 때까지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95조 대차대조표 등의 감사 등

① 감사설치회사(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한정하는 뜻의 정관 규정이 있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우 전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청산인회설치회사의 경우 전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전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감사를 받은 것)는 청산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6조 대차대조표등의 비치 및 열람 등

① 청산주식회사는 제494조 제1항의 각 청산사무연도의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전조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등”이라 한다)를 정기주주총회일 1주간 전날(제319조 제1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제안이 있었던 날)로부터 그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료의 등기를 하는 때까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주주 및 채권자는 청산주식회사의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청산주식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등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그 서면의 열람 청구
2. 전호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
3. 대차대조표등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의 열람청구
4. 전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청산주식회사가 정한 것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의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청구

③ 청산주식회사의 모회사 사원은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청산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등에 관하여 전항 각호의 청구를 할 수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同項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清算株式会社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497条 貸借対照表等の定時株主総会への提出等

- 1 次の各号に掲げる清算株式会社においては、清算人は、当該各号に定める貸借対照表及び事務報告を定時株主総会に提出し、又は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第四百九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監査役設置会社(清算人会設置会社を除く。) 同項の監査を受けた貸借対照表及び事務報告
 - 二 清算人会設置会社 第四百九十五条第二項の承認を受けた貸借対照表及び事務報告
 -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以外の清算株式会社 第四百九十四条第一項の貸借対照表及び事務報告
- 2 前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又は提供された貸借対照表は、定時株主総会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 3 清算人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提出され、又は提供された事務報告の内容を定時株主総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498条 貸借対照表等の提出命令

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訴訟の当事者に対し、第四百九十四条第一項の貸借対照表及びその附属明細書の全部又は一部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4款 債務の弁済等

第499条 債権者に対する公告等

- 1 清算株式会社は、第四百七十五条各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後、遅滞なく、当該清算株式会社の債権者に対し、一定の期間内にその債権を申し出るべき旨を官報に公告し、かつ、知れている債権者には、各別にこれを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期間は、二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 2 前項の規定による公告には、当該債権者が当該期間内に申出をしないときは清算から除斥される旨を付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있다. 다만, 동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청산주식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97조 대차대조표 등의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제출 등

① 다음 각호의 청산주식회사의 경우 청산인은 각호의 대차대조표 및 사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1. 제495조 제1항의 감사설치회사 (청산인회설치회사는 제외한다) : 동항의 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사업보고서
2. 청산인회설치회사 : 제495조 제2항의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 및 사업보고서
3. 전2호 이외의 청산주식회사 : 제494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 및 사업보고서

② 전항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제공된 대차대조표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인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제공된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8조 대차대조표 등의 제출명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제494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관 채무변제 등

제499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등

① 청산주식회사는 제475조 각호에 해당하게 된 후 지체없이 청산주식회사의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을 관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개월을 밑돌 수 없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第500条 債務の弁済の制限

1 清算株式会社は、前条第一項の期間内は、債務の弁済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清算株式会社は、その債務の不履行によって生じた責任を免れることができない。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清算株式会社は、前条第一項の期間内であっても、裁判所の許可を得て、少額の債権、清算株式会社の財産につき存する担保権によって担保される債権その他これを弁済しても他の債権者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債権に係る債務について、その弁済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許可の申立ては、清算人が二人以上あるときは、その全員の同意によっ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01条 条件付債権等に係る債務の弁済

1 清算株式会社は、条件付債権、存続期間が不確定な債権その他その額が不確定な債権に係る債務を弁済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これらの債権を評価させるため、裁判所に対し、鑑定人の選任の申立て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は、清算株式会社は、同項の鑑定人の評価に従い同項の債権に係る債務を弁済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鑑定人の選任の手続に関する費用は、清算株式会社の負担とする。当該鑑定人による鑑定のための呼出し及び質問に関する費用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第502条 債務の弁済前における残余財産の分配の制限

清算株式会社は、当該清算株式会社の債務を弁済した後でなければ、その財産を株主に分配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その存否又は額について争いのある債権に係る債務についてその弁済をするために必要と認められる財産を留保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503条 清算からの除斥

1 清算株式会社の債権者(知れている債権者を除く。)であって第四百九十九条第一項の期間内にその債権の申出をしなかったものは、清算から除斥され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清算から除斥された債権者は、分配がされていない残余財

제500조 채무변제의 제한

① 청산주식회사는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는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청산주식회사는 그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산주식회사는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액의 채권,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그 밖에 이를 변제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청산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01조 조건부채권 등에 대한 채무변제

① 청산주식회사는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에 그 금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채권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원에 감정인의 선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청산주식회사는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동향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정인 선임절차에 관한 비용은 청산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감정인의 감정을 위한 소환 및 질문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도 같다.

제502조 채무변제 전 잔여재산 분배의 제한

청산주식회사는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존부 또는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계된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유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3조 청산에서의 제외

① 청산주식회사의 채권자(알고 있는 채권자는 제외한다)로서 제49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청산에서 제외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産に対してのみ、弁済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 清算株式会社の残余財産を株主の一部に分配した場合には、当該株主の受けた分配と同一の割合の分配を当該株主以外の株主に対してするために必要な財産は、前項の残余財産から控除する。

第5款 残余財産の分配

第504条 残余財産の分配に関する事項の決定

1 清算株式会社は、残余財産の分配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清算人の決定(清算人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清算人会の決議)によっ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残余財産の種類

二 株主に対する残余財産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残余財産の分配について内容の異なる二以上の種類の株式を発行しているときは、清算株式会社は、当該種類の株式の内容に応じ、同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とし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一 ある種類の株式の株主に対して残余財産の割当てをし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株式の種類

二 前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残余財産の割当てについて株式の種類ごとに異なる取扱いを行う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異なる取扱いの内容

3 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は、株主(当該清算株式会社及び前項第一号の種類の株式の株主を除く。)の有する株式の数(前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各種類の株式の数)に応じて残余財産を割り当てること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505条 残余財産が金銭以外の財産である場合

1 株主は、残余財産が金銭以外の財産であるときは、金銭分配請求権(当該残余財産に代えて金銭を交付することを清算株式会社に対して請求する権利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有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清算株式会社は、清算人の決定(清算人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清算人会の決議)によっ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여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청산주식회사의 잔여재산을 일부의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

제5관 잔여재산의 분배

제504조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사항의 결정

① 청산주식회사가 잔여재산을 분배하려는 때에는 청산인의 결정 (청산인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인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잔여재산의 종류

2.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사항

② 전항의 경우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2이상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 청산주식회사는 당해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동항 제2호의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및 당해 주식의 종류

2. 전항의 사항 외에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마다 다른 취급을 하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및 다른 취급의 내용

③ 제1항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은 주주 (청산주식회사 및 전항 제1호의 종류주식 주주는 제외한다)가 가진 주식의 수 (전항 제2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각 종류주식의 수)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505조 잔여재산이 금전 이외의 재산인 경우

① 주주는 잔여재산이 금전 이외의 재산인 때에는 금전분배청구권 (잔여재산에 갈음하여 금전을 교부할 것을 주식회사에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진다. 이 경우 청산주식회사는 청산인의 결정 (청산인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인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 一 金銭分配請求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
- 二 一定の数未満の数の株式を有する株主に対して残余財産の割当てをし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その数
-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清算株式会社は、同項第一号の期間の末日の二十日前までに、株主に対し、同号に掲げ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清算株式会社は、金銭分配請求権を行使した株主に対し、当該株主が割当てを受けた残余財産に代えて、当該残余財産の価額に相当する金銭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をもって当該残余財産の価額とする。
 - 一 当該残余財産が市場価格のある財産である場合 当該残余財産の市場価格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
 -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清算株式会社の申立てにより裁判所が定める額

第506条 基準株式数を定めた場合の処理

前条第一項第二号の数(以下この条において「基準株式数」という。)を定めた場合には、清算株式会社は、基準株式数に満たない数の株式(以下この条において「基準未満株式」という。)を有する株主に対し、前条第三項後段の規定の例により基準株式数の株式を有する株主が割当てを受けた残余財産の価額として定めた額に当該基準未満株式の数の基準株式数に対する割合を乗じて得た額に相当する金銭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6款 清算事務の終了等

第507条

- 1 清算株式会社は、清算事務が終了したときは、遅滞なく、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決算報告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清算人会設置会社においては、決算報告は、清算人会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 3 清算人は、決算報告(前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同項の承認を受けたもの)を株主総会に提出し、又は提供し、そ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1. 금전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한 수 미만의 수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과 수
- ② 전항의 경우 청산주식회사는 동항 제1호 기간의 말일 20일 전까지 주주에게 동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청산주식회사는 금전분배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주주가 분배를 받은 잔여재산에 대신하여 잔여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마다 각호의 가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잔여재산이 시장가격이 있는 재산인 경우 : 잔여재산의 시장가격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가액
2. 전호 이외의 경우 : 청산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는 가액

제506조 기준주식수를 정한 경우의 처리

전조 제1항 제2호의 수 (이하 이 조에서 “기준주식수”라 한다) 를 정한 경우에는 청산주식회사는 기준주식수에 미달하는 수의 주식 (이하 이 조에서 “기준미만주식”이라 한다) 을 가지는 주주에게 전조 제3항 후단의 예에 따라 기준주식수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배정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으로서 정한 금액에 기준미만주식수의 기준주식수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관 청산사무의 종료 등

제507조

- ① 청산주식회사는 청산사무가 종료된 때 지체없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청산인회설치회사에서 결산보고서는 청산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청산인은 결산보고서 (전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승인을 받은 것) 를 주주총회에 제출하거나 제공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4 前項の承認があったときは、任務を怠ったことによる清算人の損害賠償の責任は、免除され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清算人の職務の執行に関し不正の行為があっ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7款 帳簿資料の保存

第508条

- 1 清算人(清算人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第四百八十九条第七項各号に掲げる清算人)は、清算株式会社の本店の所在地における清算結了の登記の時から十年間、清算株式会社の帳簿並びにその事業及び清算に関する重要な資料(以下この条において「帳簿資料」という。)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裁判所は、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前項の清算人に代わって帳簿資料を保存する者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同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 3 前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者は、清算株式会社の本店の所在地における清算結了の登記の時から十年間、帳簿資料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第二項の規定による選任の手続に関する費用は、清算株式会社の負担とする。

第8款 適用除外等

第509条

- 1 次に掲げる規定は、清算株式会社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 一 第百五十五条
 - 二 第五章第二節第二款(第四百三十五条第四項、第四百四十条第三項、第四百四十二条及び第四百四十三条を除く。)及び第三款並びに第三節から第五節まで
 - 三 第五編第四章及び第四章の二並びに同編第五章中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に係る部分
- 2 第二章第四節の二の規定は、対象会社が清算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 3 清算株式会社は、無償で取得する場合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限り、当該清算株式会社の株式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

④ 전항의 승인이 있었던 때에는 임무의 해태로 인한 청산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청산인의 직무집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관 장부자료의 보존

제508조

- ① 청산인(청산인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제489조 제7항 각호의 청산인)은 청산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료의 등기를 하는 때로부터 10년간 청산주식회사의 장부 및 그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장부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청산인에 대신하여 장부자료를 보존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전항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청산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료의 등기를 하는 때로부터 10년간 장부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선임절차에 관한 비용은 청산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8관 적용제외 등

제509조

- ① 다음의 규정은 청산주식회사에 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55조
 2. 제5장 제2절 제2관(제435조 제4항, 제440조 제3항, 제442조 및 제443조는 제외한다), 제3관 및 제3절 내지 제5절
 3. 제5편 제4장, 제4장의 2 및 동편 제5장 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절차에 관한 부분
- ② 제2장 제4절의 2는 대상회사가 청산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6. 20.>
- ③ 청산주식회사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기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청산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第2節 特別清算

第1款 特別清算の開始

第510条 特別清算開始の原因

裁判所は、清算株式会社に次に掲げる事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第五百十四条の規定に基づき、申立てにより、当該清算株式会社に對し特別清算の開始を命ずる。

- 一 清算の遂行に著しい支障を来すべき事情があること。
- 二 債務超過(清算株式会社の財産がその債務を完済するのに足りない状態をいう。次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の疑いがあること。

第511条 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

- 1 債権者、清算人、監査役又は株主は、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清算株式会社に債務超過の疑いがあるときは、清算人は、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12条 他の手続の中止命令

1 裁判所は、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債権者、清算人、監査役若しくは株主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につき決定があるまでの間、次に掲げる手続の中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一号に掲げる破産手続については破産手続開始の決定がされていない場合に限り、第二号に掲げる手続についてはその手続の申立人である債権者に不当な損害を及ぼすおそれがない場合に限る。

- 一 清算株式会社についての破産手続
 - 二 清算株式会社の財産に対して既にされている強制執行、仮差押え又は仮処分の手続(一般の先取特権その他一般の優先権がある債権に基づくものを除く。)
- 2 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を却下する決定に対して第八百九十条第五項の即時抗告がされた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제2절 특별청산

제1관 특별청산의 개시

제510조 특별청산개시의 원인

법원은 청산주식회사에 다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14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청산주식회사에 특별청산의 개시를 명한다.

1. 청산의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야기하는 사정이 있는 때
2. 채무초과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함에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다음 조 제2항에서 같다) 의 의심이 있는 때

제511조 특별청산개시의 신청

- ① 채권자, 청산인, 감사 또는 주주는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청산주식회사에 채무초과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청산인은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12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① 법원은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권자, 청산인, 감사나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다음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파산절차는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고, 제2호의 절차는 그 절차의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청산주식회사에 관한 파산절차
 2.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실행되어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절차 (일반적 선취특권 그 밖에 일반적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의거한 절차는 제외한다)
- ②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제890조 제5항의 즉시항고가 된 때에도 전항과 같다.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第513条 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の取下げの制限

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をした者は、特別清算開始の命令前に限り、当該申立てを取り下げ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条の規定による中止の命令、第五百四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保全処分又は第五百四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処分がされた後は、裁判所の許可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14条 特別清算開始の命令

裁判所は、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特別清算開始の原因となる事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特別清算開始の命令をする。

- 一 特別清算の手続の費用の予納がないとき。
- 二 特別清算によっても清算を結了する見込みがないことが明らかであるとき。
- 三 特別清算によることが債権者の一般の利益に反す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とき。
- 四 不当な目的で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がされたとき、その他申立てが誠実にされたものでないとき。

第515条 他の手続の中止等

1 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ったときは、破産手続開始の申立て、清算株式会社の財産に対する強制執行、仮差押え若しくは仮処分又は財産開示手続(民事執行法(昭和五十四年法律第四号) 第百九十七条第一項の申立てによ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申立てはすることができず、破産手続(破産手続開始の決定がされていないものに限る。)、清算株式会社の財産に対して既にされている強制執行、仮差押え及び仮処分の手続並びに財産開示手続は中止する。ただし、一般の先取特権その他一般の優先権がある債権に基づく強制執行、仮差押え、仮処分又は財産開示手続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確定したときは、前項の規定により中止した手続は、特別清算の手続の関係においては、その効力を失う。

3 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ったときは、清算株式会社の債権者の債権(一般の先取特権その他一般の優先権がある債権、特別清算の手続のために清算株式会社に対して生じた債権及び特別清算の手続に関する清算株式会社に対する費用請求権を除く。以下この節において「協定債権」という。)については、第九百三十八

제513조 특별청산개시 신청의 취하 제한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특별청산개시의 명령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조의 중지명령, 제540조 제2항의 보전처분 또는 제541조 제2항의 처분이 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14조 특별청산개시의 명령

법원은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특별청산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을 한다.

1. 특별청산절차 비용의 예납이 없는 때
2. 특별청산에 의하여도 청산이 종료될 전망이 없음이 분명한 때
3. 특별청산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 때
4. 부당한 목적으로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이 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제515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①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때 파산절차개시의 신청,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재산공시절차 (민사집행법 (1979년 법률 제4호) 제197조 제1항의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신청은 할 수 없고 파산절차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실행되고 있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절차 및 재산공시절차는 중지한다. 다만, 일반적 선취특권 그 밖에 일반적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재산공시절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확정된 때는 전항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특별청산절차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때 청산주식회사 채권자의 채권 (일반적 선취특권 그 밖에 일반적 우선권이 있는 채권, 특별청산절차를 위하여 청산주식회사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 및 특별청산절차에 관한 청산주식회사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협정채권”이라 한다)은 제938조 제1항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条第一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規定する特別清算開始の取消しの登記又は特別清算終結の登記の日から二箇月を経過する日までの間は、時効は、完成しない。

第516条 担保権の実行の手続等の中止命令

裁判所は、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債権者の一般の利益に適合し、かつ、担保権の実行の手続等(清算株式会社の財産につき存する担保権の実行の手続、企業担保権の実行の手続又は清算株式会社の財産に対して既にされている一般の先取特権その他一般の優先権がある債権に基づく強制執行の手続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申立人に不当な損害を及ぼすおそれがないものと認めるときは、清算人、監査役、債権者若しくは株主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相当の期間を定めて、担保権の実行の手続等の中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517条 相殺の禁止

1 協定債権を有する債権者(以下この節において「協定債権者」という。)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相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特別清算開始後に清算株式会社に対して債務を負担したとき。
- 二 支払不能(清算株式会社が、支払能力を欠くために、その債務のうち弁済期にあるものにつき、一般的かつ継続的に弁済することができない状態をいう。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じ。)になった後に契約によって負担する債務を専ら協定債権をもってする相殺に供する目的で清算株式会社の財産の処分を内容とする契約を清算株式会社との間で締結し、又は清算株式会社に対して債務を負担する者の債務を引き受けることを内容とする契約を締結することにより清算株式会社に対して債務を負担した場合であって、当該契約の締結の当時、支払不能であったことを知っていたとき。
- 三 支払の停止があった後に清算株式会社に対して債務を負担した場合であって、その負担の当時、支払の停止があったことを知っていたとき。ただし、当該支払の停止があった時において支払不能でなかっ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四 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があった後に清算株式会社に対して債務を負担した場合であって、その負担の当時、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があったことを知っていたとき。

제2호 또는 제3호의 특별청산개시 취소의 등기 또는 특별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날까지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516조 담보권 실행 절차등의 중지명령

법원은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고 담보권 실행 절차등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 기업담보권의 실행절차 또는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실행되고 있는 일반적 선취특권 그 밖에 일반적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의거한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신청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산인, 감사, 채권자나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권 실행 절차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517조 상계의 금지

① 협정채권을 가진 채권자 (이하 이 절에서 “협정채권자”라 한다) 는 다음의 경우 상계를 할 수 없다.

1. 특별청산개시 후 청산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지급불능 (청산주식회사가 지급능력을 상실하여 채무 중 변제기에 있는 것에 대해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 이 된 후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오로지 협정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제공할 목적으로 청산주식회사 재산의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청산주식회사와 체결하거나 청산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산주식회사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계약의 체결 당시 지급불능의 사실을 안 때
3. 지급의 정지 후 청산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부담 당시 지급의 정지의 사실을 안 때. 다만, 지급의 정지가 있었던 때 지급불능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특별청산개시의 신청 후 청산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부담 당시 특별청산개시의 신청 사실을 안 때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2 前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の規定は、これらの規定に規定する債務の負担が次に掲げる原因のいずれかに基づく場合には、適用しない。

- 一 法定の原因
- 二 支払不能であったこと又は支払の停止若しくは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があったことを協定債権者が知った時より前に生じた原因
- 三 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があった時より一年以上前に生じた原因

第518条

1 清算株式会社に対して債務を負担する者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相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特別清算開始後に他人の協定債権を取得したとき。
- 二 支払不能になった後に協定債権を取得した場合であって、その取得の当時、支払不能であったことを知っていたとき。
- 三 支払の停止があった後に協定債権を取得した場合であって、その取得の当時、支払の停止があったことを知っていたとき。ただし、当該支払の停止があった時において支払不能でなかっ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四 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があった後に協定債権を取得した場合であって、その取得の当時、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があったことを知っていたとき。

2 前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の規定は、これらの規定に規定する協定債権の取得が次に掲げる原因のいずれかに基づく場合には、適用しない。

- 一 法定の原因
- 二 支払不能であったこと又は支払の停止若しくは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があったことを清算株式会社に対して債務を負担する者が知った時より前に生じた原因
- 三 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があった時より一年以上前に生じた原因
- 四 清算株式会社に対して債務を負担する者と清算株式会社との間の契約

第518条の2

協定債権者は、共助対象外国租税の請求権をもって特別清算の手續に参加するには、租税条約等実施特例法第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共助実施決定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전항 제2호 내지 제4호는 그 채무부담이 다음 원인의 어느 하나에 의거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 원인
2. 지급불능인 것 또는 지급의 정지나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이 있었던 것을 협정채권자가 알기 전에 발생한 원인
3.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이 있었던 때 보다 1년 이상 전에 발생한 원인

제518조

① 청산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 상계를 할 수 없다.

1. 특별청산개시 후 타인의 협정채권을 취득한 때
2. 지급불능이 된 후 협정채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 당시 지급불능의 사실을 안 때
3. 지급의 정지 후 협정채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 당시 지급의 정지의 사실을 안 때. 다만, 지급의 정지가 있었던 때에 있어서 지급불능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특별청산개시의 신청 후 협정채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 당시 특별청산개시의 신청 사실을 안 때

② 전항 제2호 내지 제4호는 그 협정채권의 취득이 다음 원인의 어느 하나에 의거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 원인
2. 지급불능인 것 또는 지급의 정지나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이 있었던 것을 청산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알기 전에 발생한 원인
3.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이 있었던 때 보다 1년 이상 전에 발생한 원인
4. 청산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청산주식회사간의 계약

제518조의2 공조대상 외국조세채권자의 절차참가

협정채권자는 공조대상외국조세청구권을 가지고 특별청산절차에 참여하려면 조세조약등실시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공조실시결정을 얻어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第2款 裁判所による監督及び調査

第519条 裁判所による監督

- 1 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ったときは、清算株式会社の清算は、裁判所の監督に属する。
- 2 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清算株式会社の業務を監督する官庁に対し、当該清算株式会社の特別清算の手続について意見の陳述を求め、又は調査を囑託することができる。
- 3 前項の官庁は、裁判所に対し、当該清算株式会社の特別清算の手続について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第520条 裁判所による調査

裁判所は、いつでも、清算株式会社に対し、清算事務及び財産の状況の報告を命じ、その他清算の監督上必要な調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521条 裁判所への財産目録等の提出

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った場合には、清算株式会社は、第四百九十二条第三項の承認があった後遅滞なく、財産目録等(同項に規定する財産目録等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裁判所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財産目録等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裁判所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22条 調査命令

- 1 裁判所は、特別清算開始後において、清算株式会社の財産の状況を考慮し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清算人、監査役、債権の申出をした債権者その他清算株式会社に知っている債権者の債権の総額の十分の一以上に当たる債権を有する債権者若しくは総株主(株主総会において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の全部につき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を除く。)の議決権の百分の三(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議決権を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から引き続き有する株主若しくは発行済株式(自己株式を除く。)の百分の三(これを下回る割合を

제2관 법원에 의한 감독 및 조사

제519조 법원에 의한 감독

- ①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때는 청산주식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산주식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청산주식회사의 특별청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관청은 법원에 청산주식회사의 특별청산절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20조 법원에 의한 조사

법원은 언제든지 청산주식회사에 청산사무 및 재산상태의 보고를 명하고 그 밖에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21조 법원에 대한 재산목록 등의 제출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청산주식회사는 제492조 제3항의 승인이 있는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등 (동항의 재산목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목록등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2조 조사명령

- ① 법원은 특별청산개시 후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산인, 감사, 채권의 신고를 한 채권자 그 밖에 청산주식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 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총주주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제외한다) 의결권의 100분의 3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의결권을 6월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는 주주나 발행주식총수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의 100분의 3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割合) 以上の数の株式を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期間) 前から引き続き有する株主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調査委員による調査を命ずる処分(第五百三十三条において「調査命令」という。) 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特別清算開始に至った事情

二 清算株式会社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

三 第五百四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保全処分をする必要があるかどうか。

四 第五百四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保全処分をする必要があるかどうか。

五 第五百四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役員等責任査定決定をする必要があるかどうか。

六 その他特別清算に必要な事項で裁判所の指定するもの

2 清算株式会社の財産につき担保権(特別の先取特権、質権、抵当権又はこの法律若しくは商法の規定による留置権に限る。) を有する債権者がその担保権の行使によって弁済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債権の額は、前項の債権の額に算入しない。

3 公開会社でない清算株式会社における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期間) 前から引き続き有する」とあるのは、「有する」とする。

第3款 清算人

第523条 清算人の公平誠実義務

特別清算が開始された場合には、清算人は、債権者、清算株式会社及び株主に対し、公平かつ誠実に清算事務を行う義務を負う。

第524条 清算人の解任等

1 裁判所は、清算人が清算事務を適切に行っていないとき、その他重要な事由があるときは、債権者若しくは株主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清算人を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2 清算人が欠けたときは、裁判所は、清算人を選任する。

3 清算人がある場合においても、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更に清算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그 비율) 이상의 수의 주식을 6월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는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를 명령하는 처분 (제533조에서 “조사 명령”이라 한다) 을 할 수 있다.

1. 특별청산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2. 청산주식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
3. 제540조 제1항의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4. 제542조 제1항의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5. 제545조 제1항의 임원등책임사정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특별청산에 필요한 사항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것

②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해 담보권 (특별한 선취특권, 질권, 저당권,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른 유치권에 한한다) 을 가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의 가액은 전항의 채권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회사가 아닌 청산주식회사에 대한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중 “6월 (이것을 하회하는 기간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는”은 “보유하는”으로 한다.

제3판 청산인

제523조 청산인의 공평성실의무

특별청산이 개시된 경우 청산인은 채권자, 청산주식회사 및 주주에 대하여 공평성실하게 청산사무를 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524조 청산인의 해임 등

① 법원은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적절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때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②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③ 청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第525条 清算人代理

- 1 清算人は、必要があるときは、その職務を行わせるため、自己の責任で一人又は二人以上の清算人代理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清算人代理の選任については、裁判所の許可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26条 清算人の報酬等

- 1 清算人は、費用の前払及び裁判所が定める報酬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は、清算人代理について準用する。

第4款 監督委員

第527条 監督委員の選任等

- 1 裁判所は、一人又は二人以上の監督委員を選任し、当該監督委員に対し、第五百三十五条第一項の許可に代わる同意をする権限を付与することができる。
- 2 法人は、監督委員となることができる。

第528条 監督委員に対する監督等

- 1 監督委員は、裁判所が監督する。
- 2 裁判所は、監督委員が清算株式会社の業務及び財産の管理の監督を適切に行っていないとき、その他重要な事由があるときは、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監督委員を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529条 二人以上の監督委員の職務執行

監督委員が二人以上あるときは、共同してその職務を行う。ただし、裁判所の許可を得て、それぞれ単独にその職務を行い、又は職務を分掌することができる。

第530条 監督委員による調査等

- 1 監督委員は、いつでも、清算株式会社の清算人及び監査役並びに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に対し、事業の報告を求め、又は清算株式会社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を調査することができる。

제525조 청산인대리

- ① 청산인은 필요한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또는 2인 이상의 청산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청산인대리의 선임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26조 청산인의 보수 등

- ① 청산인은 비용의 선급 및 법원이 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② 전항은 청산인 대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관 감독위원

제527조 감독위원의 선임 등

- ① 법원은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감독위원을 선임하여 감독위원에게 제535조 제1항의 허가에 갈음하는 동의를 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법인은 감독위원이 될 수 있다.

제528조 감독위원회에 대한 감독 등

- ① 감독위원은 법원이 감독한다.
- ② 법원은 감독위원이 청산주식회사의 업무 및 재산 관리의 감독을 적절하게 행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감독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529조 2인 이상의 감독위원의 직무집행

감독위원이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각각 단독으로 그 직무를 행하거나 직무를 분담할 수 있다.

제530조 감독위원회에 의한 조사 등

- ① 감독위원은 언제든지 청산주식회사의 청산인, 감사,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에게 사업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청산주식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2 監督委員は、その職務を行う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清算株式会社の子会社に対し、事業の報告を求め、又はその子会社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を調査することができる。

第531条 監督委員の注意義務

1 監督委員は、善良な管理者の注意をもって、その職務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監督委員が前項の注意を怠ったときは、その監督委員は、利害関係人に対し、連帯して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第532条 監督委員の報酬等

1 監督委員は、費用の前払及び裁判所が定める報酬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2 監督委員は、その選任後、清算株式会社に対する債権又は清算株式会社の株式を譲り受け、又は譲り渡すには、裁判所の許可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3 監督委員は、前項の許可を得ないで同項に規定する行為をしたときは、費用及び報酬の支払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第5款 調査委員

第533条 調査委員の選任等

裁判所は、調査命令をする場合には、当該調査命令において、一人又は二人以上の調査委員を選任し、調査委員が調査すべき事項及び裁判所に対して調査の結果の報告をすべき期間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534条 監督委員に関する規定の準用

前款(第五百二十七条第一項及び第五百二十九条ただし書を除く。)の規定は、調査委員について準用する。

第6款 清算株式会社の行為の制限等

第535条 清算株式会社の行為の制限

1 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った場合には、清算株式会社が次に掲げる行為をするには、裁判所の許可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五百二十七条第一項の

② 감독위원은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청산주식회사의 자회사에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31조 감독위원의 주의의무

- ① 감독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② 감독위원이 전항의 주의를 기울리 한 때에는 그 감독위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32조 감독위원의 보수 등

- ① 감독위원은 비용의 선급 및 법원이 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② 감독위원이 선임 후 청산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또는 청산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③ 감독위원이 전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동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비용 및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제5관 조사위원

제533조 조사위원의 선임 등

법원은 조사명령을 한 경우 1인 또는 2인 이상의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조사위원이 조사하여야 할 사항 및 법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534조 감독위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전관(제527조 제1항 및 제529조 단서는 제외한다)은 조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관 청산주식회사의 행위의 제한 등

제535조 청산주식회사의 행위의 제한

- ①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청산주식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52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독위원이 선임되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規定により監督委員が選任されているときは、これに代わる監督委員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財産の処分(次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除く。)
 - 二 借財
 - 三 訴えの提起
 - 四 和解又は仲裁合意(仲裁法(平成十五年法律第百三十八号) 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仲裁合意をいう。)
 - 五 権利の放棄
 - 六 その他裁判所の指定する行為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行為について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同項の許可を要しない。
- 一 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額以下の価額を有するものに関するとき。
 -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裁判所が前項の許可を要しないものとしたものに関するとき。
- 3 第一項の許可又はこれに代わる監督委員の同意を得ないでした行為は、無効とする。ただし、これをもって善意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536条 事業の譲渡の制限等

- 1 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った場合には、清算株式会社が次に掲げる行為をするには、裁判所の許可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事業の全部の譲渡
 - 二 事業の重要な一部の譲渡(当該譲渡により譲り渡す資産の帳簿価額が当該清算株式会社の総資産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の五分の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を超えないものを除く。)
- 2 前条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許可を得ないでした行為について準用する。
- 3 第七章(第四百六十七条第一項第五号を除く。)の規定は、特別清算の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537条 債務の弁済の制限

- 1 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った場合には、清算株式会社は、協定債権者に対し

어 있는 때에는 이에 대신하는 감독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처분 (다음 조 제1항 각호의 행위는 제외한다)
 2. 차입
 3. 소의 제기
 4. 화해 또는 중재합의 (중재법 (2003년 법률 제138호) 제2조 제1항의 중재합의를 말한다)
 5. 권리의 포기
 6.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에 관하여는 다음의 경우 그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1.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액 이하의 가액을 보유하는 것에 관한 때
 2. 전항 것 외에 법원이 전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것에 관한 때
- ③ 제1항의 허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감독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536조 사업양도의 제한 등

- ①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청산주식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사업 전부의 양도
 2. 사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양도에 의하여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청산주식회사의 총자산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가액의 5분의 1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전조 제3항은 전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③ 제7장 (제467조 제1항 제5호는 제외한다) 은 특별청산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7조 채무변제의 제한

- ①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청산주식회사는 협정채권자에게 채권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て、その債権額の割合に応じて弁済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清算株式会社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少額の協定債権、清算株式会社の財産につき存する担保権によって担保される協定債権その他これを弁済しても他の債権者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協定債権に係る債務について、債権額の割合を超えて弁済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538条 換価の方法

1 清算株式会社は、民事執行法 その他強制執行の手続に関する法令の規定により、その財産の換価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五百三十五条第一項第一号の規定は、適用しない。

2 清算株式会社は、民事執行法 その他強制執行の手続に関する法令の規定により、第五百二十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担保権(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単に「担保権」という。)の目的である財産の換価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担保権を有する者(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担保権者」という。)は、その換価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

3 前二項の場合には、民事執行法第六十三条 及び第二百二十九条 (これらの規定を同法 その他強制執行の手続に関する法令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は、適用しない。

4 第二項の場合において、担保権者が受けるべき金額がまだ確定していないときは、清算株式会社は、代金を別に寄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担保権は、寄託された代金につき存する。

第539条 担保権者が処分をすべき期間の指定

1 担保権者が法律に定められた方法によらないで担保権の目的である財産の処分をする権利を有するときは、裁判所は、清算株式会社の申立てにより、担保権者がその処分をすべき期間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2 担保権者は、前項の期間内に処分をしないときは、同項の権利を失う。

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산주식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액의 협정채권,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협정채권 그 밖에 이를 변제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협정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액의 비율을 초과하여 변제할 수 있다.

제538조 환가의 방법

① 청산주식회사는 민사집행법 그 밖에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법령에 따라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35조 제1항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청산주식회사는 민사집행법 그 밖에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제522조 제2항의 담보권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단순히 “담보권”이라 한다)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을 가진 자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담보권자”라 한다) 는 그 환가를 거절할 수 없다.

③ 전2항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63조 및 제129조 (이러한 규정을 동법 그 밖에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법령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담보권자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산주식회사는 대금을 별도로 기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권은 기탁된 대금에 관하여 존재한다.

제539조 담보권자가 처분하여야 할 기간의 지정

① 담보권자가 법률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 때 법원은 청산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자가 그 처분을 하여야 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담보권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항의 권리를 상실한다.

第7款 清算の監督上必要な処分等

第540条 清算株式会社の財産に関する保全処分

1 裁判所は、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清算の監督上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債権者、清算人、監査役若しくは株主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清算株式会社の財産に関し、その財産の処分禁止の仮処分その他の必要な保全処分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は、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があった時から当該申立てについての決定があるまでの間においても、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債権者、清算人、監査役若しくは株主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前項の規定による保全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を却下する決定に対して第八百九十条第五項の即時抗告がされたときも、同様とする。

3 裁判所が前二項の規定により清算株式会社が債権者に対して弁済その他の債務を消滅させる行為をすることを禁止する旨の保全処分を命じた場合には、債権者は、特別清算の関係においては、当該保全処分に反してされた弁済その他の債務を消滅させる行為の効力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債権者が、その行為の当時、当該保全処分がされたことを知っていたときに限る。

第541条 株主名簿の記載等の禁止

1 裁判所は、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清算の監督上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債権者、清算人、監査役若しくは株主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清算株式会社が株主名簿記載事項を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は、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があった時から当該申立てについての決定があるまでの間においても、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債権者、清算人、監査役若しくは株主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前項の規定によ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を却下する決定に対して第八百九十条第五項の即時抗告がされたときも、同様とする。

第542条 役員等の財産に対する保全処分

1 裁判所は、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清算の監督上必要が

제7관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처분 등

제540조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 ① 법원은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에 청산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 청산인, 감사나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이 있었던 때부터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 청산인, 감사나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전항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890조 제5항의 즉시항고가 된 때에도 같다.
- ③ 법원이 전2항에 의하여 청산주식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그 밖의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금지하는 뜻의 보전처분을 명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특별청산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전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변제 그 밖의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보전처분이 된 것을 안 때에 한한다.

제541조 주주명부 기재 등의 금지

- ① 법원은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에 청산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 청산인, 감사나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주식회사가 주주명부 기재사항을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이 있었던 때로부터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 청산인, 감사나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전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890조 제5항의 즉시항고가 된 때에도 같다.

제542조 임원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① 법원은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청산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あると認めるときは、清算株式会社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発起人、設立時取締役、設立時監査役、第四百二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役員等又は清算人(以下この款において「対象役員等」という。)の責任に基づく損害賠償請求権につき、当該対象役員等の財産に対する保全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は、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があった時から当該申立てについての決定があるまでの間においても、緊急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清算株式会社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前項の規定による保全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を却下する決定に対して第八百九十条第五項の即時抗告がされたときも、同様とする。

第543条 役員等の責任の免除の禁止

裁判所は、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清算の監督上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債権者、清算人、監査役若しくは株主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対象役員等の責任の免除の禁止の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544条 役員等の責任の免除の取消し

1 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ったときは、清算株式会社は、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があった後又はその前一年以内にした対象役員等の責任の免除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不正の目的によってした対象役員等の責任の免除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取消権は、訴え又は抗弁によって、行使する。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取消権は、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った日から二年を経過したときは、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当該対象役員等の責任の免除の日から二十年を経過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第545条 役員等責任査定決定

1 裁判所は、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清算株式会社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対象役員等の責任に基づく損害賠償請求権の査定の裁判(以下この条において「役員等責任査定決定」という。)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は、職権で役員等責任査定決定の手続を開始する場合には、その旨の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하는 때에는 청산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발기인, 설립시이사, 설립시감사, 제423조 제1항의 임원 등 또는 청산인 (이하 이 관에서 “대상임원등”이라 한다) 의 책임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대상임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이 있었던 때로부터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에도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산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전항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890조 제5항의 즉시항고가 된 때에도 같다.

제543조 임원 등의 책임면제 금지

법원은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청산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 청산인, 감사나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상임원등의 책임면제 금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제544조 임원 등의 책임면제 취소

①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때는 청산주식회사는 특별청산개시의 신청 후 또는 그 전 1년 이내에 한 대상임원등의 책임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대상임원등의 책임면제에 관하여도 같다.

② 전항의 취소권은 소송 또는 항변에 의하여 행사한다.

③ 제1항의 취소권은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대상임원등의 책임면제일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제545조 임원등책임사정결정

① 법원은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산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상임원등의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재판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책임사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직권으로 임원등책임사정결정의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3 第一項の申立て又は前項の決定があったときは、時効の中断に関しては、裁判上の請求があったものとみなす。

4 役員等責任査定決定の手續(役員等責任査定決定があった後のものを除く。)は、特別清算が終了したときは、終了する。

第8款 債権者集会

第546条 債権者集会の招集

1 債権者集会は、特別清算の実行上必要がある場合には、いつでも、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

2 債権者集会は、次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招集する場合を除き、清算株式会社が招集する。

第547条 債権者による招集の請求

1 債権の申出をした協定債権者その他清算株式会社に知れている協定債権者の協定債権の総額の十分の一以上に当たる協定債権を有する協定債権者は、清算株式会社に對し、債権者集会の目的である事項及び招集の理由を示して、債権者集会の招集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清算株式会社の財産につき第五百二十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担保権を有する協定債権者がその担保権の行使によって弁済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協定債権の額は、前項の協定債権の額に算入しない。

3 次に掲げる場合に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た協定債権者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債権者集会を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の後遅滞なく招集の手續が行われない場合

二 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日から六週間以内の日を債権者集会の日とする債権者集会の招集の通知が発せられない場合

第548条 債権者集会の招集等の決定

1 債権者集会を招集する者(以下この款において「招集者」という。)は、債権者集会を招集す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債権者集会の日時及び場所

- ③ 제1항의 신청 또는 전항의 결정이 있었던 때에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④ 임원등책임사정결정의 절차 (임원등책임사정결정 후의 절차는 제외한다)는 특별청산이 종료한 때에 종료한다.

제8관 채권자집회

제546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 ① 채권자집회는 특별청산의 실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 ② 채권자집회는 다음 조 제3항에 따라 소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주식회사가 소집한다.

제547조 채권자에 의한 소집의 청구

- ① 채권의 신고를 한 협정채권자 그 밖에 청산주식회사에 알려져 있는 협정채권자가 가진 협정채권 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협정채권을 가진 협정채권자는 청산주식회사에 채권자집회의 목적사항 및 소집이유를 제출하여 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제522조 제2항의 담보권을 가진 협정채권자가 그 담보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협정채권의 가액은 전항의 협정채권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다음의 경우 제1항의 청구를 한 협정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 1. 제1항의 청구 후 지체없이 소집절차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 2.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6주간 이내의 날을 채권자집회일로 하는 채권자집회 소집의 통지가 발송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548조 채권자집회 소집 등의 결정

- ① 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자 (이하 이 관에서 “소집자”라 한다)는 채권자집회를 소집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채권자집회의 일시 및 장소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二 債権者集会の目的である事項

三 債権者集会に出席しない協定債権者が電磁的方法によっ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2 清算株式会社が債権者集会を招集する場合には、当該清算株式会社は、各協定債権について債権者集会における議決権の行使の許否及びその額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清算株式会社以外の者が債権者集会を招集する場合には、その招集者は、清算株式会社に対し、前項に規定する事項を定めること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清算株式会社は、同項に規定す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4 清算株式会社の財産につき第五百二十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担保権を有する協定債権者は、その担保権の行使によって弁済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協定債権の額については、議決権を有しない。

第549条 債権者集会の招集の通知

1 債権者集会を招集するには、招集者は、債権者集会の日の二週間前までに、債権の申出をした協定債権者その他清算株式会社に知れている協定債権者及び清算株式会社に對して、書面をもってその通知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招集者は、前項の書面による通知の発出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項の通知を受けるべき者の承諾を得て、電磁的方法により通知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招集者は、同項の書面による通知を発したものとみなす。

3 前二項の通知に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三項の規定は、債権の申出をした債権者その他清算株式会社に知れている債権者であって一般の先取特権その他一般の優先権がある債権、特別清算の手続のために清算株式会社に對して生じた債権又は特別清算の手続に関する清算株式会社に對する費用請求権を有するものについて準用する。

2. 채권자집회의 목적사항
3.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협정채권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그 뜻
4. 전3호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청산주식회사가 채권자집회를 소집한 경우 청산주식회사는 각 협정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청산주식회사 이외의 자가 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자는 청산주식회사에 전항의 사항을 정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청산주식회사는 동항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제522조 제2항의 담보권을 가진 협정채권자는 그 담보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협정채권 금액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49조 채권자집회 소집의 통지

- ① 채권자집회를 소집하려면 소집자는 채권자집회일의 2주간 전까지 채권의 신고를 한 협정채권자 그 밖에 청산주식회사에 알려져 있는 협정채권자 및 청산주식회사에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소집자는 전항의 서면에 의한 통지의 발송에 갈음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항의 통지를 받아야 하는 자의 승낙을 얻어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자는 동항의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본다.
- ③ 전2항의 통지에는 전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전3항은 채권의 신고를 한 채권자 그 밖에 청산주식회사에 알려져 있는 채권자로서 일반적 선취특권 그 밖에 일반적 우선권이 있는 채권, 특별청산절차를 위하여 청산주식회사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 또는 특별청산절차에 관한 청산주식회사에 대한 비용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第550条 債権者集会参考書類及び議決権行使書面の交付等

1 招集者は、前条第一項の通知に際し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債権の申出をした協定債権者その他清算株式会社に知れている協定債権者に対し、当該協定債権者が有する協定債権について第五百四十八条第二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定められた事項及び議決権の行使について参考となるべき事項を記載した書類(次項において「債権者集会参考書類」という。)並びに協定債権者が議決権を行使するための書面(以下この款において「議決権行使書面」という。)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招集者は、前条第二項の承諾をした協定債権者に対し同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通知を発す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よる債権者集会参考書類及び議決権行使書面の交付に代えて、これらの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協定債権者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これらの書類を当該協定債権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51条

1 招集者は、第五百四十八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には、第五百四十九条第二項の承諾をした協定債権者に対する電磁的方法による通知に際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協定債権者に対し、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当該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招集者は、第五百四十八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において、第五百四十九条第二項の承諾をしていない協定債権者から債権者集会の日の一週間前までに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直ちに、当該協定債権者に対し、当該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52条 債権者集会の指揮等

1 債権者集会は、裁判所が指揮する。

2 債権者集会を招集しようとするときは、招集者は、あらかじめ、第五百四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及び同条第二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定められた事項を裁判所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제550조 채권자집회 참고서류 및 의결권행사서면의 교부 등

① 소집자는 전조 제1항의 통지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의 신고를 한 협정채권자 그 밖에 청산주식회사에 알려져 있는 협정채권자에게 당해 협정채권자가 보유하는 협정채권에 관하여 제54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참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다음 항에서 “채권자집회참고서류”라고 한다)와 협정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서면(이하 이 관에서 “의결권행사서면”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소집자는 전조 제2항의 승낙을 한 협정채권자에게 동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는 때에는 전항의 채권자집회 참고서류 및 의결권행사서면의 교부에 갈음하여 이러한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협정채권자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이러한 서류를 그 협정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51조

① 소집자는 제548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 제549조 제2항의 승낙을 한 협정채권자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채권자에게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소집자는 제548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에 제549조 제2항의 승낙을 하지 않고 있는 협정채권자로부터 채권자집회일의 1주전까지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협정채권자에게 그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52조 채권자집회의 지휘 등

①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② 채권자집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소집자는 미리 제548조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동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第553条 異議を述べられた議決権の取扱い

債権者集会において、第五百四十八条第二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各協定債権について定められた事項について、当該協定債権を有する者又は他の協定債権者が異議を述べたときは、裁判所がこれを定める。

第554条 債権者集会の決議

1 債権者集会において決議をする事項を可決するには、次に掲げる同意のいずれもが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出席した議決権者(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協定債権者をいう。以下この款及び次款において同じ。)の過半数の同意
- 二 出席した議決権者の議決権の総額の二分の一を超える議決権を有する者の同意

2 第五百五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その有する議決権の一部のみを前項の事項に同意するものとして行使した議決権者(その余の議決権を行使しなかったものを除く。)があるときの同項第一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議決権者一人につき、出席した議決権者の数に一を、同意をした議決権者の数に二分の一を、それぞれ加算するものとする。

3 債権者集会は、第五百四十八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以外の事項については、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555条 議決権の代理行使

1 協定債権者は、代理人によってその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協定債権者又は代理人は、代理権を証明する書面を招集者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代理権の授与は、債権者集会ごと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協定債権者又は代理人は、代理権を証明する書面の提出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招集者の承諾を得て、当該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協定債権者又は代理人は、当該書面を提出したものとみなす。

4 協定債権者が第五百四十九条第二項の承諾をした者である場合には、招集者は、正当な理由がなければ、前項の承諾をすることを拒んではならない。

제553조 이의를 제기한 의결권의 취급

채권자집회에서 제54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협정채권에 관하여 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 협정채권을 가지는 자 또는 다른 협정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554조 채권자집회의 결의

① 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가결하려면 다음의 모든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출석한 의결권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협정채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다음 관에서 같다) 과반수의 동의
2. 출석한 의결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② 제558조 제1항에 의하여 의결권의 일부만을 전항의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행사한 의결권자 (그 나머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가 있을 때 동항 제1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당해 의결권자 1인에 관하여 출석한 의결권자의 수에 1을, 동의를 한 의결권자의 수에 2분의 1을 각각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채권자집회는 제548조 제1항 제2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결의를 할 수 없다.

제55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협정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채권자 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대리권의 수여는 채권자집회마다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정채권자 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에 갈음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자의 승낙을 얻어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채권자 또는 대리인은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협정채권자가 제549조 제2항의 승낙을 한 자인 경우 소집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승낙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第556条 書面による議決権の行使

- 1 債権者集会に出席しない協定債権者は、書面によっ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
- 2 書面による議決権の行使は、議決権行使書面に必要な事項を記載し、法務省令で定める時までには当該記載をした議決権行使書面を招集者に提出して行う。
- 3 前項の規定により書面によって議決権を行使した議決権者は、第五百五十四条第一項及び第五百六十七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債権者集会に出席したものとみなす。

第557条 電磁的方法による議決権の行使

- 1 電磁的方法による議決権の行使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招集者の承諾を得て、法務省令で定める時までには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当該招集者に提供して行う。
- 2 協定債権者が第五百四十九条第二項の承諾をした者である場合には、招集者は、正当な理由がなければ、前項の承諾をすることを拒んではならない。
-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電磁的方法によって議決権を行使した議決権者は、第五百五十四条第一項及び第五百六十七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債権者集会に出席したものとみなす。

第558条 議決権の不統一行使

- 1 協定債権者は、その有する議決権を統一しないで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債権者集会の日の三日前までに、招集者に対してその旨及びその理由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招集者は、前項の協定債権者が他人のために協定債権を有する者でないときは、当該協定債権者が同項の規定によりその有する議決権を統一しないで行使することを拒むことができる。

第559条 担保権を有する債権者等の出席等

債権者集会又は招集者は、次に掲げる債権者の出席を求め、その意見を聴く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債権者集会にあっては、これをする旨の決議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

제556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협정채권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행사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그 의결권행사서면을 소집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다.
- ③ 전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의결권자는 제554조 제1항 및 제567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 채권자집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57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자의 승낙을 얻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소집자에게 제공하여 행사한다.
- ② 협정채권자가 제549조 제2항의 승낙을 한 자인 경우 소집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전항의 승낙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의결권자는 제554조 제1항 및 제567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58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협정채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집회일의 3일 전까지 소집자에게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소집자는 전항의 협정채권자가 타인을 위하여 협정채권을 가지는 자가 아닌 때에는 협정채권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지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제559조 담보권을 보유하는 채권자 등의 출석 등

채권자집회 또는 소집자는 다음의 채권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집회에서는 이를 하는 뜻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 一 第五百二十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担保権を有する債権者
- 二 一般の先取特権その他一般の優先権がある債権、特別清算の手續のために清算株式会社に対して生じた債権又は特別清算の手續に関する清算株式会社に対する費用請求権を有する債権者

第560条 延期又は続行の決議

債権者集会においてその延期又は続行について決議があった場合には、第五百四十八条(第四項を除く。)及び第五百四十九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561条 議事録

債権者集会の議事については、招集者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議事録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62条 清算人の調査結果等の債権者集会に対する報告

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第四百九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清算人が清算株式会社の財産の現況についての調査を終了して財産目録等(同項に規定する財産目録等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作成したときは、清算株式会社は、遅滞なく、債権者集会を招集し、当該債権者集会に対して、清算株式会社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の調査の結果並びに財産目録等の要旨を報告するとともに、清算の実行の方針及び見込みに関して意見を述べ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債権者集会に対する報告及び意見の陳述以外の方法によりその報告すべき事項及び当該意見の内容を債権者に周知させることが適当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9款 協定

第563条 協定の申出

清算株式会社は、債権者集会に対し、協定の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564条 協定の条項

- 1 協定においては、協定債権者の権利(第五百二十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担保

1. 제522조 제2항의 담보권을 보유하는 채권자
2. 일반 선취특권 그 밖에 일반 우선권이 있는 채권, 특별청산절차를 위하여 청산주식회사에 발생한 채권 또는 특별청산절차에 관한 청산주식회사에 대한 비용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

제560조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채권자집회에서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548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54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1조 의사록

채권자집회의 의사에 관하여 소집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62조 청산인의 조사결과 등의 채권자집회에 대한 보고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제492조 제1항의 청산인이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를 종료하고 재산목록등(동항의 재산목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작성한 때에는 청산주식회사는 지체없이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채권자집회에 청산주식회사의 업무·재산상태의 조사결과 및 재산목록등의 요지를 보고함과 동시에 청산의 실행 방침 및 전망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집회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진술 이외의 방법으로 그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의견의 내용을 채권자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관 협정

제563조 협정의 신청

청산주식회사는 채권자집회에 대하여 협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64조 협정의 조항

- ① 협정에 있어서는 협정채권자의 권리(제522조 제2항의 담보권은 제외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権を除く。)の全部又は一部の変更に關する条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協定債権者の権利の全部又は一部を変更する条項においては、債務の減免、期限の猶予その他の権利の変更の一般的基準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565条 協定による権利の変更

協定による権利の変更の内容は、協定債権者の間では平等で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不利益を受ける協定債権者の同意がある場合又は少額の協定債権について別段の定めをしても衡平を害しない場合その他協定債権者の間に差を設けても衡平を害し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566条 担保権を有する債権者等の参加

清算株式会社は、協定案の作成に当たり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次に掲げる債権者の参加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一 第五百二十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担保権を有する債権者
- 二 一般の先取特権その他一般の優先権がある債権を有する債権者

第567条 協定の可決の要件

1 第五百五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債権者集会において協定を可決するには、次に掲げる同意のいずれもが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出席した議決権者の過半数の同意
 - 二 議決権者の議決権の総額の三分の二以上の議決権を有する者の同意
- 2 第五百五十四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第一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準用する。

第568条 協定の認可の申立て

協定が可決されたときは、清算株式会社は、遅滞なく、裁判所に対し、協定の認可の申立て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69条 協定の認可又は不認可の決定

- 1 前条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は、裁判所は、次項の場合を除き、協定の認可の決定をする。
- 2 裁判所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協定の不認可の決定をする。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에 관한 조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협정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조항에 있어서는 채무의 감면, 기한의 유예 그 밖의 권리변경의 일반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565조 협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

협정에 의한 권리 변경의 내용은 협정채권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협정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소액의 협정채권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협정채권자간에 차이를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6조 담보권을 가지는 채권자 등의 참가

청산주식회사는 협정안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채권자의 참가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522조 제2항의 담보권을 가지는 채권자
2. 일반 선취특권 그 밖에 일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

제567조 협정의 가결요건

① 제55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집회에서 협정을 가결하려면 다음의 모든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출석한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
2. 의결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의결권을 가지는 자의 동의

② 제554조 제2항은 전항 제1호의 적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68조 협정의 인가신청

협정이 가결된 때 청산주식회사는 지체없이 법원에 협정의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69조 협정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

① 전조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 법원은 다음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정 인가의 결정을 한다.

②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 불인가의 결정을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 一 特別清算の手續又は協定が法律の規定に違反し、かつ、その不備を補正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あるとき。ただし、特別清算の手續が法律の規定に違反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違反の程度が軽微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二 協定が遂行される見込みがないとき。
- 三 協定が不正の方法によって成立するに至ったとき。
- 四 協定が債権者の一般の利益に反するとき。

第570条 協定の効力発生の時期

協定は、認可の決定の確定により、その効力を生ずる。

第571条 協定の効力範囲

- 1 協定は、清算株式会社及びすべての協定債権者のために、かつ、それらの者に対して効力を有する。
- 2 協定は、第五百二十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債権者が有する同項に規定する担保権、協定債権者が清算株式会社の保証人その他清算株式会社と共に債務を負担する者に対して有する権利及び清算株式会社以外の者が協定債権者のために提供した担保に影響を及ぼさない。

第572条 協定の内容の変更

協定の実行上必要があるときは、協定の内容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五百六十三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を準用する。

第10款 特別清算の終了

第573条 特別清算終結の決定

裁判所は、特別清算開始後、次に掲げる場合には、清算人、監査役、債権者、株主又は調査委員の申立てにより、特別清算終結の決定をする。

- 一 特別清算が結了したとき。
- 二 特別清算の必要がなくなったとき。

1. 특별청산절차 또는 협정이 법률에 위반하는 한편 그 불비를 보정할 수 없는 것인 때. 다만, 특별청산절차가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협정이 수행될 전망이 없는 때
3. 협정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4. 협정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제570조 협정의 효력발생시기

협정은 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71조 협정의 효력범위

- ① 협정은 청산주식회사 및 모든 협정채권자를 위하여, 그리고 이러한 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 ② 협정은 제522조 제2항의 채권자가 가지는 동향의 담보권, 협정채권자가 청산주식회사의 보증인 그 밖에 청산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가지는 권리 및 청산주식회사 이외의 자가 협정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72조 협정내용의 변경

협정의 실행상 필요한 때에는 협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563조 내지 전조를 준용한다.

제10관 특별청산의 종결

제573조 특별청산종결의 결정

법원은 특별청산개시 후 다음의 경우에는 청산인, 감사, 채권자, 주주 또는 조사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청산종결의 결정을 한다.

1. 특별청산이 종료한 때
2. 특별청산의 필요가 없어진 때

第2編 株式会社

第9章 清算

第574条 破産手続開始の決定

1 裁判所は、特別清算開始後、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清算株式会社に破産手続開始の原因となる事実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職権で、破産法 に従い、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協定の見込みがないとき。
- 二 協定の実行の見込みがないとき。
- 三 特別清算によることが債権者の一般の利益に反するとき。

2 裁判所は、特別清算開始後、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清算株式会社に破産手続開始の原因となる事実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職権で、破産法 に従い、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協定が否決されたとき。
- 二 協定の不認可の決定が確定したとき。

3 前二項の規定により破産手続開始の決定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破産法第七十一条第一項第四号 並びに第二項第二号 及び第三号、第七十二条第一項第四号並びに第二項第二号及び第三号、第百六十条(第一項第一号を除く。)、第百六十二条(第一項第二号を除く。)、第百六十三条第二項、第百六十四条第一項(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百六十六条並びに第百六十七条第二項(同法第百七十条第二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次の各号に掲げる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申立てがあった時に破産手続開始の申立てがあったものとみなす。

- 一 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の前に特別清算開始の命令の確定によって効力を失った破産手続における破産手続開始の申立てがある場合 当該破産手続開始の申立て

-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

4 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破産手続開始の決定があったときは、特別清算の手続のために清算株式会社に対して生じた債権及び特別清算の手続に関する清算株式会社に対する費用請求権は、財団債権とする。

제574조 파산절차개시의 결정

① 법원은 특별청산개시 후 다음의 경우에 청산주식회사에 파산절차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법에 따라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협정의 전망이 없는 때
2. 협정이 실행될 전망이 없는 때
3. 특별청산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② 법원은 특별청산개시 후 다음의 경우에 청산주식회사에 파산절차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법에 따라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협정이 부결된 때
2. 협정의 불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③ 전2항에 의하여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파산법 제71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제72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163조 제2항, 제164조 제1항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6조 및 제167조 제2항 (동법 제17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신청이 있었던 때에 파산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1. 특별청산개시의 신청 전에 특별청산개시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당해 파산절차개시의 신청
2. 전호 이외의 경우 : 특별청산개시의 신청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었던 때에는 특별청산절차를 위하여 청산주식회사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 및 특별청산절차에 관한 청산주식회사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第3編 持分会社

第1章 設立

第575条 定款の作成

1 合名会社、合資会社又は合同会社(以下「持分会社」と総称する。)を設立するには、その社員になろうとする者が定款を作成し、その全員がこれに署名し、又は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定款は、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情報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署名又は記名押印に代わる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第576条 定款の記載又は記録事項

1 持分会社の定款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目的

二 商号

三 本店の所在地

四 社員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五 社員が無限責任社員又は有限責任社員のいずれであるかの別

六 社員の出資の目的(有限責任社員にあっては、金銭等に限る。)及びその価額又は評価の標準

2 設立しようとする持分会社が合名会社である場合には、前項第五号に掲げる事項として、その社員の全部を無限責任社員とする旨を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設立しようとする持分会社が合資会社である場合には、第一項第五号に掲げる事項として、その社員の一部を無限責任社員とし、その他の社員を有限責任社員とする旨を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設立しようとする持分会社が合同会社である場合には、第一項第五号に掲げる事項として、その社員の全部を有限責任社員とする旨を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3편 지분회사

제1장 설립

제575조 정관작성

- 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 (이하 “지분회사”라고 총칭한다) 를 설립 함에는 그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그 전원이 정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정관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전자적 기록에 의하여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76조 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 사항

- ① 지분회사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본점 소재지
 4. 사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5. 사원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인지 여부
 6. 사원의 출자목적(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금전 등에 한한다) 및 그 가액 또는 평가의 표준
- ② 설립하려는 지분회사가 합명회사인 경우에는 전항의 제5호의 사항으로 그 사원 전부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한다는 뜻을 기재하거나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설립하려는 지분회사가 합자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제5호의 사항으로 그 사원 일부를 무한책임사원으로 그 밖의 사원은 유한책임사원으로 한다는 뜻을 기재하거나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설립하려는 지분회사가 합동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제5호의 사항으로 그 사원 전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한다는 뜻을 기재하거나 기록하여야 한다.

第3編 持分会社

第2章 社員

第577条

前条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持分会社の定款には、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定款の定めが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事項及びその他の事項でこの法律の規定に違反しないものを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

第578条 合同会社の設立時の出資の履行

設立しようとする持分会社が合同会社である場合には、当該合同会社の社員になろうとする者は、定款の作成後、合同会社の設立の登記をする時までに、その出資に係る金銭の全額を払い込み、又はその出資に係る金銭以外の財産の全部を給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合同会社の社員になろうとする者全員の同意があるときは、登記、登録その他権利の設定又は移転を第三者に対抗するために必要な行為は、合同会社の成立後にすることを妨げない。

第579条 持分会社の成立

持分会社は、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設立の登記をすることによって成立する。

第2章 社員

第1節 社員の責任等

第580条 社員の責任

- 1 社員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連帯して、持分会社の債務を弁済する責任を負う。
 - 一 当該持分会社の財産をもってその債務を完済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
 - 二 当該持分会社の財産に対する強制執行がその効を奏しなかった場合(社員が、当該持分会社に弁済をする資力があり、かつ、強制執行が容易であることを証明した場合を除く。)
- 2 有限責任社員は、その出資の価額(既に持分会社に対し履行した出資の価額を除く。)を限度として、持分会社の債務を弁済する責任を負う。

제577조 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 사항

제577조 전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지분회사의 정관에는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의 정함이 없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사항 및 그 밖의 사항으로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을 기재하거나 기록할 수 있다.

제578조 합동회사 설립시 출자 이행

설립하려는 회사가 합동회사인 경우 당해 합동회사의 사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작성 후 합동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 그 출자에 관한 금전 전액을 납입하거나 그 출자에 관한 금전 이외의 재산 전부를 급부하여야 한다. 다만, 합동회사의 사원이 되려는 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설정 또는 이전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는 합동회사 성립 후에 하여도 된다.

제579조 지분회사의 성립

지분회사는 그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사원

제1절 사원의 책임 등

제580조 사원의 책임

- ① 사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연대하여 지분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1. 지분회사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2. 지분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 (사원이 당해 지분회사에 변제할 재력이 있고 강제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 (이미 지분회사에 이행한 출자 가액은 제외한다) 을 한도로 지분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第3編 持分会社

第2章 社員

第581条 社員の抗弁

- 1 社員が持分会社の債務を弁済する責任を負う場合には、社員は、持分会社が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抗弁をもって当該持分会社の債権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持分会社がその債権者に対して相殺権、取消権又は解除権を有するときは、社員は、当該債権者に対して債務の履行を拒むことができる。

第582条 社員の出資に係る責任

- 1 社員が金銭を出資の目的と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出資をすることを怠ったときは、当該社員は、その利息を支払うほか、損害の賠償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社員が債権を出資の目的と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債権の債務者が弁済期に弁済をしなかったときは、当該社員は、その弁済をする責任を負う。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社員は、その利息を支払うほか、損害の賠償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83条 社員の責任を変更した場合の特則

- 1 有限責任社員が無限責任社員となった場合には、当該無限責任社員となった者は、その者が無限責任社員となる前に生じた持分会社の債務についても、無限責任社員としてこれを弁済する責任を負う。
- 2 有限責任社員(合同会社の社員を除く。)が出資の価額を減少した場合であっても、当該有限責任社員は、その旨の登記をする前に生じた持分会社の債務については、従前の責任の範囲内でこれを弁済する責任を負う。
- 3 無限責任社員が有限責任社員となった場合であっても、当該有限責任社員となった者は、その旨の登記をする前に生じた持分会社の債務については、無限責任社員として当該債務を弁済する責任を負う。
- 4 前二項の責任は、前二項の登記後二年以内に請求又は請求の予告をしない持分会社の債権者に対しては、当該登記後二年を経過した時に消滅する。

第584条 無限責任社員となることを許された未成年者の行為能力

持分会社の無限責任社員となることを許された未成年者は、社員の資格に基づく行為に関しては、行為能力者とみなす。

제581조 사원의 항변

- ① 사원이 지분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경우 사원은 지분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 지분회사의 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지분회사가 채권자에게 상계권, 취소권 또는 해제권을 가지는 때에는 사원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있다.

제582조 사원의 출자에 관한 책임

- ① 사원이 금전을 출자목적으로 한 경우 그 출자를 해태한 경우 사원은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것 외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원이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원이 그 변제책임을 진다. 이 경우 사원은 그 이자의 지급 외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83조 사원의 책임을 변경한 경우의 특칙

- ①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자는 그 자가 무한책임사원으로 되기 전에 발생한 지분회사의 채무에 관하여도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변제할 책임을 진다.
- ② 유한책임사원(합동회사의 사원을 제외한다) 이 출자가액을 감소한 경우에도 유한책임사원은 그 뜻의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지분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 ③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도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자는 그 뜻의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지분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 ④ 전2항의 책임은 전2항의 등기 후 2년 이내에 청구 또는 청구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지분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당해 등기 후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제584조 무한책임사원으로 되는 것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지분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되는 것이 허락된 미성년자는 사원의 자격으로 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행위능력자로 본다.

第2節 持分の譲渡等

第585条 持分の譲渡

- 1 社員は、他の社員の全員の承諾がなければ、その持分の全部又は一部を他人に譲渡することができない。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業務を執行しない有限責任社員は、業務を執行する社員の全員の承諾があるときは、その持分の全部又は一部を他人に譲渡することができる。
- 3 第六百三十七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業務を執行しない有限責任社員の持分の譲渡に伴い定款の変更を生ずるときは、その持分の譲渡による定款の変更は、業務を執行する社員の全員の同意によってすることができる。
- 4 前三項の規定は、定款で別段の定めをすることを妨げない。

第586条 持分の全部の譲渡をした社員の責任

- 1 持分の全部を他人に譲渡した社員は、その旨の登記をする前に生じた持分会社の債務について、従前の責任の範囲内でこれを弁済する責任を負う。
- 2 前項の責任は、同項の登記後二年以内に請求又は請求の予告をしない持分会社の債権者に対しては、当該登記後二年を経過した時に消滅する。

第587条

- 1 持分会社は、その持分の全部又は一部を譲り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 2 持分会社が当該持分会社の持分を取得した場合には、当該持分は、当該持分会社がこれを取得した時に、消滅する。

第3節 誤認行為の責任

第588条 無限責任社員であると誤認させる行為等をした有限責任社員の責任

- 1 合資会社の有限責任社員が自己を無限責任社員であると誤認させる行為をしたときは、当該有限責任社員は、その誤認に基づいて合資会社と取引をした者に対し、無限責任社員と同一の責任を負う。

제2절 지분의 양도 등

제585조 지분의 양도

- ①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승낙이 없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 제637조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에 따라 정관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분양도에 의한 정관변경은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④ 전3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86조 지분의 전부를 양도한 사원의 책임

- ① 지분의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원은 그 뜻의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지분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종전의 책임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 ② 전항의 책임은 동항의 등기 후 2년 이내에 청구 또는 청구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지분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당해 등기 후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제587조

- ① 지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
- ② 지분회사가 당해 지분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지분은 지분회사가 이를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제3절 오인행위의 책임

제588조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등을 한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유한책임사원은 그 오인에 의거하여 합자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게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第3編 持分会社

第3章 管理

2 合資会社又は合同会社の有限責任社員がその責任の限度を誤認させる行為(前項の行為を除く。)をしたときは、当該有限責任社員は、その誤認に基づいて合資会社又は合同会社と取引をした者に対し、その誤認させた責任の範囲内で当該合資会社又は合同会社の債務を弁済する責任を負う。

第589条 社員であると誤認させる行為をした者の責任

1 合名会社又は合資会社の社員でない者が自己を無限責任社員であると誤認させる行為をしたときは、当該社員でない者は、その誤認に基づいて合名会社又は合資会社と取引をした者に対し、無限責任社員と同一の責任を負う。

2 合資会社又は合同会社の社員でない者が自己を有限責任社員であると誤認させる行為をしたときは、当該社員でない者は、その誤認に基づいて合資会社又は合同会社と取引をした者に対し、その誤認させた責任の範囲内で当該合資会社又は合同会社の債務を弁済する責任を負う。

第3章 管理

第1節 総則

第590条 業務の執行

1 社員は、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持分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

2 社員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は、持分会社の業務は、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社員の過半数をもって決定する。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持分会社の常務は、各社員が単独で行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完了前に他の社員が異議を述べ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591条 業務を執行する社員を定款で定めた場合

1 業務を執行する社員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おいて、業務を執行する社員が二人以上あるときは、持分会社の業務は、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業務を執行する社員の過半数をもって決定する。この場合における前条第三項の規定の適

②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책임의 한도를 오인시키는 행위(전항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은 그 오인에 의거하여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게 그 오인시킨 책임의 범위 내에서 당해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589조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자의 책임**

- ①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이 아닌 자가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사원이 아닌 자는 그 오인에 의거하여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게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②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의 사원이 아닌 자가 자기를 유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원이 아닌 자는 그 오인에 의거하여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게 그 오인시킨 책임의 범위 내에서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3장 관리

제1절 총칙

제590조 **업무집행**

- ① 사원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분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분회사의 업무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지분회사의 상무는 각 사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완료 전에 다른 사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1조 **업무집행사원을 정관에 정한 경우**

- ① 업무집행사원을 정관에 정한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분회사의 업무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 경우 전조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동항의 “사원”은 “업

第3編 持分会社

第3章 管理

用については、同項中「社員」とあるのは、「業務を執行する社員」とする。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支配人の選任及び解任は、社員の過半数をもって決定する。ただし、定款で別段の定めをすることを妨げない。

3 業務を執行する社員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おいて、その業務を執行する社員の全員が退社したときは、当該定款の定めは、その効力を失う。

4 業務を執行する社員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は、その業務を執行する社員は、正当な事由がなければ、辞任することができない。

5 前項の業務を執行する社員は、正当な事由がある場合に限り、他の社員の一致によって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6 前二項の規定は、定款で別段の定めをすることを妨げない。

第592条 社員の持分会社の業務及び財産状況に関する調査

1 業務を執行する社員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は、各社員は、持分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権利を有しないときであっても、そ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を調査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は、定款で別段の定めをすることを妨げない。ただし、定款によっても、社員が事業年度の終了時又は重要な事由があるときに同項の規定による調査をすることを制限する旨を定めることができない。

第2節 業務を執行する社員

第593条 業務を執行する社員と持分会社との関係

1 業務を執行する社員は、善良な管理者の注意をもって、その職務を行う義務を負う。

2 業務を執行する社員は、法令及び定款を遵守し、持分会社のため忠実にその職務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業務を執行する社員は、持分会社又は他の社員の請求があるときは、いつでもその職務の執行の状況を報告し、その職務が終了した後は、遅滞なくその経過及び結果を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民法第六百四十六条 から第六百五十条 までの規定は、業務を執行する社員と持分会社との関係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六百四十六条

무집행사원”으로 본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경우에는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정관으로 다르게 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③ 업무집행사원을 정관에 정한 경우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당해 정관의 정함은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업무집행사원을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다.
- ⑤ 전항의 업무집행사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원의 일치로 해임 할 수 있다.
- ⑥ 전2항은 정관으로 다르게 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592조 사원의 지분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에 관한 조사

- ① 업무집행사원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각 사원은 지분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조사 할 수 있다.
- ② 전항은 정관으로 다르게 정하는 것으로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으로도 사원이 사업연도 종료시 또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동항에 의한 조사를 제한하는 뜻을 정할 수 없다.

제2절 업무집행사원

제593조 업무집행사원과 지분회사의 관계

- ① 업무집행사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업무집행사원은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고 지분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③ 업무집행사원은 지분회사 또는 다른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 직무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고 그 직무가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그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민법 제646조 내지 제650조는 업무집행사원과 지분회사의 관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46조 제1항, 제648조 제2항, 제649조, 제650조

第3編 持分会社

第3章 管理

第一項、第六百四十八条第二項、第六百四十九条及び第六百五十条中「委任事務」とあるのは「その職務」と、同法第六百四十八条第三項中「委任」とあるのは「前項の職務」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5 前二項の規定は、定款で別段の定めをすることを妨げない。

第594条 競業の禁止

1 業務を執行する社員は、当該社員以外の社員の全員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次に掲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自己又は第三者のために持分会社の事業の部類に属する取引をすること。
- 二 持分会社の事業と同種の事業を目的とする会社の取締役、執行役又は業務を執行する社員となること。

2 業務を執行する社員が前項の規定に違反して同項第一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ときは、当該行為によって当該業務を執行する社員又は第三者が得た利益の額は、持分会社に生じ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第595条 利益相反取引の制限

1 業務を執行する社員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取引について当該社員以外の社員の過半数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業務を執行する社員が自己又は第三者のために持分会社と取引をしようとするとき。
- 二 持分会社が業務を執行する社員の債務を保証することその他社員でない者との間において持分会社と当該社員との利益が相反する取引をしようとするとき。

2 民法第百八条の規定は、前項の承認を受けた同項第一号の取引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596条 業務を執行する社員の持分会社に対する損害賠償責任

業務を執行する社員は、その任務を怠ったときは、持分会社に対し、連帯して、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의 “위임사무”는 “그 직무”로, 동법 제648조 제3항의 “위임”은 “전항의 직무”로 한다.

⑤ 전2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을 두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594조 경업금지

① 업무집행사원은 당해 사원 이외의 사원 전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지분회사의 사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것
2. 지분회사의 사업과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것

② 업무집행사원이 전항을 위반하여 동항 제1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의 액은 지분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제595조 이익상반거래 제한

① 업무집행사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거래에 관하여 당해 사원 이외의 사원의 과반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집행사원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지분회사와 거래를 하려는 때
2. 지분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그 밖의 사원이 아닌 자와 지분회사가 사원과 이익이 상반하는 거래를 하려는 때

② 민법 제108조는 전항의 승인을 받은 동항 제1호의 거래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6조 업무집행사원의 지분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업무집행사원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지분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第3編 持分会社

第3章 管理

第597条 業務を執行する有限責任社員の第三者に対する損害賠償責任

業務を執行する有限責任社員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悪意又は重大な過失があったときは、当該有限責任社員は、連帯して、これによって第三者に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第598条 法人が業務を執行する社員である場合の特則

- 1 法人が業務を執行する社員である場合には、当該法人は、当該業務を執行する社員の職務を行うべき者を選任し、その者の氏名及び住所を他の社員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第五百九十三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社員の職務を行うべき者について準用する。

第599条 持分会社の代表

- 1 業務を執行する社員は、持分会社を代表する。ただし、他に持分会社を代表する社員その他持分会社を代表する者を定め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2 前項本文の業務を執行する社員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は、業務を執行する社員は、各自、持分会社を代表する。
- 3 持分会社は、定款又は定款の定めに基づく社員の互選によって、業務を執行する社員の中から持分会社を代表する社員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4 持分会社を代表する社員は、持分会社の業務に関する一切の裁判上又は裁判外の行為をする権限を有する。
- 5 前項の権限に加えた制限は、善意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600条 持分会社を代表する社員等の行為についての損害賠償責任

持分会社は、持分会社を代表する社員その他の代表者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第三者に加え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第601条 持分会社と社員との間の訴えにおける会社の代表

第五百九十九条第四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持分会社が社員に対し、又は社員が持分会社に対して訴えを提起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訴えについて持分会社を代表する者(当該社員を除く。)が存しないときは、当該社員以外の社員の過半

제597조 업무집행 유한책임사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업무집행 유한책임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때에는 그 유한책임사원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98조 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의 특칙

① 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법인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직무를 행하여야 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93조 내지 전조는 전항에 의하여 선임된 사원의 직무를 행하여야 할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99조 지분회사의 대표

① 업무집행사원은 지분회사를 대표한다. 다만, 다른 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 그 밖의 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본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은 각자 지분회사를 대표한다.

③ 지분회사는 정관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원의 호선에 의하여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을 정할 수 있다.

④ 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지분회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는다.

⑤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600조 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 등의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지분회사는 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 그 밖의 대표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601조 지분회사와 사원간의 소에서 회사의 대표

제59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분회사가 사원에게 또는 사원이 지분회사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에 관하여 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자(당해 사원은 제외한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원 이외의 사원 과반수로써 소에 관

第3編 持分会社

第4章 社員の加入及び退社

数をもって、当該訴えについて持分会社を代表する者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第602条

第五百九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社員が持分会社に対して社員の責任を追及する訴えの提起を請求した場合において、持分会社が当該請求の日から六十日以内に当該訴えを提起しないときは、当該請求をした社員は、当該訴えについて持分会社を代表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訴えが当該社員若しくは第三者の不正な利益を図り又は当該持分会社に損害を加えることを目的と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3節 業務を執行する社員の職務を代行する者

第603条

民事保全法第五十六条 に規定する仮処分命令により選任された業務を執行する社員又は持分会社を代表する社員の職務を代行する者は、仮処分命令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持分会社の常務に属しない行為をするには、裁判所の許可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違反して行った業務を執行する社員又は持分会社を代表する社員の職務を代行する者の行為は、無効とする。ただし、持分会社は、これをもって善意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4章 社員の加入及び退社

第1節 社員の加入

第604条 社員の加入

- 1 持分会社は、新たに社員を加入させることができる。
- 2 持分会社の社員の加入は、当該社員に係る定款の変更をした時に、その効力を生ずる。
-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合同会社が新たに社員を加入させる場合におい

하여 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정할 수 있다.

제602조

제59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지분회사에 사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한 경우 지분회사가 당해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청구를 한 사원은 소에 관하여 지분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다만, 소가 당해 사원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지분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업무집행사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제603조

- ① 민사보전법 제56조의 가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또는 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가치분명령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분회사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전항에 위반하여 행한 업무집행사원 또는 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지분회사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장 사원의 가입 및 퇴사

제1절 사원의 가입

제604조 사원의 가입

- ① 지분회사는 새로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 ② 지분회사의 사원 가입은 사원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합동회사가 새로이 사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새로이 사원

第3編 持分会社

第4章 社員の加入及び退社

て、新たに社員となろうとする者が同項の定款の変更をした時にその出資に係る払込み又は給付の全部又は一部を履行していないときは、その者は、当該払込み又は給付を完了した時に、合同会社の社員となる。

第605条 加入した社員の責任

持分会社の成立後に加入した社員は、その加入前に生じた持分会社の債務についても、これを弁済する責任を負う。

第2節 社員の退社

第606条 任意退社

- 1 分会社の存続期間を定款で定めなかった場合又はある社員の終身の間持分会社が存続すること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は、各社員は、事業年度の終了の時に於いて退社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各社員は、六箇月前までに持分会社に退社の予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規定は、定款で別段の定めをすることを妨げない。
- 3 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各社員は、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ときは、いつでも退社することができる。

第607条 法定退社

- 1 社員は、前条、第六百九条第一項、第六百四十二条第二項及び第八百四十五条の場合のほか、次に掲げる事由によって退社する。
 - 一 定款で定めた事由の発生
 - 二 総社員の同意
 - 三 死亡
 - 四 合併(合併により当該法人である社員が消滅する場合に限る。)
 - 五 破産手続開始の決定
 - 六 解散(前二号に掲げる事由によるものを除く。)
 - 七 後見開始の審判を受けたこと。
 - 八 除名
- 2 持分会社は、その社員が前項第五号から第七号までに掲げる事由の全部又は

이 되려는 자가 동향의 정관변경을 한 때에 그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는 당해 납입 또는 급부를 완료한 때 합동회사의 사원이 된다.

제605조 가입한 사원의 책임

지분회사의 성립 후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발생한 지분회사의 채무에 관하여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절 사원의 퇴사

제606조 임의퇴사

- ① 지분회사의 존속기간을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지분회사가 존속할 것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각 사원은 사업연도 종료시 퇴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원은 6개월 전까지 지분회사에게 퇴사 예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을 두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③ 전2항에도 불구하고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제607조 법정퇴사

- ① 사원은 전조, 제609조 제1항, 제642조 제2항 및 제845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퇴사한다.
 - 1. 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
 - 2. 총사원의 동의
 - 3. 사망
 - 4. 합병(합병에 의하여 당해 법인인 사원이 소멸하는 경우에 한한다)
 - 5. 파산절차개시의 결정
 - 6. 해산(전2호의 사유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 7.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8. 제명
- ② 지분회사는 그 사원이 전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유 전부 또는 일부에 따

第3編 持分会社

第4章 社員の加入及び退社

一部によっては退社しない旨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第608条 相続及び合併の場合の特則

- 1 持分会社は、その社員が死亡した場合又は合併により消滅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社員の相続人その他の一般承継人が当該社員の持分を承継する旨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 2 第六百四条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同項の一般承継人(社員以外のものに限る。)は、同項の持分を承継した時に、当該持分を有する社員となる。
- 3 第一項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持分会社は、同項の一般承継人が持分を承継した時に、当該一般承継人に係る定款の変更をしたものとみなす。
- 4 第一項の一般承継人(相続により持分を承継したものであって、出資に係る払込み又は給付の全部又は一部を履行していないものに限る。)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は、各一般承継人は、連帯して当該出資に係る払込み又は給付の履行をする責任を負う。
- 5 第一項の一般承継人(相続により持分を承継したものに限る。)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は、各一般承継人は、承継した持分についての権利を行使する者一人を定めなければ、当該持分について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持分会社が当該権利を行使することに同意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609条 持分の差押債権者による退社

- 1 社員の持分を差し押さえた債権者は、事業年度の終了時において当該社員を退社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債権者は、六箇月前までに持分会社及び当該社員にその予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後段の予告は、同項の社員が、同項の債権者に対し、弁済し、又は相当の担保を提供したときは、その効力を失う。
- 3 第一項後段の予告をした同項の債権者は、裁判所に対し、持分の払戻しの請求権の保全に関し必要な処分をすること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

第610条 退社に伴う定款のみなし変更

第六百六条、第六百七条第一項、前条第一項又は第六百四十二条第二項の規定

라 퇴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제608조 상속 및 합병의 경우의 특칙

- ① 지분회사는 그 사원이 사망한 경우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있어서 사원의 상속인 그 밖의 일반승계인이 사원의 지분을 승계하는 뜻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제60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항에 의한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항의 일반승계인(사원 이외의 자에 한한다)은 동항의 지분을 승계한 때에 당해 지분을 가지는 사원이 된다.
- ③ 제1항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회사는 동항의 일반승계인이 지분을 승계한 때에 당해 일반승계인에 관한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의 일반승계인(상속에 의하여 지분을 승계한 자로 출자에 관련된 납입 또는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일반승계인은 연대하여 당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급부의 이행을 할 책임을 진다.
- ⑤ 제1항의 일반승계인(상속에 의하여 지분을 승계한 자에 한한다)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일반승계인은 승계한 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지 아니하면 당해 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지분회사가 당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9조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 ①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사업연도 종료시 당해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자는 6개월 전까지 지분회사 및 그 사원에게 예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항 후단의 예고는 동항의 사원이 동항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제1항 후단의 예고를 한 동항의 채권자는 법원에 지분 환급의 청구권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610조 퇴사에 따른 정관 변경간주

제606조, 제607조 제1항, 전조 제1항 또는 제642조 제2항에 의하여 사원이

第3編 持分会社

第4章 社員の加入及び退社

により社員が退社した場合(第八百四十五条の規定により社員が退社したものとみなされる場合を含む。)には、持分会社は、当該社員が退社した時に、当該社員に係る定款の定めを廃止する定款の変更をしたものとみなす。

第611条 退社に伴う持分の払戻し

- 1 退社した社員は、その出資の種類を問わず、その持分の払戻し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六百八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より当該社員の一般承継人が社員となっ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2 退社した社員と持分会社との間の計算は、退社の時における持分会社の財産の状況に従っ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退社した社員の持分は、その出資の種類を問わず、金銭で払い戻すことができる。
- 4 退社の時にまだ完了していない事項については、その完了後に計算をすることができる。
- 5 社員が除名により退社した場合における第二項及び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れらの規定中「退社の時」とあるのは、「除名の訴えを提起した時」とする。
- 6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持分会社は、除名の訴えを提起した日後の年六分の利率により算定した利息をも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 7 社員の持分の差押えは、持分の払戻しを請求する権利に対しても、その効力を有する。

第612条 退社した社員の責任

- 1 退社した社員は、その登記をする前に生じた持分会社の債務について、従前の責任の範囲内でこれを弁済する責任を負う。
- 2 前項の責任は、同項の登記後二年以内に請求又は請求の予告をしない持分会社の債権者に対しては、当該登記後二年を経過した時に消滅する。

第613条 商号変更の請求

持分会社がその商号中に退社した社員の氏若しくは氏名又は名称を用いているときは、当該退社した社員は、当該持分会社に対し、その氏若しくは氏名又は名称の使用をやめ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퇴사한 경우 (제845조에 의하여 사원이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분회사는 당해사원이 퇴사하는 때에 당해사원에 관한 정관의 정함을 폐지하는 정관의 변경을 한 것으로 본다.

제611조 퇴사에 따른 지분의 환급

- ① 퇴사한 사원은 그 출자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60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당해사원의 일반승계인이 사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퇴사한 사원과 지분회사간의 계산은 퇴사시 지분회사의 재산상황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 ③ 퇴사한 사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전으로 환급 할 수 있다.
- ④ 퇴사시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완료 후에 계산을 할 수 있다.
- ⑤ 사원이 제명에 의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전항의 적용 중 “퇴사시”는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로 본다.
- ⑥ 전항의 경우 지분회사는 제명의 소를 제기한 날 이후 연6분의 이율로 산정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사원의 지분 압류는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관하여도 그 효력을 갖는다.

제612조 퇴사한 사원의 책임

- ① 퇴사한 사원은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지분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종전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 ② 전항의 책임은 동항의 등기 후 2년 이내에 청구 또는 청구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지분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당해 등기 후 2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제613조 상호 변경의 청구

지분회사가 그 상호 중에 퇴사한 사원의 성, 성명 또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회사에 대하여 그 성, 성명 또는 명칭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第5章 計算等

第1節 会計の原則

第614条

持分会社の会計は、一般に公正妥当と認められる企業会計の慣行に従うものとする。

第2節 会計帳簿

第615条 会計帳簿の作成及び保存

持分会社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適時に、正確な会計帳簿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持分会社は、会計帳簿の閉鎖の時から十年間、その会計帳簿及びその事業に関する重要な資料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616条 会計帳簿の提出命令

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訴訟の当事者に対し、会計帳簿の全部又は一部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3節 計算書類

第617条 計算書類の作成及び保存

1 持分会社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持分会社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各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貸借対照表その他持分会社の財産の状況を示すために必要かつ適切な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計算書類は、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することができる。

4 持分会社は、計算書類を作成した時から十年間、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장 계산 등

제1절 회계의 원칙

제614조

지분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관행에 따른다.

제2절 회계장부

제615조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존

- ① 지분회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분회사는 회계장부의 폐쇄일로부터 10년간 그 회계장부 및 그 사업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616조 회계장부의 제출명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의 당사자에게 회계장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절 계산서류

제617조 계산서류의 작성 및 보존

- ① 지분회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성립일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분회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계산서류(대차대조표 그 밖에 지분회사 재산상태를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계산서류는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 ④ 지분회사는 계산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第618条 計算書類の閲覧等

1 持分会社の社員は、当該持分会社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計算書類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二 計算書類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2 前項の規定は、定款で別段の定めをすることを妨げない。ただし、定款によっても、社員が事業年度の終了時に同項各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を制限する旨を定めることができない。

第619条 計算書類の提出命令

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訴訟の当事者に対し、計算書類の全部又は一部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4節 資本金の額の減少

第620条

1 持分会社は、損失のてん補のために、その資本金の額を減少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減少する資本金の額は、損失の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

第5節 利益の配当

第621条 利益の配当

1 社員は、持分会社に対し、利益の配当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持分会社は、利益の配当を請求する方法その他の利益の配当に関する事項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3 社員の持分の差押えは、利益の配当を請求する権利に対しても、その効力を有する。

제618조 계산서류 열람 등

① 지분회사의 사원은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산서류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그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계산서류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 ② 전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을 두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에 의하여도 사원이 사업연도 종료시 동항 각호의 청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뜻을 정할 수 없다.

제619조 계산서류 제출명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계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절 자본금의 감소

제620조

- ① 지분회사는 손실 보전을 위하여 그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소하는 자본금의 액은 손실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절 이익배당

제621조 이익배당

- ① 사원은 지분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지분회사는 이익배당을 청구하는 방법과 그 밖의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
- ③ 사원의 지분 압류는 이익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第3編 持分会社

第5章 計算等

第622条 社員の損益分配の割合

- 1 損益分配の割合について定款の定めがないときは、その割合は、各社員の出資の価額に応じて定める。
- 2 利益又は損失の一方についてのみ分配の割合についての定めを定款で定めたときは、その割合は、利益及び損失の分配に共通であるものと推定する。

第623条 有限責任社員の利益の配当に関する責任

- 1 持分会社が利益の配当により有限責任社員に対して交付した金銭等の帳簿価額(以下この項において「配当額」という。)が当該利益の配当をする日における利益額(持分会社の利益の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を超える場合には、当該利益の配当を受けた有限責任社員は、当該持分会社に対し、連帯して、当該配当額に相当する金銭を支払う義務を負う。
-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同項の利益の配当を受けた有限責任社員についての第五百八十条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を限度として」とあるのは、「及び第六百二十三条第一項の配当額が同項の利益額を超過する額(同項の義務を履行した額を除く。)の合計額を限度として」とする。

第6節 出資の払戻し

第624条

- 1 社員は、持分会社に対し、既に出資として払込み又は給付をした金銭等の払戻し(以下この編において「出資の払戻し」という。)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金銭等が金銭以外の財産であるときは、当該財産の価額に相当する金銭の払戻しを請求することを妨げない。
- 2 持分会社は、出資の払戻しを請求する方法その他の出資の払戻しに関する事項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 3 社員の持分の差押えは、出資の払戻しを請求する権利に対しても、その効力を有する。

제622조 사원의 손익분배 비율

- ① 손익분배의 비율에 관한 정관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비율은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따라 정한다.
- ② 이익 또는 손실의 한쪽에 대해서만 분배 비율에 관한 정함을 정관에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 및 손실분배에 공통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23조 유한책임사원의 이익배당에 관한 책임

- ① 지분회사가 이익배당으로 유한책임사원에게 교부한 금전 등의 장부가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액”이라고 한다)이 당해 이익배당을 한 날의 이익액(지분회사 이익액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이익배당을 받은 유한책임사원은 지분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당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전항의 경우 동항의 이익배당을 받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제580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중 “을 한도로서”는 “및 제623조 제1항의 배당액이 동항의 이익액을 초과하는 금액(동항의 의무를 이행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한도로서”로 본다.

제6절 출자의 환급

제624조

- ① 사원은 지분회사에 이미 출자로서 납입 또는 급부를 한 금전 등의 환급(이하 이 편에서 “출자의 환급”이라고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금전 이외의 재산인 때에는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전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② 지분회사는 출자의 환급을 청구하는 방법과 그 밖의 출자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사원의 지분압류는 출자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第7節 合同会社の計算等に関する特則

第1款 計算書類の閲覧に関する特則

第625条

合同会社の債権者は、当該合同会社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その計算書類（作成した日から五年以内のものに限る。）について第六百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2款 資本金の額の減少に関する特則

第626条 出資の払戻し又は持分の払戻しを行う場合の資本金の額の減少

- 1 合同会社は、第六百二十条第一項の場合のほか、出資の払戻し又は持分の払戻しのために、その資本金の額を減少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り出資の払戻しのために減少する資本金の額は、第六百三十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出資払戻額から出資の払戻しをする日における剰余金額を控除して得た額を超えてはならない。
-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持分の払戻しのために減少する資本金の額は、第六百三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持分払戻額から持分の払戻しをする日における剰余金額を控除して得た額を超えてはならない。
- 4 前二項に規定する「剰余金額」とは、第一号に掲げる額から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額の合計額を減じて得た額をいう（第四款及び第五款において同じ）。
 - 一 資産の額
 - 二 負債の額
 - 三 資本金の額
 - 四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各勘定科目に計上した額の合計額

第627条 債権者の異議

- 1 合同会社が資本金の額を減少する場合には、当該合同会社の債権者は、当該合同会社に対し、資本金の額の減少について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제7절 합동회사의 계산 등에 관한 특칙

제1관 계산서류 열람에 관한 특칙

제625조

합동회사의 채권자는 당해 합동회사의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그 계산서류 (작성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에 관하여 제618조 제1항 각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관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특칙

제626조 출자의 환급 또는 지분의 환급을 행하는 경우 자본금의 감소

- ① 합동회사는 제620조 제1항 외의 출자의 환급 또는 지분의 환급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따라 출자의 환급을 위하여 감소하는 자본금의 금액은 제632조 제2항의 출자의 환급액에서 출자의 환급을 하는 날의 잉여금액을 공제하여 얻은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지분의 환급을 위하여 감소하는 자본금의 금액은 제635조 제1항의 지분의 환급액에서 지분의 환급을 하는 날의 잉여금액을 공제하여 얻은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전2항의 “잉여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빼서 얻은 금액을 말한다 (제4관 및 제5관에서 같다).
 1. 자산의 금액
 2. 부채의 금액
 3. 자본금의 금액
 4. 전2호에 규정하는 것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각 계정과목에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

제627조 채권자 이익

- ① 합동회사가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 합동회사의 채권자는 합동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감소에 관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

第3編 持分会社

第5章 計算等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合同会社は、次に掲げる事項を官報に公告し、かつ、知れている債権者には、各別にこれを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二号の期間は、一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一 当該資本金の額の減少の内容

二 債権者が一定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旨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合同会社が同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官報のほか、第九百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従い、同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公告方法によりす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よる各別の催告は、することを要しない。

4 債権者が第二項第二号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なかったときは、当該債権者は、当該資本金の額の減少について承認をしたものとみなす。

5 債権者が第二項第二号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たときは、合同会社は、当該債権者に対し、弁済し、若しくは相当の担保を提供し、又は当該債権者に弁済を受け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信託会社等に相当の財産を信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資本金の額の減少をしても当該債権者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6 資本金の額の減少は、前各項の手続が終了した日に、その効力を生ずる。

第3款 利益の配当に関する特則

第628条 利益の配当の制限

合同会社は、利益の配当により社員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の帳簿価額(以下この款において「配当額」という。)が当該利益の配当をする日における利益額を超える場合には、当該利益の配当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合同会社は、第六百二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拒むことができる。

第629条 利益の配当に関する責任

1 合同会社が前条の規定に違反して利益の配当をした場合には、当該利益の配当に関する業務を執行した社員は、当該合同会社に対し、当該利益の配当を受けた社員と連帯して、当該配当額に相当する金銭を支払う義務を負う。ただし、当該業務を執行した社員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ったことを証

② 전항의 경우 합동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히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간은 1개월을 밑돌 수 없다.

1. 자본금의 금액 감소 내용

2.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합동회사가 동항에 의한 공고를 관보 외 제939조 제1항에 의한 정관의 정함에 따라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하는 때에는 전항에 따른 각별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채권자가 제2항 제2호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자본금의 감소에 관하여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채권자가 제2항 제2호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합동회사는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의 제공 또는 당해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목적으로 신탁회사 등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을 감소하여도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자본금의 감소는 전 각항의 절차가 종료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관 이익배당에 관한 특칙

제628조 이익배당의 제한

합동회사는 이익배당에 의하여 사원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의 장부가액(이하 이 관에서 “배당액”이라고 한다) 이 이익배당일의 이익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합동회사는 제621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629조 이익배당에 관한 책임

① 합동회사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경우 이익배당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 사원은 합동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받은 사원과 연대하여 배당액에 상당한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업무를 집행한 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

第3編 持分会社

第5章 計算等

明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義務は、免除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利益の配当をした日における利益額を限度として当該義務を免除することについて総社員の同意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630条 社員に対する求償権の制限等

1 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利益の配当を受けた社員は、配当額が利益の配当をした日における利益額を超えることにつき善意であるときは、当該配当額について、当該利益の配当に関する業務を執行した社員からの求償の請求に応ずる義務を負わない。

2 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合同会社の債権者は、利益の配当を受けた社員に対し、配当額(当該配当額が当該債権者の合同会社に対して有する債権額を超え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債権額)に相当する金銭を支払わせることができる。

3 第六百二十三条第二項の規定は、合同会社の社員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631条 欠損が生じた場合の責任

1 合同会社が利益の配当を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利益の配当をした日の属する事業年度の末日に欠損額(合同会社の欠損の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が生じたときは、当該利益の配当に関する業務を執行した社員は、当該合同会社に対し、当該利益の配当を受けた社員と連帯して、その欠損額(当該欠損額が配当額を超えるときは、当該配当額)を支払う義務を負う。ただし、当該業務を執行した社員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義務は、総社員の同意がなければ、免除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4款 出資の払戻しに関する特則

第632条 出資の払戻しの制限

1 第六百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合同会社の社員は、定款を変更してその出資の価額を減少する場合を除き、同項前段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의무는 면제할 수 없다. 다만, 이익의 배당을 한 날의 이익액을 한도로 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관하여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0조 사원에 대한 구상권 제한 등

① 전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받은 사원은 배당액이 이익 배당을 한 날의 이익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선의인 때에는 그 배당액에 관하여 이익배당 업무를 집행한 사원으로부터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② 전조 제1항의 경우에는 합동회사의 채권자는 이익배당을 받은 사원에 대해 배당액(당해 배당액이 채권자의 합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말한다)에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623조 제2항은 합동회사의 사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1조 결손이 발생한 경우의 책임

① 합동회사가 이익배당을 한 경우 이익배당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일에 결손액(합동회사의 결손의 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생한 때에는 이익배당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 사원은 합동회사에 이익배당을 받은 사원과 연대하여 그 결손액(결손액이 배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배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업무를 집행한 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의무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할 수 없다.

제4관 출자의 환급에 관한 특칙

제632조 출자의 환급의 제한

① 제6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동회사의 사원은 정관을 변경하여 그 출자의 가액을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항 전단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없다.

第3編 持分会社

第5章 計算等

2 合同会社が出資の払戻しにより社員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の帳簿価額(以下この款において「出資払戻額」という。)が、第六百二十四条第一項前段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た日における剰余金額(第六百二十六条第一項の資本金の額の減少を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減少をした後の剰余金額。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じ。)又は前項の出資の価額を減少した額のいずれか少ない額を超える場合には、当該出資の払戻し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合同会社は、第六百二十四条第一項前段の規定による請求を拒むことができる。

第633条 出資の払戻しに関する社員の責任

1 合同会社が前条の規定に違反して出資の払戻しをした場合には、当該出資の払戻しに関する業務を執行した社員は、当該合同会社に対し、当該出資の払戻しを受けた社員と連帯して、当該出資払戻額に相当する金銭を支払う義務を負う。ただし、当該業務を執行した社員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義務は、免除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出資の払戻しをした日における剰余金額を限度として当該義務を免除することについて総社員の同意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634条 社員に対する求償権の制限等

1 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出資の払戻しを受けた社員は、出資払戻額が出資の払戻しをした日における剰余金額を超えることにつき善意であるときは、当該出資払戻額について、当該出資の払戻しに関する業務を執行した社員からの求償の請求に応ずる義務を負わない。

2 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合同会社の債権者は、出資の払戻しを受けた社員に対し、出資払戻額(当該出資払戻額が当該債権者の合同会社に対して有する債権額を超え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債権額)に相当する金銭を支払わせることができる。

② 합동회사가 출자의 환급에 의하여 사원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의 장부가액(이하 이 관에서 “출자환급액”이라고 한다)이 제624조 제1항의 전단에 의하여 청구를 한 날의 잉여금액(제626조 제1항의 자본금 감소를 한 경우 그 감소 후 잉여금액. 이하 이 관에서 같다) 또는 전항의 출자의 가액을 감소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자의 환급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합동회사는 제624조 제1항의 전단에 의한 청구를 거절 할 수 있다.

제633조 출자의 환급에 관한 사원의 책임

- ① 합동회사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자의 환급을 한 경우에는 출자의 환급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 사원은 합동회사에 출자의 환급을 받은 사원과 연대하여 출자환급액에 상당한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그 업무를 집행한 사원이 직무를 행함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항의 의무는 면제 할 수 없다. 다만, 출자의 환급을 한 날의 잉여금액을 한 도로 그 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관하여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4조 사원에 대한 구상권 제한 등

- ① 전조 제1항의 경우 출자의 환급을 받은 사원은 출자환급액이 출자의 환급을 한 날의 잉여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출자환급액에 관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원으로부터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② 전조 제1항의 경우 합동회사의 채권자는 출자의 환급을 받은 사원에게 출자환급액(출자환급액이 채권자의 합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第3編 持分会社

第5章 計算等

第5款 退社に伴う持分の払戻しに関する特則

第635条 債権者の異議

1 合同会社が持分の払戻しにより社員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の帳簿価額(以下この款において「持分払戻額」という。)が当該持分の払戻しをする日における剰余金額を超える場合には、当該合同会社の債権者は、当該合同会社に対し、持分の払戻しについて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合同会社は、次に掲げる事項を官報に公告し、かつ、知れている債権者には、各別にこれを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二号の期間は、一箇月(持分払戻額が当該合同会社の純資産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を超える場合にあっては、二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一 当該剰余金額を超える持分の払戻しの内容

二 債権者が一定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る旨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合同会社が同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官報のほか、第九百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従い、同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公告方法によりす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よる各別の催告は、することを要しない。ただし、持分払戻額が当該合同会社の純資産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を超え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4 債権者が第二項第二号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なかったときは、当該債権者は、当該持分の払戻しについて承認をしたものとみなす。

5 債権者が第二項第二号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たときは、合同会社は、当該債権者に対し、弁済し、若しくは相当の担保を提供し、又は当該債権者に弁済を受け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信託会社等に相当の財産を信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持分払戻額が当該合同会社の純資産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を超えない場合において、当該持分の払戻しをしても当該債権者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636条 業務を執行する社員の責任

1 合同会社が前条の規定に違反して持分の払戻しをした場合には、当該持分の払戻しに関する業務を執行した社員は、当該合同会社に対し、当該持分の払戻し

제5관 퇴사에 따른 지분환급에 관한 특칙

제635조 채권자 이의

- ① 합동회사가 지분의 환급에 의하여 사원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의 장부가액(이하 이 관에서 “지분환급액”이라고 한다)이 지분의 환급을 한 날의 잉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동회사의 채권자는 합동회사에 대하여 지분의 환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합동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히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간은 1개월(지분환급액이 합동회사의 순자산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월)을 밑돌 수 없다.

1. 잉여금액을 초과하는 지분 환급의 내용

2.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합동회사가 동항에 의한 공고를 관보 외 제939조 제1항에 의한 정관의 정함에 따라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하는 때에는 전항의 각별의 최고는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지분환급액이 합동회사의 순자산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채권자가 제2항 제2호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당해 지분의 환급에 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⑤ 채권자가 제2항 제2호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합동회사는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목적으로 신탁회사 등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환급액이 합동회사의 순자산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분의 환급을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6조 업무집행사원의 책임

- ① 합동회사가 전조에 위반하여 지분의 환급을 한 경우 지분의 환급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 사원은 합동회사에 대하여 지분의 환급을 받은 사원과 연대하여

第3編 持分会社

第6章 定款の変更

を受けた社員と連帯して、当該持分払戻額に相当する金銭を支払う義務を負う。ただし、持分の払戻しに関する業務を執行した社員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注意を怠ら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義務は、免除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持分の払戻しをした時における剰余金額を限度として当該義務を免除することについて総社員の同意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6章 定款の変更

第637条 定款の変更

持分会社は、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総社員の同意によって、定款の変更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638条 定款の変更による持分会社の種類の変更

1 合名会社は、次の各号に掲げる定款の変更をすることにより、当該各号に定める種類の持分会社となる。

- 一 有限責任社員を加入させる定款の変更 合資会社
- 二 その社員の一部を有限責任社員とする定款の変更 合資会社
- 三 その社員の全部を有限責任社員とする定款の変更 合同会社

2 合資会社は、次の各号に掲げる定款の変更をすることにより、当該各号に定める種類の持分会社となる。

- 一 その社員の全部を無限責任社員とする定款の変更 合名会社
- 二 その社員の全部を有限責任社員とする定款の変更 合同会社

3 合同会社は、次の各号に掲げる定款の変更をすることにより、当該各号に定める種類の持分会社となる。

- 一 その社員の全部を無限責任社員とする定款の変更 合名会社
- 二 無限責任社員を加入させる定款の変更 合資会社
- 三 その社員の一部を無限責任社員とする定款の変更 合資会社

지분의 환급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지분의 환급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 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의무는 면제 할 수 없다. 다만, 지분의 환급을 한 경우 잉여금액을 한도로 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관하여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정관의 변경

제637조 정관의 변경

지분회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638조 정관 변경에 의한 지분회사의 종류 변경

① 합명회사는 다음의 정관변경에 의하여 당해 각 호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지분회사가 된다.

1.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키는 정관의 변경 : 합자회사
2. 그 사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 : 합자회사
3. 그 사원의 전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 : 합동회사

② 합자회사는 다음의 정관변경에 의하여 각 호에 규정하는 종류의 지분회사가 된다.

1. 그 사원의 전부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 : 합명회사
2. 그 사원의 전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 : 합동회사

③ 합동회사는 다음의 정관변경에 의하여 각 호에 규정하는 종류의 지분회사가 된다.

1. 그 사원의 전부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 : 합명회사
2.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키는 정관의 변경 : 합자회사
3. 그 사원의 일부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 : 합자회사

第3編 持分会社

第7章 解散

第639条 合資会社の社員の退社による定款のみなし変更

1 合資会社の有限責任社員が退社したことにより当該合資会社の社員が無限責任社員のみとなった場合には、当該合資会社は、合名会社となる定款の変更をしたものとみなす。

2 合資会社の無限責任社員が退社したことにより当該合資会社の社員が有限責任社員のみとなった場合には、当該合資会社は、合同会社となる定款の変更をしたものとみなす。

第640条 定款の変更時の出資の履行

1 第六百三十八条第一項第三号又は第二項第二号に掲げる定款の変更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定款の変更をする持分会社の社員が当該定款の変更後の合同会社に対する出資に係る払込み又は給付の全部又は一部を履行していないときは、当該定款の変更は、当該払込み及び給付が完了した日に、その効力を生ずる。

2 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合同会社となる定款の変更をしたものとみなされた場合において、社員がその出資に係る払込み又は給付の全部又は一部を履行していないときは、当該定款の変更をしたものとみなされた日から一箇月以内に、当該払込み又は給付を完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期間内に、合名会社又は合資会社となる定款の変更を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7章 解散

第641条 解散の事由

持分会社は、次に掲げる事由によって解散する。

- 一 定款で定めた存続期間の満了
- 二 定款で定めた解散の事由の発生
- 三 総社員の同意
- 四 社員が欠けたこと。
- 五 合併(合併により当該持分会社が消滅する場合に限る。)
- 六 破産手続開始の決定
- 七 第八百二十四条第一項又は第八百三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解散を命ずる裁判

제639조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에 의한 정관의 변경간주**

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여 합자회사의 사원이 무한책임사원뿐인 경우에는 합자회사는 합명회사로 되는 정관의 변경을 한 것으로 본다.

②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퇴사함에 따라 합자회사의 사원이 유한책임사원뿐인 경우에는 합자회사는 합동회사로 되는 정관의 변경을 한 것으로 본다.

제640조 **정관 변경시의 출자의 이행**

① 제63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 제2호의 정관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관의 변경을 하는 지분회사의 사원이 정관의 변경 후 합동회사에 대하여 출자에 관련된 납입 또는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정관의 변경은 납입 및 급부가 완료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전조 제2항에 의하여 합동회사로 되는 정관의 변경을 한 것으로 보게 된 경우 사원이 그 출자에 관련된 납입 또는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한 것으로 보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 또는 급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간 내에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 되는 정관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해산

제641조 **해산사유**

지분회사는 다음의 사유에 의해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존속 기간의 만료
2. 정관에 정한 해산의 사유 발생
3. 총사원 동의
4. 사원의 결원
5. 합병(합병에 의하여 당해 지분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파산절차개시의 결정
7. 제824조 제1항 또는 제8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을 명한 재판

第3編 持分会社

第8章 清算

第642条 持分会社の継続

- 1 持分会社は、前条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掲げる事由によって解散した場合には、次章の規定による清算が終了するまで、社員の全部又は一部の同意によって、持分会社を継続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場合には、持分会社を継続することについて同意しなかった社員は、持分会社が継続することとなった日に、退社する。

第643条 解散した持分会社の合併等の制限

- 持分会社が解散した場合には、当該持分会社は、次に掲げる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合併(合併により当該持分会社が存続する場合に限る。)
 - 二 吸収分割による他の会社がその事業に関して有する権利義務の全部又は一部の承継

第8章 清算

第1節 清算の開始

第644条 清算の開始原因

- 持分会社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この章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清算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解散した場合(第六百四十一条第五号に掲げる事由によって解散した場合及び破産手続開始の決定により解散した場合であって当該破産手続が終了していない場合を除く。)
 - 二 設立の無効の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判決が確定した場合
 - 三 設立の取消しの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判決が確定した場合

第645条 清算持分会社の能力

前条の規定により清算をする持分会社(以下「清算持分会社」という。)は、清算の目的の範囲内において、清算が終了するまではなお存続するものとみなす。

제642조 지분회사의 계속

- ① 지분회사는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다음 장에 의한 청산이 종료 될 때까지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에 의하여 지분회사를 계속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지분회사를 계속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사원은 지분회사가 계속하는 것으로 된 날에 퇴사한다.

제643조 해산한 지분회사의 합병 등의 제한

지분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지분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합병 (합병에 의하여 지분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흡수분할에 의한 회사가 그 사업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승계

제8장 청산

제1절 청산의 개시

제644조 청산의 개시원인

지분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제641조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및 파산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로서 파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설립취소의 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645조 청산지분회사의 능력

전조에 의하여 청산을 하는 지분회사(이하 “청산지분회사”라고 한다)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第3編 持分会社

第8章 清算

第2節 清算人

第646条 清算人の設置

清算持分会社には、一人又は二人以上の清算人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647条 清算人の就任

- 1 に掲げる者は、清算持分会社の清算人となる。
 - 一 業務を執行する社員(次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者があつた場合を除く。)
 - 二 定款で定める者
 - 三 社員(業務を執行する社員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社員)の過半数の同意によって定める者
- 2 前項の規定により清算人となる者がいないときは、裁判所は、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清算人を選任する。
- 3 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六百四十一条第四号又は第七号に掲げる事由によって解散した清算持分会社については、裁判所は、利害関係人若しくは法務大臣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清算人を選任する。
- 4 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六百四十四条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こととなつた清算持分会社については、裁判所は、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清算人を選任する。

第648条 清算人の解任

- 1 清算人(前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より裁判所が選任したものを除く。)は、いつでも、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る解任は、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社員の過半数をもって決定する。
- 3 重要な事由があるときは、裁判所は、社員その他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清算人を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649条 清算人の職務

清算人は、次に掲げる職務を行う。

- 一 現務の結了

제2절 청산인

제646조 청산인의 설치

청산지분회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의 청산인을 두어야 한다.

제647조 청산인의 취임

- ① 다음의 자는 청산지분회사의 청산인이 된다.
 1.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다음 호 또는 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2. 정관에 정하는 자
 3. 사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원) 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정하는 자
- ② 전항에 의하여 청산인이 되는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한다.
- ③ 전2항에도 불구하고 제641조 제4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청산지분회사에 관하여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법무대신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44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된 청산지분회사에 관하여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648조 청산인의 해임

- ① 청산인 (전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은 언제든지 해임 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의한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③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649조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第3編 持分会社

第8章 清算

二 債権の取立て及び債務の弁済

三 残余財産の分配

第650条 業務の執行

- 1 清算人は、清算持分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
- 2 清算人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は、清算持分会社の業務は、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清算人の過半数をもって決定する。
-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社員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は、清算持分会社の事業の全部又は一部の譲渡は、社員の過半数をもって決定する。

第651条 清算人と清算持分会社との関係

- 1 清算持分会社と清算人との関係は、委任に関する規定に従う。
- 2 第五百九十三条第二項、第五百九十四条及び第五百九十五条の規定は、清算人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五百九十四条第一項及び第五百九十五条第一項中「当該社員以外の社員」とあるのは、「社員(当該清算人が社員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清算人以外の社員)」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652条 清算人の清算持分会社に対する損害賠償責任

清算人は、その任務を怠ったときは、清算持分会社に対し、連帯して、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第653条 清算人の第三者に対する損害賠償責任

清算人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悪意又は重大な過失があったときは、当該清算人は、連帯して、これによって第三者に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第654条 法人が清算人である場合の特則

- 1 法人が清算人である場合には、当該法人は、当該清算人の職務を行うべき者を選任し、その者の氏名及び住所を社員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三条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清算人の職務を行うべき者について準用する。

- 2.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 3. 잔여재산 분배

제650조 업무집행

- ① 청산인은 청산지분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산지분회사의 업무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인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산지분회사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는 사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651조 청산인과 청산지분회사의 관계

- ① 청산지분회사와 청산인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593조 제2항, 제594조, 제595조는 청산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94조 제1항, 제595조 제1항의 “당해 사원 이외의 사원”은 “사원(청산인이 사원인 경우에는 청산인 이외의 사원)”으로 본다.

제652조 청산인의 청산지분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청산인이 그 직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청산지분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653조 청산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청산인이 그 직무를 행함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때에는 청산인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654조 법인이 청산인인 경우의 특칙

- ① 법인이 청산인인 경우 법인은 청산인의 직무를 행하여야 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전3조는 전항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의 직무를 행하여야 할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第3編 持分会社

第8章 清算

第655条 清算持分会社の代表

- 1 清算人は、清算持分会社を代表する。ただし、他に清算持分会社を代表する清算人その他清算持分会社を代表する者を定め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2 前項本文の清算人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は、清算人は、各自、清算持分会社を代表する。
- 3 清算持分会社は、定款又は定款の定めに基づく清算人(第六百四十七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より裁判所が選任したもの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互選によって、清算人の中から清算持分会社を代表する清算人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4 第六百四十七条第一項第一号の規定により業務を執行する社員が清算人となる場合において、持分会社を代表する社員を定めていたときは、当該持分会社を代表する社員が清算持分会社を代表する清算人となる。
- 5 裁判所は、第六百四十七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より清算人を選任する場合には、その清算人の中から清算持分会社を代表する清算人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6 第五百九十九条第四項及び第五項の規定は清算持分会社を代表する清算人について、第六百三条の規定は民事保全法第五十六条に規定する仮処分命令により選任された清算人又は清算持分会社を代表する清算人の職務を代行する者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

第656条 清算持分会社についての破産手続の開始

- 1 清算持分会社の財産がその債務を完済するのに足り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ときは、清算人は、直ちに破産手続開始の申立て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清算人は、清算持分会社が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破産管財人にその事務を引き継いだときは、その任務を終了したものとする。
- 3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清算持分会社が既に債権者に支払い、又は社員に分配したものがあるときは、破産管財人は、これ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る。

第657条 裁判所の選任する清算人の報酬

裁判所は、第六百四十七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より清算人を選任した場合には、清算持分会社が当該清算人に対して支払う報酬の額を定めること

제655조 청산지분회사의 대표

- ① 청산인은 청산지분회사를 대표한다. 다만, 다른 청산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 그 밖의 청산지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항 본문의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산인은 각자 청산지분회사를 대표한다.
- ③ 청산지분회사는 정관 또는 정관의 정함에 의거하여 청산인 (제64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호선에 의하여 청산인 중에서 청산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을 정할 수 있다.
- ④ 제64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청산인이 되는 경우 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청산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된다.
- ⑤ 법원은 제64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인 중에서 청산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을 정할 수 있다.
- ⑥ 제599조 제4항 또는 제5항은 청산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에 관하여 제603조는 민사보전법 제56조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 또는 청산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656조 청산지분회사에 관한 파산절차의 개시

- ① 청산지분회사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함에 부족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청산인은 즉시 파산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청산인은 청산지분회사가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한 때에는 그 임무를 종료한 것으로 본다.
- ③ 전항의 경우 청산지분회사가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사원에게 분배한 것이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657조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보수

법원이 제64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청산지분회사가 청산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액을 정할 수 있다.

ができる。

第3節 財産目録等

第658条 財産目録等の作成等

- 1 清算人は、その就任後遅滞なく、清算持分会社の財産の現況を調査し、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六百四十四条各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日における財産目録及び貸借対照表(以下この節において「財産目録等」という。)を作成し、各社員にその内容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清算持分会社は、財産目録等を作成した時から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ける清算結了の登記の時までの間、当該財産目録等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清算持分会社は、社員の請求により、毎月清算の状況を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659条 財産目録等の提出命令

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訴訟の当事者に対し、財産目録等の全部又は一部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4節 債務の弁済等

第660条 債権者に対する公告等

- 1 清算持分会社(合同会社に限る。以下この項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は、第六百四十四条各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後、遅滞なく、当該清算持分会社の債権者に対し、一定の期間内にその債権を申し出るべき旨を官報に公告し、かつ、知れている債権者には、各別にこれを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期間は、二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 2 前項の規定による公告には、当該債権者が当該期間内に申出をしないときは清算から除斥される旨を付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661条 債務の弁済の制限

- 1 清算持分会社は、前条第一項の期間内は、債務の弁済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清算持分会社は、その債務の不履行によって生じた責任を免

제3절 재산목록 등

제658조 재산목록 등의 작성 등

- ① 청산인은 그 취임 후 지체없이 청산지분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44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된 날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이하 이 절에서 “재산목록 등”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고 각 사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청산지분회사는 재산목록 등을 작성한 때로부터 그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시까지 그 재산목록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청산지분회사는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매월 청산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59조 재산목록 등의 제출명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의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절 채무변제 등

제660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등

- ① 청산지분회사 (합동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조에서 같다) 는 제 644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된 후 지체없이 청산지분회사의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청하여야 하는 뜻을 관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별히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개월을 밑돌 수 없다.
- ② 전항에 의한 공고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661조 채무변제의 제한

- ① 청산지분회사는 전조 제1항의 기간 내는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청산지분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第3編 持分会社

第8章 清算

れることができない。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清算持分会社は、前条第一項の期間内であっても、裁判所の許可を得て、少額の債権、清算持分会社の財産につき存する担保権によって担保される債権その他これを弁済しても他の債権者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債権に係る債務について、その弁済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許可の申立ては、清算人が二人以上あるときは、その全員の同意によっ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662条 条件付債権等に係る債務の弁済

1 清算持分会社は、条件付債権、存続期間が不確定な債権その他その額が不確定な債権に係る債務を弁済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これらの債権を評価させるため、裁判所に対し、鑑定人の選任の申立て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は、清算持分会社は、同項の鑑定人の評価に従い同項の債権に係る債務を弁済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鑑定人の選任の手続に関する費用は、清算持分会社の負担とする。当該鑑定人による鑑定のための呼出し及び質問に関する費用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第663条 出資の履行の請求

清算持分会社に現存する財産がその債務を完済するのに足りない場合において、その出資の全部又は一部を履行していない社員があるときは、当該出資に係る定款の定めにかかわらず、当該清算持分会社は、当該社員に出資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664条 債務の弁済前における残余財産の分配の制限

清算持分会社は、当該清算持分会社の債務を弁済した後でなければ、その財産を社員に分配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その存否又は額について争いのある債権に係る債務についてその弁済をするために必要と認められる財産を留保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665条 清算からの除斥

1 清算持分会社(合同会社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債権者(知れている債権者を除く。)であって第六百六十条第一項の期間内にその債権の申出を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청산지분회사는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액 채권, 청산지분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존재하는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그 밖의 채무를 변제하여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과 관련된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청산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원의 동의로 하여야 한다.

제662조 조건부채권 등에 관한 채무변제

- ① 청산지분회사는 조건부 채권, 존속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 그 밖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채권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원에 감정인의 선임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경우 청산지분회사는 동항의 감정인 평가에 따라 채권에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감정인의 선임절차에 관한 비용은 청산지분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감정인에 의한 감정을 위한 소환 및 질문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도 같다.

제663조 출자이행의 청구

청산지분회사에 현존하는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함에 부족한 경우 그 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원이 있는 때에는 당해 출자에 관한 정관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청산지분회사는 그 사원에게 출자를 시킬 수 있다.

제664조 채무변제 전 잔여재산 분배의 제한

청산지분회사는 청산지분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다만, 그 존부 또는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채권의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유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5조 청산에서의 제외

- ① 청산지분회사(합동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 같다)의 채권자(알고 있는 채권자는 제외한다)로서 제660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채권의 신청을 하

第3編 持分会社

第8章 清算

しなかったものは、清算から除斥され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清算から除斥された債権者は、分配がされていない残余財産に対してのみ、弁済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 清算持分会社の残余財産を社員の一部に分配した場合には、当該社員の受けた分配と同一の割合の分配を当該社員以外の社員に対してするために必要な財産は、前項の残余財産から控除する。

第5節 残余財産の分配

第666条 残余財産の分配の割合

残余財産の分配の割合について定款の定めがないときは、その割合は、各社員の出資の価額に応じて定める。

第6節 清算事務の終了等

第667条

1 清算持分会社は、清算事務が終了したときは、遅滞なく、清算に係る計算をして、社員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社員が一箇月以内に前項の計算について異議を述べなかったときは、社員は、当該計算の承認をし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清算人の職務の執行に不正の行為があっ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7節 任意清算

第668条 財産の処分の方法

1 持分会社(合名会社及び合資会社に限る。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は、定款又は総社員の同意によって、当該持分会社が第六百四十一条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掲げる事由によって解散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持分会社の財産の処分の方法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2 第二節から前節までの規定は、前項の財産の処分の方法を定めた持分会社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지 아니한 때에는 청산에서 제외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청산지분회사의 잔여재산을 사원 일부에게 분배한 경우 당해 사원이 받은 분배와 동일비율의 분배를 그 사원 이외의 사원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

제5절 잔여재산의 분배

제666조 잔여재산 분배비율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에 관하여 정관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비율은 각사원의 출자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제6절 청산사무의 종결 등

제667조 잔여재산 분배비율

① 청산지분회사는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청산에 관한 계산을 하고 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원이 1개월 이내에 전항의 계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원은 그 계산의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청산인의 직무집행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절 임의청산

제668조 재산의 처분방법

① 지분회사(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지분회사가 제64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지분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2절 내지 전절은 전항의 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한 지분회사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編 持分会社

第8章 清算

第669条 財産目録等の作成

1 前条第一項の財産の処分の方法を定めた持分会社が第六百四十一条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掲げる事由によって解散した場合には、清算持分会社(合名会社及び合資会社に限る。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は、解散の日から二週間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解散の日における財産目録及び貸借対照表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条第一項の財産の処分の方法を定めていない持分会社が第六百四十一条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掲げる事由によって解散した場合において、解散後に同項の財産の処分の方法を定めたときは、清算持分会社は、当該財産の処分の方法を定めた日から二週間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解散の日における財産目録及び貸借対照表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670条 債権者の異議

1 持分会社が第六百六十八条第一項の財産の処分の方法を定めた場合には、その解散後の清算持分会社の債権者は、当該清算持分会社に対し、当該財産の処分の方法について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清算持分会社は、解散の日(前条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財産の処分の方法を定めた日) から二週間以内に、次に掲げる事項を官報に公告し、かつ、知れている債権者には、各別にこれを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二号の期間は、一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一 第六百六十八条第一項の財産の処分の方法に従い清算をする旨

二 債権者が一定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旨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清算持分会社が同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官報のほか、第九百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従い、同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公告方法によりす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よる各別の催告は、することを要しない。

4 債権者が第二項第二号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なかったときは、当該債権者は、当該財産の処分の方法について承認をしたものとみなす。

5 債権者が第二項第二号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たときは、清算持分会社は、当該債権者に対し、弁済し、若しくは相当の担保を提供し、又は当該債権者に弁済を受け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信託会社等に相当の財産を信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669조 재산목록 등의 작성

① 전조 제1항에서 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한 지분회사가 제64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지분회사(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산일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조 제1항의 재산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하는 지분회사가 제64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해산 후에 동항의 재산처분방법을 정한 때에는 청산지분회사는 재산처분방법을 정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일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70조 채권자의 이익

① 지분회사가 제668조 제1항의 재산처분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해산 후의 청산지분회사의 채권자는 청산지분회사에 재산의 처분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청산지분회사는 해산일(전조 제2항의 경우에는 재산처분방법을 정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히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간은 1개월을 밑돌 수 없다.

1. 제668조 제1항의 재산처분방법에 따라 청산을 하는 뜻
 2.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청산지분회사가 동항에 의한 공고를 관보 외 제939조 제1항에 의한 정관의 정함에 따라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하는 때에는 전항에 따라 각별히 최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채권자가 제2항 제2호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재산처분방법에 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채권자가 제2항 제2호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청산지분회사는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채권자에 대한 변제 목적으로 신탁회사 등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第3編 持分会社

第8章 清算

ない。

第671条 持分の差押債権者の同意等

- 1 持分会社が第六百六十八条第一項の財産の処分の方法を定めた場合において、社員の持分を差し押さえた債権者があるときは、その解散後の清算持分会社がその財産の処分をするには、その債権者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清算持分会社が同項の規定に違反してその財産の処分をしたときは、社員の持分を差し押さえた債権者は、当該清算持分会社に対し、その持分に相当する金額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8節 帳簿資料の保存

第672条

- 1 清算人(第六百六十八条第一項の財産の処分の方法を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清算持分会社を代表する社員)は、清算持分会社の本店の所在地における清算結了の登記の時から十年間、清算持分会社の帳簿並びにその事業及び清算に関する重要な資料(以下この条において「帳簿資料」という。)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定款で又は社員の過半数をもって帳簿資料を保存する者を定めた場合には、その者は、清算持分会社の本店の所在地における清算結了の登記の時から十年間、帳簿資料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裁判所は、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第一項の清算人又は前項の規定により帳簿資料を保存する者に代わって帳簿資料を保存する者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前二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 4 前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者は、清算持分会社の本店の所在地における清算結了の登記の時から十年間、帳簿資料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5 第三項の規定による選任の手続に関する費用は、清算持分会社の負担とする。

第9節 社員の責任の消滅時効

第673条

- 1 第五百八十条に規定する社員の責任は、清算持分会社の本店の所在地におけ

제671조 지분 압류채권자의 동의 등

- ① 지분회사가 제668조 제1항의 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한 경우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해산 후의 청산지분회사가 그 재산의 처분을 하려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전항의 청산지분회사가 동항에 위반하여 재산의 처분을 한 때에는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청산지분회사에 그 지분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절 장부자료의 보존

제672조

- ① 청산인(제668조 제1항의 재산처분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청산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청산지분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료의 등기를 한 때로부터 10년간 청산지분회사의 장부, 그 사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한 자료(이하 이조에서 “장부자료”라고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사원의 과반수로서 장부자료를 보존하는 자를 정한 경우 그 자는 청산지분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때로부터 10년간 장부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청산인 또는 전항에 의하여 장부자료를 보존하는 자를 대신하여 장부자료를 보존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전항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청산지분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료의 등기를 한 때로부터 10년간 장부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의한 선임절차에 관한 비용은 청산지분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절 사원의 책임의 소멸시효

제673조

- ① 제580조의 사원책임은 청산지분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의 등기를 한

第3編 持分会社

第8章 清算

る解散の登記をした後五年以内に請求又は請求の予告をしない清算持分会社の債権者に対しては、その登記後五年を経過した時に消滅する。

2 前項の期間の経過後であっても、社員に分配していない残余財産があるときは、清算持分会社の債権者は、清算持分会社に対して弁済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10節 適用除外等

第674条 適用除外

次に掲げる規定は、清算持分会社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一 第四章第一節

二 第六百六条、第六百七条第一項(第三号及び第四号を除く。)及び第六百九条

三 第五章第三節(第六百十七条第四項、第六百十八条及び第六百十九条を除く。)から第六節まで及び第七節第二款

四 第六百三十八条第一項第三号及び第二項第二号

第675条 相続及び合併による退社の特則

清算持分会社の社員が死亡した場合又は合併により消滅した場合には、第六百八条第一項の定款の定めがないときであっても、当該社員の相続人その他の一般承継人は、当該社員の持分を承継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同条第四項及び第五項の規定を準用する。

후 5년 이내에 청구 또는 청구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청산지분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② 전항의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청산지분회사의 채권자는 청산지분회사에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절 적용제외 등

제674조 적용제외

다음의 규정은 청산지분회사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장 제1절
2. 제606조, 제60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609조
3. 제5장 제3절 (제617조 제4항, 제618조, 제619조는 제외한다) 내지 제6절 및 제7절 제2관
4. 제638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호

제675조 상속 및 합병에 의한 퇴사의 특칙

청산지분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제608조 제1항의 정관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원의 상속인 그 밖의 일반승계인은 사원의 지분을 승계 한다. 이 경우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4編 社債

第1章 総則

第676条 募集社債に関する事項の決定

社は、その発行する社債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都度、募集社債(当該募集に応じて当該社債の引受けの申込みをした者に対して割り当てる社債をいう。以下この編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募集社債の総額
- 二 各募集社債の金額
- 三 募集社債の利率
- 四 募集社債の償還の方法及び期限
- 五 利息支払の方法及び期限
- 六 社債券を発行するときは、その旨
- 七 社債権者が第六百九十八条の規定による請求の全部又は一部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 七の二 社債管理者を定め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 八 社債管理者が社債権者集会の決議によらずに第七百六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 八の二 社債管理補助者を定め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 九 各募集社債の払込金額(各募集社債と引換えに払い込む金銭の額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その最低金額又はこれらの算定方法
- 十 募集社債と引換えにする金銭の払込みの期日
- 十一 一定の日までに募集社債の総額について割当てを受ける者を定めていない場合において、募集社債の全部を発行し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その一定の日
- 十二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第677条 募集社債の申込み

- 1 会社は、前条の募集に応じて募集社債の引受け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

제4편 사채

제1장 총칙

제676조 모집사채에 관한 사항의 결정

회사는 발행하는 사채를 인수하는 자를 모집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모집 사채(모집에 응하여 그 사채의 인수 청약을 한 자에게 배정하는 사채를 말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모집사채의 총액
2. 각 모집사채의 금액
3. 모집사채의 이율
4. 모집사채의 상환방법 및 기한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6. 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뜻
7. 사채권자가 제698조에 의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 7의2. 사채관리자를 두지 않기로 한 때에는 그 뜻
8. 사채관리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706조 제1항 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뜻
- 8의2. 사채관리보조자를 두기로 한 때에는 그 뜻
9. 각 모집사채의 납입금액(각 모집 사채와 교환하여 납입하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최저금액 또는 그 산정방법
10. 모집사채와 교환으로 하는 금전의 납입기일
11. 일정한 날까지 모집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배정을 받는 자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집 사채의 전부를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때에는 그 뜻 및 그 일정한 날
12. 전 각호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77조 모집사채의 청약

- ① 회사는 전조의 모집에 응하여 모집 사채의 인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第4編 社債

第1章 総則

し、次に掲げ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会社の商号

二 当該募集に係る前条各号に掲げる事項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2 前条の募集に応じて募集社債の引受けの申込みをする者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会社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申込みをする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二 引き受けようとする募集社債の金額及び金額ごとの数

三 会社が前条第九号の最低金額を定めたときは、希望する払込金額

3 前項の申込みをする者は、同項の書面の交付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会社の承諾を得て、同項の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申込みをした者は、同項の書面を交付したものとみなす。

4 第一項の規定は、会社が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金融商品取引法第二条第十項に規定する目論見書を第一項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て交付している場合その他募集社債の引受け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の保護に欠けるおそれがない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5 会社は、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変更があっ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及び当該変更があった事項を第二項の申込みをした者(以下この章において「申込者」という。)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会社が申込者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催告は、第二項第一号の住所(当該申込者が別に通知又は催告を受ける場所又は連絡先を当該会社に通知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場所又は連絡先)にあてて発すれば足りる。

7 前項の通知又は催告は、その通知又は催告が通常到達すべきであった時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第678条 募集社債の割当て

1 会社は、申込者の中から募集社債の割当てを受ける者を定め、かつ、その者に割り当てる募集社債の金額及び金額ごとの数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会社は、当該申込者に割り当てる募集社債の金額ごとの数を、前条第二項第二号の数よりも減少することができる。

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모집에 관한 전조 각호의 사항

3. 전 2호의 사항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조의 모집에 응하여 모집 사채의 인수 청약을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청약을 하는 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2. 인수하려는 모집 사채의 금액 및 금액별 수

3. 회사가 전조 제9호의 최저금액을 정한 때에는 희망 납입금액

③ 전항의 청약을 하는 자는 동항의 서면의 교부에 갈음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승낙을 얻어 동항의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의 방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을 한 자는 동항의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은 회사가 동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10항의 사업설명서를 제1항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교부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모집사채의 인수 청약을 하려는 자의 보호에 관한 염려가 없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뜻 및 변경 사항을 제2항의 청약을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청약자”라고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회사가 청약자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제2항 제1호의 주소(청약자가 별도로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 또는 연락처를 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장소 또는 연락처)로 발송하면 된다.

⑦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통상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78조 모집사채의 배정

① 회사는 청약자 중에서 모집사채의 배정을 받을 자를 정하고 그 자에게 배정할 모집사채의 금액 및 금액별 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자에게 배정할 모집사채의 금액별 수를 전조 제2항 제1호의 수보다 적게 할 수 있다.

第4編 社債

第1章 総則

2 会社は、第六百七十六条第十号の期日の前日までに、申込者に対し、当該申込者に割り当てる募集社債の金額及び金額ごとの数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679条 募集社債の申込み及び割当てに関する特則

前二条の規定は、募集社債を引き受けようとする者がその総額の引受けを行う契約を締結す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680条 募集社債の社債権者

次の各号に掲げる者は、当該各号に定める募集社債の社債権者となる。

- 一 申込者 会社の割り当てた募集社債
- 二 前条の契約により募集社債の総額を引き受けた者 その者が引き受けた募集社債

第681条 社債原簿

会社は、社債を発行した日以後遅滞なく、社債原簿を作成し、これに次に掲げる事項(以下この章において「社債原簿記載事項」という。)を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第六百七十六条第三号から第八号の二までに掲げる事項その他の社債の内容を特定す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以下この編において「種類」という。)
- 二 種類ごとの社債の総額及び各社債の金額
- 三 各社債と引換えに払い込まれた金銭の額及び払込みの日
- 四 社債権者(無記名社債(無記名式の社債券が発行されている社債をいう。以下この編において同じ。)の社債権者を除く。)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 五 前号の社債権者が各社債を取得した日
- 六 社債券を発行したときは、社債券の番号、発行の日、社債券が記名式か、又は無記名式かの別及び無記名式の社債券の数
- 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第682条 社債原簿記載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等

- 1 社債権者(無記名社債の社債権者を除く。)は、社債を発行した会社(以下この

② 회사는 제676조 제10호의 기일 전일까지 청약자에 대하여 그 청약자에게 배정한 모집 사채의 금액 및 금액별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79조 모집사채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특칙

전 2조의 규정은 모집 사채를 인수하려는 자가 그 총액의 인수를 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0조 모집사채의 사채권자

다음 각호의 자는 각호에서 정하는 모집사채의 사채권자가 된다.

1. 청약자 : 회사가 배정한 모집사채
2. 전조의 계약에 의해 모집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 그 자가 인수한 모집사채

제681조 사채원부

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날 이후 지체없이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이에 다음의 사항 (이하 이 장에서 “사채원부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을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한다.

1. 제676조 제3호 내지 제8호의 2 사항 그 밖의 사채의 내용을 특정하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편에서 ‘종류’라고 한다)
2. 종류별 사채의 총액 및 각 사채의 금액
3. 각 사채와 교환하여 납입한 금액 및 납입일
4. 사채권자(무기명사채(무기명식 사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를 말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 사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명칭 및 주소
5. 전 호의 사채권자가 각 사채를 취득한 날
6. 사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사채권의 번호, 발행일, 사채권이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인지 여부 및 무기명식 사채권의 수
7. 전 각호의 사항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82조 사채원부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① 사채권자(무기명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이하

第4編 社債

第1章 総則

編において「社債発行会社」という。) に対し、当該社債権者についての社債原簿に記載され、若しくは記録された社債原簿記載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又は当該社債原簿記載事項を記録した電磁的記録の提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書面には、社債発行会社の代表者が署名し、又は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電磁的記録には、社債発行会社の代表者が法務省令で定める署名又は記名押印に代わる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三項の規定は、当該社債について社債券を発行する旨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683条 社債原簿管理人

会社は、社債原簿管理人(会社に代わって社債原簿の作成及び備置きその他の社債原簿に関する事務を行う者をいう。以下同じ。)を定め、当該事務を行うことを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第684条 社債原簿の備置き及び閲覧等

1 社債発行会社は、社債原簿をその本店(社債原簿管理人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営業所)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社債権者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者は、社債発行会社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請求の理由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社債原簿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二 社債原簿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3 社債発行会社は、前項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これ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

一 当該請求を行う者がその権利の確保又は行使に関する調査以外の目的で請求を行ったとき。

二 当該請求を行う者が社債原簿の閲覧又は謄写によって知り得た事実を利益

이 편에서 “사채발행회사”라고 한다)에 사채권자에 관한 사채원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사채원부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또는 그 사채원부기재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서면에는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자적 기록에는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전 3항의 규정은 사채에 관하여 사채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3조 사채원부관리인

회사는 사채원부관리인(회사를 대신하여 사채원부를 작성 및 비치 그 밖의 사채원부에 관한 사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84조 사채원부의 비치 및 열람 등

① 사채발행회사는 사채원부를 그 본점(사채원부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채권자 그 밖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사채발행회사의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구 이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채원부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사채원부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③ 사채발행회사는 전항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당해 청구를 한 자가 그 권리의 확보 또는 행사에 관한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2. 당해 청구를 한 자가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로 인하여 알게 된 사실로

第4編 社債

第1章 総則

を得て第三者に通報するため請求を行ったとき。

三 当該請求を行う者が、過去二年以内において、社債原簿の閲覧又は謄写によって知り得た事実を利益を得て第三者に通報したことがあるものであるとき。

4 社債発行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は、当該社債発行会社の親会社社員は、そ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当該社債発行会社の社債原簿について第二項各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請求の理由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前項の親会社社員について第三項各号のいずれかに規定する事由があるときは、裁判所は、前項の許可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685条 社債権者に対する通知等

1 社債発行会社が社債権者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催告は、社債原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た当該社債権者の住所(当該社債権者が別に通知又は催告を受ける場所又は連絡先を当該社債発行会社に通知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場所又は連絡先) にあてて発すれば足りる。

2 前項の通知又は催告は、その通知又は催告が通常到達すべきであった時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3 社債が二以上の者の共有に属するときは、共有者は、社債発行会社が社債権者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催告を受領する者一人を定め、当該社債発行会社に対し、その者の氏名又は名称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者を社債権者とみなして、前二項の規定を適用する。

4 前項の規定による共有者の通知がない場合には、社債発行会社が社債の共有者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催告は、そのうちの一人に対してすれば足りる。

5 前各項の規定は、第七百二十条第一項の通知に際して社債権者に書面を交付し、又は当該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二項中「到達したものとあるのは、」当該書面の交付又は当該事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があったもの」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686条 共有者による権利の行使

社債が二以上の者の共有に属するときは、共有者は、当該社債についての権利を行使する者一人を定め、会社に対し、その者の氏名又は名称を通知しなけれ

이익을 얻고 제3자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청구를 한 경우

3. 당해 청구를 한 자가 과거 2년 이내에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로 인하여 알게 된 사실로 이익을 얻고 제3자에게 통보한 경우가 있는 자인 경우

④ 사채발행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사채발행회사의 모회사 사원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채발행회사의 사채원부에 관하여 제2항 각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구 이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모회사 사원에 관하여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항의 허가를 할 수 없다.

제685조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하거나 기록한 사채권자의 주소(사채권자가 별도로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주소 또는 연락처를 사채발행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 또는 연락처)로 발송하면 된다.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사채가 2인 이상의 자의 공유에 속한 경우에 공유자는 사채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 대하여 하는 통지 또는 최고를 수령하는 자 1인을 정하여 사채발행회사에 그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자를 사채권자로 보아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자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채발행회사가 사채의 공유자에 대하여 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 1인에게 하면 된다.

⑤ 전 각 항의 규정은 제720조 제1항의 통지시 사채권자에게 서면을 교부하거나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도달한 것”은 “서면의 교부 또는 당해 사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686조 공유자에 의한 권리행사

사채가 2인 이상의 자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사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 회사에 그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第4編 社債

第1章 総則

ば、当該社債について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会社が当該権利を行使することに同意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687条 社債券を発行する場合の社債の譲渡

社債券を発行する旨の定めがある社債の譲渡は、当該社債に係る社債券を交付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第688条 社債の譲渡の対抗要件

- 1 社債の譲渡は、その社債を取得した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を社債原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社債発行会社その他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 2 当該社債について社債券を発行する旨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社債発行会社その他の第三者」とあるのは、「社債発行会社」とする。
- 3 前二項の規定は、無記名社債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689条 権利の推定等

- 1 社債券の占有者は、当該社債券に係る社債についての権利を適法に有するものと推定する。
- 2 社債券の交付を受けた者は、当該社債券に係る社債についての権利を取得する。ただし、その者に悪意又は重大な過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690条 社債権者の請求によらない社債原簿記載事項の記載又は記録

- 1 社債発行会社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の社債の社債権者に係る社債原簿記載事項を社債原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社債発行会社の社債を取得した場合
 - 二 当該社債発行会社が有する自己の社債を処分した場合
- 2 前項の規定は、無記名社債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691条 社債権者の請求による社債原簿記載事項の記載又は記録

- 1 社債を社債発行会社以外の者から取得した者(当該社債発行会社を除く。)は、当該社債発行会社に対し、当該社債に係る社債原簿記載事項を社債原

사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7조 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사채의 양도

사채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사채의 양도는 그 사채에 관한 사채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88조 사채 양도의 대항요건

- ① 사채의 양도는 그 사채를 취득한 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거나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회사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사채에 관하여 사채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중 “사채발행회사 그 밖의 제3자”는 “사채발행회사”로 본다.
- ③ 전 2항의 규정은 무기명사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9조 권리의 추정 등

- ① 사채권의 점유자는 사채권에 관련된 사채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자로 추정한다.
- ② 사채권의 교부를 받은 자는 사채권에 관련된 사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그 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0조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채원부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기록

- ① 사채발행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당해 각호의 사채의 사채권자에 관한 사채원부기재사항을 사채원부에 기재하거나 기록하여야 한다.
 - 1. 사채발행회사의 사채를 취득한 경우
 - 2. 사채발행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사채를 처분한 경우
- ② 전항의 규정은 무기명사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1조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사채원부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기록

- ① 사채를 사채발행회사 이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자 (사채발행회사는 제외한다)는 사채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사채에 관한 사채원부기재사항을 사채원부

第4編 社債

第1章 総則

簿に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は、利害関係人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を除き、その取得した社債の社債権者として社債原簿に記載され、若しくは記録された者又はその相続人その他の一般承継人と共同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二項の規定は、無記名社債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692条 社債券を発行する場合の社債の質入れ

社債券を発行する旨の定めがある社債の質入れは、当該社債に係る社債券を交付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第693条 社債の質入れの対抗要件

1 社債の質入れは、その質権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を社債原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社債発行会社その他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社債券を発行する旨の定めがある社債の質権者は、継続して当該社債に係る社債券を占有しなければ、その質権をもって社債発行会社その他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694条 質権に関する社債原簿の記載等

1 社債に質権を設定した者は、社債発行会社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社債原簿に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質権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二 質権の目的である社債

2 前項の規定は、社債券を発行する旨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695条 質権に関する社債原簿の記載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等

1 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が社債原簿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質権者は、社債発行会社に対し、当該質権者についての社債原簿に記載され、若しくは記録された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又は当該事項を記録した電磁的記録の提供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에 기재하거나 기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취득한 사채의 사채권자로서 사채원부에 기재되거나 기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일반승계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무기명사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2조 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사채의 입질

사채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사채의 입질은 그 사채에 관한 사채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93조 사채 입질의 대항요건

① 사채 입질은 그 질권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거나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회사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사채의 질권자는 계속하여 그 사채에 관한 사채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 사채발행회사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694조 질권에 관한 사채원부의 기재 등

① 사채에 질권을 설정한 자는 사채발행회사에 다음의 사항을 사채원부에 기재하거나 기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질권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2. 질권의 목적인 사채

② 전항의 규정은 사채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5조 질권에 관한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① 전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사채원부에 기재되거나 기록된 질권자는 사채발행회사에 그 질권자에 관한 사채원부에 기재되거나 기록된 동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또는 그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第4編 社債

第1章 総則

2 前項の書面には、社債発行会社の代表者が署名し、又は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電磁的記録には、社債発行会社の代表者が法務省令で定める署名又は記名押印に代わる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第695条の2 信託財産に属する社債についての対抗要件等

1 社債については、当該社債が信託財産に属する旨を社債原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当該社債が信託財産に属することを社債発行会社その他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第六百八十一条第四号の社債権者は、その有する社債が信託財産に属するときは、社債発行会社に対し、その旨を社債原簿に記載し、又は記録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 社債原簿に前項の規定による記載又は記録がされた場合における第六百八十二条第一項及び第六百九十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六百八十二条第一項中「記録された社債原簿記載事項」とあるのは「記録された社債原簿記載事項(当該社債権者の有する社債が信託財産に属する旨を含む。)」と、第六百九十条第一項中「社債原簿記載事項」とあるのは「社債原簿記載事項(当該社債権者の有する社債が信託財産に属する旨を含む。)」とする。

4 前三項の規定は、社債券を発行する旨の定めがある社債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696条 社債券の発行

社債発行会社は、社債券を発行する旨の定めがある社債を発行した日以後遅滞なく、当該社債に係る社債券を発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697条 社債券の記載事項

1 社債券には、次に掲げる事項及びその番号を記載し、社債発行会社の代表者がこれに署名し、又は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社債発行会社の商号
- 二 当該社債券に係る社債の金額
- 三 当該社債券に係る社債の種類

② 전항의 서면에는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자적 기록에는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95조의2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에 관한 대항요건 등

① 사채의 경우에는 그 사채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뜻을 사채원부에 기재 또는 기록하지 않으면 당해 사채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을 사채발행회사 그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제681조 제4호의 사채권자는 그가 소유하는 사채가 신탁재산에 속할 때에는 사채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뜻을 사채원부에 기재 또는 기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채원부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 또는 기록이 된 경우 제682조 제1항 및 제690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682조 제1항 중 “기록된 사채원부기재사항”은 “기록된 사채원부기재사항(사채권자가 보유하는 사채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뜻을 포함한다)”으로, 제690조 제1항 중 “사채원부기재사항”은 “사채원부기재사항(사채권자가 보유하는 사채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뜻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전 3항의 규정은 사채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사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6조 사채권의 발행

사채발행회사는 사채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사채를 발행한 날 이후 지체없이 그 사채의 사채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697조 사채권의 기재사항

① 사채권에는 다음의 사항 및 그 번호를 기재하고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가 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채발행회사의 상호
2. 사채권에 관련된 사채의 금액
3. 사채권에 관련된 사채의 종류

第4編 社債

第1章 総則

2 社債券には、利札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第698条 記名式と無記名式との間の転換

社債券が発行されている社債の社債権者は、第六百七十六条第七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より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されている場合を除き、いつでも、その記名式の社債券を無記名式とし、又はその無記名式の社債券を記名式と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699条 社債券の喪失

- 1 社債券は、非訟事件手続法第四百二十二条 に規定する公示催告手続によって無効とすることができる。
- 2 社債券を喪失した者は、非訟事件手続法第四百十八条第一項 に規定する除権決定を得た後でなければ、その再発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700条 利札が欠けている場合における社債の償還

- 1 社債発行会社は、社債券が発行されている社債をその償還の期限前に償還する場合において、これに付された利札が欠けているときは、当該利札に表示される社債の利息の請求権の額を償還額から控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請求権が弁済期に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2 前項の利札の所持人は、いつでも、社債発行会社に対し、これと引換えに同項の規定により控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額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701条 社債の償還請求権等の消滅時効

- 1 社債の償還請求権は、十年間行使しないときは、時効によって消滅する。
- 2 社債の利息の請求権及び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請求権は、五年間行使しないときは、時効によって消滅する。

② 사채권에는 이권(利權)을 부여할 수 있다.

제698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사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676조 제7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의하여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그 기명식 사채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식 사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9조 사채권의 상실

- ① 사채권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42조의 공시최고절차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 ② 사채권을 상실한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1항의 제권결정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제700조 이권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 사채의 상환

- ① 사채발행회사는 사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를 그 기간 전에 하는 경우 사채권에 부여된 이권이 흠결되어 있는 때에는 그 이권에 표시되는 사채 이자의 청구권 금액을 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청구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사채발행회사에 이와 교환하여 동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1조 사채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 ① 사채의 청구권은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 ② 사채의 이자청구권 및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第4編 社債

第2章 社債管理者等

第2章 社債管理者

第702条 社債管理者の設置

会社は、社債を発行する場合には、社債管理者を定め、社債権者のために、弁済の受領、債権の保全その他の社債の管理を行うことを委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各社債の金額が一億円以上である場合その他社債権者の保護に欠けるおそれがない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703条 社債管理者の資格

社債管理者は、次に掲げる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銀行
- 二 信託会社
-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これらに準ず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者

第704条 社債管理者の義務

- 1 社債管理者は、社債権者のために、公平かつ誠実に社債の管理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2 社債管理者は、社債権者に対し、善良な管理者の注意をもって社債の管理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705条 社債管理者の権限等

- 1 社債管理者は、社債権者のために社債に係る債権の弁済を受け、又は社債に係る債権の実現を保全するために必要な一切の裁判上又は裁判外の行為をする権限を有する。
- 2 社債管理者が前項の弁済を受けた場合には、社債権者は、その社債管理者に対し、社債の償還額及び利息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社債券を発行する旨の定めがあるときは、社債権者は、社債券と引換えに当該償還額の支払を、利札と引換えに当該利息の支払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前項前段の規定による請求権は、十年間行使しないときは、時効によって消滅する。
- 4 社債管理者は、その管理の委託を受けた社債につき第一項の行為をするため

제2장 사채관리자

제702조 사채관리자의 설치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관리자를 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사채권자의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3조 사채관리자의 자격

사채관리자는 다음의 자이어야 한다.

1. 은행
2. 신탁회사
3. 전2호 외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704조 사채관리자의 의무

- ① 사채관리자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채관리자는 사채권자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05조 사채관리자의 권한 등

- ① 사채관리자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의 변제를 받거나 사채에 관한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갖는다.
- ② 사채관리자가 전항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 사채권자는 그 사채관리자에 대하여 사채의 상환금액 및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경우 사채권자는 사채권과 교환하여 상환금액의 지급을, 이권과 교환하여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 ④ 사채관리자는 그 관리의 위탁을 받은 사채에 관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기

第4編 社債

第2章 社債管理者等

に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社債発行会社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を調査することができる。

第706条

1 社債管理者は、社債権者集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次に掲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第二号に掲げる行為については、第六百七十六条第八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当該社債の全部についてするその支払の猶予、その債務若しくはその債務の不履行によって生じた責任の免除又は和解(次号に掲げる行為を除く。)

二 当該社債の全部についてする訴訟行為又は破産手続、再生手続、更生手続若しくは特別清算に関する手続に属する行為(前条第一項の行為を除く。)

2 社債管理者は、前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社債権者集会の決議によらずに同項第二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公告し、かつ、知れている社債権者には、各別にこれ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規定による公告は、社債発行会社における公告の方法によ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方法が電子公告であるときは、その公告は、官報に掲載する方法でなければならない。

4 社債管理者は、その管理の委託を受けた社債につき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社債発行会社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を調査することができる。

第707条 特別代理人の選任

社債権者と社債管理者との利益が相反する場合において、社債権者のために裁判上又は裁判外の行為をする必要があるときは、裁判所は、社債権者集会の申立てにより、特別代理人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708条 社債管理者等の行為の方式

社債管理者又は前条の特別代理人が社債権者のために裁判上又は裁判外の行為をするときは、個別の社債権者を表示することを要しな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채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06조

① 사채관리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관하여는 제676조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채의 전부에 관하여 하는 지급의 유예, 채무 또는 채무의 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다음 호의 행위는 제외한다)
2. 사채의 전부에 관하여 하는 소송행위 또는 파산절차, 재생절차, 갱생절차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전조 제1항의 행위는 제외한다)

② 사채관리자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항 제2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히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사채발행회사의 공고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방법이 전자공고인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자는 관리의 위탁을 받은 사채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채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07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사채권자와 사채관리자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사채권자를 위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 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법원은 사채권자집회의 신청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08조 사채관리자 등의 행위 방식

사채관리자 또는 전조의 특별대리인이 사채권자를 위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개별 사채권자를 표시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第4編 社債

第2章 社債管理者等

第709条 二以上の社債管理者がある場合の特則

- 1 二以上の社債管理者があるときは、これらの者が共同してその権限に属する行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社債管理者が第七百五条第一項の弁済を受けたときは、社債管理者は、社債権者に対し、連帯して、当該弁済の額を支払う義務を負う。

第710条 社債管理者の責任

- 1 社債管理者は、この法律又は社債権者集会の決議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ときは、社債権者に対し、連帯して、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 2 社債管理者は、社債発行会社が社債の償還若しくは利息の支払を怠り、若しくは社債発行会社について支払の停止があった後又はその前三箇月以内に、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ときは、社債権者に対し、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ただし、当該社債管理者が誠実にすべき社債の管理を怠らなかったこと又は当該損害が当該行為によって生じたものでないことを証明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当該社債管理者の債権に係る債務について社債発行会社から担保の供与又は債務の消滅に関する行為を受けること。
 - 二 当該社債管理者と法務省令で定める特別の関係がある者に対して当該社債管理者の債権を譲り渡すこと(当該特別の関係がある者が当該債権に係る債務について社債発行会社から担保の供与又は債務の消滅に関する行為を受けた場合に限る。)
 - 三 当該社債管理者が社債発行会社に対する債権を有する場合において、契約によって負担する債務を専ら当該債権をもってする相殺に供する目的で社債発行会社の財産の処分を内容とする契約を社債発行会社との間で締結し、又は社債発行会社に対して債務を負担する者の債務を引き受けることを内容とする契約を締結し、かつ、これにより社債発行会社に対し負担した債務と当該債権とを相殺すること。
 - 四 当該社債管理者が社債発行会社に対して債務を負担する場合において、社債発行会社に対する債権を譲り受け、かつ、当該債務と当該債権とを相殺すること。

제709조 2인 이상의 사채관리자가 있는 경우의 특칙

- ① 2인 이상의 사채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채관리자가 제705조 제1항의 변제를 받은 때에는 사채관리자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710조 사채관리자의 책임

- ① 사채관리자는 이 법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사채관리자는 사채발행회사가 사채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을 게을리하거나 사채발행회사에 관하여 지급 정지가 있었던 후 또는 그 전 3개월 이내에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채관리자가 성실히 하여야 할 사채의 관리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손해가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채관리자의 채권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사채발행회사에서 담보의 공여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받는 것
 - 2. 사채관리자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채관리자의 채권을 양도하는 것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채권에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사채발행회사로부터 담보의 공여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3. 사채관리자가 사채발행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오로지 그 채권으로써 하는 상계에 제공할 목적으로 사채발행회사의 재산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사채발행회사와 체결하거나 사채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사채발행회사에 부담한 채무와 그 채권을 상계하는 것
 - 4. 사채관리자가 사채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채발행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무와 채권을 상계하는 것

第4編 社債

第2章 社債管理者等

第711条 社債管理者の辞任

- 1 社債管理者は、社債発行会社及び社債権者集会の同意を得て辞任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他に社債管理者がないときは、当該社債管理者は、あらかじめ、事務を承継する社債管理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社債管理者は、第七百二条の規定による委託に係る契約に定めた事由があるときは、辞任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契約に事務を承継する社債管理者に関する定め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3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社債管理者は、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とき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辞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712条 社債管理者が辞任した場合の責任

第七百十条第二項の規定は、社債発行会社が社債の償還若しくは利息の支払を怠り、若しくは社債発行会社について支払の停止があった後又はその前三箇月以内に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辞任した社債管理者について準用する。

第713条 社債管理者の解任

裁判所は、社債管理者がその義務に違反したとき、その事務処理に不適任であるときその他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社債発行会社又は社債権者集会の申立てにより、当該社債管理者を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714条 社債管理者の事務の承継

- 1 社債管理者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場合において、他に社債管理者がないときは、社債発行会社は、事務を承継する社債管理者を定め、社債権者のために、社債の管理を行うことを委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社債発行会社は、社債権者集会の同意を得るため、遅滞なく、これを招集し、かつ、その同意を得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きは、その同意に代わる裁判所の許可の申立て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第七百三条各号に掲げる者でなくなったとき。
 - 二 第七百十一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辞任したとき。
 - 三 前条の規定により解任されたとき。
 - 四 解散したとき。

제711조 사채관리자의 사임

- ① 사채관리자는 사채발행회사 및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로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사채관리자가 없는 때에는 그 사채관리자는 미리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자를 정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자는 제70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임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에 사무를 승계하는 사채관리자에 관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712조 사채관리자가 사임한 경우의 책임

제710조 제2항의 규정은 사채발행회사가 사채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을 게을리 하거나 사채발행회사에 관하여 지급의 정지가 있었던 후 또는 그 전 3개월 이내에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한 사채관리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13조 사채관리자의 해임

법원은 사채관리자가 그 의무에 위반한 때, 그 사무처리에 부적임한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사채관리자를 해임할 수 있다.

제714조 사채관리자 사무의 승계

① 사채관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른 사채관리자가 없는 때에는 사채발행회사는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자를 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채발행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고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었던 때에는 그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703조 각호의 자가 아니게 된 때
2. 제7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한 때
3.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때
4. 해산한 때

第4編 社債

第2章 社債管理者等

2 社債発行会社は、前項前段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同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日後二箇月以内に、同項後段の規定による招集をせず、又は同項後段の申立てをしなかったときは、当該社債の総額について期限の利益を喪失する。

3 第一項前段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ときは、利害関係人は、裁判所に対し、事務を承継する社債管理者の選任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4 社債発行会社は、第一項前段の規定により事務を承継する社債管理者を定めた場合(社債権者集会の同意を得た場合を除く。)又は前項の規定による事務を承継する社債管理者の選任があった場合には、遅滞なく、その旨を公告し、かつ、知っている社債権者には、各別にこれ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章の二 社債管理補助者

第714条の2 社債管理補助者の設置

会社は、第七百二条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には、社債管理補助者を定め、社債権者のために、社債の管理の補助を行うことを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社債が担保付社債で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714条の3 社債管理補助者の資格

社債管理補助者は、第七百三条各号に掲げる者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714条の4 社債管理補助者の権限等

- 1 社債管理補助者は、社債権者のために次に掲げる行為をする権限を有する。
 - 一 破産手続参加、再生手続参加又は更生手続参加
 - 二 強制執行又は担保権の実行の手続における配当要求
 - 三 第四百九十九条第一項の期間内に債権の申出をすること。
- 2 社債管理補助者は、第七百十四条の二の規定による委託に係る契約に定める範囲内において、社債権者のために次に掲げる行為をする権限を有する。

② 사채발행회사는 전항 전단의 경우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집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항 후단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③ 제1항 전단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자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사채발행회사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승계하는 사채관리자를 정한 경우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승계하는 사채관리자의 선임이 있었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는 각별히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의2 사채관리보조자

제714조의2 사채관리보조자의 설치

회사는 제70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채관리보조자를 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관리의 보조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채가 담보부사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4조의3 사채관리보조자의 자격

사채관리보조자는 제703조 각 호의 자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여야 한다.

제714조의4 사채관리보조자의 권한 등

① 사채관리보조자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파산절차 참가, 회생절차 참가 또는 갱생절차 참가
2.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에서 배당요구
3. 제49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채권 신청

② 사채관리보조자는 제714조의 2의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채권자를 위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第4編 社債

第2章 社債管理者等

- 一 社債に係る債権の弁済を受けること。
- 二 第七百五条第一項の行為(前項各号及び前号に掲げる行為を除く。)
- 三 第七百六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
- 四 社債発行会社が社債の総額について期限の利益を喪失することとなる行為
- 3 前項の場合において、社債管理補助者は、社債権者集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次に掲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 一 前項第二号に掲げる行為であって、次に掲げるもの
 - イ 当該社債の全部についてするその支払の請求
 - ロ 当該社債の全部に係る債権に基づく強制執行、仮差押え又は仮処分
 - ハ 当該社債の全部についてする訴訟行為又は破産手続、再生手続、更生手続若しくは特別清算に関する手続に属する行為(イ及びロに掲げる行為を除く。)
 - 二 前項第三号及び第四号に掲げる行為
- 4 社債管理補助者は、第七百十四条の二の規定による委託に係る契約に従い、社債の管理に関する事項を社債権者に報告し、又は社債権者がこれを知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 5 第七百五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第二項第一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権限を有する社債管理補助者について準用する。

第714条の5 二以上の社債管理補助者がある場合の特則

- 1 二以上の社債管理補助者があるときは、社債管理補助者は、各自、その権限に属する行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社債管理補助者が社債権者に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場合において、他の社債管理補助者も当該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ときは、これらの者は、連帯債務者とする。

第714条の6 社債管理者等との関係

第七百二条の規定による委託に係る契約又は担保付社債信託法(明治三十八年法律第五十二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信託契約の効力が生じた場合には、第七百十四条の二の規定による委託に係る契約は、終了する。

1. 사채에 관한 채권의 변제를 수령하는 것
2. 제705조 제1항의 행위(전항 각 호 및 전항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70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4. 사채발행회사가 사채총액에 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행위
- ③ 전항의 경우, 사채관리보조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항 제2호의 행위로서 다음의 것
 - 가. 사채의 전부에 관해 하는 그 지급의 청구
 - 나. 사채의 전부에 관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 다. 사채의 전부에 관해 하는 소송행위 또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갱생절차 혹은 특별청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가목 및 나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2. 전항 제3호 및 제4호의 행위
- ④ 사채관리보조자는 제714조의 2의 위탁계약에 따라 사채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채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사채권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제705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 제1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사채관리보조자에 준용한다.

제714조의5 2인 이상의 사채관리보조자가 있는 경우의 특칙

- ① 2인 이상의 사채관리보조자가 있는 때에는 사채관리보조자는 각자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채관리보조자가 사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다른 사채관리보조자도 배상책임을 지는 때에는 이들은 연대책무자로 한다.

제714조의6 사채관리자 등과의 관계

제702조의 위탁계약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14조의 2의 위탁계약은 종료한다.

第4編 社債

第3章 社債権者集会

第714条の7 社債管理者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七百四条、第七百七条、第七百八条、第七百十條第一項、第七百十一條、第七百十三條及び第七百十四條の規定は、社債管理補助者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七百四条中「社債の管理」とあるのは「社債の管理の補助」と、同項中「社債権者に対し、連帯して」とあるのは「社債権者に対し」と、第七百十一條第一項中「において、他に社債管理者がないときは」とあるのは「において」と、同条第二項中「第七百二條」とあるのは「第七百十四條の二」と、第七百十四條第一項中「において、他に社債管理者がないときは」とあるのは「には」と、「社債の管理」とあるのは「社債の管理の補助」と、「第七百三條各号に掲げる」とあるのは「第七百十四條の三に規定する」と、「解散した」とあるのは「死亡し、又は解散した」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3章 社債権者集会

第715条 社債権者集会の構成

社債権者は、社債の種類ごとに社債権者集会を組織する。

第716条 社債権者集会の権限

社債権者集会は、この法律に規定する事項及び社債権者の利害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717条 社債権者集会の招集

- 1 社債権者集会は、必要がある場合には、いつでも、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
- 2 社債権者集会は、次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招集する場合を除き、社債発行会社又は社債管理者が招集する。
- 3 次に掲げる場合には、社債管理補助者は、社債権者集会を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場合
 - 二 第七百十四條の七において準用する第七百十一條第一項の社債権者集会の同意を得るため必要がある場合

제714조의7 사채관리자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04조, 제707조, 제708조, 제710조 제1항, 제711조, 제713조 및 제714조는 사채관리보조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704조 중 ‘사채의 관리’는 ‘사채관리의 보조’로, 동항 중 ‘사채권자에 대해 연대해서’는 ‘사채권자에 대해’로, 제711조 제1항 중 ‘에서, 다른 사채관리자가 없는 때’는 ‘에서’로, 동조 제2항 중 ‘제702조’는 ‘제704조의2’로, 제714조 제1항 중 ‘에서, 다른 사채관리자가 없는 때는’은 ‘에는’으로, ‘사채의 관리’는 ‘사채의 관리의 보조’로, ‘제703조 각호의’는 ‘제714조의 3의’로, ‘해산한’은 ‘사망하거나 또는 해산한’으로 한다.

제3장 사채권자집회

제715조 사채권자집회의 구성

사채권자는 사채의 종류별로 사채권자집회를 조직한다.

제716조 사채권자집회의 권한

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717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 ① 사채권자집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 ② 사채권자집회는 다음 항 또는 다음 조 제3항에 의하여 소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자가 소집한다.
- ③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관리보조자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 1. 다음 조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
- 2. 제714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711조 제1항의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第4編 社債

第3章 社債権者集会

第718条 社債権者による招集の請求

1 ある種類の社債の総額(償還済みの額を除く。)の十分の一以上に当たる社債を有する社債権者は、社債発行会社、社債管理者又は社債管理補助者に対し、社債権者集会の目的である事項及び招集の理由を示して、社債権者集会の招集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社債発行会社が有する自己の当該種類の社債の金額の合計額は、前項に規定する社債の総額に算入しない。

3 次に掲げる場合に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た社債権者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社債権者集会を招集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の後遅滞なく招集の手続が行われない場合

二 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日から八週間以内の日を社債権者集会の日とする社債権者集会の招集の通知が発せられない場合

4 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又は前項の規定による招集をしようとする無記名社債の社債権者は、その社債券を社債発行会社、社債管理者又は社債管理補助者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719条 社債権者集会の招集の決定

社債権者集会を招集する者(以下この章において「招集者」という。)は、社債権者集会を招集す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社債権者集会の日時及び場所

二 社債権者集会の目的である事項

三 社債権者集会に出席しない社債権者が電磁的方法によっ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第720条 社債権者集会の招集の通知

1 社債権者集会を招集するには、招集者は、社債権者集会の日の二週間前までに、知っている社債権者及び社債発行会社並びに社債管理者又は社債管理補助者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社債管理者又は社債管理補助者に対して、書面をもってその通知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718조 사채권자에 의한 소집의 청구

- ① 어느 종류의 사채의 총액 (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 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사채발행회사, 사채관리자 또는 사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사채권자집회의 목적사항 및 소집이유를 표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사채발행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당해종류의 사채의 금액의 합계액은 전항의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후 지체없이 소집절차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8주간 이내의 날을 사채권자집회의 날로 하는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통지가 발송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을 하려는 무기명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사채권을 사채발행회사, 사채관리자 또는 사채관리보조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19조 사채권자집회 소집의 결정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소집자”라고 한다)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채권자집회의 일시 및 장소
2. 사채권자집회의 목적인 사항
3.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사채권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그 뜻
4. 전 3호의 사항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20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통지

- ①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려면 소집자는 사채권자집회일 2주간 전까지 알고 있는 사채권자, 사채발행회사 및 사채관리자 또는 사채관리보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자 또는 사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第4編 社債

第3章 社債権者集会

2 招集者は、前項の書面による通知の発出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項の通知を受けるべき者の承諾を得て、電磁的方法により通知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招集者は、同項の書面による通知を発したものとみなす。

3 前二項の通知には、前条各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社債発行会社が無記名式の社債券を発行している場合において、社債権者集会を招集するには、招集者は、社債権者集会の日の三週間前までに、社債権者集会を招集する旨及び前条各号に掲げる事項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前項の規定による公告は、社債発行会社における公告の方法によ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招集者が社債発行会社以外の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方法が電子公告であるときは、その公告は、官報に掲載する方法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721条 社債権者集会参考書類及び議決権行使書面の交付等

1 招集者は、前条第一項の通知に際し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知れている社債権者に対し、議決権の行使について参考となるべき事項を記載した書類(以下この条において「社債権者集会参考書類」という。)及び社債権者が議決権を行使するための書面(以下この章において「議決権行使書面」という。)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招集者は、前条第二項の承諾をした社債権者に対し同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通知を発す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よる社債権者集会参考書類及び議決権行使書面の交付に代えて、これらの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社債権者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これらの書類を当該社債権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招集者は、前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した場合において、社債権者集会の日の一週間前までに無記名社債の社債権者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直ちに、社債権者集会参考書類及び議決権行使書面を当該社債権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招集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社債権者集会参考書類及び議決権行使書面の交付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社債権者の承諾を得て、これらの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

② 소집자는 전항의 서면에 의한 통지의 발송에 갈음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의 통지를 받아야 할 자의 승낙을 얻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자는 동항의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전 2항의 통지에는 전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하여야 한다.

④ 사채발행회사가 무기명식 사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려면 소집자는 사채권자집회일 3주간 전까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뜻 및 전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사채발행회사의 공고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자가 사채발행회사 이외의 자인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이 전자공고인 때에는 그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721조 사채권자집회 참고서류 및 의결권행사서면의 교부 등

① 소집자는 전조 제1항의 통지시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참고되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사채권자집회 참고서류”라고 한다) 및 사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서면(이하 이 장에서 “의결권행사서면”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소집자는 전조 제2항의 승낙을 한 사채권자에게 동항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권자집회 참고서류 및 의결권행사서면의 교부에 갈음하여 이러한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를 사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소집권자는 전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경우 사채권자집회일 1주 전까지 무기명사채의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즉시 사채권자집회 참고서류 및 의결권행사서면을 사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소집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권자집회 참고서류 및 의결권행사서면의 교부에 갈음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이러한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소

第4編 社債

第3章 社債権者集会

て、当該招集者は、同項の規定によるこれらの書類の交付をしたものとみなす。

第722条

1 招集者は、第七百十九条第三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には、第七百二十条第二項の承諾をした社債権者に対する電磁的方法による通知に際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社債権者に対し、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当該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招集者は、第七百十九条第三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において、第七百二十条第二項の承諾をしていない社債権者から社債権者集会の日の一週間前までに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直ちに、当該社債権者に対し、当該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723条 議決権の額等

1 社債権者は、社債権者集会において、その有する当該種類の社債の金額の合計額(償還済みの額を除く。)に応じて、議決権を有する。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社債発行会社は、その有する自己の社債については、議決権を有しない。

3 議決権を行使しようとする無記名社債の社債権者は、社債権者集会の日の一週間前までに、その社債券を招集者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724条 社債権者集会の決議

1 社債権者集会において決議をする事項を可決するには、出席した議決権者(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社債権者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の議決権の総額の二分の一を超える議決権を有する者の同意が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社債権者集会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可決するには、議決権者の議決権の総額の五分の一以上で、かつ、出席した議決権者の議決権の総額の三分の二以上の議決権を有する者の同意が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七百六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に関する事項

二 第七百六条第一項、第七百十四条の四第三項(同条第二項第三号に掲げる行為に係る部分に限る。)、第七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百三十七条第一項た

집자는 동 항의 규정에 의한 이러한 서류의 교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22조

① 소집자는 제719조 제3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제720조 제2항의 승낙을 한 사채권자에게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소집자는 제719조 제3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 제720조 제2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로부터 사채권자집회일의 1주전까지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사채권자에게 그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723조 의결권의 금액 등

①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에서 자신이 보유하는 당해종류의 사채의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발행회사는 보유하는 자기 사채에 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

③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무기명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일 1주전까지 그 사채권을 소집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24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①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를 하는 사항을 가결하려면 출석한 의결권자(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가결하려면 의결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5분의 1이상이며 출석한 의결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제706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관한 사항
2. 제706조 제1항, 제714조 4 제3항(동조 제2항 제3호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736조 제1항, 제737조 제1항 단서 및 제738조에 의해 사채권

第4編 社債

第3章 社債権者集会

だし書及び第七百三十八条の規定により社債権者集会の決議を必要とする事項

3 社債権者集会は、第七百十九条第二号に掲げる事項以外の事項については、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725条 議決権の代理行使

1 社債権者は、代理人によってその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社債権者又は代理人は、代理権を証明する書面を招集者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代理権の授与は、社債権者集会ごと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社債権者又は代理人は、代理権を証明する書面の提出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招集者の承諾を得て、当該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社債権者又は代理人は、当該書面を提出したものとみなす。

4 社債権者が第七百二十条第二項の承諾をした者である場合には、招集者は、正当な理由がなければ、前項の承諾をすることを拒んではならない。

第726条 書面による議決権の行使

1 社債権者集会に出席しない社債権者は、書面によっ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

2 書面による議決権の行使は、議決権行使書面に必要な事項を記載し、法務省令で定める時まで当該記載をした議決権行使書面を招集者に提出して行う。

3 前項の規定により書面によって行使した議決権の額は、出席した議決権者の議決権の額に算入する。

第727条 電磁的方法による議決権の行使

1 電磁的方法による議決権の行使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招集者の承諾を得て、法務省令で定める時まで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当該招集者に提供して行う。

2 社債権者が第七百二十条第二項の承諾をした者である場合には、招集者は、

자집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사채권자집회는 제719조 제2호의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을 할 수 없다.

제7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사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자 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 대리권의 수여는 사채권자집회마다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채권자 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갈음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자의 승낙을 얻어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자 또는 대리인은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사채권자가 제720조 제2항의 승낙을 한 자인 경우에는 소집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전항의 승낙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26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사채권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행사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기재를 한 의결권행사서면을 소집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행사한 의결권의 금액은 출석한 의결권자의 의결권의 금액에 산입한다.

제727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자의 승낙을 얻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소집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다.

② 사채권자가 제720조 제2항의 승낙을 한 자인 경우에는 소집자는 정당한 이

第4編 社債

第3章 社債権者集会

正当な理由がなければ、前項の承諾をすることを拒んでは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電磁的方法によって行使した議決権の額は、出席した議決権者の議決権の額に算入する。

第728条 議決権の不統一行使

1 社債権者は、その有する議決権を統一しないで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社債権者集会の日の三日前までに、招集者に対してその旨及びその理由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招集者は、前項の社債権者が他人のために社債を有する者でないときは、当該社債権者が同項の規定によりその有する議決権を統一しないで行使することを拒むことができる。

第729条 社債発行会社の代表者の出席等

1 社債発行会社、社債管理者又は社債管理補助者は、その代表者若しくは代理人を社債権者集会に出席させ、又は書面により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社債管理者又は社債管理補助者にあつては、その社債権者集会が第七百七条(第七百十四条の七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特別代理人の選任について招集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社債権者集会又は招集者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社債発行会社に対し、その代表者又は代理人の出席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社債権者集会にあつては、これをする旨の決議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

第730条 延期又は続行の決議

社債権者集会においてその延期又は続行について決議があつた場合には、第七百十九条及び第七百二十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731条 議事録

1 社債権者集会の議事については、招集者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議事録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社債発行会社は、社債権者集会の日から十年間、前項の議事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유 없이 전항의 승낙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한 의결권의 금액은 출석한 의결권자의 의결권의 금액에 산입한다.

제728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사채권자는 그가 보유하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 소집자에게 그 뜻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집자는 전항의 사채권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채를 보유하는 자가 아닌 때에는 사채권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보유하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제729조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 등

① 사채발행회사, 사채관리자 또는 사채관리보조자는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사채관리자 또는 사채관리보조자는 그 사채권자집회가 제707조(제714조의 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소집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채권자집회 또는 소집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채발행회사에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자집회에서는 이를 요구하는 뜻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730조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사채권자집회에서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719조 및 제72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1조 의사록

① 사채권자집회의 의사에 관하여 소집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채발행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일로부터 10년간 전항의 의사록을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第4編 社債

第3章 社債権者集会

3 社債管理者、社債管理補助者及び社債権者は、社債発行会社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第一項の議事録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 二 第一項の議事録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第732条 社債権者集会の決議の認可の申立て

社債権者集会の決議があったときは、招集者は、当該決議があった日から一週間以内に、裁判所に対し、当該決議の認可の申立て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733条 社債権者集会の決議の不認可

裁判所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社債権者集会の決議の認可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社債権者集会の招集の手續又はその決議の方法が法令又は第六百七十六条の募集のための当該社債発行会社の事業その他の事項に関する説明に用いた資料に記載され、若しくは記録された事項に違反するとき。
- 二 決議が不正の方法によって成立するに至ったとき。
- 三 決議が著しく不公正であるとき。
- 四 決議が社債権者の一般の利益に反するとき。

第734条 社債権者集会の決議の効力

- 1 社債権者集会の決議は、裁判所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 2 社債権者集会の決議は、当該種類の社債を有するすべての社債権者に対してその効力を有する。

第735条 社債権者集会の決議の認可又は不認可の決定の公告

社債発行会社は、社債権者集会の決議の認可又は不認可の決定があった場合には、遅滞なく、その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사채관리자, 사채관리보조자 및 사채권자는 사채발행회사의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항의 의사록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제1항의 의사록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제732조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인가 청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었던 때에는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법원에 그 결의의 인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733조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불인가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의 인가를 할 수 없다.

1.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제676조의 모집을 위한 사채발행회사의 사업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설명에 사용된 자료에 기재되거나 기록된 사항에 위반하는 때
2.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3.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4. 결의가 사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제734조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

-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②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당해 종류의 사채를 보유하는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735조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의 공고

사채발행회사는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었던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第4編 社債

第3章 社債権者集会

第735条の2 社債権者集会の決議の省略

社債発行会社、社債管理者、社債管理補助者又は社債権者が社債権者集会の目的である事項について(社債管理補助者にあつては、第七百十四条の七において準用する第七百十一条第一項の社債権者集会の同意をすることについて)提案を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提案につき議決権者の全員が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より同意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当該提案を可決する旨の社債権者集会の決議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

2 社債発行会社は、前項の規定により社債権者集会の決議があつたものとみなされた日から十年間、同項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社債管理者、社債管理補助者及び社債権者は、社債発行会社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前項の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 二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4 第一項の規定により社債権者集会の決議があつたものとみなされる場合には、第七百三十二条から前条まで(第七百三十四条第二項を除く。)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736条 代表社債権者の選任等

1 社債権者集会においては、その決議によって、当該種類の社債の総額(償還済みの額を除く。)の千分の一以上に当たる社債を有する社債権者の中から、一人又は二人以上の代表社債権者を選任し、これに社債権者集会において決議をする事項についての決定を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七百十八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社債の総額について準用する。

3 代表社債権者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おいて、社債権者集会において別段の定めを行わなかったときは、第一項に規定する事項についての決定は、その過半数をもって行う。

第737条 社債権者集会の決議の執行

1 社債権者集会の決議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執行する。ただし、社債権者集会の決議によって別に社債権者集会の決議を執

제735조의2 사채권자집회 결의 생략

- ① 사채발행회사, 사채관리자, 사채관리보조자 또는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해(사채관리보조자의 경우에는 제714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711조 제1항의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하는 것에 관하여) 제안한 경우 해당 제안에 관해 의결권자 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하여 동의를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해당 제안을 가결하는 취지의 사채권자집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사채발행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날부터 10년간 동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사채관리자, 사채관리보조자 및 사채권자는 사채발행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전항의 서면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
- ④ 제1항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제732조부터 전조까지(제734조 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6조 대표사채권자의 선임 등

- ① 사채권자집회에서는 그 결의로 당해종류의 사채의 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를 하는 사항에 관한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제718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채 총액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③ 대표사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채권자집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결정은 그 과반수로써 한다.

제737조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집행

-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다음 각호에서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자가 집행한다. 다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 별도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第4編 社債

第3章 社債権者集会

行する者を定め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社債管理者がある場合 社債管理者
- 二 社債管理補助者がある場合において、社債管理補助者の権限に属する行為に関する事項を可決する旨の社債権者集会の決議があったとき 社債管理補助者
- 三 前二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代表社債権者

2 第七百五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第七百八条及び第七百九条の規定は、代表社債権者又は前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定められた社債権者集会の決議を執行する者(以下この章において「決議執行者」という。)が社債権者集会の決議を執行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738条 代表社債権者等の解任等

社債権者集会においては、その決議によって、いつでも、代表社債権者若しくは決議執行者を解任し、又はこれらの者に委任した事項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第739条 社債の利息の支払等を怠ったことによる期限の利益の喪失

1 社債発行会社が社債の利息の支払を怠ったとき、又は定期に社債の一部を償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においてその償還を怠ったときは、社債権者集会の決議に基づき、当該決議を執行する者は、社債発行会社に対し、一定の期間内にその弁済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及び当該期間内にその弁済をしないときは当該社債の総額について期限の利益を喪失する旨を書面により通知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期間は、二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2 前項の決議を執行する者は、同項の規定による書面による通知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社債発行会社の承諾を得て、同項の規定により通知する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決議を執行する者は、当該書面による通知をしたものとみなす。

3 社債発行会社は、第一項の期間内に同項の弁済をしなかったときは、当該社債の総額について期限の利益を喪失する。

第740条 債権者の異議手続の特則

1 第四百四十九条、第六百二十七条、第六百三十五条、第六百七十条、第七百七十

를 집행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채관리자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자

2. 사채관리보조자가 있는 경우로서 사채관리보조자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가결하는 취지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을 때: 사채관리보조자

3. 전 2호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경우: 대표사채권자

② 제705조 제1항 내지 3항, 제708조 및 제709조는 대표사채권자 또는 전항 단서에 따라 정해진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결의집행자'라고 한다)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738조 대표사채권자 등의 해임 등

사채권자집회는 그 결의로 언제든지 대표사채권자 또는 결의집행자를 해임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위임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739조 사채의 이자 지급 등을 게을리 한 것에 의한 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사채발행회사가 사채의 이자 지급을 게을리 한 때 또는 정기에 사채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상환을 게을리 한 때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는 사채발행회사에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뜻 및 그 기간 내에 그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사채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2개월을 밑돌 수 없다.

② 전항의 결의를 집행하는 자는 동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에 의한 통지를 갈음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발행회사의 승낙을 얻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를 집행하는 자는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사채발행회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변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채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740조 채권자의 이익절차의 특칙

① 제449조, 제627조, 제635조, 제670조, 제779조 (제781조 제2항에서 준용

第4編 社債

第3章 社債権者集会

九条(第七百八十一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七百八十九条(第七百九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七百九十九条(第八百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八百十条(第八百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八百十六条の八の規定により社債権者が異議を述べるには、社債権者集会の決議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裁判所は、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社債権者のために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期間を伸長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社債管理者は、社債権者のために、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七百二条の規定による委託に係る契約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3 社債発行会社における第四百四十九条第二項、第六百二十七条第二項、第六百三十五条第二項、第六百七十条第二項、第七百七十九条第二項(第七百八十一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第七百八十九条第二項(第七百九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第七百九十九条第二項(第八百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第八百十条第二項(第八百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及び第八百十六条の八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四百四十九条第二項、第六百二十七条第二項、第六百三十五条第二項、第六百七十条第二項、第七百七十九条第二項、第七百九十九条第二項及び第八百十六条の八第二項中「知れている債権者」とあるのは「知れている債権者(社債管理者又は社債管理補助者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社債管理者又は社債管理補助者を含む。)」と、第七百八十九条第二項及び第八百十条第二項中「知れている債権者(同項の規定により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る。)」とあるのは「知れている債権者(同項の規定により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り、社債管理者又は社債管理補助者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社債管理者又は社債管理補助者を含む。)」とする。

第741条 社債管理者等の報酬等

1 社債管理者、社債管理補助者、代表社債権者又は決議執行者に対して与えるべき報酬、その事務処理のために要する費用及びその支出の日以後における利息並びにその事務処理のために自己の過失なくして受けた損害の賠償額は、社債発行会社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9조 (제79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99조 (제80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10조(제81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6조의 8에 의하여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자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70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으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발행회사의 제449조 제2항, 제627조 제2항, 제635조 제2항, 제670조 제2항, 제779조 제2항(제78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789조 제2항(제79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799조 제2항(제80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810조 제2항(제81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816조의8 제2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449조 제2항, 제627조 제2항, 제635조 제2항, 제670조 제2항, 제779조 제2항, 제799조 제2항 및 제816조의8 제2항 중 ‘알고 있는 채권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사채관리자 또는 사채관리보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채관리보조자 또는 사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제789조 제2항 및 제810조 제2항 중 ‘알고 있는 채권자(동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는 ‘알고 있는 채권자(동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한하고, 사채관리자 또는 사채관리보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채관리자 또는 사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41조 사채관리자 등의 보수 등

① 사채관리자, 사채관리보조자, 대표사채권자 또는 결의집행자에 대한 보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일 이후의 이자와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부담한 손해배상액은 사채발행회사와의 계약에 정함이

第4編 社債

第3章 社債権者集会

との契約に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裁判所の許可を得て、社債発行会社の負担と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許可の申立ては、社債管理者、社債管理補助者、代表社債権者又は決議執行者がする。

3 社債管理者、社債管理補助者、代表社債権者又は決議執行者は、第一項の報酬、費用及び利息並びに損害の賠償額に関し、第七百五条第一項(第七百三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七百十四条の四第二項第一号の弁済を受けた額について、社債権者に先立って弁済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

第742条 社債権者集会等の費用の負担

1 社債権者集会に関する費用は、社債発行会社の負担とする。

2 第七百三十二条の申立てに関する費用は、社債発行会社の負担とする。ただし、裁判所は、社債発行会社その他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当該費用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招集者その他利害関係人の中から別に負担者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채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1.>

② 전항의 허가 신청은 사채관리자, 사채관리보조자, 대표사채권자 또는 결의 집행자가 한다. <개정 2019. 12. 11.>

③ 사채관리자, 사채관리보조자, 대표사채권자 또는 결의집행자는 제1항의 보수, 비용, 이자 및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제705조 제1항(제73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14조의 4 제2항 제1호의 변제를 받은 금액에 관하여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42조 사채권자집회 등의 비용의 부담

①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비용은 사채발행회사가 부담한다.

② 제732조의 청구에 관한 비용은 사채발행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채발행회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소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중에서 따로 부담자를 정할 수 있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1章 組織変更

第1節 通則

第743条 組織変更計画の作成

会社は、組織変更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組織変更計画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節 株式会社の組織変更

第744条 株式会社の組織変更計画

1 株式会社が組織変更をする場合には、当該株式会社は、組織変更計画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組織変更後の持分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組織変更後持分会社」という。)が合名会社、合資会社又は合同会社のいずれであるかの別

二 組織変更後持分会社の目的、商号及び本店の所在地

三 組織変更後持分会社の社員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社員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ロ 当該社員が無限責任社員又は有限責任社員のいずれであるかの別

ハ 当該社員の出資の価額

四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組織変更後持分会社の定款で定める事項

五 組織変更後持分会社が組織変更の際して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の株主に対してその株式に代わる金銭等(組織変更後持分会社の持分を除く。以下この号及び次号において同じ。)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金銭等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金銭等が組織変更後持分会社の社債であるときは、当該社債の種類(第一百七条第二項第二号ロに規定する社債の種類をいう。以下この編において同じ。)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제1장 조직변경

제1절 통칙

제743조 조직변경계획의 작성

회사는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직변경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제744조 주식회사의 조직변경계획

① 주식회사가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주식회사는 조직변경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후의 지분회사(이하 이 편에서 “조직변경후지분회사”라고 한다) 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인지 여부
2. 조직변경후지분회사의 목적, 상호 및 본점 소재지
3. 조직변경후지분회사의 사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사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나. 사원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인지 여부
다. 사원의 출자 가액
4. 전2호 외에 조직변경후지분회사의 정관에 정한 사항
5. 조직변경후지분회사가 조직변경시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식에 갈음하는 금전 등(조직변경후지분회사의 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호 및 다음호에서 같다)을 교부하는 때에는 금전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금전 등이 조직변경후지분회사의 사채인 때에는 사채의 종류(제10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사채의 종류를 말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 및 종류
마다 각 사채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1章 組織変更

- ロ 当該金銭等が組織変更後持分会社の社債以外の財産であるときは、当該財産の内容及び数若しくは額又はこれらの算定方法
- 六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の株主(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を除く。)に対する同号の金銭等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 七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が新株予約権を発行しているときは、組織変更後持分会社が組織変更の際に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交付する当該新株予約権に代わる金銭の額又はその算定方法
- 八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する同号の金銭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 九 組織変更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以下この章において「効力発生日」という。)
- 2 組織変更後持分会社が合名会社であるときは、前項第三号ロに掲げる事項として、その社員の全部を無限責任社員とする旨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3 組織変更後持分会社が合資会社であるときは、第一項第三号ロに掲げる事項として、その社員の一部を無限責任社員とし、その他の社員を有限責任社員とする旨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4 組織変更後持分会社が合同会社であるときは、第一項第三号ロに掲げる事項として、その社員の全部を有限責任社員とする旨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745条 株式会社の組織変更の効力の発生等

- 1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に、持分会社となる。
- 2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に、前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当該事項に係る定款の変更をしたものとみなす。
- 3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の株主は、効力発生日に、前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組織変更後持分会社の社員となる。
- 4 前条第一項第五号イ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の株主は、効力発生日に、同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同項第五号イの社債の社債権者となる。
- 5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は、効力発生日に、消滅する。
- 6 前各項の規定は、第七百七十九条の規定による手続が終了していない場合又は組織変更を中止した場合には、適用しない。

나. 금전 등이 조직변경후지분회사의 사채 이외의 재산인 때에는 재산의 내용, 수, 가액 또는 그 산정방법

6. 전호의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주주(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동호의 금전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7.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가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고 있는 때에는 조직변경후지분회사가 조직변경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교부하는 신주예약권에 갈음하는 금전의 액 또는 그 산정방법
8. 전호의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 대한 동호의 금전배당에 관한 사항
9.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하 이 장에서 “효력발생일”이라고 한다)
- ② 조직변경후지분회사가 합병회사인 때에는 전항 제3호 나목의 사항으로 그 사원의 전부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하는 뜻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조직변경후지분회사가 합자회사인 때에는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항으로 그 사원의 일부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하고 그 밖의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는 뜻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조직변경후지분회사가 합동회사인 때에는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항으로 그 사원의 전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는 뜻을 정하여야 한다.

제745조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등

- ①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에 지분회사로 된다.
- ②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에 전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그 사항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한 것으로 본다.
- ③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주주는 효력발생일에 전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조직변경후지분회사의 사원으로 된다.
- ④ 전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주주는 효력발생일에 동항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동항 제5호 가목의 사채의 사채권자로 된다.
- ⑤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은 효력발생일에 소멸한다.
- ⑥ 전 각항의 규정은 제779조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직변경을 중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1章 組織変更

第3節 持分会社の組織変更

第746条 持分会社の組織変更計画

持分会社が組織変更をする場合には、当該持分会社は、組織変更計画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組織変更後の株式会社(以下この条において「組織変更後株式会社」という。)の目的、商号、本店の所在地及び発行可能株式総数
-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組織変更後株式会社の定款で定める事項
- 三 組織変更後株式会社の取締役の氏名
- 四 次の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からハまでに定める事項
 - イ 組織変更後株式会社が会計参与設置会社である場合 組織変更後株式会社の会計参与の氏名又は名称
 - ロ 組織変更後株式会社が監査役設置会社(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を含む。)である場合 組織変更後株式会社の監査役の氏名
 - ハ 組織変更後株式会社が会計監査人設置会社である場合 組織変更後株式会社の会計監査人の氏名又は名称
- 五 組織変更をする持分会社の社員が組織変更の際して取得する組織変更後株式会社の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又はその数の算定方法
- 六 組織変更をする持分会社の社員に対する前号の株式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 七 組織変更後株式会社が組織変更の際して組織変更をする持分会社の社員に対してその持分に代わる金銭等(組織変更後株式会社の株式を除く。以下この号及び次号において同じ。)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金銭等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金銭等が組織変更後株式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ものを除く。)であるときは、当該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 ロ 当該金銭等が組織変更後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又はその算定方法

제3절 지분회사의 조직변경

제746조 지분회사의 조직변경계획

① 지분회사가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지분회사는 조직변경계획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후의 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조직변경후주식회사”라고 한다)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및 발행가능주식총수
2. 전호의 사항 외에 조직변경후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조직변경후주식회사의 이사의 성명
4. 다음의 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가목 내지 다목에 정한 사항
가. 조직변경후주식회사가 회계참여설치회사인 경우 : 조직변경후주식회사의 참여회계의 성명 또는 명칭
나. 조직변경후주식회사가 감사설치회사(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에 한정하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인 경우 : 조직변경후주식회사의 감사의 성명
다. 조직변경후주식회사가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인 경우 : 조직변경후주식회사의 회계감사인의 성명 또는 명칭
5. 조직변경을 하는 지분회사의 사원이 조직변경시 취득하는 조직변경후주식회사의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마다의 수) 또는 그 수의 산정방법
6. 조직변경을 하는 지분회사의 사원에 대한 전호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7. 조직변경후주식회사가 조직변경시 조직변경을 하는 지분회사의 사원에게 그 지분에 갈음하는 금전 등(조직변경후주식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다음호에서 같다)을 교부하는 때에는 금전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금전 등이 조직변경후주식회사의 사채(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인 때에는 사채의 종류 및 종류마다 각 사채금액의 합산금액 또는 그 산정방법

나. 금전 등이 조직변경후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은 제외한다)인 때에는 신주예약권의 내용, 수 또는 그 산정방법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1章 組織変更

- ハ 当該金銭等が組織変更後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付社債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イに規定する事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ロに規定する事項
- ニ 当該金銭等が組織変更後株式会社の社債等(社債及び新株予約権をいう。以下この編において同じ。)以外の財産であるときは、当該財産の内容及び数若しくは額又はこれらの算定方法
- ハ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組織変更をする持分会社の社員に対する同号の金銭等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 九 効力発生日
- 2 組織変更後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は、前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とそれ以外の取締役とを区別して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747条 持分会社の組織変更の効力の発生等

- 1 組織変更をする持分会社は、効力発生日に、株式会社となる。
- 2 組織変更をする持分会社は、効力発生日に、前条第一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当該事項に係る定款の変更をしたものとみなす。
- 3 組織変更をする持分会社の社員は、効力発生日に、前条第一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同項第五号の株式の株主となる。
- 4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組織変更をする持分会社の社員は、効力発生日に、前条第一項第八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当該各号に定める者となる。
 - 一 前条第一項第七号イ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イの社債の社債権者
 - 二 前条第一項第七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ロ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 三 前条第一項第七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ハの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社債権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 5 前各項の規定は、第七百八十一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七百七十九条

- 다. 금전 등이 조직변경후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인 때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가목의 사항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한 나목의 사항
- 라. 금전 등이 조직변경후주식회사의 사채 등(사채 및 신주예약권을 말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이외의 재산인 때에는 재산의 내용, 수, 가액 또는 그 산정방법
8. 전항의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하는 지분회사의 사원에 대한 동호의 금전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9. 효력발생일
- ② 조직변경후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전항 제3호의 사항은 감사등위원인 이사와 그 이외의 이사를 구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747조 지분회사의 조직변경효력의 발생 등

- ① 조직변경을 하는 지분회사는 효력발생일에 주식회사로 된다.
- ② 조직변경을 하는 지분회사는 효력발생일에 전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당해 사항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조직변경을 하는 지분회사의 사원은 효력발생일에 전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동항 제5호의 주식의 주주가 된다.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하는 지분회사의 사원은 효력발생일에 전조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1. 전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경우 : 동호 가목의 사채의 사채권자
 2. 전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나목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3. 전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다목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사채권자 및 당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 ⑤ 전 각항의 규정은 제78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779조(제2항 제2호는 제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2章 合併

(第二項第二号を除く。)の規定による手続が終了していない場合又は組織変更を中止した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2章 合併

第1節 通則

第748条 合併契約の締結

会社は、他の会社と合併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合併をする会社は、合併契約を締結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節 吸収合併

第1款 株式会社が存続する吸収合併

第749条 株式会社が存続する吸収合併契約

1 会社が吸収合併をする場合において、吸収合併後存続する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吸収合併存続会社」という。)が株式会社であるときは、吸収合併契約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株式会社である吸収合併存続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という。)及び吸収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吸収合併消滅会社」という。)の商号及び住所
- 二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が吸収合併に際して株式会社である吸収合併消滅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という。)の株主又は持分会社である吸収合併消滅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吸収合併消滅持分会社」という。)の社員に対してその株式又は持分に代わる金銭等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金銭等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金銭等が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株式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又はその数の算定方法並びに当該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資本金及び準備金の額に

외한다)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직변경을 중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합병

제1절 통칙

제748조 합병계약의 체결

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을 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절 흡수합병

제1관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

제749조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계약

① 회사가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이 편에서 “흡수합병존속회사”라고 한다)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흡수합병계약에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인 흡수합병존속회사(이하 이 편에서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라고 한다) 및 흡수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이하 이 편에서 “흡수합병소멸회사”라고 한다)의 상호 및 주소
2.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가 흡수합병시 주식회사인 흡수합병소멸회사(이하 이 편에서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라고 한다)의 주주 또는 지분회사인 흡수합병소멸회사(이하 이 편에서 “흡수합병소멸지분회사”라고 한다)의 사원에 게 그 주식 또는 지분에 갈음하는 금전 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금전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금전 등이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주식인 때에는 그 주식의 수(종류 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마다의 수) 또는 그 수의 산정방법 및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2章 合併

関する事項

- ロ 当該金銭等が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
のものを除く。)であるときは、当該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
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 ハ 当該金銭等が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
付されたものを除く。)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又はその
算定方法
- ニ 当該金銭等が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付社債であるときは、
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ロに規定する事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
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ハに規定する事項
- ホ 当該金銭等が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株式等以外の財産であるときは、
当該財産の内容及び数若しくは額又はこれらの算定方法
- 三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吸収合併消滅株式
会社及び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を除く。)又は吸収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を除く。)に対する同号の金銭等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 四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が新株予約権を発行しているときは、吸収合併存続
株式会社が吸収合併に際して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交付
する当該新株予約権に代わる当該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又は
金銭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吸収合
併存続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内容及
び数又はその算定方法
- ロ イ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イの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が
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であるときは、吸収合併存続株式
会社が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に係る債務を承継する旨並び
にその承継に係る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
の算定方法
- ハ 当該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金銭を
交付するときは、当該金銭の額又はその算定方法
- 五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
権者に対する同号の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又は金銭の割当て

- 나. 금전 등이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사채(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인 때에는 사채의 종류 및 종류별 각 사채 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 다. 금전 등이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은 제외한다)인 때에는 그 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 또는 그 산정방법
- 라. 금전 등이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인 때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나목의 사항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한 다목의 사항
- 마. 금전 등이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주식 등 이외의 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내용, 수, 가액 또는 그 산정방법
3. 전호의 경우에는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및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흡수합병소멸지분회사의 사원(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동호의 금전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4.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가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고 있는 때에는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가 흡수합병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교부하는 신주예약권에 갈음하는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 또는 금전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주예약권의 내용, 수 또는 그 산정방법
- 나. 가목의 경우에는 가목의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인 때에는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가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에 관련된 채무를 승계하는 뜻, 그 승계에 관련된 사채의 종류, 종류마다 각 사채 금액의 합계액 및 그 산정방법
- 다.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때에는 금전의 액 또는 그 산정방법
5. 전호 경우에는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 대한 동호의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 또는 금전의 배당에 관한 사항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2章 合併

に関する事項

- 六 吸収合併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以下この節において「効力発生日」という。)
-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ときは、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及び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は、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発行する種類の株式の内容に応じ、同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とし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一 ある種類の株式の株主に対して金銭等の割当てをし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株式の種類
- 二 前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金銭等の割当てについて株式の種類ごとに異なる取扱いを行う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異なる取扱いの内容
- 3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同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は、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及び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並びに前項第一号の種類の株式の株主を除く。)の有する株式の数(前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各種類の株式の数)に応じて金銭等を交付すること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750条 株式会社が存続する吸収合併の効力の発生等

- 1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に、吸収合併消滅会社の権利義務を承継する。
- 2 吸収合併消滅会社の吸収合併による解散は、吸収合併の登記の後でなければ、これをもって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 3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又は吸収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は、効力発生日に、前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当該各号に定める者となる。
- 一 前条第一項第二号イ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イの株式の株主
- 二 前条第一項第二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ロの社債の社債権者
- 三 前条第一項第二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ハ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 四 前条第一項第二号ニ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ニの新

6. 흡수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하 이 절에서 “효력발생일”이라고 한다)
② 전항의 경우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때에는 흡수합병
존속주식회사 및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는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동항 제3호의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금전 등의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뜻
및 주식의 종류
2. 전항의 사항 외에 금전 등의 배당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마다 다른 취급을
하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및 다른 취급의 내용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동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은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의 주주(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및 전항 제1호의 종류
주식의 주주는 제외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전항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정
함이 있는 경우에는 각 종류주식의 수)에 따라 금전 등을 교부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750조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의 효력의 발생 등

- ①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에 흡수합병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
계한다.
- ② 흡수합병소멸회사의 흡수합병에 의한 해산은 흡수합병의 등기 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흡수합병소멸지
분회사의 사원은 효력발생일에 전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된다.
 1. 전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가목의 주
식의 주주
 2. 전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나목의 사
채의 사채권자
 3. 전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다목의 신
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4. 전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라목의 신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2章 合併

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社債権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 4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は、効力発生日に、消滅する。
- 5 前条第一項第四号イに規定する場合には、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効力発生日に、同項第五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同項第四号イの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となる。
- 6 前各項の規定は、第七百八十九条(第一項第三号及び第二項第三号を除き、第七百九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若しくは第七百九十九条の規定による手続が終了していない場合又は吸収合併を中止した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2款 持分会社が存続する吸収合併

第751条 持分会社が存続する吸収合併契約

- 1 会社が吸収合併をする場合において、吸収合併存続会社が持分会社であるときは、吸収合併契約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持分会社である吸収合併存続会社(以下この節において「吸収合併存続持分会社」という。)及び吸収合併消滅会社の商号及び住所
 - 二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又は吸収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が吸収合併に際して吸収合併存続持分会社の社員となるときは、次の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吸収合併存続持分会社の区分に応じ、当該イからハまでに定める事項
 - イ 合名会社 当該社員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出資の価額
 - ロ 合資会社 当該社員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当該社員が無限責任社員又は有限責任社員のいずれであるかの別並びに当該社員の出資の価額
 - ハ 合同会社 当該社員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出資の価額
 - 三 吸収合併存続持分会社が吸収合併に際して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又は吸収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に対してその株式又は持分に代わる金銭等(吸収合併存続持分会社の持分を除く。)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金銭等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金銭等が吸収合併存続持分会社の社債であるときは、当該社債の種

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의 사채권자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 ④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은 효력발생일에 소멸한다.
- ⑤ 전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경우에는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효력발생일에 동항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동항 제4호 가목의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로 된다.
- ⑥ 전 각항은 제789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는 제외하고 제79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또는 제799조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흡수합병을 중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관 지분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

제751조 지분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계약

- ① 회사가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흡수합병존속회사가 지분회사인 때에는 흡수합병계약에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지분회사인 흡수합병존속회사(이하 이 절에서 “흡수합병존속지분회사”라고 한다) 및 흡수합병소멸회사의 상호 및 주소
 - 2.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흡수합병소멸지분회사의 사원이 흡수합병시 흡수합병존속지분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때에는 다음의 가목 내지 다목의 흡수합병존속지분회사의 구분에 따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사항가. 합명회사 : 사원의 성명, 명칭, 주소 및 출자의 가액
나. 합자회사 : 사원의 성명, 명칭, 주소, 사원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중 어느 하나인가의 구별 및 사원의 출자의 가액
다. 합동회사 : 사원의 성명, 명칭, 주소 및 출자의 가액
 - 3. 흡수합병존속지분회사가 흡수합병시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흡수합병소멸지분회사의 사원에게 그 주식 또는 지분에 갈음하는 금전 등(흡수합병존속지분회사의 지분은 제외한다)을 교부하는 때에는 금전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가. 금전 등이 흡수합병존속지분회사의 사채인 때에는 사채의 종류 및 종류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2章 合併

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ロ 当該金銭等が吸収合併存続持分会社の社債以外の財産であるときは、当該財産の内容及び数若しくは額又はこれらの算定方法

四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及び吸収合併存続持分会社を除く。)又は吸収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吸収合併存続持分会社を除く。)に対する同号の金銭等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五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が新株予約権を発行しているときは、吸収合併存続持分会社が吸収合併に際して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交付する当該新株予約権に代わる金銭の額又はその算定方法

六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する同号の金銭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七 効力発生日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ときは、吸収合併存続持分会社及び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は、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発行する種類の株式の内容に応じ、同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とし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一 ある種類の株式の株主に対して金銭等の割当てをし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株式の種類

二 前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金銭等の割当てについて株式の種類ごとに異なる取扱いを行う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異なる取扱いの内容

3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同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は、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及び吸収合併存続持分会社並びに前項第一号の種類の株式の株主を除く。)の有する株式の数(前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各種類の株式の数)に応じて金銭等を交付すること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752条 持分会社が存続する吸収合併の効力の発生等

1 吸収合併存続持分会社は、効力発生日に、吸収合併消滅会社の権利義務を承継する。

2 吸収合併消滅会社の吸収合併による解散は、吸収合併の登記の後でなければ、これをもって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마다 각 사채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나. 금전 등이 흡수합병존속지분회사의 사채 이외의 재산인 때에는 그 재산의 내용, 수, 가액 및 그 산정방법

4. 전호의 경우에는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및 흡수합병존속지분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흡수합병소멸지분회사의 사원(흡수합병존속지분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동호의 금전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5.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가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고 있는 때에는 흡수합병존속지분회사가 흡수합병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교부하는 신주예약권에 갈음하는 금전의 금액 또는 그 산정방법
6. 전호의 경우에는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 대한 동호의 금전 배당에 관한 사항

7. 효력발생일

② 전항의 경우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때에는 흡수합병존속지분회사 및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는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동항 제4호의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특정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금전 등의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및 주식의 종류
2. 전호의 사항 외에 금전 등의 배당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마다 다른 취급을 하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및 다른 취급의 내용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동항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은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흡수합병존속지분회사 및 전항 제1호의 종류주식의 주주는 제외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전항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각 종류주식의 수)에 따라 금전 등을 교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752조 지분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의 효력발생 등

- ① 흡수합병존속지분회사는 효력발생일에 흡수합병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② 흡수합병소멸회사의 흡수합병에 의한 해산은 흡수합병등기 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2章 合併

3 前条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又は吸収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は、効力発生日に、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吸収合併存続持分会社の社員とな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吸収合併存続持分会社は、効力発生日に、同号の社員に係る定款の変更をしたものとみなす。

4 前条第一項第三号イ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又は吸収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は、効力発生日に、同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同項第三号イの社債の社債権者となる。

5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は、効力発生日に、消滅する。

6 前各項の規定は、第七百八十九条(第一項第三号及び第二項第三号を除き、第七百九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若しくは第八百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七百九十九条(第二項第三号を除く。)の規定による手続が終了していない場合又は吸収合併を中止した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3節 新設合併

第1款 株式会社を設立する新設合併

第753条 株式会社を設立する新設合併契約

1 二以上の会社が新設合併をする場合において、新設合併により設立する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新設合併設立会社」という。)が株式会社であるときは、新設合併契約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新設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新設合併消滅会社」という。)の商号及び住所
 - 二 株式会社である新設合併設立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という。)の目的、商号、本店の所在地及び発行可能株式総数
 - 三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定款で定める事項
 - 四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設立時取締役の氏名
 - 五 次の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からハまでに定める事項
- イ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が会計参与設置会社である場合 新設合併設立株

③ 전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흡수합병소멸지분회사의 사원은 효력발생일에 동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흡수합병존속지분회사의 사원으로 된다. 이 경우에는 흡수합병존속지분회사는 효력발생일에 동호의 사원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전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흡수합병소멸지분회사의 사원은 효력발생일에 동항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동항 제3호 가목의 사채의 사채권자로 된다.

⑤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은 효력발생일에 소멸한다.

⑥ 전 각항의 규정은 제789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를 제외하고 제79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또는 제80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799조(제2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흡수합병을 중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신설합병

제1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

제753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계약

① 2이상의 회사가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신설합병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이하 이 편에서 “신설합병설립회사”라고 한다)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신설합병계약에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설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이하 이 편에서 “신설합병소멸회사”라고 한다)의 상호 및 주소
2. 주식회사인 신설합병설립회사(이하 이 편에서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라고 한다)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및 발행가능주식총수
3. 전호의 사항 외에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4.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설립시 이사의 성명
5. 다음의 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마다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사항
가.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가 회계참여설치회사인 경우 : 신설합병설립주식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2章 合併

式会社の設立時会計参与の氏名又は名称

ロ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が監査役設置会社(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を含む。)である場合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設立時監査役の氏名

ハ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が会計監査人設置会社である場合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設立時会計監査人の氏名又は名称

六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が新設合併に際して株式会社である新設合併消滅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という。)の株主又は持分会社である新設合併消滅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新設合併消滅持分会社」という。)の社員に対して交付するその株式又は持分に代わる当該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又はその数の算定方法並びに当該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資本金及び準備金の額に関する事項

七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を除く。)又は新設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に対する前号の株式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八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が新設合併に際して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又は新設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に対してその株式又は持分に代わる当該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社債等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社債等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社債等が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ものを除く。)であるときは、当該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ロ 当該社債等が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又はその算定方法

ハ 当該社債等が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付社債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イに規定する事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ロに規定する事項

九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を除く。)又は新設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に対する同号の社債等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회사의 설립시 회계참여의 성명 또는 명칭

나.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가 감사설치회사(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에 한정하는 뜻을 정관에 정한 주식회사를 포함한다)인 경우 :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설립시 감사의 성명

다.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가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인 경우 :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설립시 회계감사인의 성명 또는 명칭

6.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가 신설합병시 주식회사인 신설합병소멸회사(이하 이 편에서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라고 한다)의 주주 또는 지분회사인 신설합병소멸회사(이하 이 편에서 “신설합병소멸지분회사”라고 한다)의 사원에게 교부하는 그 주식 또는 지분에 갈음하는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마다의 수), 그 수의 산정방법 및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의 액에 관한 사항

7.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신설합병소멸지분회사의 사원에 대한 전호의 주식배당에 관한 사항

8.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가 신설합병시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신설합병소멸지분회사의 사원에게 그 주식 또는 지분에 갈음하는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사채 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사채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사채 등이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사채(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인 때에는 그 사채의 종류, 종류마다의 각 사채 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나. 사채 등이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신주예약권의 내용, 수 또는 그 산정방법

다. 사채 등이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인 때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가목의 사항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한 나목의 사항

9. 전호의 경우에는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신설합병소멸지분회사의 사원에 대한 동호의 사채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2章 合併

十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が新株予約権を発行しているときは、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が新設合併に際して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交付する当該新株予約権に代わる当該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又は金銭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又はその算定方法

ロ イ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イの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であるときは、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が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に係る債務を承継する旨並びにその承継に係る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ハ 当該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金銭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金銭の額又はその算定方法

十一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する同号の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又は金銭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2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は、前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は、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時取締役とそれ以外の設立時取締役とを区別して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全部又は一部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ときは、新設合併消滅会社は、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発行する種類の株式の内容に応じ、同項第七号に掲げる事項(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に係る事項に限る。次項において同じ。)とし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一 ある種類の株式の株主に対して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株式の割当てをし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株式の種類

二 前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株式の割当てについて株式の種類ごとに異なる取扱いを行う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異なる取扱いの内容

4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同項第七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は、新

10.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가 신주예약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가 신설합병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교부하는 신주예약권에 갈음하는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 또는 금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주예약권의 내용, 수 또는 그 산정방법

나. 가목의 경우 가목의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인 때에는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가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에 관련된 채무를 승계하는 뜻 및 그 승계에 관련된 사채의 종류 및 종류마다 각 사채 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다.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때에는 금전의 액 또는 그 산정방법

11. 전호의 경우에는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 대한 동호의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 또는 금전의 배당에 관한 사항

②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전항 제4호의 사항은 설립시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와 그 이외의 설립시이사를 구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때에는 신설합병소멸회사는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동항 제7호의 사항(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특정 종류주식의 주주에 대해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기로 한 때에는 그 뜻 및 당해 주식의 종류

2 전호의 사항 외에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마다 다른 취급을 하기로 한 때에는 그 뜻 및 당해 다른 취급의 내용

④ 제1항의 경우에는 동항 제7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은 신설합병소멸주식회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2章 合併

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新設合併消滅会社及び前項第一号の種類の株式の株主を除く。)の有する株式の数(前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各種類の株式の数)に応じて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株式を交付すること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5 前二項の規定は、第一項第九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二項中「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株式」とあるのは、「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社債等」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754条 株式会社を設立する新設合併の効力の発生等

1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は、その成立の日に、新設合併消滅会社の権利義務を承継する。

2 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又は新設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は、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成立の日に、同項第七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同項第六号の株式の株主となる。

3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又は新設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は、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成立の日に、前条第一項第九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当該各号に定める者となる。

一 前条第一項第八号イ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イの社債の社債権者

二 前条第一項第八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ロ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三 前条第一項第八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ハの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社債権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4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は、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成立の日に、消滅する。

5 前条第一項第十号イに規定する場合には、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成立の日に、同項第十一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同項第十号イの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となる。

사의 주주(신설합병소멸회사 및 전항 제1호의 종류주식의 주주는 제외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전항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각 종류 주식의 수)에 따라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전 2항의 규정은 제1항 제9호의 사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전 2항 중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주식”은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사채등”으로 한다.

제754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의 효력발생 등

①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는 그 성립일에 신설합병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전조 제1항의 경우에는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신설합병소멸지분회사의 사원은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성립일에 동항 제7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동항 제6호의 주식의 주주로 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신설합병소멸지분회사의 사원은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성립일에 전조 제1항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자가 된다.

1. 전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가목의 사채의 사채권자
2. 전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나목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3. 전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다목의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의 사채권자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④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은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성립일에 소멸한다.

⑤ 전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경우에는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성립일에 동항 제11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동항 제10호 가목의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가 된다.

第2款 持分会社を設立する新設合併

第755条 持分会社を設立する新設合併契約

- 1 二以上の会社が新設合併をする場合において、新設合併設立持分会社であるときは、新設合併契約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新設合併消滅会社の商号及び住所
 - 二 持分会社である新設合併設立持分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新設合併設立持分会社」という。)が合名会社、合資会社又は合同会社のいずれであるかの別
 - 三 新設合併設立持分会社の目的、商号及び本店の所在地
 - 四 新設合併設立持分会社の社員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社員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 ロ 当該社員が無限責任社員又は有限責任社員のいずれであるかの別
 - ハ 当該社員の出資の価額
 - 五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新設合併設立持分会社の定款で定める事項
 - 六 新設合併設立持分会社が新設合併に際して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又は新設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に対してその株式又は持分に代わる当該新設合併設立持分会社の社債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 七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を除く。)又は新設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に対する同号の社債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 八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が新株予約権を発行しているときは、新設合併設立持分会社が新設合併に際して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交付する当該新株予約権に代わる金銭の額又はその算定方法
 - 九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する同号の金銭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 2 新設合併設立持分会社が合名会社であるときは、前項第四号ロに掲げる事項として、その社員の全部を無限責任社員とする旨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3 新設合併設立持分会社が合資会社であるときは、第一項第四号ロに掲げる事項として、その社員の一部を無限責任社員とし、その他の社員を有限責任社員とする旨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제2관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

제755조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계약

① 2이상의 회사가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신설합병설립회사가 지분회사인 때에는 신설합병계약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신설합병소멸회사의 상호 및 주소
 2. 지분회사인 신설합병설립회사(이하 이 편에서 “신설합병설립지분회사”라고 한다)가 합병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 중 어느 것인지 구별
 3. 신설합병설립지분회사의 목적, 상호 및 본점 소재지
 4. 신설합병설립지분회사의 사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사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 나. 사원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인지 여부
 - 다. 사원의 출자의 가액
 5. 전2호의 사항 외에 신설합병설립지분회사의 정관에 정한 사항
 6. 신설합병설립지분회사가 신설합병시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신설합병소멸지분회사의 사원에 대하여 그 주식 또는 지분에 갈음하는 신설합병설립지분회사의 사채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채의 종류, 종류마다 각 사채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7. 전호의 경우에는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신설합병소멸지분회사의 사원에 대한 동호의 사채의 배당에 관한 사항
 8.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가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고 있는 때에는 신설합병설립지분회사가 신설합병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신주예약권에 갈음하는 금전의 액 또는 그 산정방법
 9. 전호의 경우에는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 대한 동호의 금전배당에 관한 사항
- ② 신설합병설립지분회사가 합병회사인 때에는 전항 제4호 나목의 사항으로 그 사원의 전부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하는 뜻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신설합병설립지분회사가 합자회사인 때에는 제1항 제4호 나목의 사항으로 그 사원의 일부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하고 그 밖의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는 뜻을 정하여야 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会社分割

4 新設合併設立持分会社が合同会社であるときは、第一項第四号ロに掲げる事項として、その社員の全部を有限責任社員とする旨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756条 持分会社を設立する新設合併の効力の発生等

1 新設合併設立持分会社は、その成立の日に、新設合併消滅会社の権利義務を承継する。

2 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又は新設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は、新設合併設立持分会社の成立の日に、同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当該新設合併設立持分会社の社員となる。

3 前条第一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又は新設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は、新設合併設立持分会社の成立の日に、同項第七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同項第六号の社債の社債権者となる。

4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は、新設合併設立持分会社の成立の日に、消滅する。

第3章 会社分割

第1節 吸収分割

第1款 通則

第757条 吸収分割契約の締結

会社(株式会社又は合同会社に限る。)は、吸収分割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会社がその事業に関して有する権利義務の全部又は一部を当該会社から承継する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吸収分割承継会社」という。)との間で、吸収分割契約を締結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신설합병설립지분회사가 합동회사인 때에는 제1항 제4호 나목의 사항으로 그 사원의 전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는 뜻을 정하여야 한다.

제756조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의 효력발생 등

- ① 신설합병설립지분회사는 그 성립일에 신설합병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② 전조 제1항의 경우에는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신설합병소멸지분회사의 사원은 신설합병설립지분회사의 성립일에 동항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신설합병설립지분회사의 사원으로 된다.
- ③ 전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신설합병소멸지분회사의 사원은 신설합병설립지분회사의 성립일에 동항 제7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동항 제6호의 사채의 사채권자로 된다.
- ④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은 신설합병설립지분회사의 성립일에 소멸한다.

제3장 회사분할

제1절 흡수분할

제1관 통칙

제757조 흡수분할계약의 체결

회사(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에 한한다)는 흡수분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그 사업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회사로부터 승계하는 회사(이하 이 편에서 “흡수분할승계회사”라고 한다)와 흡수분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会社分割

第2款 株式会社に権利義務を承継させる吸収分割

第758条 株式会社に権利義務を承継させる吸収分割契約

1 会社が吸収分割をする場合において、吸収分割承継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ときは、吸収分割契約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吸収分割をする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吸収分割会社」という。)及び株式会社である吸収分割承継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という。)の商号及び住所

二 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が吸収分割により吸収分割会社から承継する資産、債務、雇用契約その他の権利義務(株式会社である吸収分割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吸収分割株式会社」という。)及び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株式並びに吸収分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に係る義務を除く。)に関する事項

三 吸収分割により吸収分割株式会社又は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株式を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に承継させるときは、当該株式に関する事項

四 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が吸収分割に際して吸収分割会社に対してその事業に関する権利義務の全部又は一部に代わる金銭等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金銭等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金銭等が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株式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又はその数の算定方法並びに当該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資本金及び準備金の額に関する事項

ロ 当該金銭等が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ものを除く。)であるときは、当該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ハ 当該金銭等が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又はその算定方法

ニ 当該金銭等が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付社債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ロに規定する事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ハに規定する事項

ホ 当該金銭等が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株式等以外の財産であるときは、

제2관 주식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흡수분할

제758조 주식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흡수분할계약

① 회사가 흡수분할을 하는 경우 흡수분할승계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흡수분할계약에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흡수분할을 하는 회사(이하 이 편에서 “흡수분할회사”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인 흡수분할승계회사(이하 이 편에서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라고 한다)의 상호 및 주소
2.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가 흡수분할에 의해 흡수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자산, 채무, 고용계약, 그 밖의 권리의무(주식회사인 흡수분할회사(이하 이 편에서 “흡수분할주식회사”라고 한다) 및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주식 및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3. 흡수분할에 의해 흡수분할주식회사 또는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주식을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에 승계시키는 때에는 주식에 관한 사항
4.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가 흡수분할시 흡수분할회사에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갈음하는 금전 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금전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금전 등이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주식인 때에는 그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마다의 수), 그 수의 산정방법,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의 액에 관한 사항
 - 나. 금전 등이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사채(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인 때에는 사채의 종류 및 종류마다 각 사채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 다. 금전 등이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은 제외한다)인 때에는 신주예약권의 내용, 수 또는 그 산정방법
 - 라. 금전 등이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인 때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나목의 사항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한 다목의 사항
 - 마. 금전 등이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주식 등 이외의 재산인 때에는 그 재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会社分割

当該財産の内容及び数若しくは額又はこれらの算定方法

五 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が吸収分割に際して吸収分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当該新株予約権に代わる当該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交付を受ける吸収分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の有する新株予約権(以下この編において「吸収分割契約新株予約権」という。)の内容

ロ 吸収分割契約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交付する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又はその算定方法

ハ 吸収分割契約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であるときは、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が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に係る債務を承継する旨並びにその承継に係る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六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吸収分割契約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する同号の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七 吸収分割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以下この節において「効力発生日」という。)

八 吸収分割株式会社が効力発生日に次に掲げる行為をするときは、その旨

イ 第一百七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株式の取得(同項第一号に規定する取得対価が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株式(吸収分割株式会社が吸収分割をする前から有するものを除き、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株式に準ず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含む。ロにおいて同じ。)のみであるものに限る。)

ロ 剰余金の配当(配当財産が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株式のみであるものに限る。)

第759条 株式会社に権利義務を承継させる吸収分割の効力の発生等

1 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に、吸収分割契約の定めに従い、吸収分割会社の権利義務を承継する。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七百八十九条第一項第二号(第七百九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り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吸収分割会社の債権者であって、第七百八十九条第二項(第三

산의 내용, 수, 가액 또는 그 산정방법

5.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가 흡수분할시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신주예약권에 갈음하는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주예약권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교부받는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자가 소유하는 신주예약권의(이하 이 편에서 “흡수분할계약신주예약권”이라고 한다)의 내용

나. 흡수분할계약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교부하는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내용, 수 또는 그 산정방법

다. 흡수분할계약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인 때에는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가 그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에 관련된 채무를 승계하는 뜻, 그 승계에 관련된 사채의 종류, 종류마다 각 사채 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6. 전호의 경우에는 흡수분할계약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 대한 동호의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배당에 관한 사항

7. 흡수분할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하 이절에서 “효력발생일”이라고 한다)

8. 흡수분할주식회사가 효력발생일에 다음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뜻

가. 제171조 제1항에 의한 주식의 취득(동항 제1호에 규정하는 취득대가가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주식(흡수분할주식회사가 흡수분할을 하기 전부터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주식에 준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포함한다. 나목에서 같다) 뿐인 경우에 한한다)

나. 잉여금의 배당(배당재산이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주식뿐인 경우에 한한다)

제759조 **주식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흡수분할의 효력발생 등**

①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에 흡수분할계약의 정함에 따라 흡수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789조 제1항 제2호(제79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흡수분할회사의 채권자로서 제789조 제2항(제3호를 제외하고 제793조 제2항에서 준용하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会社分割

号を除き、第七百九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の各別の催告を受けなかったもの(第七百八十九条第三項(第七百九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不法行為によって生じた債務の債権者であるものに限る。次項において同じ。)は、吸収分割契約において吸収分割後に吸収分割会社に対して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されているときであっても、吸収分割会社に対して、吸収分割会社が効力発生日に有していた財産の価額を限度として、当該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七百八十九条第一項第二号の規定により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吸収分割会社の債権者であって、同条第二項の各別の催告を受けなかったものは、吸収分割契約において吸収分割後に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に対して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されているときであっても、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に対して、承継した財産の価額を限度として、当該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4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吸収分割会社が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に承継されない債務の債権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残存債権者」という。)を害することを知って吸収分割をした場合には、残存債権者は、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に対して、承継した財産の価額を限度として、当該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が吸収分割の効力が生じた時において残存債権者を害すべき事実を知らなかっ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5 前項の規定は、前条第八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6 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が第四項の規定により同項の債務を履行する責任を負う場合には、当該責任は、吸収分割会社が残存債権者を害することを知って吸収分割をしたことを知った時から二年以内に請求又は請求の予告をしない残存債権者に対しては、その期間を経過した時に消滅する。効力発生日から二十年を経過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7 吸収分割会社について破産手続開始の決定、再生手続開始の決定又は更生手続開始の決定があったときは、残存債権者は、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に対して第四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8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吸収分割会社は、効力発生日に、吸収分割契約

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최고를 받지 않았던 자(제789조 제3항(제79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채권자에 한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는 흡수분할 계약에서 흡수분할 후에 흡수분할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 때에도 흡수분할회사에 대해 흡수분할회사가 효력발생일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8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흡수분할회사의 채권자로서 동조 제2항의 최고를 받지 않았던 자는 흡수분할계약에서 흡수분할 후에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 때에도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에 대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흡수분할회사가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에 승계되지 않는 채무의 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잔존채권자”라고 한다)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흡수분할을 한 경우에는 잔존채권자는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에 대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가 흡수분할의 효력이 발생한 때 잔존채권자를 해할 사실을 알지 못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항은 전조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⑥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가 제4항에 의하여 동항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당해 책임은 흡수분할회사가 잔존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흡수분할을 한 것을 안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또는 청구의 예고를 하지 않은 잔존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경과한 때로 소멸한다. 효력발생일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⑦ 흡수분할회사에 관해 파산절차개시결정, 재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갱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때에는 잔존채권자는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에 대하여 제4항에 의한 청구를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⑧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흡수분할회사는 효력발생일에 흡수분할계약의 정함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会社分割

の定めに従い、当該各号に定める者となる。

一 前条第四号イ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イの株式の株主

二 前条第四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ロの社債の社債権者

三 前条第四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ハ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四 前条第四号ニ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ニの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社債権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9 前条第五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効力発生日に、吸収分割契約新株予約権は、消滅し、当該吸収分割契約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同条第六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同条第五号ロの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となる。

10 前各項の規定は、第七百八十九条(第一項第三号及び第二項第三号を除き、第七百九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若しくは第七百九十九条の規定による手続が終了していない場合又は吸収分割を中止した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3款 持分会社に権利義務を承継させる吸収分割

第760条 持分会社に権利義務を承継させる吸収分割契約

1 会社が吸収分割をする場合において、吸収分割承継会社が持分会社であるときは、吸収分割契約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吸収分割会社及び持分会社である吸収分割承継会社(以下この節において「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という。)の商号及び住所

二 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が吸収分割により吸収分割会社から承継する資産、債務、雇用契約その他の権利義務(吸収分割株式会社の株式及び新株予約権に係る義務を除く。)に関する事項

三 吸収分割により吸収分割株式会社の株式を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に承継させるときは、当該株式に関する事項

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1. 전조 제4호 가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가목의 주식의 주주
 2. 전조 제4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나목의 사채의 사채권자
 3. 전조 제4호 다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다목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4. 전조 제4호 라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라목의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권자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 ⑨ 전조 제5호의 경우에는 효력발생일에 흡수분할계약신주예약권은 소멸하고 흡수분할계약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동조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동조 제5호 나목의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가 된다.
- ⑩ 전 각 항의 규정은 제789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를 제외하고 제79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혹은 제799조의 절차가 종료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흡수분할을 중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관 지분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흡수분할

제760조 지분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흡수분할계약

- ① 회사가 흡수분할을 하는 경우 흡수분할승계회사가 지분회사인 때에는 흡수분할계약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흡수분할회사 및 지분회사인 흡수분할승계회사(이하 이 절에서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라고 한다)의 상호 및 주소
 2.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가 흡수분할에 의하여 흡수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자산, 채무, 고용계약, 그 밖의 권리의무(흡수분할주식회사의 주식 및 신주예약권에 관련된 의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3. 흡수분할에 의하여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주식을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에 승계시키는 때에는 주식에 관한 사항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会社分割

四 吸収分割会社が吸収分割に際して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の社員となるときは、次の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の区分に応じ、当該イからハまでに定める事項

- イ 合名会社：当該社員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出資の価額
- ロ 合資会社：当該社員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当該社員が無限責任社員又は有限責任社員のいずれであるかの別並びに当該社員の出資の価額
- ハ 合同会社：当該社員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出資の価額

五 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が吸収分割に際して吸収分割会社に対してその事業に関する権利義務の全部又は一部に代わる金銭等(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の持分を除く。)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金銭等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金銭等が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の社債であるときは、当該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 ロ 当該金銭等が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の社債以外の財産であるときは、当該財産の内容及び数若しくは額又はこれらの算定方法

六 効力発生日

七 吸収分割株式会社が効力発生日に次に掲げる行為をするときは、その旨

- イ 第一百七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株式の取得(同項第一号に規定する取得対価が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の持分(吸収分割株式会社が吸収分割をする前から有するものを除き、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の持分に準ず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含む。ロにおいて同じ。)のみであるものに限る。)
- ロ 剰余金の配当(配当財産が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の持分のみであるものに限る。)

第761条 持分会社に権利義務を承継させる吸収分割の効力の発生等

1 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は、効力発生日に、吸収分割契約の定めに従い、吸収分割会社の権利義務を承継する。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七百八十九条第一項第二号(第七百九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り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吸収分割会社の債権者であって、第七百八十九条第二項(第三号を除き、第七百九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の各別の催告を受けなかったもの(第七百八十九条第三項(第七百九十

4. 흡수분할회사가 흡수분할시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때에는 다음 가목 내지 다목의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의 구분에 따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사항
 - 가. 합병회사 : 사원의 성명, 명칭, 주소 및 출자의 가액
 - 나. 합자회사 : 사원의 성명, 명칭, 주소, 사원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인지 여부 및 사원의 출자의 가액
 - 다. 합동회사 : 사원의 성명, 명칭, 주소 및 출자의 가액
5.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가 흡수분할시 흡수분할회사에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갈음하는 금전 등(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의 지분은 제외한다)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금전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금전 등이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의 사채인 때에는 그 사채의 종류 및 종류별 각 사채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 나. 금전 등이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의 사채 이외의 재산인 때에는 그 재산의 내용, 수, 가액 또는 그 산정방법
6. 효력발생일
7. 흡수분할주식회사가 효력발생일에 다음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뜻
 - 가. 제171조 제1항에 의한 주식의 취득(동항 제1호에 규정하는 취득대가가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의 지분(흡수분할주식회사가 흡수분할을 하기 전부터 보유하는 것을 제외하고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의 지분에 준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목에서 같다)뿐인 경우에 한한다)
 - 나. 잉여금의 배당(배당재산이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의 지분뿐인 경우에 한한다)

제761조 지분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흡수분할의 효력발생 등

- ①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는 효력발생일에 흡수분할계약의 정함에 따라 흡수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789조 제1항 제2호(제79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흡수분할회사의 채권자로서 제789조 제2항(제3호를 제외하고, 제79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각별의 최고를 받지 않았던 자(제789조 제3항(제793조 제2항에 대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会社分割

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不法行為によって生じた債務の債権者であるものに限る。次項において同じ。)は、吸収分割契約において吸収分割後に吸収分割会社に対して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されているときであっても、吸収分割会社に対して、吸収分割会社が効力発生日に有していた財産の価額を限度として、当該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七百八十九条第一項第二号の規定により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吸収分割会社の債権者であって、同条第二項の各別の催告を受けなかったものは、吸収分割契約において吸収分割後に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に対して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されているときであっても、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に対して、承継した財産の価額を限度として、当該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4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吸収分割会社が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に承継されない債務の債権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残存債権者」という。)を害することを知って吸収分割をした場合には、残存債権者は、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に対して、承継した財産の価額を限度として、当該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が吸収分割の効力が生じた時において残存債権者を害すべき事実を知らなかっ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5 前項の規定は、前条第七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6 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が第四項の規定により同項の債務を履行する責任を負う場合には、当該責任は、吸収分割会社が残存債権者を害することを知って吸収分割をしたことを知った時から二年以内に請求又は請求の予告をしない残存債権者に対しては、その期間を経過した時に消滅する。効力発生日から二十年を経過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7 吸収分割会社について破産手続開始の決定、再生手続開始の決定又は更生手続開始の決定があったときは、残存債権者は、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に対して第四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8 前条第四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吸収分割会社は、効力発生日に、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の社員とな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は、効力発生日に、同号の社員に係る定款の

정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채권자에 한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는 흡수분할계약에서 흡수분할 후에 흡수분할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때에도 흡수분할회사에 대해 흡수분할 회사가 효력발생일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8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흡수분할회사의 채권자로서 동조 제2항의 각별의 최고를 받지 않았던 자는 흡수분할계약에서 흡수분할 후에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때에도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에 대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흡수분할회사가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에 승계되지 않는 채무의 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잔존채권자”라 한다)를 해하는 것을 알고 흡수분할을 한 경우에는 잔존채권자는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에 대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가 흡수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 때 잔존채권자를 해할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항은 전조 제7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⑥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가 제4항에 의하여 동항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당해 책임은 흡수분할회사가 잔존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흡수분할을 한 것을 알았던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또는 청구의 예고를 하지 않은 잔존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효력발생일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⑦ 흡수분할회사에 관해 파산절차개시결정, 재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경쟁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때에는 잔존채권자는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에 대해 제4항의 청구를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⑧ 전조 제4호의 경우에는 흡수분할회사는 효력발생일에 동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의 사원이 된다. 이 경우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는 효력발생일에 동호의 사원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会社分割

変更をしたものとみなす。

9 前条第五号イ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吸収分割会社は、効力発生日に、吸収分割契約の定めに従い、同号イの社債の社債権者となる。

10 前各項の規定は、第七百八十九条(第一項第三号及び第二項第三号を除き、第七百九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若しくは第八百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七百九十九条(第二項第三号を除く。)の規定による手続が終了していない場合又は吸収分割を中止した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2節 新設分割

第1款 通則

第762条 新設分割計画の作成

1 一又は二以上の株式会社又は合同会社は、新設分割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新設分割計画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二以上の株式会社又は合同会社が共同して新設分割をする場合には、当該二以上の株式会社又は合同会社は、共同して新設分割計画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款 株式会社を設立する新設分割

第763条 株式会社を設立する新設分割計画

1 一又は二以上の株式会社又は合同会社が新設分割をする場合において、新設分割により設立する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新設分割設立会社」という。)が株式会社であるときは、新設分割計画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株式会社である新設分割設立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という。)の目的、商号、本店の所在地及び発行可能株式総数
-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定款で定める事項
- 三 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設立時取締役の氏名
- 四 次の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からハまでに定める

- ⑨ 전조 제5호 가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흡수분할회사는 효력발생일에 흡수분할계약의 정함에 따라 동호 가목의 사채권자가 된다.
- ⑩ 전 각 항의 규정은 제789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는 제외하고, 제79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혹은 제80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799조(제2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흡수분할을 중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신설분할

제1관 통칙

제762조 신설분할계획의 작성

- ① 1 또는 2이상의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는 신설분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설분할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2이상의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가 공동으로 신설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는 공동으로 신설분할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

제763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계획

- ① 1 또는 2이상의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가 신설분할을 하는 경우 신설분할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이하 이 편에서 “신설분할설립회사”라고 한다)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신설분할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인 신설분할설립회사(이하 이 편에서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라고 한다)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및 발행가능주식총수
2. 전호의 사항 외에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정관에 정한 사항
3.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설립시 이사의 성명
4. 다음의 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会社分割

事項

- イ 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が会計参与設置会社である場合 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設立時会計参与の氏名又は名称
 - ロ 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が監査役設置会社(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を含む。)である場合 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設立時監査役の氏名
 - ハ 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が会計監査人設置会社である場合 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設立時会計監査人の氏名又は名称
- 五 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が新設分割により新設分割をする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新設分割会社」という。) から承継する資産、債務、雇用契約その他の権利義務(株式会社である新設分割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新設分割株式会社」という。) の株式及び新株予約権に係る義務を除く。) に関する事項
- 六 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が新設分割に際して新設分割会社に対して交付するその事業に関する権利義務の全部又は一部に代わる当該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又はその数の算定方法並びに当該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資本金及び準備金の額に関する事項
- 七 二以上の株式会社又は合同会社が共同して新設分割をするときは、新設分割会社に対する前号の株式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 八 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が新設分割に際して新設分割会社に対してその事業に関する権利義務の全部又は一部に代わる当該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社債等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社債等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社債等が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ものを除く。) であるときは、当該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 ロ 当該社債等が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 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又はその算定方法
 - ハ 当該社債等が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付社債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イに規定する事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ロに規定する事項

하는 사항

- 가.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가 회계참여설치회사인 경우 :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설립시 회계참여의 성명 또는 명칭
 - 나.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가 감사설치회사(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에 한정하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인 경우 :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설립시 감사의 성명
 - 다.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가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인 경우 :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설립시 회계감사인의 성명 또는 명칭
5.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가 신설분할에 의하여 신설분할을 하는 회사(이하 이 편에서 “신설분할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승계하는 자산, 채무, 고용계약 그 밖의 권리의무(주식회사인 신설분할회사(이하 이 편에서 “신설분할주식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및 신주예약권에 관련된 의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가 신설분할시 신설분할회사에 교부하는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갈음하는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마다의 수) 또는 그 수의 산정방법 및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7. 2이상의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가 공동으로 신설분할을 하는 때에는 신설분할회사에 대한 전호의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8.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가 신설분할시 신설분할회사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갈음하는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사채 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사채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사채 등이 신설분할 설립 주식회사의 사채(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인 때에는 사채의 종류 및 종류마다 각 사채 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 나. 사채 등이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은 제외한다)인 때에는 신주예약권의 내용, 수 또는 그 산정방법
 - 다. 사채 등이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인 때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가목의 사항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한 나목의 사항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会社分割

九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二以上の株式会社又は合同会社が共同して新設分割をするときは、新設分割会社に対する同号の社債等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十 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が新設分割に際して新設分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当該新株予約権に代わる当該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交付を受ける新設分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の有する新株予約権(以下この編において「新設分割計画新株予約権」という。)の内容

ロ 新設分割計画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交付する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又はその算定方法

ハ 新設分割計画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であるときは、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が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に係る債務を承継する旨並びにその承継に係る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十一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新設分割計画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する同号の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十二 新設分割株式会社が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成立の日に次に掲げる行為をするときは、その旨

イ 第一百七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株式の取得(同項第一号に規定する取得対価が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株式(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含む。ロにおいて同じ。)のみであるものに限る。)

ロ 剰余金の配当(配当財産が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株式のみであるものに限る。)

2 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は、前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は、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時取締役とそれ以外の設立時取締役とを区別して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9. 전호의 경우 2이상의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가 공동으로 신설분할을 하는 때에는 신설분할회사에 대한 동호의 사채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10.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가 신설분할시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신주예약권에 갈음하는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주예약권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교부받는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자가 가지는 신주예약권(이하 이 편에서 “신설분할계획신주예약권”이라고 한다)의 내용
 - 나. 신설분할계획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교부하는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내용, 수 또는 그 산정방법
 - 다. 신설분할계획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인 때에는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가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에 관련된 채무를 승계하는 뜻, 승계에 관련된 사채의 종류, 종류별 각 사채 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11. 전호의 경우에는 신설분할계획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 대한 동호의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배당에 관한 사항
12. 신설분할주식회사가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성립일에 다음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뜻
- 가. 제171조 제1항에 의한 주식의 취득(동항 제1호에 규정하는 취득대가가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주식(이에 준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목에서 같다)뿐인 경우에 한한다)
 - 나. 잉여금의 배당(배당재산이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주식뿐인 경우에 한한다)
- ②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전항 제3호의 사항은 설립시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와 그 이외의 설립시이사를 구별하여 정하여야 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会社分割

第764条 株式会社を設立する新設分割の効力の発生等

1 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は、その成立の日、新設分割計画の定めに従い、新設分割会社の権利義務を承継する。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八百十条第一項第二号(第八百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り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新設分割会社の債権者であって、第八百十条第二項(第三号を除き、第八百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の各別の催告を受けなかったもの(第八百十条第三項(第八百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不法行為によって生じた債務の債権者であるものに限る。次項において同じ。)は、新設分割計画において新設分割後に新設分割会社に対して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されているときであっても、新設分割会社に対して、新設分割会社が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成立の日、有していた財産の価額を限度として、当該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八百十条第一項第二号の規定により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新設分割会社の債権者であって、同条第二項の各別の催告を受けなかったものは、新設分割計画において新設分割後に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に対して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されているときであっても、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に対して、承継した財産の価額を限度として、当該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4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新設分割会社が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に承継されない債務の債権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残存債権者」という。)を害することを知って新設分割をした場合には、残存債権者は、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に対して、承継した財産の価額を限度として、当該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5 前項の規定は、前条第一項第十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6 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が第四項の規定により同項の債務を履行する責任を負う場合には、当該責任は、新設分割会社が残存債権者を害することを知って新設分割をしたことを知った時から二年以内に請求又は請求の予告をしない残存債権者に対しては、その期間を経過した時に消滅する。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成立の日から二十年を経過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제764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의 효력발생 등

①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는 그 성립일에 신설분할계획의 정함에 따라 신설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810조 제1항 제2호(제81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신설분할회사의 채권자로서 제810조 제2항(제3호는 제외하고, 제81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각별의 최고를 받지 못했던 자(제810조 제3항(제81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의 채권자에 한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는 신설분할계획에서 신설분할 후에 신설분할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때에도 신설분할회사에 대해서 신설분할회사가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성립일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신설분할회사의 채권자로서 동조 제2항의 각별의 최고를 받지 못했던 자는 신설분할계획에서 신설분할 후에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때에도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에 대해서 승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분할회사가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에 승계되지 않는 채무의 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잔존채권자”라 한다)를 해하는 것을 알고 신설분할을 한 경우에는 잔존채권자는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에 대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은 전조 제1항 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⑥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가 제4항에 의하여 동항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당해 책임은 신설분할회사가 잔존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신설분할을 한 것을 안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또는 청구의 예고를 하지 않는 잔존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경과한 때 소멸한다.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성립일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会社分割

7 新設分割会社について破産手続開始の決定、再生手続開始の決定又は更生手続開始の決定があったときは、残存債権者は、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に対して第四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8 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新設分割会社は、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成立の日に、新設分割計画の定めに従い、同項第六号の株式の株主となる。

9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新設分割会社は、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成立の日に、新設分割計画の定めに従い、当該各号に定める者となる。

一 前条第一項第八号イ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イの社債の社債権者

二 前条第一項第八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ロ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三 前条第一項第八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ハの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社債権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10 二以上の株式会社又は合同会社が共同して新設分割をする場合における前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八項中「新設分割計画の定め」とあるのは「同項第七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と、前項中「新設分割計画の定め」とあるのは「前条第一項第九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とする。

11 前条第一項第十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成立の日に、新設分割計画新株予約権は、消滅し、当該新設分割計画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同項第十一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同項第十号ロの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となる。

第3款 持分会社を設立する新設分割

第765条 持分会社を設立する新設分割計画

1 一又は二以上の株式会社又は合同会社が新設分割をする場合において、新設分割設立会社が持分会社であるときは、新設分割計画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持分会社である新設分割設立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という。)が合名会社、合資会社又は合同会社のいずれであるかの別

- ⑦ 신설분할회사에 관하여 파산절차개시결정, 재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갱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때에는 잔존채권자는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에 대해서 제4항의 청구를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⑧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신설분할회사는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성립일에 신설분할계획의 정함에 따라 동항 제6호 주식의 주주가 된다.
- 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설분할회사는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성립일에 신설분할계획의 정함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1. 전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가목의 사채의 사채권자
 2. 전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나목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3. 전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다목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사채권자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 ⑩ 2이상의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가 공동으로 신설분할을 하는 경우 전 2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8항 중 “신설분할계획의 정함”은 “동항 제7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으로, 전항 중 “신설분할계획의 정함”은 “전조 제1항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으로 한다.
- ⑪ 전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성립일에 신설분할계획신주예약권은 소멸하고, 신설분할계획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동항 제11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동항 제10호 나목의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가 된다.

제3관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

제765조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계획

- ① 1 또는 2이상의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가 신설분할을 하는 경우 신설분할설립회사가 지분회사인 때에는 신설분할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지분회사인 신설분할설립회사(이하 이 편에서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라고 한다)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인지 여부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会社分割

- 二 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の目的、商号及び本店の所在地
- 三 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の社員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社員の名称及び住所
 - ロ 当該社員が無限責任社員又は有限責任社員のいずれであるかの別
 - ハ 当該社員の出資の価額
- 四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の定款で定める事項
- 五 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が新設分割により新設分割会社から承継する資産、債務、雇用契約その他の権利義務(新設分割株式会社の株式及び新株予約権に係る義務を除く。)に関する事項
- 六 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が新設分割に際して新設分割会社に対してその事業に関する権利義務の全部又は一部に代わる当該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の社債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 七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二以上の株式会社又は合同会社が共同して新設分割をするときは、新設分割会社に対する同号の社債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 八 新設分割株式会社が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の成立の日に次に掲げる行為をするときは、その旨
 - イ 第百七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株式の取得(同項第一号に規定する取得対価が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の持分(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含む。ロにおいて同じ。)のみであるものに限る。)
 - ロ 剰余金の配当(配当財産が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の持分のみであるものに限る。)
- 2 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が合名会社であるときは、前項第三号ロに掲げる事項として、その社員の全部を無限責任社員とする旨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3 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が合資会社であるときは、第一項第三号ロに掲げる事項として、その社員の一部を無限責任社員とし、その他の社員を有限責任社員とする旨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4 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が合同会社であるときは、第一項第三号ロに掲げる事項として、その社員の全部を有限責任社員とする旨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의 목적, 상호 및 본점 소재지
 3.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의 사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사원의 명칭 및 주소
 - 나. 사원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인지 여부
 - 다. 사원의 출자의 가액
 4. 전2호의 사항 외에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5.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가 신설분할에 의하여 신설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자산, 채무, 고용계약, 그 밖의 권리의무(신설분할주식회사의 주식 및 신주에 약권에 관련된 의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가 신설분할시 신설분할회사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갈음하는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의 사채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채의 종류 및 종류별 사채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7. 전호의 경우 2이상의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가 공동으로 신설분할을 하는 때에는 신설분할회사에 대한 동호의 사채의 배당에 관한 사항
 8. 신설분할주식회사가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의 성립일에 다음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뜻
 - 가. 제171조 제1항에 의한 주식의 취득(동항 제1호에 규정하는 취득대가가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의 지분(이에 준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목에서 같다)뿐인 경우에 한한다.)
 - 나. 잉여금의 배당(배당재산이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의 지분뿐인 경우에 한한다)
- ②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가 합명회사인 경우에는 전항 제3호 나목의 사항으로 그 사원의 전부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하는 뜻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가 합자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항으로 그 사원의 일부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하고 그 밖의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는 뜻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가 합동회사인 때에는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항으로 그 사원의 전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는 뜻을 정하여야 한다.

第766条 持分会社を設立する新設分割の効力の発生等

- 1 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は、その成立の日に、新設分割計画の定めに従い、新設分割会社の権利義務を承継する。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八百十条第一項第二号(第八百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り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新設分割会社の債権者であって、第八百十条第二項(第三号を除き、第八百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の各別の催告を受けなかったもの(第八百十条第三項(第八百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不法行為によって生じた債務の債権者であるものに限る。次項において同じ。)は、新設分割計画において新設分割後に新設分割会社に対して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されているときであっても、新設分割会社に対して、新設分割会社が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の成立の日に有していた財産の価額を限度として、当該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3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八百十条第一項第二号の規定により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新設分割会社の債権者であって、同条第二項の各別の催告を受けなかったものは、新設分割計画において新設分割後に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に対して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されているときであっても、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に対して、承継した財産の価額を限度として、当該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4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新設分割会社が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に承継されない債務の債権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残存債権者」という。)を害することを知って新設分割をした場合には、残存債権者は、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に対して、承継した財産の価額を限度として、当該債務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5 前項の規定は、前条第一項第八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 6 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が第四項の規定により同項の債務を履行する責任を負う場合には、当該責任は、新設分割会社が残存債権者を害することを知って新設分割をしたことを知った時から二年以内に請求又は請求の予告をしない残存債権者に対しては、その期間を経過した時に消滅する。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の成立の日から二十年を経過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제766조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의 효력발생 등

①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는 그 성립일에 신설분할계획의 정함에 따라 신설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810조 제1항 제2호(제81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신설분할회사의 채권자로서 제810조 제2항(제3호는 제외하고, 제81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각별의 최고를 받지 못했던 자(제810조 제3항(제81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의 채권자인 자에 한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는 신설분할계획에서 신설분할 후에 신설분할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 때에도 신설분할회사에 대해 신설분할회사가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의 성립일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신설분할회사의 채권자로서 동조 제2항의 각별의 최고를 받지 못했던 자는 신설 분할계획에서 신설분할 후에 신설분할 설립지분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 때에도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에 대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분할회사가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에 승계되지 않는 채무의 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잔존채권자”라 한다)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신설분할을 한 경우에는 잔존채권자는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에 대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은 전조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⑥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가 제4항에 의해 동항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당해 책임은 신설분할회사가 잔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신설분할을 한 것을 안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또는 청구의 예고를 하지 않는 잔존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의 성립일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株式交換及び株式移転

7 新設分割会社について破産手続開始の決定、再生手続開始の決定又は更生手続開始の決定があったときは、残存債権者は、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に対して第四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8 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新設分割会社は、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の成立の日に、同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当該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の社員となる。

9 前条第一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新設分割会社は、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の成立の日に、新設分割計画の定めに従い、同号の社債の社債権者となる。

10 二以上の株式会社又は合同会社が共同して新設分割をする場合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新設分割計画の定めに従い、同号」とあるのは、「同項第七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同項第六号」とする。

第4章 株式交換及び株式移転

第1節 株式交換

第1款 通則

第767条 株式交換契約の締結

株式会社は、株式交換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株式会社の発行済株式の全部を取得する会社(株式会社又は合同会社に限る。以下この編において「株式交換完全親会社」という。)との間で、株式交換契約を締結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款 株式会社に発行済株式を取得させる株式交換

第768条 株式会社に発行済株式を取得させる株式交換契約

1 株式会社が株式交換をする場合において、株式交換完全親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ときは、株式交換契約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⑦ 신설분할회사에 관해 파산절차개시결정, 재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갱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때에는 잔존채권자는 신설 분할설립지분회사에 대해 제4항에 의한 청구를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⑧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신설분할회사는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의 성립일에 동항 제3호의 사하에 관한 정함에 따라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의 사원이 된다.
- ⑨ 전조 제1항 제6호의 사하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분할회사는 신설 분할설립지분회사의 성립일에 신설분할 계획의 정함에 따라 동호의 사채의 사채권자가 된다.
- ⑩ 2 이상의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가 공동으로 신설분할을 하는 경우 전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신설분할계획의 정함에 따라 동호”는 “동항 제7호의 사하에 관한 정함에 따라 동항 제6호”로 한다.

제4장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제1절 주식교환

제1관 통칙

제767조 주식교환계약의 체결

주식회사는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회사(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편에서 “주식교환완전모회사”라고 한다)와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관 주식회사에 발행주식을 취득시키는 주식교환

제768조 주식회사에 발행주식총수를 취득시키는 주식교환계약

① 주식회사가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주식교환완전모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주식교환계약에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株式交換及び株式移転

- 一 株式交換をする株式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株式交換完全子会社」という。)及び株式会社である株式交換完全親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という。)の商号及び住所
- 二 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が株式交換に際して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に対してその株式に代わる金銭等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金銭等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金銭等が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株式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又はその数の算定方法並びに当該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資本金及び準備金の額に関する事項
 - ロ 当該金銭等が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ものを除く。)であるときは、当該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 ハ 当該金銭等が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又はその算定方法
 - ニ 当該金銭等が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付社債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ロに規定する事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ハに規定する事項
 - ホ 当該金銭等が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株式等以外の財産であるときは、当該財産の内容及び数若しくは額又はこれらの算定方法
- 三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を除く。)に対する同号の金銭等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 四 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が株式交換に際して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当該新株予約権に代わる当該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交付を受ける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の有する新株予約権(以下この編において「株式交換契約新株予約権」という。)の内容
 - ロ 株式交換契約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交付する株式交換完全

1. 주식교환을 하는 주식회사(이하 이 편에서 “주식교환완전자회사”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인 주식교환완전모회사(이하 이 편에서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라고 한다)의 상호 및 주소
2.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가 주식교환시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식에 갈음하는 금전 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금전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금전 등이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식인 때에는 주식의 수(종류주식 발행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그 수의 산정방법, 주식 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의 액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등이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사채(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인 때에는 사채의 종류, 종류별 각 사채 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다. 금전 등이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은 제외한다)인 때에는 신주예약권의 내용, 수 또는 그 산정방법

라. 금전 등이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인 때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나목의 사항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한 다목의 사항

마. 금전 등이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식 등 이외의 재산인 때에는 그 재산의 내용, 수, 가액 또는 그 산정방법

3. 전호의 경우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동호의 금전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4.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가 주식교환시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신주예약권에 갈음하는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주예약권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교부받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신주예약권자가 소유하는 신주예약권(이하 이 편에서 “주식교환계약신주예약권”이라고 한다)의 내용

나. 주식교환계약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교부하는 주식교환완전모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株式交換及び株式移転

親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又はその算定方法

ハ 株式交換契約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であるときは、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が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に係る債務を承継する旨並びにその承継に係る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五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式交換契約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する同号の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六 株式交換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以下この節において「効力発生日」という。)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株式交換完全子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とき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発行する種類の株式の内容に応じ、同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とし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一 ある種類の株式の株主に対して金銭等の割当てをし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株式の種類

二 前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金銭等の割当てについて株式の種類ごとに異なる取扱いを行う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異なる取扱いの内容

3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同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及び前項第一号の種類の株式の株主を除く。)の有する株式の数(前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各種類の株式の数)に応じて金銭等を交付すること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769条 株式会社に発行済株式を取得させる株式交換の効力の発生等

1 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に、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発行済株式(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有する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式を除く。)の全部を取得する。

2 前項の場合には、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が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式(譲渡制限株式に限り、当該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が効力発生日前から有するものを除く。)を取得したことについて、当該株式交換完全子会社が第百三十七条第一項の承認をしたものとみなす。

3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は、効力発生日に、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내용, 수 또는 그 산정방법

다. 주식교환계약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인 때에는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가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에 관련된 채무를 승계하는 뜻 및 그 승계에 관련된 사채의 종류, 종류별 각 사채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5. 전호의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 대한 동호의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배당에 관한 사항
6. 주식교환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하 이 절에서 “효력발생일”이라고 한다)
- ② 전항의 경우 주식교환완전자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때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 및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동항 제3호의 사항으로 아래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금전 등의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및 주식의 종류
2. 전호의 사항 외에 금전 등의 배당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마다 다른 취급을 하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및 다른 취급의 내용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동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은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 및 전항 제1호의 종류주식의 주주는 제외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전항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각 종류주식의 수)에 따라 금전 등을 교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769조 주식회사에 발행주식총수를 취득시키는 주식교환의 효력발생 등

- ①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에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의 전부를 취득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가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식(양도제한주식에 한하고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가 효력발생일 전부터 가지는 것은 제외한다)을 취득한 것에 관하여 주식교환완전자회사가 제137조 제1항의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③ 다음 각호의 경우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는 효력발생일에 전조 제1항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株式交換及び株式移転

前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当該各号に定める者となる。

- 一 前条第一項第二号イ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イの株式の株主
 - 二 前条第一項第二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ロの社債の社債権者
 - 三 前条第一項第二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ハ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 四 前条第一項第二号ニ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ニの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社債権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 4 前条第一項第四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効力発生日に、株式交換契約新株予約権は、消滅し、当該株式交換契約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同項第五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同項第四号ロの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となる。
- 5 前条第一項第四号ハ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に、同号ハの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に係る債務を承継する。
- 6 前各項の規定は、第七百八十九条若しくは第七百九十九条の規定による手続が終了していない場合又は株式交換を中止した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3款 合同会社に発行済株式を取得させる株式交換

第770条 合同会社に発行済株式を取得させる株式交換契約

- 1 株式会社が株式交換をする場合において、株式交換完全親会社が合同会社であるときは、株式交換契約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株式交換完全子会社及び合同会社である株式交換完全親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という。)の商号及び住所
 - 二 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が株式交換に際して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の社員となるときは、当該社員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出資の価額
 - 三 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が株式交換に際して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に対してその株式に代わる金銭等(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の持分を除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된다.

1. 전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가목의 주식의 주주
2. 전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나목의 사채의 사채권자
3. 전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다목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4. 전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라목의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의 사채권자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 ④ 전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효력발생일에 주식교환계약신주예약권은 소멸하고 주식교환계약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동항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동항 제4호 나목의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로 된다.
- ⑤ 전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경우에는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에 동호 다목의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에 관련된 채무를 승계한다.
- ⑥ 전 각항은 제789조 또는 제799조에 의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교환을 중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관 합동회사에 발행주식을 취득시키는 주식교환

제770조 합동회사에 발행주식총수를 취득시키는 주식교환계약

- ① 주식회사가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주식교환완전모회사가 합동회사인 때에는 주식교환계약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완전자회사 및 합동회사인 주식교환완전모회사(이하 이 편에서 “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라고 한다)의 상호 및 주소
 2.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교환시 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때에는 사원의 성명, 명칭, 주소 및 출자가액
 3. 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가 주식교환시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식에 갈음하는 금전 등(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의 지분은 제외한다)을 교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株式交換及び株式移転

- く。)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金銭等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金銭等が当該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の社債であるときは、当該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 ロ 当該金銭等が当該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の社債以外の財産であるときは、当該財産の内容及び数若しくは額又はこれらの算定方法
- 四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を除く。)に対する同号の金銭等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 五 効力発生日
-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株式交換完全子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とき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発行する種類の株式の内容に応じ、同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とし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一 ある種類の株式の株主に対して金銭等の割当てをし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株式の種類
- 二 前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金銭等の割当てについて株式の種類ごとに異なる取扱いを行う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異なる取扱いの内容
- 3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同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及び前項第一号の種類の株式の株主を除く。)の有する株式の数(前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各種類の株式の数)に応じて金銭等を交付すること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771条 合同会社に発行済株式を取得させる株式交換の効力の発生等

- 1 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は、効力発生日に、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発行済株式(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の有する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式を除く。)の全部を取得する。
- 2 前項の場合には、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が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式(譲渡制限株式に限り、当該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が効力発生日前から有するものを除く。)を取得したことについて、当該株式交換完全子会社が第百三十七条第一項の承認をしたものとみなす。
- 3 前条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は、効

부하는 때에는 금전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금전 등이 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의 사채인 때에는 사채의 종류 및 종류별 각 사채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나. 금전 등이 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의 사채 이외의 재산인 때에는 그 재산의 내용, 수, 가액 또는 그 산정방법

4. 전호의 경우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동호의 금전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5. 효력발생일

② 전항의 경우 주식교환완전자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때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 및 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동항 제4호의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대하여 금전 등의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및 주식의 종류

2. 전호의 사항 외에 금전 등의 배당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마다 다른 취급을 하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및 다른 취급의 내용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동항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은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 및 전항 제1호의 종류주식의 주주는 제외한다)가 가지는 주식의 수(전항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각 종류주식의 수)에 따라 금전 등을 교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771조 합동회사에 발행주식총수를 취득시키는 주식교환의 효력발생 등

① 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는 효력발생일에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가 소유하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의 전부를 취득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가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식(양도제한주식에 한하며 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가 효력발생일 전부터 가지는 것은 제외한다)을 취득한 것에 관하여 주식교환완전자회사가 제137조 제1항의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전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는 효력발생일에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株式交換及び株式移転

力発生日に、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の社員とな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は、効力発生日に、同号の社員に係る定款の変更をしたものとみなす。

4 前条第一項第三号イ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は、効力発生日に、同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同項第三号イの社債の社債権者となる。

5 前各項の規定は、第八百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七百九十九条(第二項第三号を除く。)の規定による手続が終了していない場合又は株式交換を中止した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2節 株式移転

第772条 株式移転計画の作成

1 一又は二以上の株式会社は、株式移転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株式移転計画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二以上の株式会社が共同して株式移転をする場合には、当該二以上の株式会社は、共同して株式移転計画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773条 株式移転計画

1 一又は二以上の株式会社が株式移転をする場合には、株式移転計画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株式移転により設立する株式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という。)の目的、商号、本店の所在地及び発行可能株式総数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定款で定める事項

三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設立時取締役の氏名

四 次の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からハまでに定める事項

イ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が会計参与設置会社である場合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設立時会計参与の氏名又は名称

ロ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が監査役設置会社(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を含む。)である場合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設立時監査役の氏名

동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의 사원으로 된다. 이 경우에는 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는 효력발생일에 동호의 사원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전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는 효력발생일에 동항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동항 제3호 가목의 사채의 사채권자로 된다.

⑤ 전 각항은 제80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799조(제2항 제3호는 제외한다)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교환을 중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주식이전

제772조 주식이전계획의 작성

- ① 1 또는 2이상의 주식회사는 주식이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식이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2이상의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주식이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73조 주식이전계획

- ① 1 또는 2이상의 주식회사가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이전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이하 이 편에서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라고 한다)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및 발행가능주식총수
 2. 전호의 사항 외에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설립시 이사의 성명
 4. 다음 가목 내지 다목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사항
 - 가.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가 회계참여설치회사인 경우 :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설립시 회계참여의 성명 또는 명칭
 - 나.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가 감사설치회사(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에 한정하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인 경우 :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설립시 감사의 성명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株式交換及び株式移転

- ハ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が会計監査人設置会社である場合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設立時会計監査人の氏名又は名称
- 五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が株式移転に際して株式移転をする株式会社(以下この編において「株式移転完全子会社」という。)の株主に対して交付するその株式に代わる当該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又はその数の算定方法並びに当該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資本金及び準備金の額に関する事項
- 六 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株主に対する前号の株式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 七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が株式移転に際して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株主に対してその株式に代わる当該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社債等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社債等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社債等が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ものを除く。)であるときは、当該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 ロ 当該社債等が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又はその算定方法
 - ハ 当該社債等が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新株予約権付社債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イに規定する事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ロに規定する事項
- 八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株主に対する同号の社債等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 九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が株式移転に際して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当該新株予約権に代わる当該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新株予約権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新株予約権の交付を受ける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の有する新株予約権(以下この編において「株式移転計画新株予約権」という。)の内容
 - ロ 株式移転計画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交付する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又はその算定方法

다.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가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인 경우 : 주식이전설립
완전모회사의 설립시 회계감사인의 성명 또는 명칭

5.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시 주식이전을 하는 주식회사(이하 이
편에서 “주식이전완전자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그 주식에 갈
음하는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마다의 수), 그 수의 산정방법,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
의 자본금 및 준비금의 액에 관한 사항

6.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전호의 주식배당에 관한 사항

7.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시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식에 갈음하는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사채 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사
채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사채 등이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사채(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것
은 제외한다)인 때에는 사채의 종류 및 종류별 사채 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나. 사채 등이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은 제외한다)인 때에는 신주예약권의 내용, 수 또는 그 산정방법

다. 사채 등이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인 때에는 신주
예약권부사채에 관한 가목의 사항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
약권에 관한 나목의 사항

8. 전호의 경우에는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동호의 사채 등의 배
당에 관한 사항

9.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시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신주예약권
의 신주예약권자에게 신주예약권에 갈음하는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신
주예약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주예약권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신주예약권을 교부받는 주식이전완전자회사
의 신주예약권자가 가지는 신주예약권(이하 이 편에서 “주식이전계획신주
예약권”이라고 한다)의 내용

나. 주식이전계획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교부하는 주식이전설립완
전모회사의 신주예약권의 내용, 수 또는 그 산정방법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株式交換及び株式移転

- ハ 株式移転計画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であるときは、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が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に係る債務を承継する旨並びにその承継に係る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 十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式移転計画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する同号の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新株予約権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 2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は、前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は、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時取締役とそれ以外の設立時取締役とを区別して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3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株式移転完全子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ときは、株式移転完全子会社は、その発行する種類の株式の内容に応じ、同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とし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一 ある種類の株式の株主に対して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株式の割当てをし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株式の種類
- 二 前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株式の割当てについて株式の種類ごとに異なる取扱いを行う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異なる取扱いの内容
- 4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同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は、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株主(前項第一号の種類の株式の株主を除く。)の有する株式の数(前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各種類の株式の数)に応じて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株式を交付すること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5 前二項の規定は、第一項第八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二項中「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株式」とあるのは、「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社債等」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774条 株式移転の効力の発生等

- 1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は、その成立の日に、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発行済株式の全部を取得する。
- 2 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株主は、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成立の日に、前条第一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同項第五号の株式の株主と

다. 주식이전계획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인 때에는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가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에 관련된 채무를 승계하는 뜻 및 그 승계에 관련된 사채의 종류 및 종류별 각 사채 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10. 전호의 경우에는 주식이전계획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 대한 동호의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신주예약권의 배당에 관한 사항

②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전항 제3호의 사항은 설립시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과 그 이외의 설립시이사를 구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주식이전완전자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때에는 주식이전완전자회사는 그 발행하는 종류의 주식의 내용에 따라 동항 제6호의 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특정 종류주식의 주주에 대해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기로 한 때에는 그 뜻 및 주식의 종류
2. 전호의 사항 외에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주식배정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 마다 다른 취급을 하는 것으로 한 때에는 그 뜻 및 다른 취급의 내용

④ 제1항의 경우에는 동항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은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주주(전항 제1호의 종류주식의 주주는 제외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전항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각 종류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전 2항은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전 2항 중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사채등”으로 한다.

제774조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등

①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는 그 성립일에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다.

②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성립일에 전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동항 제5호의 주식의 주주로 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株式交換及び株式移転

なる。

3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株主は、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成立の日に、前条第一項第八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当該各号に定める者となる。

一 前条第一項第七号イ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イの社債の社債権者

二 前条第一項第七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ロ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三 前条第一項第七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ハの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社債権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4 前条第一項第九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成立の日に、株式移転計画新株予約権は、消滅し、当該株式移転計画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同項第十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同項第九号ロの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となる。

5 前条第一項第九号ハ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は、その成立の日に、同号ハの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に係る債務を承継する。

第四章の二 株式交付

第774条の2 株式交付計画の作成

株式会社は、株式交付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株式交付計画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774条の3 株式交付計画

1 株式会社が株式交付をする場合には、株式交付計画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株式交付子会社(株式交付親会社(株式交付をする株式会社をいう。以下同じ。))が株式交付に際して譲り受ける株式を発行する株式会社をいう。以下同じ。))の商号及び住所

二 株式交付親会社が株式交付に際して譲り受ける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数(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이전설립완전모 회사의 성립일에 전조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된다.

1. 전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가목의 사채의 사채권자
2. 전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나목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3. 전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동호 다목의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의 사채권자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④ 전조 제1항 제9호의 경우에는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성립일에 주식이전계획신주예약권은 소멸하고 주식이전계획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동항 제10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동항 제9호 나목의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로 된다.

⑤ 전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경우에는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는 그 성립일에 동호 다목의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에 관련된 채무를 승계한다.

제4장의2 주식교부

제774조의2 주식교부계획의 작성

주식회사는 주식교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교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74조의3 주식교부계획

① 주식회사가 주식교부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교부계획에서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교부자회사(주식교부모회사(주식교부를 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식교부 시에 양도받을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호 및 주소
2. 주식교부모회사가 주식교부 시에 양도받을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수(주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株式交換及び株式移転

株式交付子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の下限

- 三 株式交付親会社が株式交付に際して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人に対して当該株式の対価として交付する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おいて、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又はその数の算定方法並びに当該株式交付親会社の資本金及び準備金の額に関する事項
- 四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人に対する前号の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 五 株式交付親会社が株式交付に際して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人に対して当該株式の対価として金銭等(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を除く。以下この号及び次号において同じ。)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金銭等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金銭等が株式交付親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ものを除く。)であるときは、当該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 ロ 当該金銭等が株式交付親会社の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又はその算定方法
 - ハ 当該金銭等が株式交付親会社の新株予約権付社債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イに規定する事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ロに規定する事項
- ニ 当該金銭等が株式交付親会社の社債及び新株予約権以外の財産であるときは、当該財産の内容及び数若しくは額又はこれらの算定方法
- 六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人に対する同号の金銭等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 七 株式交付親会社が株式交付に際して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と併せて株式交付子会社の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又は新株予約権付社債(以下「新株予約権等」と総称する。)を譲り受け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等の内容及び数又はその算定方法
- 八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株式交付親会社が株式交付に際して株式交付子会社の新株予約権等の譲渡人に対して当該新株予約権等の対価として金銭等を交付するときは、当該金銭等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金銭等が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の数(種類株式

식교부자회사가 종류주식발행 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의 하한

3. 주식교부모회사가 주식교부 시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양도인에게 그 주식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교부모회사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또는 그 수의 산정방법과 주식교부모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양도인에 대한 전호의 주식교부모회사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5. 주식교부모회사가 주식교부 시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양도인에 대하여 그 주식의 대가로서 금전 등(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다음 호에서 같다)을 교부할 때에는 그 금전 등에 대한 사항
 - 가. 금전 등이 주식교부모회사의 사채(신주예약권부사채는 제외한다)인 때에는 해당 사채의 종류 및 종류별 각 사채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나. 금전 등이 주식교부모회사의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인 때에는 해당 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 또는 그 산정방법

다. 금전 등이 주식교부모회사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인 때에는 해당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가목 사항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착된 신주예약권에 관한 나목 사항

라. 금전 등이 주식교부모회사의 사채 및 신주예약권 이외의 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내용 및 수 혹은 금액 또는 그 산정방법

6. 전호의 경우에는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양도인에 대한 동호의 금전 등의 배정에 관한 사항
7. 주식교부모회사가 주식교부 시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과 함께 주식교부자회사의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이하 '신주예약권 등'이라 총칭한다)를 양수할 때에는 해당 신주예약권 등의 내용 및 수 또는 그 산정방법
- 8 전호의 경우 주식교부모회사가 주식교부 시 주식교부자회사의 신주예약권 등의 양도인에 대하여 해당 신주예약권 등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금전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금전 등이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수(종류주식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株式交換及び株式移転

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又はその数の算定方法並びに当該株式交付親会社の資本金及び準備金の額に関する事項

ロ 当該金銭等が株式交付親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ものを除く。)であるときは、当該社債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各社債の金額の合計額又はその算定方法

ハ 当該金銭等が株式交付親会社の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又はその算定方法

ニ 当該金銭等が株式交付親会社の新株予約権付社債であ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ロに規定する事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ハに規定する事項

ホ 当該金銭等が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等以外の財産であるときは、当該財産の内容及び数若しくは額又はこれらの算定方法

九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株式交付子会社の新株予約権等の譲渡人に対する同号の金銭等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十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及び新株予約権等の譲渡しの申込みの期日

十一 株式交付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以下この章において「効力発生日」という。)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同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は、株式交付子会社が効力発生日において株式交付親会社の子会社となる数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株式交付子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ときは、株式交付親会社は、株式交付子会社の発行する種類の株式の内容に応じ、同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とし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一 ある種類の株式の譲渡人に対して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の割当てをし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株式の種類

二 前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の割当てについて株式の種類ごとに異なる取扱いを行う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異なる取扱いの内容

4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同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は、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人(前項第一号の種類の株式の譲渡人を除く。)が株式交付親会社に譲り渡す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数(前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各種類の株式の数)に応じて株式交付親会

- 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또는 그 수의 산정방법
과 주식교부모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액에 관한 사항
- 나. 금전 등이 주식교부모회사의 사채(신주예약권부사채는 제외한다)인 때에는 해당 사채의 종류 및 종류별 각 사채 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산정방법
- 다. 금전 등이 주식교부모회사의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인 때에는 해당 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 또는 그 산정방법
- 라. 금전 등이 주식교부모회사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인 때에는 해당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나목 사항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착된 신주예약권에 관한 다목 사항
- 마. 금전 등이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 등 이외의 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내용 및 수 혹은 금액 또는 그 산정방법
9. 전호의 경우 주식교부자회사의 신주예약권 등의 양도인에 대한 동호의 금전 등의 배정에 관한 사항
10.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및 신주예약권 등의 양도신청일
11. 주식교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하 이 장에서 '효력발생일'이라 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은 주식교부자회사가 효력발생일에 주식교부모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주식교부자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때에는 주식교부모회사는 주식교부자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의 주식의 내용에 따라 동항 제4호의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특정 종류주식의 양도인에 대해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기로 한 때에는 그 뜻 및 해당 주식의 종류
 2. 전호의 사항 외에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배정에 관해 주식의 종류별로 다르게 취급하기로 한 때에는 그 뜻 및 다른 취급의 내용
- ④ 제1항의 경우에는 동항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은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양도인(전항 제1호의 종류주식의 양도인은 제외한다)이 주식교부모회사에게 양도하는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의 수(전항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각 종류의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株式交換及び株式移転

社の株式を交付すること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5 前二項の規定は、第一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二項中「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とあるのは、「金銭等(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を除く。)」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774条の4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しの申込み

1 株式交付親会社は、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し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株式交付親会社の商号
- 二 株式交付計画の内容
-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2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しの申込みをする者は、前条第一項第十号の期日まで、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株式交付親会社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申込みをする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 二 譲り渡そうとする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数(株式交付子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3 前項の申込みをする者は、同項の書面の交付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株式交付親会社の承諾を得て、同項の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申込みをした者は、同項の書面を交付したものとみなす。

4 第一項の規定は、株式交付親会社が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金融商品取引法第二条第十項に規定する目論見書を第一項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て交付している場合その他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し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の保護に欠けるおそれがない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5 株式交付親会社は、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変更があったとき(第八百十六条の九第一項の規定により効力発生日を変更したとき及び同条第五項の規定により前条第一項第十号の期日を変更したときを含む。)は、直ちに、その旨及び当該変更があった事項を第二項の申込みをした者(以下この章において「申込者」という。)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전 2항의 규정은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전 2항 중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은 '금전 등(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74조의4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양도신청

① 주식교부모회사는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양도를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식교부모회사의 상호
2. 주식교부계획의 내용
3. 전 2호의 사항 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양도를 신청을 하는 자는 전조 제1항 제10호의 기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부모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수(주식교부자회사가 종류주식 발행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③ 전항의 신청자는 동항의 서면교부에 대신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교부모회사의 승낙을 얻어 동항의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자는 동항의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은 주식교부모회사가 동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10항의 사업설명서를 제1항의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양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주식교부모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제816조의9 제1항에 의하여 효력발생일을 변경한 때 및 동조 제5항에 의하여 전조 제1항 제10호의 기일을 변경한 때를 포함한다)는 즉시 그 사실 및 그 변경 사항을 제2항의 신청을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株式交換及び株式移転

6 株式交付親会社が申込者に対してする通知又は催告は、第二項第一号の住所(当該申込者が別に通知又は催告を受ける場所又は連絡先を当該株式交付親会社に通知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場所又は連絡先)に宛てて発すれば足りる。

7 前項の通知又は催告は、その通知又は催告が通常到達すべきであった時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第774条の5 株式交付親会社が譲り受ける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割当て

1 株式交付親会社は、申込者の中から当該株式交付親会社が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を譲り受ける者を定め、かつ、その者に割り当てる当該株式交付親会社が譲り受ける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数(株式交付子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株式の種類ごとの数。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株式交付親会社は、申込者に割り当てる当該株式の数の合計が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二号の下限の数を下回らない範囲内で、当該株式の数を、前条第二項第二号の数よりも減少することができる。

2 株式交付親会社は、効力発生日の前日までに、申込者に対し、当該申込者から当該株式交付親会社が譲り受ける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数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774条の6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しの申込み及び株式交付親会社が譲り受ける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割当てに関する特則

前二条の規定は、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を譲り渡そうとする者が、株式交付親会社が株式交付に際して譲り受ける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総数の譲渡しを行う契約を締結す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774条の7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し

1 次の各号に掲げる者は、当該各号に定める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数について株式交付における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人となる。

一 申込者 第七百七十四条の五第二項の規定により通知を受けた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数

⑥ 주식교부모회사가 신청자에 대해 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제2항 제1호의 주소(신청자가 별도로 통지 또는 최고를 받는 장소 또는 연락처를 주식교부모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장소 또는 연락처)로 발송하면 된다.

⑦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통지 또는 최고가 통상 도달하여야 하는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774조의5 주식교부모회사가 양수하는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배정

① 주식교부모회사는 신청자 중에서 주식교부모회사가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을 양수할 자를 정하고, 그 자에게 배정할 주식교부모회사가 양수할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수(주식교부자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 수.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교부모회사는 신청자에게 배정할 주식 수의 합계가 제774조의3 제1항 제2호의 하한 수를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수를 전조 제2항 제2호의 수보다 감소할 수 있다.

② 주식교부모회사는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자로부터 주식교부모회사가 양수할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74조의6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의 양도신청 및 주식교부모회사가 양수하는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배정에 관한 특칙

전 2조는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가 주식교부모회사가 주식교부 시 양수하는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총수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4조의7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양도

① 다음 각호의 자는 각호에서 정하는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수에 관해 주식교부에 있어서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양도인이 된다.

1. 신청자: 제774조의 5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수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株式交換及び株式移転

二 前条の契約により株式交付親会社が株式交付に際して譲り受ける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総数を譲り渡すことを約した者 その者が譲り渡すことを約した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数

2 前項各号の規定により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人となった者は、効力発生日に、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数の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を株式交付親会社に給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774条の8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しの無効又は取消しの制限

1 民法第九十三条第一項ただし書及び第九十四条第一項の規定は、第七百七十四条の四第二項の申込み、第七百七十四条の五第一項の規定による割当て及び第七百七十四条の六の契約に係る意思表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2 株式交付における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人は、第七百七十四条の十一第二項の規定により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の株主となった日から一年を経過した後又はその株式について権利を行使した後は、錯誤、詐欺又は強迫を理由として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しの取消し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774条の9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し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七百七十四条の四から前条までの規定は、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七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株式交付子会社の新株予約権等の譲渡し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七百七十四条の四第二項第二号中「数(株式交付子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とあるのは「内容及び数」と、第七百七十四条の五第一項中「数(株式交付子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株式の種類ごとの数。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とあるのは「数」と、「申込者に割り当てる当該株式の数の合計が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二号の下限の数を下回らない範囲内で、当該株式」とあるのは「当該新株予約権等」と、前条第二項中「第七百七十四条の十一第二項」とあるのは「第七百七十四条の十一第四項第一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2. 전조의 계약에 따라 주식교부모회사가 주식교부 시 양수하는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총수를 양도할 것을 약정한 자: 그 자가 양도할 것을 약정한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수

② 전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양도인이 된 자는 효력발생일에 각각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수의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을 주식교부모회사에 급부하여야 한다.

제774조의8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양도시 무효 또는 취소의 제한

① 민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94조 제1항은 제774조의4 제2항의 신청, 제774조의5 제1항의 배정 및 제774조의6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양도인은 제774조의11 제2항에 따라 주식교부모회사 주식의 주주가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또는 그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후는 착오,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양도를 취소할 수 없다.

제774조의9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양도에 관한 규정 준용

제774조의 4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은 제774조의 3 제1항 제7호의 주식교부자회사 신주예약권 등의 양도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4조의 4 제2항 제2호 중 '수(주식교부자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는 '내용 및 수'로, 제774조의 5 제1항 중 '수(주식교부자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 수.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로, '신청자에게 배정하는 해당 주식 수의 합계가 제774조의 3 제1항 제2호의 하한 수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식'은 '해당 신주예약권 등'으로, 전조 제2항 중 '제774조의11 제2항'은 '제774조의11 제4항 제1호'로 대체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株式交換及び株式移転

第774条の10 申込みがあった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数が下限の数に満たない場合

第七百七十四条の五及び第七百七十四条の七(第一項第二号に係る部分を除く。)(これらの規定を前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は、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十号の期日において、申込者が譲渡しの申込みをした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総数が同項第二号の下限の数に満たない場合には、適用し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株式交付親会社は、申込者に対し、遅滞なく、株式交付をしない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774条の11 株式交付の効力の発生等

1 株式交付親会社は、効力発生日に、第七百七十四条の七第二項(第七百七十四条の九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給付を受けた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及び新株予約権等を譲り受ける。

2 第七百七十四条の七第二項の規定による給付をした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人は、効力発生日に、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同項第三号の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の株主となる。

3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第七百七十四条の七第二項の規定による給付をした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人は、効力発生日に、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当該各号に定める者となる。

一 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五号イ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イの社債の社債権者

二 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五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ロ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三 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五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同号ハの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社債権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4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第七百七十四条の九において準用する第七百七十四条の七第二項の規定による給付をした株式交付子会社の新株予約権等の譲渡人は、効力発生日に、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九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当該各号に定める者となる。

一 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八号イ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

제774조의10 **신청이 있었던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수가 하한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774조의 5 및 제774조의 7(제1항 제2호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이들 규정을 전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은 제774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기일에 신청자가 양도 신청을 한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총수가 동항 제2호의 하한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주식교부모회사는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주식교부를 하지 아니하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74조의11 **주식교부의 효력발생 등**

① 주식교부모회사는 효력발생일에 제774조의 7 제2항(제774조의 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급부를 받은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및 신주예약권 등을 양수한다.

② 제774조의 7 제2항의 급부를 한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양도인은 효력발생일에 제774조의 3 제1항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동항 제3호의 주식교부모회사 주식의 주주가 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774조의 7 제2항의 급부를 한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양도인은 효력발생일에 제774조의 3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1. 제774조의 3 제1항 제5호 가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동호 가목의 사채의 사채권자
2. 제774조의 3 제1항 제5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동호 나목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3. 제774조의 3 제1항 제5호 다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동호 다목의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의 사채권자 및 해당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착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④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774조의 9에서 준용하는 제774조의 7 제2항에 따라 급부를 한 주식교부자회사의 신주예약권 등의 양도인은 효력발생일에 제774조의 3 제1항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1. 제774조의 3 제1항 제8호 가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동호 가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株式交換及び株式移転

場合 同号イの株式の株主

二 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八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合 同号ロの社債の社債権者

三 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八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合 同号ハ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四 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八号ニ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

合 同号ニの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社債権者及び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

5 前各項の規定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一 効力発生日において第八百十六条の八の規定による手続が終了していない場合

二 株式交付を中止した場合

三 効力発生日において株式交付親会社が第七百七十四条の七第二項の規定による給付を受けた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総数が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二号の下限の数に満たない場合

四 効力発生日において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三号の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の株主となる者がいない場合

6 前項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株式交付親会社は、第七百七十四条の七第一項各号(第七百七十四条の九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掲げる者に対し、遅滞なく、株式交付をしない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第七百七十四条の七第二項(第七百七十四条の九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給付を受けた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又は新株予約権等があるときは、株式交付親会社は、遅滞なく、これらをその譲渡人に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목 주식의 주주

2. 제774조의 3 제1항 제8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동호 나목 사채의 사채권자
3. 제774조의 3 제1항 제8호 다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동호 다목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4. 제774조의 3 제1항 제8호 라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동호 라목의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의 사채권자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착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⑤ 전 각 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효력발생일에 제816조의 8의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2. 주식교부를 중지한 경우

3. 효력발생일에 주식교부모회사가 제774조의 7 제2항의 급부를 받은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총수가 제774조의 3 제1항 제2호의 하한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효력발생일에 제2항에 의하여 제774조의 3 제1항 제3호의 주식교부모회사 주식의 주주가 될 자가 없는 경우

⑥ 전항 각호의 경우에는 주식교부모회사는 제774조의 7 제1항 각호(제774조의 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주식교부를 하지 아니하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74조의 7 제2항(제774조의 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급부를 받은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또는 신주예약권 등이 있는 때에는 주식교부모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그 양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第1節 組織変更の手続

第1款 株式会社の手続

第775条 組織変更計画に関する書面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1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は、組織変更計画備置開始日から組織変更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以下この節において「効力発生日」という。)までの間、組織変更計画の内容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に規定する「組織変更計画備置開始日」とは、次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早い日をいう。

- 一 組織変更計画について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の総株主の同意を得た日
- 二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が新株予約権を発行しているときは、第七百七十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又は同条第四項の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
- 三 第七百七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公告の日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

3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の株主及び債権者は、当該株式会社に対して、そ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株式会社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第一項の書面の閲覧の請求
- 二 第一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 三 第一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の請求
- 四 第一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って株式会社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제5장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의 절차

제1절 조직변경의 절차

제1관 주식회사의 절차

제775조 조직변경계획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①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는 조직변경계획비치개시일로부터 조직변경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하 이 절에서 “효력발생일”이라고 한다)까지 조직변경계획의 내용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 또는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계획비치개시일”이란 다음의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1. 조직변경계획에 관하여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총주주의 동의를 얻은 날
2.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가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고 있는 때에는 제777조 제3항에 따른 통지일 또는 동조 제4항의 공고일 중 빠른 날
3. 제779조 제2항에 의한 공고일 또는 동항에 의한 최고일 중 빠른 날

③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영업 시간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주식회사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서면의 열람 청구
2. 제1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 청구
3. 제1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의 열람 청구
4. 제1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주식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청구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第776条 株式会社の組織変更計画の承認等

- 1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の前日までに、組織変更計画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の総株主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 2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の二十日前までに、その登録株式質権者及び登録新株予約権質権者に対し、組織変更をする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第777条 新株予約権買取請求

- 1 株式会社が組織変更をする場合には、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当該株式会社に対し、自己の有する新株予約権を公正な価格で買い取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2 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以下この款において「新株予約権買取請求」という。)をするときは、併せて、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を買い取ること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3 組織変更を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の二十日前までに、そ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組織変更をする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 5 新株予約権買取請求は、効力発生日の二十日前の日から効力発生日の前日までの間に、その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6 新株予約権証券が発行されている新株予約権について新株予約権買取請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に対し、その新株予約権証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新株予約権証券について非訟事件手続法第百十四条に規定する公示催告の申立てをした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7 新株予約権付社債券が発行されている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新株予約権買取請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に対し、その新株予約権付社債券を提

제776조 주식회사의 조직변경계획의 승인 등

- ①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조직변경계획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의 20일 전까지 그 등록주식질권자 및 등록신주예약권질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을 하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777조 신주예약권 매수청구

- ① 주식회사가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신주예약권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이 관에서 “신주예약권매수청구”라고 한다)를 하는 때에는 아울러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조직변경을 하려는 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의 20일 전까지 그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을 하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신주예약권매수청구는 효력발생일의 20일 전부터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그 신주예약권매수청구에 관한 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⑥ 신주예약권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신주예약권매수청구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신주예약권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예약권증권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14조의 공시최고의 신청을 한 자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이 발행되고 있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신주예약권매수청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을 제출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券について非訟事件手続法第百十四条に規定する公示催告の申立てをした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8 新株予約権買取請求をした新株予約権者は、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の承諾を得た場合に限り、その新株予約権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9 組織変更を中止したときは、新株予約権買取請求は、その効力を失う。

10 第二百六十条の規定は、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778条 新株予約権の価格の決定等

1 新株予約権買取請求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新株予約権(当該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買取り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当該社債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新株予約権者と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効力発生日後にあつては、組織変更後持分会社。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との間に協議が調ったときは、当該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から六十日以内にその支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新株予約権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効力発生日から三十日以内に協議が調わないときは、新株予約権者又は組織変更後持分会社は、その期間の満了の日後三十日以内に、裁判所に対し、価格の決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条第八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効力発生日から六十日以内に同項の申立てがないときは、その期間の満了後は、新株予約権者は、いつでも、新株予約権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4 組織変更後持分会社は、裁判所の決定した価格に対する第一項の期間の満了の日後の年六分の利率により算定した利息をも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は、新株予約権の価格の決定があるまでは、新株予約権者に対し、当該株式会社が公正な価格と認める額を支払うことができる。

6 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の買取りは、効力発生日に、その効力を生ずる。

7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は、新株予約権証券が発行されている新株予約権について新株予約権買取請求があったときは、新株予約権証券と引換えに、その新

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예약권부사채권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14조의 공시최고의 신청을 한 자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신주예약권매수청구를 한 신주예약권자는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신주예약권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⑨ 조직변경을 중지한 때에는 신주예약권매수청구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⑩ 제260조는 신주예약권매수청구와 관련된 신주예약권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778조 신주예약권의 가격결정 등

- ① 신주예약권매수청구가 있었던 경우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인 경우 그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의 매수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그 사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결정에 관하여 신주예약권자와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효력발생일후에는 조직변경후지분회사.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신주예약권의 가격결정에 관하여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예약권자 또는 조직변경후지분회사는 그 기간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가격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전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경우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 후에는 신주예약권자는 언제든지 신주예약권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조직변경후지분회사는 법원이 결정한 가격에 대하여 제1항의 기간만료일 후 연6푼의 이율로 산정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는 신주예약권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신주예약권자에 대해 주식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판단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신주예약권매수청구에 관한 신주예약권의 매수는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⑦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는 신주예약권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신주예약권매수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신주예약권증권과 교환하여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株予約権買取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の代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8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は、新株予約権付社債券が発行されている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新株予約権買取請求があったときは、新株予約権付社債券と引換えに、その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の代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779条 債権者の異議

1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の債権者は、当該株式会社に対し、組織変更について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2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は、次に掲げる事項を官報に公告し、かつ、知れている債権者には、各別にこれを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三号の期間は、一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一 組織変更をする旨

二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の計算書類(第四百三十五条第二項に規定する計算書類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に関する事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三 債権者が一定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る旨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が同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官報のほか、第九百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従い、同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公告方法によりす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よる各別の催告は、することを要しない。

4 債権者が第二項第三号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なかったときは、当該債権者は、当該組織変更について承認をしたものとみなす。

5 債権者が第二項第三号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たときは、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は、当該債権者に対し、弁済し、若しくは相当の担保を提供し、又は当該債権者に弁済を受け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信託会社等に相当の財産を信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組織変更をしても当該債権者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780条 組織変更の効力発生日の変更

1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신주예약권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는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신주예약권참사채에 첨부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신주예약권매수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권과 교환하여 신주예약권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79조 채권자의 이익

①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그 주식회사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히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기간은 1개월을 밑돌 수 없다.

1. 조직변경을 하는 뜻
2.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계산서류(제435조 제2항의 계산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3.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가 동항에 의한 공고를 관보 외에 제939조 제1항에 의한 정관의 정함에 따라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공고방법에 따라 하는 때에는 전항에 의한 각별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채권자가 제2항 제3호의 기간 내에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가 조직변경에 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채권자가 제2항 제3호의 기간 내에 이익을 제기한 때에는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목적으로 신탁회사 등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변경을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0조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일의 변경

①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을 변경할 수 있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2 前項の場合には、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は、変更前の効力発生日(変更後の効力発生日が変更前の効力発生日前の日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変更後の効力発生日)の前日まで、変更後の効力発生日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効力発生日を変更したときは、変更後の効力発生日を効力発生日とみなして、この款及び第七百四十五条の規定を適用する。

第2款 持分会社の手続

第781条

1 組織変更をする持分会社は、効力発生日の前日まで、組織変更計画について当該持分会社の総社員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第七百七十九条(第二項第二号を除く。)及び前条の規定は、組織変更をする持分会社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七百七十九条第三項中「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とあるのは「組織変更をする持分会社(合同会社に限る。)」と、前条第三項中「及び第七百四十五条」とあるのは「並びに第七百四十七条及び次条第一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2節 吸収合併等の手続

第1款 吸収合併消滅会社、吸収分割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手続

第1目 株式会社の手続

第782条 吸収合併契約等に関する書面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1 次の各号に掲げる株式会社(以下この目において「消滅株式会社等」という。)は、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から吸収合併、吸収分割又は株式交換(以下この節において「吸収合併等」という。)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以下この節において「効力発生日」という。)後六箇月を経過する日(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にあつては、効力発生日)までの間、当該各号に定めるもの(以下この節において「吸収合併契約等」という。)の内容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제5장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의 절차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는 변경전의 효력발생일(변경후의 효력발생일이 변경전의 효력발생일 전의 날인 경우에는 변경후의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변경후의 효력발생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효력발생일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후의 효력발생일을 효력발생일로 보아 이 관 및 제74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관 지분회사의 절차

제781조

- ① 조직변경을 하는 지분회사는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조직변경계획에 관하여 지분회사의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779조(제2항 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전조는 조직변경을 하는 지분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9조 제3항 중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는 “조직변경을 하는 지분회사(합동회사에 한한다)”로, 전조 제3항 중 “및 제745조”는 “또한 제747조 및 다음조 제1항”으로 본다.

제2절 흡수합병 등의 절차

제1관 흡수합병소멸회사, 흡수분할회사 및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절차

제1목 주식회사의 절차

제782조 흡수합병계약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 ① 다음 각 호의 주식회사(이하 이 목에서 “소멸주식회사 등”이라고 한다)는 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로부터 흡수합병, 흡수분할 또는 주식교환(이하 이 절에서 “흡수합병 등”이라고 한다)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하 이 절에서 “효력발생일”이라고 한다)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효력발생일까지)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흡수합병계약 등”이라고 한다)의 내용,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 또는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 吸収合併契約

二 吸収分割株式会社 吸収分割契約

三 株式交換完全子会社 株式交換契約

2 前項に規定する「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とは、次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早い日をいう。

一 吸収合併契約等について株主総会(種類株主総会を含む。)の決議によってそ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は、当該株主総会の日の二週間前の日(第三百十九条第一項の場合にあっては、同項の提案があった日)

二 第七百八十五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るべき株主があるときは、同項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又は同条第四項の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

三 第七百八十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るべき新株予約権者があるときは、同項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又は同条第四項の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

四 第七百八十九条の規定による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公告の日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

五 前各号に規定する場合以外の場合には、吸収分割契約又は株式交換契約の締結の日から二週間を経過した日

3 消滅株式会社等の株主及び債権者(株式交換完全子会社にあっては、株主及び新株予約権者)は、消滅株式会社等に対して、そ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消滅株式会社等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一項の書面の閲覧の請求

二 第一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三 第一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の請求

四 第一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って消滅株式会社等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第783条 吸収合併契約等の承認等

1 消滅株式会社等は、効力発生日の前日までに、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吸収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 흡수합병계약
2. 흡수분할주식회사 : 흡수분할계약
3. 주식교환완전자회사 : 주식교환계약

② 전항의 “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이란 다음의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1. 흡수합병계약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종류주주총회를 포함한다)결의에 의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의 날 (제319조 제1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제안이 있었던 날)
2. 제785조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아야 할 주주가 있는 때에는 동항에 의한 통지일 또는 동조 제4항의 공고일 중 빠른 날
3. 제787조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아야 할 신주예약권자가 있는 때에는 동항에 의한 통지일 또는 동조 제4항의 공고일 중 빠른 날
4. 제789조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할 때에는 동조 제2항에 의한 공고일 또는 동항에 의한 최고일 중 빠른 날
5. 전 각호의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흡수분할계약 또는 주식교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주를 경과한 날

③ 소멸주식회사 등의 주주 및 채권자(주식교환완전자회사에서는 주주 및 신주예약권자)는 소멸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소멸주식회사 등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서면의 열람 청구
2. 제1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 청구
3. 제1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의 열람 청구
4. 제1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소멸주식회사 등의 정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의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청구

제783조 흡수합병계약등의 승인 등

① 소멸주식회사 등은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흡수합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合併契約等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又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ない場合において、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又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以下この条及び次条第一項において「合併対価等」という。)の全部又は一部が持分等(持分会社の持分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であるときは、吸収合併契約又は株式交換契約について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又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総株主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3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又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合併対価等の全部又は一部が譲渡制限株式等(譲渡制限株式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であるときは、吸収合併又は株式交換は、当該譲渡制限株式等の割当てを受ける種類の株式(譲渡制限株式を除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当該種類株主に係る株式の種類が二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二以上の株式の種類別に区分された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各種類株主総会)の決議が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ただし、当該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株主が存し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4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又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合併対価等の全部又は一部が持分等であるときは、吸収合併又は株式交換は、当該持分等の割当てを受ける種類の株主の全員の同意が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5 消滅株式会社等は、効力発生日の二十日前までに、その登録株式質権者(次条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登録株式質権者を除く。)及び第七百八十七条第三項各号に定める新株予約権の登録新株予約権質権者に対し、吸収合併等をする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第784条 吸収合併契約等の承認を要しない場合

1 前条第一項の規定は、吸収合併存続会社、吸収分割承継会社又は株式交換完全親会社(以下この目において「存続会社等」という。)が消滅株式会社等の特別支配会社であ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ただし、吸収合併又は株式交換における

병계약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가 아닌 경우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1항에서 “합병대가등”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 등(지분회사의 지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때에는 흡수합병계약 또는 주식교환계약에 관하여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 합병대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제한주식 등(양도제한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인 때에는 흡수합병 또는 주식교환은 양도제한주식 등의 배정을 받는 종류주식(양도제한주식은 제외한다)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종류주주와 관련된 주식의 종류가 2이상인 경우에는 2이상의 주식의 종류별로 구분된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각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종류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 합병대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 등인 때에는 흡수합병 또는 주식교환은 그 지분 등의 배정을 받는 종류주주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없다.

⑤ 소멸주식회사등은 효력발생일의 20일전까지 등록주식질권자(다음 조 제2항의 등록주식질권자는 제외한다) 및 제787조 제3항 각 호의 신주예약권의 등록신주예약권질권자에 대해 흡수합병 등을 하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전항에 정한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784조 흡수합병계약 등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전조 제1항은 흡수합병존속회사, 흡수분할승계회사 또는 주식교환완전모회사(이하 이 목에서 “존속회사등”이라고 한다)가 소멸주식회사 등의 특별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흡수합병 또는 주식교환에서 합병대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合併対価等の全部又は一部が譲渡制限株式等である場合であって、消滅株式会社等が公開会社であり、かつ、種類株式発行会社で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条の規定は、吸収分割により吸収分割承継会社に承継させる資産の帳簿価額の合計額が吸収分割株式会社の総資産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の五分之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吸収分割株式会社の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を超えない場合には、適用しない。

- 一 当該吸収合併等が法令又は定款に違反する場合
- 二 第七百四十九条第一項第二号若しくは第三号、第七百五十一条第一項第三号若しくは第四号、第七百五十八条第四号、第七百六十条第四号若しくは第五号、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二号若しくは第三号又は第七百七十条第一項第三号若しくは第四号に掲げる事項が消滅株式会社等又は存続会社等の財産の状況その他の事情に照らして著しく不当である場合

第784条の2 吸収合併等をやめることの請求

1 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消滅株式会社等の株主が不利益を受け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消滅株式会社等の株主は、消滅株式会社等に対し、吸収合併等をやめ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前条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当該吸収合併等が法令又は定款に違反する場合
- 二 前条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第七百四十九条第一項第二号若しくは第三号、第七百五十一条第一項第三号若しくは第四号、第七百五十八条第四号、第七百六十条第四号若しくは第五号、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二号若しくは第三号又は第七百七十条第一項第三号若しくは第四号に掲げる事項が消滅株式会社等又は存続会社等の財産の状況その他の事情に照らして著しく不当であるとき。

第785条 反対株主の株式買取請求

1 吸収合併等をする場合(次に掲げる場合を除く。)には、反対株主は、消滅株式会社等に対し、自己の有する株式を公正な価格で買い取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第七百八十三条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

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제한주식 등인 경우 소멸주식회사 등이 공개회사이고 종류주식발행회사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조는 흡수분할에 의하여 흡수분할승계회사에 승계시키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총자산액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5분의 1(이것을 하회하는 비율을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흡수합병 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2. 제7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제75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제758조 제4호, 제760조 제4호 또는 제5호, 제76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또는 제77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이 소멸주식회사 등 또는 존속회사 등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제784조의2 흡수합병 등의 정지청구

① 다음의 경우 소멸주식회사등의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소멸주식회사등의 주주는 소멸주식회사등에 대해 흡수합병등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흡수합병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2. 전조 제1항 본문의 경우 제7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제75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제758조 제4호, 제760조 제4호 또는 제5호, 제76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또는 제77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이 소멸주식회사등 또는 존속회사등의 재산 상태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

제785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① 흡수합병 등을 하는 경우(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반대주주는 소멸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783조 제2항의 경우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二 第七百八十四条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

2 前項に規定する「反対株主」と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おける当該各号に定める株主(第七百八十三条第四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同項に規定する持分等の割当てを受ける株主を除く。)をいう。

一 吸収合併等をするために株主総会(種類株主総会を含む。)の決議を要する場合 次に掲げる株主

イ 当該株主総会に先立って当該吸収合併等に反対する旨を当該消滅株式会社等に対し通知し、かつ、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吸収合併等に反対した株主(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る。)

ロ 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

二 前号に規定する場合以外の場合 全ての株主(第七百八十四条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特別支配会社を除く。)

3 消滅株式会社等は、効力発生日の二十日前までに、その株主(第七百八十三条第四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同項に規定する持分等の割当てを受ける株主及び第七百八十四条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特別支配会社を除く。)に対し、吸収合併等をする旨並びに存続会社等の商号及び住所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一項各号に掲げ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4 次に掲げる場合には、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一 消滅株式会社等が公開会社である場合

二 消滅株式会社等が第七百八十三条第一項の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吸収合併契約等の承認を受けた場合

5 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以下この目において「株式買取請求」という。)は、効力発生日の二十日前の日から効力発生日の前日までの間に、その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株券が発行されている株式について株式買取請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株式の株主は、消滅株式会社等に対し、当該株式に係る株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株券について第二百二十三条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た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7 株式買取請求をした株主は、消滅株式会社等の承諾を得た場合に限り、その

2. 제784조 제2항의 경우

② 전항의 “반대주주”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당해 각호에서 규정하는 주주(제783조 제4항의 지분 등의 배정을 받는 주주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흡수합병 등을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종류주주총회를 포함한다)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 다음의 주주

가. 주주총회에 앞서 흡수합병 등을 반대하는 뜻을 소멸주식회사 등에 통지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흡수합병 등을 반대한 주주(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한한다)

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2. 전호 외의 경우 : 모든 주주(제784조 제1항 본문의 특별지배회사는 제외한다)

③ 소멸주식회사등은 효력발생일의 20일전까지 주주(제783조 제4항의 지분 등의 배정을 받는 주주 및 제784조 제1항 본문의 특별지배회사는 제외한다)에게 흡수합병등을 하는 뜻과 존속회사등의 상호 및 주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다음의 경우 전항에 의한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소멸주식회사 등이 공개회사인 경우

2. 소멸주식회사 등이 제783조 제1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흡수합병계약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⑤ 제1항에 의한 청구(이하 이 목에서 “주식매수청구”라고 한다)는 효력발생일의 20일 전부터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그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⑥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주주는 소멸주식회사등에 대하여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에 관하여 제223조의 청구를 한 자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는 소멸주식회사등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주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株式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8 吸収合併等を中止したときは、株式買取請求は、その効力を失う。

9 第三百三十三条の規定は、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786条 株式の価格の決定等

1 株式買取請求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株式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株主と消滅株式会社等(吸収合併をする場合における効力発生日後にあつては、吸収合併存続会社。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との間に協議が調ったときは、消滅株式会社等は、効力発生日から六十日以内にその支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株式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効力発生日から三十日以内に協議が調わないときは、株主又は消滅株式会社等は、その期間の満了の日後三十日以内に、裁判所に対し、価格の決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条第七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効力発生日から六十日以内に同項の申立てがないときは、その期間の満了後は、株主は、いつでも、株式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4 消滅株式会社等は、裁判所の決定した価格に対する第一項の期間の満了の日後の年六分の利率により算定した利息をも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消滅株式会社等は、株式の価格の決定があるまでは、株主に対し、当該消滅株式会社等が公正な価格と認める額を支払うことができる。

6 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買取りは、効力発生日に、その効力を生ずる。

7 株券発行会社は、株券が発行されている株式について株式買取請求があったときは、株券と引換えに、その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代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787条 新株予約権買取請求

1 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消滅株式会社等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消滅株式会社等に対し、自己の有する新株予約権を公正な価格で買い取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吸収合併 第七百四十九条第一項第四号又は第五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八号の条件(同号イに関するものに限り。)に合致する新株予約権以外の新株予約権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제5장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의 절차

식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⑧ 흡수합병등을 중지한 때에는 주식매수청구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⑨ 제133조는 주식매수청구와 관련된 주식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786조 주식의 가격결정 등

① 주식매수청구가 있었던 경우 주식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주주와 소멸주식회사 등(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효력발생일 후에는 흡수합병존속회사.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소멸주식회사 등은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 주식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 또는 소멸주식회사 등은 그 기간만료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가격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경우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후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소멸주식회사 등은 법원이 결정한 가격에 대하여 제1항의 기간만료일 후부터 연6푼의 이율로 산정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소멸주식회사등은 주식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소멸주식회사등이 공정한 가격으로 판단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청구와 관련된 주식의 매수는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주권발행회사는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주식매수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주권과 교환하여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87조 신주예약권매수청구

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소멸주식회사 등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소멸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신주예약권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흡수합병 : 제74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제236조 제1항 제8호의 조건(동호 가목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합치하는 신주예약권 이외의 신주예약권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二 吸収分割(吸収分割承継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限る。) 次に掲げる新株予約権のうち、第七百五十八条第五号又は第六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八号の条件(同号ロに関するものに限る。)に合致する新株予約権以外の新株予約権

イ 吸収分割契約新株予約権

ロ 吸収分割契約新株予約権以外の新株予約権であって、吸収分割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を交付することとする旨の定めがあるもの

三 株式交換(株式交換完全親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限る。) 次に掲げる新株予約権のうち、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四号又は第五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八号の条件(同号二に関するものに限る。)に合致する新株予約権以外の新株予約権

イ 株式交換契約新株予約権

ロ 株式交換契約新株予約権以外の新株予約権であって、株式交換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を交付することとする旨の定めがあるもの

2 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以下この目において「新株予約権買取請求」という。)をするときは、併せて、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を買い取ること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3 次の各号に掲げる消滅株式会社等は、効力発生日の二十日前までに、当該各号に定める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吸収合併等をする旨並びに存続会社等の商号及び住所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 全部の新株予約権

二 吸収分割承継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ける吸収分割株式会社 次に掲げる新株予約権

イ 吸収分割契約新株予約権

ロ 吸収分割契約新株予約権以外の新株予約権であって、吸収分割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を交付することとする旨の定めがあるもの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제5장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의 절차

2. 흡수분할(흡수분할승계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 다음의 신주예약권 중 제758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제236조 제1항 제8호의 조건(동호 나목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합치하는 신주예약권 이외의 신주예약권

가. 흡수분할계약신주예약권

나. 흡수분할계약신주예약권 이외의 신주예약권으로 흡수분할을 하는 경우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것

3. 주식교환(주식교환완전모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 다음의 신주예약권 중 제768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제236조 제1항 제8호의 조건(동호 라목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합치하는 신주예약권 이외의 신주예약권

가. 주식교환계약신주예약권

나. 주식교환계약신주예약권 이외의 신주예약권으로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것

②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전항에 의한 청구(이하 이 목에서 “신주예약권매수청구”라고 한다)를 하는 때에는 아울러 신주예약권부 사채에 관한 사채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호의 소멸주식회사 등은 효력발생일의 20일 전까지 당해 각호에서 규정하는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흡수합병 등을 하는 뜻과 존속회사 등의 상호 및 주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1.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 전부의 신주예약권

2. 흡수분할승계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의 흡수분할주식회사 : 다음의 신주예약권

가. 흡수분할계약신주예약권

나. 흡수분할계약신주예약권 이외의 신주예약권으로 흡수분할을 하는 경우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것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 三 株式交換完全親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ける株式交換完全子会社 次に掲げる新株予約権
 - イ 株式交換契約新株予約権
 - ロ 株式交換契約新株予約権以外の新株予約権であって、株式交換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を交付することとする旨の定めがあるもの
- 4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 5 新株予約権買取請求は、効力発生日の二十日前の日から効力発生日の前日までの間に、その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6 新株予約権証券が発行されている新株予約権について新株予約権買取請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消滅株式会社等に対し、その新株予約権証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新株予約権証券について非訟事件手続法第百十四条に規定する公示催告の申立てをした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7 新株予約権付社債券が発行されている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新株予約権買取請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消滅株式会社等に対し、その新株予約権付社債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券について非訟事件手続法第百十四条に規定する公示催告の申立てをした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8 新株予約権買取請求をした新株予約権者は、消滅株式会社等の承諾を得た場合に限り、その新株予約権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 9 吸収合併等を中止したときは、新株予約権買取請求は、その効力を失う。
- 10 第二百六十条の規定は、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788条 新株予約権の価格の決定等

- 1 新株予約権買取請求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新株予約権(当該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買取り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当該社債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新株予約権者と消滅株式会社等(吸収合

3. 주식교환완전모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교환완전자회사 : 다음의 신주예약권

가. 주식교환계약신주예약권

나. 주식교환계약신주예약권 이외의 신주예약권으로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것

- ④ 전항에 의한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신주예약권매수청구는 효력발생일의 20일 전의 날로부터 그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그 신주예약권매수청구에 관련된 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⑥ 신주예약권증권이 발행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신주예약권매수청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소멸주식회사등에 대하여 신주예약권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주예약권증권에 대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14조의 공시 최고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신주예약권매수청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소멸주식회사등에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예약권부사채권에 비송사건절차법 제114조의 공시 최고의 신청을 한 자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신주예약권매수청구를 한 신주예약권자는 소멸주식회사등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신주예약권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⑨ 흡수합병등을 중지한 때는 신주예약권매수청구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⑩ 제260조는 신주예약권매수청구에 관련된 신주예약권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788조 신주예약권의 가격결정 등

① 신주예약권매수청구가 있었던 경우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인 경우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하여 매수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사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 신주예약권자와 소멸주식회사 등(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효력발생일 후에는 흡수합병존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併をする場合における効力発生日後にあつては、吸収合併存続会社。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との間に協議が調ったときは、消滅株式会社等は、効力発生日から六十日以内にその支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新株予約権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効力発生日から三十日以内に協議が調わないときは、新株予約権者又は消滅株式会社等は、その期間の満了の日後三十日以内に、裁判所に対し、価格の決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条第八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効力発生日から六十日以内に同項の申立てがないときは、その期間の満了後は、新株予約権者は、いつでも、新株予約権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4 消滅株式会社等は、裁判所の決定した価格に対する第一項の期間の満了の日後の年六分の利率により算定した利息をも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消滅株式会社等は、新株予約権の価格の決定があるまでは、新株予約権者に対し、当該消滅株式会社等が公正な価格と認める額を支払うことができる。

6 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の買取りは、効力発生日に、その効力を生ずる。

7 消滅株式会社等は、新株予約権証券が発行されている新株予約権について新株予約権買取請求があつたときは、新株予約権証券と引換えに、その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の代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8 消滅株式会社等は、新株予約権付社債券が発行されている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新株予約権買取請求があつたときは、新株予約権付社債券と引換えに、その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の代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789条 債権者の異議

1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債権者は、消滅株式会社等に対し、吸収合併等について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一 吸収合併をする場合：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債権者

二 吸収分割をする場合：吸収分割後吸収分割株式会社に対して債務の履行(当該債務の保証人として吸収分割承継会社と連帯して負担する保証債務の履行を含む。)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吸収分割株式会社の債権者(第七百五十八条第八号又は第七百六十条第七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제5장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의 절차

속회사.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소멸주식회사 등은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신주예약권의 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예약권자 또는 소멸주식회사 등은 그 기간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가격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전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경우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후에는 신주예약권자는 언제든지 신주예약권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소멸주식회사 등은 법원이 결정한 가격에 대하여 제1항의 기간만료일 후부터 연6분의 이율로 산정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소멸주식회사등은 신주예약권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주예약권자에게 소멸주식회사등이 공정한 가격이라고 판단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신주예약권매수청구와 관련된 신주예약권의 매수는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⑦ 소멸주식회사등은 신주예약권증권이 발행된 신주예약권에 관해 신주예약권매수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신주예약권증권과 교환하여 신주예약권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소멸주식회사등은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신주예약권매수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권과 교환하여 신주예약권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89조 채권자의 이익

-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채권자는 소멸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흡수합병 등에 관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
 - 1.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채권자
 - 2. 흡수분할을 하는 경우 : 흡수분할 후 흡수분할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채무의 보증인으로 흡수분할승계회사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청구할 수 없는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채권자(제758조 제8호 또는 제760조 제7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함이 있는 경우 흡수분할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續

る場合にあっては、吸収分割株式会社の債権者)

三 株式交換契約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である
場合：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権者

2 前項の規定により消滅株式会社等の債権者の全部又は一部が異議を述べる
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消滅株式会社等は、次に掲げる事項を官報に公告し、
かつ、知れている債権者(同項の規定により異議を述べるができるものに限
る。)には、各別にこれを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四号の期間は、一箇
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一 吸収合併等をする旨

二 存続会社等の商号及び住所

三 消滅株式会社等及び存続会社等(株式会社に限る。)の計算書類に関する事
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四 債権者が一定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るができる旨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消滅株式会社等が同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官報
のほか、第九百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従い、同項第二号又
は第三号に掲げる公告方法によりす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よる各別の催告(吸
収分割をする場合における不法行為によって生じた吸収分割株式会社の債務の
債権者に対するものを除く。)は、することを要しない。

4 債権者が第二項第四号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なかったときは、当該債権者
は、当該吸収合併等について承認をしたものとみなす。

5 債権者が第二項第四号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たときは、消滅株式会社等は、
当該債権者に対し、弁済し、若しくは相当の担保を提供し、又は当該債権者に弁
済を受け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信託会社等に相当の財産を信託しなければな
らない。ただし、当該吸収合併等をしても当該債権者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とき
は、この限りでない。

第790条 吸収合併等の効力発生日の変更

1 消滅株式会社等は、存続会社等との合意により、効力発生日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場合には、消滅株式会社等は、変更前の効力発生日(変更後の効力発
生日が変更前の効力発生日前の日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変更後の効力発
生日)の前日までに、変更後の効力発生日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주식회사의 채권자)

3. 주식교환계약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인 경우
: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권자

② 전항에 의하여 소멸주식회사 등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멸주식회사 등은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동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에게는 각별히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기간은 1개월을 밑돌 수 없다.

1. 흡수합병 등을 하는 뜻

2. 존속회사 등의 상호 및 주소

3. 소멸주식회사 등 또는 존속회사 등(주식회사에 한한다)의 계산서류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4.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소멸주식회사 등이 동항에 의한 공고를 관보 외에 제939조 제1항에 의한 정관의 정함에 따라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공고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전항에 의한 각별의 최고(흡수분할을 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채무의 채권자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채권자가 제2항 제4호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채권자가 흡수합병 등에 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채권자가 제2항 제4호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소멸주식회사 등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목적으로 신탁회사 등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흡수합병 등을 하더라도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0조 흡수합병 등의 효력발생일의 변경

① 소멸주식회사 등은 존속회사 등과의 합의로 효력발생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소멸주식회사 등은 변경 전의 효력발생일(변경후의 효력발생일이 변경전의 효력발생일의 전날인 경우에는 변경후의 효력발생일)의 전날까지 변경 후의 효력발생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効力発生日を変更したときは、変更後の効力発生日を効力発生日とみなして、この節並びに第七百五十条、第七百五十二条、第七百五十九条、第七百六十一条、第七百六十九条及び第七百七十一条の規定を適用する。

第791条 吸収分割又は株式交換に関する書面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1 吸収分割株式会社又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は、効力発生日後遅滞なく、吸収分割承継会社又は株式交換完全親会社と共同して、次の各号に掲げる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もの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吸収分割株式会社：吸収分割により吸収分割承継会社が承継した吸収分割株式会社の権利義務その他の吸収分割に関する事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

二 株式交換完全子会社：株式交換により株式交換完全親会社が取得した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式の数その他の株式交換に関する事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

2 吸収分割株式会社又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は、効力発生日から六箇月間、前項各号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吸収分割株式会社の株主、債権者その他の利害関係人は、吸収分割株式会社に対して、そ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吸収分割株式会社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前項の書面の閲覧の請求

二 前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三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の請求

四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って吸収分割株式会社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4 前項の規定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中「吸収分割株式会社の株主、債権者その他の利害関係人」とあるのは、「効力発生日に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又は新株予約権者であった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③ 제1항에 따라 효력발생일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후의 효력발생일을 그 효력발생일로 보고 이 절 및 제750조, 제752조, 제759조, 제761조, 제769조 및 제77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91조 흡수분할 또는 주식교환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① 흡수분할주식회사 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는 효력발생일 후 지체없이 흡수분할승계회사 또는 주식교환완전모회사와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흡수분할주식회사 : 흡수분할에 의하여 흡수분할승계회사가 승계한 흡수분할주식회사의 권리의무 그밖의 흡수분할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 또는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
2. 주식교환완전자회사 : 주식교환에 의하여 주식교환완전모회사가 취득한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 또는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

② 흡수분할주식회사 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는 효력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전항 각호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주주,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흡수분할주식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흡수분할주식회사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전항의 서면의 열람 청구
2. 전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 청구
3.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에 관한 열람청구
4.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정함에 따라 제공하는 것에 관한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청구

④ 전항은 주식교환완전자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 중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주주, 채권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효력발생일에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 또는 신주예약권자이었던 자”로 본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第792条 剰余金の配当等に関する特則

第四百四十五条第四項、第四百五十八条及び第二編第五章第六節の規定は、次に掲げる行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 一 第七百五十八条第八号イ又は第七百六十条第七号イの株式の取得
- 二 第七百五十八条第八号ロ又は第七百六十条第七号ロの剰余金の配当

第2目 持分会社の手続

第793条

1 次に掲げる行為をする持分会社は、効力発生日の前日までに、吸収合併契約等について当該持分会社の総社員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吸収合併(吸収合併により当該持分会社が消滅する場合に限る。)
- 二 吸収分割(当該持分会社(合同会社に限る。))がその事業に関して有する権利義務の全部を他の会社に承継させる場合に限る。)

2 第七百八十九条(第一項第三号及び第二項第三号を除く。)及び第七百九十条の規定は、吸収合併消滅持分会社又は合同会社である吸収分割会社(以下この節において「吸収分割合同会社」という。)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七百八十九条第一項第二号中「債権者(第七百五十八条第八号又は第七百六十条第七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吸収分割株式会社の債権者)」とあるのは「債権者」と、同条第三項中「消滅株式会社等」とあるのは「吸収合併消滅持分会社(吸収合併存続会社が株式会社又は合同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合同会社に限る。)又は吸収分割合同会社」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2款 吸収合併存続会社、吸収分割承継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親会社の手続

第1目 株式会社の手続

第794条 吸収合併契約等に関する書面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1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又は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

제792조 잉여금의 배당 등에 관한 특칙

제445조 제4항, 제458조 및 제2편 제5장 제6절은 다음의 행위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58조 제8호 가목 또는 제760조 제7호 가목의 주식의 취득
2. 제758조 제8호 나목 또는 제760조 제7호 나목의 잉여금의 배당

제2목 지분회사의 절차

제793조

① 다음의 행위를 하는 지분회사는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흡수합병계약 등에 관하여 지분회사의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흡수합병(흡수합병에 의하여 지분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흡수분할(지분회사(합동회사에 한한다)가 그 사업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 무의 전부를 다른 회사에 승계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789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790조는 흡수합병 소멸지분회사 또는 합동회사인 흡수분할회사(이하 이 절에서는 “흡수분할합동회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9조 제1항 제2호 중 “채권자(제758조 제8호 또는 제760조 제7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채권자)”는 “채권자”로, 동조 제3항 중 “소멸주식회사 등”은 “흡수합병소멸지분회사(흡수합병존속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인 경우에는 합동회사에 한한다)또는 흡수분할합동회사”로 본다.

제2관 흡수합병존속회사, 흡수분할승계회사 및 주식교환완전모회사의 절차

제1목 주식회사의 절차

제794조 흡수합병계약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①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 또는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社(以下この目において「存続株式会社等」という。)は、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から効力発生日後六箇月を経過する日までの間、吸収合併契約等の内容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に規定する「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とは、次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早い日をいう。

一 吸収合併契約等について株主総会(種類株主総会を含む。)の決議によってそ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は、当該株主総会の日の二週間前の日(第三百十九条第一項の場合にあつては、同項の提案があつた日)

二 第七百九十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又は同条第四項の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

三 第七百九十九条の規定による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公告の日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

3 存続株式会社等の株主及び債権者(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が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株式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のみである場合(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四号ハに規定する場合を除く。)にあつては、株主)は、存続株式会社等に対して、そ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存続株式会社等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一項の書面の閲覧の請求

二 第一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三 第一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の請求

四 第一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つて存続株式会社等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第795条 吸収合併契約等の承認等

1 存続株式会社等は、効力発生日の前日までに、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吸収合併契約等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사(이하 이 목에서 “존속주식회사 등”이라고 한다)는 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로부터 효력발생일 후 6개월간 흡수합병계약 등의 내용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 또는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이란 다음의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1. 흡수합병계약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종류주주총회를 포함한다)의 결의에 의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간 전의 날(제319조 제1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제안이 있었던 날)
2. 제797조 제3항에 의한 통지일 또는 동조 제4항의 공고일 중 빠른 날
3. 제799조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때에는 동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 또는 동항에 의한 최고일 중 빠른 날

③ 존속주식회사 등의 주주 및 채권자(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이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뿐인 경우(제76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주주)는 존속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그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존속주식회사 등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서면의 열람 청구
2. 제1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 청구
3. 제1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의 열람 청구
4. 제1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존속주식회사 등의 정함에 따라 제공하는 것에 관한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청구

제795조 흡수합병계약 등의 인정 등

① 존속주식회사 등은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흡수합병계약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2 次に掲げる場合には、取締役は、前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その旨を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又は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が承継する吸収合併消滅会社又は吸収分割会社の債務の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額(次号において「承継債務額」という。)が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又は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が承継する吸収合併消滅会社又は吸収分割会社の資産の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額(同号において「承継資産額」という。))を超える場合

二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又は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が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吸収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又は吸収分割会社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又は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株式等を除く。)の帳簿価額が承継資産額から承継債務額を控除して得た額を超える場合

三 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が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株式等を除く。)の帳簿価額が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が取得する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式の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額を超える場合

3 承継する吸収合併消滅会社又は吸収分割会社の資産に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又は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株式が含まれる場合には、取締役は、第一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株式に関する事項を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存続株式会社等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吸収合併等は、当該各号に定める種類の株式(譲渡制限株式であって、第百九十九条第四項の定款の定めがないものに限る。)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当該種類株主に係る株式の種類が二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二以上の株式の種類別に区分された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各種類株主総会)の決議が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ただし、当該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株主が存し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又は吸収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が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株式である場合 第七百四十九条第一項第二号イの種類の株式

二 吸収分割会社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が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株式であ

②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는 전항의 주주총회에서 그 뜻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또는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가 승계하는 흡수합병소멸회사 또는 흡수분할회사의 채무액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가액(다음 호에서 “승계채무액”이라고 한다)이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또는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가 승계하는 흡수합병소멸회사 또는 흡수분할회사의 자산의 액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가액(동호에서 “승계자산액”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2.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또는 흡수분할 승계주식회사가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 흡수합병소멸지분회사의 사원 또는 흡수분할회사에 교부하는 금전 등(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또는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이 승계자산액에서 승계채무액을 공제하여 얻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가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등(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이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가 취득하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액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③ 승계하는 흡수합병소멸회사 또는 흡수분할회사의 자산에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또는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주식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사는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식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존속주식회사 등이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흡수합병 등은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종류주식(양도제한주식으로 제199조 제4항의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것에 한한다)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종류주주와 관련된 주식의 종류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2이상의 주식의 종류별로 구분된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각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종류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흡수합병소멸지분회사의 사원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이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주식인 경우 : 제74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종류주식
2. 흡수분할회사에 교부하는 금전 등이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주식인 경우 :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る場合 第七百五十八条第四号イの種類の株式

- 三 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が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株式である場合 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二号イの種類の株式

第796条 吸収合併契約等の承認を要しない場合等

1 前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は、吸収合併消滅会社、吸収分割会社又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以下この目において「消滅会社等」という。)が存続株式会社等の特別支配会社であ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ただし、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若しく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吸収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又は吸収分割会社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の全部又は一部が存続株式会社等の譲渡制限株式である場合であって、存続株式会社等が公開会社で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は、第一号に掲げる額の第二号に掲げる額に対する割合が五分の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存続株式会社等の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割合)を超えない場合には、適用しない。ただし、同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場合又は前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次に掲げる額の合計額

イ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若しく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吸収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又は吸収分割会社(以下この号において「消滅会社等の株主等」という。)に対して交付する存続株式会社等の株式の数に一株当たり純資産額を乗じて得た額

ロ 消滅会社等の株主等に対して交付する存続株式会社等の社債、新株予約権又は新株予約権付社債の帳簿価額の合計額

ハ 消滅会社等の株主等に対して交付する存続株式会社等の株式等以外の財産の帳簿価額の合計額

二 存続株式会社等の純資産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

3 前項本文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数の株式(前条第一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る。)を有する株主が第七百九十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同条第四項の公告の日から二週間以内に吸収合併等に反対する旨を存続株式会社等に対し通知したときは、当該存続株式会社等は、効力発生日の前日までに、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吸

제758조 제4호 가목의 종류주식

3.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이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식인 경우 : 제76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종류주식

제796조 흡수합병계약 등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① 전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흡수합병소멸회사, 흡수분할회사 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이하 이 목에서 “소멸회사 등”이라고 한다)가 존속주식회사 등의 특별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 흡수합병소멸지분회사의 사원 또는 흡수분할 회사에 교부하는 금전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속주식회사 등의 양도제한주식인 경우로 존속주식회사 등이 공개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제1호의 금액의 제2호의 금액에 대한 비율이 5분의 1(이것을 하회하는 비율을 존속주식회사 등의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동조 제2항 각 호의 경우 또는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금액의 합계액

- 가.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혹은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 흡수합병소멸 지분회사의 사원 또는 흡수분할회사(이하 이 호에서 “소멸회사등의 주주 등”이라고 한다)에 대해 교부하는 존속주식회사등의 주식의 수에 1주당 순자산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 나. 소멸회사등의 주주등에 대하여 교부하는 존속주식회사등의 사채, 신주 예약권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다. 소멸회사등의 주주등에 대해서 교부하는 존속주식회사등의 주식등 이외의 재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2. 존속주식회사등의 순자산액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

- ③ 전항 본문의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의 주식(전조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소유하는 주주가 제797조 제3항의 통지 또는 동조 제4항의 공고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흡수합병등에 반대하는 뜻을 존속주식회사등에 통지한 때에는 존속주식회사등은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흡수합병계약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収合併契約等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第796条の2 吸収合併等をやめることの請求

1 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存続株式会社等の株主が不利益を受け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存続株式会社等の株主は、存続株式会社等に対し、吸収合併等をやめ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前条第二項本文に規定する場合(第七百九十五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場合及び前条第一項ただし書又は第三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く。)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当該吸収合併等が法令又は定款に違反する場合
- 二 前条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第七百四十九条第一項第二号若しくは第三号、第七百五十八条第四号又は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二号若しくは第三号に掲げる事項が存続株式会社等又は消滅会社等の財産の状況その他の事情に照らして著しく不当であるとき。

第797条 反対株主の株式買取請求

1 吸収合併等をする場合には、反対株主は、存続株式会社等に対し、自己の有する株式を公正な価格で買い取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七百九十六条第二項本文に規定する場合(第七百九十五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場合及び第七百九十六条第一項ただし書又は第三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く。)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に規定する「反対株主」と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おける当該各号に定める株主をいう。

- 一 吸収合併等をするために株主総会(種類株主総会を含む。)の決議を要する場合 次に掲げる株主
 - イ 当該株主総会に先立って当該吸収合併等に反対する旨を当該存続株式会社等に対し通知し、かつ、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吸収合併等に反対した株主(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る。)
 - ロ 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
- 二 前号に規定する場合以外の場合 全ての株主(第七百九十六条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特別支配会社を除く。)
- 3 存続株式会社等は、効力発生日の二十日前までに、その株主(第七百九十六条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特別支配会社を除く。)に対し、吸収

제796조의2 흡수합병 등의 유지청구

① 다음의 경우 존속주식회사등의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존속주식회사등의 주주는 존속주식회사등에 대해 흡수합병등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조 제2항 본문의 경우(제795조 제2항 각 호의 경우 및 전조 제1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흡수합병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2. 전조 제1항 본문의 경우 제749조 제1항 제2호 혹은 제3호, 제758조 제4호 또는 제768조 제1항 제2호 혹은 제3호의 사항이 존속주식회사등 또는 소멸회사등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때

제797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① 흡수합병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는 존속주식회사등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796조 제2항 본문의 경우(제795조 제2항 각 호의 경우 및 제796조 제1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반대주주”란 다음 각호의 경우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1. 흡수합병 등을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종류주주총회를 포함한다)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 다음의 주주
 - 가. 주주총회에 앞서 흡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뜻을 존속주식회사 등에 통지하고 주주총회에서 흡수합병 등을 반대한 주주(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 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2. 전호 이외의 경우 : 모든 주주(제796조 제1항 본문의 경우 특별지배회사는 제외한다)
- ③ 존속주식회사등은 효력발생일의 20일전까지 주주(제796조 제1항 본문의 경우 특별지배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흡수합병등을 하는 뜻 및 소멸회사등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合併等をする旨並びに消滅会社等の商号及び住所(第七百九十五条第三項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吸収合併等をする旨、消滅会社等の商号及び住所並びに同項の株式に関す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次に掲げる場合には、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一 存続株式会社等が公開会社である場合

二 存続株式会社等が第七百九十五条第一項の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吸収合併契約等の承認を受けた場合

5 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以下この目において「株式買取請求」という。)は、効力発生日の二十日前の日から効力発生日の前日までの間に、その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株券が発行されている株式について株式買取請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株式の株主は、存続株式会社等に対し、当該株式に係る株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株券について第二百二十三条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た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7 株式買取請求をした株主は、存続株式会社等の承諾を得た場合に限り、その株式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8 吸収合併等を中止したときは、株式買取請求は、その効力を失う。

9 第百三十三条の規定は、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798条 株式の価格の決定等

1 株式買取請求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株式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株主と存続株式会社等との間に協議が調ったときは、存続株式会社等は、効力発生日から六十日以内にその支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株式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効力発生日から三十日以内に協議が調わないときは、株主又は存続株式会社等は、その期間の満了の日後三十日以内に、裁判所に対し、価格の決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条第七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効力発生日から六十日以内に同項の申立てがないときは、その期間の満了後は、株主は、いつでも、株式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제5장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의 절차

의 상호 및 주소(제795조 제3항의 경우에는 흡수합병등을 하는 뜻, 소멸회사등의 상호, 주소 및 동향의 주식에 관한 사항)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음의 경우 전항에 의한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존속주식회사 등이 공개회사인 경우
2. 존속주식회사 등이 제795조 제1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흡수합병계약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⑤ 제1항에 의한 청구(이하 이 목에서 “주식매수청구”라고 한다)는 효력발생일의 20일 전부터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주식의 수(종류 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⑥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에 관해 주식매수청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주주는 존속주식회사등에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에 관하여 제223조의 청구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는 존속주식회사등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⑧ 흡수합병등을 중지한 때에는 주식매수청구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⑨ 제133조는 주식매수청구와 관련된 주식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8조 주식의 가격결정 등

① 주식매수청구가 있었던 경우 주식의 가격결정에 관하여 주주와 존속주식회사등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존속주식회사 등은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 또는 존속주식회사 등은 그 기간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가격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경우 효력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동향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 후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 4 存続株式会社等は、裁判所の決定した価格に対する第一項の期間の満了の日後の年六分の利率により算定した利息をも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 5 存続株式会社等は、株式の価格の決定があるまでは、株主に対し、当該存続株式会社等が公正な価格と認める額を支払うことができる。
- 6 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買取りは、効力発生日に、その効力を生ずる。
- 7 株券発行会社は、株券が発行されている株式について株式買取請求があったときは、株券と引換えに、その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代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799条 債権者の異議

- 1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債権者は、存続株式会社等に対し、吸収合併等について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 一 吸収合併をする場合：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債権者
 - 二 吸収分割をする場合：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債権者
 - 三 株式交換をする場合において、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が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株式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のみである場合以外の場合又は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四号ハに規定する場合：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債権者
- 2 前項の規定により存続株式会社等の債権者が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存続株式会社等は、次に掲げる事項を官報に公告し、かつ、知れている債権者には、各別にこれを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四号の期間は、一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吸収合併等をする旨
 - 二 消滅会社等の商号及び住所
 - 三 存続株式会社等及び消滅会社等(株式会社に限る。)の計算書類に関する事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 四 債権者が一定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る旨
-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存続株式会社等が同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官報のほか、第九百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従い、同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公告方法によりす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よる各別の催告は、することを要しない。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제5장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의 절차

- ④ 존속주식회사 등은 법원이 결정한 가격에 대하여 제1항의 기간만료일 후부터 연6분의 이율로 산정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존속주식회사등은 주식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주에 대하여 존속주식회사등이 공정한 가격으로 판단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청구와 관련된 주식의 매수는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⑦ 주권발행회사는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식매수청구가 있던 때에는 주권과 교환하여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99조 채권자의 이익

- ① 다음 각호의 경우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채권자는 존속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흡수합병 등에 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
 - 1.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채권자
 - 2. 흡수분할을 하는 경우 :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채권자
 - 3.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로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등이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뿐인 경우 이외의 경우 또는 제76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경우 :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채권자
- ② 전항에 의하여 존속주식회사 등의 채권자가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존속주식회사 등은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히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기간은 1개월을 밑돌 수 없다.
 - 1. 흡수합병 등을 하는 뜻
 - 2. 소멸회사 등의 상호 및 주소
 - 3. 존속주식회사 등 및 소멸회사 등(주식회사에 한한다)의 계산서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 4.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존속주식회사 등이 동항에 의한 공고를 관보 외에 제939조 제1항에 의한 정관의 정함에 따라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공고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전항에 의한 각별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4 債権者が第二項第四号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なかったときは、当該債権者は、当該吸収合併等について承認をしたものとみなす。

5 債権者が第二項第四号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たときは、存続株式会社等は、当該債権者に対し、弁済し、若しくは相当の担保を提供し、又は当該債権者に弁済を受け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信託会社等に相当の財産を信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吸収合併等をしても当該債権者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800条 消滅会社等の株主等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が存続株式会社等の親会社株式である場合の特則

1 第百三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若しく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吸収合併消滅持分会社の社員又は吸収分割会社(以下この項において「消滅会社等の株主等」という。)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の全部又は一部が存続株式会社等の親会社株式(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親会社株式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である場合には、当該存続株式会社等は、吸収合併等の際して消滅会社等の株主等に対して交付する当該親会社株式の総数を超えない範囲において当該親会社株式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百三十五条第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の存続株式会社等は、効力発生日までの間は、存続株式会社等の親会社株式を保有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吸収合併等を中止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801条 吸収合併等に関する書面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1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は、効力発生日後遅滞なく、吸収合併により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が承継した吸収合併消滅会社の権利義務その他の吸収合併に関する事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合同会社が吸収分割を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に限る。)は、効力発生日後遅滞なく、吸収分割合同会社と共同して、吸収分割により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が承継した吸収分割合同会社の権利義務その他の吸収分割に関する事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④ 채권자가 제2항 제4호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흡수합병 등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⑤ 채권자가 제2항 제4호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존속주식회사 등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목적으로 신탁회사 등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흡수합병 등을 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0조 소멸회사 등의 주주 등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등이 존속주식회사 등의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 ① 제1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 흡수합병소멸지분회사의 사원 또는 흡수분할회사(이하 이 항에서 “소멸회사 등의 주주 등”이라고 한다)에 교부하는 금전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속주식회사 등의 모회사주식(동조 제1항의 모회사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존속주식회사 등은 흡수합병시 소멸회사 등의 주주 등에 교부하는 모회사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제13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존속주식회사 등은 효력발생일까지는 존속주식회사 등의 모회사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흡수합병 등을 중지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1조 흡수합병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 ①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 후 지체없이 흡수합병에 의하여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가 승계한 흡수합병소멸회사의 권리의무 및 흡수합병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합동회사가 흡수분할을 하는 경우의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에 한한다)는 효력발생일 후 지체없이 흡수분할합동회사와 공동으로 흡수분할에 의하여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가 승계한 흡수분할합동회사의 권리의무 그 밖의 흡수분할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3 次の各号に掲げる存続株式会社等は、効力発生日から六箇月間、当該各号に定めるもの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 第一項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

二 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 前項又は第七百九十一条第一項第一号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

三 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 第七百九十一条第一項第二号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

4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株主及び債権者は、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に対して、そ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前項第一号の書面の閲覧の請求

二 前項第一号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三 前項第一号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の請求

四 前項第一号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って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5 前項の規定は、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中「株主及び債権者」とあるのは「株主、債権者その他の利害関係人」と、同項各号中「前項第一号」とあるのは「前項第二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6 第四項の規定は、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中「株主及び債権者」とあるのは「株主及び債権者(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が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株式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のみである場合(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四号ハに規定する場合を除く。)) にあつては、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株主)」と、同項各号中「前項第一号」とあるのは「前項第三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제5장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의 절차

③ 다음 각호의 존속주식회사 등은 효력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
2.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 : 전항 또는 제791조 제1항 제1호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
3.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 : 제791조 제1항 제2호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

④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전항 제1호의 서면의 열람 청구
2. 전항 제1호의 서면의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 청구
3. 전항 제1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의 열람 청구
4. 전항 제1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정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의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청구

⑤ 전항은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 중 “주주 및 채권자”는 “주주,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동항 각호 중 “전항 제1호”는 “전항 제2호”로 본다.

⑥ 제4항은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 중 “주주 및 채권자”는 “주주 및 채권자(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이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제76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주)”로, 동항 각호 중 “전항 제1호”는 “전항 제3호”로 본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第2目 持分会社の手続

第802条

1 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持分会社(以下この条において「存続持分会社等」という。)は、当該各号に定める場合には、効力発生日の前日までに、吸収合併契約等について存続持分会社等の総社員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吸収合併(吸収合併により当該持分会社が存続する場合に限る。) 第七百五十一条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場合
- 二 吸収分割による他の会社がその事業に関して有する権利義務の全部又は一部の承継 第七百六十条第四号に規定する場合
- 三 株式交換による株式会社の発行済株式の全部の取得 第七百七十条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場合

2 第七百九十九条(第二項第三号を除く。)及び第八百条の規定は、存続持分会社等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七百九十九条第一項第三号中「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株式」とあるのは「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の持分」と、「場合又は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四号ハに規定する場合」とあるのは「場合」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3節 新設合併等の手続

第1款 新設合併消滅会社、新設分割会社及び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手続

第1目 株式会社の手続

第803条 新設合併契約等に関する書面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1 次の各号に掲げる株式会社(以下この目において「消滅株式会社等」という。)は、新設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から新設合併設立会社、新設分割設立会社又は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以下この目において「設立会社」という。)の成立の日後六箇月を経過する日(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にあつては、新設合併設立会社の成立の日)までの間、当該各号に定めるもの(以下この節において「新設合併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제5장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의 절차

제2목 지분회사의 절차

제802조

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지분회사(이하 이 조에서 “존속지분회사 등”이라고 한다)는 당해 각호의 경우에는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흡수합병계약 등에 관하여 존속지분회사 등의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흡수합병(흡수합병에 의하여 지분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75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2. 흡수분할에 따라 다른 회사가 그 사업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승계 : 제760조 제4호의 경우
3. 주식교환에 의한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의 취득 : 제77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② 제799조(제2항 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800조는 존속지분회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799조 제1항 제3호 중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식”은 “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의 지분”으로, “경우 또는 제76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경우”는 “경우”로 본다.

제3절 신설합병 등의 절차

제1관 신설합병소멸회사, 신설분할회사 및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절차

제1목 주식회사의 절차

제803조

신설합병계약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① 다음 각호의 주식회사(이하 이 목에서 “소멸주식회사 등”이라고 한다)는 신설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로부터 신설합병설립회사, 신설분할설립회사 또는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이하 이 목에서 “설립회사”라고 한다)의 성립일 후 6개월간(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신설합병설립회사의 성립일까지) 당해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신설합병계약 등”이라고 한다)의 내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契約等」という。)の内容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 新設合併契約
- 二 新設分割株式会社 新設分割計画
- 三 株式移転完全子会社 株式移転計画

2 前項に規定する「新設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とは、次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早い日という。

- 一 新設合併契約等について株主総会(種類株主総会を含む。)の決議によってそ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は、当該株主総会の日の二週間前の日(第三百十九条第一項の場合にあつては、同項の提案があつた日)
- 二 第八百六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るべき株主があるときは、同項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又は同条第四項の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
- 三 第八百八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るべき新株予約権者があるときは、同項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又は同条第四項の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
- 四 第八百十条の規定による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公告の日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
- 五 前各号に規定する場合以外の場合には、新設分割計画の作成の日から二週間を経過した日

3 消滅株式会社等の株主及び債権者(株式移転完全子会社にあつては、株主及び新株予約権者)は、消滅株式会社等に対して、そ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消滅株式会社等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第一項の書面の閲覧の請求
- 二 第一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 三 第一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の請求
- 四 第一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つて消滅株式会社等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제5장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의 절차

용 그 밖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 : 신설합병계약
2. 신설분할주식회사 : 신설분할계획
3. 주식이전완전자회사 : 주식이전계획

② 전항의 “신설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이란 다음의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1. 신설합병계약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종류주주총회를 포함한다)의 결의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의 날(제319조 제1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제안이 있었던 날)
2. 제806조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아야 하는 주주가 있는 때에는 동항에 의한 통지일 또는 동조 제4항의 공고일 중 빠른 날
3. 제808조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아야 하는 신주예약권자가 있는 때에는 동항에 의한 통지일 또는 동조 제4항의 공고일 중 빠른 날
4. 제810조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공고일 또는 동항의 최고일 중 빠른 날
5. 전 각호의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신설분할계획의 작성일로부터 2주간을 경과한 날

③ 소멸주식회사 등의 주주 및 채권자(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주주 및 신주예약권자)는 소멸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그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소멸주식회사 등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서면의 열람 청구
2. 제1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 청구
3. 제1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의 열람 청구
4. 제1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소멸주식회사 등의 정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의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청구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續

第804条 新設合併契約等の承認

- 1 消滅株式会社等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新設合併契約等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新設合併設立会社が持分会社である場合には、新設合併契約について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総株主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 3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又は株式移転完全子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又は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株主に対して交付する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又は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株式等の全部又は一部が譲渡制限株式等であるときは、当該新設合併又は株式移転は、当該譲渡制限株式等の割当てを受ける種類の株式(譲渡制限株式を除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当該種類株主に係る株式の種類が二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二以上の株式の種類別に区分された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各種類株主総会)の決議が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ただし、当該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株主が存し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4 消滅株式会社等は、第一項の株主総会の決議の日(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同項の総株主の同意を得た日) から二週間以内に、その登録株式質権者(次条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登録株式質権者を除く。)及び第八百八条第三項各号に定める新株予約権の登録新株予約権質権者に対し、新設合併、新設分割又は株式移転(以下この節において「新設合併等」という。)をする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5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第805条 新設分割計画の承認を要しない場合

前条第一項の規定は、新設分割により新設分割設立会社に承継させる資産の帳簿価額の合計額が新設分割株式会社の総資産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の五分の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新設分割株式会社の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を超えない場合には、適用しない。

제804조 신설합병계약 등의 승인

- ① 소멸주식회사 등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신설합병계약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설합병설립회사가 지분회사인 경우에는 신설합병계약에 관하여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 또는 주식이전완전자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 또는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신설합병 설립주식회사 또는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주식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제한주식등일 때에는 당해 신설합병 또는 주식이전은 양도제한주식등의 배정을 받는 종류주식(양도제한주식은 제외한다)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종류주주와 관련된 주식의 종류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주식의 종류별로 구분된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각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종류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소멸주식회사 등은 제1항의 주주총회결의일(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총주주의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그 등록주식질권자(다음 조의 경우 등록주식질권자는 제외한다) 및 제808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신주예약권의 등록신주예약권질권자에 대하여 신설합병, 신설분할 또는 주식이전(이하 이 절에서 “신설합병 등”이라고 한다)을 하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전항에 의한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805조 신설분할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조 제1항은 신설분할에 의하여 신설분할설립회사에 승계시키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총자산액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의 5분의 1(이보다 낮은 비율을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第805条の2 新設合併等をやめることの請求

新設合併等が法令又は定款に違反する場合において、消滅株式会社等の株主が不利益を受け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消滅株式会社等の株主は、消滅株式会社等に対し、当該新設合併等をやめ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前条に規定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806条 反対株主の株式買取請求

1 新設合併等をする場合(次に掲げる場合を除く。)には、反対株主は、消滅株式会社等に対し、自己の有する株式を公正な価格で買い取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第八百四条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

二 第八百五条に規定する場合

2 前項に規定する「反対株主」とは、次に掲げる株主をいう。

一 第八百四条第一項の株主総会(新設合併等をするために種類株主総会の決議を要す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種類株主総会を含む。)に先立って当該新設合併等に反対する旨を当該消滅株式会社等に対し通知し、かつ、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新設合併等に反対した株主(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る。)

二 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

3 消滅株式会社等は、第八百四条第一項の株主総会の決議の日から二週間以内に、その株主に対し、新設合併等をする旨並びに他の新設合併消滅会社、新設分割会社又は株式移転完全子会社(以下この節において「消滅会社等」という。)及び設立会社の商号及び住所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一項各号に掲げ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4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5 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以下この目において「株式買取請求」という。)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前項の公告をした日から二十日以内に、その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株券が発行されている株式について株式買取請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株式の株主は、消滅株式会社等に対し、当該株式に係る株券を提出しなければ

제805조의2 신설합병 등의 유지청구

신설합병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소멸주식회사등의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소멸주식회사등의 주주는 소멸주식회사등에 대하여 당해 신설합병등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6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① 신설합병 등을 하는 경우(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반대주주는 소멸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804조 제2항의 경우
2. 제805조의 경우

② 전항의 “반대주주”란 다음의 주주를 말한다.

1. 제804조 제1항의 주주총회(신설합병 등을 하기 위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주주총회를 포함한다)에 앞서 신설합병 등을 반대하는 뜻을 소멸주식회사 등에 통지하고 주주총회에서 신설합병 등을 반대한 주주(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③ 소멸주식회사 등은 제804조 제1항의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그 주주에 대하여 신설합병 등을 하는 뜻과 다른 신설합병소멸회사, 신설분할회사 또는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이하 이 절에서 “소멸회사 등”이라고 한다) 및 설립회사의 상호 및 주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항에 의한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청구(이하 이 목에서 “주식매수청구”라고 한다)는 제3항에 의한 통지 또는 전항의 공고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마다의 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⑥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에 관해 주식매수청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주주는 소멸주식회사등에 대해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권에 관해 제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ならない。ただし、当該株券について第二百二十三条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た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7 株式買取請求をした株主は、消滅株式会社等の承諾を得た場合に限り、その株式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8 新設合併等を中止したときは、株式買取請求は、その効力を失う。

9 第百三十三条の規定は、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807条 株式の価格の決定等

1 株式買取請求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株式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株主と消滅株式会社等(新設合併をする場合における新設合併設立会社の成立の日後にあっては、新設合併設立会社。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との間に協議が調ったときは、消滅株式会社等は、設立会社の成立の日から六十日以内にその支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株式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設立会社の成立の日から三十日以内に協議が調わないときは、株主又は消滅株式会社等は、その期間の満了の日後三十日以内に、裁判所に対し、価格の決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条第七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設立会社の成立の日から六十日以内に同項の申立てがないときは、その期間の満了後は、株主は、いつでも、株式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4 消滅株式会社等は、裁判所の決定した価格に対する第一項の期間の満了の日後の年六分の利率により算定した利息をも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消滅株式会社等は、株式の価格の決定があるまでは、株主に対し、当該消滅株式会社等が公正な価格と認める額を支払うことができる。

6 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買取りは、設立会社の成立の日、その効力を生ずる。

7 株券発行会社は、株券が発行されている株式について株式買取請求があったときは、株券と引換えに、その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代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808条 新株予約権買取請求

1 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消滅株式会社等の

223조의 청구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는 소멸주식회사등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주식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⑧ 신설합병등을 중지한 때에는 주식매수청구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⑨ 제133조는 주식매수청구와 관련된 주식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807조 주식의 가격결정 등

① 주식매수청구가 있었던 경우 주식가격결정에 관하여 주주와 소멸주식회사 등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신설합병설립회사의 성립일 후에는 신설합병설립회사.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소멸주식회사 등은 설립회사의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주식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설립회사의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 또는 소멸주식회사 등은 그 기간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가격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경우 설립회사의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후에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소멸주식회사 등은 법원에서 결정한 가격에 대하여 제1항의 기간만료일 후부터 연 6푼의 이율로 산정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소멸주식회사등은 주식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주에 대하여 소멸주식회사등이 공정한 가격으로 판단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청구에 관련된 주식의 매수는 설립회사의 성립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주권발행회사는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식매수청구가 있던 때에는 주권과 교환하여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08조 신주예약권매수청구

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소멸주식회사 등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消滅株式会社等に対し、自己の有する新株予約権を公正な価格で買い取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一 新設合併：第七百五十三条第一項第十号又は第十一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八号の条件(同号イに関するものに限る。)に合致する新株予約権以外の新株予約権

二 新設分割(新設分割設立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限る。)：次に掲げる新株予約権のうち、第七百六十三条第十号又は第十一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八号の条件(同号ハに関するものに限る。)に合致する新株予約権以外の新株予約権

イ 新設分割計画新株予約権

ロ 新設分割計画新株予約権以外の新株予約権であって、新設分割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を交付することとする旨の定めがあるもの

三 株式移転：次に掲げる新株予約権のうち、第七百七十三条第一項第九号又は第十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八号の条件(同号ホに関するものに限る。)に合致する新株予約権以外の新株予約権

イ 株式移転計画新株予約権

ロ 株式移転計画新株予約権以外の新株予約権であって、株式移転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新株予約権を交付することとする旨の定めがあるもの

2 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以下この目において「新株予約権買取請求」という。)をするときは、併せて、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を買い取ること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3 次の各号に掲げる消滅株式会社等は、第八百四条第一項の株主総会の決議の日(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同項の総株主の同意を得た日、第八百五条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新設分割計画の作成の日) から二週間以内に、当該各号に定める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新設合併等をする旨並びに他の消滅会社等及び設立会社の商号及び住所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全部の新株予約権

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소멸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신주예약권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신설합병 : 제753조 제1항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제236조 제1항 제8호의 조건(동호 가목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합치하는 신주예약권 이외의 신주예약권

2. 신설분할(신설분할설립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 다음의 신주예약권 중 제763조 제1항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제236조 제1항 제8호의 조건(동호 다목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합치하는 신주예약권 이외의 신주예약권

가. 신설분할계획신주예약권

나. 신설분할계획신주예약권 이외의 신주예약권으로서 신설분할을 하는 경우에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교부하기로 한 정함이 있는 것

3. 주식이전 : 다음의 신주예약권 중 제773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10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제236조 제1항 제8호의 조건(동호 라목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합치하는 신주예약권 이외의 신주예약권

가. 주식이전계획신주예약권

나. 주식이전계획신주예약권 이외의 신주예약권으로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신주예약권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것

②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전항에 의한 청구(이하 이 목에서 “신주예약권매수청구”라고 한다)를 하는 때에는 아울러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호의 소멸주식회사 등은 제804조 제1항의 주주총회결의일(동조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총주주의 동의를 얻은 날, 제805조의 경우에는 신설분할계획의 작성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 대하여 신설합병 등을 하는 뜻과 다른 소멸회사 등 또는 설립회사의 상호 및 주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 : 신주예약권 전부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 二 新設分割設立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ける新設分割株式会社：次に掲げる新株予約権
 - イ 新設分割計画新株予約権
 - ロ 新設分割計画新株予約権以外の新株予約権であって、新設分割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を交付することとする旨の定めがあるもの
- 三 株式移転完全子会社：次に掲げる新株予約権
 - イ 株式移転計画新株予約権
 - ロ 株式移転計画新株予約権以外の新株予約権であって、株式移転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新株予約権を交付することとする旨の定めがあるもの
- 4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 5 新株予約権買取請求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前項の公告をした日から二十日以内に、その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の内容及び数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6 新株予約権証券が発行されている新株予約権について新株予約権買取請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消滅株式会社等に対し、その新株予約権証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新株予約権証券について非訟事件手続法第百十四条に規定する公示催告の申立てをした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7 新株予約権付社債券が発行されている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新株予約権買取請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は、消滅株式会社等に対し、その新株予約権付社債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券について非訟事件手続法第百十四条に規定する公示催告の申立てをした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8 新株予約権買取請求をした新株予約権者は、消滅株式会社等の承諾を得た場合に限り、その新株予約権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 9 新設合併等を中止したときは、新株予約権買取請求は、その効力を失う。
- 10 第二百六十条の規定は、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2. 신설분할설립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의 신설분할주식회사 : 다음의 신주
예약권

가. 신설분할계획신주예약권

나. 신설분할계획신주예약권 이외의 신주예약권으로 신설분할을 하는 경우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것

3. 주식이전완전자회사 : 다음의 신주예약권

가. 주식이전계획신주예약권

나. 주식이전계획신주예약권 이외의 신주예약권으로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신주예약권
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는 뜻의 정함이 있는 것

④ 전항에 의한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신주예약권매수청구는 제3항에 의한 통지 또는 전항의 공고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신주예약권매수청구에 관한 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를 명확
하게 하여야 한다.

⑥ 신주예약권증권이 발행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신주예약권매수청구를 하
려고 할 때에는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는 소멸주식회사등에 대하여 신주
예약권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예약권증권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
법 제114조의 공시최고의 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이 발행된 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신주예약권매수청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
는 소멸주식회사등에 대하여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
주예약권부사채권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14조의 공시최고의 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신주예약권매수청구를 한 신주예약권자는 소멸주식회사등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신주예약권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⑨ 신설합병등을 중지한 때 신주예약권매수청구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⑩ 제260조는 신주예약권매수청구에 관련된 신주예약권에 관해서는 적용하
지 않는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續

第809条 新株予約権の価格の決定等

- 1 新株予約権買取請求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新株予約権(当該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買取り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当該社債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新株予約権者と消滅株式会社等(新設合併をする場合における新設合併設立会社の成立の日後にあっては、新設合併設立会社。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との間に協議が調ったときは、消滅株式会社等は、設立会社の成立の日から六十日以内にその支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新株予約権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設立会社の成立の日から三十日以内に協議が調わないときは、新株予約権者又は消滅株式会社等は、その期間の満了の日後三十日以内に、裁判所に対し、価格の決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 3 前条第八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設立会社の成立の日から六十日以内に同項の申立てがないときは、その期間の満了後は、新株予約権者は、いつでも、新株予約権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 4 消滅株式会社等は、裁判所の決定した価格に対する第一項の期間の満了の日後の年六分の利率により算定した利息をも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 5 消滅株式会社等は、新株予約権の価格の決定があるまでは、新株予約権者に対し、当該消滅株式会社等が公正な価格と認める額を支払うことができる。
- 6 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の買取りは、設立会社の成立の日に、その効力を生ずる。
- 7 消滅株式会社等は、新株予約権証券が発行されている新株予約権について新株予約権買取請求があったときは、新株予約権証券と引換えに、その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の代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 8 消滅株式会社等は、新株予約権付社債券が発行されている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について新株予約権買取請求があったときは、新株予約権付社債券と引換えに、その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の代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810条 債権者の異議

- 1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債権者は、消滅株式会社等に対し、新設合併等について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제809조 신주예약권의 가격결정 등

- ① 신주예약권매수청구가 있었던 경우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 부사채에 부착된 것인 경우 그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의 매수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그 사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결정에 관하여 신주예약권자와 소멸주식회사 등(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신설합병설립회사의 성립일 후에는 신설합병설립회사.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소멸주식회사 등은 설립회사의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신주예약권의 가격결정에 관하여 설립회사의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예약권자 또는 소멸주식회사 등은 그 기간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가격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전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경우 설립회사의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후에 신주예약권자는 언제든지 신주예약권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소멸주식회사 등은 법원이 결정한 가격에 대하여 제1항의 기간만료일 후부터 연 6푼의 이율로 산정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소멸주식회사등은 신주예약권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주예약권자에 대하여 소멸주식회사등이 공정한 가격으로 판단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신주예약권매수청구에 관련된 신주예약권의 매수는 설립회사의 성립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⑦ 소멸주식회사등은 신주예약권증권이 발행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신주예약권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예약권증권과 교환하여 신주예약권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소멸주식회사등은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이 발행된 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신주예약권매수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권과 교환하여 신주예약권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10조 채권자의 이익

-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채권자는 소멸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신설합병 등에 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續

- 一 新設合併をする場合：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債権者
- 二 新設分割をする場合 新設分割後新設分割株式会社に対して債務の履行（当該債務の保証人として新設分割設立会社と連帯して負担する保証債務の履行を含む。）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新設分割株式会社の債権者（第七百六十三条第一項第十二号又は第七百六十五条第一項第八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新設分割株式会社の債権者）
- 三 株式移転計画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である場合：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権者
- 2 前項の規定により消滅株式会社等の債権者の全部又は一部が異議を述べるのできる場合には、消滅株式会社等は、次に掲げる事項を官報に公告し、かつ、知れている債権者（同項の規定により異議を述べるのできるものに限る。）には、各別にこれを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四号の期間は、一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新設合併等をする旨
 - 二 他の消滅会社等及び設立会社の商号及び住所
 - 三 消滅株式会社等の計算書類に関する事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 四 債権者が一定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るのできる旨
-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消滅株式会社等が同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官報のほか、第九百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従い、同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公告方法によりす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よる各別の催告（新設分割をする場合における不法行為によって生じた新設分割株式会社の債務の債権者に対するものを除く。）は、することを要しない。
- 4 債権者が第二項第四号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なかつたときは、当該債権者は、当該新設合併等について承認をしたものとみなす。
- 5 債権者が第二項第四号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たときは、消滅株式会社等は、当該債権者に対し、弁済し、若しくは相当の担保を提供し、又は当該債権者に弁済を受け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信託会社等に相当の財産を信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新設合併等をして当該債権者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제5장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의 절차

1.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채권자
 2. 신설분할을 하는 경우 : 신설분할후신설분할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신설분할설립회사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청구할 수 없는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채권자(제76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765조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채권자)
 3. 주식이전계획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인 경우 :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권자
- ② 전항에 의하여 소멸주식회사 등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멸주식회사 등은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동항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게는 각별히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기간은 1개월을 밑돌 수 없다.

1. 신설합병 등을 하는 뜻
 2. 다른 소멸회사 등 및 설립회사의 상호 및 주소
 3. 소멸주식회사 등의 계산서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4.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소멸주식회사 등이 동항에 의한 공고를 관보 외에 제939조 제1항에 의하여 정관의 정함에 따라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공고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전항에 의한 각별의 최고(신설분할을 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채무의 채권자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를 아니하여도 된다.
- ④ 채권자가 제2항 제4호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신설합병 등에 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⑤ 채권자가 제2항 제4호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소멸주식회사 등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목적으로 신탁회사 등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합병 등을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續

第811条 新設分割又は株式移転に関する書面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1 新設分割株式会社又は株式移転完全子会社は、新設分割設立会社又は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成立の日後遅滞なく、新設分割設立会社又は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と共同して、次の各号に掲げる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もの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新設分割株式会社：新設分割により新設分割設立会社が承継した新設分割株式会社の権利義務その他の新設分割に関する事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
- 二 株式移転完全子会社：株式移転により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が取得した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株式の数その他の株式移転に関する事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

2 新設分割株式会社又は株式移転完全子会社は、新設分割設立会社又は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成立の日から六箇月間、前項各号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新設分割株式会社の株主、債権者その他の利害関係人は、新設分割株式会社に対して、そ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新設分割株式会社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前項の書面の閲覧の請求
 - 二 前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 三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の請求
 - 四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つて新設分割株式会社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 4 前項の規定は、株式移転完全子会社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中「新設分割株式会社の株主、債権者その他の利害関係人」とあるのは、「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成立の日に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株主又は新株予約権者であった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812条 剰余金の配当等に関する特則

第四百四十五条第四項、第四百五十八条及び第二編第五章第六節の規定は、次

제811조 신설분할 또는 주식이전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① 신설분할주식회사 또는 주식이전완전자회사는 신설분할설립회사 또는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성립일 후 지체없이 신설분할설립회사 또는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와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설분할주식회사 : 신설분할에 의하여 신설분할설립회사가 승계한 신설분할주식회사의 권리의무 그 밖의 신설분할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
2. 주식이전완전자회사 : 주식이전에 의하여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가 취득한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그 밖의 주식이전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

② 신설분할주식회사 또는 주식이전완전자회사는 신설분할설립회사 또는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성립일로부터 6개월간 전항 각호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주주, 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신설분할주식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신설분할주식회사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전항의 서면의 열람 청구
 2. 전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 청구
 3.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의 열람 청구
 4.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정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의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청구
- ④ 전항은 주식이전완전자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 중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주주, 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성립일에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주주 또는 신주예약권자이었던 자”로 본다.

제812조 잉여금의 배당 등에 관한 특칙

제445조 제4항, 제458조 및 제2편 제5장 제6절의 규정은 다음의 행위에 관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に掲げる行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 一 第七百六十三条第一項第十二号イ又は第七百六十五条第一項第八号イの株式の取得
- 二 第七百六十三条第一項第十二号ロ又は第七百六十五条第一項第八号ロの剰余金の配当

第2目 持分会社の手続

第813条

1 次に掲げる行為をする持分会社は、新設合併契約等について当該持分会社の総社員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新設合併
- 二 新設分割(当該持分会社(合同会社に限る。)がその事業に関して有する権利義務の全部を他の会社に承継させる場合に限る。)

2 第八百十条(第一項第三号及び第二項第三号を除く。)の規定は、新設合併消滅持分会社又は合同会社である新設分割会社(以下この節において「新設分割合同会社」という。)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一項第二号中「債権者(第七百六十三条第一項第十二号又は第七百六十五条第一項第八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新設分割株式会社の債権者)」とあるのは「債権者」と、同条第三項中「消滅株式会社等」とあるのは「新設合併消滅持分会社(新設合併設立会社が株式会社又は合同会社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合同会社に限る。))又は新設分割合同会社」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2款 新設合併設立会社、 新設分割設立会社及び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手続

第1目 株式会社の手続

第814条 株式会社の設立の特則

1 第二編第一章(第二十七条(第四号及び第五号を除く。)、第二十九条、第三十一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제5장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의 절차

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63조 제1항 제12호 가목 또는 제765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주식의 취득
2. 제763조 제1항 제12호 나목 또는 제765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잉여금의 배당

제2목 지분회사의 절차

제813조

① 다음의 행위를 하는 지분회사는 신설합병계약 등에 관하여 그 지분회사의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설합병
 2. 신설분할(지분회사(합동회사에 한한다)가 그 사업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 무의 전부를 다른 회사에 승계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제810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는 제외한다)는 신설합병소멸지분회사 또는 합동회사인 신설분할회사(이하 이 절에서 “신설분할합동회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2호 중 “채권자(제76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765조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채권자)”는 “채권자”로, 동조 제3항 중 “소멸주식회사등”은 “신설합병소멸지분회사(신설합병설립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인 경우에 합동회사에 한한다) 또는 신설분할합동회사”로 한다.

제2관 신설합병설립회사,
신설분할설립회사 및 주식이전설립 완전모회사의 절차

제1목 주식회사의 절차

제814조 **주식회사설립의 특칙**

- ① 제2편 제1장(제27조(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제29조, 제31조, 제37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条、第三十七条第三項、第三十九条、第六節及び第四十九条を除く。)の規定は、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又は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以下この目において「設立株式会社」という。)の設立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2 設立株式会社の定款は、消滅会社等が作成する。

第815条 新設合併契約等に関する書面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1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は、その成立の日後遅滞なく、新設合併により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が承継した新設合併消滅会社の権利義務その他の新設合併に関する事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一又は二以上の合同会社のみが新設分割を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に限る。)は、その成立の日後遅滞なく、新設分割合同会社と共同して、新設分割により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が承継した新設分割合同会社の権利義務その他の新設分割に関する事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次の各号に掲げる設立株式会社は、その成立の日から六箇月間、当該各号に定めるもの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 第一項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及び新設合併契約の内容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

二 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 前項又は第八百十一条第一項第一号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

三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 第八百十一条第一項第二号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

4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株主及び債権者は、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に対して、そ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前項第一号の書面の閲覧の請求

二 前項第一号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三 前項第一号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

조 제3항, 제39조, 제6절 및 제49조는 제외한다)은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 또는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이하 이 목에서 “설립주식회사”라고 한다)의 설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설립주식회사의 정관은 소멸회사 등이 작성한다.

제815조 신설합병계약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①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는 그 성립일 후 지체없이 신설합병에 의하여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가 승계한 신설합병소멸회사의 권리의무 그 밖의 신설합병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1 또는 2이상의 합동회사만이 신설분할을 하는 경우 그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에 한한다)는 그 성립일 후 지체없이 신설분할합동회사와 공동으로 신설분할에 의하여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가 승계한 신설분할합동회사의 권리의무 그 밖의 신설분할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설립주식회사는 그 성립일로부터 6개월간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 :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 및 신설합병계약의 내용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
2.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 : 전항 또는 제811조 제1항 제1호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
3.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 : 제811조 제1항 제2호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

④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전항 제1호의 서면의 열람 청구
2. 전항 제1호의 서면의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 청구
3. 전항 제1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表示したものの閲覧の請求

四 前項第一号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って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5 前項の規定は、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中「株主及び債権者」とあるのは「株主、債権者その他の利害関係人」と、同項各号中「前項第一号」とあるのは「前項第二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6 第四項の規定は、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中「株主及び債権者」とあるのは「株主及び新株予約権者」と、同項各号中「前項第一号」とあるのは「前項第三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2目 持分会社の手続

第816条 持分会社の設立の特則

1 第五百七十五条及び第五百七十八条の規定は、新設合併設立持分会社又は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次項において「設立持分会社」という。)の設立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2 設立持分会社の定款は、消滅会社等が作成する。

第4節 株式交付の手続

第816条の2 株式交付計画に関する書面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1 株式交付親会社は、株式交付計画備置開始日から株式交付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以下この節において「効力発生日」という。)後六箇月を経過する日までの間、株式交付計画の内容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に規定する「株式交付計画備置開始日」とは、次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早い日をいう。

一 株式交付計画について株主総会(種類株主総会を含む。)の決議によってそ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は、当該株主総会の日の二週間前の日(第三百十九条第一項の場合にあつては、同項の提案があった日)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제5장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의 절차

하여 표시한 것의 열람 청구

4. 전항 제1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신설합병설립 주식회사의 정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의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청구

⑤ 전항은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 중 “주주 및 채권자”는 “주주, 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동항 각호 중 “전항 제1호”는 “전항 제2호”로 본다.

⑥ 제4항은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 중 “주주 및 채권자”는 “주주 및 신주예약권자”로, 동항 각 중 “전항 제1호”는 “전항 제3호”로 본다.

제2목 지분회사의 절차

제816조 지분회사설립의 특칙

① 제575조 및 제578조는 신설합병설립지분회사 또는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다음 항에서 “설립지분회사”라고 한다)의 설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설립지분회사의 정관은 소멸회사 등이 작성한다.

제4절 주식교부의 절차

제816조의2 주식교부계획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① 주식교부모회사는 주식교부계획비치개시일로부터 주식교부가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하 이 절에서 ‘효력발생일’이라 한다)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주식교부계획의 내용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주식교부계획비치개시일’이란 다음의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1. 주식교부계획에 관해 주주총회(종류주주총회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때에는 해당 주주총회일의 2주 전의 날(제319조 제1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제안이 있었던 날)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二 第八百十六条の六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又は同条第四項の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

三 第八百十六条の八の規定による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公告の日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

3 株式交付親会社の株主(株式交付に際して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及び新株予約権等の譲渡人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を除く。))が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に準ず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のみである場合以外の場合にあっては、株主及び債権者)は、株式交付親会社に対して、そ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株式交付親会社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一項の書面の閲覧の請求

二 第一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三 第一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の請求

四 第一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って株式交付親会社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第816条の3 株式交付計画の承認等

1 株式交付親会社は、効力発生日の前日までに、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株式交付計画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株式交付親会社が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及び新株予約権等の譲渡人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等を除く。)の帳簿価額が株式交付親会社が譲り受ける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及び新株予約権等の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額を超える場合には、取締役は、前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その旨を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株式交付親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ときは、株式交付は、当該各号に定める種類の株式(譲渡制限株式であって、第九十九条第四項の定款の定めがないものに限る。)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当該種類株主に係る株式の種類が二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

2. 제816조의 6 제3항의 통지일 또는 동조 제4항의 공고일 중 빠른 날
3. 제816조의 8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공고일 또는 동항의 최고일 중 빠른 날
- ③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주(주식교부 시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및 신주예약권 등의 양도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이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뿐인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주주 및 채권자)는 주식교부모회사에 대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주식교부모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서면 열람 청구
 2. 제1항의 서면 등본 또는 초본 교부 청구
 3. 제1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의 열람 청구
 4. 제1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주식교부모회사가 정한 것에 따라 제공할 것의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교부의 청구

제816조의3 주식교부계획의 승인 등

- ① 주식교부모회사는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교부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주식교부모회사가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및 신주예약권 등의 양도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이 주식교부모회사가 양수하는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및 신주예약권 등의 금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전항의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주식교부모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교부는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주식(양도제한주식으로서 제199조 제4항의 정관 규정이 없는 것에 한한다)의 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종류주주와 관련된 주식의 종류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둘 이상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二以上の株式の種類別に区分された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各種類株主総会)の決議が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ただし、当該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株主が存し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人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が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であるとき 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三号の種類の株式
- 二 株式交付子会社の新株予約権等の譲渡人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が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であるとき 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八号イの種類の株式

第816条の4 株式交付計画の承認を要しない場合等

1 前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は、第一号に掲げる額の第二号に掲げる額に対する割合が五分の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株式交付親会社の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を超えない場合には、適用しない。ただし、同項に規定する場合又は株式交付親会社が公開会社でない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次に掲げる額の合計額

イ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及び新株予約権等の譲渡人に対して交付する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の数に一株当たり純資産額を乗じて得た額

ロ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及び新株予約権等の譲渡人に対して交付する株式交付親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又は新株予約権付社債の帳簿価額の合計額

ハ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及び新株予約権等の譲渡人に対して交付する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等以外の財産の帳簿価額の合計額

二 株式交付親会社の純資産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

2 前項本文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数の株式(前条第一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る。)を有する株主が第八百十六条の六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同条第四項の公告の日から二週間以内に株式交付に反対する旨を株式交付親会社に対し通知したときは、当該株式交付親会社は、効力発生日の前日までに、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株式交付計画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의 주식의 종류별로 구분된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각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종류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양도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이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인 때: 제774조의 3 제1항 제3호의 종류주식
2. 주식교부자회사의 신주예약권 등의 양도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이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인 때: 제774조의 3 제1항 제8호 가목의 종류주식

제816조의4 주식교부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 등

① 전조 제1항 및 제2항은 제1호 금액의 제2호 금액에 대한 비율이 5분의 1(이를 하회하는 비율을 주식교부모회사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또는 주식교부모회사가 공개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금액의 합계액

가.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및 신주예약권 등의 양도인에게 교부하는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수에 1주당 순자산액을 곱한 금액

나.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및 신주예약권 등의 양도인에게 교부하는 주식교부모회사의 사채, 신주예약권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다.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및 신주예약권 등의 양도인에게 교부하는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 등 이외의 재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2. 주식교부모회사의 순자산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되는 금액

② 전항 본문의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주식(전조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보유하는 주주가 제816조의 6 제3항의 통지 또는 동조 제4항의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주식교부에 반대하는 취지를 주식교부모회사에 통지한 때에는 주식교부모회사는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교부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續

第816条の5 株式交付をやめることの請求

株式交付が法令又は定款に違反する場合において、株式交付親会社の株主が不利益を受け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株式交付親会社の株主は、株式交付親会社に対し、株式交付をやめ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前条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場合(同項ただし書又は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く。)は、この限りでない。

第816条の6 反対株主の株式買取請求

1 株式交付をする場合には、反対株主は、株式交付親会社に対し、自己の有する株式を公正な価格で買い取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八百十六条の四第一項本文に規定する場合(同項ただし書又は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く。)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に規定する「反対株主」と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おける当該各号に定める株主をいう。

一 株式交付をするために株主総会(種類株主総会を含む。)の決議を要する場合
次に掲げる株主

イ 当該株主総会に先立って当該株式交付に反対する旨を当該株式交付親会社に対し通知し、かつ、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株式交付に反対した株主(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る。)

ロ 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全ての株主

3 株式交付親会社は、効力発生日の二十日前までに、その株主に対し、株式交付をする旨並びに株式交付子会社の商号及び住所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次に掲げる場合には、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公告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一 株式交付親会社が公開会社である場合

二 株式交付親会社が第八百十六条の三第一項の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株式交付計画の承認を受けた場合

5 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以下この節において「株式買取請求」という。)は、効力発生日の二十日前の日から効力発生日の前日までの間に、その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제816조의5 주식교부 유지청구

주식교부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주는 주식교부모회사에 대해 주식교부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경우(동항 단서 또는 동조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6조의6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① 주식교부를 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는 주식교부모회사에 대해 자기가 가진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816조의 4 제1항 본문의 경우(동항 단서 또는 동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반대주주'란 다음 각호의 경우 해당 각호에서 규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1. 주식교부를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종류주주총회를 포함한다)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다음의 주주

가. 주주총회에 앞서 주식교부에 반대하는 취지를 주식교부모회사에게 통지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식교부에 반대한 주주(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나. 해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2. 전호 이외의 경우: 모든 주주

③ 주식교부모회사는 효력발생일 20일 전까지 그 주주에게 주식교부를 하는 취지와 주식교부자회사의 상호 및 주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주식교부모회사가 공개회사인 경우

2. 주식교부모회사가 제816조의 3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교부 계획에 관해 승인을 받은 경우

⑤ 제1항의 청구(이하 이 절에서 '주식매수청구'라 한다)는 효력발생일 20일 전의 날로부터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해당 주식매수청구와 관련된 주식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를 밝혀야 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株券が発行されている株式について株式買取請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株式の株主は、株式交付親会社に対し、当該株式に係る株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株券について第二百二十三条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た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7 株式買取請求をした株主は、株式交付親会社の承諾を得た場合に限り、その株式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8 株式交付を中止したときは、株式買取請求は、その効力を失う。

9 第百三十三条の規定は、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816条の7 株式の価格の決定等

1 株式買取請求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株式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株主と株式交付親会社との間に協議が調ったときは、株式交付親会社は、効力発生日から六十日以内にその支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株式の価格の決定について、効力発生日から三十日以内に協議が調わないときは、株主又は株式交付親会社は、その期間の満了の日後三十日以内に、裁判所に対し、価格の決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条第七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効力発生日から六十日以内に同項の申立てがないときは、その期間の満了後は、株主は、いつでも、株式買取請求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4 株式交付親会社は、裁判所の決定した価格に対する第一項の期間の満了の日後の法定利率による利息をも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5 株式交付親会社は、株式の価格の決定があるまでは、株主に対し、当該株式交付親会社が公正な価格と認める額を支払うことができる。

6 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買取りは、効力発生日に、その効力を生ずる。

7 株券発行会社は、株券が発行されている株式について株式買取請求があったときは、株券と引換えに、その株式買取請求に係る株式の代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816条の8 債権者の異議

1 株式交付に際して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及び新株予約権等の譲渡人に対し

- ⑥ 주권이 발행되고 있는 주식에 관해 주식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주식의 주주는 주식교부모회사에 해당 주식과 관련된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권에 관해 제223조의 청구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는 주식교부모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주식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⑧ 주식교부를 중지한 때에는 주식매수청구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⑨ 제133조는 주식매수청구와 관련된 주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16조의7 주식의 가격결정 등

- ① 주식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주식가격의 결정에 관해 주주와 주식교부모회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주식교부모회사는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 ② 주식가격 결정에 대하여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 또는 주식교부모회사는 그 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가격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전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후에는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주식교부모회사는 법원이 결정한 가격에 대한 제1항의 기간 만료일 후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주식교부모회사는 주식가격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주에게 주식교부모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인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청구와 관련된 주식매수는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⑦ 주권발행회사는 주권이 발행되고 있는 주식에 관해 주식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권과 교환하여 그 주식매수청구와 관련된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16조의8 채권자의 이익

- ① 주식교부 시에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및 신주예약권 등의 양도인에게 교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続

て交付する金銭等(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を除く。)が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に準ず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のみである場合以外の場合には、株式交付親会社の債権者は、株式交付親会社に対し、株式交付について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株式交付親会社の債権者が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株式交付親会社は、次に掲げる事項を官報に公告し、かつ、知っている債権者には、各別にこれを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四号の期間は、一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株式交付をする旨
- 二 株式交付子会社の商号及び住所
- 三 株式交付親会社及び株式交付子会社の計算書類に関する事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 四 債権者が一定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旨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式交付親会社が同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官報のほか、第九百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従い、同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公告方法によりす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よる各別の催告は、することを要しない。

4 債権者が第二項第四号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なかったときは、当該債権者は、当該株式交付について承認をしたものとみなす。

5 債権者が第二項第四号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たときは、株式交付親会社は、当該債権者に対し、弁済し、若しくは相当の担保を提供し、又は当該債権者に弁済を受け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信託会社等に相当の財産を信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株式交付をしても当該債権者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816条の9 株式交付の効力発生日の変更

- 1 株式交付親会社は、効力発生日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る変更後の効力発生日は、株式交付計画において定めた当初の効力発生日から三箇月以内の日でなければならない。
- 3 第一項の場合には、株式交付親会社は、変更前の効力発生日(変更後の効力発生日が変更前の効力発生日前の日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変更後の効力発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제5장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의 절차

부하는 금전 등(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이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만인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주식교부모회사의 채권자는 주식교부모회사에게 지분교부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주식교부모회사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부모회사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이를 최고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기간은 1개월을 하회할 수 없다.

1. 주식교부를 하는 뜻
2. 주식교부자회사의 상호 및 주소
3. 주식교부모회사 및 주식교부자회사의 계산서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4.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뜻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교부모회사가 동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관보 외에 제939조 제1항의 정관의 정함에 따라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공고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전항의 최고는 요하지 아니한다.

④ 채권자가 제2항 제4호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주식교부에 관해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채권자가 제2항 제4호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주식교부모회사는 해당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신탁회사 등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부를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6조의9 주식교부 효력발생일의 변경

- ① 주식교부모회사는 효력발생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변경 후의 효력발생일은 주식교부계획에서 정한 애초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날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주식교부모회사는 변경전 효력발생일(변경후 효력발생일이 변경전 효력발생일의 전일인 경우에는 해당 변경후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の手續

日)の前日まで、変更後の効力発生日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規定により効力発生日を変更したときは、変更後の効力発生日を効力発生日とみなして、この節(第二項を除く。)及び前章(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十一号を除く。)の規定を適用する。

5 株式交付親会社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効力発生日の変更をする場合には、当該変更と同時に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十号の期日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6 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十号の期日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四項中「この節(第二項を除く。)及び前章(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十一号を除く。)」とあるのは、「第七百七十四条の四、第七百七十四条の十及び前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816条の10 株式交付に関する書面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1 株式交付親会社は、効力発生日後遅滞なく、株式交付に際して株式交付親会社が譲り受けた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数その他の株式交付に関する事項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株式交付親会社は、効力発生日から六箇月間、前項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その本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株式交付親会社の株主(株式交付に際して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及び新株予約権等の譲渡人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を除く。))が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に準ず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のみである場合以外の場合にあっては、株主及び債権者)は、株式交付親会社に対して、その営業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株式交付親会社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前項の書面の閲覧の請求

二 前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三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の請求

四 前項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って株式交付親会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제5장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의 절차

변경후 효력발생일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효력발생일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후 효력발생일을 효력발생일로 간주하여 이 절(제2항 제외) 및 전장(제774조의 3 제1항 제1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용한다.

⑤ 주식교부모회사는 제1항에 따라 효력발생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과 동시에 제774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은 전항에 따른 제774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기일 변경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이 절(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전장(제774조의 3 제1항 제11호는 제외한다)'은 '제774조의 4, 제774조의 10 및 전항'으로 대체한다.

제816조의10 주식교부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① 주식교부모회사는 효력발생일 후 지체없이 주식교부 시에 주식교부모회사가 양수한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수 그 밖의 주식교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식교부모회사는 효력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전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주(주식교부 시에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및 신주예약권 등의 양도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이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만인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주주 및 채권자)는 주식교부모회사에 대해 그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해당 주식교부모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전항의 서면 열람 청구
2. 전항의 서면 등본 또는 초본 교부 청구
3.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의 열람 청구
4. 전항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주식교부모회사가

第6編 外国会社

社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第6編 外国会社

第817条 外国会社の日本における代表者

- 1 外国会社は、日本において取引を継続しようとするときは、日本における代表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日本における代表者のうち一人以上は、日本に住所を有する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 2 外国会社の日本における代表者は、当該外国会社の日本における業務に関する一切の裁判上又は裁判外の行為をする権限を有する。
- 3 前項の権限に加えた制限は、善意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 4 外国会社は、その日本における代表者がその職務を行うについて第三者に加え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第818条 登記前の継続取引の禁止等

- 1 外国会社は、外国会社の登記をするまでは、日本において取引を継続してすることができない。
- 2 前項の規定に違反して取引をした者は、相手方に対し、外国会社と連帯して、当該取引によって生じた債務を弁済する責任を負う。

第819条 貸借対照表に相当するものの公告

- 1 外国会社の登記をした外国会社(日本における同種の会社又は最も類似する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ものに限る。)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四百三十八条第二項の承認と同種の手続又はこれに類似する手続の終結後遅滞なく、貸借対照表に相当するものを日本において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公告方法が第九百三十九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方法である外国会社は、前項に規定する貸借対照表に相当するものの要旨を公告することで足りる。
- 3 前項の外国会社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一項の手続の終結後遅

정한 것에 따라 제공할 것의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교부의 청구

제6편 외국회사

제817조 외국회사의 일본에서의 대표자

- ① 외국회사가 일본에서 거래를 계속하려는 때에는 일본에서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일본에서의 대표자 중 1인 이상은 일본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 ② 외국회사의 일본에서의 대표자는 당해 외국회사의 일본에서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③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외국회사는 일본에서의 대표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818조 등기 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등

- ① 외국회사는 외국회사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일본에서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
- ② 전항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외국회사와 연대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819조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 ① 외국회사의 등기를 한 외국회사(일본에 있어서 동종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것에 한한다)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8조 제2항의 승인과 동종의 절차 또는 이에 유사한 절차의 종결 후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을 일본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고방법이 제93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인 외국회사는 전항의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요지를 공고하면 된다.
- ③ 전항의 외국회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절차의 종결 후

第6編 外国会社

滞なく、同項に規定する貸借対照表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である情報を、当該手続の終結の日後五年を経過する日までの間、継続して電磁的方法により日本において不特定多数の者が提供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状態に置く措置をと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前二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4 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有価証券報告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外国会社については、前三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820条 日本に住所を有する日本における代表者の退任

1 外国会社の登記をした外国会社は、日本における代表者(日本に住所を有するものに限る。)の全員が退任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外国会社の債権者に対し異議があれば一定の期間内にこれを述べるができる旨を官報に公告し、かつ、知れている債権者には、各別にこれを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期間は、一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2 債権者が前項の期間内に異議を述べたときは、同項の外国会社は、当該債権者に対し、弁済し、若しくは相当の担保を提供し、又は当該債権者に弁済を受け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信託会社等に相当の財産を信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同項の退任をしても当該債権者を害するおそれ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3 第一項の退任は、前二項の手続が終了した後にその登記を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

第821条 擬似外国会社

1 日本に本店を置き、又は日本において事業を行うことを主たる目的とする外国会社は、日本において取引を継続して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前項の規定に違反して取引をした者は、相手方に対し、外国会社と連帯して、当該取引によって生じた債務を弁済する責任を負う。

第822条 日本にある外国会社の財産についての清算

1 裁判所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日本にある外国会社の財産の全部について清算の開始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一 外国会社が第八百二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場合

二 外国会社が日本において取引を継続してすることをやめた場合

지체없이 동항의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인 정보를 당해 절차의 종결 일 후 5년간 계속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일본의 불특정다수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유가증권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회사에 관하여서는 전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20조 일본에 주소를 둔 일본에서의 대표자의 퇴임

① 외국회사의 등기를 한 외국회사는 일본에서의 대표자(일본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전원이 퇴임하려는 때에는 외국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관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히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개월을 밑돌 수 없다.

② 채권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동항의 외국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탁회사 등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동항의 퇴임을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퇴임은 전2항의 절차가 종료한 후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821조 유사외국회사

① 일본에 본점을 설치하거나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외국회사는 일본에서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

② 전항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외국회사와 연대하여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822조 일본에 있는 외국회사의 재산에 관한 청산

①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일본에 있는 외국회사의 재산의 전부에 관하여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1. 외국회사가 제827조 제1항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경우
2. 외국회사가 일본에서의 거래를 계속하는 것을 중지한 경우

第7編 雑則

第1章 会社の解散命令等

2 前項の場合には、裁判所は、清算人を選任する。

3 第四百七十六条、第二編第九章第一節第二款、第四百九十二条、同節第四款及び第五百八条の規定並びに同章第二節(第五百十条、第五百十一条及び第五百十四条を除く。)の規定は、その性質上許されないものを除き、第一項の規定による日本にある外国会社の財産についての清算について準用する。

4 第八百二十条の規定は、外国会社が第一項の清算の開始を命じられた場合において、当該外国会社の日本における代表者(日本に住所を有するものに限る。)の全員が退任しようとするときは、適用しない。

第823条 他の法律の適用関係

外国会社は、他の法律の適用については、日本における同種の会社又は最も類似する会社とみなす。ただし、他の法律に別段の定め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7編 雑則

第1章 会社の解散命令等

第1節 会社の解散命令

第824条 会社の解散命令

1 裁判所は、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公益を確保するため会社の存立を許す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るときは、法務大臣又は株主、社員、債権者その他の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会社の解散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一 会社の設立が不法な目的に基づいてされたとき。

二 会社が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その成立の日から一年以内にその事業を開始せず、又は引き続き一年以上その事業を休止したとき。

三 業務執行取締役、執行役又は業務を執行する社員が、法令若しくは定款で定める会社の権限を逸脱し若しくは濫用する行為又は刑罰法令に触れ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法務大臣から書面による警告を受けたにもかかわらず、なお継続的に又は反覆して当該行為をしたとき。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한다.

③ 제476조, 제2편 제9장 제1절 제2관, 제492조, 동절 제4관, 제508조 및 동장 제2절(제510조, 제511조 및 제514조는 제외한다)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항에 의한 일본에 있는 외국회사의 재산에 관한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제820조는 외국회사가 제1항의 청산개시를 명령받은 경우 외국회사의 일본에서의 대표자(일본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전원이 퇴임하려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23조 기타 법률의 적용관계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는 일본의 동종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편 잡 칙

제1장 회사해산 명령 등

제1절 회사해산 명령

제824조 회사해산명령

①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 확보를 위하여 회사의 존립을 허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대신 주주 사원 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업무집행이사, 집행임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회사의 권한을 위반하거나 남용하는 행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무대신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또는 반복하여 당해 행위를 한 때

第7編 雑則

第1章 会社の解散命令等

2 株主、社員、債権者その他の利害関係人が前項の申立てをしたときは、裁判所は、会社の申立てにより、同項の申立てをした者に対し、相当の担保を立て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3 会社は、前項の規定による申立てをするには、第一項の申立てが悪意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を疎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民事訴訟法（平成八年法律第百九号）第七十五条第五項 及び第七項 並びに第七十六条 から第八十条 までの規定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第一項の申立てについて立てるべき担保について準用する。

第825条 会社の財産に関する保全処分

1 裁判所は、前条第一項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は、法務大臣若しくは株主、社員、債権者その他の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同項の申立てにつき決定があるまでの間、会社の財産に関し、管理人による管理を命ずる処分（次項において「管理命令」という。）その他の必要な保全処分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は、管理命令をする場合には、当該管理命令において、管理人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裁判所は、法務大臣若しくは株主、社員、債権者その他の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前項の管理人を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4 裁判所は、第二項の管理人を選任した場合には、会社が当該管理人に対して支払う報酬の額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5 第二項の管理人は、裁判所が監督する。

6 裁判所は、第二項の管理人に対し、会社の財産の状況の報告をし、かつ、その管理の計算をする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7 民法第六百四十四条、第六百四十六条、第六百四十七条及び第六百五十条の規定は、第二項の管理人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六百四十六条、第六百四十七条及び第六百五十条中「委任者」とあるのは、「会社」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826条 官庁等の法務大臣に対する通知義務

裁判所その他の官庁、検察官又は吏員は、その職務上第八百二十四条第一項の申立て又は同項第三号の警告をすべき事由があることを知ったときは、法務大

- ② 주주, 사원, 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전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동항의 청구를 한 자에 대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전항에 의한 청구를 하려면 제1항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 ④ 민사소송법 (1996년 법률 제109호) 제75조 제5항 및 제7항 및 제76조 내지 제80조는 제2항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제공하여야 할 담보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25조 회사의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 ① 법원은 전조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 법무대신 또는 주주, 사원, 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동항의 신청에 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처분(이하 “관리명령”이라고 한다)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관리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명령에 있어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법무대신 또는 주주, 사원, 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전항의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제2항의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가 해당 관리인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제2항의 관리인은 법원이 감독한다.
- ⑥ 법원은 제2항의 관리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산상황을 보고하고 그리고 그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⑦ 민법 제644조 제646조 제647조 및 제650조는 제2항의 관리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46조 제647조 및 제650조 중 “위임자”는 “회사”로 본다.

제826조 관청등의 법무대신에 대한 통지 의무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제824조 제1항의 청구 또는 동항 제3호의 경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법무대신에게 그

臣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節 外国会社の取引継続禁止又は営業所閉鎖の命令

第827条

1 裁判所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法務大臣又は株主、社員、債権者その他の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外国会社が日本において取引を継続してすることの禁止又はその日本に設けられた営業所の閉鎖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一 外国会社の事業が不法な目的に基づいて行われたとき。
- 二 外国会社が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外国会社の登記の日から一年以内にその事業を開始せず、又は引き続き一年以上その事業を休止したとき。
- 三 外国会社が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支払を停止したとき。
- 四 外国会社の日本における代表者その他その業務を執行する者が、法令で定める外国会社の権限を逸脱し若しくは濫用する行為又は刑罰法令に触れ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法務大臣から書面による警告を受けたにもかかわらず、なお継続的に又は反覆して当該行為をしたとき。

2 第八百二十四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及び前二条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八百二十四条第二項中「前項」とあり、同条第三項及び第四項中「第一項」とあり、並びに第八百二十五条第一項中「前条第一項」とあるのは「第八百二十七条第一項」と、前条中「第八百二十四条第一項」とあるのは「次条第一項」と、「同項第三号」とあるのは「同項第四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2章 訴訟

第1節 会社の組織に関する訴え

第828条 会社の組織に関する行為の無効の訴え

1 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の無効は、当該各号に定める期間に、訴えをもってのみ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외국회사의 계속거래금지 또는 영업소 폐쇄의 명령

제827조

①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대신 또는 주주, 사원, 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외국회사가 일본에서 계속거래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일본에 설치된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외국회사의 사업이 불법적인 목적에 기하여 행해질 때
2. 외국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외국회사의 등기의 날로부터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3. 외국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4. 외국회사의 일본 대표자 그 외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에서 정하는 외국 회사의 권한을 일탈하거나 혹은 남용하는 행위 또는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무대신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또는 반복하여 해당 행위를 한 때

② 제824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전2조는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4조 제2항 중 “전항”, 동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 제825조 제1항 중 “전조 제1항”은 “제827조 제1항”으로, 전조 중 “제824조 제1항”은 “다음 조 제1항”으로, “동항 제3호”는 “동항 제4호”로 본다.

제2장 소송

제1절 회사의 조직에 관한 소

제828조 회사조직에 관한 행위무효의 소

① 다음 각호의 행위의 무효는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소만으로써 이를 주장할 수 있다.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 一 会社の設立：会社の成立の日から二年以内
 - 二 株式会社の成立後における株式の発行：株式の発行の効力が生じた日から六箇月以内(公開会社でない株式会社にあっては、株式の発行の効力が生じた日から一年以内)
 - 三 自己株式の処分：自己株式の処分の効力が生じた日から六箇月以内(公開会社でない株式会社にあっては、自己株式の処分の効力が生じた日から一年以内)
 - 四 新株予約権(当該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を含む。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の発行：新株予約権の発行の効力が生じた日から六箇月以内(公開会社でない株式会社にあっては、新株予約権の発行の効力が生じた日から一年以内)
 - 五 株式会社における資本金の額の減少：資本金の額の減少の効力が生じた日から六箇月以内
 - 六 会社の組織変更：組織変更の効力が生じた日から六箇月以内
 - 七 会社の吸収合併：吸収合併の効力が生じた日から六箇月以内
 - 八 会社の新設合併：新設合併の効力が生じた日から六箇月以内
 - 九 会社の吸収分割：吸収分割の効力が生じた日から六箇月以内
 - 十 会社の新設分割：新設分割の効力が生じた日から六箇月以内
 - 十一 株式会社の株式交換：株式交換の効力が生じた日から六箇月以内
 - 十二 株式会社の株式移転：株式移転の効力が生じた日から六箇月以内
 - 十三 株式会社の株式交付 株式交付の効力が生じた日から六箇月以内
- 2 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の無効の訴え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限り、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前項第一号に掲げる行為 設立する株式会社の株主等(株主、取締役又は清算人(監査役設置会社にあっては株主、取締役、監査役又は清算人、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っては株主、取締役、執行役又は清算人)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又は設立する持分会社の社員等(社員又は清算人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 二 前項第二号に掲げる行為：当該株式会社の株主等
- 三 前項第三号に掲げる行為：当該株式会社の株主等

1. 회사의 설립 : 회사의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
 2. 주식회사의 성립 후의 주식의 발행 : 주식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3. 자기주식의 처분 : 자기주식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4.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착된 것인 경우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발행 : 신주예약권의 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신주예약권의 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5.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자본금 감소 :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6. 회사의 조직변경 :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7. 회사의 흡수합병 : 흡수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8. 회사의 신설합병 : 신설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9. 회사의 흡수분할 : 흡수분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0. 회사의 신설분할 : 신설분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1. 주식회사의 주식교환 :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2. 주식회사의 주식이전 : 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3. 주식회사의 주식교부 : 주식교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② 다음 각호의 행위의 무효의 소는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1. 전항 제1호의 행위 : 설립하는 주식회사의 주주등(주주, 이사 또는 청산인(감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주주,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주주, 이사, 집행임원 또는 청산인)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설립하는 지분회사의 사원등(사원 또는 청산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전항 제2호의 행위 : 주식회사의 주주등
 3. 전항 제3호의 행위 : 주식회사의 주주등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 四 前項第四号に掲げる行為：当該株式会社の株主等又は新株予約権者
- 五 前項第五号に掲げる行為：当該株式会社の株主等、破産管財人又は資本金の額の減少について承認をしなかった債権者
- 六 前項第六号に掲げる行為：当該行為の効力が生じた日において組織変更をする会社の株主等若しくは社員等であった者又は組織変更後の会社の株主等、社員等、破産管財人若しくは組織変更について承認をしなかった債権者
- 七 前項第七号に掲げる行為：当該行為の効力が生じた日において吸収合併をする会社の株主等若しくは社員等であった者又は吸収合併後存続する会社の株主等、社員等、破産管財人若しくは吸収合併について承認をしなかった債権者
- 八 前項第八号に掲げる行為：当該行為の効力が生じた日において新設合併をする会社の株主等若しくは社員等であった者又は新設合併により設立する会社の株主等、社員等、破産管財人若しくは新設合併について承認をしなかった債権者
- 九 前項第九号に掲げる行為：当該行為の効力が生じた日において吸収分割契約をした会社の株主等若しくは社員等であった者又は吸収分割契約をした会社の株主等、社員等、破産管財人若しくは吸収分割について承認をしなかった債権者
- 十 前項第十号に掲げる行為：当該行為の効力が生じた日において新設分割をする会社の株主等若しくは社員等であった者又は新設分割をする会社若しくは新設分割により設立する会社の株主等、社員等、破産管財人若しくは新設分割について承認をしなかった債権者
- 十一 前項第十一号に掲げる行為：当該行為の効力が生じた日において株式交換契約をした会社の株主等若しくは社員等であった者又は株式交換契約をした会社の株主等、社員等、破産管財人若しくは株式交換について承認をしなかった債権者
- 十二 前項第十二号に掲げる行為 当該行為の効力が生じた日において株式移転をする株式会社の株主等であった者又は株式移転により設立する株式会社の株主等、破産管財人若しくは株式移転について承認をしなかった債権者
- 十三 前項第十三号に掲げる行為 当該行為の効力が生じた日において株式交付親会社の株主等であった者、株式交付に際して株式交付親会社に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若しくは新株予約権等を譲り渡した者又は株式交付親会社の

4. 전항 제4호의 행위 : 주식회사의 주주등 또는 신주예약권자
5. 전항 제5호의 행위 : 주식회사의 주주등, 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하여 승인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
6. 전항 제6호의 행위 :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있어서 조직변경을 하는 회사의 주주등 또는 사원등이었던 자 또는 조직변경 후 회사의 주주등, 사원등, 파산관재인 또는 조직변경에 관하여 승인을 하지 않은 채권자
7. 전항 제7호의 행위 :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있어서 흡수합병을 하는 회사의 주주등 또는 사원등이었던 자 또는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등, 사원등, 파산관재인 또는 흡수합병에 관하여 승인을 하지 않은 채권자
8. 전항 제8호의 행위 :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있어서 신설합병을 하는 회사의 주주등 또는 사원등이었던 자 또는 신설합병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의 주주등, 사원등, 파산관재인 혹은 신설합병에 관하여 승인을 하지 않은 채권자
9. 전항 제9호의 행위 :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있어서 흡수분할계약을 한 회사 주주등 또는 사원등이었던 자 또는 흡수분할 계약을 한 회사의 주주등, 사원등, 파산관재인 혹은 흡수분할에 관하여 승인을 하지 않은 채권자
10. 전항 제10호의 행위 :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있어서 신설분할을 하는 회사의 주주등 또는 사원등이었던 자 또는 신설분할을 하는 회사 혹은 신설분할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의 주주등, 사원등, 파산관재인 및 신설분할에 관하여 승인을 하지 않은 채권자
11. 전항 제11호의 행위 :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있어서 주식교환계약을 한 회사의 주주등 또는 사원등이었던 자 또는 주식교환계약을 한 회사의 주주등, 사원등, 파산관재인 및 주식교환에 관하여 승인을 하지 않은 채권자
12. 전항 제12호의 행위 : 당해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주식이전을 하는 주식회사의 주주등이었던 자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의 주주등, 파산관재인 혹은 주식이전에 관하여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
13. 전항 제13호의 행위 :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주 등이었던 자, 주식교부 시에 주식교부모회사에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혹은 신주예약권 등을 양도한 자 또는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주 등, 파산관재인 혹은

株主等、破産管財人若しくは株式交付について承認をしなかった債権者

第829条 新株発行等の不存在の確認の訴え

次に掲げる行為については、当該行為が存在しないことの確認を、訴えをもっ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株式会社の成立後における株式の発行
- 二 自己株式の処分
- 三 新株予約権の発行

第830条 株主総会等の決議の不存在又は無効の確認の訴え

1 株主総会若しくは種類株主総会又は創立総会若しくは種類創立総会(以下この節及び第九百三十七条第一項第一号トにおいて「株主総会等」という。)の決議については、決議が存在しないことの確認を、訴えをもっ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株主総会等の決議については、決議の内容が法令に違反することを理由として、決議が無効であることの確認を、訴えをもっ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831条 株主総会等の決議の取消しの訴え

1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株主等(当該各号の株主総会等が創立総会又は種類創立総会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株主等、設立時株主、設立時取締役又は設立時監査役)は、株主総会等の決議の日から三箇月以内に、訴えをもって当該決議の取消し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当該決議の取消しにより株主(当該決議が創立総会の決議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設立時株主)又は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おいて、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監査役若しくは清算人(当該決議が株主総会又は種類株主総会の決議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第三百四十六条第一項(第四百七十九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取締役、監査役又は清算人としての権利義務を有する者を含み、当該決議が創立総会又は種類創立総会の決議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設立時取締役(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時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設立時取締役)又は設立時監査役を含む。)となる者も、同様とする。

- 一 株主総会等の招集の手續又は決議の方法が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し、又

주식교부에 관하여 승인을 하지 않은 채권자

제829조 신주발행등의 부존재 확인의 소

다음의 행위에 관하여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의 확인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1. 주식회사의 성립후 주식의 발행
2. 자기주식의 처분
3. 신주예약권의 발행

제830조 주주총회등의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

①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 및 창립총회 또는 종류창립총회(이하 동절 및 제937조 제1항 제1호에 있어서 “주주총회등”이라고 한다)의 결의에 관하여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의 확인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결의무효의 확인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제831조 주주총회등의 결의취소의 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주등(각호의 주주총회등이 창립총회 또는 종류창립총회인 경우에는 주주등, 설립시주주, 설립시이사 또는 설립시감사)은 주주총회등의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로써 결의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결의취소에 의하여 주주(결의가 창립총회의 결의인 경우에는 설립시주주) 또는 이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이외의 이사.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사 혹은 청산인(결의가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인 경우에는 제346조 제1항(제47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자를 포함하며, 결의가 창립총회 또는 종류창립총회의 결의인 경우에는 설립시이사(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설립시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 또는 그 이외의 설립시이사) 또는 설립시감사를 포함한다)이 되는 자도 같다.

1. 주주총회등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は著しく不公正なとき。

二 株主総会等の決議の内容が定款に違反するとき。

三 株主総会等の決議について特別の利害関係を有する者が議決権を行使したことによって、著しく不当な決議がされたとき。

2 前項の訴えの提起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株主総会等の招集の手續又は決議の方法が法令又は定款に違反するときであっても、裁判所は、その違反する事実が重大でなく、かつ、決議に影響を及ぼさないもの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同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棄却することができる。

第832条 持分会社の設立の取消しの訴え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は、持分会社の成立の日から二年以内に、訴えをもって持分会社の設立の取消し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社員が民法 その他の法律の規定により設立に係る意思表示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とき：当該社員

二 社員がその債権者を害することを知って持分会社を設立したとき：当該債権者

第833条 会社の解散の訴え

1 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ときは、総株主(株主総会において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の全部につき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株主を除く。)の議決権の十分の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議決権を有する株主又は発行済株式(自己株式を除く。)の十分の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数の株式を有する株主は、訴えをもって株式会社の解散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一 株式会社が業務の執行において著しく困難な状況に至り、当該株式会社に回復することができない損害が生じ、又は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

二 株式会社の財産の管理又は処分が著しく失当で、当該株式会社の存立を危うくするとき。

2 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場合には、持分会社の社員は、訴えをもって持分会社の解散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저하계 불공정한 때

2. 주주총회등의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
 3. 주주총회등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현저하게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진 때
- ② 전항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주주총회등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더라도 법원은 그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아니하고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동항에 의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832조 지분회사의 설립취소의 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자가 지분회사의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로써 지분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사원이 민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설립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때 : 당해사원
2.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지분회사를 설립한 때 : 당해채권자

제833조 회사의 해산의 소

①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주주(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제외한다)의 의결권의 10분의 1(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주주 또는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상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소로써 주식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1. 주식회사가 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에 이르러 주식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주식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주식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때
-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분회사의 사원은 소로써 지분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第834条 被告

次の各号に掲げる訴え(以下この節において「会社の組織に関する訴え」と総称する。)について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を被告とする。

- 一 会社の設立の無効の訴え：設立する会社
- 二 株式会社の成立後における株式の発行の無効の訴え(第八百四十条第一項において「新株発行の無効の訴え」という。)：株式の発行をした株式会社
- 三 自己株式の処分の無効の訴え：自己株式の処分をした株式会社
- 四 新株予約権の発行の無効の訴え：新株予約権の発行をした株式会社
- 五 株式会社における資本金の額の減少の無効の訴え：当該株式会社
- 六 会社の組織変更の無効の訴え：組織変更後の会社
- 七 会社の吸収合併の無効の訴え：吸収合併後存続する会社
- 八 会社の新設合併の無効の訴え：新設合併により設立する会社
- 九 会社の吸収分割の無効の訴え：吸収分割契約をした会社
- 十 会社の新設分割の無効の訴え：新設分割をする会社及び新設分割により設立する会社
- 十一 株式会社の株式交換の無効の訴え：株式交換契約をした会社
- 十二 株式会社の株式移転の無効の訴え：株式移転をする株式会社及び株式移転により設立する株式会社
- 十二の二 株式会社の株式交付の無効の訴え 株式交付親会社
- 十三 株式会社の成立後における株式の発行が存在しないことの確認の訴え：株式の発行をした株式会社
- 十四 自己株式の処分が存在しないことの確認の訴え：自己株式の処分をした株式会社
- 十五 新株予約権の発行が存在しないことの確認の訴え：新株予約権の発行をした株式会社
- 十六 株主総会等の決議が存在しないこと又は株主総会等の決議の内容が法令に違反することを理由として当該決議が無効であることの確認の訴え：当該株式会社
- 十七 株主総会等の決議の取消しの訴え：当該株式会社
- 十八 第八百三十二条第一号の規定による持分会社の設立の取消しの訴え：当該持分会社

제834조 피고

다음 각호의 소(이하 이 절에서 “회사의 조직에 관한 소”라고 총칭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자를 피고로 한다.

1. 회사설립 무효의 소 : 설립하는 회사
2. 주식회사의 성립후 주식발행무효의 소(제840조 제1항에서 “신주발행무효의 소”라고 한다) : 주식발행을 한 주식회사
3. 자기주식의 처분무효의 소 : 자기주식의 처분을 한 주식회사
4. 신주예약권의 발행무효의 소 : 신주예약권의 발행을 한 주식회사
5. 주식회사에 있어서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소 : 주식회사
6. 회사의 조직변경 무효의 소 : 조직변경후의 회사
7. 회사의 흡수합병 무효의 소 : 흡수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8. 회사의 신설합병 무효의 소 : 신설합병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
9. 회사의 흡수분할 무효의 소 : 흡수분할계약을 한 회사
10. 회사의 신설분할 무효의 소 : 신설분할을 하는 회사 및 신설분할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
11. 주식회사의 주식교환 무효의 소 : 주식교환계약을 한 회사
12. 주식회사의 주식이전 무효의 소 : 주식이전을 하는 주식회사 및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 12의 2. 주식회사의 주식교부 무효의 소 : 주식교부모회사
13. 주식회사의 성립후 주식발행 부존재확인 소 : 주식발행을 한 주식회사
14. 자기주식의 처분 부존재확인 소 : 자기주식의 처분을 한 주식회사
15. 신주예약권의 발행 부존재확인 소 : 신주예약권을 발행한 주식회사
16. 주주총회등의 결의부존재 또는 주주총회등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한 결의무효의 확인 소 : 주식회사
17. 주주총회등의 결의취소의 소 : 주식회사
18. 제832조 제1호에 의한 지분회사 설립취소의 소 : 지분회사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十九 第八百三十二条第二号の規定による持分会社の設立の取消しの訴え：当該持分会社及び同号の社員

二十 株式会社の解散の訴え：当該株式会社

二十一 持分会社の解散の訴え：当該持分会社

第835条 訴えの管轄及び移送

1 会社の組織に関する訴えは、被告となる会社の本店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に専属する。

2 前条第九号から第十二号までの規定により二以上の地方裁判所が管轄権を有するときは、当該各号に掲げる訴えは、先に訴えの提起があった地方裁判所が管轄する。

3 前項の場合には、裁判所は、当該訴えに係る訴訟がその管轄に属する場合においても、著しい損害又は遅滞を避け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訴訟を他の管轄裁判所に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第836条 担保提供命令

1 会社の組織に関する訴えであって、株主又は設立時株主が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ついては、裁判所は、被告の申立てにより、当該会社の組織に関する訴えを提起した株主又は設立時株主に対し、相当の担保を立て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株主が取締役、監査役、執行役若しくは清算人であるとき、又は当該設立時株主が設立時取締役若しくは設立時監査役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規定は、会社の組織に関する訴えであって、債権者又は株式交付に際して株式交付親会社に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若しくは新株予約権等を譲り渡した者が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ついて準用する。

3 被告は、第一項(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申立てをするには、原告の訴えの提起が悪意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を疎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837条 弁論等の必要的併合

同一の請求を目的とする会社の組織に関する訴えに係る訴訟が数個同時に係属するときは、その弁論及び裁判は、併合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19. 제832조 제2호에 의한 지분회사 설립취소의 소 : 지분회사 및 동호의 사원

20. 주식회사의 해산의 소 : 주식회사

21. 지분회사의 해산의 소 : 지분회사

제835조 소의 관할 및 이송

① 회사의 조직에 관한 소는 피고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전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 지는 때에는 각 호의 소는 먼저 소가 제기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③ 전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소에 관한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도 현저 한 손해 또는 지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 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836조 담보제공명령

① 회사의 조직에 관한 소로서 주주 또는 설립시주주가 제기할 수 있는 소에 관 해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에 관한 소를 제기한 주주 또 는 설립시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주가 이사, 감사, 집행임원 또는 청산인인 때 또는 그 설립시주주가 설립시이사 또는 설립시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은 회사의 조직에 관한 소로서 채권자 또는 주식교부 시 주식교부모회 사에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또는 신주예약권 등을 양도한 자가 제기할 수 있 는 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피고는 제1항(전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려면 원고의 소제기가 악의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837조 변론등의 필요적 병합

동일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조직에 관한 소에 관한 소송이 수개가 동 시에 계속하는 때에는 그 변론 및 재판은 병합하여야 한다.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第838条 認容判決の効力が及ぶ者の範囲

会社の組織に関する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確定判決は、第三者に対してもその効力を有する。

第839条 無効又は取消しの判決の効力

会社の組織に関する訴え(第八百三十四条第一号から第十二号の二まで、第十八号及び第十九号に掲げる訴えに限る。)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判決が確定したときは、当該判決において無効とされ、又は取り消された行為(当該行為によって会社が設立され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設立を含み、当該行為に際して株式又は新株予約権が交付され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株式又は新株予約権を含む。)は、将来に向かってその効力を失う。

第840条 新株発行の無効判決の効力

1 新株発行の無効の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判決が確定したときは、当該株式会社は、当該判決の確定時における当該株式に係る株主に対し、払込みを受けた金額又は給付を受けた財産の給付の時における価額に相当する金銭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が株券発行会社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会社は、当該株主に対し、当該金銭の支払を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株式に係る旧株券(前条の規定により効力を失った株式に係る株券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を返還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金銭の金額が同項の判決が確定した時における会社財産の状況に照らして著しく不相当であるときは、裁判所は、同項前段の株式会社又は株主の申立てにより、当該金額の増減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申立ては、同項の判決が確定した日から六箇月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前段に規定する場合には、同項前段の株式を目的とする質権は、同項の金銭について存在する。

5 第一項前段に規定する場合には、前項の質権の登録株式質権者は、第一項前段の株式会社から同項の金銭を受領し、他の債権者に先立って自己の債権の弁済に充てることができる。

6 前項の債権の弁済期が到来していないときは、同項の登録株式質権者は、第

제838조 인용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

회사의 조직에 관한 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제839조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의 효력

회사의 조직에 관한 소(제834조 제1호 내지 제12호의2, 제18호 및 제19호의 소에 한한다)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판결에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행위(해당 행위에 의하여 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는 그 설립을 포함하고, 해당 행위 시에 주식 또는 신주예약권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신주예약권을 포함한다)는 장래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잃는다.

제840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는 주식회사는 판결 확정시의 당해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납입받은 금액 또는 급부받은 재산의 급부시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가 주권발행회사인 때에는 당해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과 교환으로 주식의 구(旧)주권(전조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주식의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금전의 금액이 동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재산상황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동항 전단의 주식회사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는 동항의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의 경우에는 동항 전단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동항의 금전에 관하여 존재한다.

⑤ 제1항 전단의 경우에는 전항의 질권의 등록주식질권자는 제1항 전단의 주식회사로부터 동항의 금전을 수령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의 등록주식질권자는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一項前段の株式会社に同項の金銭に相当する金額を供託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質権は、その供託金について存在する。

第841条 自己株式の処分の無効判決の効力

1 自己株式の処分の無効の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判決が確定したときは、当該株式会社は、当該判決の確定時における当該自己株式に係る株主に対し、払込みを受けた金額又は給付を受けた財産の給付の時における価額に相当する金銭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が株券発行会社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会社は、当該株主に対し、当該金銭の支払を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自己株式に係る旧株券を返還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条第二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四項中「株式」とあるのは、「自己株式」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842条 新株予約権発行の無効判決の効力

1 新株予約権の発行の無効の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判決が確定したときは、当該株式会社は、当該判決の確定時における当該新株予約権に係る新株予約権者に対し、払込みを受けた金額又は給付を受けた財産の給付の時における価額に相当する金銭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に係る新株予約権証券(当該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係る新株予約権付社債券。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を発行しているときは、当該株式会社は、当該新株予約権者に対し、当該金銭の支払をするのと引換えに、第八百三十九条の規定により効力を失った新株予約権に係る新株予約権証券を返還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八百四十条第二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二項中「株主」とあるのは「新株予約権者」と、同条第四項中「株式」とあるのは「新株予約権」と、同条第五項及び第六項中「登録株式質権者」とあるのは「登録新株予約権質権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843条 合併又は会社分割の無効判決の効力

1 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の無効の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判決が確定したときは、当該行為をした会社は、当該行為の効力が生じた日後に当該各号に定める

제1항 전단의 주식회사에 동항의 금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존재한다.

제841조 자기주식 처분무효판결의 효력

① 자기주식 처분무효의 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주식회사는 판결확정시의 자기주식에 관련된 주주에 대하여 납입받은 금액 또는 급부받은 재산의 급부시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가 주권발행회사인 때에는 당해 주식회사는 그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과 교환으로 자기주식의 구(旧)주권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4항 중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본다.

제842조 신주예약권발행 무효판결의 효력

① 신주예약권 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주식회사는 판결확정시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 대하여 납입받은 금액 또는 급부받은 재산의 급부시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증권(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인 경우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신주예약권부사채권.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발행하고 있는 때에는 주식회사는 당해 신주예약권자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하는 것과 교환으로 제8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증권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840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2항 중 “주주”는 “신주예약권자”로, 동조 제4항 중 “주식”은 “신주예약권”으로, 동조 제5항 및 제6항 중 “등록주식질권자”는 “등록신주예약권질권자”로 한다.

제843조 합병 또는 회사분할의 무효판결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행위의 무효의 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당해 행위를 한 회사는 그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날 후에 당해 각 호에 규정하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会社が負担した債務について、連帯して弁済する責任を負う。

- 一 会社の吸収合併 吸収合併後存続する会社
 - 二 会社の新設合併 新設合併により設立する会社
 - 三 会社の吸収分割 吸収分割をする会社とその事業に関して有する権利義務の全部又は一部を当該会社から承継する会社
 - 四 会社の新設分割 新設分割により設立する会社
-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同項各号に掲げる行為の効力が生じた日後に当該各号に定める会社が取得した財産は、当該行為をした会社の共有に属する。ただし、同項第四号に掲げる行為を一の会社がした場合には、同号に定める会社が取得した財産は、当該行為をした一の会社に属する。
- 3 第一項及び前項本文に規定する場合には、各会社の第一項の債務の負担部分及び前項本文の財産の共有持分は、各会社の協議によって定める。
- 4 各会社の第一項の債務の負担部分又は第二項本文の財産の共有持分について、前項の協議が調わないときは、裁判所は、各会社の申立てにより、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の効力が生じた時における各会社の財産の額その他一切の事情を考慮して、これを定める。

第844条 株式交換又は株式移転の無効判決の効力

1 株式会社の株式交換又は株式移転の無効の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判決が確定した場合において、株式交換又は株式移転をする株式会社(以下この条において「旧完全子会社」という。)の発行済株式の全部を取得する株式会社(以下この条において「旧完全親会社」という。)が当該株式交換又は株式移転に際して当該旧完全親会社の株式(以下この条において「旧完全親会社株式」という。)を交付したときは、当該旧完全親会社は、当該判決の確定時における当該旧完全親会社株式に係る株主に対し、当該株式交換又は株式移転の際に当該旧完全親会社株式の交付を受けた者が有していた旧完全子会社の株式(以下この条において「旧完全子会社株式」という。)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旧完全親会社が株券発行会社であるときは、当該旧完全親会社は、当該株主に対し、当該旧完全子会社株式を交付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旧完全親会社株式に係る旧株券を返還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前段に規定する場合には、旧完全親会社株式を目的とする質権は、旧完

는 회사가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1. 회사의 흡수합병 :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2. 회사의 신설합병 : 신설합병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
 3. 회사의 흡수분할 : 흡수분할을 하는 회사가 그 사업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회사로부터 승계하는 회사
 4. 회사의 신설분할 : 신설분할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
- ② 전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날 후에 각 호의 회사가 취득한 재산은 당해 행위를 한 회사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동항 제4호의 행위를 1 회사가 한 경우에는 동호의 회사가 취득한 재산은 당해 행위를 한 1 회사에 속한다.
- ③ 제1항 및 전항 본문의 경우 각 회사의 제1항의 채무의 부담부분 및 전항 본문의 재산의 공유지분은 각 회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④ 각 회사의 제1항의 채무의 부담부분 또는 제2항 본문의 재산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전항의 협의로 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각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 발생시의 각 회사의 재산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제844조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무효판결의 효력

① 주식회사의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무효의 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조에서 “구(旧)완전자회사”라고 한다) 의 발행주식전부를 취득하는 주식회사(이하 이 조에 있어서 “구완전모회사”라고 한다)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시에 구완전모회사의 주식(이하 이 조에서 “구완전모회사주식”이라고 한다)을 교부한 때에는 구완전모회사는 판결확정시의 구완전모회사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시에 구완전모회사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구완전자회사의 주식(이하 이 조에서 “구완전자회사주식”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완전모회사가 주권발행회사인 때에는 구완전모회사는 주주에게 구완전자회사주식을 교부하는 것과 교환으로 구완전모회사주식의 주권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 전단의 경우에는 구완전모회사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구완전자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全子会社株式について存在する。

3 前項の質権の質権者が登録株式質権者であるときは、旧完全親会社は、第一項の判決の確定後遅滞なく、旧完全子会社に対し、当該登録株式質権者についての第百四十八条各号に掲げる事項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旧完全子会社は、その株主名簿に同項の登録株式質権者の質権の目的である株式に係る株主名簿記載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た場合には、直ちに、当該株主名簿に当該登録株式質権者についての第百四十八条各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三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同項の旧完全子会社が株券発行会社であるときは、旧完全親会社は、登録株式質権者に対し、第二項の旧完全子会社株式に係る株券を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一項前段の株主が旧完全子会社株式の交付を受けるために旧完全親会社株式に係る旧株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において、旧株券の提出があるまでの間は、この限りでない。

第844条の2 株式交付の無効判決の効力

1 株式会社の株式交付の無効の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判決が確定した場合において、株式交付親会社が当該株式交付に際して当該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以下この条において「旧株式交付親会社株式」という。）を交付したときは、当該株式交付親会社は、当該判決の確定時における当該旧株式交付親会社株式に係る株主に対し、当該株式交付の際に当該旧株式交付親会社株式の交付を受けた者から給付を受けた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及び新株予約権等（以下この条において「旧株式交付子会社株式等」という。）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株式交付親会社が株券発行会社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交付親会社は、当該株主に対し、当該旧株式交付子会社株式等を返還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旧株式交付親会社株式に係る旧株券を返還す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前段に規定する場合には、旧株式交付親会社株式を目的とする質権は、旧株式交付子会社株式等について存在する。

第845条 持分会社の設立の無効又は取消しの判決の効力

持分会社の設立の無効又は取消しの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判決が確定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無効又は取消しの原因が一部の社員のみにあるときは、他の

회사주식에 관하여 존재한다.

③ 전항의 질권의 질권자가 등록주식질권자인 때에는 구완전모회사는 제1항의 판결확정 후 지체없이 구완전자회사에 대하여 당해 등록주식질권자에 관한 제148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통지를 받은 구완전자회사는 그 주주명부에 동항의 등록주식질권자의 질권의 목적인 주식의 주주명부 기재사항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주주명부에 당해 등록주식질권자에 관한 제148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동항의 구완전자회사가 주권발행회사인 때에는 구완전모회사는 등록주식질권자에게 제2항의 구완전자회사주식의 주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전단의 주주가 구완전자회사주식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구완전모회사주식의 구주권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주권의 제출이 있을 때 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4조의2 주식교부 무효판결의 효력

① 주식회사의 주식교부 무효의 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식교부모회사가 주식교부 시에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이하 이 조에서 ‘구주식교부모회사주식’이라 한다)을 교부한 때에는 주식교부모회사는 해당 판결의 확정 시의 구주식교부모회사주식의 주주에게 주식교부 시에 구주식교부모회사주식을 교부받은 자로부터 급부받은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및 신주예약권 등(이하 이 조에서 ‘구주식교부자회사주식 등’이라 한다)을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교부모회사가 주권발행회사인 때에는 주식교부모회사는 주주에게 구주식교부자회사주식 등을 반환하는 대가로 구주식교부모회사주식의 구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 전단의 경우에는 구주식교부모회사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구주식교부자회사주식 등에 관해 존재한다.

제845조 지분회사 설립무효 또는 취소판결의 효력

지분회사 설립무효 또는 취소의 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일부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전

社員の全員の同意によって、当該持分会社を継続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原因がある社員は、退社したものとみなす。

第846条 原告が敗訴した場合の損害賠償責任

会社の組織に関する訴えを提起した原告が敗訴した場合において、原告に悪意又は重大な過失があったときは、原告は、被告に対し、連帯して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第1節の2 売渡株式等の取得の無効の訴え

第846条の2 売渡株式等の取得の無効の訴え

1 株式等売渡請求に係る売渡株式等の全部の取得の無効は、取得日(第百七十九条の二第一項第五号に規定する取得日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から六箇月以内(対象会社が公開会社でない場合にあつては、当該取得日から一年以内)に、訴えをもつてのみ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訴え(以下この節において「売渡株式等の取得の無効の訴え」という。)は、次に掲げる者に限り、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取得日において売渡株主(株式売渡請求に併せて新株予約権売渡請求がされた場合にあつては、売渡株主又は売渡新株予約権者。第百四十六条の五第一項において同じ。)であつた者
- 二 取得日において対象会社の取締役(監査役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又は監査役、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又は執行役。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であつた者又は対象会社の取締役若しくは清算人

第846条の3 被告

売渡株式等の取得の無効の訴えについては、特別支配株主を被告とする。

第846条の4 訴えの管轄

売渡株式等の取得の無効の訴えは、対象会社の本店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に専属する。

원의 동의로써 지분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제846조 원고가 패소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회사의 조직에 관한 소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절의2 매도주식등의 취득무효의 소

제846조의2 매도주식등의 취득무효의 소

① 주식등매도청구와 관련된 매도주식등의 전부의 취득무효는 취득일(제179조의2 제1항 제5호의 취득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6개월 이내(대상회사가 공개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이하 이 절에서 “매도주식등의 취득무효의 소”라 한다)는 다음의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1. 취득일에 매도주주(주식매도청구와 함께 신주예약권매도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도주주 또는 매도신주예약권자. 제846조의5 제1항에서 같다)이었던 자
2. 취득일에 대상회사의 이사(감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감사,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었던 자 또는 대상회사의 이사 혹은 청산인

제846조의3 피고

매도주식등의 취득무효의 소의 경우에는 특별지배주주를 피고로 한다.

제846조의4 소의 관할

매도주식등의 취득무효의 소는 대상회사의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 한다.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第846条の5 担保提供命令

1 売渡株式等の取得の無効の訴えについては、裁判所は、被告の申立てにより、当該売渡株式等の取得の無効の訴えを提起した売渡株主に対し、相当の担保を立て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売渡株主が対象会社の取締役、監査役、執行役又は清算人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被告は、前項の申立てをするには、原告の訴えの提起が悪意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を疎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846条の6 弁論等の必要的併合

同一の請求を目的とする売渡株式等の取得の無効の訴えに係る訴訟が数個同時に係属するときは、その弁論及び裁判は、併合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846条の7 認容判決の効力が及ぶ者の範囲

売渡株式等の取得の無効の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確定判決は、第三者に対してもその効力を有する。

第846条の8 無効の判決の効力

売渡株式等の取得の無効の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判決が確定したときは、当該判決において無効とされた売渡株式等の全部の取得は、将来に向かってその効力を失う。

第846条の9 原告が敗訴した場合の損害賠償責任

売渡株式等の取得の無効の訴えを提起した原告が敗訴した場合において、原告に悪意又は重大な過失があったときは、原告は、被告に対し、連帯して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第2節 株式会社における責任追及等の訴え

第847条 株主による責任追及等の訴え

1 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から引き続き株式を有する株主(第百八十九条第二項の定款の定めによりその権利を行使

제846조의5 담보제공명령

- ① 매도주식등의 취득무효의 소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매도주식등의 취득무효의 소를 제기한 매도주주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매도주주가 대상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또는 청산인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피고가 전항의 청구를 하려면 원고의 소의 제기가 악의에 의한 것임을 소명 하여야 한다.

제846조의6 변론 등의 필요적 병합

동일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매도주식 등의 취득무효의 소에 관련된 소송이 다수가 동시에 계속하는 때에는 그 변론 및 재판은 병합하여야 한다.

제846조의7 인용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매도주식등의 취득무효의 소에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846조의8 무효판결의 효력

매도주식등의 취득무효의 소에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판결에서 무효로 된 매도주식등의 전부취득은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846조의9 원고가 패소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매도주식등의 취득무효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절 주식회사에 있어서 책임추궁 등의 소

제847조 주주에 의한 책임추궁 등의 소

- ① 6개월(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제189조 제2항의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그 권리를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することができない単元未満株主を除く。)は、株式会社に対し、書面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発起人、設立時取締役、設立時監査役、役員等(第四百二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役員等をいう。)若しくは清算人(以下この節において「発起人等」という。)の責任を追及する訴え、第二百二条の二第一項、第二百十二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百八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支払を求める訴え、第二百二十条第三項の利益の返還を求める訴え又は第二百十三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二百八十六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支払若しくは給付を求める訴え(以下この節において「責任追及等の訴え」という。)の提起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責任追及等の訴えが当該株主若しくは第三者の不正な利益を図り又は当該株式会社に損害を加えることを目的と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公開会社でない株式会社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から引き続き株式を有する株主」とあるのは、「株主」とする。

3 株式会社が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の日から六十日以内に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しないときは、当該請求をした株主は、株式会社のために、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4 株式会社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の日から六十日以内に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しない場合において、当該請求をした株主又は同項の発起人等から請求を受けたときは、当該請求をした者に対し、遅滞なく、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しない理由を書面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一項及び第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の期間の経過により株式会社に回復することができない損害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は、第一項の株主は、株式会社のために、直ちに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同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6 第三項又は前項の責任追及等の訴えは、訴訟の目的の価額の算定については、財産権上の請求でない請求に係る訴えとみなす。

7 株主が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したときは、裁判所は、被告の申立てにより、当該株主に対し、相当の担保を立て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8 被告が前項の申立てをするには、責任追及等の訴えの提起が悪意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を疎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행사할 수 없는 단원미만주주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서면 그 외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발기인, 설립시이사, 설립시감사, 임원등(제423조 제1항의 임원 등을 말한다) 혹은 청산인(이하 이 절에서 “발기인등”이라 한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제102조의2 제1항, 제212조 제1항 혹은 제285조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 제120조 제3항의 이익반환을 청구하는 소 또는 제213조의2 제1항 혹은 제286조의2 제1항의 지급 혹은 급부를 청구하는 소(이하 이 절에서 “책임추궁등의 소”라 한다)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책임추궁등의 소가 주주 혹은 제삼자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 대해 전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중 “6개월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는 “주주”로 한다.

③ 주식회사가 제1항의 청구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책임추궁등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청구를 한 주주는 주식회사를 위하여 책임추궁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는 제1항의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책임추궁등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당해 청구를 한 주주 또는 동항의 발기인등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청구를 한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책임추궁등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서면 그 밖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기간 경과에 의하여 주식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주주는 주식회사를 위하여 즉시 책임추궁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 또는 전항의 책임추궁등의 소는 소송의 목적의 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재산권상의 청구가 아닌 청구에 관한 소로 본다.

⑦ 주주가 책임추궁등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그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피고가 전항의 청구를 하려면 책임추궁등의 소의 제기가 악의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第847条の2 旧株主による責任追及等の訴え

1 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の効力が生じた日の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から当該日まで引き続き株式会社の株主であった者(第百八十九条第二項の定款の定めによりそ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単元未満株主であった者を除く。以下この条において「旧株主」という。)は、当該株式会社の株主でなくなった場合であっても、当該各号に定めるときは、当該株式会社(第二号に定める場合にあっては、同号の吸収合併後存続する株式会社。以下この節において「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という。)に対し、書面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責任追及等の訴え(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の効力が生じた時までにその原因となった事実が生じた責任又は義務に係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提起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責任追及等の訴えが当該旧株主若しくは第三者の不正な利益を図り又は当該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若しくは次の各号の完全親会社(特定の株式会社の発行済株式の全部を有する株式会社その他これと同等の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株式会社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に損害を加えることを目的と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当該株式会社の株式交換又は株式移転 当該株式交換又は株式移転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完全親会社の株式を取得し、引き続き当該株式を有するとき。
- 二 当該株式会社が吸収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となる吸収合併 当該吸収合併により、吸収合併後存続する株式会社の完全親会社の株式を取得し、引き続き当該株式を有するとき。

2 公開会社でない株式会社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の効力が生じた日の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から当該日まで引き続き」とあるのは、「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の効力が生じた日において」とする。

3 旧株主は、第一項各号の完全親会社の株主でなくなった場合であっても、次に掲げるときは、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に対し、書面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責任追及等の訴えの提起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責任追及等の訴えが当該旧株主若しくは第三者の不正な利益を図り又は当該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若しくは次の各号の株式を発行している株式会社に損害を加えることを目的と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当該完全親会社の株式交換又は株式移転により当該完全親会社の完全親会

제847조의2 구주주에 의한 책임추궁등의 소

① 다음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6개월(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전부터 해당일까지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주주이었던 자(제189조 제2항의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단원미만주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구주주”라 한다)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도 각 호에서 정하는 때는 주식회사(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절에서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서면 그 밖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책임추궁등의 소(다음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그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책임 또는 의무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책임추궁등의 소가 구주주 혹은 제삼자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 혹은 다음 각 호의 완전모회사(특정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는 주식회사 그 외에 이와 동등한 것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회사의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계속하여 주식을 소유할 때
2. 주식회사가 흡수합병으로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 : 흡수합병으로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계속해서 당해 주식을 소유할 때

②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 전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다음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6개월(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전부터 해당일까지 계속”은 “다음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로 한다.

③ 구주주는 제1항 각 호의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에 대하여 서면 그 외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책임추궁등의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책임추궁등의 소가 구주주 혹은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 혹은 다음 각 호의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에 대해 손해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완전모회사의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당해 완전모회사의 완전모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社の株式を取得し、引き続き当該株式を有するとき。

二 当該完全親会社が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となる合併により、合併により設立する株式会社又は合併後存続する株式会社若しくはその完全親会社の株式を取得し、引き続き当該株式を有するとき。

4 前項の規定は、同項第一号(この項又は次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旧株主が同号の株式の株主でなくなったときについて準用する。

5 第三項の規定は、同項第二号(前項又はこの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旧株主が同号の株式の株主でなくなったとき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三項(前項又はこの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中「当該完全親会社」とあるのは、「合併により設立する株式会社又は合併後存続する株式会社若しくはその完全親会社」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6 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が第一項又は第三項(前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請求(以下この条において「提訴請求」という。)の日から六十日以内に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しないときは、当該提訴請求をした旧株主は、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のために、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7 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は、提訴請求の日から六十日以内に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しない場合において、当該提訴請求をした旧株主又は当該提訴請求に係る責任追及等の訴えの被告となることとなる発起人等から請求を受けたときは、当該請求をした者に対し、遅滞なく、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しない理由を書面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8 第一項、第三項及び第六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の期間の経過により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に回復することができない損害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は、提訴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旧株主は、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のために、直ちに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9 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に係る適格旧株主(第一項本文又は第三項本文の規定によれば提訴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なる旧株主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がある場合において、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の効力が生じた時までにはその原因となった事実が生じた責任又は義務を免除するときにおける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계속 주식을 소유할 때.

2. 완전모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되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주식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혹은 그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계속 주식을 소유할 때.

④ 전항은 동항 제1호(이하 이 항 또는 다음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에 구주주가 동호의 주식의 주주가 아니게 된 때에 준용한다.

⑤ 제3항은 동항 제2호(전항 또는 이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에 구주주가 동호의 주식의 주주가 아니게 된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전항 또는 이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당해 완전모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주식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혹은 그 완전모회사”로 환독한다.

⑥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가 제1항 또는 제3항(전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청구(이하 이 조에서 “제소청구”라 한다)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책임추궁등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소청구를 한 구주주는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를 위하여 책임추궁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는 제소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책임추궁등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제소청구를 한 구주주 또는 제소청구와 관련된 책임추궁등의 소의 피고가 되게 되는 발기인등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청구를 한 자에 대해 지체 없이 책임추궁등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⑧ 제1항,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청구를 할 수 있는 구주주는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를 위하여 즉시 책임추궁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⑨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와 관련된 적격 구주주(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제소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구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그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책임 또는 의무를 면제할 때 제55조, 제102조의2 제2항, 제103조 제3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五十五条、第二条の二第二項、第百三条第三項、第百二十条第五項、第二百十三條の二第二項、第二百八十六條の二第二項、第四百二十四條(第四百八十六條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四百六十二条第三項ただし書、第四百六十四条第二項及び第四百六十五条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れらの規定中「総株主」とあるのは、「総株主及び第百四十七條の二第九項に規定する適格旧株主の全員」とする。

第847条の3 最終完全親会社等の株主による特定責任追及の訴え

1 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から引き続き株式会社の最終完全親会社等(当該株式会社の完全親会社等であって、その完全親会社等がないもの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の総株主(株主総会において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の全部につき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を除く。)の議決権の百分の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議決権を有する株主又は当該最終完全親会社等の発行済株式(自己株式を除く。)の百分の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数の株式を有する株主は、当該株式会社に対し、書面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特定責任に係る責任追及等の訴え(以下この節において「特定責任追及の訴え」という。)の提起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特定責任追及の訴えが当該株主若しくは第三者の不正な利益を図り又は当該株式会社若しくは当該最終完全親会社等に損害を加えることを目的とする場合
- 二 当該特定責任の原因となった事実によって当該最終完全親会社等に損害が生じていない場合

2 前項に規定する「完全親会社等」とは、次に掲げる株式会社をいう。

- 一 完全親会社
- 二 株式会社の発行済株式の全部を他の株式会社及びその完全子会社等(株式会社がその株式又は持分の全部を有する法人をいう。以下この条及び第百四十九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又は他の株式会社の完全子会社等有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他の株式会社(完全親会社を除く。)
- 3 前項第二号の場合において、同号の他の株式会社及びその完全子会社等又は同号の他の株式会社の完全子会社等が他の法人の株式又は持分の全部を有する場

항, 제120조 제5항, 제213조의2 제2항, 제286조의2 제2항, 제424조(제486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2조 제3항 단서, 제464조 제2항 및 제465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하여 이러한 규정 중 “총주주”는 “총주주 및 제847조의2 제9항에서 규정하는 적격구주주 전원”으로 한다.

제847조의3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주주에 의한 특정책임추궁의 소

① 6개월(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최종완전모회사등(주식회사의 완전모회사등으로서 그 완전모회사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총주주(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 전부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제외한다)의 의결권의 100분의1(이것을 하회하는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의결권을 소유하는 주주 또는 최종완전모회사등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이것을 하회하는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서면, 그 이외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정책임과 관련된 책임추궁등의 소(이하 이 절에서 “특정책임추궁의 소”라 한다)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책임추궁의 소가 주주 혹은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주식회사 혹은 최종완전모회사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책임의 원인이 된 사실에 의하여 최종완전모회사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 전항의 “완전모회사등”이란 다음의 주식회사를 말한다.

1. 완전모회사
2.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다른 주식회사 및 완전자회사등(주식회사가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를 소유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49조 제3항에서 같다)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이 소유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다른 주식회사(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③ 전항 제2호의 경우 동호의 다른 주식회사 및 완전자회사등 또는 동호의 다른 주식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를 소유하는 경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合における当該他の法人は、当該他の株式会社の完全子会社等とみなす。

4 第一項に規定する「特定責任」とは、当該株式会社の発起人等の責任の原因となった事実が生じた日において最終完全親会社等及びその完全子会社等(前項の規定により当該完全子会社等とみなされるものを含む。次項及び第八百四十九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における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帳簿価額が当該最終完全親会社等の総資産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の五分之一(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を超える場合における当該発起人等の責任をいう(第十項及び同条第七項において同じ。)

5 最終完全親会社等が、発起人等の責任の原因となった事実が生じた日において最終完全親会社等であった株式会社をその完全子会社等としたものである場合には、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最終完全親会社等であった株式会社を同項の最終完全親会社等とみなす。

6 公開会社でない最終完全親会社等における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から引き続き株式会社」とあるのは、「株式会社」とする。

7 株式会社が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の日から六十日以内に特定責任追及の訴えを提起しないときは、当該請求をした最終完全親会社等の株主は、株式会社のために、特定責任追及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8 株式会社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の日から六十日以内に特定責任追及の訴えを提起しない場合において、当該請求をした最終完全親会社等の株主又は当該請求に係る特定責任追及の訴えの被告となることとなる発起人等から請求を受けたときは、当該請求をした者に対し、遅滞なく、特定責任追及の訴えを提起しない理由を書面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9 第一項及び第七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の期間の経過により株式会社に回復することができない損害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は、第一項に規定する株主は、株式会社のために、直ちに特定責任追及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同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10 株式会社に最終完全親会社等がある場合において、特定責任を免除するときにおける第五十五条、第百三条第三項、第百二十条第五項、第四百二十四条(第四百八十六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四百六十二条第三項ただし書、第四百六十四条第二項及び第四百六十五条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れ

우에 있어서의 다른 법인은 당해 다른 주식회사의 완전자회사등으로 간주한다.

④ 제1항의 “특정책임”이란 주식회사의 발기인등의 책임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 최종완전모회사등 및 그 완전자회사등(전항에 의해 완전자회사등으로 간주된 것을 포함한다. 다음 항 및 제849조 제3항에서 같다)에서의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의 장부가격이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총자산액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5분의 1(이보다 적은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발기인등의 책임을 말한다(제10항 및 동조 제7항에서 같다).

⑤ 최종완전모회사등이 발기인등의 책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 최종완전모회사등이었던 주식회사를 그 완전자회사등으로 한 경우에는 전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최종완전모회사등이었던 주식회사를 동항의 최종완전모회사등으로 간주한다.

⑥ 공개회사가 아닌 최종완전모회사등의 경우 제1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6개월(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⑦ 주식회사가 제1항의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정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청구를 한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주주는 주식회사를 위하여 특정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주식회사는 제1항의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정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한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주주 또는 특정책임추궁의 소의 피고가 될 발기인등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청구를 한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특정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 그 밖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주식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주주는 주식회사를 위하여 즉시 특정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주식회사에 최종완전모회사등이 있는 경우 특정책임을 면제하는 때 제55조, 제103조 제3항, 제120조 제5항, 제424조(제486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2조 제3항 단서, 제464조 제2항 및 제465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이러한 규정 중 “총주주”는 “총주주 및 주식회사의 제847조의3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らの規定中「総株主」とあるのは、「総株主及び株式会社の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最終完全親会社等の総株主」とする。

第847条の4 責任追及等の訴えに係る訴訟費用等

1 第八百四十七条第三項若しくは第五項、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六項若しくは第八項又は前条第七項若しくは第九項の責任追及等の訴えは、訴訟の目的の価額の算定については、財産権上の請求でない請求に係る訴えとみなす。

2 株主等(株主、適格旧株主又は最終完全親会社等の株主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が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したときは、裁判所は、被告の申立てにより、当該株主等に対し、相当の担保を立て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3 被告が前項の申立てをするには、責任追及等の訴えの提起が悪意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を疎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848条 訴えの管轄

責任追及等の訴えは、株式会社又は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以下この節において「株式会社等」という。)の本店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に専属する。

第849条 訴訟参加

1 株主等又は株式会社等は、共同訴訟人として、又は当事者の一方を補助するため、責任追及等の訴え(適格旧株主にあつては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の効力が生じた時までにその原因となった事実が生じた責任又は義務に係るものに限り、最終完全親会社等の株主にあつては特定責任追及の訴えに限る。)に係る訴訟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不当に訴訟手続を遅延させることとなるとき、又は裁判所に対し過大な事務負担を及ぼすこととな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次の各号に掲げる者は、株式会社等の株主でない場合であっても、当事者の一方を補助するため、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提起した責任追及等の訴えに係る訴訟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前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一 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一項各号に定める場合又は同条第三項第一号(同条第四項及び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

제1항에서 규정하는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총주주”라 한다.

제847조의4 책임추궁등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 등

- ① 제847조 제3항 혹은 제 5 항, 제847조의2 제6항 혹은 제8항 또는 전조 제7항 혹은 제9항의 책임추궁등의 소는 소송의 목적가액산정에 관해서는 재산권상의 청구가 아닌 청구에 관한 소로 간주한다.
- ② 주주등(주주, 적격주주 또는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책임추궁등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주주등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피고가 전항의 신청을 하려면 책임추궁등의 소의 제기가 악의에 의한 것임을 소명 하여야 한다.

제848조 소의 관할

책임추궁등의 소는 주식회사 또는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이하 이 절에 “주식회사등”이라 한다)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 한다.

제849조 소송참가

- ① 주주등 또는 주식회사등은 공동소송인으로서 또는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책임추궁등의 소(적격주주의 경우에는 제847조의2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그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책임 또는 의무에 관련된 것에 한하고,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주주의 경우에는 특정책임추궁의 소에 한한다)에 관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게 소송절차를 지연시키게 될 때 또는 법원에 과도한 사무부담을 주게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주식회사등의 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당해 각 호의 자가 제기한 책임추궁등의 소에 관련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제847조의2 제1항 각 호의 경우 또는 동조 제3항 제1호(동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第二号(同条第四項及び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掲げる場合における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の完全親会社(同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同条第三項第一号の株式交換若しくは株式移転若しくは同項第二号の合併の効力が生じた時においてその完全親会社があるものを除く。)であって、当該完全親会社の株式交換若しくは株式移転又は当該完全親会社が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となる合併によりその完全親会社となった株式会社がないもの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適格旧株主

二 最終完全親会社等 当該最終完全親会社等の株主

3 株式会社等、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又は最終完全親会社等が、当該株式会社等、当該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の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又は当該最終完全親会社等の完全子会社等である株式会社の取締役(監査等委員及び監査委員を除く。)、執行役及び清算人並びにこれらの者であった者を補助するため、責任追及等の訴えに係る訴訟に参加するには、次の各号に掲げる株式会社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監査役設置会社 監査役(監査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各監査役)

二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 各監査等委員

三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 各監査委員

4 株主等は、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したときは、遅滞なく、当該株式会社等に対し、訴訟告知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株式会社等は、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したとき、又は前項の訴訟告知を受け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公告し、又は株主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株式会社等に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がある場合であって、前項の責任追及等の訴え又は訴訟告知が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の効力が生じた時までにはその原因となった事実が生じた責任又は義務に係るもの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会社等は、前項の規定による公告又は通知のほか、当該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に対し、遅滞なく、当該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し、又は当該訴訟告知を受け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7 株式会社等に最終完全親会社等がある場合であって、第五項の責任追及等の訴え又は訴訟告知が特定責任に係るもの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会社等は、同項の規

같다) 혹은 제2호(동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의 완전모회사(동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동조 제3항 제1호의 주식교환 혹은 주식이전 혹은 동항 제2호의 합병효력이 발생한 때 완전모회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완전모회사의 주식교환 혹은 주식이전 또는 완전모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되는 합병으로 인하여 그 완전모회사가 된 주식회사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적격구주주

2. 최종완전모회사등 :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주주

③ 주식회사등,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 또는 최종완전모회사등이 당해 주식회사등, 당해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의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 또는 당해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완전자회사등인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등위원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집행임원, 청산인 및 이러한 자이었던 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책임추궁등의 소에 참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주식회사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감사설치회사 : 감사(감사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감사)

2.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 각 감사등위원

3.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 : 각 감사위원

④ 주주등은 책임추궁등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식회사등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등은 책임추궁등의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전항의 소송고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공고 또는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주식회사등에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가 있는 경우로서 전항의 책임추궁등의 소 또는 소송고지가 제847조의2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그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책임 또는 의무에 관련된 것일 때에는 주식회사등은 전항의 공고 또는 통지 외에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에 대해 지체 없이 책임추궁등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소송고지를 받은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주식회사등에 최종완전모회사등이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책임추궁등의 소 또는 소송고지가 특정책임에 관한 것일 때에는 주식회사등은 동항의 공고 또는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定による公告又は通知のほか、当該最終完全親会社等に対し、遅滞なく、当該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し、又は当該訴訟告知を受け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8 第六項の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が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の発行済株式の全部を有する場合における同項の規定及び前項の最終完全親会社等が株式会社の発行済株式の全部を有する場合における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れらの規定中「のほか」とあるのは、「に代えて」とする。

9 公開会社でない株式会社等における第五項から第七項まで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五項中「公告し、又は株主に通知し」とあるのは「株主に通知し」と、第六項及び第七項中「公告又は通知」とあるのは「通知」とする。

10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規定する株式会社は、遅滞なく、その旨を公告し、又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が第六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場合 適格旧株主
- 二 最終完全親会社等が第七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場合 当該最終完全親会社等の株主

11 前項各号に規定する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ない場合における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公告し、又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通知し」とあるの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通知し」とする。

第849条の2 和解

株式会社等が、当該株式会社等の取締役（監査等委員及び監査委員を除く。）、執行役及び清算人並びにこれらの者であった者の責任を追及する訴えに係る訴訟における和解をするには、次の各号に掲げる株式会社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監査役設置会社 監査役（監査役が二人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各監査役）
- 二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 各監査等委員
- 三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 各監査委員

第850条

1 民事訴訟法第二百六十七条の規定は、株式会社等が責任追及等の訴えに係る訴訟における和解の当事者でない場合には、当該訴訟における訴訟の目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ただし、当該株式会社等の承認がある場合は、この限

통지 외에 최종완전모회사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책임추궁등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소송고지를 받은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6항의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가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경우의 동향 및 전향의 최종완전모회사등이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경우의 동향의 적용에 관해서는 이러한 규정 중 “의 외”는 “에 같음하여”로 한다.

⑨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등의 경우 제5항 내지 제7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5항 중 “공고하거나 또는 주주에게 통지하고”는 “주주에게 통지하고”로, 제6항 및 제7항 중 “공고 또는 통지”는 “통지”로 한다.

⑩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규정하는 주식회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거나 또는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가 제6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적격주주
2. 최종완전모회사등이 제7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주주

⑪ 전향 각 호에서 규정하는 주식회사가 공개회사가 아닌 경우 동향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향 중 “공고하거나 또는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고”는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고”로 한다.

제849조의2 화해

주식회사 등이 해당 주식회사 등의 이사(감사등위원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집행임원 및 청산인과 이러한 자였던 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주식회사의 구분에 따라 각호에서 정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감사설치회사: 감사(감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감사)
2.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각 감사등위원
3.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 각 감사위원

제850조

① 민사소송법 제267조는 주식회사등이 책임추궁등의 소에 관한 소송에서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소송목적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회사등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りでない。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裁判所は、株式会社等に対し、和解の内容を通知し、かつ、当該和解に異議があるときは二週間以内に異議を述べるべき旨を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株式会社等が前項の期間内に書面により異議を述べなかったときは、同項の規定による通知の内容で株主等が和解をすることを承認したものとみなす。

4 第五十五条、第百二条の二第二項、第百三条第三項、第百二十条第五項、第二百十三条の二第二項、第二百八十六条の二第二項、第四百二十四条(第四百八十六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四百六十二条第三項(同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分配可能額を超えない部分について負う義務に係る部分に限る。)、第四百六十四条第二項及び第四百六十五条第二項の規定は、責任追及等の訴えに係る訴訟における和解をす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第851条 株主でなくなった者の訴訟追行

1 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した株主又は第八百四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共同訴訟人として当該責任追及等の訴えに係る訴訟に参加した株主が当該訴訟の係属中に株主でなくなった場合であっても、次に掲げるときは、その者が、訴訟を追行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その者が当該株式会社の株式交換又は株式移転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完全親会社の株式を取得したとき。
- 二 その者が当該株式会社が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となる合併により、合併により設立する株式会社又は合併後存続する株式会社若しくはその完全親会社の株式を取得したとき。

2 前項の規定は、同項第一号(この項又は次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前項の株主が同項の訴訟の係属中に当該株式会社の完全親会社の株式の株主でなくなったとき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この項又は次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中「当該株式会社」とあるのは、「当該完全親会社」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3 第一項の規定は、同項第二号(前項又はこの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第一項の株主が同項の訴訟の係属中に合併により設立する株式会社又は合併後存続する株式会社若しくはその完全親会社の株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주식회사등에 대하여 화해의 내용을 통지하고, 화해에 이익이 있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이익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뜻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등이 전항의 기간 내에 서면에 의한 이익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동항의 통지의 내용으로 주주등이 화해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55조, 제102조의2 제2항, 제103조 제3항, 제120조 제5항, 제213조의2 제2항, 제286조의2 제2항, 제424조(제486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2조 제3항(동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분배가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부담하는 의무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464조 제2항 및 제465조 제2항은 책임추궁등의 소에 관한 소송에서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851조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자의 소송수행

① 책임추궁등의 소를 제기한 주주 또는 제849조 제1항의 공동소송인으로서 당해 책임추궁등의 소에 관한 소송에 참가한 주주가 그 소송계속 중에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도 다음의 때에는 그 자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1. 그 자가 주식회사의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때
2. 그 자가, 당해 주식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회사가 되는 합병에 의하여 합병으로 설립하는 주식회사, 합병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때

② 전항은 동항 제1호(이 항 또는 다음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 전항의 주주가 동항의 소송계속 중에 당해주식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주주가 아니게 된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이 항 또는 다음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주식회사”는 “완전모회사”로 한다.

③ 제1항은 동항 제2호(전항 또는 이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 제1항의 주주가 동항의 소송계속 중에 합병으로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혹은 그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주주가 아니게 된 경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式の株主でなくなったとき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前項又はこの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中「当該株式会社」とあるのは、「合併により設立する株式会社又は合併後存続する株式会社若しくはその完全親会社」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852条 費用等の請求

- 1 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した株主等が勝訴(一部勝訴を含む。)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責任追及等の訴えに係る訴訟に関し、必要な費用(訴訟費用を除く。)を支払ったとき又は弁護士若しくは弁護士法人に報酬を支払うべきときは、当該株式会社等に対し、その費用の額の範囲内又はその報酬額の範囲内で相当と認められる額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2 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した株主等が敗訴した場合であっても、悪意があったときを除き、当該株主等は、当該株式会社等に対し、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義務を負わない。
- 3 前二項の規定は、第八百四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同項の訴訟に参加した株主等について準用する。

第853条 再審の訴え

- 1 責任追及等の訴えが提起された場合において、原告及び被告が共謀して責任追及等の訴えに係る訴訟の目的である株式会社等の権利を害する目的をもって判決をさせたときは、次の各号に掲げる者は、当該各号に定める訴えに係る確定した終局判決に対し、再審の訴えをもって、不服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
 - 一 株主又は株式会社等 責任追及等の訴え
 - 二 適格旧株主 責任追及等の訴え(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の効力が生じた時までにはその原因となった事実が生じた責任又は義務に係るものに限る。)
 - 三 最終完全親会社等の株主 特定責任追及の訴え
- 2 前条の規定は、前項の再審の訴えについて準用する。

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전항 또는 이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주식회사”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혹은 그 완전모회사”로 한다.

제852조 비용등의 청구

- ① 책임추궁등의 소를 제기한 주주등이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책임추궁등의 소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비용(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을 지출한 때 또는 변호사 혹은 변호사법인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때에는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범위 내 또는 그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책임추궁등의 소를 제기한 주주등이 패소한 경우에도 악의가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 주주등은 주식회사등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 하지 않는다.
- ③ 전 2항은 제849조 제1항에 의하여 동항의 소송에 참가한 주주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53조 재심의 소

- ① 책임추궁등의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 및 피고가 공모하여 책임추궁등의 소의 소송목적인 주식회사등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소에 관련된 확정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로써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주 또는 주식회사등 : 책임추궁등의 소
 2. 적격주주 : 책임추궁등의 소(제847조의2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 할 때까지 그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책임 또는 의무에 관한 것에 한한다)
 3.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주주 : 특정책임추궁의 소
- ② 전조는 전항의 재심의 소에 준용한다.

第3節 株式会社の役員の解任の訴え

第854条 株式会社の役員の解任の訴え

1 役員(第三百二十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役員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の職務の執行に関し不正の行為又は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する重大な事実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当該役員を解任する旨の議案が株主総会において否決されたとき又は当該役員を解任する旨の株主総会の決議が第三百二十三条の規定によりその効力を生じないときは、次に掲げる株主は、当該株主総会の日から三十日以内に、訴えをもって当該役員の解任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総株主(次に掲げる株主を除く。)の議決権の百分の三(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議決権を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から引き続き有する株主(次に掲げる株主を除く。)

イ 当該役員を解任する旨の議案につ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

ロ 当該請求に係る役員である株主

二 発行済株式(次に掲げる株主の有する株式を除く。)の百分の三(これ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割合)以上の数の株式を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から引き続き有する株主(次に掲げる株主を除く。)

イ 当該株式会社である株主

ロ 当該請求に係る役員である株主

2 公開会社でない株式会社における前項各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れらの規定中「六箇月(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前から引き続き有する」とあるのは、「有する」とする。

3 第百八条第一項第九号に掲げる事項(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に関するものに限る。)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種類の株式を発行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主総会」とあるのは、「株主総会(第三百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三百三十九条第一項の種類株主総会を含む。)」とする。

제3절 주식회사의 임원해임의 소

제854조 주식회사의 임원해임의 소

① 임원(제329조 제1항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을 해임하는 뜻의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때 또는 그 임원을 해임하는 뜻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주주는 당해 주주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로써 당해 임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1. 총주주(다음의 주주는 제외한다) 의결권의 100분의3(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상의 의결권을 6개월(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는 주주(다음의 주주는 제외한다)

가. 임원을 해임하는 뜻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나. 청구에 관련된 임원인 주주

2. 발행주식(다음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3(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상의 수의 주식을 6개월(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는 주주(다음의 주주는 제외한다)

가. 당해 주식회사인 주주

나. 청구에 관계된 임원인 주주

②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 대해 전항 각 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 중 “6개월(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는”은 “보유하는”으로 한다.

③ 제108조 제1항 제9호의 사항(이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밖의 이사)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정함이 있는 특정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제1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주주총회”는 “주주총회(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339조 제1항의 종류주주총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4 第百八条第一項第九号に掲げる事項(監査役に関するものに限る。)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種類の株式を発行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株主総会」とあるのは、「株主総会(第三百四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三百三十九条第一項の種類株主総会を含む。)」とする。

第855条 被告

前条第一項の訴え(次条及び第九百三十七条第一項第一号又において「株式会社の役員の解任の訴え」という。)については、当該株式会社及び前条第一項の役員を被告とする。

第856条 訴えの管轄

株式会社の役員の解任の訴えは、当該株式会社の本店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に専属する。

第4節 特別清算に関する訴え

第857条 役員等の責任の免除の取消しの訴えの管轄

第五百四十四条第二項の訴えは、特別清算裁判所(第八百八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特別清算裁判所をいう。次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の管轄に専属する。

第858条 役員等責任査定決定に対する異議の訴え

- 1 役員等責任査定決定(第五百四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役員等責任査定決定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不服がある者は、第八百九十九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送達を受けた日から一箇月の不変期間内に、異議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訴えは、これを提起する者が、対象役員等(第五百四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対象役員等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であるときは清算株式会社を、清算株式会社であるときは対象役員等を、それぞれ被告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第一項の訴えは、特別清算裁判所の管轄に専属する。
- 4 第一項の訴えについての判決においては、訴えを不適法として却下する場合を除き、役員等責任査定決定を認可し、変更し、又は取り消す。
- 5 役員等責任査定決定を認可し、又は変更した判決は、強制執行に関しては、給

④ 제108조 제1항 제9호의 사항(감사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정함이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제1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동항 중 “주주총회”는 “주주총회(제347조 제2항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339조제1항의 종류주주총회를 포함한다)”로 본다.

제855조 피고

전조 제1항의 소(다음 조 및 제937조 제1항 제1호에서 “주식회사의 임원해임의 소”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당해 주식회사 및 전조 제1항의 임원을 피고로 한다.

제856조 소의 관할

주식회사의 임원해임의 소는 주식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4절 특별청산에 관한 소

제857조 임원등의 책임면제의 취소의 소의 관할

제544조 제2항의 소는 특별청산 법원(제880조 제1항의 특별청산법원을 말한다. 다음 조 제3항에서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858조 임원등책임사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 ① 임원등책임사정결정(제545조 제1항의 임원등책임사정결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불복하는 자는 제899조 제4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소는 이를 제기하는 자가 대상임원등(제542조 제1항의 대상임원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때에는 청산주식회사를, 청산주식회사인 때에는 대상임원등을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소는 특별청산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④ 제1항의 소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등책임사정결정을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한다.
- ⑤ 임원등책임사정결정을 인가 또는 변경한 판결은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급부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付を命ずる判決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

6 役員等責任査定決定を認可し、又は変更した判決については、受訴裁判所は、民事訴訟法第二百五十九条第一項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仮執行の宣言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5節 持分会社の社員の除名の訴え等

第859条 持分会社の社員の除名の訴え

持分会社の社員(以下この条及び第八百六十一条第一号において「対象社員」という。)について次に掲げる事由があるときは、当該持分会社は、対象社員以外の社員の過半数の決議に基づき、訴えをもって対象社員の除名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出資の義務を履行しないこと。
- 二 第五百九十四条第一項(第五百九十八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たこと。
- 三 業務を執行するに当たって不正の行為をし、又は業務を執行する権利がないのに業務の執行に関与したこと。
- 四 持分会社を代表するに当たって不正の行為をし、又は代表権がないのに持分会社を代表して行為をしたこと。
-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重要な義務を尽くさないこと。

第860条 持分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社員の業務執行権又は代表権の消滅の訴え

持分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社員(以下この条及び次条第二号において「対象業務執行社員」という。)について次に掲げる事由があるときは、当該持分会社は、対象業務執行社員以外の社員の過半数の決議に基づき、訴えをもって対象業務執行社員の業務を執行する権利又は代表権の消滅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前条各号に掲げる事由があるとき。
- 二 持分会社の業務を執行し、又は持分会社を代表することに著しく不適任なとき。

第861条 被告

次の各号に掲げる訴えについて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を被告とする。

- 一 第八百五十九条の訴え(次条及び第九百三十七条第一項第一号ルにおいて

를 명하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⑥ 임원등책임사정결정을 인가 또는 변경한 판결에 대하여 수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제5절 지분회사의 사원제명의 소 등

제859조 지분회사의 사원제명의 소

지분회사의 사원(이하 이 조 및 제861조 제1호에서 “대상사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지분회사는 대상사원 이외의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거하여 소로써 대상사원의 제명을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
2. 제594조 제1항(제59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것
3.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권리가 없으면서 업무의 집행에 관여한 것
4. 지분회사를 대표함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대표권이 없으면서 지분회사를 대표하여 행위를 한 것
5. 전 각 호 외에 중요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

제860조 지분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의 소멸의 소

지분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2호에 있어서 “대상 업무집행사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지분회사는 대상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거하여 소로써 대상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 조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2. 지분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지분회사를 대표함에 현저하게 부적임인 때

제861조 피고

다음 각호의 소에 관하여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를 피고로 한다.

1. 제859조의 소(다음 조 및 제937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분회사의 사원제명

第7編 雑則
第2章 訴訟

- 「持分会社の社員の除名の訴え」という。) 対象社員
- 二 前条の訴え(次条及び第九百三十七条第一項第一号ヲにおいて「持分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社員の業務執行権又は代表権の消滅の訴え」という。) 対象業務執行社員

第862条 訴えの管轄

持分会社の社員の除名の訴え及び持分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社員の業務執行権又は代表権の消滅の訴えは、当該持分会社の本店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に専属する。

第6節 清算持分会社の財産処分 of 取消しの訴え

第863条 清算持分会社の財産処分 of 取消しの訴え

- 1 清算持分会社(合名会社及び合資会社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が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とき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は、訴えをもって当該行為の取消し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行為がその者を害しないもの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第六百七十条の規定に違反して行った清算持分会社の財産の処分 清算持分会社の債権者
- 二 第六百七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行った清算持分会社の財産の処分 清算持分会社の社員の持分を差し押さえた債権者
- 2 民法第四百二十四条第一項 ただし書、第四百二十五条及び第四百二十六条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四百二十四条第一項 ただし書中「その行為によって」とあるのは、「会社法(平成十七年法律第八十六号) 第八百六十三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によって」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864条 被告

前条第一項の訴えについては、同項各号に掲げる行為の相手方又は転得者を被告とする。

의 소”라고 한다) : 대상사원

2. 전조의 소(다음 조 및 제937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분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의 소멸의 소”라고 한다) : 대상업무집행사원

제862조 소의 관할

지분회사의 사원제명의 소 및 지분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의 소멸의 소는 그 지분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6절 청산지분회사의 재산처분의 취소의 소

제863조 청산지분회사의 재산처분의 취소의 소

① 청산지분회사(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 같다)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각 호에 규정하는 자는 소로써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행위가 그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70조에 위반하여 행한 청산지분회사의 재산처분 : 청산지분회사의 채권자
2. 제671조 제1항에 위반하여 행한 청산지분회사의 재산처분 : 청산지분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

② 민법 제424조 제1항 단서, 제425조 및 제426조는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424조 제1항 중 “그 행위에 의하여”는 “회사법 (1989년 법률 제86호) 제86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로 한다.

제864조 피고

전조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동항 각 호의 행위의 상대방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한다.

第7節 社債発行会社の弁済等の取消しの訴え

第865条 社債発行会社の弁済等の取消しの訴え

- 1 社債を発行した会社が社債権者に対してした弁済、社債権者との間でした和解その他の社債権者に対してし、又は社債権者との間でした行為が著しく不公正であるときは、社債管理者は、訴えをもって当該行為の取消し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訴えは、社債管理者が同項の行為の取消しの原因となる事実を知った時から六箇月を経過したときは、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同項の行為の時から一年を経過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 3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社債権者集会の決議があるときは、代表社債権者又は決議執行者(第七百三十七条第二項に規定する決議執行者をいう。)も、訴えをもって第一項の行為の取消し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同項の行為の時から一年を経過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4 民法第四百二十四条第一項ただし書及び第四百二十五条の規定は、第一項及び前項本文の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四百二十四条第一項ただし書中「その行為によって」とあるのは「会社法第八百六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行為によって」と、「債権者を害すべき事実」とあるのは「その行為が著しく不公正であること」と、同法第四百二十五条中「債権者」とあるのは「社債権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866条 被告

前条第一項又は第三項の訴えについては、同条第一項の行為の相手方又は転得者を被告とする。

第867条 訴えの管轄

第八百六十五条第一項又は第三項の訴えは、社債を発行した会社の本店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に専属する。

제7절 사채발행회사의 변제등의 취소의 소

제865조 사채발행회사의 변제등의 취소의 소

- ①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사채권자와 한 화해 기타 사채권자에게 하거나 사채권자와 한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자는 소로써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소는 사채관리자가 동항의 행위의 취소원인이 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기할 수 없다. 동항의 행위시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사채권자 또는 결의집행자(제737조 제2항의 결의집행자를 말한다)도 소로써 제1항의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동항의 행위시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민법 제424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는 제1항 및 전항본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424조 제1항 단서 중 “그 행위에 의하여”는 “회사법 제865조 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로, “채권자를 해할 사실”은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동법 제425조 중 “채권자”는 “사채권자”로 환독한다.

제866조 피고

전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소에 관하여는 동조 제1항의 행위의 상대방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한다.

제867조 소의 관할

제86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第3章 非訟

第1節 総則

第868条 非訟事件の管轄

1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非訟事件(次項から第六項までに規定する事件を除く。)は、会社の本店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2 親会社社員(会社である親会社の株主又は社員に限る。)による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株式会社が作成し、又は備え置い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閲覧等(閲覧、謄写、謄本若しくは抄本の交付、事項の提供又は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をいう。第八百七十条第一号において同じ。)の許可の申立てに係る事件は、当該株式会社の本店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一 当該書面の閲覧若しくは謄写又はその謄本若しくは抄本の交付

二 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表示したものの閲覧若しくは謄写又は電磁的方法による当該事項の提供若しくは当該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

3 第八百七十九条の八第一項の規定による売渡株式等の売買価格の決定の申立てに係る事件は、対象会社の本店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4 第七百五条第四項及び第七百六条第四項の規定、第七百七条、第七百十一条第三項、第七百十三条並びに第七百十四条第一項及び第三項(これらの規定を第七百十四条の七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並びに第七百八十八条第三項、第七百三十二条、第七百四十条第一項及び第七百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裁判の申立てに係る事件は、社債を発行した会社の本店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5 第八百二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外国会社の清算に係る事件並びに第八百二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裁判及び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八百二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保全処分に係る事件は、当該外国会社の日本における営業所の所在地(日本に営業所を設けていない場合にあっては、日本における代表者の住所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6 第八百四十三条第四項の申立てに係る事件は、同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の無効の訴えの第一審の受訴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제3장 비 송

제1절 총 칙

제868조 비 송사건의 관 할

- ① 이 법률의 비 송사건(다음 항 내지 제6항의 사건은 제외한다)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② 모회사사원(회사인 모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에 한한다)에 의하여 이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가 작성하거나 비치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관한 다음의 열람 등(열람,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사항의 제공 또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말한다. 제870조 제1호에 있어서 같다)의 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건은 당해 주식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1. 서면의 열람, 등사,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2.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표시한 것의 열람, 등사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당해 사항의 제공 또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 ③ 제179조의8 제1항의 매도주식등의 매매가격결정신청에 관한 사건은 대상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④ 제705조 제4항, 제706조 제4항, 제707조, 제711조 제3항, 제713조, 제714조 제1항·제3항(이러한 규정들을 제714조의 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18조 제3항, 제732조, 제740조 제1항 및 제741조 제1항의 재판신청에 관한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⑤ 제822조 제1항의 외국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및 제827조 제1항의 재판 및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25조 제1항의 보전처분에 관한 사건은 외국 회사의 일본의 영업소 소재지(일본에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⑥ 제843조 제4항의 신청에 관한 사건은 동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무효의 소의 제1심의 수소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第869条 疎明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許可の申立てをする場合には、その原因となる事実を疎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870条 陳述の聴取

1 裁判所は、この法律の規定(第二編第九章第二節を除く。)による非訟事件についての裁判のうち、次の各号に掲げる裁判をす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第四号及び第六号にあつては、申立人を除く。)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不適法又は理由がないことが明らかであるとして申立てを却下する裁判を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第三百四十六条第二項、第三百五十一条第二項若しくは第四百一条第三項(第四百三条第三項及び第四百二十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一時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代表取締役、委員(指名委員会、監査委員会又は報酬委員会の委員をいう。第八百七十四条第一号において同じ。)、執行役若しくは代表執行役の職務を行うべき者、清算人、第四百七十九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四十六条第二項若しくは第四百八十三条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五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一時清算人若しくは代表清算人の職務を行うべき者、検査役又は第八百二十五条第二項(第八百二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管理人の報酬の額の決定 当該会社(第八百二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八百二十五条第二項の管理人の報酬の額の決定にあつては、当該外国会社)及び報酬を受ける者
- 二 清算人、社債管理者又は社債管理補助者の解任についての裁判 当該清算人、社債管理者又は社債管理補助者
- 三 第一百七十七条第二項、第一百九条第二項、第七十二条第一項、第九十三条第二項(第九十四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四百七十条第二項、第七百七十八条第二項、第七百八十六条第二項、第七百八十八条第二項、第七百九十八条第二項、第八百七条第二項又は第八百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株式又は新株予約権(当該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買取

제869조 소명

이 법에 의하여 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870조 진술의 청취

① 법원은 이 법 (제2편 제9장 제2절은 제외한다) 에 의한 비송사건에 관한 재판 중 다음 각 호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하는 자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제외한다) 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음을 명시하여 각하한 재판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6조 제2항, 제351조 제2항 혹은 제401조 제3항(제403조 제3항 및 제420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해 선임된 일시이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밖의 이사), 회계참여, 감사, 대표이사, 위원(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보수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제874조 제1호에서 같다), 집행임원 혹은 대표집행임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자, 청산인, 제47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346조 제2항 혹은 제483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51조 제2항에 의해 선임된 일시청산인 혹은 대표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자, 검사인 또는 제825조 제2항(제82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관리인의 보수액의 결정 : 당해 회사(제82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25조 제2항의 관리인의 보수액의 결정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회사) 및 보수를 받는 자
2. 청산인, 사채관리자 또는 사채관리보조자의 해임에 관한 재판: 해당 청산인, 사채관리자 또는 사채관리보조자
3. 제117조 제2항, 제119조 제2항, 제172조 제1항, 제193조 제2항 (제194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0조 제2항, 제778조 제2항, 제786조 제2항, 제788조 제2항, 제798조 제2항, 제807조 제2항, 또는 제8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신주예약권 (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인 경우에 있어서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의 매수 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당해 사채를 포함한다) 의 가격결정 : 가격결정

第7編 雑則
第3章 非訟

り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当該社債を含む。)の価格の決定：価格の決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

四 第二百七条第七項又は第二百八十四条第七項の規定による裁判：当該株式会社及び第百九十九条第一項第三号又は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三号の規定により金銭以外の財産を出資する者

五 第四百五十五条第二項第二号又は第五百五条第三項第二号の規定による裁判：当該株主

六 第四百五十六条又は第五百六条の規定による裁判：当該株主

七 第七百三十二条の規定による裁判：利害関係人

八 第七百四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立てを認容する裁判：社債を発行した会社

九 第七百四十一条第一項の許可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社債を発行した会社

十 第八百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裁判：当該会社

十一 第八百二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裁判：当該外国会社

2 裁判所は、次の各号に掲げる裁判をする場合には、審問の期日を開いて、申立人及び当該各号に定める者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不適法又は理由がないことが明らかであるとして申立てを却下する裁判を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一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株式会社が作成し、又は備え置い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ついての閲覧等の許可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 当該株式会社

二 第一百七条第二項、第百十九条第二項、第百八十二条の五第二項、第百九十三条第二項(第百九十四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四百七十条第二項、第七百七十八条第二項、第七百八十六条第二項、第七百八十八条第二項、第七百九十八条第二項、第八百七条第二項、第八百九条第二項又は第八百十六条の七第二項の規定による株式又は新株予約権(当該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の買取り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当該社債を含む。)の価格の決定 価格の決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申立人を除く。)

三 第百四十四条第二項(同条第七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七百七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株式の売買価格の決定 売買価格の決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申立人を除く。)

청구할 수 있는 자

4. 제207조 제7항 또는 제284조 제7항의 재판 : 당해 주식회사 및 제199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전이외의 재산을 출자한 자

5. 제455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05조 제3항 제2호의 재판 : 당해 주주

6. 제456조 또는 제506조의 재판 : 당해 주주

7. 제732조의 재판 : 이해관계인

8. 제740조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판 : 사채를 발행한 회사

9. 제741조 제1항의 허가의 신청에 관한 재판 : 사채를 발행한 회사

10. 제824조 제1항의 재판 : 당해 회사

11. 제827조 제1항의 재판 : 당해 외국회사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인 및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음을 명시하여 신청을 각하한 재판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작성하거나 비치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관한 열람등의 허가의 신청에 관한 재판 : 당해 주식회사

2. 제117조 제2항, 제119조 제2항, 제182조의5 제2항, 제193조 제2항(제194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0조 제2항, 제778조 제2항, 제786조 제2항, 제788조 제2항, 제798조 제2항, 제807조 제2항, 제809조 제2항 또는 제816조의7 제2항의 주식 또는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사채에 부착된 것인 경우 해당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의 매수 청구가 있던 때에는 해당 사채를 포함한다)의 가격결정: 가격 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신청인은 제외한다)

3. 제144조 제2항 (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매가격의 결정: 매매가격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신청인은 제외한다)

第7編 雑則
第3章 非訟

- 四 第一百七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株式の価格の決定 当該株式会社
五 第一百七十九条の八第一項の規定による売渡株式等の売買価格の決定 特別
支配株主
六 第八百四十三条第四項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 同項に規定する行為をし
た会社

第871条 理由の付記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非訟事件についての裁判には、理由を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次に掲げる裁判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前条第二号に掲げる裁判
二 第八百七十四条各号に掲げる裁判

第872条 即時抗告

次の各号に掲げる裁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第六百九条第三項又は第八百二十五条第一項(第八百二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保全処分についての裁判：利害関係人
二 第八百四十条第二項(第八百四十一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申立人、株主及び株式会社
三 第八百四十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八百四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申立人、新株予約権者及び株式会社
四 第八百七十条各号に掲げる裁判：申立人及び当該各号に定める者(同条第二号、第五号及び第七号に掲げる裁判にあつて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

第873条 原裁判の執行停止

前条の即時抗告は、執行停止の効力を有する。ただし、次に掲げる裁判に対するもの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第八百七十条第二号に掲げる裁判
二 第八百七十条第三号に掲げる裁判
三 第八百七十条第五号及び第七号に掲げる裁判
四 第八百七十条第十一号に掲げる裁判

4. 제172조 제1항에 의한 주식가격의 결정: 해당 주식회사
5. 제179조의8 제1항에 의한 매도주식등의 매매가격의 결정: 특별지배주주
6. 제843조 제4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 동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한 회사

제871조 이유의 부기

이 법의 비송사건에 관한 재판에는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재판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 조 제2호의 재판
2. 제874조 각 호의 재판

제872조 즉시항고

다음 각 호의 재판에 관해서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1. 제609조 제3항 또는 제825조 제1항 (제82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보전처분에 관한 재판: 이해관계인
2. 제840조 제2항 (제84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청구에 관한 재판: 신청인, 주주 및 주식회사
3. 제84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40조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재판: 신청인, 신주예약권자 및 주식회사
4. 제870조 각 호의 재판: 신청인 및 각 호에 규정하는 자 (동조 제2호, 제5호 및 제7호의 재판에 있어서는 당해 각 호에 규정하는 자)

제873조 원재판의 집행정지

전조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다음의 재판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70조 제2호의 재판
2. 제870조 제3호의 재판
3. 제87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판
4. 제870조 제11호의 재판

第874条 不服申立ての制限

次に掲げる裁判に対しては、不服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第八百七十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一時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代表取締役、委員、執行役若しくは代表執行役の職務を行うべき者、清算人、代表清算人、清算持分会社を代表する清算人、同号に規定する一時清算人若しくは代表清算人の職務を行うべき者、検査役、第五百一条第一項(第八百二十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若しくは第六百六十二条第一項の鑑定人、第五百八条第二項(第八百二十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若しくは第六百七十二条第三項の帳簿資料の保存をする者、社債管理者若しくは社債管理補助者の特別代理人又は第七百十四条第三項(第七百十四条の七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事務を承継する社債管理者若しくは社債管理補助者の選任又は選定の裁判
- 二 第八百二十五条第二項(第八百二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管理人の選任又は解任についての裁判
- 三 第八百二十五条第六項(第八百二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裁判
- 四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許可の申立てを認容する裁判(第八百七十条第一号及び第十二号に掲げる裁判を除く。)

第875条 非訟事件手続法の規定の適用除外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非訟事件については、非訟事件手続法第十五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876条 最高裁判所規則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非訟事件の手続に関し必要な事項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

第2節 新株発行の無効判決後の払戻金増減の手続に関する特則

第877条 審問等の必要的併合

第八百四十条第二項(第八百四十一条第二項及び第八百四十二条第二項にお

제874조 불복신청의 제한

다음의 재판에 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70조 제2호의 일시이사, 회계참여, 감사, 대표이사, 위원, 집행임원 또는 집행임원의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자, 청산인, 대표청산인, 청산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 동호의 일시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 검사인, 제501조 제1항(제82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62조 제1항의 감정인, 제508조 제2항(제82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72조 제3항의 장부자료를 보존하는 자, 사채관리자 혹은 사채관리보조자의 특별대리인 또는 제714조 제3항(제714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승계하는 사채관리자 혹은 사채관리보조자의 선임 또는 선정의 재판
2. 제825조 제2항 (제82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재판
3. 제825조 제6항 (제82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재판
4.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 (제870조 제1호 및 제12호의 재판은 제외한다)

제875조 비송사건절차법 적용제외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비송사건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6조 최고법원 규칙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신주발행 무효판결 후의 환급금 증감의 절차에 관한 특칙

제877조 심문등의 필요적 병합

제840조 제2항 (제841조 제2항 및 제84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申立てに係る事件が数個同時に係属するときは、審問及び裁判は、併合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878条 裁判の効力

- 1 第八百四十条第二項(第八百四十一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は、総株主に対してその効力を生ずる。
- 2 第八百四十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八百四十条第二項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は、総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その効力を生ずる。

第3節 特別清算の手續に関する特則

第1款 通則

第879条 特別清算事件の管轄

- 1 第八百六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法人が株式会社の総株主(株主総会において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の全部につき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主を除く。次項において同じ。)の議決権の過半数を有する場合には、当該法人(以下この条において「親法人」という。)について特別清算事件、破産事件、再生事件又は更生事件(以下この条において「特別清算事件等」という。)が係属しているときにおける当該株式会社についての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は、親法人の特別清算事件等が係属している地方裁判所にも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に規定する株式会社又は親法人及び同項に規定する株式会社が他の株式会社の総株主の議決権の過半数を有する場合には、当該他の株式会社についての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は、親法人の特別清算事件等が係属している地方裁判所にもすることができる。
- 3 前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三百八条第一項の法務省令で定める株主は、その有する株式について、議決権を有するものとみなす。
- 4 第八百六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式会社が最終事業年度について第四百四十四条の規定により当該株式会社及び他の株式会社に係る連結計算書類を作成し、かつ、当該株式会社の定時株主総会においてその内容が報告された場合には、当該株式会社について特別清算事件等が係属しているとき

한다)의 청구에 관한 사건이 수개 동시에 계속하는 때에는 심문 및 재판은 병합하여야 한다.

제878조 재판의 효력

- ① 제840조 제2항(제84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청구에 관한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제84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40조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재판은 총신주예약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절 특별청산의 절차에 관한 특칙

제1관 통 칙

제879조 특별청산 사건의 관할

- ① 제86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주식회사의 총주주(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할 수 있는 사항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하 이 조에서 “모법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특별청산사건, 파산사건, 재생사건 또는 갱생사건(이하 이 조에서 “특별청산사건등”이라고 한다)이 계속하고 있는 때에 당해 주식회사에 관한 특별청산개시의 청구는 모법인의 특별청산사건등이 계속하고 있는 지방법원에도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주식회사 또는 모법인 및 동항의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의 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경우 다른 주식회사에 관한 특별청산개시의 청구는 모법인의 특별청산사건등이 계속하고 있는 지방법원에도 할 수 있다.
- ③ 전2항의 적용에 관하여 제308조 제1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주는 그 가지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④ 제86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가 최종 사업년도에 관하여 제4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회사 및 다른 주식회사에 관한 연결계산서류를 작성하고 당해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이 보고된 경우 그 주식회사에 관하여 특별청산사건등이 계속하고 있는 때에 다른 주식회사에 관

第7編 雑則
第3章 非訟

における当該他の株式会社についての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は、当該株式会社の特別清算事件等が係属している地方裁判所にもすることができる。

第880条 特別清算開始後の通常清算事件の管轄及び移送

1 第八百六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清算株式会社について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ったときは、当該清算株式会社についての第二編第九章第一節(第五百八条を除く。)の規定による申立てに係る事件(次項において「通常清算事件」という。)は、当該清算株式会社の特別清算事件が係属する地方裁判所(以下この節において「特別清算裁判所」という。)が管轄する。

2 通常清算事件が係属する地方裁判所以外の地方裁判所に同一の清算株式会社について特別清算事件が係属し、かつ、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当該通常清算事件を処理するために相当と認めるときは、裁判所(通常清算事件を取り扱う一人の裁判官又は裁判官の合議体をいう。)は、職権で、当該通常清算事件を特別清算裁判所に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第881条 疎明

第二編第九章第二節(第五百四十七条第三項を除く。)の規定による許可の申立てについては、第八百六十九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882条 理由の付記

1 特別清算の手續に関する決定で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は、理由を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五百二十六条第一項(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五百三十二条第一項(第五百三十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決定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特別清算の手續に関する決定については、第八百七十一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883条 裁判書の送達

この節の規定による裁判書の送達については、民事訴訟法第一編第五章第四節(第百四条を除く。)の規定を準用する。

한 특별청산개시의 청구는 그 주식회사의 특별청산사건등이 계속하고 있는 지방법원에도 할 수 있다.

제880조 특별청산개시 후의 통상청산사건의 관할 및 이송

① 제86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산주식회사에 대하여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때에는 당해 청산주식회사에 관한 제2편 제9장 제1절(제508조는 제외한다)의 청구에 관한 사건(다음 항에서 “통상청산사건”이라고 한다)은 그 청산주식회사의 특별청산 사건이 계속되는 지방법원(이하 이 절에서 “특별청산법원”이라고 한다)이 관할한다.

② 통상청산사건이 계속하는 지방법원 이외의 지방법원에 동일한 청산주식회사에 대하여 특별청산사건이 계속하는 한편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그 통상청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통상청산사건을 취급하는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를 말한다)은 직권으로 당해 통상청산사건을 특별청산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881조 소명

제2편 제9장 제2절(제547조 제3항을 제외한다)의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6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2조 이유의 부기

① 특별청산절차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에는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526조 제1항(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2조 제1항(제5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청산의 절차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87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3조 판결문의 송달

이 절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편 제5장 제4절(제104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第884条 不服申立て

- 1 特別清算の手續に関する裁判につき利害関係を有する者は、この節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に限り、当該裁判に対し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即時抗告は、この節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執行停止の効力を有する。
- 3 非訟事件手続法第二十条の規定は、特別清算の手續に関する決定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885条 公告

- 1 この節の規定による公告は、官報に掲載してする。
- 2 前項の公告は、掲載があつた日の翌日に、その効力を生ずる。

第886条 事件に関する文書の閲覧等

- 1 利害関係人は、裁判所書記官に対し、第二編第九章第二節若しくはこの節又は非訟事件手続法第一編（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つた場合にあっては、同章第一節若しくは第二節若しくは第一節（同章第一節の規定による申立てに係る事件に係る部分に限る。）若しくはこの節又は非訟事件手続法第一編）の規定（これらの規定において準用するこの法律その他の法律の規定を含む。）に基づき、裁判所に提出され、又は裁判所が作成した文書その他の物件（以下この条及び次条第一項において「文書等」という。）の閲覧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2 利害関係人は、裁判所書記官に対し、文書等の謄写、その正本、謄本若しくは抄本の交付又は事件に関する事項の証明書の交付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3 前項の規定は、文書等のうち録音テープ又はビデオテープ（これらに準ずる方法により一定の事項を記録した物を含む。）に関しては、適用し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物について利害関係人の請求があ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その複製を許さなければならない。
- 4 前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の各号に掲げる者は、当該各号に定める命令、保全処分、処分又は裁判のいずれかがあるまでの間は、前三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当該者が特別清算開始の申立人で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清算株式会社以外の利害関係人 第五百十二条の規定による中止の命令、

제884조 불복신청

- ① 특별청산의 절차에 관한 재판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이 절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즉시항고는 이 절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 ③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는 특별청산의 절차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5조 공고

- ① 이 절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한다.
- ② 전항의 공고는 게재가 있었던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886조 사건에 관한 문서의 열람등

- ① 이해관계인은 법원 서기관에게 제2편 제9장 제2절, 이 절 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장 제1절, 제2절 또는 제1절(동장 제1절의 청구에 관련된 사건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이 절 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이러한 규정에서 준용하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거하여 법원에 제출되거나 법원이 작성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1항에서 “문서등”이라고 한다)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해관계인은 법원 서기관에게 문서등의 등사, 그 원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전항은 문서등 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 사항을 기록한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러한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 서기관은 그 복제를 허락하여야 한다.
- ④ 전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각 호에 규정하는 명령, 보전 처분, 처분 또는 재판의 어느 하나가 있기까지는 전3항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자가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인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산주식회사 이외의 이해관계인 : 제512조의 중지의 명령, 제540조 제2항

第7編 雑則

第3章 非訟

第五百四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保全処分、第五百四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処分又は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

- 二 清算株式会社 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に関する清算株式会社を呼び出す審問の期日の指定の裁判又は前号に定める命令、保全処分、処分若しくは裁判
- 5 民事訴訟法第九十一条第五項の規定は、文書等について準用する。

第887条 支障部分の閲覧等の制限

1 次に掲げる文書等について、利害関係人がその閲覧若しくは謄写、その正本、謄本若しくは抄本の交付又はその複製(以下この条において「閲覧等」という。)を行うことにより、清算株式会社の清算の遂行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部分(以下この条において「支障部分」という。)があることにつき疎明があった場合には、裁判所は、当該文書等を提出した清算株式会社又は調査委員の申立てにより、支障部分の閲覧等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を、当該申立てをした者及び清算株式会社に限ることができる。

一 第五百二十条の規定による報告又は第五百二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調査の結果の報告に係る文書等

二 第五百三十五条第一項又は第五百三十六条第一項の許可を得るために裁判所に提出された文書等

2 前項の申立てがあつたときは、そ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が確定するまで、利害関係人(同項の申立てをした者及び清算株式会社を除く。次項において同じ。)は、支障部分の閲覧等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支障部分の閲覧等の請求をしようとする利害関係人は、特別清算裁判所に対し、第一項に規定する要件を欠くこと又はこれを欠くに至ったことを理由として、同項の規定による決定の取消し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4 第一項の申立てを却下する決定及び前項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5 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を取り消す決定は、確定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의 보전처분, 제541조 제2항의 처분 또는 특별청산개시의 청구에 관한 재판

2. 청산주식회사 : 특별청산개시의 청구에 관하여 청산주식회사를 호출하는 심 문기일 지정의 재판 또는 전호의 명령, 보전처분, 처분 또는 재판

⑤ 민사소송법 제91조 제5항은 문서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87조 지장부분의 열람등의 제한

① 다음의 문서등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그 열람 또는 등사, 그 원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또는 그 복제(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고 한다)를 행함으로 인하여 청산주식회사의 청산의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지장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문서등을 제출한 청산주식회사 또는 조사위원의 청구에 의하여 지장부분의 열람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당해 청구를 한 자 및 청산주식회사로 한정할 수 있다.

1. 제520조의 보고 또는 제522조 제1항의 조사결과의 보고에 관한 문서등

2. 제535조 제1항 또는 제536조 제1항의 허가를 얻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 등

② 전항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이해관계인(동항의 청구를 한 자 및 청산주식회사는 제외한다. 다음 항에 있어서 같다)은 지장부분의 열람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지장부분의 열람등의 청구를 하려는 이해관계인은 특별청산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요건의 결여 또는 부족을 이유로 하여 동항의 결정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및 전항의 청구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第2款 特別清算の開始の手續に関する特則

第888条 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

- 1 債権者又は株主が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をするときは、特別清算開始の原因となる事由を疎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債権者が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をするときは、その有する債権の存在をも疎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をするときは、申立人は、第五百十四条第一号に規定する特別清算の手續の費用として裁判所の定める金額を予納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前項の費用の予納に関する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889条 他の手續の中止命令

- 1 裁判所は、第五百十二条の規定による中止の命令を変更し、又は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中止の命令及び同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3 前項の即時抗告は、執行停止の効力を有しない。
- 4 第二項に規定する裁判及び同項の即時抗告についての裁判があった場合には、その裁判書を当事者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890条 特別清算開始の命令

- 1 裁判所は、特別清算開始の命令をし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公告し、かつ、特別清算開始の命令の裁判書を清算株式会社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特別清算開始の命令は、清算株式会社に對する裁判書の送達がされた時から、効力を生ずる。
- 3 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ったときは、特別清算の手續の費用は、清算株式会社の負担とする。
- 4 特別清算開始の命令に対しては、清算株式会社に限り、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5 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を却下した裁判に対しては、申立人に限り、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2관 특별청산의 개시절차에 관한 특칙

제888조 특별청산개시의 신청

- ① 채권자 또는 주주가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특별청산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② 채권자가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가지는 채권의 존재도 소명하여야 한다.
- ③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제517조 제1호의 특별청산절차의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비용의 예납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89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 ① 법원은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중지명령 및 동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가지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의 재판 및 동항의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이 있었던 경우 그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90조 특별청산개시의 명령

- ① 법원은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을 한 때에는 즉시 그 뜻을 공고하는 한편 특별청산개시 명령의 판결문을 청산주식회사에 송달하여야 한다.
- ②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은 청산주식회사에 판결문이 송달이 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③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때에는 특별청산절차의 비용은 청산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 ④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에 관하여는 청산주식회사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관하여는 신청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第7編 雑則

第3章 非訟

6 特別清算開始の命令をした裁判所は、第四項の即時抗告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当該命令を取り消す決定が確定し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891条 担保権の実行の手続等の中止命令

- 1 裁判所は、第五百十六条の規定による中止の命令を発する場合には、同条に規定する担保権の実行の手続等の申立人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2 裁判所は、前項の中止の命令を変更し、又は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3 第一項の中止の命令及び前項の規定による変更の決定に対しては、第一項の申立人に限り、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4 前項の即時抗告は、執行停止の効力を有しない。
- 5 第三項に規定する裁判及び同項の即時抗告についての裁判があった場合には、その裁判書を当事者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款 特別清算の実行の手続に関する特則

第892条 調査命令

- 1 裁判所は、調査命令(第五百二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調査命令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を変更し、又は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2 調査命令及び前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3 前項の即時抗告は、執行停止の効力を有しない。
- 4 第二項に規定する裁判及び同項の即時抗告についての裁判があった場合には、その裁判書を当事者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893条 清算人の解任及び報酬等

- 1 裁判所は、第五百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清算人を解任する場合には、当該清算人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2 第五百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解任の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3 前項の即時抗告は、執行停止の効力を有しない。
- 4 第五百二十六条第一項(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

⑥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을 한 법원은 제4항의 즉시항고가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91조 담보권실행 절차등의 중지명령

- ① 법원은 제516조에 의한 중지명령을 발하는 경우 동조의 담보권실행 절차등의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② 법원은 전항의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중지명령 및 전항의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청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⑤ 제3항의 재판 및 동항의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관 특별청산의 실행절차에 관한 특칙

제892조 조사명령

- ① 법원은 조사명령(제522조 제1항의 조사명령을 말한다. 다음 항에 있어서 같다)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② 조사명령 및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의 재판 및 동항의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93조 청산인의 해임 및 보수등

- ① 법원은 제5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하는 경우 그 청산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② 제5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④ 제526조 제1항(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결정에

第7編 雑則
第3章 非訟

よる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894条 監督委員の解任及び報酬等

- 1 裁判所は、監督委員を解任する場合には、当該監督委員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2 第五百三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895条 調査委員の解任及び報酬等

前条の規定は、調査委員について準用する。

第896条 事業の譲渡の許可の申立て

- 1 清算人は、第五百三十六条第一項の許可の申立てをする場合には、知れている債権者の意見を聴き、その内容を裁判所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裁判所は、第五百三十六条第一項の許可をする場合には、労働組合等(清算株式会社の使用人その他の従業員の過半数で組織する労働組合があるときはその労働組合、清算株式会社の使用人その他の従業員の過半数で組織する労働組合がないときは清算株式会社の使用人その他の従業員の過半数を代表する者をいう。)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897条 担保権者が処分をすべき期間の指定

- 1 第五百三十九条第一項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裁判及び同項の即時抗告についての裁判があった場合には、その裁判書を当事者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898条 清算株式会社の財産に関する保全処分等

- 1 裁判所は、次に掲げる裁判を変更し、又は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一 第五百四十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保全処分
 - 二 第五百四十一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処分
 - 三 第五百四十二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保全処分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94조 감독위원의 해임 및 보수등

① 법원은 감독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그 감독위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제532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95조 조사위원의 해임 및 보수등

전조는 조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96조 사업양도의 허가의 신청

① 청산인은 제536조 제1항의 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536조 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노동조합등(청산주식회사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과반수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그 노동조합, 청산주식회사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과반수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청산주식회사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97조 담보권자가 처분을 하여야 할 기간의 지정

① 제539조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재판 및 동항의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98조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등

① 법원은 다음의 재판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제54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전처분
2. 제54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처분
3. 제54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전처분

第7編 雑則

第3章 非訟

四 第五百四十三条の規定による処分

2 前項各号に掲げる裁判及び同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即時抗告は、執行停止の効力を有しない。

4 第二項に規定する裁判及び同項の即時抗告についての裁判があった場合には、その裁判書を当事者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裁判所は、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裁判をし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当該裁判を変更し、又は取り消す決定があったときも、同様とする。

第899条 役員等責任査定決定

1 清算株式会社は、第五百四十五条第一項の申立てををするときは、その原因となる事実を疎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役員等責任査定決定(第五百四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役員等責任査定決定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及び前項の申立てを却下する決定には、理由を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

3 裁判所は、前項に規定する裁判をする場合には、対象役員等(第五百四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対象役員等をいう。)の陳述を聴かななければならない。

4 役員等責任査定決定があった場合には、その裁判書を当事者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八百五十八条第一項の訴えが、同項の期間内に提起されなかったとき、又は却下されたときは、役員等責任査定決定は、給付を命ずる確定判決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

第900条 債権者集会の招集の許可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

第五百四十七条第三項の許可の申立てを却下する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901条 協定の認可又は不認可の決定

1 利害関係人は、第五百六十八条の申立てに係る協定を認可すべきかどうかについて、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4. 제543조의 처분

- ② 전항 각 호의 재판 및 동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의 재판 및 동항의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이 있었던 경우 그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1항 제2호의 재판을 한 때에는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당해 재판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이 있었던 때에도 같다.

제899조 임원등책임사정결정

- ① 청산주식회사는 제545조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② 임원등책임사정결정 (제545조 제1항의 임원등책임사정결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전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는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전항의 재판을 하는 경우 대상임원등(제542조 제1항의 대상임원등을 말한다)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④ 임원등책임사정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⑤ 제858조 제1항의 소가 동항의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 또는 각하된 때에는 임원등책임사정결정은 급부를 명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900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의 신청에 관한 재판

- 제547조 제3항의 허가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01조 협정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

- ① 이해관계인은 제568조의 청구에 관한 협정을 인가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第7編 雑則

第3章 非訟

- 2 第五百六十九条第一項の協定の認可の決定をしたときは、裁判所は、直ちに、その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第五百六十八条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項の協定の認可の決定に対する即時抗告の期間は、同項の規定による公告が効力を生じた日から起算して二週間とする。
- 4 前三項の規定は、第五百七十二条の規定により協定の内容を変更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4款 特別清算の終了の手續に関する特則

第902条 特別清算終結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

- 1 特別清算終結の決定をしたときは、裁判所は、直ちに、その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特別清算終結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特別清算終結の決定に対する即時抗告の期間は、前項の規定による公告が効力を生じた日から起算して二週間とする。
- 3 特別清算終結の決定は、確定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 4 特別清算終結の決定をした裁判所は、第二項の即時抗告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当該決定を取り消す決定が確定し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4節 外国会社の清算の手續に関する特則

第903条 特別清算の手續に関する規定の準用

前節の規定は、その性質上許されないものを除き、第八百二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日本にある外国会社の財産についての清算について準用する。

第5節 会社の解散命令等の手續に関する特則

第904条 法務大臣の関与

裁判所は、第八百二十四条第一項又は第八百二十七条第一項の申立てについ

- ② 제569조 제1항의 협정의 인가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568조의 청구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항의 협정의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기간은 동항의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으로 한다.
- ④ 전3항은 제5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관 특별청산의 종료절차에 관한 특칙

제902조 특별청산종결의 청구에 관한 재판

- ① 특별청산종결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특별청산종결의 청구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청산종결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기간은 전항의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으로 한다.
- ③ 특별청산종결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특별청산종결의 결정을 한 법원은 제2항의 즉시항고가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외국회사의 청산절차에 관한 특칙

제903조 특별청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 ① 전절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22조 제1항의 일본에서의 외국회사의 재산에 관한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절 회사의 해산명령등의 절차에 관한 특칙

제904조 법무대신의 관여

- ① 법원은 제824조 제1항 또는 제827조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

第7編 雑則

第3章 非訟

ての裁判をする場合には、法務大臣に対し、意見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法務大臣は、裁判所が前項の申立てに係る事件について審問をするときは、当該審問に立ち会うことができる。

3 裁判所は、法務大臣に対し、第一項の申立てに係る事件が係属したこと及び前項の審問の期日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申立てを却下する裁判に対しては、法務大臣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905条 会社の財産に関する保全処分についての特則

1 裁判所が第八百二十五条第一項(第八百二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保全処分をした場合には、非訟事件手続法第二十六条 本文の費用は、会社又は外国会社の負担とする。当該保全処分について必要な費用も、同様とする。

2 前項の保全処分又は第八百二十五条第一項(第八百二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申立てを却下する裁判に対して即時抗告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抗告裁判所が当該即時抗告を理由があると認めて原裁判を取り消したときは、その抗告審における手続に要する裁判費用及び抗告人が負担した前審における手続に要する裁判費用は、会社又は外国会社の負担とする。

第906条

1 利害関係人は、裁判所書記官に対し、第八百二十五条第六項(第八百二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報告又は計算に関する資料の閲覧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利害関係人は、裁判所書記官に対し、前項の資料の謄写又はその正本、謄本若しくは抄本の交付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規定は、第一項の資料のうち録音テープ又はビデオテープ(これらに準ずる方法により一定の事項を記録した物を含む。)に関しては、適用し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物について利害関係人の請求があ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その複製を許さなければならない。

4 法務大臣は、裁判所書記官に対し、第一項の資料の閲覧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우 법무대신에게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② 법무대신은 법원이 전항의 신청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심문을 하는 때에는 당해 심문에 입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법무대신에게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사건이 계속된 것과 전항의 심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 법무대신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05조 회사재산에 관련된 보전처분에 관한 특칙

① 법원이 제825조 제1항(제82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보전처분을 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26조 본문의 비용은 회사 또는 외국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보전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도 같다.

② 전항의 보전처분 또는 제825조 제1항(제82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었던 경우에 항고법원이 당해 즉시항고를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재판을 취소한 때에는 그 항고심의 절차에 필요한 재판비용 및 항고인이 부담한 전심의 절차에 필요한 재판비용은 회사 또는 외국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06조

① 이해관계인은 법원 서기관에게 제825조 제6항(제82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보고 또는 계산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법원 서기관에게 전항의 자료의 등사 또는 그 원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은 제1항의 자료 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 사항을 기록한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 서기관은 그 복제를 허락하여야 한다.

④ 법무대신은 법원 서기관에게 제1항의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第7編 雑則

第4章 登記

5 民事訴訟法第九十一条第五項の規定は、第一項の資料について準用する。

第4章 登記

第1節 総則

第907条 通則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登記すべき事項(第九百三十八条第三項の保全処分の登記に係る事項を除く。)は、当事者の申請又は裁判所書記官の嘱託により、商業登記法(昭和三十八年法律第百二十五号)の定めるところに従い、商業登記簿にこれを登記する。

第908条 登記の効力

1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登記すべき事項は、登記の後でなければ、これをもって善意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登記の後であっても、第三者が正当な事由によってその登記があることを知らなかったときは、同様とする。

2 故意又は過失によって不実の事項を登記した者は、その事項が不実であることをもって善意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909条 変更の登記及び消滅の登記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登記した事項に変更が生じ、又はその事項が消滅したときは、当事者は、遅滞なく、変更の登記又は消滅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910条 登記の期間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登記すべき事項のうち官庁の許可を要するものの登記の期間については、その許可書の到達した日から起算する。

第2節 会社の登記

第911条 株式会社の設立の登記

1 株式会社の設立の登記は、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次に掲げる日のいず

⑤ 민사소송법 제91조 제5항은 제1항의 자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장 등 기

제1절 총 칙

제907조 통칙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제938조 제3항의 보전처분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서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상업등기법(1963년 법률 제125호)에 따라 상업등기부에 이를 등기한다.

제908조 등기의 효력

- ①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등기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같다.
-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실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사항이 부실한 것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909조 변경의 등기 및 소멸의 등기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10조 등기의 기간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의 등기의 기간에 관하여는 그 허가서의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절 회사의 등기

제911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그 본점소재지에 다음의 날 중 늦은 날로부터 2주

第7編 雑則
第4章 登記

れか遅い日から二週間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四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調査が終了した日(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設立時代表執行役が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日)

二 発起人が定めた日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五十七条第一項の募集をする場合には、前項の登記は、次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遅い日から二週間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創立総会の終結の日

二 第八十四条の種類創立総会の決議をしたときは、当該決議の日

三 第九十七条の創立総会の決議をしたときは、当該決議の日から二週間を経過した日

四 第百条第一項の種類創立総会の決議をしたときは、当該決議の日から二週間を経過した日

五 第百一条第一項の種類創立総会の決議をしたときは、当該決議の日

3 第一項の登記におい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登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目的

二 商号

三 本店及び支店の所在場所

四 株式会社の存続期間又は解散の事由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定め

五 資本金の額

六 発行可能株式総数

七 発行する株式の内容(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発行可能種類株式総数及び発行する各種類の株式の内容)

八 単元株式数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単元株式数

九 発行済株式の総数並びにそ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十 株券発行会社であるときは、その旨

十一 株主名簿管理人を置いたときは、そ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営業所

十二 新株予約権を発行した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イ 新株予約権の数

ロ 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ハに規定する場合にあつ

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제46조 제1항의 조사가 종료한 날(설립하려는 주식회사가 지명위원회등
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설립시대표집행임원이 동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

2. 발기인이 정한 날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7조 제1항의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등
기는 다음의 날 중 늦은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종결일

2. 제84조의 종류창립총회의 결의를 한 때에는 당해결의일

3. 제97조의 창립총회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일로부터 2주간을 경과한 날

4. 제100조 제1항의 종류창립총회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일로부터 2주
간을 경과한 날

5. 제101조 제1항의 종류창립총회의 결의를 한 때에는 당해결의일

③ 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4. 주식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5. 자본금의 액

6. 발행가능주식총수

7. 발행하는 주식의 내용 (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발행가능종류주식총
수 및 발행하는 각 종류주식의 내용)

8. 단위주식수에 관한 정관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단위주식수

9. 발행주식총수, 그 종류 및 종류별 수

10. 주권발행회사인 때에는 그 뜻

11. 주주명부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명칭, 주소 및 영업소

12. 신주예약권을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

가. 신주예약권의 수

나. 제23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다목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제

第7編 雑則
第4章 登記

ては、第二号を除く。)に掲げる事項

ハ 第二百三十六条第三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その定め

ニ ロ及びハに掲げる事項のほか、新株予約権の行使の条件を定めたときは、その条件

ホ 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及び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

ヘ 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募集新株予約権(同項に規定する募集新株予約権をいう。以下へにおいて同じ。)の払込金額(同号に規定する払込金額をいう。以下へにおいて同じ。)(同号に掲げる事項として募集新株予約権の払込金額の算定方法を定めた場合において、登記の申請の時までに募集新株予約権の払込金額が確定していないときは、当該算定方法)

十二の二 第三百二十五条の二の規定による電子提供措置をと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定め

十三 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取締役を除く。)の氏名

十四 代表取締役の氏名及び住所(第二十三号に規定する場合を除く。)

十五 取締役会設置会社であるときは、その旨

十六 会計参与設置会社であるときは、その旨並びに会計参与の氏名又は名称及び第三百七十八条第一項の場所

十七 監査役設置会社(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を含む。)であるときは、その旨及び次に掲げる事項

イ 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であるときは、その旨

ロ 監査役の氏名

十八 監査役会設置会社であるときは、その旨及び監査役のうち社外監査役であるものについて社外監査役である旨

十九 会計監査人設置会社であるときは、その旨及び会計監査人の氏名又は名称

二十 第三百四十六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一時会計監査人の職務を行うべき者を置いたときは、その氏名又は名称

二十一 第三百七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別取締役による議決の定めがあ

외한다)의 사항

다. 제236조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함

라. 나목 및 다목의 사항 외에 신주예약권의 행사의 조건을 정한 때에는 그 조건

마. 제236조 제1항 제7호 및 제238조 제1항 제2호의 사항

바. 제238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모집신주예약권(동항의 모집신주예약권을 말한다. 이하 바목에서 같다)의 납입금액(동호의 납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바목에서 같다) (동호의 사항으로서 모집신주예약권의 납입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한 경우 등기신청 시까지 모집신주예약권의 납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산정방법)

12조의2. 제325조의 2의 전자제공조치를 취하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

13. 이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는 제외한다)의 성명

14. 대표이사의 성명 및 주소(제2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5. 이사회설치회사인 때에는 그 뜻

16. 회계참여설치회사인 때에는 그 뜻 및 회계참여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제378조 제1항의 장소

17. 감사설치회사(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인 때에는 그 뜻 및 다음의 사항

가. 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는 취지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주식회사인 때에는 그 내용

나. 감사의 성명

18. 감사회설치회사인 때에는 그 뜻 및 감사 중 사외감사인인 경우 사외감사인 뜻

19.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인 때에는 그 뜻 및 회계감사인의 성명 또는 명칭

20. 제3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일시회계감사인의 직무를 행하여야 할 자를 둔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21. 제37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이사에 의한 결의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다음

第7編 雑則
第4章 登記

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イ 第三百七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別取締役による議決の定めがある旨

ロ 特別取締役の氏名

ハ 取締役のうち社外取締役であるものについて、社外取締役である旨

二十二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ときは、その旨及び次に掲げる事項

イ 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及びそれ以外の取締役の氏名

ロ 取締役のうち社外取締役であるものについて、社外取締役である旨

ハ 第三百九十九条の十三第六項の規定による重要な業務執行の決定の取締役への委任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旨

二十三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であるときは、その旨及び次に掲げる事項

イ 取締役のうち社外取締役であるものについて、社外取締役である旨

ロ 各委員会の委員及び執行役の氏名

ハ 代表執行役の氏名及び住所

二十四 第四百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執行役又は会計監査人の責任の免除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定め

二十五 第四百二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非業務執行取締役等が負う責任の限度に関する契約の締結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定め

二十六 第四百四十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措置をとることとするときは、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貸借対照表の内容である情報について不特定多数の者がその提供を受けるために必要な事項であっ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二十七 第九百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公告方法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定め

二十八 前号の定款の定めが電子公告を公告方法とする旨のものであ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イ 電子公告により公告すべき内容である情報について不特定多数の者がその提供を受けるために必要な事項であっ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ロ 第九百三十九条第三項後段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定め

二十九 第二十七号の定款の定めがないときは、第九百三十九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官報に掲載する方法を公告方法とする旨

의 사항

가. 제37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이사에 의한 결의의 정함이 있다는 뜻

나. 특별이사의 성명

다. 이사 중 사외이사인 자에 관해서는 사외이사인 뜻

22.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때에는 그 뜻 및 다음의 사항

가. 감사등위원인 이사 및 그 외의 이사의 성명

나. 이사 중 사외이사인 자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인 뜻

다. 제399조의13 제6항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을 이사에게 위임하는 정관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뜻

23.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인 때에는 그 뜻 및 다음의 사항

가. 이사 중 사외이사인 자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인 뜻

나. 각 위원회의 위원 및 집행임원의 성명

다. 대표집행임원의 성명 및 주소

24. 제426조 제1항의 이사, 회계참여, 감사, 집행임원 또는 회계감사인의 책임 면제에 관한 정관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

25. 제427조 제1항의 비업무집행이사등이 부담하는 책임 한도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관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

26. 제440조 제3항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때에는 동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의 내용인 정보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자가 그 제공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

27. 제939조 제1항의 공고 방법에 관한 정관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

28. 전호의 정관의 정함이 전자공고를 공고방법으로 하는 뜻일 때에는 다음의 사항

가. 전자공고에 의해 공고하여야 할 내용인 정보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자가 그 제공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

나. 제939조 제3항 후단에 의한 정관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

29. 제27호의 정관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939조 제4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공고방법으로 하는 뜻

第7編 雑則

第4章 登記

第912条 合名会社の設立の登記

合名会社の設立の登記は、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登記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目的
- 二 商号
- 三 本店及び支店の所在場所
- 四 合名会社の存続期間又は解散の事由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定め
- 五 社員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 六 合名会社を代表する社員の氏名又は名称(合名会社を代表しない社員がある場合に限る。)
- 七 合名会社を代表する社員が法人であるときは、当該社員の職務を行うべき者の氏名及び住所
- 八 第九百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公告方法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定め
- 九 前号の定款の定めが電子公告を公告方法とする旨のものであ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 イ 電子公告により公告すべき内容である情報について不特定多数の者がその提供を受けるために必要な事項であつ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 ロ 第九百三十九条第三項後段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定め
- 十 第八号の定款の定めがないときは、第九百三十九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官報に掲載する方法を公告方法とする旨

第913条 合資会社の設立の登記

合資会社の設立の登記は、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登記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目的
- 二 商号
- 三 本店及び支店の所在場所
- 四 合資会社の存続期間又は解散の事由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定め

제912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는 그 본점소재지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4. 합명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5. 사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6. 합명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 (합명회사를 대표하지 아니하는 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합명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법인인 때에는 당해 사원의 직무를 행하여야 할 자의 성명 및 주소
8. 제939조 제1항의 공고방법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9. 전호의 정관의 규정이 전자공고를 공고방법으로 하는 뜻인 때에는 다음의 사항
 - 가. 전자공고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내용인 정보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제공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
 - 나. 제939조 제3항 후단에 의한 정관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10. 제8호의 정관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제939조 제4항에 의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공고방법으로 하는 뜻

제913조 합자회사의 설립등기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는 그 본점소재지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4. 합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第7編 雑則
第4章 登記

- 五 社員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 六 社員が有限責任社員又は無限責任社員のいずれであるかの別
- 七 有限責任社員の出資の目的及びその価額並びに既に履行した出資の価額
- 八 合資会社を代表する社員の氏名又は名称(合資会社を代表しない社員がある場合に限る。)
- 九 合資会社を代表する社員が法人であるときは、当該社員の職務を行うべき者の氏名及び住所
- 十 第九百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公告方法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定め
- 十一 前号の定款の定めが電子公告を公告方法とする旨のものであ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 イ 電子公告により公告すべき内容である情報について不特定多数の者がその提供を受けるために必要な事項であつ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 ロ 第九百三十九条第三項後段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定め
- 十二 第十号の定款の定めがないときは、第九百三十九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官報に掲載する方法を公告方法とする旨

第914条 合同会社の設立の登記

合同会社の設立の登記は、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登記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目的
- 二 商号
- 三 本店及び支店の所在場所
- 四 合同会社の存続期間又は解散の事由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定め
- 五 資本金の額
- 六 合同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社員の氏名又は名称
- 七 合同会社を代表する社員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 八 合同会社を代表する社員が法人であるときは、当該社員の職務を行うべき者の氏名及び住所
- 九 第九百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公告方法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がある

5. 사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6. 사원이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지 여부
7.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목적, 그 가액 및 이미 이행한 출자의 가액
8. 합자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 (합자회사를 대표하지 아니하는 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합자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법인인 때에는 당해 사원의 직무를 행하여야 할 자의 성명 및 주소
10. 제939조 제1항의 공고방법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11. 전호의 정관의 규정이 전자공고를 공고방법으로 하는 뜻인 때에는 다음의 사항
 - 가. 전자공고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내용인 정보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제공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
 - 나. 제939조 제3항 후단에 의한 정관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12. 제10호의 정관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제939조 제4항에 의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공고방법으로 하는 뜻

제914조 합동회사의 설립등기

합동회사의 설립의 등기는 그 본점소재지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4. 합동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5. 자본금의 액
6. 합동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
7. 합동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8. 합동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법인인 때에는 당해 사원의 직무를 행하여야 할 자의 성명 및 주소
9. 제939조 제1항의 공고방법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第7編 雑則

第4章 登記

ときは、その定め

十 前号の定款の定めが電子公告を公告方法とする旨のものであ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イ 電子公告により公告すべき内容である情報について不特定多数の者がその提供を受けるために必要な事項であつ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ロ 第九百三十九条第三項後段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定め

十一 第九号の定款の定めがないときは、第九百三十九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官報に掲載する方法を公告方法とする旨

第915条 変更の登記

1 会社において第九百十一条第三項各号又は前三条各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が生じたときは、二週間以内に、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変更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九百九十九条第一項第四号の期間を定めた場合における株式の発行による変更の登記は、当該期間の末日現在により、当該末日から二週間以内にすれば足りる。

3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に掲げる事由による変更の登記は、毎月末日現在により、当該末日から二週間以内にすれば足りる。

一 新株予約権の行使

二 第六百六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株式の内容として第七百七条第二項第二号ハ若しくは二又は第八百八条第二項第五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限る。)

第916条 他の登記所の管轄区域内への本店の移転の登記

会社がその本店を他の登記所の管轄区域内に移転したときは、二週間以内に、旧所在地においては移転の登記をし、新所在地においては次の各号に掲げる会社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を登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株式会社 第九百十一条第三項各号に掲げる事項

二 合名会社 第九百十二条各号に掲げる事項

三 合資会社 第九百十三条各号に掲げる事項

四 合同会社 第九百十四条各号に掲げる事項

10. 전호의 정관의 규정이 전자공고를 공고방법으로 하는 뜻인 때에는 다음의 사항
- 가. 전자공고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내용인 정보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제공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
 - 나. 제939조 제3항 후단에 의한 정관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11. 제9호의 정관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제939조 제4항에 의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공고방법으로 하는 뜻

제915조 변경의 등기

- ① 회사에 있어서 제911조 제3항 각 호 또는 전3조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간 이내에 그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199조 제1항 제4호의 기간을 정한 경우 주식의 발행에 의한 변경등기는 그 기간의 말일현재로부터, 그 기간의 말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하면 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에 의한 변경등기는 매월 말일 현재로부터, 그 말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하면 된다.
- 1. 신주예약권의 행사
 - 2. 제166조 제1항의 청구(주식의 내용으로서 제107조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 제108조 제2항 제5호 나목의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제916조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의 본점의 이전등기

- 회사가 그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때에는 2주간 이내에 그 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다음의 각 호의 회사마다 당해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주식회사 : 제911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 2. 합명회사 : 제912조 각 호의 사항
 - 3. 합자회사 : 제913조 각 호의 사항
 - 4. 합동회사 : 제914조 각 호의 사항

第7編 雑則

第4章 登記

第917条 職務執行停止の仮処分等の登記

次の各号に掲げる会社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の職務の執行を停止し、若しくはその職務を代行する者を選任する仮処分命令又はその仮処分命令を変更し、若しくは取り消す決定がされたときは、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そ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株式会社 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代表取締役、委員(指名委員会、監査委員会又は報酬委員会の委員をいう。)、執行役又は代表執行役
- 二 合名会社 社員
- 三 合資会社 社員
- 四 合同会社 業務を執行する社員

第918条 支配人の登記

会社が支配人を選任し、又はその代理権が消滅したときは、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そ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919条 持分会社の種類の変更の登記

持分会社が第六百三十八条の規定により他の種類の持分会社となったときは、同条に規定する定款の変更の効力が生じた日から二週間以内に、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種類の変更前の持分会社については解散の登記をし、種類の変更後の持分会社については設立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920条 組織変更の登記

会社が組織変更をしたときは、その効力が生じた日から二週間以内に、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組織変更前の会社については解散の登記をし、組織変更後の会社については設立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921条 吸収合併の登記

会社が吸収合併をしたときは、その効力が生じた日から二週間以内に、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吸収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については解散の登記をし、吸収合併後存続する会社については変更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917조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등의 등기

다음 각 호의 회사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하는 가처분명령 또는 그 가처분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본점소재지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 이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외의 이사), 회계참여, 감사, 대표이사, 위원(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보수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집행임원 또는 대표집행임원
2. 합명회사 : 사원
3. 합자회사 : 사원
4. 합동회사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제918조 지배인의 등기

회사가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그 대리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19조 지분회사의 종류의 변경등기

지분회사가 제638조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지분회사로 된 때에는 동조의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그 본점소재지에서 종류의 변경전의 지분회사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고 종류의 변경후의 지분회사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20조 조직변경의 등기

회사가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그 본점소재지에서 조직변경전의 회사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고 조직변경후의 회사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21조 흡수합병의 등기

회사가 흡수 합병을 한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그 본점소재지에서 흡수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고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第7編 雑則

第4章 登記

第922条 新設合併の登記

1 二以上の会社が新設合併をする場合において、新設合併により設立する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とき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二週間以内に、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新設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については解散の登記をし、新設合併により設立する会社については設立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新設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が株式会社のみである場合 次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遅い日

イ 第八百四条第一項の株主総会の決議の日

ロ 新設合併をするために種類株主総会の決議を要するときは、当該決議の日

ハ 第八百六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同条第四項の公告をした日から二十日を経過した日

二 新設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が新株予約権を発行しているときは、第八百八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同条第四項の公告をした日から二十日を経過した日

ホ 第八百十条の規定による手続が終了した日

ヘ 新設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が合意により定めた日

二 新設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が持分会社のみである場合 次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遅い日

イ 第八百十三条第一項の総社員の同意を得た日(同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定款の定めによる手続を終了した日)

ロ 第八百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八百十条の規定による手続が終了した日

ハ 新設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が合意により定めた日

三 新設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が株式会社及び持分会社である場合 前二号に定める日のいずれか遅い日

2 二以上の会社が新設合併をする場合において、新設合併により設立する会社が持分会社であるとき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二週間以内に、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新設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については解散の登記をし、新設合併により設立する会社については設立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922조 신선험병의 등기

① 2 이상의 회사가 신선험병을 하는 경우 신선험병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일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마다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그 본점소재지에서 신선험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관하여 해산등기를 하고 신선험병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신선험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주식회사뿐인 경우 : 다음의 날 중 늦은 날

가. 제804조 제1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일

나. 신선험병을 하기 위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때에는 당해결의일다. 제806조 제3항의 통지 또는 동조 제4항의 공고를 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날

라. 신선험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고 있는 때에는 제808조 제3항의 통지 또는 동조 제4항의 공고를 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날

마. 제810조의 절차가 종료한 날

바. 신선험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합의로 정한 날

2. 신선험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지분회사뿐인 경우 : 다음의 날 중 늦은 날

가. 제813조 제1항의 총사원의 동의를 얻은 날 (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정관에 정함에 의한 절차를 종료한 날)

나. 제81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10조의 절차가 종료한 날

다. 신선험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합의로 정한 날

3. 신선험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및 지분회사인 경우 : 전2호의 날중 늦은 날

② 2 이상의 회사가 신선험병을 하는 경우에 신선험병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가 지분회사인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마다 해당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그 본점소재지에서 신선험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고 신선험병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第7編 雑則

第4章 登記

- 一 新設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が株式会社のみである場合 次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遅い日
 - イ 第八百四条第二項の総株主の同意を得た日
 - ロ 新設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が新株予約権を発行しているときは、第八百八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同条第四項の公告をした日から二十日を経過した日
 - ハ 第八百十条の規定による手続が終了した日
 - ニ 新設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が合意により定めた日
- 二 新設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が持分会社のみである場合 次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遅い日
 - イ 第八百十三条第一項の総社員の同意を得た日(同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定款の定めによる手続を終了した日)
 - ロ 第八百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八百十条の規定による手続が終了した日
 - ハ 新設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が合意により定めた日
- 三 新設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が株式会社及び持分会社である場合 前二号に定める日のいずれか遅い日

第923条 吸収分割の登記

会社が吸収分割をしたときは、その効力が生じた日から二週間以内に、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吸収分割をする会社及び当該会社とその事業に関して有する権利義務の全部又は一部を当該会社から承継する会社についての変更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924条 新設分割の登記

1 一又は二以上の株式会社又は合同会社が新設分割をする場合において、新設分割により設立する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とき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二週間以内に、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新設分割をする会社については変更の登記をし、新設分割により設立する会社については設立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新設分割をする会社が株式会社のみである場合 次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

1. 신설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주식회사뿐인 경우 : 다음의 날 중 늦은 날
 - 가. 제804조 제2항의 총주주의 동의를 얻은 날
 - 나. 신설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고 있는 때에는 제808조 제3항의 통지 또는 동조 제4항의 공고를 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날
 - 다. 제810조의 절차가 종료한 날
 - 라. 신설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합의로 정한 날
2. 신설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지분회사뿐인 경우 : 다음의 날 중 늦은 날
 - 가. 제813조 제1항의 총사원의 동의를 얻은 날 (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정관의 정함에 의한 절차를 종료한 날)
 - 나. 제81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10조의 절차가 종료한 날
 - 다. 신설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합의로 정한 날
3. 신설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및 지분회사인 경우 : 전2호의 날 중 늦은 날

제923조 흡수분할의 등기

회사가 흡수분할을 한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그 본점소재지에서 흡수분할을 하는 회사 및 당해 회사가 그 사업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회사로부터 승계하는 회사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24조 신설분할의 등기

① 1 또는 2 이상의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가 신설분할을 하는 경우 신설분할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마다 해당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그 본점소재지에서 신설분할을 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변경등기를 하고 신설분할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신설분할을 하는 회사가 주식회사뿐인 경우 : 다음의 날 중 늦은 날

第7編 雑則

第4章 登記

遅い日

イ 第八百五条に規定する場合以外の場合には、第八百四条第一項の株主総会の決議の日

ロ 新設分割をするために種類株主総会の決議を要するときは、当該決議の日

ハ 第八百五条に規定する場合以外の場合には、第八百六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同条第四項の公告をした日から二十日を経過した日

ニ 第八百八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るべき新株予約権者があるときは、同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同条第四項の公告をした日から二十日を経過した日

ホ 第八百十条の規定による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は、当該手続が終了した日

ヘ 新設分割をする株式会社が定めた日(二以上の株式会社が共同して新設分割をす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二以上の新設分割をする株式会社が合意により定めた日)

二 新設分割をする会社が合同会社のみである場合 次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遅い日

イ 第八百十三条第一項の総社員の同意を得た日(同項ただし書の場合にあっては、定款の定めによる手続を終了した日)

ロ 第八百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八百十条の規定による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は、当該手続が終了した日

ハ 新設分割をする合同会社が定めた日(二以上の合同会社が共同して新設分割をす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二以上の新設分割をする合同会社が合意により定めた日)

三 新設分割をする会社が株式会社及び合同会社である場合 前二号に定める日のいずれか遅い日

2 一又は二以上の株式会社又は合同会社が新設分割をする場合において、新設分割により設立する会社が持分会社であるとき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二週間以内に、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新設分割をする会社については変更の登記をし、新設分割により設立する会社については設立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新設分割をする会社が株式会社のみである場合 次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

가. 제805조 이외의 경우에는 제804조 제1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일

나. 신설분할을 하기 위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때에는 당해결의일
다. 제805조 이외의 경우에는 제806조 제3항의 통지 또는 동조 제4항의 공
고를 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날

라. 제808조 제3항의 통지를 받아야 할 신주예약권자가 있는 때에는 동항의
통지 또는 동조 제4항의 공고를 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날

마. 제810조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날

바. 신설분할을 하는 주식회사가 정한 날 (2 이상의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신
설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2 이상의 신설분할을 하는 주식회사가 합
의로 정한 날)

2. 신설분할을 하는 회사가 합동회사뿐인 경우 : 다음의 날 중 늦은 날

가. 제813조 제1항의 총사원의 동의를 얻은 날 (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정관
의 정함에 의한 절차를 종료한 날)

나. 제81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10조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날

다. 신설분할을 하는 합동회사가 정한 날 (2이상의 합동회사가 공동으로 신
설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2 이상의 신설분할을 하는 합동회사가 합
의로 정한 날)

3. 신설분할을 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및 합동회사인 경우 : 전 2호의 날 중 늦
은 날

② 1 또는 2이상의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가 신설분할을 하는 경우에 신설분
할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가 지분회사인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마다 해
당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그 본점소재지에서 신설분할을 하
는 회사에 관하여는 변경등기를 하고 신설분할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에 관
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신설분할을 하는 회사가 주식회사뿐인 경우 : 다음의 날 중 늦은 날

第7編 雑則

第4章 登記

遅い日

イ 第八百五条に規定する場合以外の場合には、第八百四条第一項の株主総会の決議の日

ロ 新設分割をするために種類株主総会の決議を要するときは、当該決議の日

ハ 第八百五条に規定する場合以外の場合には、第八百六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同条第四項の公告をした日から二十日を経過した日

ニ 第八百十条の規定による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は、当該手続が終了した日

ホ 新設分割をする株式会社が定めた日(二以上の株式会社が共同して新設分割をす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二以上の新設分割をする株式会社が合意により定めた日)

二 新設分割をする会社が合同会社のみである場合 次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遅い日

イ 第八百十三条第一項の総社員の同意を得た日(同項ただし書の場合にあっては、定款の定めによる手続を終了した日)

ロ 第八百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八百十条の規定による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は、当該手続が終了した日

ハ 新設分割をする合同会社が定めた日(二以上の合同会社が共同して新設分割をす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二以上の新設分割をする合同会社が合意により定めた日)

三 新設分割をする会社が株式会社及び合同会社である場合 前二号に定める日のいずれか遅い日

第925条 株式移転の登記

一又は二以上の株式会社が株式移転をす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遅い日から二週間以内に、株式移転により設立する株式会社について、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設立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八百四条第一項の株主総会の決議の日

二 株式移転をするために種類株主総会の決議を要するときは、当該決議の日

三 第八百六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同条第四項の公告をした日から二十日を経過した日

가. 제805조 이외의 경우 제804조 제1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일

나. 신설분할을 하기 위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때에는 당해결의일
다. 제805조 이외의 경우 제806조 제3항의 통지 또는 동조 제4항의 공고를
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날

라. 제810조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날

마. 신설분할을 하는 주식회사가 정한 날 (2 이상의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신
설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2 이상의 신설분할을 하는 주식회사가 합
의로 정한 날)

2. 신설분할을 하는 회사가 합동회사뿐인 경우 : 다음의 날 중 늦은 날

가. 제813조 제1항의 총사원의 동의를 얻은 날 (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정관
의 정함에 의한 절차를 종료한 날)

나. 제81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10조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날

다. 신설분할을 하는 합동회사가 정한 날 (2 이상의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신
설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2 이상의 신설분할을 하는 주식회사가 합
의로 정한 날)

3. 신설분할을 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및 합동회사인 경우 : 전2호의 날 중 늦
은 날

제925조 주식이전의 등기

1 또는 2이상의 주식회사가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 다음의 날 중 늦은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그 본점소재지
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804조 제1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일

2. 주식이전을 하기 위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때에는 당해결의일

3. 제806조 제3항의 통지 또는 동조 제4항의 공고를 한 날로부터 20일을 경
과한 날

第7編 雑則

第4章 登記

四 第八百八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るべき新株予約権者があるときは、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た日又は同条第四項の公告をした日から二十日を経過した日

五 第八百十条の規定による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は、当該手続が終了した日

六 株式移転をする株式会社が定めた日(二以上の株式会社が共同して株式移転をす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二以上の株式移転をする株式会社が合意により定めた日)

第926条 解散の登記

第四百七十一条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又は第六百四十一条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の規定により会社が解散したときは、二週間以内に、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解散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927条 継続の登記

第四百七十三条、第六百四十二条第一項又は第八百四十五条の規定により会社が継続したときは、二週間以内に、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継続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928条 清算人の登記

1 第四百七十八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者が清算株式会社の清算人となったときは、解散の日から二週間以内に、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登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清算人の氏名

二 代表清算人の氏名及び住所

三 清算株式会社が清算人会設置会社であるときは、その旨

2 第六百四十七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者が清算持分会社の清算人となったときは、解散の日から二週間以内に、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を登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清算人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二 清算持分会社を代表する清算人の氏名又は名称(清算持分会社を代表しない清算人がある場合に限る。)

4. 제808조 제3항의 통지를 받아야 할 신주예약권자가 있는 때에는 동항의 통지를 한 날 또는 동조 제4항의 공고를 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날
5. 제810조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날
6. 주식이전을 하는 주식회사가 정한 날 (2 이상의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2 이상의 주식이전을 하는 주식회사가 합의로 정한 날)

제926조 해산의 등기

제471조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41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2주간 이내에 그 본점소재지에서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27조 계속의 등기

제473조, 제642조 제1항 또는 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계속한 때에는 2주간 이내에 그 본점소재지에서 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28조 청산인의 등기

① 제478조 제1항 제1호의 자가 청산주식회사의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그 본점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청산인의 성명
 2. 대표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3. 청산주식회사가 청산인회설치회사인 때에는 그 뜻
- ② 제647조 제1항 제1호의 자가 청산지분회사의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그 본점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청산인의 성명, 명칭 및 주소
2. 청산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의 성명 또는 명칭(청산지분회사를 대표하지 아니하는 청산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第7編 雑則

第4章 登記

三 清算持分会社を代表する清算人が法人であるときは、清算人の職務を行うべき者の氏名及び住所

3 清算人が選任されたときは、二週間以内に、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清算株式会社にあつては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清算持分会社にあつては前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登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九百十五条第一項の規定は前三項の規定による登記について、第九百十七条の規定は清算人、代表清算人又は清算持分会社を代表する清算人について、それぞれ準用する。

第929条 清算終了の登記

清算が終了したときは、次の各号に掲げる会社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二週間以内に、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清算終了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清算株式会社 第五百七条第三項の承認の日

二 清算持分会社(合名会社及び合資会社に限る。) 第六百六十七条第一項の承認の日(第六百六十八条第一項の財産の処分の方法を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財産の処分を完了した日)

三 清算持分会社(合同会社に限る。) 第六百六十七条第一項の承認の日

第九百三十条から第九百三十二条まで 削除

第3節 外国会社の登記

第933条 外国会社の登記

1 外国会社が第八百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初めて日本における代表者を定めたときは、三週間以内に、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地において、外国会社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日本に営業所を設けていない場合：日本における代表者(日本に住所を有す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の住所地

二 日本に営業所を設けた場合：当該営業所の所在地

2 外国会社の登記においては、日本における同種の会社又は最も類似する会社の種類に従い、第九百十一条第三項各号又は第九百十二条から第九百十四条ま

3. 청산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법인인 때에는 청산인의 직무를 행하여야 할 자의 성명 및 주소
- ③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2주간 이내에 그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청산지분회사의 경우에는 전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④ 제915조 제1항은 전3항의 등기에 관하여 제917조는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청산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929조 청산종료의 등기

청산이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회사마다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그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청산주식회사 : 제507조 제3항의 승인의 날
2. 청산지분회사(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한한다) : 제667조 제1항의 승인의 날 (제668조 제1항의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재산처분을 완료한 날)
3. 청산지분회사(합동회사에 한한다) : 제667조 제1항의 승인의 날

제930조에서 932조까지 삭제

제3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933조 외국회사의 등기

- ① 외국회사가 제8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일본에 있어서 대표자를 정한 때에는 3주간 이내에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호에서 정하는 곳에서 외국회사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일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일본에서의 대표자 (일본에 주소를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의 주소지
 2. 일본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
- ② 외국회사의 등기의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종류에 따라 제911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912조 내지 제914조의 각 호

第7編 雑則

第4章 登記

での各号に掲げる事項を登記するほか、次に掲げる事項を登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外国会社の設立の準拠法
 - 二 日本における代表者の氏名及び住所
 - 三 日本における同種の会社又は最も類似する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ときは、第一号に規定する準拠法の規定による公告をする方法
 - 四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第八百十九条第三項に規定する措置をとることとするときは、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貸借対照表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である情報について不特定多数の者がその提供を受けるために必要な事項であつ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 五 第九百三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公告方法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定め
 - 六 前号の定めが電子公告を公告方法とする旨のものであ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 イ 電子公告により公告すべき内容である情報について不特定多数の者がその提供を受けるために必要な事項であつ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 ロ 第九百三十九条第三項後段の規定による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定め
 - 七 第五号の定めがないときは、第九百三十九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官報に掲載する方法を公告方法とする旨
- 3 外国会社が日本に設けた営業所に関す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営業所を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三号、第九百十二条第三号、第九百十三条第三号又は第九百十四条第三号に規定する支店とみなす。
- 4 第九百十五条及び第九百十八条から第九百二十九条までの規定は、外国会社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規定中「二週間」とあるのは「三週間」と、「本店の所在地」とあるのは「日本における代表者(日本に住所を有するものに限る。)の住所地(日本に営業所を設けた外国会社にあつては、当該営業所の所在地)」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5 前各項の規定により登記すべき事項が外国において生じたときは、登記の期間は、その通知が日本における代表者に到達した日から起算する。

의 사항을 등기하는 것 외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외국회사의 설립의 준거법
2. 일본에서의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일본에서의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제1호의 준거법에 의한 공고 방법
4. 전호의 경우에 있어서 제819조 제3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동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에 상당한 것의 내용인 정보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제공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5. 제939조 제2항의 공고방법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6. 전호의 정관의 규정이 전자공고를 공고방법으로 하는 뜻인 때에는 다음의 사항
 - 가. 전자공고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내용인 정보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제공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 나. 제939조 제3항 후단에 의한 정관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7. 제5호의 정관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제939조 제4항에 의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공고방법으로 하는 뜻
 - ③ 외국회사가 일본에 설치한 영업소에 관한 전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소를 제911조 제3항 제3호, 제912조 제3호, 제913조 제3호 또는 제914조 제3호의 지점으로 본다.
 - ④ 제915조 및 제918조 내지 제929조는 외국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이러한 규정 중 “2주간”은 “3주간”으로, “본점소재지”는 “일본에서의 대표자(일본에 주소를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의 주소지(일본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로 한다.
 - ⑤ 전 각 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때에는 등기의 기간은 그 통지가 일본에서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第7編 雑則

第4章 登記

第934条 日本における代表者の選任の登記等

1 日本に営業所を設けていない外国会社が外国会社の登記後に日本における代表者を新たに定めた場合(その住所地が登記がされた他の日本における代表者の住所地を管轄する登記所の管轄区域内にある場合を除く。)には、三週間以内に、その新たに定めた日本における代表者の住所地においても、外国会社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日本に営業所を設けた外国会社が外国会社の登記後に日本に営業所を新たに設けた場合(その所在地が登記がされた他の営業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登記所の管轄区域内にある場合を除く。)には、三週間以内に、その新たに設けた日本における営業所の所在地においても、外国会社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935条 日本における代表者の住所の移転の登記等

1 日本に営業所を設けていない外国会社の日本における代表者が外国会社の登記後にその住所を他の登記所の管轄区域内に移転したときは、旧住所地においては三週間以内に移転の登記をし、新住所地においては四週間以内に外国会社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登記がされた他の日本における代表者の住所地を管轄する登記所の管轄区域内に住所を移転したときは、新住所地においては、その住所を移転したことを登記すれば足りる。

2 日本に営業所を設けた外国会社が外国会社の登記後に営業所を他の登記所の管轄区域内に移転したときは、旧所在地においては三週間以内に移転の登記をし、新所在地においては四週間以内に外国会社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登記がされた他の営業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登記所の管轄区域内に営業所を移転したときは、新所在地においては、その営業所を移転したことを登記すれば足りる。

第936条 日本における営業所の設置の登記等

1 日本に営業所を設けていない外国会社が外国会社の登記後に日本に営業所を設けたときは、日本における代表者の住所地においては三週間以内に営業所を設けたことを登記し、その営業所の所在地においては四週間以内に外国会社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登記がされた日本における代表者の住所を管轄する登記所の管轄区域内に営業所を設けたときは、その営業所を設け

제934조 일본에서의 대표자 선임등기등

- ① 일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외국회사가 외국회사의 등기 후에 일본에서의 대표자를 새로이 정한 경우 (그 주소지가 등기가 된 다른 일본에서의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3주간 이내에 그 새로이 정한 일본에서의 대표자의 주소지에서도 외국회사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일본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외국회사의 등기 후에 일본에 영업소를 새로이 설치한 경우 (그 소재지가 등기가 된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3주간 이내에 그 새로이 설치한 일본에서의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도 외국회사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35조 일본에서의 대표자의 주소의 이전등기등

- ① 일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외국회사의 일본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의 등기 후에 그 주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이전한 때에는 구주소지에서는 3주간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주소지에서는 4주간 이내에 외국회사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가 된 다른 일본에서의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이전한 때에는 신주소지에서는 그 주소를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 ② 일본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외국회사의 등기 후에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4주간 이내에 외국회사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가 된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에서는 그 영업소를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936조 일본에서의 영업소설치의 등기등

- ① 일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외국회사가 외국회사의 등기 후에 일본에 영업소를 설치한 때에는 일본에서의 대표자의 주소지에서 3주간 이내에 영업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간 이내에 외국회사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가 된 일본에서의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영업소를 설치한

第7編 雑則

第4章 登記

たことを登記すれば足りる。

2 日本に営業所を設けた外国会社が外国会社の登記後にすべての営業所を閉鎖した場合には、その外国会社の日本における代表者の全員が退任しようとするときを除き、その営業所の所在地においては三週間以内に営業所を閉鎖したことを登記し、日本における代表者の住所地においては四週間以内に外国会社の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登記がされた営業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登記所の管轄区域内に日本における代表者の住所地があるときは、すべての営業所を閉鎖したことを登記すれば足りる。

第4節 登記の嘱託

第937条 裁判による登記の嘱託

1 次に掲げる場合には、裁判所書記官は、職権で、遅滞なく、会社の本店(第一号トに規定する場合であって当該決議によって第九百三十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登記がされているときにあっては、本店及び当該登記に係る支店)の所在地を管轄する登記所にその登記を嘱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次に掲げる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判決が確定したとき。

イ 会社の設立の無効の訴え

ロ 株式会社の成立後における株式の発行の無効の訴え

ハ 新株予約権(当該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を含む。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の発行の無効の訴え

ニ 株式会社における資本金の額の減少の無効の訴え

ホ 株式会社の成立後における株式の発行が存在しないことの確認の訴え

ヘ 新株予約権の発行が存在しないことの確認の訴え

ト 株主総会等の決議した事項についての登記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次に掲げる訴え

1) 株主総会等の決議が存在しないこと又は株主総会等の決議の内容が法令に違反することを理由として当該決議が無効であることの確認の訴え

2) 株主総会等の決議の取消しの訴え

것을 등기하면 된다.

② 일본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외국회사의 등기 후에 모든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외국회사의 일본에서의 대표자의 전원이 퇴임하려는 때를 제외하고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 이내에 영업소를 폐쇄한 것을 등기하고 일본에서의 대표자의 주소지에서 4주간 이내에 외국회사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가 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일본에서의 대표자의 주소지가 있는 때에는 모든 영업소를 폐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4절 등기의 촉탁

제937조 재판에 의한 등기의 촉탁

① 다음의 경우 법원 서기관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회사의 본점(제1호의 사목의 경우로 당해 결의에 의하여 제93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본점 및 당해 등기와 관련된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가. 회사의 설립무효의 소

나. 주식회사의 성립 후 주식의 발행무효의 소

다.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경우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사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 있어서 같다)의 발행무효의 소

라.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

마. 주식회사의 성립 후 주식발행 부존재확인인의 소

바. 신주예약권 발행 부존재확인인의 소

사. 주주총회등의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기가 있었던 경우에는 다음의 소

1)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 또는 주주총회등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당해 결의가 무효라는 것의 확인인의 소

2) 주주총회등의 결의취소의 소

第7編 雑則

第4章 登記

チ 持分会社の設立の取消しの訴え

リ 会社の解散の訴え

ヌ 株式会社の役員の解任の訴え

ル 持分会社の社員の除名の訴え

ヲ 持分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社員の業務執行権又は代表権の消滅の訴え

二 次に掲げる裁判があったとき。

イ 第三百四十六条第二項、第三百五十一条第二項又は第四百一条第三項（第四百三条第三項及び第四百二十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一時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代表取締役、委員（指名委員会、監査委員会又は報酬委員会の委員をいう。）、執行役又は代表執行役の職務を行うべき者の選任の裁判

ロ 第四百七十九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四十六条第二項又は第四百八十三条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五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一時清算人又は代表清算人の職務を行うべき者の選任の裁判（次条第二項第一号に規定する裁判を除く。）

ハ イ又はロに掲げる裁判を取り消す裁判（次条第二項第二号に規定する裁判を除く。）

ニ 清算人又は代表清算人若しくは清算持分会社を代表する清算人の選任又は選定の裁判を取り消す裁判（次条第二項第三号に規定する裁判を除く。）

ホ 清算人の解任の裁判（次条第二項第四号に規定する裁判を除く。）

三 次に掲げる裁判が確定したとき。

イ 前号ホに掲げる裁判を取り消す裁判

ロ 第八百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会社の解散を命ずる裁判

2 第八百二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外国会社の日本における取引の継続の禁止又は営業所の閉鎖を命ずる裁判が確定した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職権で、遅滞なく、次の各号に掲げる外国会社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地を管轄する登記所にその登記を嘱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日本に営業所を設けていない外国会社 日本における代表者(日本に住所を有するものに限る。)の住所地

- 아. 지분회사의 설립취소의 소
 - 자. 회사의 해산의 소
 - 차. 주식회사의 임원해임의 소
 - 카. 지분회사의 사원제명의 소
 - 파. 지분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의 소멸의 소
2. 다음의 재판이 있었던 때.
- 가. 제346조 제2항, 제351조 제2항 또는 제401조 제3항(제403조 제3항 및 제420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일시이사(감사등 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외의 이사), 회 계참여, 감사, 대표이사, 위원(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보수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집행임원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자 의 선임재판
 - 나. 제47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346조 제2항 또는 제483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51조 제2항의 일시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할 자의 선임재판(다음 조 제2항 제1호의 재판은 제외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재판을 취소하는 재판(다음 조 제2항 제2호의 재판은 제외한다)
- 라.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 혹은 청산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의 선임 또는 선정의 재판을 취소하는 재판(다음 조 제2항 제3호의 재판은 제외 한다)
 - 마. 청산인의 해임재판(다음 조 제2항 제4호의 재판은 제외한다)
3. 다음의 재판이 확정할 때
- 가. 전호 마목의 재판을 취소하는 재판
 - 나. 제824조 제1항의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
- ② 제827조 제1항에 의한 외국회사의 일본에서의 거래계속의 금지 또는 영업 소의 폐쇄를 명하는 재판이 확정할 때에는 법원 서기관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다음의 각 호의 외국회사마다 당해 각 호의 장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 를 촉탁하여야 한다.
- 1. 일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외국회사 : 일본에서의 대표자 (일본에 주 소를 가지는 자에 한한다) 의 주소지

第7編 雑則

第4章 登記

- 二 日本に営業所を設けている外国会社 当該営業所の所在地
- 3 次の各号に掲げる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判決が確定した場合には、裁判所書記官は、職権で、遅滞なく、各会社の本店の所在地を管轄する登記所に当該各号に定める登記を嘱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会社の組織変更の無効の訴え 組織変更後の会社についての解散の登記及び組織変更をする会社についての回復の登記
 - 二 会社の吸収合併の無効の訴え 吸収合併後存続する会社についての変更の登記及び吸収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についての回復の登記
 - 三 会社の新設合併の無効の訴え 新設合併により設立する会社についての解散の登記及び新設合併により消滅する会社についての回復の登記
 - 四 会社の吸収分割の無効の訴え 吸収分割をする会社及び当該会社がその事業に関して有する権利義務の全部又は一部を当該会社から承継する会社についての変更の登記
 - 五 会社の新設分割の無効の訴え 新設分割をする会社についての変更の登記及び新設分割により設立する会社についての解散の登記
 - 六 株式会社の株式交換の無効の訴え 株式交換をする株式会社(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限る。)及び株式交換をする株式会社の発行済株式の全部を取得する会社についての変更の登記
 - 七 株式会社の株式移転の無効の訴え 株式移転をする株式会社(第七百七十三条第一項第九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限る。)についての変更の登記及び株式移転により設立する株式会社についての解散の登記
 - 八 株式会社の株式交付の無効の訴え 株式交付親会社についての変更の登記

第938条 特別清算に関する裁判による登記の嘱託

- 1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裁判所書記官は、職権(特別清算に関する裁判による登記の嘱託)で、遅滞なく、清算株式会社の本店(第三号に掲げる場合であって特別清算の結了により特別清算終結の決定がされたときにあっては、本店の所在地を管轄する登記所に当該各号に定める登記を嘱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特別清算開始の命令があったとき 特別清算開始の登記
 - 二 特別清算開始の命令を取り消す決定が確定したとき 特別清算開始の取消

2. 일본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 : 영업소의 소재지
- ③ 다음의 각 호의 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 서기관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각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각 호에 규정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조직변경의 무효의 소 : 조직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 및 조직변경을 하는 회사에 관한 회복등기
 2. 회사의 흡수합병의 무효의 소 :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관한 변경등기 및 흡수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관한 회복등기
 3. 회사의 신설합병의 무효의 소 : 신설합병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 및 신설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관한 회복등기
 4. 회사의 흡수분할의 무효의 소 : 흡수분할을 하는 회사 및 당해 회사가 그 사업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회사로부터 승계하는 회사에 관한 변경등기
 5. 회사의 신설분할의 무효의 소 : 신설분할을 하는 회사에 관한 변경등기 및 신설분할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
 6. 주식회사의 주식교환의 무효의 소 : 주식교환을 하는 주식회사 (제768조 제1항 제4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주식교환을 하는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전부를 취득하는 회사에 관한 변경등기
 7. 주식회사의 주식이전의 무효의 소 : 주식이전을 하는 주식회사 (제773조 제1항 제9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에 관한 변경등기 및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에 관한 해산등기
 8. 주식회사의 주식교부의 무효의 소: 주식교부모회사에 관한 변경등기

제938조 특별청산에 관한 재판에 의한 등기의 촉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원 서기관은 직권(특별청산에 관한 재판에 의한 등기의 촉탁)으로 지체없이 청산주식회사의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었던 때 : 특별청산개시의 등기
2.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 특별청산개시 취소의

第7編 雑則

第4章 登記

しの登記

- 三 特別清算終結の決定が確定したとき 特別清算終結の登記
- 2 次に掲げる場合には、裁判所書記官は、職権で、遅滞なく、清算株式会社の本店の所在地を管轄する登記所にその登記を嘱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特別清算開始後における第四百七十九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四十六条第二項又は第四百八十三条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五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一時清算人又は代表清算人の職務を行うべき者の選任の裁判があったとき。
 - 二 前号の裁判を取り消す裁判があったとき。
 - 三 特別清算開始後における清算人又は代表清算人の選任又は選定の裁判を取り消す裁判があったとき。
 - 四 特別清算開始後における清算人の解任の裁判があったとき。
 - 五 前号の裁判を取り消す裁判が確定したとき。
- 3 次に掲げる場合には、裁判所書記官は、職権で、遅滞なく、当該保全処分の登記を嘱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清算株式会社の財産に属する権利で登記されたものに関し第五百四十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保全処分があったとき。
 - 二 登記のある権利に関し第五百四十二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保全処分があったとき。
- 4 前項の規定は、同項に規定する保全処分の変更若しくは取消しがあった場合又は当該保全処分が効力を失っ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 5 前二項の規定は、登録のある権利について準用する。
- 6 前各項の規定は、その性質上許されないものを除き、第八百二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日本にある外国会社の財産についての清算について準用する。

등기

3. 특별청산종결의 결정이 확정된 때 : 특별청산종결의 등기
 - ② 다음의 경우 법원 서기관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청산주식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특별청산개시 후 제47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346조 제2항 또는 제483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51조 제2항의 일시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의 직무를 행하여야 할 자의 선임 재판이 있었던 때
 2. 전호의 재판을 취소하는 재판이 있었던 때
 3. 특별청산개시 후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의 선임 또는 선정의 재판을 취소하는 재판이 있었던 때
 4. 특별청산개시 후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었던 때
 5. 전호의 재판을 취소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
 - ③ 다음의 경우 법원 서기관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청산회사의 재산에 속할 권리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54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전처분이 있었던 때
 2. 등기상 어느 권리에 관하여 제54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전처분이 있었던 때
 - ④ 전항은 동항의 보전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가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보전처분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 준용한다.
 - ⑤ 전2항은 등록된 어느 권리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⑥ 전 각 항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822조 제1항에 의하여 일본에 있는 외국회사의 재산에 관한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第5章 公告

第1節 総則

第939条 会社の公告方法

- 1 会社は、公告方法として、次に掲げる方法のいずれかを定款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 一 官報に掲載する方法
 - 二 時事に関する事項を掲載する日刊新聞紙に掲載する方法
 - 三 電子公告
- 2 外国会社は、公告方法として、前項各号に掲げる方法のいずれか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3 会社又は外国会社が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方法を公告方法とする旨を定める場合には、電子公告を公告方法とする旨を定めれば足り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事故その他やむを得ない事由によって電子公告による公告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の公告方法として、同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方法のいずれか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4 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定めがない会社又は外国会社の公告方法は、第一項第一号の方法とする。

第940条 電子公告の公告期間等

- 1 株式会社又は持分会社が電子公告により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公告をする場合には、次の各号に掲げる公告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日までの間、継続して電子公告による公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特定の日のある一定の期間前に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における当該公告 当該特定の日
 - 二 第四百四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公告 同項の定時株主総会の終結の日後五年を経過する日
 - 三 公告に定める期間内に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旨の公告 当該期間を経過する日
 - 四 前三号に掲げる公告以外の公告 当該公告の開始後一箇月を経過する日
- 2 外国会社が電子公告により第八百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する場

제5장 공 고

제1절 총칙

제939조 회사의 공고방법

- ① 회사는 공고방법으로서 다음 방법의 어느 하나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1.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
 2.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지에 게재하는 방법
 3. 전자공고
- ② 외국회사는 공고방법으로 전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정할 수 있다.
- ③ 회사 또는 외국회사가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공고 방법으로 하는 뜻을 정하는 경우에는 전자공고를 공고방법으로 하는 뜻을 정하면 된다. 이 경우 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전자공고에 의하여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공고방법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정함이 없는 회사 또는 외국회사의 공고방법은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한다.

제940조 전자공고의 공고기간등

- ① 주식회사 또는 지분회사가 전자공고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공고마다 각 호의 날까지 계속하여 전자공고에 의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특정일의 일정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공고 : 당해 특정일
 2. 제440조 제1항의 공고 : 동항의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 후 5년을 경과하는 날
 3. 공고에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뜻의 공고 : 당해 기간을 경과하는 날
 4. 전3호의 공고 이외의 공고 : 공고의 개시 후 1개월을 경과하는 날
- ② 외국회사가 전자공고에 의하여 제819조 제1항의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

第7編 雑則

第5章 公告

合には、同項の手続の終結の日後五年を経過する日までの間、継続して電子公告による公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これらの規定により電子公告による公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期間(以下この章において「公告期間」という。)中公告の中断(不特定多数の者が提供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状態に置かれた情報がその状態に置かれないこととなったこと又はその情報がその状態に置かれた後改変されたこと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が生じた場合において、次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きは、その公告の中断は、当該公告の効力に影響を及ぼさない。

- 一 公告の中断が生ずることにつき会社が善意でかつ重大な過失がないこと又は会社に正当な事由があること。
- 二 公告の中断が生じた時間の合計が公告期間の十分の一を超えないこと。
- 三 会社が公告の中断が生じたことを知った後速やかにその旨、公告の中断が生じた時間及び公告の中断の内容を当該公告に付して公告したこと。

第2節 電子公告調査機関

第941条 電子公告調査

この法律又は他の法律の規定による公告(第四百四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除く。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を電子公告によりしようとする会社は、公告期間中、当該公告の内容である情報が不特定多数の者が提供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状態に置かれているかどうかにつ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法務大臣の登録を受けた者(以下この節において「調査機関」という。)に対し、調査を行うこと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942条 登録

- 1 前条の登録(以下この節において単に「登録」という。)は、同条の規定による調査(以下この節において「電子公告調査」という。)を行おうとする者の申請により行う。
- 2 登録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実費を勘案して政令で定める額の手数料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항의 절차의 종결일 후 5년간 계속하여 전자공고에 의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고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공고기간”이라고 한다) 중 공고의 중단(불특정 다수인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둔 정보가 그 상태로 있지 아니하게 된 것 또는 정보가 그 상태에 둔 후 개편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고의 중단은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공고의 중단이 발생하는 것에 관하여 회사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또는 회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고의 중단이 발생한 시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10분의 1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회사가 공고의 중단이 발생한 것을 안 후 신속하게 그 뜻, 공고의 중단이 발생한 시간 및 공고의 중단의 내용을 당해 공고에 첨부하여 공고 한 경우

제2절 전자공고 조사기관

제941조 전자공고 조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고(제440조 제1항에 의한 공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 있어서 같다)를 전자공고로 하려는 회사는 공고 기간 중 당해 공고의 내용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조사기관”이라고 한다)에게 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42조 등록

- ① 전 조의 등록(이하 이 절에서 “등록”이라고 한다)은 동조의 조사(이하 이 절에서 “전자공고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②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943条 欠格事由

1 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この節の規定若しくは農業協同組合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三十二号)第九十七条の四第五項、金融商品取引法第五十条の二第十項及び第六十六条の四十第六項、公認会計士法第三十四条の二十第六項及び第三十四条の二十三第四項、消費生活協同組合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百号)第二十六条第六項、水産業協同組合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百四十二号)第二百二十一条第五項、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百八十一号)第三十三条第七項(輸出水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九年法律第百五十四号)第二十条並びに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昭和三十二年法律第百八十五号)第五条の二十三第三項及び第四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弁護士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二百五号)第三十条の二十八第六項(同法第四十三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船主相互保険組合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七十七号)第五十五条第三項、司法書士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九十七号)第四十五条の二第六項、土地家屋調査士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二十八号)第四十条の二第六項、商品先物取引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三十九号)第十一条第九項、行政書士法(昭和二十六年法律第四号)第十三条の二十の二第六項、投資信託及び投資法人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六年法律第百九十八号)第二十五条第二項(同法第五十九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百八十六条の二第四項、税理士法第四十八条の十九の二第六項(同法第四十九条の十二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信用金庫法(昭和二十六年法律第二百三十八号)第八十七条の四第四項、輸出入取引法(昭和二十七年法律第二百九十九号)第十五条第六項(同法第十九条の六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中小漁業融資保証法(昭和二十七年法律第三百四十六号)第五十五条第五項、労働金庫法(昭和二十八年法律第二百二十七号)第九十一条の四第四項、技術研究組合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八十一号)第十六条第八項、農業信用保証保険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二百四号)第四十八条の三第五項(同法第四十八条の九第七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社会保険労務士法(昭和四十三年法律第八十九号)第二十五条の二十三の二第六項、森林組合法(昭和五十三年法律第三

제943조 결격 사유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이 절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1947년 법률 제132호) 제97조의4 제5항, 금융상품거래법 제50조의2 제10항 및 제66조의4 제6항, 공인회계사법 제34조의2 제6항 및 제34조의23 제4항, 소비생활협동조합법 (1948년 법률 제200호) 제26조 제6항, 수산업협동조합법 (1948년 법률 제242호) 제121조 제5항,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1949년 법률 제181호) 제33조 제7항 (수출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954년 법률 제154호) 제210조 및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1957년 법률 제185호) 제5조의23 제3항 및 제4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호사법 (1949년 법률 제205호) 제30조의28 제6항 (동법 제43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1950년 법률 제177호) 제55조 제3항, 사법서사법 (1950년 법률 제197호) 제45조의2 제6항, 토지가옥조사원법 (1950년 법률 제228호) 제40조의2 제6항, 상품선물거래법(1950년 법률 제239호) 제11조 제9항, 행정서사법(1951년 법률 제4호) 제13조의20의2 제6항,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1951년 법률 제198호) 제25조 제2항 (동법 제5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86조의2 제4항, 세무사법 제48조의19의2 제6항 (동법 제49조의12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용금고법(1951년 법률 제238호) 제87조의4 제4항, 수출입거래법 (1952년 법률 제299호) 제15조 제6항(동법 제19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소기업융자보증법 (1952년 법률 제346호) 제55조 제5항, 노동금고법(1953년 법률 제227호) 제91조의4 제4항, 기술연구조합법 (1961년 법률 제81호) 제16조 제8항, 농업신용보증보험법(1961년 법률 제204호) 제48조의3 제5항(동법 제48조의9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회보험노무사법(1968년 법률 제89호) 제25조의23의2 제6항, 삼림조합법 (1978년 법률 제36호) 제8조의2 제5항, 은행법 제49조의2 제2항, 보험업법 (1995년 법률 제105호) 제67조의2 및 제217조 제3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998년 법률 제105호) 제194조 제4항, 변리사법 (2000년 법률 제49호) 제53조의2 제6항, 농림중앙금고법 (2001년 법률 제93호) 제96조의2 제4항, 신탁업법 제57조 제6항 및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제333조 및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2009년 법률59호) 제20조 제4항, 제61조 제7

第7編 雑則

第5章 公告

- 十六号) 第八条の二第五項、銀行法第四十九条の二第二項、保険業法(平成七年法律第五号)第六十七条の二及び第二百十七条第三項、資産の流動化に関する法律(平成十年法律第五号)第九十四条第四項、弁理士法(平成十二年法律第四十九号)第五十三条の二第六項、農林中央金庫法(平成十三年法律第九十三号)第九十六条の二第四項、信託業法第五十七条第六項、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第三百三十三条並びに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一年法律第五十九号)第二十条第四項、第六十一条第七項及び第六十三条の二十第七項(以下この節において「電子公告関係規定」と総称する。)において準用する第九百五十五条第一項の規定又はこの節の規定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者
- 二 第九百五十四条の規定により登録を取り消さ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二年を経過しない者
- 三 法人であって、その業務を行う理事等(理事、取締役、執行役、業務を執行する社員、監事若しくは監査役又はこれらに準ずる者をいう。第九百四十七条において同じ。)のうちに前二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があるもの

第944条 登録基準

- 1 法務大臣は、第九百四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登録を申請した者が、次に掲げる要件のすべてに適合しているときは、その登録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登録に関して必要な手続は、法務省令で定める。
- 一 電子公告調査に必要な電子計算機(入出力装置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及びプログラム(電子計算機に対する指令であって、一の結果を得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組み合わされたもの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であって次に掲げる要件のすべてに適合するものを用いて電子公告調査を行うものであること。
- イ 当該電子計算機及びプログラムが電子公告により公告されている情報を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て閲覧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あること。
- ロ 当該電子計算機若しくはその用に供する電磁的記録を損壊し、若しくは当該電子計算機に虚偽の情報若しくは不正な指令を与え、又はその他の方法により、当該電子計算機に使用目的に沿うべき動作をさせず、又は使用目的に

항 및 제63조의20 제7항 (이하 이절에서 “전자공고관계규정”으로 총칭한다)에서 준용하는 제955조 제1항 또는 이 절에 의거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954조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 그 취소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 그 업무를 행하는 이사등 (이사(理事), 이사(取締役), 집행임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감사(監事), 감사(監査役)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제947조에서 같다) 중에 전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제944조 등록기준

① 법무대신은 제9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요건 전부에 적합한 때에는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전자공고 조사에 필요한 전자계산기 (입출력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프로그램(전자계산기에 대한 지령으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합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서 같다)으로 다음의 요건 전부에 적합한 것을 이용하여 전자공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일 것

가. 당해 전자계산기 및 프로그램이 전자공고에 의하여 공고되고 있는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당해 전자계산기 또는 그 용도로 제공하는 전자적 기록을 손괴하거나 당해 전자계산기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지령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전자계산기에 사용 목적에 따라야 할 동작을 시키지 아니하

反する動作をさせることを防ぐために必要な措置が講じられていること。

ハ 当該電子計算機及びプログラムがその電子公告調査を行う期間を通じて当該電子計算機に入力された情報及び指令並びに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て提供を受けた情報を保存する機能を有していること。

二 電子公告調査を適正に行うために必要な実施方法が定められていること。

2 登録は、調査機関登録簿に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又は記録してするものとする。

一 登録年月日及び登録番号

二 登録を受けた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人にあっては、その代表者の氏名

三 登録を受けた者が電子公告調査を行う事業所の所在地

第945条 登録の更新

1 登録は、三年を下らない政令で定める期間ごとにその更新を受けなければ、その期間の経過によって、その効力を失う。

2 前三条の規定は、前項の登録の更新について準用する。

第946条 調査の義務等

1 調査機関は、電子公告調査を行うことを求められたときは、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き、電子公告調査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調査機関は、公正に、かつ、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電子公告調査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3 調査機関は、電子公告調査を行う場合に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電子公告調査を行うことを求めた者(以下この節において「調査委託者」という。)の商号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法務大臣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調査機関は、電子公告調査の後遅滞なく、調査委託者に対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電子公告調査の結果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947条 電子公告調査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場合

調査機関は、次に掲げる者の電子公告による公告又はその者若しくはその理事等が電子公告による公告に関与した場合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ける

거나 사용 목적에 반하는 동작을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다. 당해 전자계산기 및 프로그램이 그 전자공고 조사를 실시하는 기간을 통하여 당해 전자계산기에 입력된 정보, 지령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공을 받은 정보를 보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2. 전자공고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시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

② 등록은 조사기관 등록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 또는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

1.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을 받은 자의 성명, 명칭, 주소 및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3. 등록을 받은 자가 전자공고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소의 소재지

제945조 등록의 갱신

① 등록은 3년을 하회하지 않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잃는다.

② 전3조는 전항의 등록 갱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46조 조사의 의무등

① 조사기관은 전자공고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공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공정하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자공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전자공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전자공고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자(이하 이 절에서 “조사위탁자”라고 한다)의 상호 그 밖의 시행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법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전자공고 조사 후 지체없이 조사위탁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전자공고 조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47조 전자공고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조사기관은 다음의 자의 전자공고에 의한 공고 또는 그 자 혹은 그 이사 등이 전자공고에 의한 공고에 관여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한 경우 당해 공고

第7編 雑則

第5章 公告

当該公告については、電子公告調査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

- 一 当該調査機関
- 二 当該調査機関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ける親株式会社(当該調査機関を子会社とする株式会社をいう。)
- 三 理事等又は職員(過去二年間にそのいずれかであった者を含む。次号において同じ。)が当該調査機関の理事等に占める割合が二分の一を超える法人
- 四 理事等又は職員のうちに当該調査機関(法人であるものを除く。)又は当該調査機関の代表権を有する理事等が含まれている法人

第948条 事業所の変更の届出

調査機関は、電子公告調査を行う事業所の所在地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変更しようとする日の二週間前までに、法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第949条 業務規程

- 1 調査機関は、電子公告調査の業務に関する規程(次項において「業務規程」という。)を定め、電子公告調査の業務の開始前に、法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 2 業務規程には、電子公告調査の実施方法、電子公告調査に関する料金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定め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950条 業務の休廃止

調査機関は、電子公告調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休止し、又は廃止しようとす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その旨を法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第951条 財務諸表等の備置き及び閲覧等

- 1 調査機関は、毎事業年度経過後三箇月以内に、その事業年度の財産目録、貸借対照表及び損益計算書又は収支計算書並びに事業報告書(これら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の作成が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録を含む。次項において「財務諸表等」という。)を作成し、五年間事業所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

에 관하여는 전자공고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1. 당해 조사기관
2. 당해 조사기관이 주식회사인 경우에 모주식회사 (당해 조사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3. 이사등 또는 직원(과거 2년간에 그 어느 하나에 있었던 자를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이 조사기관의 이사등에 점유하는 비율이 2분의1을 초과하는 법인
4. 이사등 또는 직원 중 당해 조사기관 (법인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당해 조사기관의 대표권을 가지는 이사등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제948조 사업소의 변경 신고

조사기관은 전자공고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2주간 전까지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49조 업무규정

- ① 조사기관은 전자공고 조사의 업무에 관한 규정 (다음 항에 서 “업무규정”이라고 한다) 을 정하여 전자공고 조사 업무의 개시 전에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 ② 업무규정에는 전자공고 조사의 실시방법, 전자공고 조사에 관한 요금 그 밖의 시행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정해 두어야 한다.

제950조 업무의 휴·폐지

조사기관은 전자공고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뜻을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51조 재무제표등의 비치 및 열람등

- ① 조사기관은 매사업년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년도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수지계산서 및 사업보고서 (이러한 작성에 같음하여 전자적 기록의 작성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재무제표등”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5년간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第7編 雑則

第5章 公告

らない。

2 調査委託者その他の利害関係人は、調査機関に対し、その業務時間内は、いつでも、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二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には、当該調査機関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財務諸表等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二 前号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三 財務諸表等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の請求

四 前号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って調査機関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当該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第952条 適合命令

法務大臣は、調査機関が第九百四十四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適合しなくなったと認めるときは、その調査機関に対し、これらの規定に適合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953条 改善命令

法務大臣は、調査機関が第九百四十六条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調査機関に対し、電子公告調査を行うべきこと又は電子公告調査の方法その他の業務の方法の改善に関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954条 登録の取消し等

法務大臣は、調査機関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登録を取り消し、又は期間を定めて電子公告調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一 第九百四十三条第一号又は第三号に該当するに至ったとき。

二 第九百四十七条(電子公告関係規定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から第九百五十条まで、第九百五十一条第一項又は次条第一項(電子公告関係規定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한다.

② 조사위탁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조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시간 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려면 조사기관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등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그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전호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의 청구
3. 재무제표등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4. 전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조사기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의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의 청구

제952조 적합명령

법무대신은 조사기관이 제94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조사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에 적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53조 개선명령

법무대신은 조사기관이 제946조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조사기관에 대하여 전자공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 또는 전자공고 조사의 방법 그 밖의 업무방법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54조 등록의 취소등

법무대신은 조사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전자공고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43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때
2. 제947조 (전자공고 관계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지 제950조, 제951조 제1항 또는 다음 조 제1항 (전자공고 관계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에 위반한 때

第7編 雑則

第5章 公告

- 三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第九百五十一条第二項各号又は次条第二項各号(電子公告関係規定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請求を拒んだとき。
- 四 第九百五十二条又は前条(電子公告関係規定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命令に違反したとき。
- 五 不正の手段により第九百四十一条の登録を受けたとき。

第955条 調査記録簿等の記載等

- 1 調査機関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調査記録又は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以下この条において「調査記録簿等」という。)を備え、電子公告調査に関し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記載し、又は記録し、及び当該調査記録簿等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調査委託者その他の利害関係人は、調査機関に対し、その業務時間内は、いつでも、当該調査機関が前項又は次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保存している調査記録簿等(利害関係がある部分に限る。)について、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請求をするには、当該調査機関の定めた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調査記録簿等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書面の写しの交付の請求
 - 二 調査記録簿等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であって調査機関の定めたものにより提供することの請求又は当該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の請求

第956条 調査記録簿等の引継ぎ

- 1 調査機関は、電子公告調査の業務の全部の廃止をしようとするとき、又は第九百五十四条の規定により登録が取り消されたときは、その保存に係る前条第一項(電子公告関係規定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調査記録簿等を他の調査機関に引き継が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規定により同項の調査記録簿等の引継ぎを受けた調査機関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調査記録簿等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951조 제2항 각 호 또는 다음 조 제2항 각 호 (전자공고 관계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청구를 거절한 때
4. 제952조 또는 전 조 (전자공고 관계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명령에 위반한 때
5.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제941조의 등록을 받은 때

제955조 조사기록부등의 기재등

- ① 조사기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기록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록부등”이라고 한다)을 구비하고 전자공고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기재 또는 기록하여 당해 조사기록부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탁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조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시간 내에 언제든지 당해 조사기관이 전항 또는 다음 조 제2항에 의하여 보존하고 있는 조사기록부등(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청구를 하려면 조사기관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조사기록부등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있는 때에는 그 서면의 사본의 교부의 청구
 2. 조사기록부등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고 있는 때에는 그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조사기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의 청구 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의 청구

제956조 조사기록부등의 인계

- ① 조사기관은 전자공고 조사 업무전부를 폐지하려는 때 또는 제954조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보존에 관한 전 조 제1항(전자공고 관계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사기록부등을 다른 조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 의하여 동항의 조사기록부등을 인계 받은 조사기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기록부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第957条 法務大臣による電子公告調査の業務の実施

- 1 法務大臣は、登録を受ける者がいないとき、第九百五十条の規定による電子公告調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休止又は廃止の届出があったとき、第九百五十四条の規定により登録を取り消し、又は調査機関に対し電子公告調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じたとき、調査機関が天災その他の事由によって電子公告調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実施することが困難となったとき、その他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電子公告調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自ら行うことができる。
- 2 法務大臣が前項の規定により電子公告調査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自ら行う場合における電子公告調査の業務の引継ぎその他の必要な事項については、法務省令で定める。
-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法務大臣が行う電子公告調査を求める者は、実費を勘案して政令で定める額の手数料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958条 報告及び検査

- 1 法務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調査機関に対し、その業務若しくは経理の状況に関し報告をさせ、又はその職員に、調査機関の事務所若しくは事業所に立ち入り、業務の状況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り職員が立入検査をする場合に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人に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の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第959条 公示

- 法務大臣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その旨を官報に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登録をしたとき。
 - 二 第九百四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登録が効力を失ったことを確認したとき。
 - 三 第九百四十八条又は第九百五十条の届出があったとき。
 - 四 第九百五十四条の規定により登録を取り消し、又は電子公告調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じたとき。

제957조 법무대신에 의한 전자공고 조사 업무의 실시

① 법무대신은 등록을 받는 자가 없는 때에는 제950조의 전자공고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가 있었던 때, 제954조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조사기관에 대하여 전자공고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 조사기관이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전자공고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전자공고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대신이 전항에 의하여 전자공고 조사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에 전자공고 조사 업무의 인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법무대신이 실시하는 전자공고 조사를 요구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58조 보고 및 검사

① 법무대신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조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경리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직원에게 조사기관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입회하여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직원이 입회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입회검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59조 공시

법무대신은 다음의 경우 그 뜻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등록을 한 때
2. 제945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이 효력을 잃은 것을 확인한 때
3. 제948조 또는 제950조의 신고가 있었던 때
4. 제954조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전자공고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

第8編 罰則

- 五 第九百五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法務大臣が電子公告調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自ら行うものとするとき、又は自ら行っていた電子公告調査の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行わないこととするとき。

第8編 罰則

第960条 取締役等の特別背任罪

1 次に掲げる者が、自己若しくは第三者の利益を図り又は株式会社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任務に背く行為をし、当該株式会社に財産上の損害を加えたときは、十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千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一 発起人

二 設立時取締役又は設立時監査役

三 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又は執行役

四 民事保全法第五十六条 に規定する仮処分命令により選任された取締役、監査役又は執行役の職務を代行する者

五 第三百四十六条第二項、第三百五十一条第二項又は第四百一条第三項(第四百三条第三項及び第四百二十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一時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代表取締役、委員(指名委員会、監査委員会又は報酬委員会の委員をいう。)、執行役又は代表執行役の職務を行うべき者

六 支配人

七 事業に関するある種類又は特定の事項の委任を受けた使用人

八 検査役

2 次に掲げる者が、自己若しくは第三者の利益を図り又は清算株式会社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任務に背く行為をし、当該清算株式会社に財産上の損害を加えた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一 清算株式会社の清算人

二 民事保全法第五十六条 に規定する仮処分命令により選任された清算株式会社の清算人の職務を代行する者

5. 제957조 제1항에 의하여 법무대신이 전자공고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때 또는 스스로 실시하고 있었던 전자공고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때

제8편 벌칙

제960조 이사등의 특별배임죄

① 다음의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발기인
2. 설립시 이사 또는 설립시 감사
3. 이사, 회계참여, 감사 또는 집행임원
4. 민사보전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가처분명령에 따라 선임된 이사, 감사 또는 집행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5. 제346조 제2항, 제351조 제2항 또는 제401조 제3항(제403조 제3항 및 제420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해 선임된 일시이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외의 이사), 회계참여, 감사, 대표이사, 위원(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보수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집행임원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자

6. 지배인
7. 사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8. 겸사인

② 다음의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청산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청산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청산주식회사의 청산인
2. 민사보전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회사의 청산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第8編 罰則

三 第四百七十九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四十六条第二項又は第四百八十三条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五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一時清算人又は代表清算人の職務を行うべき者

四 清算人代理

五 監督委員

六 調査委員

第961条 代表社債権者等の特別背任罪

代表社債権者又は決議執行者(第七百三十七条第二項に規定する決議執行者をいう。以下同じ。)が、自己若しくは第三者の利益を図り又は社債権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任務に背く行為をし、社債権者に財産上の損害を加えたときは、五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五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第962条 未遂罪

前二条の罪の未遂は、罰する。

第963条 会社財産を危うくする罪

1 第九百六十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者が、第三十四条第一項若しくは第六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払込み若しくは給付について、又は第二十八条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裁判所又は創立総会若しくは種類創立総会に対し、虚偽の申述を行い、又は事実を隠ぺいしたときは、五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五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2 第九百六十条第一項第三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者が、第九十九条第一項第三号又は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裁判所又は株主総会若しくは種類株主総会に対し、虚偽の申述を行い、又は事実を隠ぺいした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3 検査役が、第二十八条各号、第九十九条第一項第三号又は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裁判所に対し、虚偽の申述を行い、又は事実を隠ぺいしたときも、第一項と同様とする。

4 第九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者が、第三十四条第一項若しくは第六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払込み若しくは給付について、又は第二十八条

3. 제47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346조 제2항 또는 제483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일시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의 직무를 하여야 하는 자
4. 청산인대리
5. 감독위원
6. 조사위원

제961조 대표사채권자들의 특별배임죄

대표사채권자 또는 결의집행자(제7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결의집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사채권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962조 미수죄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63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① 제96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제34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혹은 급부에 관하여 또는 제28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 창립총회 혹은 종류창립총회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② 제96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가 제199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36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검사인이 제28조 각호, 제199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36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34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또는 급부에 관하여 또는 제28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第8編 罰則

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創立総会に対し、虚偽の申述を行い、又は事実を隠ぺいしたときも、第一項と同様とする。

5 第九百六十条第一項第三号から第七号までに掲げる者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も、第一項と同様とする。

- 一 何人の名義をもってするかを問わず、株式会社の計算において不正にその株式を取得したとき。
- 二 法令又は定款の規定に違反して、剰余金の配当をしたとき。
- 三 株式会社の目的の範囲外において、投機取引のために株式会社の財産を処分したとき。

第964条 虚偽文書行使等の罪

1 次に掲げる者が、株式、新株予約権、社債又は新株予約権付社債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をするに当たり、会社の事業その他の事項に関する説明を記載した資料若しくは当該募集の広告その他の当該募集に関する文書であって重要な事項について虚偽の記載のあるものを行使し、又はこれらの書類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の作成が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録であって重要な事項について虚偽の記録のあるものをその募集の事務の用に供したときは、五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五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 一 第九百六十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七号までに掲げる者
- 二 持分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社員
- 三 民事保全法第五十六条 に規定する仮処分命令により選任された持分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社員の職務を代行する者
- 四 株式、新株予約権、社債又は新株予約権付社債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の委託を受けた者

2 株式、新株予約権、社債又は新株予約権付社債の売出しを行う者が、その売出しに関する文書であって重要な事項について虚偽の記載のあるものを行使し、又は当該文書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の作成が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録であって重要な事項について虚偽の記録のあるものをその売出しの事務の用に供した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창립총회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⑤ 제96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1. 누구의 명의인지를 불문하고 주식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한 때
2.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잉여금의 배당을 한 때
3. 주식회사의 목적범위 외에서 투기거래를 위하여 주식회사의 재산을 처분한 때

제964조 허위문서행사 등의 죄

① 다음의 자가 주식, 신주예약권, 사채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를 인수한 자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 회사의 사업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설명을 기재한 자료 또는 모집 공고 그 밖의 모집에 관한 문서로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기재가 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서류의 작성에 갈음하여 전자적 기록의 작성을 한 경우의 전자적 기록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기록이 있는 것을 그 모집 사무용으로 제공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제960조 제1항 제1호 내지 7호의 자
2. 지분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3. 민사보전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지분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4. 주식, 신주예약권, 사채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자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

② 주식, 신주예약권, 사채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를 매출하는 자가 그 매출에 관한 문서로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기재가 있는 것을 행사하거나 문서의 작성에 갈음하여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전자적 기록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기록이 있는 것을 그 매출 사무용으로 제공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第8編 罰則

第965条 預合いの罪

第九百六十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七号までに掲げる者が、株式の発行に係る払込みを仮装するため預合いを行ったときは、五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五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預合いに応じた者も、同様とする。

第966条 株式の超過発行の罪

次に掲げる者が、株式会社が発行することができる株式の総数を超えて株式を発行したときは、五年以下の懲役又は五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一 発起人
- 二 設立時取締役又は設立時執行役
- 三 取締役、執行役又は清算株式会社の清算人
- 四 民事保全法第五十六条 に規定する仮処分命令により選任された取締役、執行役又は清算株式会社の清算人の職務を代行する者
- 五 第三百四十六条第二項(第四百七十九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四百三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四百一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一時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執行役又は清算株式会社の清算人の職務を行うべき者

第967条 取締役等の贈収賄罪

1 次に掲げる者が、その職務に関し、不正の請託を受けて、財産上の利益を収受し、又はその要求若しくは約束をしたときは、五年以下の懲役又は五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一 第九百六十条第一項各号又は第二項各号に掲げる者
- 二 第九百六十一条に規定する者
- 三 会計監査人又は第三百四十六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一時会計監査人の職務を行うべき者

2 前項の利益を供与し、又はその申込み若しくは約束を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又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제965조 납입가장죄등

제9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주식의 발행에 관한 납입을 가장하기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가장납입에 응한 자도 같다.

제966조 주식의 초과발행죄

다음의 자가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발기인
2. 설립시 이사 또는 설립시 집행임원
3. 이사, 집행임원 또는 청산주식회사의 청산인
4. 민사보전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이사, 집행임원 또는 청산회사의 청산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5. 제346조 제2항(제47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3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401조 제3항에 의해 선임된 일시이사(감사등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외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청산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자

제967조 이사등의 독직죄

① 다음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60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자
 2. 제961조에서 규정하는 자
 3. 회계감사인 또는 제3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일시 회계감사인의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자
- ② 전항의 이익을 공여, 청약 또는 약속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8編 罰則

第968条 株主等の権利の行使に関する贈収賄罪

1 次に掲げる事項に関し、不正の請託を受けて、財産上の利益を収受し、又はその要求若しくは約束をした者は、五年以下の懲役又は五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一 株主総会若しくは種類株主総会、創立総会若しくは種類創立総会、社債権者集会又は債権者集会における発言又は議決権の行使

二 第二百十条若しくは第二百四十七条、第二百九十七条第一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百三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三百四条、第三百五条第一項若しくは第三百六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三百五十八条第一項、第三百六十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第四百八十二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四百二十二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四百二十六条第七項、第四百三十三条第一項若しくは第四百七十九条第二項に規定する株主の権利の行使、第五百十一条第一項若しくは第五百二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株主若しくは債権者の権利の行使又は第五百四十七条第一項若しくは第三項に規定する債権者の権利の行使

三 社債の総額(償還済みの額を除く。)の十分の一以上に当たる社債を有する社債権者の権利の行使

四 第八百二十八条第一項、第八百二十九条から第八百三十一条まで、第八百三十三条第一項、第八百四十七条第三項若しくは第五項、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六項若しくは第八項、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七項若しくは第九項、第八百五十三条、第八百五十四条又は第八百五十八条に規定する訴えの提起(株主等(第八百四十七条の四第二項に規定する株主等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株式会社の債権者又は新株予約権若しくは新株予約権付社債を有する者がするものに限る。)

五 第八百四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株主等の訴訟参加

2 前項の利益を供与し、又はその申込み若しくは約束をした者も、同項と同様とする。

第969条 没収及び追徴

第九百六十七条第一項又は前条第一項の場合において、犯人の収受した利益は、没収する。その全部又は一部を没収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価額を追徴する。

제968조 주주등의 권리행사에 관한 증수죄

①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창립총회, 종류창립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210조 혹은 제247조, 제297조 제1항 혹은 제4항, 제303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304조, 제305조 제1항 혹은 제306조 제1항 혹은 제2항(이러한 규정을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8조제1항, 제360조 제1항 혹은 제2항(이러한 규정을 제48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2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426조 제7항, 제433조 제1항 혹은 제47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행사, 제511조 제1항 혹은 제5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주 혹은 채권자의 권리행사 또는 제547조 제1항 혹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의 권리행사
3. 사채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의 권리 행사
4. 제828조 제1항, 제829조 내지 제831조, 제833조 제1항, 제847조 제3항 혹은 제5항, 제847조의2 제6항 혹은 제8항, 제847조의3 제7항 혹은 제9항, 제853조, 제854조 또는 제858조에서 규정하는 소의 제기(주주등(제847조의4 제2항의 주주등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 주식회사의 채권자 또는 신주예약권 혹은 신주예약권부사채를 소유하는 자가 하는 것에 한한다)

5. 제849조 제1항에 의한 주주등의 소송참가

② 전항의 이익을 공여, 청약, 또는 약속한 자도 동항과 같다.

제969조 몰수, 추징

제967조 제1항 또는 전조 제1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第8編 罰則

第970条 株主等の権利の行使に関する利益供与の罪

- 1 第九百六十条第一項第三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者又はその他の株式会社の使用人が、株主の権利、当該株式会社に係る適格旧株主(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九項に規定する適格旧株主をいう。第三項において同じ。)の権利又は当該株式会社の最終完全親会社等(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最終完全親会社等をいう。第三項において同じ。)の株主の権利の行使に関し、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計算において財産上の利益を供与したときは、三年以下の懲役又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2 情を知って、前項の利益の供与を受け、又は第三者にこれを供与させた者も、同項と同様とする。
- 3 株主の権利、株式会社に係る適格旧株主の権利又は株式会社の最終完全親会社等の株主の権利の行使に関し、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計算において第一項の利益を自己又は第三者に供与することを同項に規定する者に要求した者も、同項と同様とする。
- 4 前二項の罪を犯した者が、その実行について第一項に規定する者に対し威迫の行為をしたときは、五年以下の懲役又は五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5 前三項の罪を犯した者には、情状により、懲役及び罰金を併科することができる。
- 6 第一項の罪を犯した者が自首したときは、その刑を減輕し、又は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第971条 国外犯

- 1 九百六十条から第九百六十三条まで、第九百六十五条、第九百六十六条、第九百六十七条第一項、第九百六十八条第一項及び前条第一項の罪は、日本国外においてこれらの罪を犯した者にも適用する。
- 2 第九百六十七条第二項、第九百六十八条第二項及び前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罪は、刑法(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第二条の例に従う。

第972条 法人における罰則の適用

第九百六十条、第九百六十一条、第九百六十三条から第九百六十六条まで、第九百六十七条第一項又は第九百七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者が法人であるときは、これらの規定及び第九百六十二条の規定は、その行為をした取締役、執行役

제970조 주주등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① 제96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자 또는 그 밖의 주식회사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주식회사와 관련되는 적격구주주(제847조의2 제9항의 적격구주주를 말한다. 제3항에서 같다)의 권리 또는 주식회사의 최종완전모회사등(제847조의3 제1항의 최종완전모회사등을 말한다. 제3항에서 같다)의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을 알고 전항의 이익의 공여를 받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동항과 같다.

③ 주주의 권리, 주식회사와 관련된 적격구주주의 권리 또는 주식회사의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당해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계산으로 제1항의 이익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공여할 것을 동항의 자에게 요구한 자도 동항과 같다.

④ 전2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실행에 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에 협박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전3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971조 국외범

① 제960조 내지 963조, 제965조, 제966조, 제967조 제1항, 제968조 제1항 및 전조 제1항의 죄는 일본국외에서 이러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967조 제2항, 제968조 제2항 및 제97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죄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2조의 예에 따른다.

제972조 법인의 경우 벌칙의 적용

제960조, 제961조, 제963조 내지 966조, 제967조 제1항 또는 제97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 및 제962조의 규정은 그 행위를 한 이사, 집행임원 그 밖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각

第8編 罰則

その他業務を執行する役員又は支配人に対してそれぞれ適用する。

第973条 業務停止命令違反の罪

第九百五十四条の規定による電子公告調査(第九百四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電子公告調査をいう。以下同じ。)の業務の全部又は一部の停止の命令に違反し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第974条 虚偽届出等の罪

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一 第九百五十条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 二 第九百五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調査記録簿等(同項に規定する調査記録簿等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同項に規定する電子公告調査に関し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記載せず、若しくは記録せず、若しくは虚偽の記載若しくは記録をし、又は同項若しくは第九百五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調査記録簿等を保存しなかった者
- 三 第九百五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を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た者

第975条 両罰規定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前二条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又は人に対しても、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

第976条 過料に処すべき行為

発起人、設立時取締役、設立時監査役、設立時執行役、取締役、会計参与若しくはその職務を行うべき社員、監査役、執行役、会計監査人若しくはその職務を行うべき社員、清算人、清算人代理、持分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社員、民事保全法第五十六条に規定する仮処分命令により選任された取締役、監査役、執行役、清算人若しくは持分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社員の職務を代行する者、第九百六十条第一項第五号に規定する一時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代表取締役、委員、執行役若しくは代表執行役の職務を行うべき者、同条第二項第三号に規定する

각 적용한다.

제973조 업무정지명령위반의 죄

제9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공고조사 (제9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자공고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974조 허위신고등의 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십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5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
2. 제95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기록부 등(동항의 조사기록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전자공고조사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기재 또는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 또는 기록을 하거나 동항 또는 제95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9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7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人)에 대해서도 각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976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발기인, 설립시이사, 설립시감사, 설립시집행임원, 이사, 회계참여 또는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사원, 감사, 집행임원, 회계감사인 또는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사원, 청산인, 청산인대리, 지분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민사보전법 제56조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감사, 집행임원, 청산인 또는 지분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제96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일시이사, 회계참여, 감사, 대표이사, 위원, 집행임원 또는 대표 집행임원의 직무를 하여야 하는 자, 동조 제2항 제3호의 일시청산인 또는 대

第8編 罰則

一時清算人若しくは代表清算人の職務を行うべき者、第九百六十七条第一項第三号に規定する一時会計監査人の職務を行うべき者、検査役、監督委員、調査委員、株主名簿管理人、社債原簿管理人、社債管理者、事務を承継する社債管理者、社債管理補助者、事務を承継する社債管理補助者、代表社債権者、決議執行者、外国会社の日本における代表者又は支配人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百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ただし、その行為について刑を科すべき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登記をすることを怠ったとき。
- 二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公告若しくは通知をすることを怠ったとき、又は不正の公告若しくは通知をしたとき。
- 三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開示をすることを怠ったとき。
- 四 この法律の規定に違反して、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書類若しくは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たものの閲覧若しくは謄写又は書類の謄本若しくは抄本の交付、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若しくはそ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を拒んだとき。
- 五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調査を妨げたとき。
- 六 官庁、株主総会若しくは種類株主総会、創立総会若しくは種類創立総会、社債権者集会又は債権者集会に対し、虚偽の申述を行い、又は事実を隠蔽したとき。
- 七 定款、株主名簿、株券喪失登録簿、新株予約権原簿、社債原簿、議事録、財産目録、会計帳簿、貸借対照表、損益計算書、事業報告、事務報告、第四百三十五条第二項若しくは第四百九十四条第一項の附属明細書、会計参与報告、監査報告、会計監査報告、決算報告又は第二百二十二条第一項、第四百四十九条第一項、第七百七十一条の二第一項、第七百七十三条の二第一項、第七百七十九条の五第一項、第七百七十九条の十第一項、第七百八十二条の二第一項、第七百八十二条の六第一項、第二百五十条第一項、第二百七十条第一項、第六百八十二条第一項、第六百九十五条第一項、第七百八十二条第一項、第七百九十一条第一項、第七百九十四条第一項、第八百一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八百三条第一項、第八百十一条第一項、第八百十五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八百十六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八百十六条の十第一項の書面若しくは電磁

표청산인의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자, 제967조 제1항 제3호의 일시회계감사인의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자, 감사인, 감독위원, 조사위원, 주주명부관리인, 사채원부관리인, 사채관리자, 사무를 승계하는 사채관리자, 사채관리보조자, 사무를 승계하는 사채관리보조자, 대표사채권자, 결의집행자, 외국회사의 일본 대표자 또는 지배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이 행위에 관하여 형을 과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서 정한 등록을 게을리한 때
2. 이 법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3. 이 법에서 정한 공시를 게을리 한 때
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거나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거절한 때
5. 이 법에서 정한 조사를 방해한 때
6. 관청, 주주총회 혹은 종류주주총회, 창립총회 혹은 종류창립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자집회에서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7. 정관, 주주명부, 주권상실등록부, 신주예약권원부, 사채원부, 의사록, 재산목록,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 보고, 사무보고, 제435조 제2항 혹은 제494조 제1항의 부속명세서, 회계참여보고, 감사보고, 회계감사보고, 결산보고 또는 제122조 제1항, 제149조 제1항, 제171조의2 제1항, 제173조의2 제1항, 제179조의5 제1항, 제179조의10 제1항, 제182조의2 제1항, 제182조의6 제1항, 제250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682조 제1항, 제695조 제1항, 제782조 제1항, 제791조 제1항, 제794조 제1항, 제801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803조 제1항, 제811조 제1항, 제815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816조의2 제1항 혹은 제816조의 10 제1항의 서면 혹은 전자적 기록에 기재하거나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 혹은 기록을 한 때

第8編 罰則

的記録に記載し、若しくは記録すべき事項を記載せず、若しくは記録せず、又は虚偽の記載若しくは記録をしたとき。

- 八 第三十一条第一項の規定、第七十四条第六項、第七十五条第三項、第七十六条第四項、第八十一条第二項若しくは第八十二条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第八十六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二百二十五条第一項、第一百七十一条の二第一項、第一百七十三条の二第二項、第一百七十九条の五第一項、第一百七十九条の十第二項、第一百八十二条の二第一項、第一百八十二条の六第二項、第二百三十一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百五十二条第一項、第三百十条第六項、第三百十一条第三項、第三百十二条第四項、第三百十八条第二項若しくは第三項若しくは第三百十九条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三百七十一条第一項(第四百九十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三百七十八条第一項、第三百九十四条第一項、第三百九十九条の十一第一項、第四百十三条第一項、第四百四十二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四百九十六条第一項、第六百八十四条第一項、第七百三十一条第二項、第七百八十二条第一項、第七百九十一条第二項、第七百九十四条第一項、第八百一条第三項、第八百三条第一項、第八百十一条第二項、第八百十五条第三項、第八百十六条の二第一項又は第八百十六条の十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帳簿又は書類若しくは電磁的記録を備え置かなかったとき。
- 九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株主総会若しくは種類株主総会又は創立総会若しくは種類創立総会において、株主又は設立時株主の求めた事項について説明をしなかったとき。
- 十 第三百三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株式を取得したとき、又は同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株式の処分をすることを怠ったとき。
- 十一 第一百七十八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株式の消却をしたとき。
- 十二 第二百九十七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株式の競売又は売却をしたとき。
- 十三 株式、新株予約権又は社債の発行の日前に株券、新株予約権証券又は社債券を発行したとき。
- 十四 第二百十五条第一項、第二百八十八条第一項又は第六百九十六条の規定に違反して、遅滞なく、株券、新株予約権証券又は社債券を発行しなかったと

8. 제31조 제1항, 제74조 제6항, 제75조 제3항, 제76조 제4항, 제81조 제2항 혹은 제82조 제2항(이러한 규정을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5조제1항, 제171조의2 제1항, 제173조의2 제2항, 제179조의5 제1항, 제179조의10 제2항, 제182조의2 제1항, 제182조의6 제2항, 제231조 제1항 혹은 제252조 제1항, 제310조 제6항, 제311조 제3항, 제312조 제4항, 제318조 제2항 또는 제3항, 제319조 제2항(이러한 규정을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1조 제1항(제490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8조 제1항, 제394조 제1항, 제399조의11 제1항, 제413조 제1항, 제442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496조 제1항, 제684조 제1항, 제731조 제2항, 제782조 제1항, 제791조 제2항, 제794조 제1항, 제801조 제3항, 제803조 제1항, 제811조 제2항, 제815조 제3항, 제816조의2 제1항 또는 제816조의10 제2항에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 혹은 전자적 기록을 비치하지 아니한 때
9.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창립총회, 종류창립총회에서 주주 또는 설립시주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때
10.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때 또는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의 처분을 하는 것을 게을리 한 때
11. 제17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
12. 제19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경매 또는 매각한 때
13. 주식, 신주예약권, 사채의 발행일 전에 주권, 신주예약권증권 또는 사채권을 발행한 때
14. 제215조 제1항, 제288조 제1항 또는 제6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체없이 주권, 신주예약권증권 또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第8編 罰則

き。

十五 株券、新株予約権証券又は社債券に記載すべき事項を記載せず、又は虚偽の記載をしたとき。

十六 第二百二十五条第四項、第二百二十六条第二項、第二百二十七条又は第二百二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株券喪失登録を抹消しなかったとき。

十七 第二百三十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株主名簿に記載し、又は記録したとき。

十八 第二百九十六条第一項の規定又は第三百七条第一項第一号(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若しくは第三百五十九条第一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裁判所の命令に違反して、株主総会を招集しなかったとき。

十八の二 第三百三条第一項又は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その請求に係る事項を株主総会又は種類株主総会の目的としなかったとき。

十九 第三百二十五条の三第一項(第三百二十五条の七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て、電子提供措置をとらなかったとき。

十九の二 第三百二十七条の二の規定に違反して、社外取締役を選任しなかったとき。

十九の三 第三百三十一条第六項の規定に違反して、社外取締役を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過半数に選任しなかったとき。

二十 第三百三十五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社外監査役を監査役の半数以上に選任しなかったとき。

二十一 第三百四十三条第二項(第三百四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三百四十四条の二第二項(第三百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その請求に係る事項を株主総会若しくは種類株主総会の目的とせず、又はその請求に係る議案を株主総会若しくは種類株主総会に提出しなかったとき。

二十二 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執行役又は会計監査人がこの法律又は定款で定めたその員数を欠くこととなった場合において、その選任(一時会計監査人の職務を行うべき者の選任を含む。)の手续をすることを怠った

15. 주권, 신주예약권증권 또는 채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를 한 때
16. 제225조 제4항, 제226조 제2항, 제227조 또는 제2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권상실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한 때
17.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하거나 기록한 때
18. 제296조 제1항의 규정 또는 제307조 제1항 제1호(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 18의2. 제303조 제1항 또는 제2항(이러한 규정들을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 그 청구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때
19. 제325조의3 제1항(제325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전자제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 19의2. 제327조의2에 위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19의3. 제331조 제6항에 위반하여 사외이사를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과반수로 선임하지 아니한 때
20. 제3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외감사를 감사의 반수 이상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때
21. 제343조 제2항(제347조 제2항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44조의2 제2항(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 그 청구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청구에 관련된 의안을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22. 이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밖의 이사), 회계참여, 감사, 집행임원 또는 회계감사인이 이 법률 또는 정관으로 정한 인원수를 결하는 경우 그 선임(일시회계감사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자의 선임을 포함한다)의 절차를 게을리 한 때

第8編 罰則

とき。

二十三 第三百六十五条第二項(第四百十九条第二項及び第四百八十九条第八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四百三十条の二第四項(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て、取締役会又は清算人に報告せず、又は虚偽の報告をしたとき

二十四 第三百九十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常勤の監査役を選定しなかったとき。

二十五 第四百四十五条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の規定に違反して資本準備金若しくは準備金を計上せず、又は第四百四十八条の規定に違反して準備金の額の減少をしたとき。

二十六 第四百四十九条第二項若しくは第五項、第六百二十七条第二項若しくは第五項、第六百三十五条第二項若しくは第五項、第六百七十条第二項若しくは第五項、第七百七十九条第二項若しくは第五項(これらの規定を第七百八十一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七百八十九条第二項若しくは第五項(これらの規定を第七百九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七百九十九条第二項若しくは第五項(これらの規定を第八百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八百十条第二項若しくは第五項(これらの規定を第八百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八百十六条の八第二項若しくは第五項又は第八百二十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資本金若しくは準備金の額の減少、持分の払戻し、持分会社の財産の処分、組織変更、吸収合併、新設合併、吸収分割、新設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株交交付又は外国会社の日本における代表者の全員の退任をしたとき。

二十七 第四百八十四条第一項若しくは第六百五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破産手続開始の申立てを怠ったとき、又は第五百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をすることを怠ったとき。

二十八 清算の結了を遅延させる目的で、第四百九十九条第一項、第六百六十条第一項又は第六百七十条第二項の期間を不当に定めたとき。

二十九 第五百条第一項、第五百三十七条第一項又は第六百六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債務の弁済をしたとき。

三十 第五百二条又は第六百六十四条の規定に違反して、清算株式会社又は清

23. 제365조 제2항(제419조 제2항 및 제489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30조의2 제4항(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때
24. 제39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25. 제445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본준비금 또는 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제44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비금의 액의 감소를 한 때
26. 제449조 제2항 제5항, 제627조 제2항 제5항, 제635조 제2항 제5항, 제670조 제2항 제5항, 제779조 제2항 제5항(이러한 규정을 제78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9조 제2항 제5항(이러한 규정을 제79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99조 제2항 제5항(이러한 규정을 제80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10조 제2항 제5항(이러한 규정을 제81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16조의8 제2항 제5항, 제820조 제1항 제2항에 위반하여 자본금 또는 준비금의 액의 감소, 지분의 환급, 지분회사의 재산의 처분, 조직변경, 흡수합병, 신설 합병, 흡수분할, 신설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주식교부 또는 외국회사의 일본 대표자 전원이 퇴임을 한 때
27. 제484조 제1항 또는 제65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절차개시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또는 제51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청산개시 신고를 게을리 한 때
28. 청산 종료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499조 제1항, 제660조 제1항 또는 제670조 제2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때
29. 제500조 제1항, 제537조 제1항 또는 제66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한 때
30. 제502조 또는 제66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산주식회사 또는 청산지분회

第8編 罰則

算持分会社の財産を分配したとき。

三十一 第五百三十五条第一項又は第五百三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三十二 第五百四十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又は第五百四十二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保全処分に違反したとき。

三十三 第七百二条の規定に違反して社債を発行し、又は第七百十四条第一項（第七百十四条の七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て事務を承継する社債管理者若しくは社債管理補助者を定めなかったとき。

三十四 第八百二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裁判所の命令に違反したとき。

三十五 第九百四十一条の規定に違反して、電子公告調査を求めなかったとき。

第977条

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百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 一 第九百四十六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報告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をした者
- 二 第九百五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財務諸表等(同項に規定する財務諸表等をいう。以下同じ。)を備え置かず、又は財務諸表等に記載し、若しくは記録すべき事項を記載せず、若しくは記録せず、若しくは虚偽の記載若しくは記録をした者
- 三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第九百五十一条第二項各号又は第九百五十五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請求を拒んだ者

第978条

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百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 一 第六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他の種類の会社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その商号中に用いた者
- 二 第七条の規定に違反して、会社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その名称又は商号中に使用した者
- 三 第八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他の会社(外国会社を含む。)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名称又は商号を使用した者

사의 재산을 분배한 경우

31. 제535조 제1항 또는 제53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2. 제540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54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에 위반한 때
33. 제702조에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하거나 제714조 제1항(제714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사무를 승계하는 사채관리자 혹은 사채관리보조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
34. 제8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때
35. 제9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공고조사를 요구하지 아니한 때

제977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4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2. 제95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동항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재무제표 등에 기재하거나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또는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 또는 기록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51조 제2항 각호 또는 제955조 제2항 각호의 청구를 거절한 자

제978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라고 오인시킬 염려가 있는 문자를 그 상호 중에 사용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라고 오인시킬 염려가 있는 문자를 그 명칭 또는 상호 중에 사용한 자
3.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라고 오인시킬 염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한 자

附 則

第979条

会社の成立前に当該会社の名義を使用して事業をした者は、会社の設立の登録免許税の額に相当する過料に処する。

2 第百十八条第一項又は第百二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取引を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附 則

第1条 施行期日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第2条 経過措置の原則

この法律の規定(罰則を除く。)は、他の法律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この法律の施行前に生じた事項にも適用する。

第3条 商号の使用に関する経過措置

第六条第三項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その商号中に合同会社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ている場合における会社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七年法律第八十七号) 第三条第二項に規定する特例有限会社、同法第六十六条第一項前段の規定により存続する株式会社又は同条第三項前段の規定により存続する合名会社若しくは合資会社について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間(これらの会社が当該期間内に商号の変更をし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商号の変更をするまでの期間) は、適用しない。

第4条 合併等に際して株主等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法律の施行の日から一年を経過する日までの間において合併契約が締結される合併、吸収分割契約が締結される吸収分割若しくは新設分割計画が作成される新設分割、株式交換契約が締結される株式交換又は株式移転計画が作成される株式移転の手続に関する第七百四十九条第一項第二号、第七百五十一条

제979조

- ① 회사의 성립 전에 당해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한 자는 회사의 설립 등록면허세액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818조 제1항 또는 제8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도 전항과 같다.

부 칙**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률의 규정(벌칙을 제외한다)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상호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제3항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시 실제로 그 상호 중에 합동회사라고 오인시킬 염려가 있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회사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2005년 법률 제87호)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례유한회사, 동법 제66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존속하는 주식회사 또는 동 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존속하는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시행일까지 기산하여 6월간(이러한 회사가 그 기간 내에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상호의 변경을 할 때까지의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합병 등을 할 때 주주 등에 대해 교부하는 금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합병계약이 체결된 합병, 흡수분할계약이 체결된 흡수분할 또는 신설분할계획이 작성된 신설분할, 주식교환계약이 체결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계획이 작성된 주식이전 절차에 관한 제749조 제1항 제2호, 제751조 제1항, 제753조 제1항, 제755조 제1항, 제758조 제4호, 제760

附 則

第一項、第七百五十三條第一項、第七百五十五條第一項、第七百五十八條第四号、第七百六十條、第七百六十三條、第七百六十五條第一項、第七百六十八條第一項第二号、第七百七十條第一項及び第七百七十三條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七百四十九條第一項第二号中「次に掲げる事項」とあるのは「次に掲げる事項(口からホまでに掲げる事項を除く。)」と、第七百五十一條第一項各号列記以外の部分中「次に掲げる事項」とあるのは「次に掲げる事項(第三号及び第四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と、第七百五十三條第一項各号列記以外の部分中「次に掲げる事項」とあるのは「次に掲げる事項(第八号及び第九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と、第七百五十五條第一項各号列記以外の部分中「次に掲げる事項」とあるのは「次に掲げる事項(第六号及び第七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と、第七百五十八條第四号中「次に掲げる事項」とあるのは「次に掲げる事項(口からホまでに掲げる事項を除く。)」と、第七百六十條各号列記以外の部分中「次に掲げる事項」とあるのは「次に掲げる事項(第五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と、第七百六十三條各号列記以外の部分中「次に掲げる事項」とあるのは「次に掲げる事項(第八号及び第九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と、第七百六十五條第一項各号列記以外の部分中「次に掲げる事項」とあるのは「次に掲げる事項(第六号及び第七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と、第七百六十八條第一項第二号中「次に掲げる事項」とあるのは「次に掲げる事項(口からホまでに掲げる事項を除く。)」と、第七百七十條第一項各号列記以外の部分中「次に掲げる事項」とあるのは「次に掲げる事項(第三号及び第四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と、第七百七十三條第一項各号列記以外の部分中「次に掲げる事項」とあるのは「次に掲げる事項(第七号及び第八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とする。

附 則(平成18年6月2日法律第50号)

この法律は、一般社団・財団法人法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18年6月14日法律第66号)

この法律は、平成十八年証券取引法改正法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조, 제763조, 제765조 제1항, 제768조 제1항 제2호, 제770조 제1항 및 제773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49조 제1항 제2호 중 “다음 사항”은 “다음 사항(나목부터 마목까지 사항을 제외한다)”로, 제753조 제1항 각호 이외의 부분 중 “다음 사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제외한다)”로, 제755조 제1항 각호 이외의 부분 중 “다음의 사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제외한다)”로, 제758조 제4호 중 “다음의 사항”은 “다음의 사항(나목부터 마목까지 사항을 제외한다)”로, 제760조 각호 이외의 부분 중 “다음의 사항”은 “다음의 사항(제5호의 사항을 제외한다)”로, 제763조 각호 이외의 부분 중 “다음의 사항”은 “다음의 사항(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제외한다)”로, 제765조 제1항 각호 이외의 부분 중 “다음의 사항”은 “다음의 사항(제6호 제7호의 사항을 제외한다)”로, 제768조 제1항 제2호 중 “다음의 사항”은 “다음의 사항(나목부터 마목까지 사항을 제외한다)”로, 제770조 제1항 각호 이외의 부분 중 “다음의 사항”은 “다음의 사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제외한다)”로, 제773조 제1항 각호 이외의 부분 중 “다음의 사항”은 “다음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제외한다)”로 본다.

부 칙(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이 법률은 일반 사단·재단법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년 6월 14일 법률 제66호)

이 법률은 2006년 증권거래법 개정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은 그 각호에 규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附 則

- 一 第二百二十七条中公認会計士法第四条第二号の改正規定(「若しくは第百九十八条」を「から第百九十八条まで」に改める部分に限る。)、第二百二十八条第一項の規定、第二百五条中会社法第三百三十一条第一項第三号の改正規定(「第百九十七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若しくは第七号若しくは第二項、第百九十八条第一号から第十号まで、第十八号若しくは第十九号」を「第百九十七条、第百九十七条の二第一号から第十号まで若しくは第十三号、第百九十八条第八号」に改める部分に限る。)、第二百六条第一項の規定及び第二百十三条中金融庁設置法第二十条第一項の改正規定(「、検査」の下に「、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の命令、質問若しくは意見の徴取」を加える部分に限る。):平成十八年証券取引法改正法附則第一条第一号に掲げる規定の施行の日

附 則(平成18年12月15日法律第109号) 抄

この法律は、新信託法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 一 第九条(商法第七条の改正規定に限る。)、第二十五条(投資信託及び投資法人に関する法律第二百五十一条第二十四号の改正規定に限る。)、第三十七条(金融機関の合併及び転換に関する法律第七十六条第七号の改正規定に限る。)、第四十九条(保険業法第十七条の六第一項第七号、第五十三条の十二第八項、第五十三条の十五、第五十三条の二十五第二項、第五十三条の二十七第三項、第五十三条の三十二、第百八十条の五第三項及び第四項並びに第百八十条の九第五項の改正規定に限る。)、第五十五条(資産の流動化に関する法律第七十六条第六項、第八十五条、第百六十八条第五項、第百七十一条第六項及び第三百十六條第一項第二十三号の改正規定に限る。)、第五十九条、第七十五条及び第七十七条(会社法目次の改正規定、同法第百三十二条に二項を加える改正規定、同法第二編第二章第三節中第百五十四条の次に一款を加える改正規定、同法第二編第三章第四節中第二百七十二條の次に一款を加える改正規定、同法第六百九十五条の次に一條を加える改正規定及び同法第九百四十三条第一号の改正規定を除く。)の規定：公布の日

1. 제127조 중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2호의 개정 규정(“또는 제198조”를 “로부터 제98조까지”로 개정된 부분에 한한다), 제128조 제1항의 규정, 제205조 중 회사법 제331조 제1항 제3호의 개정 규정(“제19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7호 또는 제2항, 제198조 제1호 내지 제10호, 제18호 또는 제19호”로 개정된 부분에 한한다), 제206조 제1항의 규정 및 제213조 중 금융청설치법 제20조 제1항의 개정규정(“, 검사인” 후에 “,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 질문 또는 의견의 징취”를 추가한 부분에 한한다) : 2006년 증권거래법 개정법 부칙 제1조 제1호의 규정의 시행일

부 칙(2006년 12월 15일 법률 제109호) 초(抄)

이 법률은 신신탁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은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상법 제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제25조(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24호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제37조(금융기관의 병합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제49조(보험업법 제17조의6 제1항 제7호, 제53조의12 제8항, 제53조의15, 제53조의25 제2항, 제53조의27 제3항, 제53조의32, 제180조의5 제3항 및 제4항, 제180조의9 제5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제55조(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6항, 제85조, 제168조 제5항, 제171조 제6항 및 제316조 제1항 제23호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제59조, 제75조 및 제77조(회사법 목차의 개정규정, 동법 제132조에 2항을 추가한 개정규정, 동법 제2편 제2장 제3절 중 제154조의 다음에 1관을 추가한 개정규정, 동법 제2편 제3장 제4절 중 제272조의 다음에 1관을 추가한 개정규정, 동법 제695조의 다음에 1조를 추가한 개정규정 및 동법 제943조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 : 공포일

附 則

附 則(平成19年5月16日法律第47号)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法律は、平成二十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19年6月27日法律第99号)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以下「施行日」という。) から施行する。

第28条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法律(附則第一条各号に掲げる規定については、当該規定。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この附則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29条 政令への委任

附則第二条から第十九条まで及び前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

附 則(平成20年6月13日法律第65号)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第40条 罰則の適用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法律(附則第一条各号に掲げる規定にあつては、当該規定。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この附則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

부 칙(2007년 5월 16일 법률 제47호) 초(抄)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년 6월 27일 법률 제99호) 초(抄)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날(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부터 시행한다.

제2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관하여는 그 규정.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그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29조 시행령에의 위임

부칙 제2조 내지 제19조 및 전조에서 정한 것 외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8년 6월 13일 법률 제65호) 초(抄)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0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관하여는 그 규정.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그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

附 則

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平成21年4月30日法律第29号)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三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21年6月24日法律第58号)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第19条 罰則の適用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法律(附則第一条各号に掲げる規定にあつては、当該規定。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この附則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20条 政令への委任

附則第二条から第五条まで及び前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

附 則(平成21年7月10日法律第74号)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以下「施行日」という。)から施行する。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9년 4월 30일 법률 제29호) 초(抄)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년 6월 24일 법률 제58호) 초(抄)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관하여는 그 규정.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그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20조 시행령에의 위임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전조에서 정한 것 외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9년 7월 10일 법률 제74호) 초(抄)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날(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부터 시행한다.

附 則

附 則(平成23年5月25日法律第53号)

この法律は、新非訟事件手続法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23年6月24日法律第74号)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24年3月31日法律第16号)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法律は、平成二十四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六 次に掲げる規定 平成二十五年七月一日

イ 第七条の規定及び附則第七十二条から第七十八条までの規定

第79条 罰則の適用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法律(附則第一条各号に掲げる規定にあっては、当該規定。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この附則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80条 政令への委任

この附則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

附 則(平成25年6月19日法律第45号)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

부 칙(2011년 5월 25일 법률 제53호) 초(抄)

이 법률은 신 비송사건절차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초(抄)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년 3월 31일 법률 제16호) 초(抄)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은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6. 다음의 규정 : 2013년 7월 1일

가. 제7조의 규정 및 부칙 제72조 내지 제78조의 규정

제79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관하여는 그 규정.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그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0조 시행령에의 위임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3년 6월 19일 법률 제45호) 초(抄)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

附 則

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 一 第一条中金融商品取引法第百九十七条の二の次に一条を加える改正規定、同法第百九十八条第二号の次に二号を加える改正規定並びに同法第百九十八条の三、第百九十八条の六第二号、第二百五条第十四号並びに第二百七条第一項第二号及び第二項の改正規定、第三条の規定、第四条中農業協同組合法第十一条の四第四項の次に一項を加える改正規定、第五条のうち水産業協同組合法第十一条の十一中第五項を第六項とし、第四項の次に一項を加える改正規定、第八条の規定(投資信託及び投資法人に関する法律第二百五十二条の改正規定を除く。)、第十四条のうち銀行法第十三条中第五項を第六項とし、第四項の次に一項を加える改正規定及び同法第五十二条の二十二第四項中「前三項」を「前各項」に改め、同項を同条第五項とし、同条第三項の次に一項を加える改正規定、第十五条の規定、第十九条のうち農林中央金庫法第五十八条中第五項を第六項とし、第四項の次に一項を加える改正規定、第二十一条中信託業法第九十一条、第九十三条、第九十六条及び第九十八条第一項の改正規定、第二十二條の規定並びに附則第三十条(株式会社地域経済活性化支援機構法(平成二十一年法律第六十三号)第二十三条第二項の改正規定に限る。)、第三十一条(株式会社東日本大震災事業者再生支援機構法(平成二十三年法律第百十三号)第十七条第二項の改正規定に限る。)、第三十二条、第三十六条及び第三十七条の規定 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

第36条 罰則の適用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法律(附則第一条各号に掲げる規定にあつては、当該規定。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この附則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37条 政令への委任

附則第二条から第十五条まで及び前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は、政令で定める。

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 중 금융상품거래법 제197조의2다음에 1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 동법 제198조 제2호의 다음에 2호를 추가하는 개정규정 및 동법 제198조의3, 제198조의6 제2호, 제205조 제14호 및 제207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제3조의 규정, 제4조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4 제4항의 다음에 1항을 추가하는 개정규정, 제5조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11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의 다음에 1항을 추가하는 개정규정, 제8조 규정(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제252조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14조 중 은행법 제13조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4항 다음에 1항을 추가하는 개정규정 및 동법 제52조의22 제4항 중 “전3항”을 “전각항”으로 수정하고, 동항을 동조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다음에 1항을 추가하는 개정규정, 제15조의 규정, 제19조 중 농림중앙금고법 제58조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의 다음에 1항을 추가하는 개정규정, 제21조 중 신탁업법 제91조, 제93조, 제96조 및 제98조 제1항의 개정규정, 제22조 규정 및 부칙 제30조(주식회사지역경제활성화지원 기구법(2009년 법률63호)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제31조(주식회사동일본대지진사업자재생지원기구법 (2011년 법률 제113호) 제17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제32조,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 :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이십일을 경과 한 날

제36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률 (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른 것으로 된 경우의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7조 시행령에의 위임

부칙 제2조에서 제15조까지 및 전조에서 정하는 것의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시행령으로 정

附 則

附 則(平成26年5月30日法律第42号)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26年6月27日法律第90号)

第1条 施行期日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第2条 経過措置の原則

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会社法(以下「新会社法」という。)の規定(罰則を除く。)は、この附則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この法律の施行の日(以下「施行日」という。)前に生じた事項にも適用する。ただし、この法律による改正前の会社法(以下「旧会社法」という。)の規定によって生じた効力を妨げない。

第3条 委員会設置会社に関する経過措置

1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委員会設置会社(旧会社法第二条第十二号に規定する委員会設置会社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である株式会社又は施行日前に旧会社法第三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同号に規定する委員会を置く旨の定めがあるものに限る。)の認証を受け、この法律の施行後に成立する株式会社の定款には、新会社法第二条第十二号に規定する指名委員会等を置く旨の定めがあるものとみなす。

2 旧会社法の規定による委員会設置会社の登記は、新会社法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二十三号に掲げる事項の登記とみなす。

한다.

부 칙(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2호) 초(抄)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년 6월 27일 법률 제9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회사법(이하 “신회사법”이라 한다)의 규정(벌칙을 제외한다)은 이 부칙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 한다) 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단,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회사법(이하 “구회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위원회설치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률의 시행 시 위원회설치회사(구회사법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설치회사를 말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인 주식회사 또는 시행일 전에 구회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관(동호에서 규정하는 위원회를 두는 뜻의 정함이 있는 것에 한한다)의 인증을 받고,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성립하는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신회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명위원회등을 두는 뜻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구회사법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설치회사의 등기는 신회사법 제911조 제3항 제3호 사항의 등기로 본다.

第4条 社外取締役及び社外監査役の要件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旧会社法第二条第十五号に規定する社外取締役又は同条第十六号に規定する社外監査役を置く株式会社の社外取締役又は社外監査役については、この法律の施行後最初に終了する事業年度に関する定時株主総会の終結の時までは、新会社法第二条第十五号又は第十六号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5条 詐害事業譲渡等に関する経過措置

1 施行日前に会社の他の会社に対する事業の譲渡に係る契約が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事業の譲渡については、新会社法第二十三条の二の規定は、適用しない。

2 施行日前に会社の商人(会社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対する事業の譲渡又は商人の営業の譲受けに係る契約が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事業の譲渡又は営業の譲受けについては、新会社法第二十四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6条 設立時発行株式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旧会社法第三十条第一項の認証を受けた定款に係る株式会社の設立に際して発行する設立時発行株式については、新会社法第五十二条の二、第二百二条第三項及び第四項、第二百二条の二並びに第二百三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7条 公開会社となる場合における発行可能株式総数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公開会社でない株式会社が公開会社となる旨の定款の変更に係る決議をするための株主総会の招集手続が開始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定款の変更後の発行可能株式総数については、新会社法第百十三条第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8条 定款の変更等に係る株式買取請求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旧会社法第百十六条第一項各号の行為に係る決議をするための株主総会の招集手続が開始された場合(同項各号の行為をするために株主総会の

제4조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구회사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사외이사 또는 동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사외 감사를 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감사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신회사법 제2조 제15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 사해사업양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시행일전에 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사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체결 된 경우 그 사업양도에 관해서는 신회사법 제23조의2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시행일 전에 회사의 상인(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사업양도 또는 상인의 영업양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사업양도 또는 영업양수에 관해서는 신회사법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설립시발행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구회사법 제30조 제1항의 인증을 받은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설립시발행주식에 관해서는 신회사법 제52조의2, 제102조 제3항 및 제4항, 제102조의2 및 제10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공개회사가 되는 경우의 발행가능주식총수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가 공개회사로 되는 뜻의 정관변경에 관한 결의를 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정관변경 후의 발행가능주식총수에 관해서는 신회사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정관변경 등에 따른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구회사법 제116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관한 결의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개시된 경우(동항 각호의 행위를 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결

附 則

決議を要し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行為に係る取締役会の決議又は取締役若しくは執行役の決定が行われたとき)におけるその行為に係る株式買取請求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9条 定款の変更に係る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旧会社法第百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定款の変更に係る決議をするための株主総会の招集手続が開始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定款の変更に係る新株予約権買取請求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10条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旧会社法第百七十一条第一項の決議をするための株主総会の招集手続が開始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11条 株式の併合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旧会社法第百八十条第二項の決議をするための株主総会の招集手続が開始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株式の併合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12条 募集株式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旧会社法第百九十九条第二項に規定する募集事項の決定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その募集株式については、新会社法第二百五条第二項、第二百六条の二、第二百九条第二項及び第三項、第二百十三條の二並びに第二百十三條の三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13条 新株予約権に関する経過措置

1 施行日前に旧会社法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募集事項の決定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その募集新株予約権については、新会社法第二百四十四条第三項、第二百四十四条の二、第二百八十二条第二項及び第三項、第二百八十六条の二並びに第二百八十六条の三の規定は、適用しない。

2 施行日前に発行された新株予約権(募集新株予約権を除く。)については、新会社法第二百八十二条第二項及び第三項、第二百八十六条の二並びに第二百

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 관한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결정이 이루어진 때) 그 행위에 관련된 주식매수청구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정관변경에 관련된 신주예약권매수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구회사법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정관변경에 관한 결의를 하기 위한 주주총회소집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정관변경에 관련된 신주예약권매수청구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구회사법 제171조 제1항의 결의를 하기 위한 주주총회소집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주식병합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구회사법 제180조 제2항의 결의를 하기 위한 주주총회소집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주식병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모집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구회사법 제19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모집사항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모집주식에 관해서는 신회사법 제205조 제2항, 제206조의2, 제209조 제2항 및 제3항, 제213조의2 및 제213조의3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신주예약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행일 전에 구회사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모집사항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모집신주예약권에 관해서는 신회사법 제244조 제3항, 제244조의2, 제282조 제2항 및 제3항, 제286조의2 및 제286조의3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시행일 전에 발행된 신주예약권(모집신주예약권은 제외한다)에 관해서는 신회사법 제282조 제2항 및 제3항, 제286조의2 및 제286조의3 규정은 적용하

附 則

八十六条の三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14条 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旧会社法第二百七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その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15条 会計監査人の選任等に関する議案の内容の決定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会計監査人の選任若しくは解任又は会計監査人を再任しないことに関する決議をするための株主総会の招集手続が開始された場合における会計監査人の選任若しくは解任又は会計監査人を再任しないことに係る手続については、新会社法第三百四十四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16条 取締役等の責任の一部の免除等に関する経過措置

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執行役又は会計監査人の施行日前の行為に基づく責任の一部の免除及び当該責任の限度に関する契約については、新会社法第四百二十五条から第四百二十七条まで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責任の一部の免除をしようとする時に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新会社法第二条第十一号の二に規定する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をいう。)である株式会社についての旧会社法第四百二十五条第三項(旧会社法第四百二十六条第二項及び第四百二十七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旧会社法第四百二十五条第三項中「監査役設置会社又は委員会設置会社」とあるのは「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会社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二十六年法律第九十号)による改正後の会社法(以下この項において「新会社法」という。)第二条第十一号の二に規定する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をいう。)」と、「次の各号に掲げる株式会社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とあるのは「各監査等委員(新会社法第三十八条第二項に規定する監査等委員をいう。)」とする。

第17条 子会社の株式又は持分の譲渡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子会社の株式又は持分の全部又は一部の譲渡に係る契約が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譲渡については、新会社法第四百六十七条第一項及び第

지 아니한다.

제14조 신주예약권무상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구회사법 제278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신주예약권무상배정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의안내용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회계감사인의 선임, 해임 또는 회계감사인을 재임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결의를 하기 위한 주주총회소집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계감사인의 선임, 해임 또는 회계감사인을 재임하지 않는 절차에 관해서는 신회사법 제34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 이사 등의 책임일부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사, 회계참여, 감사, 집행임원 또는 회계감사인의 시행일 전의 행위에 기한 책임의 일부면제 및 책임의 한도에 관한 계약에 관해서는 신회사법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책임의 일부를 면제하려고 할 때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신회사법 제2조 제11호의2에서 규정하는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를 말한다)인 주식회사에 대한 구회사법 제425조 제3항(구회사법 제426조 제2항 및 제427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의 적용에 관해서는 구회사법 제425조 제3항 중 “감사설치회사 또는 위원회설치회사”는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법률 제90호)에 의한 개정 후의 회사법 (이하 이 항에서 “신회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의2에서 규정하는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를 말한다)”로, “다음 각호의 주식회사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자”는 “각 감사등위원(신회사법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사등위원을 말한다)”로 한다.

제17조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양도에 관해서는 신회사법 제467조 제1항 및 제536조 제1항의

附 則

五百三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18条 事業譲渡等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旧会社法第四百六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事業譲渡等に係る契約が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事業譲渡等については、新会社法第四百六十九条及び第四百七十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19条 株式会社の清算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旧会社法第四百七十五条各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清算株式会社の監査役については、新会社法第四百七十八条第六項及び第七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20条 株式会社の合併等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合併契約、吸収分割契約若しくは株式交換契約が締結され、又は組織変更計画、新設分割計画若しくは株式移転計画が作成された組織変更、合併、吸収分割、新設分割、株式交換又は株式移転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21条 責任追及等の訴えに関する経過措置

- 1 施行日前に旧会社法第八百四十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責任追及等の訴えが提起された場合における当該責任追及等の訴え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 2 施行日前に新会社法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の効力が生じた場合については、同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 3 施行日前にその原因となった事実が生じた特定責任(新会社法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四項に規定する特定責任をいう。)については、同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22条 監査役の監査の範囲の限定等に係る登記に関する経過措置

- 1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は、この法律の施行後最初に監査役が就任し、又は退任するまでの間は、新会社法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十七号イに掲げる事項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 사업양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구회사법 제4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사업양도 등에 관해서는 신회사법 제469조 및 제47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9조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구회사법 제475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청산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해서는 신회사법 제478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20조 주식회사의 합병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합병계약, 흡수분할계약 또는 주식교환계약이 체결되거나 조직변경계획, 신설분할계획 또는 주식이전계획이 작성된 조직변경, 합병, 흡수분할, 신설분할,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21조 책임추궁 등의 호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행일 전에 구회사법 제8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추궁 등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당해 책임추궁등의 소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시행일 전에 신회사법 제847조의2 제1항 각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관해서는 동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행일 전에 그 원인이 되었던 사실이 발생한 특정책임(신회사법 제847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책임을 말한다)에 관해서는 동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감사의 감사범위제한 등에 관한 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률 시행 시 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는 정관의 정함이 있는 주식회사는 이 법률시행 후 최초로 감사가 취임하거나 또는 퇴임할 때까지는 신회사법 제911조 제3항 제17호 가목 사항의 등기를 할 필요가

附 則

の登記をすることを要しない。

2 株式会社について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旧会社法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二十五号又は第二十六号の規定による登記がある場合は、当該株式会社は、当該登記に係る取締役又は監査役の任期中に限り、当該登記の抹消をすることを要しない。

第23条 株式会社の清算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した行為及びこの附則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施行日以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24条 政令への委任

この附則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

第25条 検討

政府は、この法律の施行後二年を経過した場合において、社外取締役の選任状況その他の社会経済情勢の変化等を勘案し、企業統治に係る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検討を加え、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結果に基づいて、社外取締役を置くことの義務付け等所要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附 則(平成26年6月27日法律第91号) 抄

この法律は、会社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27年9月4日法律第63号)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法律は、平成二十八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없다.

② 주식회사에 관하여 이 법률의 시행시 구회사법 제911조 제3항 제25호 또는 제26호에 의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당해 등기에 관련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 중에 한하여 등기말소를 할 필요가 없다.

제2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 된 경우의 시행일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24조 시행령에의 위임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의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2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사외이사의 선임상황, 기타 사회경제정세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업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검토를 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 결과에 기하여 사외이사 선임의 의무화 등 소요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2014년 6월 27일 법률 제91호) 초(抄)

이 법률은 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년 9월 4일 법률 제63호) 초(抄)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은 당해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 則

第96条 会社法の一部改正に伴う経過措置

前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会社法(以下この条において「新会社法」という。)第九百四十三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旧農協法第九十二条第五項(附則第十条の規定によりなおその効力を有することとされ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前条の規定による改正前の会社法第九百五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刑に処せられた者は、新農協法第九十七条の四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新会社法第九百五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刑に処せられたものとみなす。

第114条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並びにこの附則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及びこの附則の規定によりなおその効力を有す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平成28年6月3日法律第62号)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第18条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19条 その他の経過措置の政令への委任

附則第二条から第八条まで及び前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は、政令で定める。

第20条 検討

政府は、この法律の施行後五年を目途として、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それぞれ

제96조 회사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회사법(이하 이 조에서 “신회사법”이라고 한다) 제943조의 적용에 관해서는 구농협법 제92조 제5항(부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회사법 제955조 제1항에 위반하여 형에 처해진 자는 신농협법 제97조의4 제5항에서 준용하는 신회사법 제95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에 처해진 자로 간주한다.

제1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 된 경우 및 이 부칙의 규정에 의 여전히 종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된 경우의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2016년 6월 3일 법률 제62호) 초(抄)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9조 기타 경과조치의 시행령에 위임

부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전조에서 정하는 것의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목표로 하여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각각의

附 則

の法律(以下この条において「改正後の各法律」という。)の施行の状況等を勘案し、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改正後の各法律の規定について検討を加え、その結果に基づいて所要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附 則(令和元年一二月一一日法律七〇号)

第1条 施行期日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令和二年政令第三二五号で同三年三月一日から施行〕ただし、目次の改正規定(「株主総会及び種類株主総会」を「株主総会及び種類株主総会等」に、「第二款 種類株主総会(第三百二十一条―第三百二十五条)」を《振分始》「第二款 種類株主総会(第三百二十一条―第三百二十五条)《項段》第三款 電子提供措置(第三百二十五条の二―第三百二十五条の七)》《振分終》に、《振分始》「第二節 会社の登記《項段》第一款 本店の所在地における登記(第九百十一条―第九百二十九条)《項段》第二款 支店の所在地における登記(第九百三十条―第九百三十二条)》《振分終》を「第二節 会社の登記(第九百十一条―第九百三十二条)」に改める部分に限る。)、第二編第四章第一節の節名の改正規定、第三百一条第一項の改正規定、同節に一款を加える改正規定、第七編第四章第二節第一款の款名を削る改正規定、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十二号の次に一号を加える改正規定、同節第二款の款名を削る改正規定、第九百三十条から第九百三十二条までの改正規定、第九百三十七条第一項の改正規定、同条第四項を削る改正規定、第九百三十八条第一項の改正規定及び第九百七十六条中第十九号を第十八号の二とし、同号の次に一号を加える改正規定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三年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令和三年政令第三三四号で同四年九月一日から施行〕

第2条 経過措置の原則

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会社法(以下「新法」という。)の規定(罰則を除く。)は、この附則に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この法律(前条ただし書に規定する規定については、当該規定。附則第十条において同じ。)の施行前に生じた事項にも適用する。ただし、この法律による改正前の会社法(以下「旧法」という。)の規定によ

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 후의 각 법률”이라 한다.)의 시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정 후의 각 법률의 규정에 관해 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기하여 소요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2019년 12월 11일 법률 제7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년 시행령 제325호로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목차의 개정 규정(‘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를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 등’으로, ‘제2관 종류주주총회(제321조~제325조)’를 《나는 앞부분》‘제2관 종류주주총회(제321조~제325조)《항단》 제3관 전자제공조치(제325조의2~제325조의7)’《나는 뒷부분》으로, 《나는 앞부분》‘제2절 회사의 등기 《항단》 제1관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제911조~ 제929조) 《항단》 제2관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제930조~제932조’《나는 뒷부분》을 ‘제2절 회사의 등기(제911조~ 제932조)’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한다), 제2편 제4장 제1절의 절명의 개정 규정, 제301조 제1항의 개정 규정, 동절에 1관을 추가한 개정 규정, 제7편 제4장 제2절 제1관의 관명을 삭제하는 개정 규정, 제911조 제3항 제12호의 다음에 1호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동절 제2관의 관명을 삭제하는 개정 규정, 제930조부터 제932조까지의 개정 규정, 제937조 제1항의 개정 규정, 동조 제4항을 삭제하는 개정 규정, 제938조 제1항의 개정 규정 및 제976조 중 제19호를 제18호로 하고 동호의 다음에 1호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1년 시행령 제334호로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회사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의 규정(별칙은 제외한다)은 부칙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전조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 부칙 제10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회사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생

附 則

って生じた効力を妨げない。

第3条 株主提案権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された会社法第三百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4条 代理権を証明する書面等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された旧法第三百十条第七項、第三百十一条第四項又は第三百十二条第五項の請求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5条 社外取締役の設置義務等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監査役会設置会社(会社法第二条第五号に規定する公開会社であり、かつ、同条第六号に規定する大会社であるものに限る。)であって金融商品取引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十五号)第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その発行する株式について有価証券報告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については、新法第三百二十七条の二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最初に終了する事業年度に関する定時株主総会の終結の時までは、適用し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旧法第三百二十七条の二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理由の開示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6条 補償契約に関する経過措置

新法第四百三十条の二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補償契約(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補償契約をいう。)について適用する。

第7条 役員等のために締結される保険契約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法律の施行前に株式会社と保険者との間で締結された保険契約のうち役員等(旧法第四百二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役員等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がその職務の執行に関し責任を負うこと又は当該責任の追及に係る請求を受けることによって生ずることのある損害を保険者が填補することを約するものであって、役員等を被保険者とするものについては、新法第四百三十条の三の規定は、適用しない。

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주주제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회사법 제305조 제1항의 청구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4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구법 제310조 제7항, 제311조 제4항 또는 제312조 제5항의 청구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 사외이사의 설치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감사회설치회사(회사법 제2조 제5호의 공개회사이자 동조 제6호의 대기업인 것에 한한다)로서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기해 발행하는 주식에 관해 유가증권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법 제327조의2는 이 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의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구법 제327조의2의 이유 공시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보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신법 제430조의2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된 보상계약(동조 제1항의 보상 계약을 말한다)에 적용한다.

제7조 임원 등을 위하여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주식회사와 보험자 간에 체결된 보험계약 중 임원 등(구법 제423조 제1항의 임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무의 집행에 관하여 책임을 지거나 또는 책임 추궁에 관한 청구를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전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법 제430조의3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附 則

第8条 社債に関する経過措置

- 1 この法律の施行前に旧法第六百七十六条に規定する事項の決定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その募集社債及びこの法律の施行前に会社法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募集事項の決定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その新株予約権付社債の発行の手続については、新法第六百七十六条第七号の二及び第八号の二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 2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存する社債であって、社債管理者を定めていないもの（この法律の施行の日以後に前項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り社債管理者を定めずに発行された社債を含む。）には、新法第六百七十六条第七号の二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ものとみなす。
- 3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存する社債券の記載事項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 4 この法律の施行前に社債発行会社、社債管理者又は社債権者が社債権者集会の目的である事項について提案をした場合については、新法第七百三十五条の二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9条 新株予約権に係る登記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法律の施行前に登記の申請がされた新株予約権の発行に関する登記の登記事項については、新法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十二号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10条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この附則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11条 政令への委任

この附則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

제8조 사채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률 시행 전에 구법 제676조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의 모집사채 및 이 법률 시행 전에 회사법 제238조 제1항의 모집사항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경우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의 발행절차에 관해서는 신법 제676조 제7호의2 및 제8호의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 ② 이 법률의 시행 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채로서 사채관리자를 정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전항의 규정에 기해 종전의 예에 따라 사채관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발행된 사채를 포함한다)에는 신법 제676조 제7호의2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이 법률의 시행 시 실제로 존재하는 사채권의 기재사항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 ④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사채발행회사, 사채관리자 또는 사채권자가 사채권자 집회의 목적인 사항에 관해 제안한 경우에는 신법 제735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신주예약권의 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등기신청이 이루어진 신주예약권의 발행에 관한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신법 제911조 제3항 제1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에 의해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률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시행령에의 위임

이 부칙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일한회사법대조표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법인격)		제169조
제4조 (주소)		제171조
제5조 (상행위)		제5조 제2항, 제47조
제2장 회사의 상호		
제6조 (상호)	1항	제18조
	2항	제19조
	3항	
제7조 (회사로 오인시킬 명칭등의 사용금지)		제20조
제8조	1항	제23조 제1항
	2항	제23조 제2항
제9조 (자기 상호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락한 회사의 책임)		제24조
제3장 회사의 사용인 등		
제1절 회사의 사용인		
제10조 (지배인)		제10조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1항	제11조 제1항
	2항	제11조 제2항
	3항	제11조 제3항
제12조 (지배인의 경업금지)	1항	제17조 제1항
	2항	제17조 제2항

일한회사법대조표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13조 (표현지배인)		제14조
제14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항	제15조 제1항
	2항	제15조 제2항
제15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제16조
제2절 회사의 대리상		
제16조 (통지의무)		제88조
제17조 (대리상의 경업금지)	1항	제89조 제1항
	2항	제89조 제2항
제18조 (통지를 받을 권한)		제90조
제19조 (계약해제)	1항	제92조 제1항
	2항	제92조 제2항
제20조 (대리상의 유치권)		제91조
제4장 사업양도를 한 경우의 경업금지등		
제21조 (양도회사의 경업금지)	1항	제41조 제1항
	2항	제41조 제2항
	3항	
제22조 (양도회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양수회사의 책임 등)	1항	제42조 제1항
	2항	제42조 제2항
	3항	제45조
	4항	제43조
제23조 (양수회사에 의한 채무인수)	1항	제44조
	2항	제45조
제23조의2 (사해사업양도에 관련된 양수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청구)	1항	
	2항	
	3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24조 (상인간의 사업양도 또는 양수)	1항	
	2항	
제2편 주식회사		
제1장 설립		
제1절 총칙		
제25조	1항	제301조
	2항	제293조
제2절 정관작성		
제26조 (정관의 작성)	1항	제289조 제1항
	2항	
제27조 (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사항)		제289조 제1항
제28조		제290조
제29조		제291조
제30조 (정관인증)	1항	제292조
	2항	
제31조 (정관의 비치 및 열람 등)	1항	
	2항	
	3항	
	4항	
제3절 출자		
제32조 (설립시발행주식에 관한 사항의 결정)	1항	제291조
	2항	
제32조의2 (주식교부)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33조 (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 사항에 관한 감사인의 선임)	1항	제298조 제4항
	2항	
	3항	
	4항	제299조 제1항
	5항	
	6항	제299조 제3항
	7항	제300조 제1항
	8항	제300조 제2항
	9항	제300조 제3항
	10항	제299조 제2항
	11항	제298조 제4항
제34조 (출자의 이행)	1항	제295조
	2항	제295조 제1항 후단
제35조 (설립시발행주식의 주주가 되는 권리의 양도)		
제36조(설립시발행주식의 주주가 되는 권리의 상실)	1항	
	2항	
	3항	
제37조 (발행가능주식총수의 결정등)	1항	
	2항	
	3항	
제4절 설립시 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제38조 (설립시 임원등의 선임)	1항	제296조 제1항
	2항	
	3항	
	4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39조	1항	
	2항	
	3항	
	4항	
	5항	
제40조 (설립시 임원등의 선임방법)	1항	제296조 제1항
	2항	제296조 제2항
	3항	
	4항	
	5항	
제41조 (설립시 임원등의 선임방법의 특칙)	1항	
	2항	
	3항	
제42조 (설립시 임원등의 해임)		
제43조 (설립시 임원등의 해임방법)	1항	
	2항	
	3항	
	4항	
	5항	
제44조 (설립시 이사등의 해임방법의 특칙)	1항	
	2항	
	3항	
	4항	
	5항	
제45조 (설립시 임원등의 선임 또는 해임의 효력에 관한 특칙)	1항	
	2항	
제5절 설립시 이사등에 의한 조사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46조 (설립시 이사등에 의한 조사)*	1항	제298조 제1항
	2항	제298조 제1항
	3항	
제6절 설립시 대표이사등의 선정 등		
제47조 (설립시 대표이사의 선정 등)	1항	
	2항	
	3항	
제48조 (설립시 위원의 선정 등)	1항	
	2항	
	3항	
제7절 주식회사의 성립		
제49조(주식회사의 성립)		제172조
제50조 (주식인수인의 권리)	1항	
	2항	제319조
제51조(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의 제한)	1항	
	2항	제320조 제2항
제8절 발기인 등의 책임 등		
제52조 (출자된 재산등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의 책임)	1항	제312조 제2항
	2항	
	3항	
제52조의2 (출자의 이행을 가장한 경우의 책임 등)	1항	제628조 제1항
	2항	
	3항	제628조 제2항
	4항	
	5항	
제53조 (발기인등의 손해배상책임)	1항	제322조 제1항
	2항	제322조 제2항
제54조 (발기인 등의 연대책임)		제323조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55조 (책임의 면제)		제324조
제56조 (주식회사불성립의 책임)		제326조
제9절 모집설립		
제1관 설립시 발행주식 인수인 모집		
제57조 (설립시발행주식의 인수인 모집)	1항	제301조
	2항	
제58조 (설립시모집주식에 관한 사항의 결정)	1항	
	2항	
	3항	
제59조 (설립시모집주식의 청약)	1항	제302조 제2항
	2항	
	3항	제302조 제1항
	4항	
	5항	
	6항	제304조 제1항
	7항	제304조 제2항
제60조 (설립시모집주식의 배정)	1항	
	2항	
제61조 (설립시모집주식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특칙)		
제62조 (설립시모집주식의 인수)		
제63조 (설립시모집주식의 납입금액의 납입)	1항	제305조 제1항
	2항	제319조
	3항	제307조 제1항 및 제2항
제64조 (납입금의 보관증명)	1항	제318조 제1항
	2항	제318조 제2항
제2관 창립총회 등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65조 (창립총회의 소집)	1항	제308조 제1항
	2항	
제66조 (창립총회의 권한)		
제67조 (창립총회의 소집결정)	1항	
	2항	
제68조 (창립총회의 소집의 통지)	1항	제308조 제2항 (제363조 제1항)
	2항	
	3항	제308조 제2항 (제363조 제1항)
	4항	제308조 제2항 (제363조 제2항)
	5항	
	6항	
	7항	
제69조 (소집절차의 생략)		
제70조 (창립총회 참고서류 및 의결권행사서면의 교부 등)	1항	
	2항	
제71조	1항	
	2항	
	3항	
	4항	
제72조 (의결권의 수)	1항	제308조 제2항 (제369조 제1항, 제371조 제2항)
	2항	
	3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73조 (창립총회의 결의)	1항	제309조
	2항	
	3항	
	4항	
제7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항	제308조 제2항 (제368조 제3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제75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1항	제368조의3 제1항, 제2항
	2항	
	3항	
	4항	
제76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1항	제368조의4
	2항	
	3항	
	4항	
	5항	
제77조(의결권의불통일행사)	1항	제308조 제2항 (제369조의2 제1항)
	2항	제308조 제2항 (제369조의2 제2항)
제78조 (발기인의 설명의무)		
제79조 (의장의 권한)	1항	
	2항	
제80조(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제308조 제2항 (제372조)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81조(의사록)	1항	제308조 제2항 (제373조)
	2항	
	3항	
	4항	
제82조 (창립총회결의의 생략)	1항	
	2항	
	3항	
	4항	
제83조 (창립총회에 대한 보고의 생략)		
제84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뜻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85조 (종류창립총회의 소집 및 결의)	1항	제308조 제2항 (제435조 제1항)
	2항	제308조 제2항 (제435조 제2항)
	3항	
제86조 (창립총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08조 제2항
제3관 설립에 관한 사항의 보고		
제87조 (설립에 관한 사항의 보고)*	1항	제311조 제1항
	2항	제311조제2항,제310조
제4관 설립시 이사 등의 선임 및 해임		
제88조 (설립시 이사등의 선임)	1항	제312조
	2항	
제89조 (누적투표에 의한 설립시이사의 선임)	1항	
	2항	
	3항	
	4항	
	5항	
제90조 (종류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한 설립시이사 등의 선임)	1항	
	2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91조 (설립시 이사등의 해임)		
제92조	1항	
	2항	
	3항	
	4항	
제5관 설립시 이사등에 의한 조사		
제93조 (설립시이사등에 의한 조사)	1항	제313조 제1항
	2항	제313조 제1항
	3항	
제94조 (설립시이사등이 발기인인 경우의 특칙)	1항	제313조 제2항 (제298조 제2항 및 제3항
	2항	
제6관 정관변경		
제95조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변경 금지)		
제96조 (창립총회에 있어서 정관의 변경)		제316조, 제314조
제97조 (설립시발행주식의 인수의 취소)		
제98조 (창립총회의결의에 의한 발행가능주식총수의 결정)		
제99조(정관변경절차의 특칙)		
제100조	1항	
	2항	
제101조	1항	
	2항	
제7관 설립절차 등의 특칙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102조 (설립절차등의 특칙)	1항	
	2항	
	3항	제302조 제3항
	4항	제320조
	5항	
	6항	
102조의2 (납입을 가장한 설립시 모집주식의 인수인의 책임)	1항	제628조 제1항
	2항	
제103조 (발기인의 책임 등)	1항	
	2항	제327조
	3항	
	4항	
제2장 주식		
제1절 총칙		
제104조 (주주의 책임)		제331조
제105조(주주의권리)	1항	
	2항	
제106조 (공유자에 의한 권리행사)		제333조 제2항
제107조(주식의내용에관한특별한규정)	1항	
	2항	
제108조 (다른 종류주식)	1항	제344조 제1항
	2항	제344조 제2항
	3항	제344조 제3항
제109조(주주의평등)	1항	
	2항	
	3항	
제110조 (정관의 변경절차의 특칙)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111조	1항	
	2항	
제112조 (이사의 선임등에 관한 종류주식의 정관의 규정의 폐지의 특칙)	1항	
	2항	
제113조 (발행가능주식총수)	1항	
	2항	
	3항	
	4항	
제114조 (발행가능종류주식총수)	1항	
	2항	
제115조 (의결권제한주식의 발행수)		제344조의3 제2항
제116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1항	제360조의2 제1항
	2항	
	3항	제360조의2 제2항
	4항	제360조의2 제2항
	5항	제360조의2 제2항
	6항	
	7항	
	8항	
	9항	
제117조 (주식의 가격결정 등)	1항	제374조의2 제3항
	2항	제374조의2 제4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118조 (신주예약권 매수청구)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제119조 (신주예약권의 가격결정 등)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제120조(주주 등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1항	제467조의2 제1항
	2항	제467조의2 제2항
	3항	제467조의2 제3항
	4항	
	5항	
제2절 주주명부		
제121조 (주주명부)		제352조 제1항
제122조 (주주명부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등)	1항	
	2항	
	3항	
	4항	
제123조(주주명부관리인)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124조 (기준일)	1항	제354조 제1항
	2항	
	3항	제354조 제4항
	4항	
	5항	
제125조 (주주명부의 비치 및 열람 등)	1항	제352조의2 제3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2항	제352조의2 제3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3항	
	4항	
	5항	
제126조 (주주에 대한 통지 등)	1항	제353조 제1항
	2항	제353조 제2항 (제304조 제2항)
	3항	
	4항	
	5항	
제3절 주식양도 등		
제1관 주식양도		
제127조 (주식양도)		제335조 제1항
제128조(주권발행회사의주식양도)	1항	
	2항	제335조 제3항
제129조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특칙)	1항	
	2항	
제130조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1항	제337조 제1항
	2항	
제131조(권리추정등)	1항	제336조 제2항
	2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132조 (주주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는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기록)	1항	
	2항	
	3항	
제133조 (주주의 청구에 의한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기록)	1항	
	2항	
제134조		
제135조(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	1항	
	2항	
	3항	
제2관 주식양도에 따른 승인절차		
제136조 (주주로부터의 승인의 청구)		제335조의2 제1항
제137조 (주식취득자로부터의 승인의 청구)	1항	제335조의7 제1항
	2항	
제138조 (양도등승인청구의 방법)		
제139조 (양도등의 승인의 결정등)	1항	
	2항	제335조의2 제2항
제140조 (주식회사 또는 지정매수인에 의한 매수)	1항	
	2항	
	3항	
	4항	제335조의3 제1항
	5항	
제141조 (주식회사에 의한 매수의 통지)	1항	제335조의3 제1항
	2항	
	3항	
	4항	
제142조 (지정매수인에 의한 매수의 통지)	1항	
	2항	
	3항	
	4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143조 (양도등 승인청구의 철회)	1항	
	2항	
제144조 (매매가격의 결정)	1항	제335조의5 제1항
	2항	제335조의5 제2항 (제374조의2 제4항)
	3항	제335조의5 제2항 (제374조의2 제5항)
	4항	
	5항	
	6항	
	7항	
제145조 (주식회사가 승낙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335조의2제3항, 제335조의3 제2항
제3관 주식의 입질		
제146조 (주식의 입질)	1항	제338조 제1항
	2항	
제147조 (주식의 입질의 대항요건)	1항	
	2항	제338조 제2항
	3항	
제148조 (주주명부의 기재 등)		제340조 제1항
제149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1항	
	2항	
	3항	
	4항	
제150조 (등록주식질권자에 대한 통지 등)	1항	
	2항	
제151조 (주식의 입질의 효과)	1항	
	2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152조	1항	
	2항	
	3항	
제153조	1항	
	2항	
	3항	
제154조	1항	
	2항	
제4관 신탁재산에 속한 주식에 관한 대항요건 등		
제154조의2	1항	
	2항	
	3항	
	4항	
제4절 주식회사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1관 총칙		
제155조 (주식회사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제341조의2, 제342조의3.
제2관 주주와 합의에 의한 취득		
제156조 (주식취득에 관한 사항 결정)	1항	
	2항	
제157조 (취득가액등의 결정)	1항	
	2항	
	3항	
제158조 (주주에 대한 통지 등)	1항	
	2항	
제159조 (양도의 청약)	1항	
	2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160조 (특정 주주로부터의 취득)	1항	
	2항	
	3항	
	4항	
	5항	
제161조 (시장가격이 있는 주식의 취득의 특칙)		
제162조 (상속인등으로부터의 취득의 특칙)		
제163조 (자회사로부터의 주식의 취득)		제342조의2
제164조 (특정 주주로부터의 취득에 관한 정관의 정함)	1항	
	2항	
제165조 (시장거래등에 의한 주식의 취득)	1항	제341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2항	
	3항	
제3관 취득청구권부주식 및 취득조항부주식의 취득		
제166조 (취득의 청구)	1항	
	2항	
	3항	
제167조 (효력의 발생)	1항	
	2항	
	3항	
	4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168조 (취득일의 결정)	1항	
	2항	
	3항	
제169조 (취득하는 주식의 결정 등)	1항	
	2항	
	3항	
	4항	
제170조 (효력의 발생 등)	1항	
	2항	
	3항	
	4항	
	5항	
제4관 전부취득도항부종류주식의 취득		
제171조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한 결정)	1항	
	2항	
	3항	
제171조의2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대가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항	
	2항	
제171조의3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유지 청구)		
제172조 (법원에 대한 가액결정의 청구)	1항	
	2항	
	3항	
	4항	
	5항	
제173조 (효력의 발생)	1항	
	2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173조의2 (전부취득조항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항	
	2항	
	3항	
제5관 상속이인 등에 대한 매도청구		
제174조 (상속인등에 대한 매도청구에 관한 정관의 정함)		
제175조(매도청구의결정)	1항	
	2항	
제176조 (매도청구)	1항	
	2항	
	3항	
제177조 (매매가액의 결정)	1항	
	2항	
	3항	
	4항	
	5항	
제6관 주식의 소각		
제178조	1항	제343조 제1항
	2항	제343조 제1항
제4절의2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		
제179조 (주식등매도청구)	1항	제360조의24 제1항
	2항	
	3항	
제179조의2 (주식등매도청구의 방법)	1항	제360조의24 제3항
	2항	
	3항	

일본은행회사법		한국은행상법
제179조의3 (대상회사의 승인)	1항	
	2항	
	3항	
	4항	
제179조의4 (매도주주등에 대한 통지등)	1항	제360조의24 제5항
	2항	
	3항	
	4항	
제179조의5 (주식등매도청구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등)	1항	
	2항	
제179조의6 (주식등매도청구의 철회)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제179조의7 (매도주식등의 취득유지청구)	1항	
	2항	
제179조의8 (매매가격의 결정청구)	1항	제360조의24 제8항
	2항	
	3항	제360조의24 제9항
제179조의9 (매도주식등의 취득)	1항	제360조의26 제1항
	2항	
제179조의10 (매도주식등의 취득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등)	1항	
	2항	
	3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5절 주식의 병합 등		
제1관 주식의 병합		
제180조(주식의 병합)	1항	
	2항	
	3항	
	4항	
제181조(주주에 대한 통지등)	1항	제440조
	2항	
제182조 (효력의 발생)	1항	제441조
	2항	
제182조의 2 (주식병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등)	1항	
	2항	
제182조의 3 (주식병합의 유지청구)		
제182조의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제182조의 5 (주식가격의 결정 등)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182조의 6 (주식병합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등)	1항	
	2항	
	3항	
제2관 주식의 분할		
제183조 (주식의 분할)	1항	제329조의2 제1항
	2항	
제184조 (효력의 발생 등)	1항	
	2항	
제3관 주식무상배정		
제185조 (주식무상배정)		
제186조 (주식무상배정에 관한 사항의 결정)	1항	
	2항	
	3항	
제187조 (주식무상배정의 효력의 발생 등)	1항	
	2항	
제6절 단원주식수		
제1관 총칙		
제188조 (단원주식수)	1항	
	2항	
	3항	
제189조 (단원미만주식에 대한 권리의 제한 등)	1항	
	2항	
	3항	
제190조(이유의명시)		
제191조 (정관변경 절차의 특칙)		
제2관 단원미만주주의 매수청구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192조 (단원미만주식의 매수청구)	1항	
	2항	
	3항	
제193조 (단원미만주식의 가격결정)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제3관 단원미만주주의 매도청구		
제194조 (단원미만주주의 매도청구)	1항	
	2항	
	3항	
	4항	
제4관 단원주식수의 변경 등		
제195조 (단원주식수의 변경 등)*	1항	
	2항	
	3항	
제7절 주주에 대한 통지의 생략 등		
제196조 (주주에 대한 통지의 생략)	1항	
	2항	
	3항	
제197조 (주식의 경매)	1항	
	2항	
	3항	
	4항	
	5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198조 (이해관계인의 이익)	1항	
	2항	
	3항	
	4항	
	5항	
제8절 모집주식의 발행 등		제4절 신주의발행
제1관 모집사항의 결정 등		
제199조 (모집사항의 결정)	1항	제416조
	2항	
	3항	
	4항	
	5항	
제200조 (모집사항의 결정의 위임)	1항	제416조
	2항	
	3항	
	4항	
제201조 (공개회사의 경우 모집사항 결정의 특칙)	1항	제416조
	2항	
	3항	
	4항	
	5항	
제202조 (주주에게주식배정을받을권리를부여하는 경우)	1항	제418조 제1항
	2항	
	3항	
	4항	
	5항	
제202조의2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한 모집사항의 결정에 관한 특칙)	1항	제388조
	2항	
제2관 모집주식의 배정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203조 (모집주식의 청약)	1항	제302조, 제420조의5
	2항	제420조
	3항	
	4항	
	5항	
	6항	
	7항	
제204조(모집주식배정)	1항	제303조, 제421조 제1항
	2항	제418조
	3항	
	4항	제419조
제205조(모집주식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특칙)	1항	
	2항	
	3항	
	4항	
	5항	
제206조 (모집주식의 인수)		
제206조의 2 (공개회사에서 모집주식의 배정 등의 특칙)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3관 금전이외의 재산의 출자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207조 (금전 이외의 재산의 출자)	1항	제416조 4호
	2항	제422조 1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제422조 3항
	8항	제422조 4항
	9항	제422조 2항
	10항	
제4관 출자의 이행 등		
제208조(출자의이행)	1항	제421조 1항
	2항	
	3항	제421조 2항
	4항	
	5항	
제209조 (주주가 되는 시기)	1항	제423조 1항
	2항	제423조 2항
	3항	
	4항	
제5관 모집주식의 발행 등의 중지청구		
제210조		제424조
제6관 모집에 관한 책임 등		
제211조 (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의 제한)	1항	
	2항	제427조
제212조 (불공정한 납입금액으로 주식을 인수한자 등의 책임)	1항	제424조의2
	2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213조 (출자된 재산등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 이사등의 책임)	1항	제424조의2 제3항
	2항	
	3항	
	4항	
제213조의 2 (출자의 이행을 가장한 모집주식인수인의 책임)	1항	
	2항	
제213조의 3 (출자의 이행을 가장한 경우의 이사등의 책임)	1항	
	2항	
제9절 주권		
제1관 총칙		
제214조 (주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관의 규정)		
제215조 (주권의 발행)	1항	제355조 제1항
	2항	
	3항	
	4항	
제216조 (주권의 기재사항)		제356조
제217조 (주권불소지의 신고)	1항	제358조의2 제1항
	2항	제358조의2 제3항
	3항	제358조의2 제2항 전단
	4항	
	5항	제358조의2 제2항 후단
	6항	제358조의2 제4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218조(주권을발행하는뜻의정관규정의폐지)	1항	
	2항	
	3항	
	4항	
	5항	
제2관 주권의 제출 등		
제219조 (주권의 제출에 관한 공고 등)	1항	
	2항	
	3항	
	4항	
제220조 (주권의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	1항	
	2항	
	3항	
제3관 주권상실등록		
제221조 (주권상실등록부)		
제222조 (주권상실등록부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223조 (주권상실등록의 청구)		
제224조 (명의인등에 대한 통지)	1항	
	2항	
제225조 (주권을 소지하는 자에 의한 말소의 청구)	1항	
	2항	
	3항	
	4항	
제226조 (주권상실등록자에 의한 말소의 청구)	1항	
	2항	
제227조 (주권을 발행하는 뜻의 정관규정을 폐지한 경우 주권상실등록의 말소)		
제228조 (주권의 무효)	1항	
	2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229조 (이의최고 절차와의 관계)	1항	
	2항	
제230조(주권상실등록의효력)	1항	
	2항	
	3항	
	4항	
제231조(주권상실등록부의비치및열람등)	1항	
	2항	
제232조(주권상실등록자에대한통지등)	1항	
	2항	
제233조 (적용제외)		
제10절 잡칙		
제234조 (1에 미달하는 단수의 처리)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제235조	1항	
	2항	
제3장 신주예약권		
제1절 총칙		
제236조 (신주예약권의 내용)	1항	
	2항	
	3항	
	4항	
제237조 (공유자에 의한 권리행사)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2절 신주예약권의 발생		
제1관 모집사항의 결정 등		
제238조 (모집사항의 결정)	1항	
	2항	
	3항	
	4항	
	5항	
제239조 (모집사항 결정의 위임)	1항	
	2항	
	3항	
	4항	
제240조(공개회사에관한모집사항결정의특칙)	1항	
	2항	
	3항	
	4항	
제241조 (주주에게 신주예약권을 배정받을 권리를 주는 경우)	1항	
	2항	
	3항	
	4항	
	5항	
제2관 모집신주예약군의 배정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242조 (모집신주예약권의 신청)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제243조 (모집신주예약권의 배정)	1항	
	2항	
	3항	
	4항	
제244조 (모집신주예약권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특칙)	1항	
	2항	
	3항	
제244조의 2 (모집신주예약권의 배정 등에 관한 공개회사 특칙)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제245조 (신주예약권자가 되는 시기)	1항	
	2항	
제3관 모집신주예약권에 관한 납입		
제246조 (모집신주예약권에 관한 납입)	1항	
	2항	
	3항	
제4관 모집신주예약권 중지청구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247조		
제5관 잡칙		
제248조 (잡칙)*		
제3절 신주예약권원부		
제249조 (신주예약권원부)		
제250조 (신주예약권원부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1항	
	2항	
	3항	
	4항	
제251조 (신주예약권원부의 관리)		
제252조 (신주예약권원부의 비치 및 열람 등)	1항	
	2항	
	3항	
	4항	
	5항	
제253조 (신주예약권자에대한통지등)	1항	
	2항	
	3항	
	4항	
제4절 신주예약권의 양도 등		
제1관 신주예약권의 양도		
제254조 (신주예약권의 양도)	1항	
	2항	
	3항	
제255조 (증권발행신주예약권의 양도)	1항	
	2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256조 (자기 신주예약권의 처분에 관한 특칙)	1항	
	2항	
	3항	
	4항	
제257조 (신주예약권 양도의 대항요건)	1항	
	2항	
	3항	
제258조 (권리추정 등)	1항	
	2항	
	3항	
	4항	
제259조 (신주예약권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는 신주예약권원부기재사항의 기재)	1항	
	2항	
제260조 (신주예약권자의 청구에 의한 신주예약권 원부기재사항의 기재)	1항	
	2항	
	3항	
제261조		
제2관 신주예약권양도의 제한		
제262조 (신주예약권자로부터의 승인청구)		
제263조 (신주예약권취득자로부터의 승인청구)	1항	
	2항	
제264조(양도등승인청구의방법)		
제265조 (양도등 승인의 결정 등)	1항	
	2항	
제266조 (주식회사가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3관 신주예약권의 입질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267조 (신주예약권의 입질)	1항	
	2항	
	3항	
	4항	
	5항	
제268조(신주예약권입질의대항요건)	1항	
	2항	
	3항	
제269조 (신주예약권원부의 기재 등)	1항	
	2항	
제270조 (신주예약권원부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1항	
	2항	
	3항	
	4항	
제271조 (등록신주예약권질권자에 대한 통지 등)	1항	
	2항	
제272조 (신주예약권의 입질의 효과)	1항	
	2항	
	3항	
	4항	
제4관 신탁재산에 속하는 신주예약권에 관한 대항요건 등		
제272조의2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신주예약권에 관한 대항요건 등)*	1항	
	2항	
	3항	
	4항	
제5절 주식회사에 의한 자기 신주예약권의 취득		
제1관 모집사항의 정함에 의한 신주예약권의 취득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273조 (취득일의 결정)	1항	
	2항	
	3항	
제274조 (취득한 신주예약권의 결정 등)	1항	
	2항	
	3항	
	4항	
제275조 (효력의 발생 등)	1항	
	2항	
	3항	
	4항	
	5항	
제2관 신주예약권의 소각		
제276조	1항	
	2항	
제6절 신주예약권무상배정		
제277조 (신주예약권무상배정)		
제278조 (신주예약권무상배정에 관한 사항의 결정)	1항	
	2항	
	3항	
제279조 (신주예약권무상배정 효력의 발생 등)	1항	
	2항	
	3항	
제7절 신주예약권의 행사		
제1관 총칙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280조 (신주예약권의 행사)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제281조 (신주예약권의 행사시의 납입)	1항	
	2항	
	3항	
제282조 (주주가 되는 시기)	1항	
	2항	
	3항	
제283조 (1주에 미달하는 단주의 처리)		
제2관 금전 외의 재산의 출자		
제284조 (금전 외의 재산의 출자)*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3관 책임		
제285조 (불공정한 납입금액으로 신주예약권을 인수한 자 등의 책임)	1항	
	2항	
제286조 (출자된 재산 등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의 이사 등의 책임)	1항	
	2항	
	3항	
	4항	
제286조의 2 (신주예약권에 관련된 납입 등을 가장한 신주예약권자 등의 책임)	1항	
	2항	
제286조의 3 (신주예약권에 관련된 납입 등을 가장한 경우 이사의 책임)	1항	
	2항	
제4관 잡칙		
제287조		
제8절 신주예약권에 따른 증권		
제1관 신주예약권증권		
제288조 (신주예약권증권의 발행)	1항	
	2항	
제289조 (신주예약권증권의 기재사항)		
제290조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제291조 (신주예약권증권의 상실)		
제2관 신주예약권부사채권		
제292조	1항	
	2항	
제3관 신주예약권증권 등의 제출		

일본은행회사법		한국은행상법
제293조 (신주예약권증권의 제출에 관한 공고 등)	1항	
	2항	
	3항	
	4항	
	5항	
제294조 (무기명식의 신주예약권증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1항	
	2항	
	3항	
	4항	
	5항	
제4장 기관		
제1절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		
제1관 주주총회		
제295조 (주주총회의 권한)	1항	제361조
	2항	
	3항	
제296조 (주주총회의 소집)	1항	제365조 제1항
	2항	
	3항	제365조 제3항
제297조 (주주에 의한 소집의 청구)	1항	제366조 제1항
	2항	
	3항	
	4항	제366조 제4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298조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	1항	
	2항	
	3항	
	4항	
제299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1항	제363조 제1항
	2항	
	3항	
	4항	제363조 제2항
제300조 (소집절차의 생략)		
제301조 (주주총회참고서류 및 의결권행사서면의 교부 등)	1항	제368조의3 제2항
	2항	
제302조	1항	제368조의4 제3항
	2항	
	3항	
	4항	
제303조 (주주제안권)	1항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2항	
	3항	
	4항	
제304조		
제305조	1항	제363조의2 제2항, 제542조의6 제2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306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검사인의 선임)	1항	제367조 제2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제307조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등의 결정)	1항	
	2항	
	3항	
제308조 (의결권의 수)	1항	제369조 제1항
	2항	제369조 제2항
제309조 (주주총회결의)	1항	제368조 제1항
	2항	
	3항	
	4항	
	5항	
제31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항	제368조 제3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31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항	제368조의3
	2항	
	3항	
	4항	
	5항	
제312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항	제368조의3 제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제313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항	제368조의2 제1항
	2항	
	3항	제368조의2 제2항
제314조 (이사 등의 설명의무)		
제315조 (의장의 권한)	1항	제366조의2 제2항
	2항	제366조의2 제3항
제316조 (주주총회에 제출된 자료 등의 조사)	1항	제367조 제1항
	2항	
제317조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제372조 제2항
제318조 (의사록)	1항	제373조 제1항
	2항	
	3항	
	4항	
	5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319조 (주주총회결의의 생략)	1항	
	2항	
	3항	
	4항	
	5항	
제320조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의 생략)		
제2관 종류주주총회		
제321조 (종류주주총회의 권한)		
제322조 (어느 종류의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의 종류주주총회)	1항	제435조 제1항, 제436조
	2항	
	3항	
	4항	
제323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의 정함이 있는 경우)		
제324조(종류주주총회의결의)	1항	제435조 제2항
	2항	
	3항	
제325조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35조 제3항
제325조의 2 (전자제공조치를 취하는 취지의 정관 규정)		
제325조의 3 (전자제공조치)	1항	
	2항	
	3항	
제325조의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의 특칙)	1항	
	2항	
	3항	
	4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325조의 5 (서면교부청구)	1항	
	2항	
	3항	
	4항	
	5항	
제325조의 6 (전자제공조치의 중단)		
제325조의 7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절 주주총회 이외의 기관의 설치		
제326조 (주주총회 이외의 기관의 설치)	1항	제383조 제1항
	2항	
제327조 (이사회 등의 설치의무 등)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제327조의 2 (사외이사의 설치의무)		
제328조 (대회사의 경우에 감사회 등의 설치의무)	1항	
	2항	
제3절 임원 및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제1관 선임		
제329조 (선임)	1항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2항	
	3항	
제330조 (주식회사와 임원 등과의 관계)		제382조 제2항, 제408조의2 제2항, 제415조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331조 (이사의 자격 등)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제331조의 2	1항	
	2항	
	3항	
	4항	
제332조 (이사의 임기)	1항	제383조 제2항
	2항	제383조 제3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제333조 (회계참여의 자격 등)	1항	
	2항	
	3항	
제334조 (회계참여의 임기)	1항	
	2항	
제335조 (감사의 자격 등)	1항	
	2항	제411조
	3항	

일본은행회사법		한국은행상법
제336조 (감사의 임기)	1항	
	2항	
	3항	
	4항	
제337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1항	
	2항	
	3항	
제338조 (회계감사인의 임기)	1항	
	2항	
	3항	
제2관 해임		
제339조 (해임)	1항	제385조 제1항
	2항	
제340조 (감사 등에 의한 회계감사인의 해임)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제3관 선임 및 해임의 절차에 관한 특칙		
제341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주주총회결의)		제385조 제1항
제342조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의 선임)	1항	제382조의2 제1항
	2항	제382조의2 제2항
	3항	제382조의2 제3항
	4항	제382조의2 제4항
	5항	
	6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342조의 2 (감사등위원인 이사등의 선임등에 관한 의견진술)	1항	
	2항	
	3항	
	4항	
제343조 (감사의 선임에 관한 감사의 동의 등)	1항	
	2항	
	3항	
	4항	
제344조 (회계감사인인 선임에 관한 감사의 동의 등)	1항	
	2항	
	3항	
제344조의 2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선임에 관한 감사등위원회의 동의 등)	1항	
	2항	
	3항	
제345조 (회계참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의견의 진술)	1항	
	2항	
	3항	
	4항	
	5항	
제346조 (임원 등에 결원이 생긴 경우의 조치)	1항	제386조 제1항
	2항	제386조 제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347조 (종류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등)	1항	
	2항	
제4절 이사		
제348조 (업무집행)	1항	
	2항	제564조 제1항
	3항	
	4항	
	5항	
제348조의 2 (업무집행의 사외이사에의 위탁)	1항	
	2항	
	3항	
제349조 (주식회사의 대표)	1항	제389조 제1항
	2항	
	3항	제389조 제1항
	4항	제389조 제3항
	5항	
제350조 (대표자의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제389조 제3항
제351조 (대표이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의 조치)	1항	제386조 제1항
	2항	제386조 제2항
	3항	
제352조 (이사의 직무대행자의 권한)	1항	제408조 제1항
	2항	제408조 제2항
제353조 (주식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의 대표)		제394조 제1항
제354조 (표현대표이사)		제395조
제355조 (충실의무)		제382조의3
제356조 (경업 및 이익 상반 거래의 제한)	1항	제397조 제1항
	2항	

일한회사법대조표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357조 (이사의 보고의무)	1항	제412조의2
	2항	
	3항	
제358조 (업무집행에 관한 감사인의 선임)	1항	제467조 제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제359조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등의 결정)	1항	제467조 제3항
	2항	제467조 제4항
	3항	
제360조 (주주에 의한 이사의 행위 유지)	1항	제402조, 제542조의6 제5항
	2항	
	3항	
제361조 (이사의 보수등)	1항	제388조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제5절 이사회		
제1관 권한 등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362조 (이사회의 권한 등)	1항	
	2항	제393조 제1항, 2항
	3항	제562조 제2항
	4항	
	5항	
제363조 (이사회설치회사의 이사의 권한)	1항	제564조 제1항
	2항	제393조 제3항, 4항
제364조 (이사회설치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있어서 회사의 대표)		제394조 제1항
제365조 (경업 및 이사회설치회사와의 거래 등의 제한)	1항	제397조 제1항
	2항	
제2관 운영		
제366조 (소집권자)	1항	제390조 제1항
	2항	제390조 제2항
	3항	
제367조 (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1항	
	2항	
	3항	
	4항	
제368조 (소집절차)	1항	
	2항	
제369조 (이사회의 결의)	1항	제391조 제1항
	2항	제391조 제3항
	3항	제391조의3 제1항, 2항
	4항	
	5항	
제370조 (이사회의 결의의 생략)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371조 (의사록 등)	1항	
	2항	제391조의3 제3항
	3항	
	4항	
	5항	
	6항	
제372조 (이사회에의 보고의 생략)	1항	
	2항	
	3항	
제373조 (특별이사에 의한 이사회 결의)	1항	
	2항	
	3항	
	4항	
제6절 회계참여		
제374조 (회계참여의 권한)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제375조 (회계참여의 보고의무)	1항	
	2항	
	3항	
	4항	
제376조 (이사회에 대한 출석)	1항	
	2항	
	3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377조 (주주총회에서 의견의 진술)	1항	
	2항	
제378조 (회계참여에 의한 계산서류 등의 비치 등)	1항	
	2항	
	3항	
제379조 (회계참여의 보수등)	1항	
	2항	
	3항	
제380조 (비용 등의 청구)		
제7절 감사		
제381조 (감사의 권한)	1항	제412조 제1항
	2항	제412조 제2항
	3항	제412조의5 제1항, 2항
	4항	제412조의5 제3항
제382조 (이사에 대한 보고의무)		
제383조 (이사회에의 출석의무 등)	1항	제391조의2 제1항, 2항
	2항	제414조의4 제1항
	3항	제414조의4 제2항
	4항	
제384조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의무)		제413조
제385조 (감사에 의한 이사의 행위 유지)	1항	제402조
	2항	
제386조 (감사설치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의 대표)	1항	제394조 제1항
	2항	제394조 제2항
제387조 (감사의 보수등)	1항	제415조
	2항	
	3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388조 (비용 등의 청구)		
제389조 (정관의 정함에 의한 감사 범위의 한정)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제8절 감사회		
제1관 권한 등		
제390조	1항	제415조의2 제1항
	2항	
	3항	
	4항	
제2관 운영		
제391조 (소집권자)		
제392조 (소집절차)	1항	
	2항	
제393조 (감사위원회의 결의)	1항	
	2항	
	3항	
	4항	
제394조 (의사록)	1항	
	2항	
제395조 (감사회에 대한 보고의 생략)		
제9절 회계감사인		

일본은행회사법		한국은행상법
제396조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제397조 (감사에 대한 보고)	1항	
	2항	
	3항	
	4항	
	5항	
제398조 (정기주주총회에서 회계감사인의 의견의 진술)	1항	
	2항	
	3항	
	4항	
	5항	
제399조 (회계감사인의 보수등의 결정에 관한 감사의 관여)	1항	
	2항	
	3항	
	4항	
제9절의 2 감사등위원회		
제1관 권한 등		
제399조의 2 (감사등위원회의 권한 등)	1항	제415조의2 제7항, 제542조의11
	2항	
	3항	
	4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399조의 3 (감사등위원회에 의한 조사)	1항	제415조의2 제7항, 제542조의11
	2항	
	3항	
	4항	
제399조의 4 (이사회에의 보고 의무)		
제399조의 5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의무)		제415조의2 제7항, 제413조
제399조의 6 (감사등위원회에 의한 의사행위유지)	1항	
	2항	
제399조의7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있어서 회사의 대표 등)	1항	제394조
	2항	
	3항	
	4항	
	5항	
제2관 운영		
제399조의 8 (소집권자)		
제399조의 9 (소집절차 등)	1항	
	2항	
	3항	
제399조의 10 (감사등위원회의 결의)	1항	
	2항	
	3항	
	4항	
	5항	
제399조의 11 (의사록)	1항	
	2항	
	3항	
	4항	
제399조의 12 (감사등위원회에 대한 보고의 생략)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3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등		
제399조의 13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1항	제393조의2
	2항	
	3항	
	4항	
	5항	
	6항	
제399조의 14 (감사등위원회에 의한 이사회소집)		
제10절 지명위원회등 및 집행임원		
제1관 위원의 선정, 집행임원의 선임 등		
제400조 (위원의 선정 등)	1항	제393조의2 제3항
	2항	
	3항	
	4항	
제401조 (위원의 해임 등)	1항	제392조의2 제2항
	2항	제392조의2 제5항
	3항	
	4항	
제402조 (집행임원의 선임 등)	1항	제408조의2 제1항
	2항	제408조의2 제3항
	3항	제408조의2 제2항
	4항	
	5항	
	6항	
	7항	제408조의3
	8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403조 (집행임원의 해임 등)	1항	제408조의2 제3항
	2항	
	3항	
제2관 지명위원회의 권한 등		
제404조 (위원회의 권한 등)	1항	
	2항	제415조의2 제7항
	3항	
	4항	
제405조 (감사위원회에 의한 조사)	1항	제415조의2 제7항
	2항	
	3항	
	4항	
제406조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제407조 (감사위원에 의한 집행임원등의 행위 유지)	1항	제415조의2 제7항
	2항	
제408조 (위원회설치회사와 집행임원 또는 이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의 대표 등)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제409조 (보수위원회에 의한 보수의 결정방법 등)	1항	
	2항	
	3항	
제3관 지명위원회 등의 운영		
제410조 (소집권자)		제393조의2 제5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411조 (소집 절차 등)	1항	제393조의2 제5항
	2항	
	3항	
제412조 (위원회의 결의)	1항	제393조의2 제5항
	2항	
	3항	
	4항	
	5항	
제413조 (의사록)	1항	
	2항	
	3항	제393조의2 제5항
	4항	
	5항	
제414조 (위원회에 대한 보고의 생략)		
제4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이사의 권한 등		
제415조 (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의 권한)		
제416조 (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회에 권한)	1항	
	2항	
	3항	
	4항	
제417조 (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회에 운영)	1항	
	2항	
	3항	
	4항	
	5항	
제5관 집행임원의 권한 등		
제418조 (집행임원의 권한)		제408조의4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419조 (집행임원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등)	1항	제408조의9
	2항	제382조의3, 제397조 제1항
	3항	
제420조 (대표집행임원)	1항	제408조의5 제1항
	2항	제408조의5 제2항
	3항	
제421조 (표현대표집행임원)		제408조의5 제3항
제422조 (주주에 의한 집행임원의 행위유지)	1항	제408조의5 제2항
	2항	
제11절 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423조 (임원등의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항	제399조 제1항, 제408조의8 제1항, 제414조 제1항
	2항	
	3항	제399조 제2항, 3항
	4항	
제424조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제400조 제1항,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5조 (책임의 일부면제)	1항	
	2항	
	3항	
	4항	
	5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426조 (이사등에 의한 면제에 관한 정관의 정함)	1항	제400조 제2항, 제408조의9, 제415조.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제427조 (책임한정계약)	1항	
	2항	
	3항	
	4항	
	5항	
제428조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특칙)	1항	
	2항	
제429조 (임원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항	제401조 제1항, 제408조 의8 제2항, 제415조
	2항	
제430조 (임원등의 연대책임)		제399조 제1항, 제401조 1항, 제408조의8 제2항, 3항, 제414조 제1항, 제415조
제430조의 2 (보상계약)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430조의 3 (임원 등을 위해 체결되는 보험계약)	1항	
	2항	
	3항	
제5장 계산 등		
제1절 회계의 원칙		
제431조 (회계의 원칙)		제446조의2
제2절 회계장부 등		
제1관 회계장부		
제432조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존)		제29조 제1항, 제33조 제1항, 2항
제433조 (회계장부열람 등의 청구)	1항	제466조 제1항
	2항	제466조 제2항
	3항	
	4항	
제434조 (회계장부의 제출명령)		제32조
제2관 계산서류 등		
제435조 (계산서류 등의 작성 및 보존)	1항	제447조 제1항, 제447조의2
	2항	
	3항	제33조 제3항
	4항	제33조 제1항
제436조 (계산서류 등의 감사 등)	1항	제447조의4
	2항	
	3항	
제437조 (계산서류 등의 주주에 대한 제공)		
제438조 (계산서류 등의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제출 등)	1항	제449조 제1항, 2항
	2항	
	3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439조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의 특칙)		제449조의2
제440조 (계산서류의 공고)	1항	제449조 제3항
	2항	
	3항	
	4항	
제441조 (임시재무제표)	1항	
	2항	
	3항	
	4항	
제442조 (계산서류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항	제448조 1항
	2항	
	3항	제448조 2항
	4항	
제443조 (계산서류 등의 제출명령)		제32조
제3관 연결계산서류		
제444조 (연결계산서류)	1항	
	2항	
	3항	
	4항	
	5항	제447조 2항
	6항	
	7항	
제3절 자본금액 등		
제1관 총칙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445조 (자본금의 액 및 준비금의 액)	1항	제451조 1항
	2항	제451조 2항
	3항	
	4항	제458조, 제459조
	5항	
	6항	
제446조 (잉여금의 액)		
제2관 자본금액의 감소 등		
제447조 (자본금의 감소)	1항	제438조 1항
	2항	
	3항	
제448조 (준비금의 감소)	1항	제461조의2
	2항	
	3항	
제449조 (채권자의 이익)	1항	제439조 제3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제450조 (자본금의 액의 증가)	1항	
	2항	
	3항	
제451조 (준비금의 증가)	1항	
	2항	
	3항	

일본은행회사법		한국은행상법
제452조 (잉여금에 관한 그 밖의 처분)		
제4절 잉여금의 배당		
제453조 (주주에 대한 잉여금의 배당)		제462조 제1항
제454조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의 결정)	1항	제462조 제2항, 제464조의2
	2항	제344조의2
	3항	제464조
	4항	제462조의4
	5항	제462조의3
제455조 (금전분배청구권의 행사)	1항	제462조의4 제2항 1호
	2항	
제456조 (기준주식수를 정한 경우의 처리)		제462조의4 제2항 2호
제457조 (배당재산의 교부방법 등)	1항	
	2항	
	3항	
제458조 (적용제외)		
제5절 잉여금 배당 등을 결정하는 기관의 특칙		
제459조 (잉여금의 배당 등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뜻의 정관 규정)	1항	
	2항	
	3항	
제460조 (주주의 권리 제한)	1항	
	2항	
제6절 잉여금의 배당 등에 관한 책임		
제461조 (배당등의 제한)	1항	
	2항	
제462조 (잉여금의 배당등에 관한 책임)	1항	제462조 제3항
	2항	
	3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463조 (주주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 등)	1항	
	2항	
제464조 (매수청구에 응하여 주식을 취득했던경우의 책임)	1항	
	2항	
제465조 (결손이 생긴 경우의 책임)	1항	
	2항	
제6장 정관의 변경		
제466조		제433조
제7장 사업 양도 등		
제467조 (사업양도 등의 승인 등)	1항	제374조
	2항	제374조
제468조 (사업양도등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1항	
	2항	
	3항	
제469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1항	제374조의2 제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470조 (주식의 매수가액 결정 등)	1항	제374조의2 제2항, 3항
	2항	제374조의2 제4항
	3항	
	4항	제374조의2 제5항
	5항	
	6항	
	7항	
	8항	
제8장 해산		
제471조 (해산의 사유)		제517조
제472조 (휴면회사의 간주해산)	1항	제520조의2 제1항
	2항	제520조의2 제2항
제473조 (주식회사의 계속)		제519조, 제520조의2 제3항
제474조 (해산한 주식회사의 합병 등의 제한)		
제9장 청산		
제1절 총칙		
제1관 청산의 개시		
제475조 (청산의 개시원인)		
제476조 (청산주식회사의 능력)		제542조(제245조)
제2관 청산주식회사의 기관		
제477조 (주주총회 이외 기관의 설치)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478조 (청산인의 선임)	1항	제531조 제1항
	2항	제531조 제2항
	3항	제542조(제252조)
	4항	
	5항	
	6항	
제479조 (청산인의 해임)	1항	제539조 제1항
	2항	제539조 제2항
	3항	
	4항	제531조 제2항
제480조(감사의퇴임)	1항	
	2항	
제481조 (청산인의 직무)		제542조(제254조 제1항)
제482조 (업무집행)	1항	
	2항	제542조(제254조 제2항)
	3항	
	4항	
제483조 (청산주식회사의 대표)	1항	제542조(제254조 제3항)
	2항	
	3항	
	4항	제542조(제255조 제1항)
	5항	제542조(제255조 제2항)
	6항	
제484조 (청산주식회사에 관한 파산절차의 개시)	1항	
	2항	
	3항	
제485조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보수)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486조 (청산인의 청산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1항	제542조(제399조)
	2항	
	3항	
	4항	
제487조 (청산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항	제542조(제401조 1항)
	2항	
제488조 (청산인 및 감사의 연대책임)	1항	제542조(제414조 3항)
	2항	
제489조 (청산인회의 권한 등)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제490조 (청산인회의 운영)	1항	제542조 (제390조)
	2항	
	3항	
	4항	
	5항	제542조 (제391조)
	6항	
제491조 (이사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542조
제3관 재산목록 등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492조 (재산목록등의 작성 등)	1항	제533조 제1항
	2항	
	3항	
	4항	
제493조 (재산목록등의 제출명령)		제533조 제2항
제494조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및 보존)	1항	제533조 제1항
	2항	
	3항	
제495조(대차대조표등의감사등)	1항	제534조 제1항, 2항
	2항	
제496조 (대차대조표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항	제534조 제3항
	2항	제534조 제4항 (제448조 제2항)
	3항	
제497조 (대차대조표 등의 정기주주총회에의 제출 등)	1항	제534조 제5항
	2항	
	3항	
제498조 (대차대조표 등의 제출명령)		제533조 제2항
제4관 채무의 변제 등		
제499조(채권자에대한공고등)	1항	제535조
	2항	
제500조 (채무변제의 제한)	1항	제536조제 1항
	2항	제536조 제2항
제501조 (조건부채권 등에 대한 채무변제)	1항	제542조 (제259조 제4항)
	2항	
	3항	
제502조 (채무변제 전 잔여재산 분배의 제한)		제542조 (제260조)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503조 (청산에서의 제외)	1항	제537조 제1항
	2항	
	3항	제537조 제2항
제5관 잔여재산의 분배		
제504조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사항의 결정)	1항	제538조
	2항	
	3항	
제505조 (잔여재산이 금전 이외의 재산인 경우)	1항	
	2항	
	3항	
제506조 (기준주식수를 정한 경우의 처리)		
제6관 청산사무의 종료 등		
제507조	1항	제540조 제1항
	2항	
	3항	
	4항	제540조 제2항
제7관 장부자료의 보존		
제508조	1항	제541조
	2항	
	3항	
	4항	
제8관 적용제외 등		
제509조	1항	
	2항	
제2절 특별청산		
제1관 특별청산의 개시		
제510조 (특별청산개시의 원인)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511조 (특별청산개시의 신청)	1항	
	2항	
제512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1항	
	2항	
제513조 (특별청산개시 신청의 취하 제한)		
제514조 (특별청산개시의 명령)		
제515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1항	
	2항	
	3항	
제516조(담보권실행절차등의중지명령)		
제517조 (상계의 금지)	1항	
	2항	
제518조	1항	
	2항	
제518조의 2 (공조대상 외국조세채권자의 절차참가)		
제2관 법원에 의한 감독 및 조사		
제519조 (법원에 의한 감독)	1항	
	2항	
	3항	
제520조 (법원에 의한 조사)		
제521조 (법원에 대한 재산목록 등의 제출)		
제522조 (조사명령)	1항	
	2항	
	3항	
제3관 청산인		
제523조 (청산인의 공평성실의무)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524조 (청산인의 해임 등)	1항	
	2항	
	3항	
제525조 (청산인대리)	1항	
	2항	
제526조 (청산인의 보수 등)	1항	
	2항	
제4관 감독위원		
제527조 (감독위원의 선임 등)	1항	
	2항	
제528조 (감독위원에 대한 감독 등)	1항	
	2항	
제529조 (2인 이상의 감독위원의 직무집행)		
제530조 (감독위원에의한조사등)	1항	
	2항	
제531조 (감독위원의 주의의무)	1항	
	2항	
제532조 (감독위원의 보수 등)	1항	
	2항	
	3항	
제5관 조사위원		
제533조 (조사위원의 선임 등)		
제534조 (감독위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관 청산주식회사의 행위의 제한 등		
제535조 (청산주식회사의 행위의 제한)	1항	
	2항	
	3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536조 (사업양도의 제한 등)	1항	
	2항	
	3항	
제537조 (채무변제의 제한)	1항	
	2항	
제538조 (환가의 방법)	1항	
	2항	
	3항	
	4항	
제539조(담보권자가 처분을 해야 할 기간의 지정)	1항	
	2항	
제7관 청산감독상 필요한 처분 등		
제540조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1항	
	2항	
	3항	
제541조(주주명부기재등의금지)	1항	
	2항	
제542조 (임원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1항	
	2항	
제543조 (임원 등의 책임면제 금지)		
제544조 (임원 등의 책임면제 취소)	1항	
	2항	
	3항	
제545조 (임원등책임사정결정)	1항	
	2항	
	3항	
	4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8관 채권자집회		
제546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1항	
	2항	
제547조(채권자에의한소집의청구)	1항	
	2항	
	3항	
제548조 (채권자집회 소집 등의 결정)	1항	
	2항	
	3항	
	4항	
제549조 (채권자집회 소집의 통지)	1항	
	2항	
	3항	
	4항	
제550조 (채권자집회참고서류 및 의결권행사서면의 교부 등)	1항	
	2항	
제551조	1항	
	2항	
제552조 (사채권자집회의 지휘 등)	1항	
	2항	
제553조 (이익을 제기한 의결권의 취급)		
제554조 (채권자집회의 결의)	1항	
	2항	
	3항	
제55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항	
	2항	
	3항	
	4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556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항	
	2항	
	3항	
제557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항	
	2항	
	3항	
제558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항	
	2항	
제559조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등의 출석 등)		
제560조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제561조 (의사록)		
제9관 협정		
제562조 (청산인의 조사결과 등의 채권자집회에 대한 보고)		
제563조 (협정의 신청)		
제564조 (협정의 조항)	1항	
	2항	
제565조 (협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		
제566조 (담보권을 가지는 채권자 등의 참가)		
제567조 (협정의 가결요건)	1항	
	2항	
제568조 (협정의 인가신청)		
제569조 (협정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	1항	
	2항	
제570조 (협정의 효력발생시기)		
제571조 (협정의 효력범위)	1항	
	2항	
제572조 (협정내용의 변경)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10관 특별청산의 종료		
제573조 (특별청산종결의 결정)		
제574조 (파산절차개시의 결정)	1항	
	2항	
	3항	
	4항	
제3편 지분회사		
제1장 설립		
제575조 (정관작성)	1항	제178조, 제179조, 제269조, 제287조의2, 제287조의3
	2항	
제576조 (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 사항)	1항	제179조, 제269조, 제270조, 제287조의3
	2항	
	3항	
	4항	
제577조		
제578조 (합동회사 설립시 출자 이행)		제287조의4 제2항, 3항
제579조 (지분회사의 성립)		제172조, 제287조의5 제1항
제2장 사원		
제1절 사원의 책임 등		
제580조 (사원의 책임)	1항	제212조 제1항, 2항, 제269조
	2항	제279조 제1항, 제287조의7
제581조 (사원의 항변)	1항	제214조 제1항, 제269조
	2항	제214조 제2항, 제269조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582조 (사원의 출자에 관한 책임)	1항	
	2항	제196조, 제269조, 제287조의18
제583조 (사원의 책임을 변경한 경우의 특칙)	1항	제282조
	2항	제280조
	3항	제244조, 제282조
	4항	
제584조 (무한책임사원으로 되는 것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7조
제2절 지분의 양도 등		
제585조 (지분의 양도)	1항	제197조, 제269조, 제276조, 제287조의7
	2항	
	3항	
	4항	
제586조 (지분의 전부를 양도한 사원의 책임)	1항	제225조 제2항, 제269조
	2항	
제587조	1항	
	2항	
제3절 오인행위의 책임		
제588조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 등을 한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1항	제281조 제1항
	2항	제281조 제2항
제589조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자의 책임)	1항	제215조, 제269조
	2항	제269조
제3장 관리		
제1절 총칙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590조 (업무집행)	1항	제200조 제1항, 제269조
	2항	제200조 제2항, 제269조
	3항	제200조 제2항, 제269조
제591조 (업무집행사원을 정관에 정한 경우)	1항	제201조, 제269조, 제287조의12 제2항
	2항	제203조, 제269조
	3항	
	4항	
	5항	제203조, 제269조
	6항	제203조, 제269조
제592조 (사원의 지분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1항	
	2항	
제2절 업무집행사원		
제593조 (업무집행사원과 지분회사와의 관계)	1항	
	2항	
	3항	
	4항	
	5항	
제594조 (경업금지)	1항	제198조 제1항, 제269조, 제287조의10
	2항	
제595조 (이익상반거래 제한)	1항	제199조, 제269조, 제287조의11
	2항	
제596조 (업무집행사원의 지분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597조 (업무집행 유한책임사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210조, 제269조, 제287조의20
제598조 (법인이 업무집행 사원인 경우의 특칙)	1항	제287조의15 제1항
	2항	제287조의15 제2항

일한회사법대조표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599조 (지분회사의 대표)	1항	제207조, 제269조
	2항	
	3항	
	4항	제209조 제1항, 제269조
	5항	제209조 제2항, 제269조
제600조 (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 등의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제210조, 제269조, 제287조의20
제601조 (지분회사와 사원 간의 소에서 회사의 대표)		제211조, 제269조, 제287조의21
제602조		
제3절 업무집행사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제603조	1항	제200조의2 제1항, 제269조, 제287조의13
	2항	제200조의2 제2항, 제269조, 제287조의13
제4장 사원의 가입 및 퇴사		
제1절 사원의 가입		
제604조 (사원의 가입)	1항	제287조의23 제1항
	2항	제287조의23 제2항
	3항	
제605조 (가입한 사원의 책임)		제213조, 제269조
제2절 사원의 퇴사		
제606조 (임의퇴사)	1항	제217조 제1항, 제269조, 제287조의24
	2항	
	3항	제217조 제2항, 제269조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607조 (법정퇴사)	1항	제218조, 제269조, 제287조의25
	2항	
제608조 (상속 및 합병의 경우의 특칙)	1항	제219조 제1항, 제269조, 제287조의26
	2항	
	3항	
	4항	
	5항	
제609조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1항	제224조 제1항, 제269조, 제287조의29
	2항	제224조 제2항, 제269조, 제287조의29
	3항	
제610조 (퇴사에 따른 정관 변경간주)		
제611조 (퇴사에 따른 지분의 환급)	1항	제222조, 제269조, 제287조의28 제1항
	2항	제287조의28 제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제612조 (퇴사한 사원의 책임)	1항	제225조 제1항
	2항	
제613조 (상호 변경의 청구)		제226조, 제269조, 제287조의31
제5장 계산 등		
제1절 회계의 원칙		
제614조		제287조의32
제2절 회계장부		

일본은행회사법		한국은행상법
제615조(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존)	1항	
	2항	
제616조(회계장부의 제출 명령)		
제3절 계산서류		
제617조 (계산서류의 작성 및 보존)	1항	
	2항	제287조의33
	3항	
	4항	제266조, 제269조, 제287조의34 제1항
제618조 (계산서류 열람 등)	1항	제287조의34 제2항
	2항	
제619조 (계산서류 제출명령)		
제4절 자본 감소		
제620조	1항	제287조의36 제1항
	2항	
제5절 이익배당		
제621조 (이익배당)	1항	
	2항	
	3항	제287조의37 제6항
제622조(사원의 손익분배 비율)	1항	제287조의37 제4항
	2항	
제623조 (유한책임사원의 이익배당에 관한 책임)	1항	
	2항	
제6절 출자의 환급		
제624조 (출자의 환급)	1항	
	2항	
	3항	
제7절 합동회사의 계산 등에 관한 특칙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1관 계산서류 열람에 관한 특칙		
제625조		
제2관 자본 감소에 관한 특칙		
제626조 (출자의 환급 또는 지분의 환급을 행하는 경우 자본금의 액의 감소)	1항	
	2항	
	3항	
	4항	
제627조 (채권자 이익)	1항	
	2항	제287조의36 제2항
	3항	
	4항	제287조의36 제2항
	5항	
	6항	
제3관 이익배당에 관한 특칙		
제628조 (이익배당의 제한)		제287조의37 제1항
제629조 (이익배당에 관한 책임)	1항	
	2항	
제630조 (사원에 대한 구상권 제한 등)	1항	
	2항	
	3항	
제631조 (결손이 생긴 경우의 책임)	1항	
	2항	
제4관 출자의 환급에 관한 특칙		
제632조(출자 환급의 제한)	1항	
	2항	
제633조 (출자환급에 관한 사원의 책임)	1항	
	2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634조 (사원에 대한 구상권 제한 등)	1항	
	2항	
제5관 퇴사에 따른 지분반환에 관한 특칙		
제635조 (채권자 이익)	1항	
	2항	
	3항	
	4항	
	5항	
제636조 (업무집행사원의 책임)	1항	
	2항	
제6장 정관의 변경		
제637조 (정관의 변경)		제204조, 제269조, 제287조의16
제638조 (정관변경에 의한 지분회사의 종류 변경)	1항	
	2항	
	3항	
제639조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에 의한 정관의 변경간주)	1항	
	2항	
제640조 (정관 변경시의 출자이행)	1항	
	2항	
제7장 해산		
제641조 (해산사유)		제227조, 제285조제1항, 제287조의38
제642조 (지분회사의 계속)	1항	제229조 제1항, 제285조 제2항, 제287조의40
	2항	제229조 제1항, 제287조의40
제643조(해산한지분회사의합병등의제한)		
제8장 청산		
제1절 청산의 개시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644조 (청산의 개시원인)		
제645조 (청산지분회사의 능력)		제245조, 제269조, 제287조의45
제2절 청산인		
제646조 (청산인 설치)		
제647조 (청산인의 취임)	1항	제251조 제1항, 제287조, 제287조의45
	2항	제251조 제2항, 제269조, 제287조의45
	3항	제252조, 제269조, 제287조의45
	4항	
제648조 (청산인 해임)	1항	
	2항	제261조, 제269조, 제287조의45
	3항	제262조, 제269조, 제287조의45
제649조 (청산인의 직무)		제254조, 제269조, 제287조의45
제650조 (업무집행)	1항	제265조, 제269조, 제287조의45
	2항	제254조 제2항, 제269조, 제287조의45
	3항	
제651조 (청산인과 청산지분회사의 관계)	1항	
	2항	제265조, 제269조, 제287조의45
제652조 (청산인의 청산지분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653조 (청산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265조, 제269조, 제287조의45

일본은행회사법		한국은행상법
제654조 (법인이 청산인인 경우의 특칙)	1항	
	2항	
제655조 (청산지분회사의 대표)	1항	
	2항	
	3항	
	4항	제255조 제1항, 제269조, 제287조의45
	5항	제255조 제2항, 제269조, 제287조의45
	6항	
제656조 (청산지분회사에 관한 파산절차의 개시)	1항	
	2항	
	3항	
제657조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보수)		
제3절 재산목록 등		
제658조 (재산목록 등의 작성 등)	1항	제256조 제1항, 제269조, 제287조의45
	2항	
	3항	제256조 제2항, 제269조, 제287조의45
제659조 (재산목록 등의 제출명령)		
제4절 채무의 변제 등		
제660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등)	1항	
	2항	
제661조 (채무변제의 제한)	1항	
	2항	
제662조 (조건부채권 등에 관한 채무변제)	1항	제259조 제4항, 제269조, 제287조의45
	2항	
	3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663조 (출자이행의 청구)		제258조 제1항, 제269조, 제287조의45
제664조 (채무변제 전 잔여재산 분배의 제한)		제260조, 제269조, 제287조의45
제665조 (청산에서의 제외)	1항	
	2항	
	3항	
	4항	
제5절 잔여재산의 분배		
제666조 (잔여재산 분배비율)		
제6절 청산사무의 종료 등		
제667조	1항	제263조 제1항, 제269조, 제287조의45
	2항	제263조 제2항, 제269조, 제287조의45
제7절 임의청산		
제668조 (재산의 처분방법)	1항	제247조 제1항, 제269조
	2항	
제669조 (재산목록 등의 작성)	1항	제247조 제1항, 제269조
	2항	
제670조 (채권자의 이익)	1항	제247조 제3항, 제269조
	2항	
	3항	
	4항	
	5항	
제671조 (지분 압류채권자의 동의 등)	1항	제247조 제4항, 제269조
	2항	제249조, 제269조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8절 장부자료의 보존		
제672조	1항	제266조 제1항, 제269조, 제287조의45
	2항	제266조 제2항, 제269조, 제287조의45
	3항	
	4항	
	5항	
제9절 사원의 책임의 소멸 시효		
제673조	1항	제267조 제1항, 제269조, 제287조의45
	2항	제267조 제2항, 제269조, 제287조의45
제10절 적용제외 등		
제674조 (적용제외)		
제675조(상속및합병에의한퇴사의특칙)		
제676조 (모집사채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제474조
제4편 사채		
제1장 총칙		
제677조 (모집사채의 청약)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제678조 (모집사채의 배정)	1항	
	2항	
제679조 (모집사채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특칙)		
제680조 (모집사채의 사채권자)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681조 (사채원부)		제488조
제682조 (사채원부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1항	
	2항	
	3항	
	4항	
제683조 (사채원부관리인)		
제684조 (사채원부의 비치 및 열람 등)	1항	
	2항	
	3항	
	4항	
	5항	
제685조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 등)	1항	
	2항	
	3항	
	4항	
	5항	
제686조 (공유자에 의한 권리행사)		
제687조 (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사채의 양도)		
제688조 (사채 양도의 대항요건)	1항	
	2항	
	3항	
제689조 (권리의 추정 등)	1항	
	2항	
제690조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지 않는 사채원부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기록)	1항	
	2항	
제691조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사채원부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기록)	1항	
	2항	
	3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692조 (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사채의 입질)		
제693조 (사채 입질의 대항요건)	1항	
	2항	
제694조 (질권에 관한 사채원부의 기재 등)	1항	
	2항	
제695조 (질권에 관한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1항	
	2항	
	3항	
제695조의2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에 관한 대항요건 등)	1항	
	2항	
	3항	
	4항	
제696조 (사채권의 발행)		
제697조 (사채권의 기재사항)	1항	
	2항	
제698조 (기명식, 무기명식의 전환)		제480조
제699조 (사채권의 상실)	1항	
	2항	
제700조 (이권 흠결의 경우 사채의 상환)	1항	제486조
	2항	
제701조 (사채상환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1항	제487조
	2항	
제2장 사채관리자		
제702조 (사채관리자의 설치)		제480조의2
제703조 (사채관리자의 자격)		제480조의3
제704조 (사채관리자의 의무)	1항	제484조의2
	2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705조 (사채관리자의 권한 등)	1항	제484조
	2항	
	3항	
	4항	
제706조	1항	
	2항	
	3항	
	4항	
제707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제708조 (사채관리자 등의 행위 방식)		
제709조 (2인 이상의 사채관리자가 있는 경우의 특칙)	1항	제485조
	2항	
제710조 (사채관리자의 책임)	1항	제484조의2
	2항	
제711조 (사채관리자의 사임)	1항	제481조
	2항	
	3항	
제712조 (사채관리자가 사임한 경우의 책임)		
제713조 (사채관리자의 해임)		제482조
제714조 (사채관리자 사무의 승계)	1항	제483조
	2항	
	3항	
	4항	
제714조의 2 (사채관리보조자의 설치)		
제714조의 3 (사채관리보조자의 자격)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714조의 4 (사채관리보조자의 권한 등)	1항	
	2항	
	3항	
	4항	
	5항	
제714조의 5 (2인 이상의 사채관리보조자가 있는 경우의 특칙)	1항	
	2항	
제714조의 6 (사채관리자 등과의 관계)		
제714조의 7 (사채관리자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장 사채권자집회		
제715조 (사채권자집회의 구성)		제509조
제716조 (사채권자집회의 권한)		제490조
제717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1항	제491조
	2항	
	3항	
제718조 (사채권자에 의한 소집의 청구)	1항	
	2항	
	3항	
	4항	
제719조 (사채권자집회 소집의 결정)		
제720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통지)	1항	제510조 제1항
	2항	
	3항	
	4항	
	5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721조 (사채권자집회 참고서류 및 의결권 행사 서면의 교부 등)	1항	
	2항	
	3항	
	4항	
제722조	1항	
	2항	
제723조 (의결권의 금액 등)	1항	
	2항	
	3항	
제724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1항	제495조
	2항	
	3항	
제7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항	제510조 제1항
	2항	
	3항	
	4항	
제726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항	
	2항	
	3항	
제727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항	
	2항	
	3항	
제728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항	
	2항	
제729조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 등)	1항	제494조
	2항	
제730조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731조 (의사록)	1항	제510조
	2항	
	3항	
제732조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인가 청구)		제496조
제733조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불인가)		제497조
제734조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	1항	제498조
	2항	
제735조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의 공고)		제499조
제735조의 2 (사채권자집회의 생략)	1항	
	2항	
	3항	
	4항	
제736조 (대표사채권자의 선임 등)	1항	제500조
	2항	
	3항	
제737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의 집행)	1항	제501조
	2항	
제738조 (대표사채권자 등의 해임 등)		제504조
제739조 (사채의 이자 지급 등을 게을리 한 것에 의한 기한의 이익의 상실)	1항	
	2항	
	3항	
제740조 (채권자의 이의절차의 특칙)	1항	
	2항	
	3항	
제741조 (사채관리자 등의 보수 등)	1항	제507조
	2항	
	3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742조 (사채권자집회 등의 비용의 부담)	1항	제508조
	2항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제1장 조직변경		
제1절 통칙		
제743조 (조직변경계획의 작성)		제242조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287조의43, 제604조 제1항, 제607조 제1항
제2절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제744조 (주식회사의 조직변경계획)	1항	제287조의43 제1항, 제604조
	2항	
	3항	
	4항	
제745조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등)	1항	제287조의43 제1항, 제604조
	2항	
	3항	
	4항	
	5항	
	6항	
제3절 지분회사의 조직변경		
제746조 (지분회사의 조직변경계획)		제242조 내지 제244조, 제286조, 제607조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747조 (지분회사의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등)	1항	제242조 내지 제244조, 제286조, 제607조
	2항	
	3항	
	4항	
	5항	
제2장 합병		
제1절 통칙		
제748조 (합병계약의 체결)		제174조 제1항
제2절 흡수합병		
제1관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		
제749조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계약)	1항	제523조, 제523조의2, 제525조
	2항	
	3항	
제750조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의 효력의 발생 등)	1항	제530조 제2항 (제234조, 제235조)
	2항	
	3항	
	4항	
	5항	
	6항	
제2관 지분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		
제751조 (지분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계약)	1항	제230조, 제269조
	2항	
	3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752조 (지분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의 효력 발생 등)	1항	제233조 내지 제235조, 제269조
	2항	
	3항	
	4항	
	5항	
	6항	
제3절 신설합병		
제1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		
제753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계약)	1항	제523조의2, 제524조, 제525조, 제289조 1항
	2항	
	3항	
	4항	
	5항	
제754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의 효력 발생 등)	1항	제530조 제2항 (제234조, 제235조)
	2항	
	3항	
	4항	
	5항	
제2관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		
제755조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계약)	1항	제230조, 제179조, 제269조, 제270조
	2항	
	3항	제179조
	4항	제270조

일한회사법대조표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756조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의 효력 발생 등)	1항	제235조, 제269조
	2항	
	3항	
	4항	
제3장 회사분할		
제1절 흡수분할		
제1관 통칙		
제757조 (흡수분할계약의 체결)		제530조의2 제2항
제2관 주식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흡수분할		
제758조 (주식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흡수분할계약)		제530조의6
제759조 (주식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흡수분할의 효력발생 등)	1항	제530조의10
	2항	제530조의9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제3관 지분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흡수분할		
제760조 (지분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흡수분할계약)		제530조의6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761조 (지분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흡수분할의 효력발생 등)	1항	제530조의10
	2항	제530조의9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제2절 신설분할		
제1관 통칙		
제762조 (신설분할계획의 작성)	1항	제530조의2 제1항, 제530조의4
	2항	제530조의2 제3항, 제530조의4
제2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		
제763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계획)		제530조의5
제764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의 효력의 발생 등)	1항	제530조의10
	2항	제530조의9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	

일본은행회사법		한국은행상법
제3관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		
제765조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계획)	1항	제530조의5, 제179조, 제270조
	2항	제179조
	3항	제270조
	4항	
제766조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의 효력 발생 등)	1항	제530조의10
	2항	제530조의9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제4장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제1절 주식교환		
제1관 통칙		
제767조 (주식교환계약의 체결)		제360조의2 제1항
제2관 주식회사에 발행주식을 취득시키는 주식교환		
제768조 (주식회사에 발행주식을 취득시키는 주식 교환계약)	1항	제360조의3 제3항
	2항	
	3항	
제769조 (주식회사에 발행주식을 취득시키는 주식 교환의 효력발생 등)	1항	제360조의2 제2항
	2항	제360조의3 제1항, 2항
	3항	제360조의2 제2항
	4항	
	5항	
	6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3관 합동회사에 발행주식을 취득시키는 주식교환		
제770조 (합동회사에 발행주식총수를 취득시키는 주식교환계약)	1항	제360조의3 제3항
	2항	
제771조 (합동회사에 발행주식을 취득시키는 주식 교환의 효력발생 등)	1항	제360조의2 제2항
	2항	제360조의3 제1항, 2항
	3항	제360조의2 제2항
	4항	
	5항	
제2절 주식이전		
제772조 (주식이전계획의 작성)	1항	제360조의15 제1항
	2항	
제773조 (주식이전계획)	1항	제360조의16 제1항
	2항	
	3항	
	4항	
	5항	
제774조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등)	1항	제360조의15 제2항
	2항	
	3항	
	4항	
	5항	
제774조의 2 (주식교부계획의 작성)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774조의 3 (주식교부계획)	1항	
	2항	
	3항	
	4항	
	5항	
제774조의 4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양도 신청)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제774조의 5 (주식교부모회사가 양수하는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배정)	1항	
	2항	
제774조의 6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의 양도신청 및 주식교부모회사가 양수하는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배정에 관한 특칙)		
제774조의 7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양도)	1항	
	2항	
제774조의 8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양도시 무효 또는 취소의 제한)	1항	
	2항	
제774조의 9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양도에 관한 규정 준용)		
제774조의 10 (신청이 있었던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수가 하한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774조의 11 (주식교부의 효력발생 등)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제5장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및 주식 이전의 절차		
제1절 조직변경의 절차		
제1관 주식회사의 절차		
제775조 (조직변경계획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항	
	2항	
	3항	
제776조 (주식회사의 조직변경계획의 승인 등)	1항	제604조 제1항
	2항	
	3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777조 (신주예약권매수청구)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제778조 (신주예약권의 가격결정 등)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제779조 (채권자의 이익)	1항	제287조의44, 제608조 (제232조 제1항)
	2항	
	3항	
	4항	제287조의44, 제608조 (제232조 제2항)
	5항	제287조의44, 제608조 (제232조 제3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780조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일의 변경)	1항	
	2항	
	3항	
제2관 지분회사의 절차		
제781조	1항	제242조 제1항
	2항	
제2절 흡수합병 등의 절차		
제1관 흡수합병소멸회사, 흡수분할회사 및 주식교 환완전자회사의 절차		
제782조 (흡수합병계약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항	제360조의4, 제522조의2 제1항
	2항	
	3항	제522조의2 제2항
제783조 (흡수합병계약 등의 승인 등)	1항	제360조의3 제1항, 2항, 제522조, 제530조의3
	2항	
	3항	
	4항	
	5항	
	6항	
제784조 (흡수합병계약 등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 하는 경우)	1항	
	2항	
	3항	
제784조의 2 (흡수합병 등의 유지청구)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785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1항	제360조의5 제1항, 2항, 제522조의3, 제530조의 11 제2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제786조 (주식의 가격결정 등)	1항	제360조의5 제3항(제374 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제787조 (신주예약권 매수청구)	1항	제360조의5 제1항, 2항, 제522조의3, 제530조의 11 제2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788조 (신주예약권의 가격결정 등)	1항	제360조의5 제3항(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제789조 (채권자의 이익)	1항	제527조의5 제1항, 제530조의11 제2항
	2항	
	3항	
	4항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2항), 제530조의11 제2항
	5항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3항), 제530조의11 제2항
제790조 (흡수합병 등의 효력발생일의 변경)	1항	
	2항	
	3항	
제791조 (흡수분할 또는 주식교환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항	제360조의12, 제527조의6 제1항, 제530조의7 제1항
	2항	
	3항	제527조의6 제2항
	4항	
제792조 (잉여금의 배당 등에 관한 특칙)		
제793조 (지분회사의 절차)	1항	제230조, 제269조
	2항	제232조, 제269조
제2관 흡수합병존속회사, 흡수분할승계회사 및 주식교환완전모회사의 절차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794조 (흡수합병계약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항	제360조의4, 제522조의2 제1항
	2항	
	3항	제522조의2 제2항
제795조 (흡수합병계약 등의 인정 등)	1항	제360조의3 제1항, 2항, 제522조, 제530조의3
	2항	
	3항	
	4항	
제796조 (흡수합병계약 등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1항	
	2항	
	3항	
	4항	
제796조의 2 (흡수합병계약 등의 유지청구)		
제797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1항	제360조의5 제1항, 2항, 제522조의3, 제530조의11 제2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제798조 (주식의 가격결정 등)	1항	제360조의5 제3항(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799조 (채권자의 이익)	1항	제527조의5 제1항, 제530조의11 제2항
	2항	
	3항	
	4항	제527조의5 제3항, 제530조의11 제2항 (제232조 제2항)
	5항	제527조의5 제3항, 제530조의11 제2항 (제232조 제3항)
제800조 (소멸회사 등의 주주 등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등이 존속주식회사 등의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1항	제523조의2
	2항	
제801조 (흡수합병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항	제360조의12, 제527조의6 제1항, 제530조의7 제2항
	2항	
	3항	
	4항	제527조의6 제2항
	5항	
	6항	
제802조 (지분회사의 절차)*	1항	제230조, 제269조
	2항	제232조, 제269조
제3절 신설합병 등의 절차		
제1관 신설합병소멸회사, 신설분할회사 및株式이 전환전자회사의 절차		
제803조 (신설합병계약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항	제360조의17, 제522조의2 제1항
	2항	
	3항	제522조의2 제2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804조 (신설합병계약 등의 승인)	1항	제360조의16, 제522조, 제530조의3
	2항	
	3항	
	4항	
	5항	
제805조 (신설분할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06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1항	제360조의22 (제360조의5 제1항, 2항), 제522조의3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제807조 (주식가격의 결정 등)	1항	제360조의22 (제360조의5 제3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808조 (신주예약권매수청구)	1항	제360조의22 (제360조의5 제1항, 2항), 제522조의3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제809조 (신주예약권의 가격결정 등)	1항	제360조의22 (제360조의5 제3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제810조 (채권자의 이익)	1항	제527조의5 제1항
	2항	
	3항	
	4항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2항)
	5항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3항)

일본은행회사법		한국은행상법
제811조 (신설분할 또는 주식이전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항	제360조의22(제360조의12), 제530조의7 제1항
	2항	
	3항	
	4항	
제812조 (잉여금의 배당 등에 관한 특칙)		
제813조 (지분회사의 절차)	1항	제230조, 제269조
	2항	제232조, 제269조
제2관 신설합병설립회사, 신설분할설립회사 및 주식이전완전모회사의 절차		
제814조 (주식회사설립의 특칙)	1항	제530조의4
	2항	
제815조 (신설합병계약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항	제360조의22(제360조의12), 제527조의6 1항
	2항	
	3항	
	4항	제527조의6 제2항(제522조의2 제2항)
	5항	
	6항	
제816조 (지분회사설립의 특칙)	1항	
	2항	
제816조의 2 (주식교부계획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항	
	2항	
	3항	
제816조의 3 (주식교부계획의 승인 등)	1항	
	2항	
	3항	
제816조의 4 (주식교부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 등)	1항	
	2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816조의 5 (주식교부 유지청구)		
제816조의 6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제816조의 7 (주식의 가격결정 등)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제816조의 8 (채권자의 이익)	1항	
	2항	
	3항	
	4항	
	5항	
제816조의 9 (주식교부 효력발생일의 변경)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일한회사법대조표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816조의 10 (주식교부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항	
	2항	
	3항	
제6편 외국회사		
제817조 (외국회사의 일본에서의 대표자)	1항	제614조 제1항
	2항	제614조 제4항(209조)
	3항	
	4항	제614조 제4항(210조)
제818조 (등기 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등)	1항	제616조 제1항
	2항	제616조 제2항
제819조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1항	제616조의2 제1항
	2항	제616조의2 제2항(제289조 제3항 내지 제6항)
	3항	
	4항	
제820조 (일본에 주소를 둔 일본에서의 대표자의 퇴임)	1항	제616조
	2항	
	3항	
제821조 (유사외국회사)	1항	제617조 제1항
	2항	제617조 제2항
제822조 (일본에 있는 외국회사의 재산에 관한 청산)	1항	제620조
	2항	
	3항	
	4항	
제823조 (기타 법률의 적용관계)		제621조
제7편 잡칙		
제1장 회사의 해산명령 등		
제1절 회사의 해산명령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824조 (회사해산명령)	1항	제176조 제1항
	2항	제176조 제3항
	3항	제176조 제4항, 제377조 제1항, 제619조 제1항
	4항	
제825조 (회사의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1항	제176조 제2항, 제619조 제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제826조 (관청등의 법무대신에 대한 통지 의무)		
제2절 외국회사의 거래계속금지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		
제827조 (외국 회사의 거래계속의 금지 또는 영업소 폐쇄의 명령)	1항	제619조 제1항
	2항	제176조
제2장 소송		
제1절 회사의 조직에 관한 소		
제828조 (회사의 조직에 관한 행위무효의 소)	1항	
	2항	
제829조 (신주의 발행등의 부존재 확인의 소)		
제830조 (주주총회등의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	1항	제380조
	2항	
제831조 (주주총회등의 결의취소의 소)	1항	제376조 제1항
	2항	
제832조 (지분회사의 설립취소의 소)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833조 (회사의 해산의 소)	1항	제520조 제1항
	2항	
제834조 (피고)		
제835조 (소의 관할 및 이송)	1항	
	2항	
	3항	
제836조 (담보제공명령)	1항	제377조 제1항
	2항	
	3항	제176조 제4항
제837조 (변론등의 필요적 병합)		
제838조 (인용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		
제839조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의 효력)		제431조 제1항
제840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1항	제432조 제1항
	2항	제432조 제2항
	3항	제429조
	4항	
	5항	
	6항	
제841조 (자기주식 처분무효판결의 효력)	1항	
	2항	
제842조 (신주예약권발행 무효판결의 효력)	1항	
	2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843조 (합병 또는 회사분할의 무효판결의 효력)	1항	제239조 제1항
	2항	제239조 제2항
	3항	제239조 제3항
	4항	제239조 제3항
제844조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무효판결의 효력)	1항	
	2항	
	3항	
	4항	
	5항	
제844조의 2 (주식교부 무효판결의 효력)	1항	
	2항	
제845조 (지분회사의 설립무효 또는 취소판결의 효력)		제194조
제846조 (원고가 패소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제405조
제1절의 2 매도주식 등의 취득무효의 소		
제846조의 2 (매도주식 등의 취득무효의 소)	1항	
	2항	
제846조의 3 (피고)		
제846조의 4 (소의 관할)		
제846조의 5 (담보제공명령)	1항	제377조 제1항
	2항	
제846조의 6 (변론등의 필요적 병합)		
제846조의 7 (인용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제846조의 8 (무효판결의 효력)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846조의 9 (원고가 패소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제405조 제2항
제2절 주식회사에서의 책임추궁 등의 소		
제847조 (책임 추궁 등의 소)	1항	제403조 제1항
	2항	
	3항	제403조 제3항
	4항	제403조 제2항
	5항	
	6항	
	7항	
	8항	
제847조의 2 (구주주에 의한 책임추궁 등의 소)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847조의 3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주주에 의한 책임추궁의 소)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제847조의 4 (책임추궁등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 등)	1항	
	2항	
	3항	
제848조 (소의 관할)		제186조
제849조 (소송참가)	1항	제404조 제1항
	2항	
	3항	제404조 제2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	
제849조의 2 (화해)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850조 (화해)	1항	
	2항	
	3항	
	4항	
제851조 (주주가 아니게 된 사람의 소송수행)	1항	
	2항	
	3항	
제852조 (비용등의 청구)	1항	제405조 제1항
	2항	제405조 제2항
	3항	
제853조 (재심의 소)	1항	제406조 제1항
	2항	제406조 제2항
제3절 주식회사의 임원해임의 소		
제854조 (주식회사의 임원해임의 소)	1항	제385조 제2항
	2항	
	3항	
	4항	
제855조 (피고)		
제856조 (소의 관할)		제186조
제4절 특별청산에 관한 소		
제857조 (임원등의 책임면제의 취소의 소의 관할)		
제858조 (임원등책임사정결정에 관한 이의의 소)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제5절 지분회사의 사원의 제명의 소 등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859조 (지분회사 사원의 제명의 소)		
제860조 (지분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의 소멸의 소)		
제861조 (피고)		
제862조 (소의 관할)		제186조
제6절 청산지분회사의 재산처분의 취소의 소		
제863조 (청산지분회사의 재산처분의 취소의 소)	1항	
	2항	
제864조 (피고)		
제7절 사채발행회사의 변제 등의 취소의 소		
제865조 (사채 발행 회사의 변제 등의 취소의 소)	1항	제511조 제1항
	2항	제511조 제2항
	3항	제512조
	4항	
제866조 (피고)		
제867조 (소의 관할)		제186조
제3장 비송		
제1절 총칙		
제868조 (비송사건의 관할)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제869조 (소명)		
제870조 (진술의 청취)		
제871조 (이유의 부기)		
제872조 (즉시항고)		
제873조 (원재판의 집행정지)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874조 (불복신청의 제한)		
제875조 (비송사건절차법 적용 제외)		
제876조 (최고법원 규칙)		
제2절 신주발행의 무효판단 후의 반환금증감의 절차에 관한 특칙		
제877조 (심문등의 필요적 병합)		
제878조 (재판의 효력)	1항	
	2항	
제3절 특별청산의 절차에 관한 특칙		
제1관 통칙		
제879조 (특별청산 사건의 관할)	1항	
	2항	
	3항	
	4항	
제880조 (특별청산 개시 후의 통상청산사건의 관할 및 이송)	1항	
	2항	
제881조 (소명)		
제882조 (이유의 부기)	1항	
	2항	
제883조 (판결문의 송달)		
제884조 (불복 신청)	1항	
	2항	
	3항	
제885조 (공고)	1항	
	2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886조 (사건에 관한 문서의 열람등)	1항	
	2항	
	3항	
	4항	
	5항	
제887조 (지장 부분의 열람등의 제한)	1항	
	2항	
	3항	
	4항	
	5항	
제2관 특별청산개시의 절차에 관한 특칙		
제888조 (특별청산 개시의 신청)	1항	
	2항	
	3항	
	4항	
제889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1항	
	2항	
	3항	
	4항	
제890조 (특별청산개시의 명령)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891조 (담보권실행 절차등의 중지 명령)	1항	
	2항	
	3항	
	4항	
	5항	
제3관 특별청산실행의 절차에 관한 특칙		
제892조 (조사명령)	1항	
	2항	
	3항	
	4항	
제893조 (청산인의 해임 및 보수등)	1항	
	2항	
	3항	
	4항	
제894조 (감독 위원의 해임 및 보수등)	1항	
	2항	
제895조 (조사위원의 해임 및 보수등)		
제896조 (사업양도 허가의 신청)	1항	
	2항	
제897조 (담보권자가 처분을 하여야 할 기간의 지정)	1항	
	2항	
제898조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등)	1항	
	2항	
	3항	
	4항	
	5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899조 (임원등책임사정결정)	1항	
	2항	
	3항	
	4항	
	5항	
제900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의 신청에 관한 재판)		
제901조 (협정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	1항	
	2항	
	3항	
	4항	
제4관 특별청산종료의 절차에 관한 특칙		
제902조 (특별청산 종결의 청구에 관한 재판)	1항	
	2항	
	3항	
	4항	
제4절 외국회사의 청산절차에 관한 특칙		
제903조 (특별청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절 회사의 해산명령 등의 절차에 관한 특칙		
제904조 (법무대신의 관여)	1항	
	2항	
	3항	
	4항	
제905조 (회사재산에 관련된 보전처분에 관한 특칙)	1항	
	2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906조	1항	
	2항	
	3항	
	4항	
	5항	
제4장 등기		
제1절 총칙		
제907조 (통칙)		제34조
제908조 (등기의 효력)	1항	제37조 제2항
	2항	제37조 제1항
제909조 (변경의 등기 및 소멸의 등기)		
제910조 (등기의 기간)		
제2절 회사의 등기		
제1관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		
제911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1항	제317조 제1항
	2항	
	3항	제289조 제1항
제912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		제179조, 제180조
제913조 (합자회사의 설립등기)		제179조, 제287조의5
제914조 (합동회사의 설립등기)		
제915조 (변경의 등기)	1항	
	2항	
	3항	
제916조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의 본점의 이전의 등기)		
제917조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등의 등기)		제407조
제918조 (지배인의 등기)		제13조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919조 (지분회사의 종류의 변경등기)		
제920조 (조직변경의 등기)		제243조
제921조 (흡수합병의 등기)		제528조 제1항
제922조 (신설합병의 등기)	1항	
	2항	
제923조 (흡수분할의 등기)		
제924조 (신설분할의 등기)	1항	
	2항	
제925조 (주식이전의 등기)		제360조의20
제926조 (해산의 등기)		제228조
제927조 (계속의 등기)		제229조 제2항
제928조 (청산인의 등기)	1항	제253조 제1항
	2항	
	3항	
	4항	
제929조 (청산종료의 등기)		제264조
제2관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제930조에서 제932조까지 삭제		
제3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933조 (외국 회사의 등기)	1항	제614조 제1항
	2항	제614조 제2항, 제616조의2
	3항	
	4항	
	5항	제615조
제934조 (일본에서의 대표자의 선임의 등기등)	1항	제614조의 제3항
	2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935조 (일본에서의 대표자의 주소의 이전의 등기등)	1항	
	2항	
제936조 (일본에서의 영업소설치의 등기등)	1항	
	2항	
제4절 등기의 촉탁		
제937조 (재판에 의한 등기의 촉탁)	1항	
	2항	
	3항	
	4항	
제938조 (특별청산에 관한 재판에 의한 등기의 촉탁)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제5장 공고		
제1절 총칙		
제939조 (회사의 공고방법)	1항	제289조
	2항	
	3항	
	4항	
제940조 (전자공고의 공고기간등)	1항	제289조
	2항	
	3항	
제2절 전자공고조사기관		
제941조 (전자공고 조사)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942조 (등록)	1항	
	2항	
제943조 (결격 사유)		
제944조 (등록 기준)	1항	
	2항	
제945조 (등록의 갱신)	1항	
	2항	
제946조 (조사의 의무등)	1항	
	2항	
	3항	
	4항	
제947조 (전자공고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948조 (사업소의 변경의 신고)		
제949조 (업무규정)	1항	
	2항	
제950조 (업무의 휴·폐지)		
제951조 (재무제표등의 비치 및 열람등)	1항	
	2항	
제952조 (적합명령)		
제953조 (개선명령)		
제954조 (등록의 취소등)		
제955조 (조사기록부등의 기재등)	1항	
	2항	
제956조 (조사기록부등의 인계)	1항	
	2항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957조 (법무대신에 의한 전자공고 조사 업무의 실시)	1항	
	2항	
	3항	
제958조 (보고 및 검사)	1항	
	2항	
	3항	
제959조 (공시)		
제8편 벌칙		
제960조 (이사등의 특별배임죄)	1항	제622조 제1항
	2항	제622조 제2항
제961조 (대표사채권자등의 특별배임죄)		제623조
제962조 (미수죄)		제624조
제963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1항	제625조
	2항	
	3항	
	4항	
	5항	
제964조 (허위문서행사 등의 죄)	1항	제627조 (부실문서행사 죄)
	2항	
제965조 (납입가장죄 등)		제628조
제966조 (주식의 초과발행의 죄)		제629조
제967조 (이사등의 독직죄)	1항	제630조
	2항	
제968조 (주주등의 권리행사에 관한 증수죄)	1항	제631조
	2항	
제969조 (몰수, 추정)		제633조

일본현행회사법		한국현행상법
제970조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1항	제634조의2
	2항	
	3항	
	4항	
	5항	
	6항	
제971조 (국외범)	1항	
	2항	
제972조 (법인의 경우 벌칙의 적용)		제637조
제973조 (업무정지명령위반의 죄)		
제974조 (허위신고등의 죄)		
제975조 (양벌규정)		제634조의3
제976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635조
제977조		
제978조		
제979조		제636조

국문 색인 (가나다 순)

숫자는 조(條)를 나타냄.

[ㄱ]

1에 미달하는 단수의 처리	234
2인 이상의 사채관리보조자가 있는 경우의 특칙	714조의5
가처분명령	352, 420, 483
감독위원	527, 529, 529, 530, 531, 532, 534, 535, 894, 960, 976
감사	2, 33, 38, 39, 40, 41, 43, 44, 45, 46, 53, 54, 55, 88, 90, 91, 92, 93, 94, 108, 112, 207, 284, 307, 309, 314, 316, 326, 327, 329, 333, 335, 336, 337, 340, 343, 344, 345, 346, 347, 357, 359, 368, 369, 370, 372, 375,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5, 396, 397, 398, 399, 404, 423, 425, 429, 436, 438, 441, 444, 477, 480, 488, 490, 495, 497, 511, 512, 516, 522, 530, 540, 541, 542, 543, 573, 746, 753, 763, 773, 828, 831, 836, 847, 849, 870, 874, 911, 917, 937, 943, 960, 976
감사 등에 의한 회계감사인의 해임	340
감사등위원에 의한	

이사행위 유지	399조의6
감사등위원인 이사등의 선임등에 관한 의견진술	342조의2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선임에 관한 감사등위원회의 동의	344조의2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2, 38, 39, 40, 41, 43, 45, 47, 89, 90, 92, 108, 327, 328, 329, 331, 332, 340, 342, 346, 347, 357, 360, 361, 367, 371, 373, 375, 397, 398, 399, 399조의2, 399조의 3, 399조의6, 399조의7, 399조의11, 399 조의13, 399조의14, 425, 426, 436, 441, 444, 459, 477, 478, 482, 490, 746, 753, 763, 773, 831, 849, 854, 870, 911, 917, 937, 960, 966, 976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있어서 회사의 대표	399조의7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회 권한	399조의13
감사등위원회에 대한 보고의 생략	399조의12
감사등위원회에 의한 이사회 소집	399조의14
감사등위원회에 의한 조사	399조의3
감사등위원회의 결의	399조의3, 399조의10
감사등위원회의 권한	399조의2
감사등위원회의 소집권자	399조의8
감사등위원회의 소집절차	399조의9
감사등위원회의 의사록	399조의11

감사등위원회의 이사회에의 보고 의무	399조의4
감사등위원회의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의무	399조의5
감사설치회사	2, 38, 46, 93, 94, 307, 344, 357, 359, 360, 367, 368, 370, 371, 372, 375, 381, 385, 386, 388, 425, 426, 436, 438, 441, 459, 482, 490, 495, 497, 746, 753, 763, 828, 846조의2, 849
감사설치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의 대표	386
감사에 대한 보고	397
감사에 의한 이사의 행위 유지	385
감사위원에 의한 집행임원등의 행위유지	407
감사위원회	2, 48, 340, 346, 375, 397, 398, 399, 400, 404, 405, 408, 416, 436, 441, 444
감사위원회에 의한 조사	405
감사의 임기	336
감사의 자격	335
감사회	2, 316, 326, 328, 340, 343, 344, 346, 357, 375, 390, 391, 392, 393, 395, 397, 398, 399, 477
감사회설치회사	2, 39, 327, 327조의2, 335, 340, 343, 344, 346, 357, 375, 389, 390, 394, 397, 398, 399, 478, 911
검사인	33, 52, 87, 207, 213, 284, 286, 306, 358, 870, 874, 960, 963, 976

검사인 선임	33, 306, 358
결격 사유	943
결산보고서	507, 976
결손	309, 449, 465, 631
결의집행자	737, 738, 741, 865, 961, 976
경업 및 이익 상반 거래의 제한	356
경업금지	12, 17, 21, 594
계산서류	2, 337, 374, 378, 396, 429, 435, 436, 437, 438, 439, 440, 442, 443, 449, 459, 460, 465, 617, 618, 619, 625, 779, 789, 799, 810
계산서류등의 감사	436
공개회사	2, 36, 67, 108, 109, 115, 129, 158, 162, 201, 202, 215, 240, 297, 299, 303, 305, 306, 309, 327, 331, 332, 360, 389, 402, 422, 426, 469, 477, 479, 522, 784, 785, 796, 797, 828, 849, 854
공개회사의 모집주식의 배정	206조의2
공고	2, 116, 118, 124, 158, 168, 169, 170, 181, 195, 198, 201, 218, 219, 220, 229, 240, 273, 274, 275, 293, 426, 429, 440, 449, 469, 472, 487, 499, 627, 635, 660, 670, 706, 714, 720, 721, 735, 776, 777, 779, 780, 783, 785, 787, 789, 790, 797, 799, 804, 806, 808, 810, 819, 820, 849, 885, 890, 898, 901, 902, 911, 912, 913, 914, 922, 924, 925, 933, 939, 940, 941, 944, 947, 964, 976
공고방법	2, 440, 449, 627, 635, 670, 779, 789,

	799, 810, 819, 911, 912, 913, 914, 933, 939
공유자에 의한 권리행사	106, 237, 686
공인회계사	33, 207, 284, 333, 337, 396, 943
공증인	30, 33, 59
공평성실의무	523
과태료	976, 977, 978, 979
과태료에 처할 행위	976
구상권	463, 630, 634
구주주에 의한 책임추궁등의 소	847조의2
국외법	971
권리추정	131, 258
금전분배청구권	309, 446, 454, 455, 459, 505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290, 698
기준주식수	456, 506

[ㄴ]

납입가장죄등	965
납입금액	58, 63, 199, 200, 201, 208, 212, 238, 239, 246, 285, 676, 677
납입금의 보관증명	64
납입을 가장한 설립시모집주식의 인수인의 책임	102조의2
누적투표	89
누적투표에 의한 설립시 이사의 선임	89
누적투표에 의한 이사의 선임	342

[ㄷ]

다른 종류주식	108, 109
단원미만주식	189, 192, 193, 194,
단원미만주주	189, 192, 193, 194, 847,
단원주식수	2, 40, 41, 43, 44, 45, 72, 89, 101, 116, 188, 190, 194, 195, 308, 322, 342, 911
단원주식수	2, 40, 41, 43, 44, 45, 72, 89, 101, 116, 188, 190, 191, 194, 195, 308, 322, 342, 911
단주의 처리	283
담보권	500, 516, 522, 537, 538, 539, 547, 548, 564, 566, 571, 891, 897
담보권실행 절차등의 중지명령	891
담보권자	538, 539, 897
담보제공명령	836
대리상	16, 17, 18, 19, 20
대표사채권자	736, 737, 738, 741, 865, 961, 976
대표사채권자의 선임	736
대표이사	47, 122, 149, 216, 250, 270, 289, 349, 350, 351, 352, 354, 362, 363, 425, 482, 483, 491, 870, 874, 911, 917, 937, 960, 976
대표집행임원	46, 48, 122, 149, 216, 250, 270, 289, 416, 420, 421, 425, 870, 874, 911, 917, 937, 960, 976
대표청산인	482, 489, 491, 870, 874, 928, 937, 938, 960, 976
대회사	2, 328, 348, 362, 440, 444, 477

대회사의 감사위원회등의 설치 의무	328
등기	22, 34, 429, 472, 487, 492, 494, 496, 508, 515, 578, 583, 586, 612, 672, 673, 750, 818, 820, 827,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등기의 촉탁	937, 938
등록주식질권자	124, 149, 150, 152, 153, 154, 168, 169, 170, 181, 187, 196, 197, 198, 218, 219, 221, 279, 457, 776, 783, 804, 840, 842, 844

[ㄱ]

매도주식등의 취득	179조의9, 179조의10
매도주식등의 취득무효의 소	846조의2, 846조의3, 846조의4, 846조의5, 846조의7, 846조의8, 846조의9
매도주식등의 취득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	179조의10
매도주식등의 취득유지청구	179조의7
매도주주등에 대한 통지	179조의4
매도청구	174, 175, 176, 194
매매가격의 결정청구	179조의8
매매가액	177
매수가액	470
매수청구	116, 117, 118, 119, 192, 464, 469, 777,

	778
매수청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책임	464
명의인	221, 224, 227, 230, 963
모집사채	676, 677, 678, 679, 680
모집사항	199, 200, 201, 202, 203, 207, 238, 239, 240, 241, 242
모집사항의 결정	199, 200, 207, 238, 239
모집신주예약권	238, 239, 241, 242, 243, 244, 245, 246, 285
모집신주예약권의 배정	243
모집신주예약권의 배정등에 관한 공개회사 특칙	244조의2
모집신주예약권의 청약 및 배정	244
모집주식배정	204
모집주식의 인수	203, 206, 206조의2, 211
모집주식의 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의 제한	211
모집주식의 주주가 되는 시기	209
모집주식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특칙	205
모회사	2, 31, 81, 82, 135, 252, 318, 319, 371, 378, 394, 413, 433, 442, 496, 684, 767, 768, 770, 773, 784, 787, 791, 800, 803, 808, 809, 811, 814, 844, 851, 868
모회사 등	2
모회사 주식의 취득금지	135
무기명식의 신주예약권증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294
무한책임사원	576, 583, 584, 588, 589, 638, 639, 744, 751, 755, 760, 765
무효판결의 효력	842, 843, 844, 846조의8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5

[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116, 182조의4, 469, 785, 797, 806,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469, 816조의6
발기인 등의 책임의 면제	55
발기인 등의 출자이행을 가장한 경우의 책임	52조의2
발기인	25, 26, 27, 28, 31, 32, 33, 34, 36, 37, 38, 40, 41, 42, 43, 44, 45, 46,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2, 63, 64, 65, 67, 68, 70, 74, 75, 76, 77, 78, 81, 82, 83, 85, 87, 89, 93, 94, 95, 102, 103, 542, 847, 911, 960, 966, 976
발기인의 책임	103
발행가능종류주식총수	101, 108, 114, 322, 911
발행가능주식총수	37, 98, 101, 113, 184, 322, 746, 753, 763, 773, 911
배당 등의 제한	461
배당재산	2, 108, 309, 446, 454, 455, 456, 457, 459, 462, 758, 760, 763, 765
배당재산의 교부방법	457
벌칙	972
법원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등의 결정	307, 359
법인격	3
법정퇴사	607
변경의 등기	909, 915
변론 등의 필요적 병합	846조의6
보고의무	357, 375, 382, 384, 406, 419
보상계약	399조의13, 416, 430조의2
보수위원회	2, 48, 404, 409
보전처분	513, 522, 540, 542, 825, 868, 872, 886, 898, 905, 907, 938, 976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4
불공정한 납입금액으로 신주예약권을 인수한 자 등의 책임	285
불공정한 납입금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등의 책임	212
불복신청	874, 884
불복신청의 제한	874
불인가	569, 574, 733, 735, 901
비송사건	868, 870, 871, 875, 876
비송사건의 관할	868
비용 등의 청구	380, 388

[스]

사업양도	24, 467, 468, 469, 470, 536, 896
사외감사	2, 335, 427, 478, 911, 976

사외이사	2, 373, 400, 425, 427, 478, 911
사외이사 설치의무	327조의2
사원	2, 31, 33, 81, 82, 207, 234, 252, 284, 318, 319, 333, 335, 337, 371, 376, 377, 378, 379, 394, 398, 400, 413, 433, 442, 478, 496, 575, 576, 578,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8, 621, 622, 624,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8, 639, 640, 641, 642, 647, 648, 650, 651, 654, 655, 656, 658, 663, 664, 665, 667, 671, 672, 673, 675, 684, 744, 745, 746, 747,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60, 761, 765, 766, 770, 771, 795, 796, 800, 824, 825, 827, 828, 832, 833, 834, 845, 859, 860, 863, 868, 912, 913, 914, 917, 937, 943, 964, 976
사원의 가입	604
사원의 책임	580, 583, 586, 602, 605, 612, 633, 636
사원의 퇴사	639
사원의 항변	581
사채 입질의 대항요건	693
사채	2, 107, 119, 167, 170, 171, 173, 179, 179조의2, 234, 236, 243, 244, 248, 254, 267, 272, 275, 278, 279, 280, 292, 399 조의13, 429, 487, 489, 676, 677, 678, 679, 681, 682,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의2, 696, 697, 698, 700, 701, 702, 704, 705, 706, 710, 712, 714, 715, 718, 723, 728, 734, 736, 739, 744, 745, 746, 747,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8, 759, 760, 763, 764, 765, 766, 768, 769, 770, 771, 773, 774, 777, 778, 787, 788, 796, 808, 809, 828, 865, 867, 868, 870, 874, 937, 964, 968, 976
사채관리보조자	676, 714조의2, 714조의3, 714조의4, 717, 718, 720, 729, 731, 737, 740, 741, 976
사채관리자	676,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7, 718, 720, 729, 731, 737, 740, 741, 865, 870, 976
사채관리자의 권한	705
사채권	249, 676, 681, 682, 687, 688, 689, 692, 693, 694, 695의2, 696, 697, 698, 699, 700, 705, 718, 720, 723, 976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	685
사채권자에 의한 소집의 청구	718
사채권자집회	676, 706, 707, 710, 711,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3, 724, 726,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2, 865, 968, 976
사채권자집회 결의 생략	735조의2
사채발행회사	682, 684, 688, 690, 691, 693, 694, 695, 696, 697, 700, 705, 706, 710, 711, 712,

	713, 714, 717, 718, 720, 723, 729, 731, 733, 735, 739, 740, 741, 742, 865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 등	729
사채원부	681, 682, 683, 684, 685, 688, 690, 691, 693, 694, 695, 695의2, 976
사채원부관리인	683, 976
사채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701
사해사업양도에 관련된 양수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의 청구	23조의2
상계의 금지	517
상인간의 사업 양도 또는 양수	24
상행위	5
상호	6, 7, 8, 9, 22, 23, 27, 203, 216, 242, 289, 576, 613, 677, 697, 744, 746, 749, 751, 753, 755, 758, 760, 763, 765, 768, 770, 773, 785, 787, 789, 797, 799, 806, 808, 810, 911, 912, 913, 914, 930, 946, 978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311, 556, 726
서면교부청구	325조의5
설립	1, 2, 25, 26, 28, 32, 37, 38, 39, 40, 43, 46, 47, 48, 53, 56, 58, 66, 68, 72, 73, 84, 87, 93, 94, 99, 100, 101, 103, 236, 445, 467, 575, 576, 578, 753, 754, 755, 756, 763, 764, 765, 766, 773, 814, 816, 824, 828, 832, 834, 839, 843, 851, 911, 914, 922, 924, 925, 930, 933, 937
설립비용	28

설립시 감사	33, 38, 39, 43, 44, 45, 46, 53, 88, 91, 92, 93, 94, 753, 763, 773, 960
설립시 위원	48
설립시 이사등	44, 88, 90, 91, 93, 94
설립시 이사등에 의한 조사	93
설립시 이사등의 선임	88, 90
설립시 임원등의 선임	38, 40, 45
설립시 회계감사	38, 39, 43, 88, 91, 753, 763, 773
설립시 회계참여	38, 39, 43, 45, 88, 91, 753, 763, 773
설립시대표이사의 선정	47
설립시모집주식	58, 59, 60, 61, 62, 63, 102
설립시발행주식	25, 28, 32, 33, 34, 35, 36, 37, 40, 41, 43, 44, 45, 50, 51, 57, 58, 63, 72, 77, 84, 86, 89, 90, 92, 97, 100, 101, 102, 234
설립시위원의 선정	48
설립시임원등의 선임 또는 해임의 효력	45
설립시임원등의 선임 방법	40
설립시임원등의 해임	42, 43
설립시임원등의 해임방법	43
설립절차	46, 93, 102
설립절차등의 특칙	102
설치의무	327, 328
성년피후견인이 이사로 취임	331조의2
소송참가	849, 968
소의 관할	835, 848, 856, 857, 862, 867
소집권자	366, 367, 383, 391, 410, 417, 490, 721

소집절차	69, 297, 300, 306, 368, 376, 392, 411, 547, 718, 733, 831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424
순자산액	141, 142, 144, 167, 193, 283, 458, 467, 468, 635, 796
시장가격	33, 161, 167, 193, 197, 207, 234, 283, 284, 455, 505
신설분할	2, 135, 236, 272, 293, 322, 416, 445, 762, 763, 764, 765, 766, 804, 805, 807, 808, 810, 811, 813, 815, 828, 834, 843, 924, 930, 937, 976
신설합병 등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806
신설합병 등의 신주예약권매수청구	808
신설합병 등의 신주예약권의 가격결정	809
신설합병 등의 유지청구	805조의2
신설합병 등의 주식의 가격결정	807
신설합병 등의 채권자의 이익	810
신설합병	2, 753, 754, 755, 756, 804, 806, 807, 808, 809, 810, 813, 815, 828, 834, 843, 922, 930, 937, 976
신설합병계약 등의 승인	804
신주발행등의 부존재 확인의 소	829
신주예약권	2, 107, 113, 114, 116, 118, 119, 151, 167, 170, 171, 173, 234, 236, 237, 238, 239, 241, 242, 243, 247, 249, 250, 251,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5, 267, 268, 269, 270, 271, 272, 272의2, 273, 274, 275,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7, 292, 293, 294, 425, 429, 487, 744, 745, 746, 747,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8, 759, 760, 763, 764, 765, 768, 769, 773, 774, 775, 777, 778, 783, 787, 788, 796, 804, 808, 809, 828, 829, 834, 839, 842, 870, 911, 915, 922, 937, 964, 968, 976
신주예약권 매수청구	9, 118, 119, 777, 787, 788, 808, 809
신주예약권무상배정	277, 278, 279, 322
신주예약권무상배정의 효력발생	279
신주예약권부사채	2, 107, 118, 119, 167, 170, 171, 173, 179, 179조의2, 236, 238, 242, 243, 244, 245, 248, 249, 254, 256, 258, 267, 272, 275, 275, 278, 280, 293, 294, 429, 487, 746, 747, 749, 750, 753, 754, 758, 759, 763, 764, 768, 769, 773, 774, 777, 778, 787, 788, 789, 796, 808, 809, 810, 828, 842, 870, 937, 964, 968
신주예약권부사채권	119, 249, 255, 256, 258, 267, 268, 280, 292, 293, 778, 788, 809, 842
신주예약권에 관련된 납입 등을	
가장한 경우 이사 등의 책임	286조의3
신주예약권에 관련된 납입	
등을 가장한 신주예약권자	
등의 책임	286조의2

신주예약권원부	249, 250, 251, 252, 253, 257, 259, 260, 263, 268, 269, 270, 271, 272의2, 294, 976
신주예약권원부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250
신주예약권원부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270
신주예약권원부의 비치 및 열람	252
신주예약권의 가격결정	119, 778, 788, 809
신주예약권의 발행	828, 829, 834
신주예약권의 양도	254, 255, 257
신주예약권의 입질	267, 268, 272
신주예약권의 입질의 효과	272
신주예약권의 주주가 되는 시기	282
신주예약권의 출자된 재산 등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 이사 등의 책임	286
신주예약권의 행사	236, 272, 280, 284, 285, 911, 915
신주예약권자가 되는 시기	245
신주예약권증권	119, 236, 249, 255, 256, 257, 258, 267, 268, 280, 288, 290, 291, 293, 294, 425, 778, 809, 842, 976
신주예약권증권의 기재사항	289
신주예약권증권의 제출에 관한 공고	293
신탁재산	154의2, 272의2, 695의2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에 관한 대항요건	695조의2

[o]

양도등승인청구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양도제한주식	2, 134, 136, 137, 138, 140, 174, 179조 의9, 199, 200, 204, 205, 238, 244, 309, 769, 771, 783, 784, 795, 796, 804
양도한주식	2, 134, 136, 137, 138, 140, 174, 199, 200, 204, 238, 309, 769, 771, 783, 784, 795, 796, 804
양도회사의 경업금지	21
양벌규정	975
양수회사의 책임	22
업무의 집행	213, 286, 348, 482, 833, 859
업무정지	33, 284, 333, 973
업무집행	213, 286, 348, 350, 358, 362, 416, 418, 462, 482, 489, 590, 597, 650
업무집행사원	12, 17, 585, 591, 592, 593, 594, 595, 596, 599, 603, 636, 860, 861, 862
업무집행사원과 지분회사의 관계	593
업무집행사원을 정관에 정한 경우	591
업무집행의 사외이사에의 위탁	348조의2
연결계산서류	374, 396, 444, 879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80, 317, 560, 730
연대책임	54, 430, 488
외국회사	2, 5, 10, 135, 155, 467,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7, 868, 870, 903,

	905,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76, 978
원고가 패소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846, 846조의9
위원의 선정	400, 416
위원의 해임	401, 416
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의 권한	415
위원회의 권한	404
유가증권	20, 32, 46, 93, 207, 284, 444, 819
유사의국회사	821
유치권	20, 522
유한책임사원	576, 580, 583, 585, 588, 589, 597, 623, 638, 639, 744, 751, 755, 760, 765
의견의 진술	345, 377, 398, 519
의결권의 금액 등	723
의결권의 대리행사	74, 310, 555, 725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77, 313, 558, 728
의결권한주식	115
의사록	81, 318, 369, 371, 393, 394, 412, 413, 561, 731, 976
의장	79, 315
의장의 권한	79, 315
이권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 사채의 상황	700
이사 등의 설명의무	314
이사	2, 12, 17, 33, 38, 39, 40, 41, 43, 44, 45, 46, 47, 48, 52, 53, 54, 55, 88, 89, 90, 91,

92, 93, 94, 108, 112, 120, 171, 180, 190,
 195, 197, 199, 200, 202, 207, 212, 213,
 234, 238, 239, 241, 284, 285, 286, 295,
 296, 297, 298, 299, 301, 302, 303, 305,
 307, 309, 314, 316, 319, 320, 326, 329,
 331, 332, 333, 335, 337, 342, 343, 344,
 345, 347, 348, 349, 352, 353, 354, 355,
 356, 357, 359, 360, 361, 362, 363, 365,
 366, 367, 368, 369, 370, 372, 373, 374,
 375, 377, 381, 382, 383, 384, 385, 386,
 389, 395, 396, 397, 399, 400, 402, 404,
 406, 407, 408, 413, 414, 415, 416, 417,
 423, 425, 426, 428, 429, 437, 438, 439,
 444, 447, 448, 459, 462, 467, 478, 483,
 489, 490, 491, 542, 594, 746, 753, 763,
 773, 795, 828, 831, 836, 847, 849, 854,
 870, 911, 917, 943, 947, 960, 966, 967,
 972, 976

이사등에 의한 면제에 관한 정관의 정함	426
이사등의 특별배임죄	960
이사의 보고의무	357
이사의 보수등	361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한 모집사항의 결정에 관한 특칙	202조의2
이사의 임기	332, 459
이사의 자격 등	331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특칙	428

이사의 직무대행자의 권한	352
이사회	2, 108, 139, 140, 157, 163, 165, 168, 169, 178, 183, 186, 195, 197, 200, 201, 202, 204, 213, 234, 239, 240, 241, 243, 265, 273, 274, 276, 278, 286, 295, 298, 299, 323, 326, 327,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6, 382, 383, 400, 401, 402, 403, 406, 408, 411, 412, 416, 417, 418, 419, 420, 423, 426, 436, 441, 444, 454, 459, 462, 465, 489, 491, 976
이사회 등의 설치의무	327, 399조의13, 416
이사회설치회사	2, 47, 68, 108, 139, 140, 157, 163, 165, 168, 169, 178, 183, 186, 195, 197, 200, 204, 234, 239, 243, 265, 273, 274, 276, 278, 295, 298, 303, 305, 306, 309, 313, 323, 327, 331, 348, 349, 362, 363, 364, 365, 367, 370, 371, 373, 376, 378, 382, 419, 426, 436, 437, 438, 441, 442, 447, 448, 454, 49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 생략	372
이사회 결의	157, 165, 178, 195, 197, 201, 202, 213, 234, 240, 241, 276, 286, 298, 369, 370, 373, 400, 401, 402, 403, 418, 454
이사회 권한 등	362
이사회 권한	362, 416
이유부기	871, 882
이의절차	740
이익공여	120, 970

이익배당	621, 623, 628, 629, 630, 631
이익배당	621, 623, 628, 629, 630, 631
이익상반거래	595
이익상반거래 제한	595
인가	449, 568, 569, 570, 574, 732, 735, 751, 858, 901
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	51, 211
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의 제한	51, 211
인용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846조의7
일시이사	870, 874, 937, 960, 966, 976
일시청산인	870, 874, 937, 960,
임시계산서류	374, 378, 396, 429, 441, 442, 461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	399조의13, 416
임원등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346
임원등을 위하여 체결되는 보험계약	416, 430조의3
임원등의 연대책임	430
임원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29
임원등의 책임의 일부면제	425
임원등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23
임원등책임사정결정	522, 545, 858, 899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주주총회결의	341

임의퇴사	606
잉여금의 금액	446, 450, 451, 461
잉여금의 배당 등에 관한 책임	462
잉여금의 배당 등에 관한 특칙	792, 812
잉여금의 배당	2, 105, 108, 151, 197, 452, 453, 454, 459, 461, 462, 465, 758, 760, 763, 765, 792, 812, 963
잉여금의 배당등에 관한 책임	462
잉여금의 배당등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뜻의 정관규정	459

[즈]

자기 상호	9
자기신주예약권	255, 256, 259, 276, 280
자기주식	113, 114, 128, 129, 132, 178, 194, 199, 210, 221, 308, 358, 433, 446, 461, 522, 828, 829, 833, 834, 841
자본금	2, 32, 199, 236, 445, 446, 447, 448, 449, 450, 620, 626, 627, 632, 749, 753, 758, 763, 768, 773, 828, 834, 911, 914, 976
자본금의 감소	447, 626, 627
자본금의 증가	450
자회사	2, 120, 135, 163, 333, 335, 337, 358, 371, 374, 381, 389, 394, 396, 405, 413, 427, 444, 478, 530, 768, 769, 771, 773, 774, 782, 783, 787, 791, 794, 796, 799, 800, 801, 803, 804, 806, 808, 811, 844, 863, 970

자회사 등	2, 206조의2
자회사로부터의 주식의 취득	163
잔여재산의 분배	105, 108, 151, 189, 481, 504, 505, 666
장부자료	508, 672, 874
재산목록 등	487, 492, 493, 521, 562, 658, 659, 669, 951, 976
재심의 소	853
재판에 의한 등기의 촉탁	937, 938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	171, 219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	173조의2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효력의 발생	173
전자공고	2, 911, 912, 913, 914, 933, 939, 940, 941, 942, 944, 946, 947, 948, 949, 950, 953, 954, 955, 956, 957, 959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312, 557, 727
전자제공조치	325조의2, 325조의3, 325조의4
전자제공조치의 중단	325조의6
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사항	27
정관의 변경	33, 37, 52, 73, 95, 96, 99, 100, 101, 110, 111, 113, 114, 116, 118, 164, 184, 190, 191, 195, 218, 219, 221, 226, 227, 604, 610, 637, 638, 639, 640, 745, 747, 752, 761, 771

정관의 작성	26
정기주주총회에서 회계감사인의 의견 진술	398
조건부채권	501, 662
조사명령	522, 533, 892
조사위원	522, 533, 534, 573, 887, 895, 960, 976
조직변경	2, 151, 219, 272, 293, 743, 744, 745, 746, 747, 775, 776, 777, 778, 779, 780, 781, 828, 834, 920, 937, 976
조직변경계획	743, 744, 746, 775, 776, 781
종류주식발행회사	2, 28, 32, 40, 43, 58, 72, 73, 84, 99, 100, 101, 110, 111, 115, 116, 117, 121, 138, 140, 142, 156, 157, 158, 159, 160, 164, 166, 167, 170, 171, 175, 176, 178, 179 조의2, 180, 182, 182조의2, 182조의4, 183, 184, 185, 186, 187, 188, 191, 192, 194, 195, 197, 199, 200, 202, 214, 216, 217, 218, 219, 221, 226, 227, 234, 236, 238, 239, 241, 277, 278, 279, 309, 322, 323, 746, 749, 751, 753, 758, 763, 768, 770, 773, 783, 784, 785, 795, 797, 804, 806, 911
종류주주총회	2, 44, 45, 84, 92, 108, 111, 116, 124, 162, 188, 189, 199, 200, 230, 238, 239, 321, 322, 323, 324, 325, 347, 469, 782, 783, 785, 794, 795, 797, 803, 804, 806, 830, 831, 854, 922, 924, 925, 963, 968, 976
종류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347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경우	323
종류창립총회	44, 84, 85, 86, 90, 92, 100, 101, 102, 347, 830, 831, 911, 963, 968, 976
종류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한 설립시 이사등의 선임	90
종류창립총회의 소집 및 결의	85
주권	117, 121, 128, 129, 131, 141, 142, 146, 147, 153, 166, 189, 193, 198,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3, 470, 786, 798, 807, 840, 844, 976
주권불소지	217
주권상실등록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976
주권상실등록일	221, 225, 228, 229, 229, 230
주권상실등록자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2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20
주권의 기재사항	216
주권의 무효	228
주권의 발행	215, 217
주권의 적용제외	233
주권의 제출에 관한 공고	219
주권의 출	219, 220, 844
주소	4, 27, 59, 68, 121, 126, 130, 147, 148, 150, 152, 198, 203, 221, 225, 230, 232,

	242, 249, 253, 257, 268, 269, 271, 457, 576, 598, 654, 677, 681, 685, 688, 693, 694, 744, 749, 751, 753, 755, 758, 760, 765, 768, 770, 785, 787, 789, 797, 799, 806, 808, 810, 817, 820, 822, 911, 912, 913, 914, 928, 933, 935, 937, 944
주식	2, 25, 37, 73, 100, 101,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3, 114, 116, 117, 118, 121, 124, 126, 127, 128, 130, 131, 132, 133, 134, 135, 137, 146, 147, 148, 151, 152, 153, 154의2, 155, 156, 157, 159, 161, 162, 163, 164, 165, 167, 169, 170, 171, 173, 174, 175, 176, 177, 180, 182, 183, 184, 186, 187, 188, 189, 191, 193, 194, 197, 198, 199, 201, 202, 207, 210, 211, 212, 214, 215, 216, 217, 218, 219, 221, 224, 226, 227, 230, 234, 235, 236, 238, 239, 241, 243, 272, 275, 278, 282, 283, 284, 294, 298, 308, 309, 313, 322, 332, 336, 342, 358, 360, 422, 429, 447, 448, 454, 456, 461, 464, 465, 467, 468, 469, 479, 487, 504, 505, 506, 509, 522, 532, 744, 746, 747, 749, 750, 751, 753, 754, 755, 758, 759, 760, 763, 764, 765, 768, 769, 770, 771, 773, 774, 783, 785, 786, 791, 792, 794, 795, 796, 797, 798, 799, 801, 802, 804, 806, 807, 811, 812, 828, 829, 833, 839, 840, 841, 842, 844, 847, 851, 854, 870, 879, 911, 915, 937, 963, 964, 965, 966, 976
주식교부 무효판결의 효력	844조의2

주식교부 유지청구	816조의5
주식교부	234,
주식교부 효력발생일의 변경	816조의9
주식교부계획	399조의13, 774조의3, 416
주식교부계획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816조의2, 816조의10
주식교부계획의 승인 등	816조의3
주식교부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 등	816조의4
주식교부계획의 작성	774조의2
주식교부모회사가 양수하는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배정	774조의5
주식교부의 효력발생 등	774조의11
주식교부자회사 주식의 양도	774조의4, 774조의6, 774조의7, 774조의9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양도시 무효 또는 취소의 제한	774조의8
주식 병합의 주주에 대한 통지	181
주식 병합의 효력의 발생	182
주식가격의 결정	182조의5, 470, 786, 807, 870
주식교환	2, 151, 154, 219, 234, 236, 272, 293, 309, 322, 445, 767, 768, 769, 770, 771, 782, 783, 784, 787, 791, 799, 802, 828, 834, 844, 847조의2, 849, 851, 937, 976
주식교환계약	293, 416, 767, 768, 770, 782, 783, 828, 834
주식등매도청구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	179조의5
주식등매도청구의 철회	179조의6
주식매수청구	116, 117, 469, 470, 785, 786, 797, 798, 806, 807
주식무상배정	116, 151, 185, 186, 187, 189, 234, 322
주식병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	182조의2
주식병합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	182조의6
주식병합의 유지청구	182조의3
주식양도	127, 128, 130, 157
주식의 가격결정	117, 786, 798, 807, 816조의7
주식의 경매	197
주식의 병합	132, 151, 152, 180, 215, 219, 235
주식의 분할	116, 132, 151, 152, 183, 191, 215, 235
주식의 입질	146, 147, 151
주식의 초과발행죄	966
주식이전	2, 151, 154, 219, 234, 236, 272, 293, 309, 322, 416, 445, 772, 773, 804, 808, 811, 828, 834, 844, 847조의2, 849, 851, 925, 930, 937, 976
주식이전계획	234, 293, 772, 773, 803
주식인수인의 권리	50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	750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계획	763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계약	753
주식회사설립의 특칙	814
주식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흡수분할계약	758
주식회사에 발행주식총수를	
취득시키는 주식교환계약	768
주식회사와 임원 등과의 관계	330
주식회사의 계속	473
주식회사의 대표	349
주식회사의 모회사등	2
주식회사의 모회사등의	
자회사등	2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911
주식회사의 성립	2, 28, 30, 31, 34, 49, 51, 74, 81, 82, 102, 828, 829, 834, 937
주식회사의 임원해임의 소	854, 855, 856, 937
주식회사의 주식교부의 무효의 소	937
주주가 아니게 된 자의 소송수행	851
주주등의 권리행사에 관한	
증수죄	968
주주명부	121, 122, 123, 124, 125, 126, 130, 132, 133, 137, 147, 148, 149, 150, 152, 154 의2, 184, 198, 217, 218, 221, 222, 230, 251, 294, 457, 541, 844, 976
주주명부관리인	252, 911, 976
주주명부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122
주주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	463

주주에 대한 통지의 생략	196
주주에 의한 소집의 청구	297
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367
주주에 의한 이사행위의 유지	360
주주에 의한 집행임원의 행위유지	422
주주에 의한 책임추궁 등의 소	847
주주에게 주식배정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202, 204
주주의 권리	105, 124, 460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120, 970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자의 소송수행	851
주주의 책임	104
주주의 평등	109
주주제안권	303
주주총회 이외의 기관의 설치	326
주주총회 이외의 기관의 설치	326
주주총회	2, 72, 84, 105, 108, 115, 116, 124, 139, 140, 156, 160, 162, 163, 165, 168, 169, 171, 172, 175, 180, 183, 186, 188, 189, 190, 199, 200, 201, 204, 213, 230, 238, 239, 240, 243, 265, 273, 274, 278, 286, 295, 296, 297, 298, 299, 300,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3, 325, 326, 340, 342, 343, 344, 345, 347, 353,

	356, 358, 359, 361, 364, 365, 377, 379, 384, 387, 389, 404, 408, 416, 419, 425, 426, 427, 433, 441, 454, 462, 465, 467, 468, 469, 479, 492, 507, 522, 782, 785, 794, 795, 796, 797, 803, 806, 830, 831, 832, 834, 854, 879, 922, 924, 925, 937, 963, 968, 976
주주총회결의	44, 92, 108, 140, 160, 171, 173, 175, 184, 191, 199, 202, 213, 241, 286, 295, 309, 319, 329, 332, 339, 341, 347, 349, 355, 361, 379, 387, 416, 425, 447, 448, 450, 451, 452, 454, 460, 462, 466, 467, 468, 469, 471, 473, 478, 483, 783, 785, 795, 796, 797, 804
주주총회결의의 생략	319
주주총회등의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	830
주주총회등의 결의취소의 소	831, 834, 937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의 생략	320
주주총회에서 의견 진술	377
주주총회의 소집	296, 297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검사인의 선임	306
주주총회참고서류 및 의결권행사서면의 교부 등	301
준비금	32, 199, 236, 445, 446, 447, 448, 449, 451, 749, 753, 758, 763, 773, 976
준비금의 감소	448
즉시향고	512, 540, 541, 542, 872, 873, 882, 884,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6, 898, 900, 901, 902, 904, 905
증권발행신주예약권	249, 250, 255, 256, 257, 267, 268, 270, 272의2, 280, 288, 289, 290, 292
증명자	52, 213, 286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	2, 46, 48, 108, 120, 122, 149, 212, 213, 213조의3, 216, 250, 270, 285, 286, 286조의3, 289, 327, 328, 331, 332, 340, 346, 360, 367, 371, 372, 373, 374, 375, 377,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7, 408, 413, 415, 416, 417, 418, 419, 421, 422, 423, 425, 426, 436, 441, 444, 462, 477, 478, 482, 490, 846조의2, 849, 911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와 집행임원 또는 이사간의 소에서 회사의 대표	408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이사의 권한	415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이사회운영	417
지명위원회등에 대한 보고의 생략	414
지명위원회등의 권한	404
지명위원회등의 소집권자	410
지명위원회등의 소집절차	411
지명위원회등의 의사록	413
지배인	2, 10, 11, 12, 207, 284, 331, 333, 335, 348, 362, 374, 381, 389, 396, 400, 404,

	405, 427, 478, 482, 489, 530, 591, 918, 960, 972, 976
지배인의 등기	918
지분의 양도	585
지분회사	575, 576, 577, 579, 580, 581, 583, 584, 586, 587,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7, 618, 620, 621, 623, 624, 637, 638, 640, 641, 642, 643, 644, 645, 655, 668, 669, 670, 671, 744, 745, 3절 746, 747, 751, 752, 755, 756, 760, 761, 765, 766, 781, 783, 793, 802, 813, 828, 832, 833, 834, 845, 859, 860, 861, 862, 919, 937, 940, 964, 976
지분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계약	751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계획	765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의 효력발생	766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계약	755
지분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흡수분할계약	760
지분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흡수분할의 효력발생	761
지분회사의 계속	642

지분회사의 설립취소의 소	832, 937
지분회사의 조직변경	747
지분회사의 조직변경계획	746
지분회사의 조직변경효력의 발생 등	747
지장부분	887
지정매수인	133, 138, 140, 142, 143, 144, 145, 870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등의 등기	917
진술의 청구	870
질권에 관한 사채원부	694, 695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의 선임	342
집행임원	2, 12, 17, 48, 120, 207, 212, 213, 284, 285, 286, 295, 314, 333, 335, 337, 371, 372, 374, 375, 377, 396, 397, 400,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1, 414,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5, 426, 427, 428, 429, 462, 478, 490, 594, 824, 828, 836, 849, 870, 874, 911, 917, 937, 943, 960, 966, 972, 976
집행임원의 감사위원에 대한 보고의무	419
집행임원의 권한	418
집행임원의 선임	402, 416
집행임원의 해임	403, 416

[츠]

창립총회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8,

	79, 80, 81, 82, 83, 84, 86, 87, 88, 89, 91, 92, 93, 94, 96, 97, 98, 100, 101, 102, 830, 831, 911, 963, 968, 976
채권자	22, 23, 31, 81, 125, 154, 252, 272, 318, 319, 371, 378, 380, 388, 394, 404, 413, 442, 449, 463, 484, 496, 499, 500, 503, 511, 512, 514, 515, 516, 517, 522, 523, 524, 537, 540, 541, 543, 547, 549, 559, 562, 566, 569, 571, 573, 574, 581, 583, 586, 609, 612, 625, 627, 630, 634, 635, 656, 660, 661, 665, 670, 671, 673, 706, 740, 759, 761, 764, 766, 775, 779, 782, 789, 791, 793, 794, 799, 801, 803, 810, 811, 813, 815, 820, 824, 825, 827, 828, 832, 836, 840, 863, 865, 888, 896, 968
채권자의 이의	816조의8
채권자집회	546, 547, 548, 549, 550, 552, 553, 554, 556, 557, 559, 560, 561, 562, 563, 567, 900, 968, 976
채무변제	500, 501, 502, 537, 649, 661, 662, 664
채무인수	23
책임의 일부면제	425
책임추궁등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	847조의4
책임한정계약	427
청산	473, 475, 476, 499, 503, 508, 510, 514, 519, 520, 540, 541, 542, 543, 562, 642, 644, 645, 660, 665, 667, 670, 672, 822, 868, 887, 903, 929, 938

청산사무	494, 496, 507, 520, 523, 524, 667
청산인	477, 478, 479,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7, 500, 504, 505, 507, 508, 511, 512, 516, 522, 523, 524, 525, 526, 530, 540, 541, 542, 543, 562, 573,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61, 667, 672, 822, 828, 831, 847, 849, 870, 874, 893, 896, 928, 937, 938, 960, 966, 976
청산인대리	525, 960, 976
청산인의 업무의 집행	482
청산인의 취임	478, 647
청산인회	108, 323, 477, 478, 486, 489, 490, 491, 492, 495, 504, 505, 507, 976
청산인회의 운영	490
청산주식회사의 능력	476
청산주식회사의 대표	483
청산지분회사	645, 646, 647, 650, 651, 652, 655, 656, 657, 658, 660, 661, 662, 663, 664, 665, 667, 669, 670, 671, 672, 673, 674, 675, 863, 874, 928, 929, 937, 976
청산지분회사의 재산처분의 취소의 소	863
최종사업연도	2
최종완전모회사등의 주주에 의한 특정책임추궁의 소	847조의3
출석의무	383

출자	27, 28, 34, 35, 36, 38, 40, 41, 43, 44, 45, 46, 50, 59, 93, 199, 208, 209, 236, 281, 578, 582, 604, 608, 611, 624, 626, 632, 633, 634, 640, 663, 666, 751, 755, 760, 765, 859, 870, 913
출자된 재산 등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의 이사 등의 책임	286
출자의 이행	34, 35, 36, 38, 40, 41, 43, 44, 45, 46, 50, 59, 93, 208, 209, 640
출자의 이행을 가장한 경우의 이사등의 책임	213조의3
출자의 이행을 가장한 모집주식인수인의 책임	213조의2
출자의 환급	624, 626, 632, 633, 634
출자재산등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 이사등의 책임	213
충실의무	355
취득대가	171, 760, 763, 765
취득조항부주식의 취득	151, 170, 189, 219
취득청구권부주식	2, 100, 111, 114, 151, 166, 167
취득항부주식	2, 100, 111, 114, 151, 168, 169, 170, 189, 219

[특]

퇴사에 따른 지분의 환급	611
특별대리인	707, 708, 729
특별이사	373, 383, 911
특별이사에 의한 이사회 결의	373

특별이익	28
특별지배주주 대상회사의 승인	179조의3
특별지배주주 주식등매도청구의 방법	179조의2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	제4절의2
특별청산	510, 514, 522, 523, 536, 540, 545, 546, 573, 574, 706, 882, 884, 903, 938
특별청산개시의 명령	513, 514, 515, 516, 519, 521, 535, 536, 537, 540, 541, 542, 543, 544, 545, 562, 880, 886, 890, 938
특별청산개시의 신청	511, 512, 513, 514, 517, 518, 540, 541, 542, 544, 574, 888, 890
특정 주주로부터의 취득	160, 164

[표]

표현대표이사	354
표현대표집행임원	421
표현대표집행임원	421
표현지배인	13

[하]

합동회사	2, 6, 575, 578, 583, 588, 60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8, 639, 640, 665, 744, 751, 755, 757, 762, 763, 764, 765, 766, 767, 770, 771, 793, 801, 802, 813, 815, 914, 916, 917, 924, 928
합동회사에 발행주식총수를	

취득시키는 주식교환계약	770
합동회사의 설립등기	578, 914
합명회사의 설립등기	912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에 의한 정관의 변경간주	639
합자회사의 설립등기	913
해산	471, 472, 473, 474, 475, 478, 607, 641, 642, 643, 644, 647, 668, 669, 670, 671, 673, 714, 750, 752, 824, 833, 834, 926, 937
해산한 지분회사의 합병 등의 제한	643
해임	11, 42, 43, 44, 45, 48, 91, 92, 309, 339, 340, 341, 344, 345, 348, 362, 390, 401, 403, 404, 416, 420, 479, 482, 489, 524, 528, 591, 648, 713, 714, 738, 825, 854, 870, 874, 893, 894, 895, 937, 938
허위신고	974
현물출자	33, 46, 52, 93, 207, 208, 212, 284, 285, 286
협정	563, 564, 565, 567, 568, 569, 570, 571, 572, 574, 901
협정의 인가	901
화해	386, 408, 535, 706, 850, 865, 849조의2
환가	538
회계감사인	2, 38, 39, 40, 43, 45, 88, 91, 309, 316, 326, 327, 328, 329, 330, 337, 338, 339, 340, 344, 345, 346, 372, 395, 396, 397,

	398, 399, 404, 414, 416, 423, 425, 427, 429, 436, 441, 444, 490, 746, 753, 763, 773, 911, 967, 976
회계감사인설치회사	2, 38, 327, 389, 396, 436, 438, 439, 441, 444, 459, 746, 753, 763, 773, 911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의 특칙	439
회계감사인의 권한	396
회계감사인의 보수등의 결정에 관한 감사의 관여	399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의안내용의 결정	344
회계감사인의 임기	338
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337
회계장부	374, 389, 396, 432, 433, 434, 615, 616, 976
회계장부열람	433
회계장부의 출명령	434, 616
회계참여	2, 38, 39, 40, 43, 45, 88, 91, 207, 284, 314, 316, 326, 329, 333, 334, 335, 337, 345, 372,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9, 395, 396, 400, 404, 409, 414, 416, 423, 425, 427, 429, 478, 490, 753, 763, 773, 870, 874, 911, 917, 937, 960, 976
회계참여설치회사	2, 38, 327, 334, 374, 376, 378, 380, 381, 399조의2, 399조의3, 399조의9, 404, 746, 753, 763, 773, 911
회계참여의 권한	374

회계참여의 보고의무	375
회계참여의 임기	334
회계참여의 자격 등	333
회사	2
회사의 공고방법	939
회사의 조직에 관한 소	834, 835, 836, 837, 838, 839, 846
회사의 조직에 관한 행위무효의 소	828
회사의 해산의 소	833, 937
회사조직에 관한 행위무효의 소	828
회사해산명령	824
효력발생일	117, 218, 227, 293, 447, 448, 463, 467, 469, 470, 744, 745, 747, 749, 750, 752, 758, 759, 760, 761, 768, 769, 770, 771, 775, 776, 777, 778, 780, 781, 782, 783, 785, 786, 788, 790, 791, 793, 795, 796, 797, 800, 801, 802
휴면회사의 간주해산	472
흡수분할	2, 135, 155, 236, 272, 293, 322, 416, 445, 474, 643, 757, 758, 759, 760, 761, 782, 784, 786, 787, 789, 791, 793, 795, 799, 801, 802, 828, 834, 843, 923, 937, 976
흡수합병	2, 749, 750, 751, 752,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3, 795, 796, 797, 799, 800, 801, 802, 828, 834, 843, 937, 976
흡수합병 등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797
흡수합병 등의 유지청구	796조의2
흡수합병 등의 정지청구	784조의2
흡수합병 등의 주식의 가격결정	798
흡수합병계약 등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784, 796
흡수합병계약등의 승인	783, 796
흡수합병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785

일본어 색인

숫자는 조(條)를 나타냄.

[あ]

預合い	965
ある種類又は特定の事項の委任を受けた使用人	14, 960
委員の解職	401, 416
委員の選定	400, 416
委員会の権限	404
委員会設置会社の取締役の権限	415
異議手続	740
意見の陳述	345, 377, 398, 519
一時取締役	870, 874, 937, 960, 966, 976
一時清算人	870, 874, 937, 960
訴えの管轄	835, 848, 856, 857, 862, 867
売渡しの請求	174, 175, 176, 194
売渡株主等に対する通知	179条の4
売渡株式等の取得	179条の9, 179条の10
売渡株式等の取得に関する書面等の備置き及び閲覧	179条の10
売渡株式等の取得の無効の訴え	846条の2, 846条の3, 846条の4, 846条の5, 846条の7, 846条の8, 846条の9
売渡株式等の取得をやめることの請求	179条の7
延期又は続行の決議	80, 317, 560, 730
陳述の聴取	870
親会社	2, 31, 81, 82, 135, 252, 318, 319, 371,

	378, 394, 413, 433, 442, 496, 684, 767, 768, 770, 773, 784, 787, 791, 800, 803, 808, 809, 811, 814, 844, 851, 868
親会社株式の取得の禁止	135
親会社等	2
[か]	
会社	2
会社の解散の訴え	833, 937
会社の解散命令	824
会社の公告方法	939
会社の使用人	9, 16
会社の組織に関する行為の無 効の訴え	828
会社の組織に関する訴え	834, 835, 836, 837, 838, 839, 846
会計監査人	2, 38, 39, 40, 43, 45, 88, 91, 309, 316, 326, 327, 328, 329, 330, 337, 338, 339, 340, 344, 345, 346, 372, 395, 396, 397, 398, 399, 404, 414, 416, 423, 425, 427, 429, 436, 441, 444, 490, 746, 753, 763, 773, 911, 967, 976
会計監査人の任期	338
会計監査人の報酬等の決定に 関する監査役の関与	399
会計監査人の権限	396
会計監査人の資格	337
会計監査人の選任等に関する 議案の内容の決定	344
会計監査人設置会社	2, 38, 327, 389, 396, 436, 438, 439, 441, 444, 459, 746, 753, 763, 773, 911
会計監査人設置会社の特則	439

会計参与	2, 38, 39, 40, 43, 45, 88, 91, 207, 284, 314, 316, 326, 329, 333, 334, 335, 337, 345, 372,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9, 395, 396, 400, 404, 409, 414, 416, 423, 425, 427, 429, 478, 490, 753, 763, 773, 870, 874, 911, 917, 937, 960, 976
会計参与の権限	374
会計参与の資格等	333
会計参与設置会社	2, 38, 327, 334, 374, 376, 378, 380, 381, 399条の2, 399条の3, 399条の9, 404, 746, 753, 763, 773, 911
会計参与の任期	334
会計参与の報告義務	375
会計帳簿	374, 389, 396, 432, 433, 434, 615, 616, 976
会計帳簿の閲覧	433
会計帳簿の提出命令	434, 616
外国会社	2, 5, 10, 135, 155, 467,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7, 868, 870, 903, 905,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76, 978
価格	470
解散	471, 472, 473, 474, 475, 478, 607, 641, 642, 643, 644, 647, 668, 669, 670, 671, 673, 714, 750, 752, 824, 833, 834, 926, 937
解散した持分会社の合併等 の制限	643
解任	11, 42, 43, 44, 45, 48, 91, 92, 309, 339, 340, 341, 344, 345, 348, 362, 390, 401,

	403, 404, 416, 420, 479, 482, 489, 524, 528, 591, 648, 713, 714, 738, 825, 854, 870, 874, 893, 894, 895, 937, 938
株券喪失登録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976
株券喪失登録日	221, 225, 228, 229, 229, 230
株券喪失登録者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2
株券の提出	219, 220, 844
株券の提出に関する公告	219
株券の提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	220
株券の無効	228
株券の発行	215, 217
株券の記載事項	216
株券の適用除外	233
株券不所持	217
株式	2, 25, 37, 73, 100, 101,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3, 114, 116, 117, 118, 121, 124, 126, 127, 128, 130, 131, 132, 133, 134, 135, 137, 146, 147, 148, 151, 152, 153, 154의2, 155, 156, 157, 159, 161, 162, 163, 164, 165, 167, 169, 170, 171, 173, 174, 175, 176, 177, 180, 182, 183, 184, 186, 187, 188, 189, 191, 193, 194, 197, 198, 199, 201, 202, 207, 210, 211, 212, 214, 215, 216, 217, 218, 219, 221, 224, 226, 227, 230, 234, 235, 236, 238, 239, 241, 243, 272, 275, 278, 282, 283, 284, 294, 298, 308, 309, 313, 322, 332, 336, 342, 358, 360, 422, 429, 447, 448, 454, 456, 461, 464, 465,

	467, 468, 469, 479, 487, 504, 505, 506, 509, 522, 532, 744, 746, 747, 749, 750, 751, 753, 754, 755, 758, 759, 760, 763, 764, 765, 768, 769, 770, 771, 773, 774, 783, 785, 786, 791, 792, 794, 795, 796, 797, 798, 799, 801, 802, 804, 806, 807, 811, 812, 828, 829, 833, 839, 840, 841, 842, 844, 847, 851, 854, 870, 879, 911, 915, 937, 963, 964, 965, 966, 976
株式移転	2, 151, 154, 219, 234, 236, 272, 293, 309, 322, 416, 445, 772, 773, 804, 808, 811, 828, 834, 844, 847条の2, 849, 851, 925, 930, 937, 976
株式移転計画	234, 293, 772, 773, 803
株式会社が存続する吸収合併	750
株式会社と役員等との関係	330
株式会社に権利義務を承継させる吸収分割の効力の発生	759
株式会社に権利義務を承継させる吸収分割契約	758
株式会社に発行済株式を取得させる株式交換契約	768
株式会社の代表	349
株式会社の役員解任の訴え	854, 855, 856, 937
株式会社の成立	2, 28, 30, 31, 34, 49, 51, 74, 81, 82, 102, 828, 829, 834, 937
株式会社の継続	473
株式会社の設立の特則	814
株式会社の設立の登記	911
株式会社を設立する新設分割計画	763

株式会社を設立する新設合併	
契約	753
株式交付	234
株式交付親会社が譲り受ける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	
割当て	774条の5
株式交付計画	399条の13, 774条の3, 416
株式交付計画に関する書面等の	
備置き及び閲覧	816条の2, 816条の10
株式交付計画の作成	774条の2
株式交付計画の承認等	816条の3
株式交付計画の承認を要し	
ない場合等	816条の4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	
譲渡しの無効又は	
取消しの制限	774条の8
株式交付の効力の発生等	774条の11
株式交付の効力発生日の変更	816条の9
株式交付の無効判決の効力	844条の2
株式交付の無効の訴え	937
株式交付をやめることの請求	816条の5
株式等売渡請求に関する書面	
等の備置き及び閲覧	179条の5
株式等売渡請求の撤回	179条の6
株式の価格の決定	816条の7
株式の併合	132, 151, 152, 180, 215, 219, 235
株式の併合に関する事項に関す	
る書面等の備置き及び閲覧	182条の2
株式の併合に関する書面等の備	
置き及び閲覧	182条の6
株式の併合をやめることの請求	182条の3

株式の併合効力の発生	182
株式の併合株主に対する通知	181
株式の価格の決定	117, 786, 798, 807
株式の価格の決定	182条の5, 470, 786, 807, 870
株式の分割	116, 132, 151, 152, 183, 191, 215, 235
株式の引受人の権利	50
株式の消却	976
株式の競売	197
株式の譲渡	127, 128, 130, 157
株式の質入れ	146, 147, 151
株式の超過発行の罪	966
株式交換	2, 151, 154, 219, 234, 236, 272, 293, 309, 322, 445, 767, 768, 769, 770, 771, 782, 783, 784, 787, 791, 799, 802, 828, 834, 844, 847条の2, 849, 851, 937, 976
株式交換契約	293, 416, 767, 768, 770, 782, 783, 828, 834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し	774条の4, 774条の6, 774条の7, 774条の9
株式買取請求	116, 117, 469, 470, 785, 786, 797, 798, 806, 807
株式無償割当て	116, 151, 185, 186, 187, 189, 234, 322
株主総会	2, 72, 84, 105, 108, 115, 116, 124, 139, 140, 156, 160, 162, 163, 165, 168, 169, 171, 172, 175, 180, 183, 186, 188, 189, 190, 199, 200, 201, 204, 213, 230, 238, 239, 240, 243, 265, 273, 274, 278, 286, 295, 296, 297, 298, 299, 300,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3, 325, 326, 340, 342, 343, 344, 345, 347, 353, 356, 358, 359, 361, 364, 365, 377, 379,

	384, 387, 389, 404, 408, 416, 419, 425, 426, 427, 433, 441, 454, 462, 465, 467, 468, 469, 479, 492, 507, 522, 782, 785, 794, 795, 796, 797, 803, 806, 830, 831, 832, 834, 854, 879, 922, 924, 925, 937, 963, 968, 976
株主総会における意見の陳述	377
株主総会の招集	296, 297
株主総会の招集手続等に関する 検査役の選任	306
株主総会の決議	44, 92, 108, 140, 160, 171, 173, 175, 184, 191, 199, 202, 213, 241, 286, 295, 309, 319, 329, 332, 339, 341, 347, 349, 355, 361, 379, 387, 416, 425, 447, 448, 450, 451, 452, 454, 460, 462, 466, 467, 468, 469, 471, 473, 478, 483, 783, 785, 795, 796, 797, 804
株主総会の決議の省略	319
株主総会への報告の省略	320
株主総会以外の機関の設置	326
株主総会参考書類及び議決権 行使書面の交付等	301
株主総会等の決議の不存在又は 無効の確認の訴え	830
株主総会等の決議の取消しの 訴え	831, 834, 937
株主でなくなった者の訴訟追行	851
株主等の権利の行使に関する贈 収賄罪	968
株主に対する求償権の制限	463

株主に対する通知の省略	196
株主による取締役の行為の差止め	360, 422
株主による招集の請求	297
株主による責任追及等の訴え	847
株主に株式の割当てを受ける権 利を与える場合	202, 204
株主の平等	109
株主の権利	105, 124, 460
株主の権利の行使に関する利益 の供与	120, 970
株主の責任	104
株主名簿	121, 122, 123, 124, 125, 126, 130, 132, 133, 137, 147, 148, 149, 150, 152, 154の 2, 184, 198, 217, 218, 221, 222, 230, 251, 294, 457, 541, 844, 976
株主名簿管理人	252, 911, 976
株主名簿記載事項を記載した書 面の交付	122
仮処分命令	352, 420, 483
過料に	976, 977, 978, 979
過料に処すべき行為	976
換価	538
監査委員による執行役等の行 為の差止め	407
監査委員会	48, 340, 346, 375, 397, 398, 399, 400, 404, 405, 408, 416, 436, 441, 444
監査委員会による調査	405
監査役	2, 33, 38, 39, 40, 41, 43, 44, 45, 46, 53, 54, 55, 88, 90, 91, 92, 93, 94, 108, 112, 207, 284, 307, 309, 314, 316, 326, 327, 329, 333, 335, 336, 337, 340, 343, 344, 345,

	346, 347, 357, 359, 368, 369, 370, 372, 375,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5, 396, 397, 398, 399, 404, 423, 425, 429, 436, 438, 441, 444, 477, 480, 488, 490, 495, 497, 511, 512, 516, 522, 530, 540, 541, 542, 543, 573, 746, 753, 763, 773, 828, 831, 836, 847, 849, 870, 874, 911, 917, 937, 943, 960, 976
監査役による取締役の行為の	
差止め	385
監査役に対する報告	397
監査役の任期	336
監査役の資格	335
監査役会	2, 316, 326, 328, 340, 343, 344, 346, 357, 375, 390, 391, 392, 393, 395, 397, 398, 399, 477
監査役会設置会社	2, 39, 327, 327条の2, 335, 340, 343, 344, 346, 357, 375, 389, 390, 394, 397, 398, 399, 478, 911
監査役等による会計監査人	
の解任	340
監査役設置会社	2, 38, 46, 93, 94, 307, 344, 357, 359, 360, 367, 368, 370, 371, 372, 375, 381, 385, 386, 388, 425, 426, 436, 438, 441, 459, 482, 490, 495, 497, 746, 753, 763, 828, 846条の2, 849
監査役設置会社と取締役との間	
の訴えにおける会社の代表	386
監督委員	527, 529, 529, 530, 531, 532, 534, 535,

	894, 960, 976
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選 任に関する監査等委員会 の同意	344条の2
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等の 選任等についての意見の 陳述	342条の2
監査等委員による取締役の行為 の差止め	399条の6
監査等委員会による取締役会の 招集	399条の14
監査等委員会による調査	399条の3
監査等委員会の取締役会への報 告義務	399条の4
監査等委員会の株主総会に対す る報告義務	399条の5
監査等委員会の権限	399条の2
監査等委員会の決議	399条の3, 399条の10
監査等委員会の議事録	399条の11
監査等委員会への報告の省略	399条の12
監査等委員会招集手続	399条の9
監査等委員会招集権者	399条の8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	2, 38, 39, 40, 41, 43, 45, 47, 89, 90, 92, 108, 327, 328, 329, 331, 332, 340, 342, 346, 347, 357, 360, 361, 367, 371, 373, 375, 397, 398, 399, 399条の2, 399条の3, 399条の6, 399条の7, 399条の11, 399条の 13, 399条の14, 425, 426, 436, 441, 444, 459, 477, 478, 482, 490, 746, 753, 763, 773, 831, 849, 854, 870, 911, 917, 937, 960, 966, 976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と取締役	
役との間の訴えにおける	
会社の代表	399条の7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取締役	
役会の権限	399条の13
虚偽届出	974
議決権の不統一行使	77, 313, 558, 728
議決権の代理行使	74, 310, 555, 725
議決権の額等	723
議決権制限株式	115
議長	79, 315
議長の権限	79, 315
議事録	81, 318, 369, 371, 393, 394, 412, 413, 561, 731, 976
議事録等	371
譲受会社の責任	22
譲渡会社の競業の禁止	21
譲渡制限株式	2, 134, 136, 137, 138, 140, 174, 179条の 9, 199, 200, 204, 205, 238, 244, 309, 769, 771, 783, 784, 795, 796, 804
譲渡等承認請求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基準株式	456, 506
記名式と無記名式との間の転換	290, 698
旧株主による責任追及等の訴え	847条の2
競業及び利益相反取引の制限	356
競業の禁止	12, 17, 21, 594
認可	449, 568, 569, 570, 574, 732, 735, 751, 858, 901
協定	563, 564, 565, 567, 568, 569, 570, 571, 572, 574, 901
業務の執行の社外取締役への	

委託	348条の2
業務の執行	213, 286, 348, 350, 358, 362, 416, 418, 462, 482, 489, 590, 597, 650, 833, 859
業務を執行する社員	12, 17, 585, 591, 592, 593, 594, 595, 596, 599, 603, 636, 860, 861, 862
業務を執行する社員と持分会社 との関係	593
業務を執行する社員の職務を代 行する者	964, 976
業務を執行する社員を定款で定 めた場合	591, 592, 647
業務停止命	33, 284, 333, 973
吸収合併	2, 749, 750, 751, 752,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3, 795, 796, 797, 799, 800, 801, 802, 828, 834, 843, 937, 976
吸収合併契約等の承認	783, 796
吸収合併契約等の承認を要しな い場合	784, 796
吸収合併等の株式の価格の決 定等	798
吸収合併等をやめることの請求	784条の2, 796条の2
吸収合併等反対株主の株式買 取請求	785, 797
吸収分割	2, 135, 155, 236, 272, 293, 322, 416, 445, 474, 643, 757, 758, 759, 760, 761, 782, 784, 786, 787, 789, 791, 793, 795, 799, 801, 802, 828, 834, 843, 923, 937, 976
求償権	463, 630, 634

休眠会社のみなし解散	472
共有者による権利の行使	106, 237, 686
擬似外国会社	82
金銭分配請求権	309, 446, 454, 455, 459, 505
計算書類	2, 337, 374, 378, 396, 429, 435, 436, 437, 438, 439, 440, 442, 443, 449, 459, 460, 465, 617, 618, 619, 625, 779, 789, 799, 810
計算書類等の監査	436
決議執行者	737, 738, 741, 865, 961, 976
決算報告	507, 976
欠格事由	943
現物出資	33, 46, 52, 93, 207, 208, 212, 284, 285, 286
原告が敗訴した場合の損害賠償責任	846, 846条の9
検査役	33, 52, 87, 207, 213, 284, 286, 306, 358, 870, 874, 960, 963, 976
検査役の選任	33, 306, 358
件付債権	501, 662
権利の推定等	131, 258
欠損	309, 449, 465, 631
公告	2, 116, 118, 124, 158, 168, 169, 170, 181, 195, 198, 201, 218, 219, 220, 229, 240, 273, 274, 275, 293, 426, 429, 440, 449, 469, 472, 487, 499, 627, 635, 660, 670, 706, 714, 720, 721, 735, 776, 777, 779, 780, 783, 785, 787, 789, 790, 797, 799, 804, 806, 808, 810, 819, 820, 849, 885, 890, 898, 901, 902, 911, 912, 913, 914, 922, 924, 925, 933, 939, 940, 941, 944,

	947, 964, 976
公告方法	2, 440, 449, 627, 635, 670, 779, 789, 799, 810, 819, 911, 912, 913, 914, 933, 939
公開会社	2, 36, 67, 108, 109, 115, 129, 158, 162, 201, 202, 215, 240, 297, 299, 303, 305, 306, 309, 327, 331, 332, 360, 389, 402, 422, 426, 469, 477, 479, 522, 784, 785, 796, 797, 828, 849, 854
公開会社における募集株式の割 当て	206条の2
公開会社における募集新株予約 権の割当て等の特則	244条の2
公証人	30, 33, 59
合資会社の社員の退社による定 款のみなし変更	639
合資会社の設立の登記	913
合同会社の設立の登記	578, 914
合同会社に発行済株式を取得さ せる株式交換契約	770
合名会社の設立の登記	912
子会社	2, 120, 135, 163, 333, 335, 337, 358, 371, 374, 381, 389, 394, 396, 405, 413, 427, 444, 478, 530, 768, 769, 771, 773, 774, 782, 783, 787, 791, 794, 796, 799, 800, 801, 803, 804, 806, 808, 811, 844, 863, 970
子会社からの株式の取得	163
子会社等	2, 206条の2
公認会計士	33, 207, 284, 333, 337, 396, 943
効力発生日	116, 117, 218, 227, 293, 447, 448, 463, 467, 469, 470, 744, 745, 747, 749, 750,

	752, 758, 759, 760, 761, 768, 769, 770, 771, 775, 776, 777, 778, 780, 781, 782, 783, 785, 786, 788, 790, 791, 793, 795, 796, 797, 800, 801, 802
公平誠実義務	523
国外犯	971
異なる種類の株式	108, 109
債権者の異議	816条の8
[さ]	
債権者	22, 23, 31, 81, 125, 154, 252, 272, 318, 319, 371, 378, 380, 388, 394, 404, 413, 442, 449, 463, 484, 496, 499, 500, 503, 511, 512, 514, 515, 516, 517, 522, 523, 524, 537, 540, 541, 543, 547, 549, 559, 562, 566, 569, 571, 573, 574, 581, 583, 586, 609, 612, 625, 627, 630, 634, 635, 656, 660, 661, 665, 670, 671, 673, 706, 740, 759, 761, 764, 766, 775, 779, 782, 789, 791, 793, 794, 799, 801, 803, 810, 811, 813, 815, 820, 824, 825, 827, 828, 832, 836, 840, 863, 865, 888, 896, 968
財産目録等	487, 492, 493, 521, 562, 658, 659, 669, 951, 976
裁判所による株主総会招集等の決定	307, 359
裁判による登記の囑託	937, 938
最終事業年度	2
最終完全親会社等の株主による特定責任追及の訴え	847条の3
詐害事業譲渡に係る譲受会社	

に対する債務の履行の請求	23条の2
残余財産の分配	105, 108, 151, 189, 481, 504, 505, 666
債権者集会	546, 547, 548, 549, 550, 552, 553, 554, 556, 557, 559, 560, 561, 562, 563, 567, 900, 968, 976
再審の訴え	853
債務の弁済	500, 501, 502, 537, 649, 661, 662, 664
債務の引受け	23
市場価格	33, 161, 167, 193, 197, 207, 234, 283, 284, 455, 505
指定買取人	133, 138, 140, 142, 143, 144, 145, 870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	2, 46, 48, 108, 120, 122, 149, 212, 213, 213条の3, 216, 250, 270, 285, 286, 286 条の3, 289, 327, 328, 331, 332, 340, 346, 360, 367, 371, 372, 373, 374, 375, 377,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7, 408, 413, 415, 416, 417, 418, 419, 421, 422, 423, 425, 426, 436, 441, 444, 462, 477, 478, 482, 490, 846条 の2, 849, 911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と執行 役又は取締役との間の訴 えにおける会社の代表	408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取締 役の権限	415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取締 役会の権限	416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取締 役会の運営	417
指名委員会等の招集手続	411

指名委員会等の招集権者	410
指名委員会等の権限	404
指名委員会等の議事録	413
指名委員会等への報告の省略	414
支障部分	887
支配人	2, 10, 11, 12, 207, 284, 331, 333, 335, 348, 362, 374, 381, 389, 396, 400, 404, 405, 427, 478, 482, 489, 530, 591, 918, 960, 972, 976
支配人の登記	918
資本金	2, 32, 199, 236, 445, 446, 447, 448, 449, 450, 620, 626, 627, 632, 749, 753, 758, 763, 768, 773, 828, 834, 911, 914, 976
資本金の額の増加	450
資本金の額の減少	447, 626, 627
執行役	2, 12, 17, 48, 120, 207, 212, 213, 284, 285, 286, 295, 314, 333, 335, 337, 371, 372, 374, 375, 377, 396, 397, 400,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1, 414,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5, 426, 427, 428, 429, 462, 478, 490, 594, 824, 828, 836, 849, 870, 874, 911, 917, 937, 943, 960, 966, 972, 976
執行役の権限	418
執行役の監査委員に対する報告	
義務等	419
執行役の解任	403, 416
社債	2, 107, 119, 167, 170, 171, 173, 179, 179 条の2, 234, 236, 243, 244, 248, 254, 267, 272, 275, 278, 279, 280, 292, 399条の13, 429, 487, 489, 676, 677, 678, 679, 681,

	682,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条の2, 696, 697, 698, 700, 701, 702, 704, 705, 706, 710, 712, 714, 715, 718, 723, 728, 734, 736, 739, 744, 745, 746, 747, 749, 750, 751, 752, 753, 754,
社債管理補助者	676, 714条の2, 714条の3, 714条の4, 717, 718, 720, 729, 731, 737, 740, 741, 976
社債券	249, 676, 681, 682, 687, 688, 689, 692, 693, 694, 695の2, 696, 697, 698, 699, 700, 705, 718, 720, 723, 976
社債権者集会	676, 706, 707, 710, 711,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3, 724, 726,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2, 865, 968, 976
社債権者集会の決議の省略	735☒☒2
社債権者による招集の請求	718
社債権者に対する通知	685
社債原簿	681, 682, 683, 684, 685, 688, 690, 691, 693, 694, 695, 695の2, 976
社債原簿管理人	683, 976
社債の償還請求権等の消滅時効	701
社債の質入れの対抗要件	693
社債発行会社	682, 684, 688, 690, 691, 693, 694, 695, 696, 697, 700, 705, 706, 710, 711, 712, 713, 714, 717, 718, 720, 723, 729, 731, 733, 735, 739, 740, 741, 742, 865
社債発行会社の代表者の出席等	729
社債管理者	676,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7, 718,

	720, 729, 731, 737, 740, 741, 865, 870, 976
社債管理者の権限	705
社員	2, 31, 33, 81, 82, 207, 234, 252, 284, 318, 319, 333, 335, 337, 371, 376, 377, 378, 379, 394, 398, 400, 413, 433, 442, 478, 496, 575, 576, 578,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8, 621, 622, 624,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8, 639, 640, 641, 642, 647, 648, 650, 651, 654, 655, 656, 658, 663, 664, 665, 667, 671, 672, 673, 675, 684, 744, 745, 746, 747,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60, 第761, 765, 766, 770, 771, 795, 796, 800, 824, 825, 827, 828, 832, 833, 834, 845, 859, 860, 863, 868, 912, 913, 914, 917, 937, 943, 964, 976
社員の加入	604
社員の抗弁	581
社員の責任	580, 583, 586, 602, 605, 612, 633, 636
社員の退社	639
社外取締役	2, 373, 400, 425, 427, 478, 911
社外取締役を置いていない場合の理由の開示	327条の2
社外監査役	2, 335, 427, 478, 911, 976
証券発行新株予約権	249, 250, 255, 256, 257, 267, 268, 270, 272の2, 280, 288, 289, 290, 292
証明者	52, 213, 286

書面交付請求	325条の5
書面による議決権の行使	311, 556, 726
種類創立総会	44, 84, 85, 86, 90, 92, 100, 101, 102, 347, 830, 831, 911, 963, 968, 976
種類創立総会の招集及び決議	85
種類創立総会の決議による設立	
時取締役等の選任	90
種類株主総会	2, 44, 45, 84, 92, 108, 111, 116, 124, 162, 188, 189, 199, 200, 230, 238, 239, 321, 322, 323, 324, 325, 347, 469, 782, 783, 785, 794, 795, 797, 803, 804, 806, 830, 831, 854, 922, 924, 925, 963, 968, 976
種類株主総会における取締役又は監査役の選任	347
種類株主総会の決議を必要とする旨の定めがある場合	323
種類株式発行会社	2, 28, 32, 40, 43, 58, 72, 73, 84, 99, 100, 101, 110, 111, 115, 116, 117, 121, 138, 140, 142, 156, 157, 158, 159, 160, 164, 166, 167, 170, 171, 175, 176, 178, 179条の2, 180, 182, 182条の2, 182条の4, 183, 184, 185, 186, 187, 188, 191, 192, 194, 195, 197, 199, 200, 202, 214, 216, 217, 218, 219, 221, 226, 227, 234, 236, 238, 239, 241, 277, 278, 279, 309, 322, 323, 746, 749, 751, 753, 758, 763, 768, 770, 773, 783, 784, 785, 795, 797, 804, 806, 911
出資	27, 28, 34, 35, 36, 38, 40, 41, 43, 44, 45, 46, 50, 59, 93, 199, 208, 209, 236, 281, 578, 582, 604, 608, 611, 624, 626, 632,

	633, 634, 640, 663, 666, 751, 755, 760, 765, 859, 870, 913
出資された財産等の価額が不足 する場合の取締役等の責任	213, 286
出資の履行	34, 35, 36, 38, 40, 41, 43, 44, 45, 46, 50, 59, 93, 208, 209, 640
出資の履行を仮装した募集株式 の引受人の責任	213条の2
出資の履行を仮装した場合の取 締役等の責任	213条の3
出資の払戻し	624, 626, 632, 633, 634
取得請求権付株式	2, 100, 111, 114, 151, 166, 167
取得項付株式	2, 100, 111, 114, 151, 168, 169, 170, 189, 219
取得項付株式の取得	151, 170, 189, 219
取得対価	171, 760, 763, 765
出席義務	383
商行為	5
組織変更	2, 151, 219, 272, 293, 743, 744, 745, 746, 747, 775, 776, 777, 778, 779, 780, 781, 828, 834, 920, 937, 976
組織変更の手続	743, 744, 746, 775, 776, 781
組織変更計画	743, 744, 746, 775, 776, 781
商人との間での事業の譲渡又は 譲受け	24
商号	6, 7, 8, 9, 22, 23, 27, 203, 216, 242, 289, 576, 613, 677, 697, 744, 746, 749, 751, 753, 755, 758, 760, 763, 765, 768, 770, 773, 785, 787, 789, 797, 799, 806, 808, 810, 911, 912, 913, 914, 930, 946, 978
職務執行停止の仮処分等の登記	917

招集権者	366, 367, 383, 391, 410, 417, 490, 721
招集手続	69, 297, 300, 306, 368, 376, 392, 411, 547, 718, 733, 831
信託財産	154の2, 272の2, 695の2
信託財産に属する社債について の対抗要件	695条の2
自己株式	113, 114, 128, 129, 132, 178, 194, 199, 210, 221, 308, 358, 433, 446, 461, 522, 828, 829, 833, 834, 841
自己新株予約権	255, 256, 259, 276, 280
自己の商号	9
事業の譲渡	24, 467, 468, 469, 470, 536, 896
質権に関する社債原簿	694, 695
住所	4, 27, 59, 68, 121, 126, 130, 147, 148, 150, 152, 198, 203, 221, 225, 230, 232, 242, 249, 253, 257, 268, 269, 271, 457, 576, 598, 654, 677, 681, 685, 688, 693, 694, 744, 749, 751, 753, 755, 758, 760, 765, 768, 770, 785, 787, 789, 797, 799, 806, 808, 810, 817, 820, 822, 911, 912, 913, 914, 928, 933, 935, 937, 944
準備金	32, 199, 236, 445, 446, 447, 448, 449, 451, 749, 753, 758, 763, 773, 976
準備金の額の減少	448
純資産額	141, 142, 144, 167, 193, 283, 458, 467, 468, 635, 796
剰余金の配当	2, 105, 108, 151, 197, 452, 453, 454, 459, 461, 462, 465, 758, 760, 763, 765, 792, 812, 963
剰余金の配当等に関する特則	792, 812
剰余金の配当等に関する責任	462

剰余金の配当等を取締役会が決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	459
剰余金の額	446, 450, 451, 461
新株予約権	2, 107, 113, 114, 116, 118, 119, 151, 167, 170, 171, 173, 234, 236, 237, 238, 239, 241, 242, 243, 247, 249, 250, 251,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5, 267, 268, 269, 270, 271, 272, 272
新株予約権出資された財産等の価額が不足する場合の取締役等の責任	286
新株予約権原簿	249, 250, 251, 252, 253, 257, 259, 260, 263, 268, 269, 270, 271, 272의2, 294, 976
新株予約権原簿の備置き及び閲覧	252
新株予約権原簿の記載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	270
新株予約権原簿記載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	250
新株予約権証券	119, 236, 249, 255, 256, 257, 258, 267, 268, 280, 288, 290, 291, 293, 294, 425, 778, 809, 842, 976
新株予約権証券の提出に関する公告	293
新株予約権証券の記載事項	289
新株予約権付社債	2, 107, 118, 119, 167, 170, 171, 173, 179, 179条의2, 236, 238, 242, 243, 244, 245, 248, 249, 254, 256, 258, 267, 272, 275, 275, 278, 280, 293, 294, 429, 487, 746,

	747, 749, 750, 753, 754, 758, 759, 763, 764, 768, 769, 773, 774, 777, 778, 787, 788, 789, 796, 808, 809, 810, 828, 842, 870, 937, 964, 968
新株予約権付社債券	119, 249, 255, 256, 258, 267, 268, 280, 292, 293, 778, 788, 809, 842
新株予約権に係る払込み等を 仮装した場合の取締役等 の責任	286条の3
新株予約権に係る払込み等を 仮装した新株予約権者等 の責任	286条の2
新株予約権の価格の決定	119, 778, 788, 809
新株予約権の発行	273, 274, 275,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7, 292, 293, 294, 425, 429, 487, 744, 745, 746, 747,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8, 759, 760, 763, 764, 765, 768, 769, 773, 774, 775, 777, 778, 783, 787, 788, 796, 804, 808, 809, 828, 829, 834, 839, 842, 870, 911, 915, 922, 937, 964, 968, 976
新株予約権の行使	236, 272, 280, 284, 285, 911, 915
新株予約権の譲渡	254, 255, 257
新株予約権の質入れ	267, 268, 272
新株予約権の質入れの効果	272
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	277, 278, 279, 322
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の効力 の発生	279
新株予約権者となる日	245
新株予約権買取請求	9, 118, 119, 777, 787, 788, 808, 809
新株発行等の不存在の確認の	

訴え	829
新設合併	2, 753, 754, 755, 756, 804, 806, 807, 808, 809, 810, 813, 815, 828, 834, 843, 922, 930, 937, 976
新設合併契約等の承認	804
新設合併等の債権者の異議	810
新設合併等の反対株主の株式買 取請求	806
新設合併等の新株予約権の価格 の決定等	809
新設合併等の新株予約権買取 請求	808
新設合併等の株式の価格の決 定等	807
新設合併等をやめることの請求	805条の2
新設分割	2, 135, 236, 272, 293, 322, 416, 445, 762, 763, 764, 765, 766, 804, 805, 807, 808, 810, 811, 813, 815, 828, 834, 843, 924, 930, 937, 976
清算	473, 475, 476, 499, 503, 508, 510, 514, 519, 520, 540, 541, 542, 543, 562, 642, 644, 645, 660, 665, 667, 670, 672, 822, 868, 887, 903, 929, 938
清算事務	494, 496, 507, 520, 523, 524, 667
清算人	477, 478, 479,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7, 500, 504, 505, 507, 508, 511, 512, 516, 522, 523, 524, 525, 526, 530, 540, 541, 542, 543, 562, 573,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61, 667, 672, 822, 828, 831, 847,

	849, 870, 874, 893, 896, 928, 937, 938, 960, 966, 976
清算人会	108, 323, 477, 478, 486, 489, 490, 491, 492, 495, 504, 505, 507, 976
清算会の運営	490
清算人代理	525, 960, 976
清算人の就任	478, 647
清算人の業務の執行	482
清算持分会社	645, 646, 647, 650, 651, 652, 655, 656, 657, 658, 660, 661, 662, 663, 664, 665, 667, 669, 670, 671, 672, 673, 674, 675, 863, 874, 928, 929, 937, 976
清算持分会社の財産処分の取 消しの訴え	863
清算株式会社の代表	483
清算株式会社の能力	476
成年被後見人が取締役就任	331条の2
設置義務	327, 328
責任の一部免除	425
責任追及等の訴えに係る訴訟費 用等	847条の4
責任限定契約	427
設立	1, 2, 25, 26, 28, 32, 37, 38, 39, 40, 43, 46, 47, 48, 53, 56, 58, 66, 68, 72, 73, 84, 87, 93, 94, 99, 100, 101, 103, 236, 445, 467, 575, 576, 578, 753, 754, 755, 756, 763, 764, 765, 766, 773, 814, 816, 824, 828, 832, 834, 839, 843, 851, 911, 914, 922, 924, 925, 930, 933, 937
設立に関	28
設立手続	46, 93, 102

設立手続等の特則	102
設立時代表取締役の選定	47
設立時代表取締役の選定等	47
設立時会計参与	38, 39, 43, 45, 88, 91, 753, 763, 773
設立時会計監査	38, 39, 43, 88, 91, 753, 763, 773
設立時募集株式	58, 59, 60, 61, 62, 63, 102
設立時取締役等	44, 88, 90, 91, 93, 94
設立時取締役等による調査	93
設立時取締役等の選任	88, 90
設立時委員	48
設立時委員の選定	48
設立時役員	38, 39, 40, 41, 42, 43, 45
設立時役員等の解任の方法	43
設立時役員等の選任	38, 40, 45
設立時役員等の選任の方法	40
設立時役員等の選任又は解任の 効力についての特則	45
設立時発行株式	25, 28, 32, 33, 34, 35, 36, 37, 40, 41, 43, 44, 45, 50, 51, 57, 58, 63, 72, 77, 84, 86, 89, 90, 92, 97, 100, 101, 102, 234
設立時監査役	33, 38, 39, 43, 44, 45, 46, 53, 88, 91, 92, 93, 94, 753, 763, 773, 960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効 力の発生	173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	171, 219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 に関する書面等の備置き及 び閲覧	173条の2
相殺の禁止	517
創立総会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8, 79, 80, 81, 82, 83, 84, 86, 87, 88, 89, 91,

	92, 93, 94, 96, 97, 98, 100, 101, 102, 830, 831, 911, 963, 968, 976
訴訟参加	849, 968
即時抗告	512, 540, 541, 542, 872, 873, 882, 884,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6, 898, 900, 901, 902, 904, 905
損害賠償責任の免除	424
[た]	
退社に伴う持分の払戻し	611
大会社	2, 328, 348, 362, 440, 444, 477
大会社における監査役会等 の設置義務	328
代表執行役	46, 48, 122, 149, 216, 250, 270, 289, 416, 420, 421, 425, 870, 874, 911, 917, 937, 960, 976
代表社債権者	736, 737, 738, 741, 865, 961, 976
代表社債権者の選任	736
代表清算人	482, 489, 491, 870, 874, 928, 937, 938, 960, 976
代理商	16, 17, 18, 19, 20
単元未満株主	189, 192, 193, 194, 847
単元未満株式	189, 192, 193, 194
単元株式数	2, 40, 41, 43, 44, 45, 72, 89, 101, 116, 188, 190, 191, 194, 195, 308, 322, 342, 911
担保権	500, 516, 522, 537, 538, 539, 547, 548, 564, 566, 571, 891, 897
担保権者	538, 539, 897
担保権の実行の手続等の中 止命令	891

担保提供命令	836
調査命令	522, 533, 892
調査委員	522, 533, 534, 573, 887, 895, 960, 976
帳簿資料	508, 672, 874
帳簿資料の保存	874
忠実義務	355
定時株主總會における會計監 査人の意見の陳述	398
定款の作成	26
定款の変更	33, 37, 52, 73, 95, 96, 99, 100, 101, 110, 111, 113, 114, 116, 118, 164, 184, 190, 191, 195, 218, 219, 221, 226, 227, 604, 610, 637, 638, 639, 640, 745, 747, 752, 761, 771
定款の記載又は記録事項	27
電子提供措置	325条の2, 325条の3, 325条の4,
電子提供措置の中断	325条の6
電子公告	2, 911, 912, 913, 914, 933, 939, 940, 941, 942, 944, 946, 947, 948, 949, 950, 953, 954, 955, 956, 957, 959
電磁的方法による議決權の行使	312, 557, 727
登記	22, 34, 429, 472, 487, 492, 494, 496, 508, 515, 578, 583, 586, 612, 672, 673, 750, 818, 820, 827,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登記の囑託	937, 938
登録株式質權者	124, 149, 150, 152, 153, 154, 168, 169, 170, 181, 187, 196, 197, 198, 218, 219,

	221, 279, 457, 776, 783, 804, 840, 842, 844
特別の利益及	28
特別代理人	707, 708, 729
特別取締役	373, 383, 911
特別取締役による取締役会の決議	373
特別支配株主の対象会社の承認	179条の3
特別支配株主の株式等売渡請求の方法	179条の2
特別支配株主の株式等売渡請求	4節の2
特別清算	510, 514, 522, 523, 536, 540, 545, 546, 573, 574, 706, 882, 884, 903, 938
特別清算開始の命令	513, 514, 515, 516, 519, 521, 535, 536, 537, 540, 541, 542, 543, 544, 545, 562, 880, 886, 890, 938
特別清算開始の申立て	511, 512, 513, 514, 517, 518, 540, 541, 542, 544, 574, 888, 890
特定の株主からの取得	160, 164
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	2
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の子会社等	2
取締役	2, 12, 17, 33, 38, 39, 40, 41, 43, 44, 45, 46, 47, 48, 52, 53, 54, 55, 88, 89, 90, 91, 92, 93, 94, 108, 112, 120, 171, 180, 190, 195, 197, 199, 200, 202, 207, 212, 213, 234, 238, 239, 241, 284, 285, 286, 295, 296, 297, 298, 299, 301, 302, 303, 305, 307, 309, 314, 316, 319, 320, 326, 329, 331, 332, 333, 335, 337, 342, 343, 344, 345, 347, 348, 349, 352, 353, 354, 355, 356,

	357, 359, 360, 361, 362, 363, 365, 366, 367, 368, 369, 370, 372, 373, 374, 375, 377, 381, 382, 383, 384, 385, 386, 389, 395, 396, 397, 399, 400, 402, 404, 406, 407, 408, 413, 414, 415, 416, 417, 423, 425, 426, 428, 429, 437, 438, 439, 444, 447, 448, 459, 462, 467, 478, 483, 489, 490, 491, 542, 594, 746, 753, 763, 773, 795, 828, 831, 836, 847, 849, 854, 870, 911, 917, 943, 947, 960, 966, 967, 972, 976
取締役会等の設置義務	327
取締役会設置会社	2, 47, 68, 108, 139, 140, 157, 163, 165, 168, 169, 178, 183, 186, 195, 197, 200, 204, 234, 239, 243, 265, 273, 274, 276, 278, 295, 298, 303, 305, 306, 309, 313, 323, 327, 331, 348, 349, 362, 363, 364, 365, 367, 370, 371, 373, 376, 378, 382, 419, 426, 436, 437, 438, 441, 442, 447, 448, 454, 491
取締役会の決議	157, 165, 178, 195, 197, 201, 202, 213, 234, 240, 241, 276, 286, 298, 369, 370, 373, 400, 401, 402, 403, 418, 454
取締役会の権限	362, 41
取締役会の権限等	362
取締役会への報告の省略	372
取締役会等の設置義務	327
取締役等による免除に関する 定款の定め	426
取締役等の特別背任罪	960
取締役等の説明義務	314

取締役の報酬等	202条の2,
取締役の報酬等に係る募集事項の決定の特則	202条の2

[な]

二以上の社債管理補助者がある 場合の特則	714条の5
任意退社	606
認容判決の効力が及ぶ者の範囲	846条の7

[は]

配当等の制限	461
配当財産	2, 108, 309, 446, 454, 455, 456, 457, 459, 462, 758, 760, 763, 765
配当財産の交付の方法等	457
反対株主の株式買取請求 買取請求	816条の6 116, 117, 118, 119, 192, 464, 469, 777, 778
買取請求に応じて株式を取得し た場合の責任	464
費用等の請求	380, 388
端数の処理	283
発起人	25, 26, 27, 28, 31, 32, 33, 34, 36, 37, 38, 40, 41, 42, 43, 44, 45, 46,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2, 63, 64, 65, 67, 68, 70, 74, 75, 76, 77, 78, 81, 82, 83, 85, 87, 89, 93, 94, 95, 102, 103, 542, 847, 911, 960, 966, 976
発起人の責任等	103
発起人等の出資の履行を仮装し た場合の責任	52条の2
発起人等の責任の免除	55

発行可能株式総数	37, 98, 101, 113, 184, 322, 746, 753, 763, 773, 911
発行可能種類株式総数	101, 108, 114, 322, 911
反対株主の株式買取請求	116, 182条の4, 469, 785, 797, 806
罰則	972
売買価格	177
売買価格の決定の申立て	179条の8
払込金の保管証明	64
払込みを仮装した設立時募集 株式の引受人の責任	102条の2
引受けの無効又は取消	51, 211
引受けの無効又は取消しの制限	51, 211
非訟事件	868, 870, 871, 875, 876
非訟事件の管轄	868
一に満たない端数の処理	234
表見支配人	13
表見代表取締役	354
表見代表執行役	421
不公正な払込金額で新株予約 権を引き受けた者等の責任	285
不公正な払込金額で株式を引 き受けた者等の責任	212
不認可	569, 574, 733, 735, 901
不服申立て	874, 884
不服申立ての制限	874
物品の販売等を目的とする店舗 の使用人	15
弁論等の必要的併合	846条の6
法人格	3
法定退社	607
補償契約	399条の13, 416, 430条の2

報告義務	357, 375, 382, 384, 406, 419
保全処分	513, 522, 540, 542, 825, 868, 872, 886, 898, 905, 907, 938, 976
募集事項	199, 200, 201, 202, 203, 207, 238, 239, 240, 241, 242
募集事項の決定	199, 200, 207, 238, 239
募集株式の割当て	204
募集株式の引受け	203, 206, 206条の2, 211
募集株式の株主となる時期等	209
募集株式の引受けの無効又は 取消しの制限	211
募集株式の申込み及び割当て に関する特則	205
募集新株予約権	238, 239, 241, 242, 243, 244, 245, 246, 285
募集新株予約権の申込み及び 割当て	244
募集新株予約権の割当て	241, 243
募集社債	676, 677, 678, 679, 680
報酬委員会	2, 48, 404, 409

[ま]

無記名式の新株予約権証券等が 提出されない場合	294
無限責任社員	576, 583, 584, 588, 589, 638, 639, 744, 751, 755, 760, 765
無効の判決の効力	842, 843, 844, 846条の8
名義人	221, 224, 227, 230, 963
持分会社	575, 576, 577, 579, 580, 581, 583, 584, 586, 587,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7, 618, 620, 621, 623, 624, 637, 638, 640, 641, 642, 643, 644, 645, 655, 668, 669, 670, 671, 744, 745, 3, 746, 747, 751, 752, 755, 756, 760, 761, 765, 766, 781, 783, 793, 802, 813, 828, 832, 833, 834, 845, 859, 860, 861, 862, 919, 937, 940, 964, 976
持分会社が存続する吸収合併	
契約	751
持分会社に権利義務を承継さ	
せる吸収分割の効力の発生	761
持分会社に権利義務を承継さ	
せる吸収分割契約	760
持分会社の組織変更	747
持分会社の組織変更の効力の発	
生等	747
持分会社の組織変更計画	746
持分会社の継続	642
持分会社の設立の取消しの訴え	832, 937
持分会社を設立する新設分割の	
効力の発生	766
持分会社を設立する新設分割	
計画	765
持分会社を設立する新設合併	
契約	755
持分の譲渡	585
[や]	
役員の選任及び解任の株主総	
会の決議	341

役員等に欠員を生じた場合の措置	346
役員等の三者に対する損害賠償責任	429
役員等の株式会社に対する損害賠償責任	423
役員等の責任の一部免除	425
役員等のために締結される保険契約	416, 430条の3
役員等の連帯責任	430
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	399条の13, 416
役員等責任査定決定	522, 545, 858, 899
[ゆ]	
有価証券	20, 32, 46, 93, 207, 284, 444, 819
有限責任社員	576, 580, 583, 585, 588, 589, 597, 623, 638, 639, 744, 751, 755, 760, 765
[ら]	
理由の付記	871, 882
利札が欠けている場合における社債の償還	700
利益の配当	621, 623, 628, 629, 630, 631
利益供与	120, 970
利益相反取引	595
利益相反取引の制限	595
両罰規定	975
臨時計算書類	374, 378, 396, 429, 441, 442, 461
留置権	20, 522
累積投票	89
累積投票による取締役の選任	342
累積投票による設立時取締役	

의選任	89
連帶責任	54, 430, 488
連結計算書類	374, 396, 444, 879
[わ]	
和解	386, 408, 535, 706, 850, 865, 849条の2

역자 약력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경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본 대장성 금융재정연구소 실무연구원

법무부 상법총칙·상행위편 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회사법 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방어법제개선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

일본 동경대학 법과대학원 특임교수

일본 동지사대학 법과대학원 겸임교수

비교회사법 총서 3 (개정판)

일본 회사법 | 日本会社法

저 작 권 법무부

역 자 권종호

개 정 판 2025년 1월

인 쇄 도서출판 동강

TEL. 02-503-516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61번지 에이스평촌타워 B113호

※이 책은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